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일 반 회 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026. 9.

고 용 노 동 부

- 순 서 -

Ⅰ. 일반회계 ····· 1

(1)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 ····· 3
(2) 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 ····· 10
(3)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32-302) ····· 17
(4)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 ····· 39
(5) 고용노동통계조사(1033-470) ····· 46
(6) 사회적기업 지원(1037-311) ····· 59
(7) 치유휴직 지원(1038-303) ····· 83
(8)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1039-321) ····· 89
(9) 고용동향조사분석(1040-300) ····· 95
(10)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1044-301) ····· 117
(11)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 124
(12)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1046-358) ····· 130
(13) 한국잡월드운영지원(1049-301) ····· 136
(14) 해외취업지원(1051-304) ····· 144
(15)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1051-306) ····· 152
(16) 공정채용문화확산(1051-307) ····· 160
(17) 청년미래플러스(1051-308) ····· 166
(18) 건설근로자고용지원(1060-301) ····· 173
(19) 행복한일터인증제(1065-300) ····· 179
(20)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1070-300) ····· 185
(21) 경계선지능청년지원(1072-300) ····· 199
(22)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1075-302) ····· 203
(23)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1075-303) ····· 222
(24)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 ····· 233
(25)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1131-315) ····· 244
(26)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300) ····· 251
(27)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 265
(28)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1134-316) ····· 293
(29) 숙련기술장려사업(1134-317) ····· 318
(30)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1134-500) ····· 338
(31)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1136-300) ····· 351

(3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 395
(33) 실업크레딧지원(일반)(1232-351) ····· 403
(34) 일자리안정자금지원(1233-300) ····· 409
(35)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 415
(36)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운영(정보화)(1234-400) ····· 424
(37)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1331-300) ····· 429
(38) 중장년 경력지원제(1336-305) ····· 437
(39) 중장년경력이음지원(1336-307) ····· 444
(40)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1339-301) ····· 452
(41) 중장년층취업지원(1340-300) ····· 458
(42) 상생협력 확산지원(2031-301) ····· 469
(43) 취약노동자지원(2031-303) ····· 479
(44)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2031-305) ····· 491
(45)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 501
(46) 일터혁신 상생컨설팅(2039-300) ····· 509
(47)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 ····· 516
(48) 노동감독역량강화(3032-306) ····· 538
(49)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3034-313) ····· 548
(50) 최저임금위원회전문성강화(3036-301) ····· 558
(51) ILO분담금(ODA)(3050-300) ····· 563
(52)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3050-301) ····· 567
(53)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3050-302) ····· 575
(54) 한-ILO 협력사업(ODA)(3050-303) ····· 581
(55)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 ····· 586
(56)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4135-300) ····· 594
(57) 본부인건비(7001-100) ····· 603
(58) 노동위원회인건비(7002-104) ····· 607
(5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7002-150) ····· 611
(60)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7007-107) ····· 617
(61)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총액)(7011-211) ····· 621
(62)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총액)(7011-212) ····· 625
(63)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7011-213) ····· 629
(64) 기본경비(노동정책실, 비총액)(7011-254) ····· 633
(65)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7011-214) ····· 638
(66)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7011-216) ····· 642

(67)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7011-217) ····· 646
(68)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7011-218) ····· 650
(69)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7011-251) ····· 654
(70)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7011-252) ····· 659
(71)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7011-253) ····· 664
(72)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7011-256) ····· 669
(73)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7011-257) ····· 674
(74)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7011-258) ····· 679
(75) 사회복무요원운용(노동위, 총액)(7018-219) ····· 683
(76)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0) ····· 687
(77)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1) ····· 692
(78)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2) ····· 696
(79) 사회복무요원운영(노동위, 비총액)(7018-261) ····· 701
(80)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2) ····· 705
(81)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3) ····· 710
(82)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4) ····· 714
(83)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7018-265) ····· 719
(84)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5) ····· 723
(85)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6) ····· 728
(86)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7) ····· 733
(87)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8) ····· 738
(88)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9) ····· 743
(89)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30) ····· 748
(90) 경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37) ····· 753
(91)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67) ····· 758
(92)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8) ····· 763
(93)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9) ····· 768
(94)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0) ····· 773
(95)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1) ····· 778
(96)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2) ····· 783
(97) 경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9) ····· 788
(98) 정책연구개발(7031-300) ····· 793
(99)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7032-310) ····· 797
(100) 고용노동행정(정보화)(7034-500) ····· 805
(101) 노동위원회청사관리(7036-306) ····· 817

(102)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7036-440) ····· 823
(103)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039-309) ····· 828
(104) 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 840
(105)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7039-502) ····· 848
(10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7040-307) ····· 855
(107) 공무직위원회 운영(7050-301) ····· 868
(108) 고객상담센터인건비(7902-101) ····· 874
(109) 고객상담센터운영(7931-301) ····· 880
(110)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8421-881) ····· 905
(1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8422-882) ····· 909
(1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예방지원)(8422-883) ····· 913
(113)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8425-885) ····· 917

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23
(1) 사회적기업육성(지특)(1037-312) ····· 925
(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1056-314) ····· 934
(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제주)(1056-315) ····· 942
(4)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세종)(1056-316) ····· 949
(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056-317) ····· 956
(6)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7041-301) ····· 968
(7)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7041-310) ····· 973
(8)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7041-316) ····· 978
(9) 제주노동위원회지원(7041-401) ····· 986
(10)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7041-402) ····· 992

Ⅲ.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997
(1)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135-750) ····· 999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136-750) ····· 1008

Ⅰ. 일반회계

사 업 명
(1)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31	300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창출	고용센터인력지원	고용센터인력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센터인력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직접수행 (지방관서 고용센터)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센터인력지원	97,593	108,734	108,734	118,660	118,660	9,926	9.1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7,719 (97,719)	97,719	97,593	0	126	108,734 (108,734)	108,734	55,685	118,660
·고용센터인력지원	97,719 (97,719)	97,719	97,593	0	126	108,734 (108,734)	108,734	55,685	118,66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7,719 (97,719)	97,719	97,593	0	126	108,734 (108,734)	108,734	55,685	118,660
·상용임금(110--03)	79,149	79,149	79,048	0	101	88,150	88,150	47,161	94,693
·일용임금(110-04)	1,552	1,552	1,552	0	0	1,609	1,609	1,574	2,069
·복리후생비(210-12)	1,337	1,337	1,312	0	25	1,337	1,337	994	1,529
·고용부담금(320-09)	15,681	15,681	15,681	0	0	17,638	17,638	5,955	20,36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센터인력지원

사업목적·내용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상담원 등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① 법령상 근거** **1.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이하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능력·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직업상담원 배치 근거 및 수행업무** □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직업상담원 처우 및 보수지급 기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①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1996년 ○ '96년, 전문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직업상담원 제도 도입(민간직업상담원 채용 42명) → 배치 등 법적 근거 마련('99.2.8.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04.1.20.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조항 신설) ○ '98년, 고용지원센터 설치, 외환위기로 급증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필요인원 충원이 어려워 민간직업상담원으로 대체('06년말 1,574명) ○ '07년, '08년 직업상담원을 상담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1,446명) ○ '10년~11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291명) ○ '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된 구인상담원(100명)·훈련상담원(200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 '13년~14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수행을 위해 '12~13년에 기간제로 채용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800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 '15.1월,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시군구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고용센터 인력으로 특별채용(178명) ○ '15.4월, 인력운영 효율성을 위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4개 직종(구인·훈련·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일반직급 신설)으로 통합(1,319명) ○ '19.1월,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직업상담원 일반직급과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직업상담원 전임직급으로 통합 ○ '22년, 기존 기간제 취업지원관 정원 100명을 직업상담원으로 전환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92,288	94,640	97,719	108,734	118,66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인기업, 구직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8,734	118,660	9,926
고용센터인력지원	108,734	118,660	9,926

○ 고용센터인력지원 **(2026년) 108,734 → (2027년 정부안) 118,660백만원, +9.1%**

- (설명)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원 등 인력운영 소요 인건비 요구

- (산출) 상용임금 94,693백만원(직업상담원 1,928명 인건비)

  일용임금 2,069백만원(매년 1분기 급증 실업급여업무(1.7배) 대응 기간제 200명, 3개월 인건비)

  복리후생비 1,529백만원(직업상담원 1,928명 복지포인트)

  고용부담금 20,369백만원(직업상담원 1,928명 및 기간제상담원 200명 사회보험료 등)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2024년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2025년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2026년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전국 174개 고용센터에 고용서비스 전담인력인 직업상담원 운영(1,928명)을 통해 구직자 및 구인기업에 대한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등 고용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한편, 기간제 직업상담원(200명) 한시적 운영을 통해 매년 연초에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원활한 대국민 고용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부 (예산 재배정)	○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	
49개 지방관서 (예산집행)	○ 직업상담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예결위	2024년	○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권고 이행 및 공무원과 공무직간 차별해소를 위해 민원업무지원비 등을 증액하고, 기간제 직업상담원의 임금과 명절상여금을 상용 직업상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필요 ○ 조치 : 공무직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민원업무지

		원비, 명절상여금 등 편성 요구를 통해 '25년 예산에 기간제 직업상담원 명절상여금 증액 반영
환노위 예결위	2025년	○ 지적 : 직업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해 민원수당 지급 및 명절상여금 증액, 기간제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을 적용 등 증액 필요(환노위•예결위 '25예산) ○ 조치 : 공무원 등과 동일한 지급기준으로 민원업무지원비 등 편성 요구를 통해 '26년 정부예산안에 민원업무지원비, 명절상여금 증액 편성 반영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2,288	92,288	0	2,200	92,288	92,125	99.8	0	163
2024년	94,640	94,640	0	0	94,640	94,361	99.7	0	279
2025년	97,719	97,719	0	0	97,719	97,593	99.9	0	126
2026년	108,734	108,734	0	0	108,734	55,685	51.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2,200	직업상담원 퇴직연금적립금 납입을 위해 동일 사업 내 상용임금에서 고용부담금으로 2,200백만원 전용
2023년	불용	163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024년	불용	279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025년	불용	126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 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32	30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직업안정기관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서비스정책과	직접수행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직업안정기관운영	55,427	59,340	59,340	60,710	60,710	1,370	2.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5,092	56,081	55,427	-	654	59,340	59,340	25,718	60,710
·직업안정기관운영	55,092	56,081	55,427	-	654	59,340	59,340	25,718	60,71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5,092	56,081	55,427	-	654	59,340	59,340	25,718	60,710
· 상용임금(110-03)	3,891	3,541	3,518	-	23	4,231	4,231	2,105	5,021
· 일반수용비(210-01)	8,470	7,810	7,807	-	4	7,660	7,660	2,597	7,691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703	4,433	4,420	-	14	4,621	4,621	2,410	4,827
· 피복비(210-03)	-	-	-	-	-	80	80	50	80
· 특근매식비(210-05)	1,036	1,115	1,100	-	14	1,036	1,036	560	1,100
· 임차료(210-07)	15,319	15,365	15,362	-	3	16,822	16,822	9,050	16,916
· 유류비(210-08)	18	18	14	-	4	18	18	7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837	8,693	8,692	-	1	8,397	8,397	4,661	10,152
· 복리후생비(210-12)	69	69	68	-	-	69	69	55	84
· 일반용역비(210-14)	105	103	103	-	-	105	105	79	105
· 관리용역비(210-15)	708	658	657	-	1	708	708	333	715
· 기타운영비(210-16)	558	558	554	-	4	558	558	22	558
· 국내여비(220-01)	2,078	2,078	2,044	-	34	2,000	2,000	979	2,020
· 국외업무여비(220-02)	15	15	-	-	15	15	15	0	15
· 사업추진비(240-01)	377	377	374	-	3	172	172	67	177
· 고용부담금(320-09)	761	1,111	1,111	-	-	838	838	231	1,067
· 국제부담금(340-02)	27	27	27	-	-	27	27	27	32
· 실시설계비(420-02)	134	134	134	-	-	348	348	98	170
· 공사비(420-03)	5,469	6,457	6,453	-	5	7,137	7,137	1,625	6,437
· 시설부대비(420-05)	26	26	4	-	22	36	36	0	26
· 자산취득비(430-01)	2,474	2,474	2,474	-	-	3,085	3,085	761	2,397
· 무형자산(440-00)	1,018	1,018	512	-	506	1,378	1,378	0	1,11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목적·내용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기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 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추진경위	○ **(고용복지+센터 운영)** '98년 7월에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 - 이후, 급증한 실업과 고용보험 확대 및 자활사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고용센터 기능 및 조직을 지속적 개편 - '1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신설 및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 '26.7월 기준, 고용복지+센터 102개소, 중형고용센터(1) 30개소, 출장센터(2) 42개소 등 총 174개소 운영 중 (1) 중형고용센터: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미설치지역에 상시 운영되는 중형센터를 설치·운영 (2) 출장센터: 고용센터 직원이 지자체 청사 등 사전 협의된 장소에 주 1~2회 출장 근무 ○ **(지역단위 통합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강화)** 취약계층의 복합애로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협업체계인 통합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추진(국정과제 96.1)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71,425	53,166	55,092	59,340	60,71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9,340	60,710	1,370
직업안정기관운영	59,340	60,710	1,370

○ **직업안정기관운영 : (2026년) 59,340백만원 → (2027년 정부안) 60,710백만원, +2.3%**

1 고용센터 운영 : (2026년) 41,484백만원 → (2027년 정부안) 44,743백만원(+3,259백만원)

① 고용센터 기본 운영비 : (2026년) 39,978백만원 → (2027 정부안) 39,978백만원 (전년동)

- 101개소 × 395백만원

② 운영비 증액(울산동부) : 714백만원 (신설)

- 임차료 460백만원 + 운영비 254백만원

③ 운영비 현실화(매식비) : 64백만원 (증액)

- '25년 결산 수준

④ 고용센터 시설안전 개선 : 2,480백만원 (신설)

- 25개소 × 110백만원 × 90%

⑤ 고용센터 청사 이전 : (2026년) 1,132백만원 → (2027 정부안) 1,132백만원 (전년동)

- 청사수급 관리계획에 따른 청사 이전 1개소 × 1,132백만원

⑥ 고용센터 참여·유관기관 협업활성화 : (2026년) 374백만원 → (2027 정부안) 374백만원 (전년동)

- 102개소 × 3.7백만원

2 공무직근로자(미화원, 보안실무관, 시설관리(요)원) 인건비: (2026년) 5,137백만원 → (2027 정부안) 6,172백만원(+1,035백만원)

- 상용임금 5,021백만원, 복리후생비 84백만원, 고용부담금 1,067백만원

3 지역단위 통합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 (2026) 12,719백만원 → (2027 예산안) 9,794백만원 (△2,925백만원)

- (기존운영) 10개소 × 429백만원 + (신규) 2개소 × 2,752백만원
- 고용센터 신설전환: (26) 3,783백만원 → ('27)순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고용센터 173개소(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1, 고용복지센터 30, 출장센터 42) 운영
2024년	고용센터 173개소(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1, 고용복지센터 30, 출장센터 42) 운영
2025년	고용센터 173개소(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1, 고용복지센터 30, 출장센터 42) 운영
2026년	고용센터 174개소(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 고용복지센터 30, 출장센터 42) 운영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적인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부(예산 재배정)	○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	
174개 고용센터 (예산집행)	○ 본부 시달 재배정 계획, 각종 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4년	○ 결과 : 양호
	2025년	○ 결과 : 우수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상임위, 예결위	2024년	○ 지적 :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철저히 수립, 관리하여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용을 통한 연도 내 신규 연구용역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 조치 : 예산의 전용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24.12월)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1,425	71,425	-	-	71,425	60,191	84.3	8,406	2,828
2024년	53,166	53,166	8,406	-	61,572	59,294	111.5	989	1,289
2025년	55,092	55,092	989	-	56,081	55,427	100.6	-	654
2026년	59,340	59,340	-	-	59,340	25,718	43.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60,191	고용센터 개선 공사를 위한 공사비 부족액, 고용센터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납입금 납부를 위한 고용부담금 부족액, 고용센터 출장비 증가로 인한 여비 부족액 집행을 위해 자체 전용
2024년	전용	59,294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단가 상승(일비·식비 2만원→2.5만원 등)으로 여비 예산이 부족하여 자체전용
2025년	전용	55,427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고용부담금) 충족을 위해 상용임금에서 자체전용
2026년	-	-	-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32-3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32	302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지원 인프라운영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일자리대책지원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직접 수행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직접 수행, 출연
일자리사업평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직접 수행, 출연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3,357	3,310	3,310	3,910	3,483	173	5.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360	3,360	3,357	-	3	3,310	3,310	2,660	3,483
·일자리대책지원	314	314	311	-	3	314	314	158	514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612	612	612	-	-	612	612	477	585
·일자리사업평가	2,434	2,434	2,434	-	-	2,384	2,384	2,026	2,38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360	3,360	3,357	-	3	3,310	3,310	2,660	3,483
·일반수용비(210-01)	269	269	268	-	1	269	269	166	269
·공공요금(210-02)	10	10	8	-	2	10	10	8	10
·특근매식비(210-05)	5	5	5	-	-	5	5	5	5
·일반용역비(210-14)	271	271	271	-	-	271	271	136	271
·국내여비(220-01)	23	23	23	-	-	23	23	22	23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9	9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	-	-	-	-
·정책연구비(260-02)	-	-	-	-	-	50	50	-	250
·사업출연금(350-02)	2,723	2,723	2,723	-	-	2,673	2,673	2,315	2,64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일자리대책지원

사업목적 및 내용	○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정책 및 업무추진의 원활한 지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협의 조정 및 효율화 추진, 관련 연구 실시 ○ 일자리사업 전면 개편에 따른 연구개발, 고용서비스·직업능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고용실천 전략 수립 지원 및 효율적 정책 추진, 지원 강화 ○ 고용 관련 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범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강화

(1-2)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사업목적 및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지역고용대책을 공식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그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제공 ○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노동시장 정보를 정확히 진단·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진단 시스템(지역일자리맵) 운영

(1-3) 일자리사업평가

사업목적 및 내용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자리사업의 국민체감도 제고 ○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유사·중복사업 정비, 저성과사업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한 평가 환류 강화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 추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조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의2, 제34조, 고용보험법 제3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5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의 요건·내용·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52(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
추진경위	○ **(일자리대책지원)** '01년부터 노동시장 급변에 따라 주요 고용정책 현안에 대한 공유 및 공감대 형성과 유관기관과의 고용·인적자원 정책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 추진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10년도 노동부 업무보고('09.12) 및 제1·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10.1,3월)에서 지역일자리공시제 도입 계획 대통령 보고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內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 '22년 일자리환경·양·질·정책 등 4개 구분, 총 40개 세부 지표로 구성하여 구축 시작 - '23년 지표 확대(40개→70개) 및 지역별·주제별 지표 비교기능 강화하여 구축 완료 - '24년 5월부터 시범운영 개시 - '25년 1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일자리사업평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대해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개선 등에 반영 - '0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고용대책 재정집행상황 현장점검 사업 실시 - '18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전체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마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일자리대책지원) '01년~계속
(일자리대책지원 內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관련 거버넌스 구축) '25년~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11년~계속
(일자리사업평가) '08년~계속('23년도에 고용서비스모니터링에서 이관)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4,297	4,053	3,360	3,310	3,483

* '23년 고보기금 고용서비스모니터링(1031-351) 사업에서 이관(+36억원)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직접수행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일자리사업평가) 출연사업

○ 사업시행주체 :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일자리사업평가)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실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內 지역일자리진단시스템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262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일자리사업평가			2,384	100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310	3,483	173
일자리대책지원	314	514	200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612	585	△27
일자리사업평가	2,384	2,384	-

○ 일자리대책지원 **(2026년) 314 → (2027년 정부안) 514백만원, 200백만원(+63.7%)**

- (설명) AI 전환기 직종별 현장 참여형 정책연구* 연례적 수행에 따른 '26년 대비 200백만원(+63.7%) 증액

* AI 전환이 노동시장. 직무·산업 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 중심으로 정밀하게 진단, 정책 요구서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2026년) 612 → (2027년 정부안) 585백만원(△4.4%)**

- (설명)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평가 및 지원(271백만원),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운영경비(52백만원), 지역일자리진단시스템(262백만원)

○ 일자리사업평가 **(2026년) 2,384 → (2027년 정부안) 2,384백만원(전년동)**

- (설명) 일자리사업평가(1,514백만원), 일자리사업평가 분석시스템 운영(87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15~64세 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0	69.0	69.5	70.0	70.3
실적	69.2	69.5	69.8	-	-
달성도	101.8	100.7	100.4	-	-

- **측정산식 : (만 15~64세 취업자수/만 15~64세 인구)*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고용정책심의회(6회) 개최(1.27., 5.3., 6.22., 7.13., 8.31., 12.18.~21.) ○ 전국 243개 지방정부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4.18.)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8.2.) * '22년도 실적 우수 58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장관표창등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도모 ○ '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7.7) ○ 지역일자리맵 구축 완료('23.12)
2024	○ 고용정책심의회(5회) 개최(1.22., 4.22., 6.26., 9.26.~9.30., 11.7.~11.12.) ○ 전국 243개 지방정부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4.19.)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8.8.) * '23년도 실적 우수 65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장관표창등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도모 ○ '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6.26.)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 고용정책심의회(3회) 개최(2.27., 4.30.~5.2., 8.19.) ○ 전국 243개 지방정부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4.18.)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9.30.) * '23년도 실적 우수 64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장관표창등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도모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8.19)
2026	○ 고용정책심의회(6회) 개최(1.5.~1.7., 2.12., 4.13.~4.15, 5.11~5.13, 7.3~7.7, 8.19.) ○ 전국 243개 지방정부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4.15.) ○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개최(8.19.) * '23년도 실적 우수 73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장관표창등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도모 ○ '2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8.20)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일자리대책지원>

-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간, 중앙-지방정부 간, 공공-민간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
-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위기 신속 대응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 조치
- 고용행정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 확대를 통해 범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강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 지역일자리 책임성 제고
-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일자리 자율성 제고
- 지역 간 우수한 고용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역고용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고용 창출을 제고
- 지역일자리진단시스템(지역일자리맵)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노동시장 정보를 정확히 진단·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고용 창출 제고

<일자리사업 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체계적 사업성과 관리를 통해 예산연계, 사업개편, 일자리사업 범위조정 등 환류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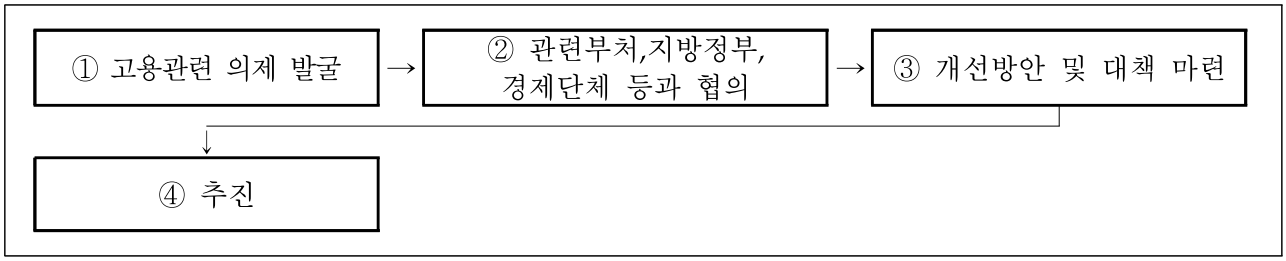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분석 시스템을 통해 성과평가 데이터 산출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등 분석체계 고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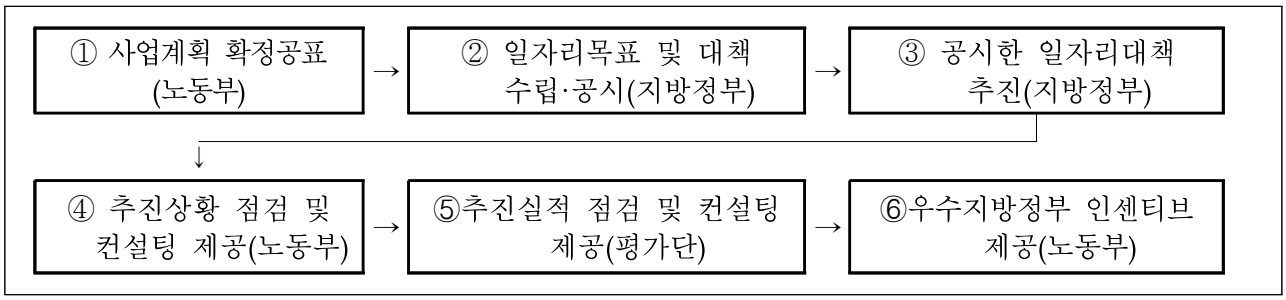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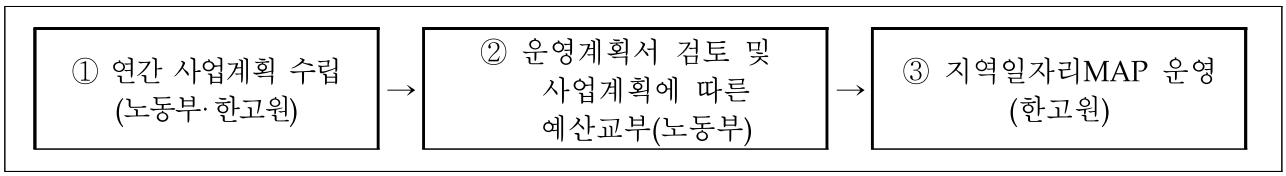
○ 일자리대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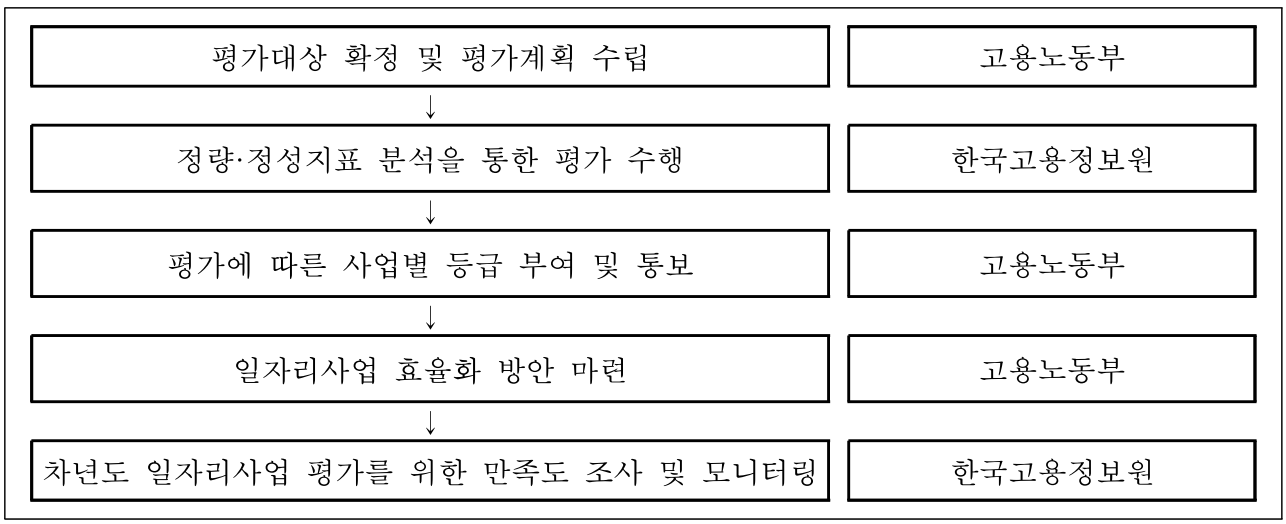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內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 일자리사업평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방정부별 목표 설정 방식과 지표 산정 기준의 객관성·일관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조치결과: ① '25년 '지역일자리 성과 공시제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26년 평가지표 개편하여 환류 실효성 확보 체계 구축, ②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성과 공시제'로 개편 추진 국정과제 96-2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297	4,297	-	-	4,297	4,203	97.8	-	94
2024년	4,053	4,053	-	-	4,053	4,052	99.9	-	1
2025년	3,360	3,360	-	-	3,360	3,357	99.9	-	3
2026년	3,310	3,310	-	-	3,310	2,660	80.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94	집행 잔액
2024년	불용	1	집행 잔액
2025년	불용	3	집행 잔액

5. 기타 추가자료

(참고1) 고용정책심의회 개요

(참고2) 지역일자리 공시제 개요

(참고3)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 대상 현황

(참고4)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지역일자리맵) 개요

(참고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개요

(참고6) 일자리사업평가분석시스템(EPAS) 개요

(참고7)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관련 거버넌스 구축 개요

(참고8) 일반출연금 타당성·적정성 검토(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참고9) 일반출연금 타당성·적정성 검토(일자리사업 평가)

참고 1 고용정책심의회 개요

<table>
<tr><td colspan="2">① 명칭</td><td colspan="3">고용정책심의회</td></tr>
<tr><td colspan="2" rowspan="2">② 소속 및 성격</td><td>소 속</td><td>주 관</td><td>성 격</td></tr>
<tr><td>고용노동부</td><td>고용노동부</td><td>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td></tr>
<tr><td colspan="2">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td><td colspan="3">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1994.7.1.), 정부입법(√) 의원입법( )</td></tr>
<tr><td colspan="2">④ 위원회 구성일</td><td colspan="3">1994. 7. 1.</td></tr>
<tr><td colspan="2">⑤ 존속기한 및 근거</td><td colspan="3">미설정(위원회 존속 필요)</td></tr>
<tr><td colspan="2">⑥ 설치목적</td><td colspan="3">· 고용에 관한 국가의 주요시책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의 심의 조정</td></tr>
<tr><td colspan="2">⑦ 기 능</td><td colspan="3">· 국가의 고용관련 시책 중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과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
·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조정 기타 관련 주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td></tr>
<tr><td rowspan="5">⑧ 위 원
(총 29명)</td><td>위원장
(임명권자)</td><td colspan="3">고용노동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td></tr>
<tr><td>공무원
(총 10명)</td><td colspan="3">· 재정경제부 1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보건복지부 1차관, 성평등가족부 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 위원장 포함</td></tr>
<tr><td rowspan="2">민간위원
(총 19명)</td><td colspan="3">(직종) 노동계 3명, 경영계 2명, 공익 등 13명</td></tr>
<tr><td colspan="3">(별도구분) 여성 5명(26.3%), 비수도권 7명(36.8%), 청년 1명(5.2%)</td></tr>
<tr><td>직무윤리
규정</td><td colspan="3">(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고용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6조</td></tr>
<tr><td colspan="2">⑨ 본회의 개최실적</td><td colspan="3">출석 2회, 서면 4회</td></tr>
<tr><td colspan="2">⑩ 분과회의 구성</td><td colspan="3">· 지역고용전문위원회
·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td></tr>
<tr><td colspan="2">⑪ 예 산</td><td colspan="3">'26년: 총 17,600천원(회의예산 17,600천원)</td></tr>
<tr><td colspan="2">⑫ 위원회 운영인력</td><td colspan="3">2명(직제 2명)</td></tr>
<tr><td colspan="2">⑬ 소관부서·담당자</td><td colspan="3">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6급 윤승필(044-202-7211)</td></tr>
</table>

참고 2 지역일자리 공시제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지방정부를 선정·시상, 인센티브 등 제공

* 임기 중 추진할 종합계획(4년마다 수립) 및 연차별 세부계획(매년 수립) 공시

□ 연혁

○ '10년부터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도입·시행

○ **'12.7월부터 현재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

* 공시제 참여 지방정부: 211개('10년) → 227개('11년) → 243개('12.7~)

□ 내용

○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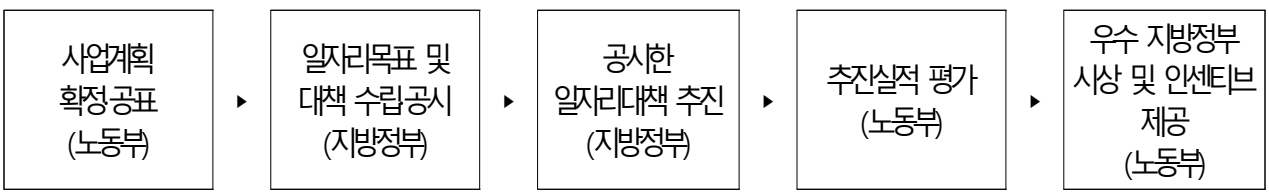
* (일자리 목표)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률, 취업자수 등 공통목표와 지방정부별 특성에 맞춰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목표로 구성

** (일자리 대책)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공공·민간)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 **(공시방법)**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평가·시상) 지방정부**별 공시제 및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을 통해 시상

□ 사업추진체계



참고 3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 대상 현황

□ 추진배경

○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를 알리고 지역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12년~)

□ 내용

○ 지방정부별 추진한 전년도 공시제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

○ '17년부터 우수사업(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상식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와 일자리대상(공시제 시상식)을 통합

□ 시상내역

○ 공시제 및 우수사업 2개 부문에 대하여 총 73점 시상

- 공시제 부문(58점): 대상 3 (종합대상 1, 부문별대상2), 최우수상 11, 우수상 33, 특별상 11
- 우수사업 부문(15점): 최우수상 5, 우수상 10

구 분		계	공시제	우수사업	비고
계		**73점**	**58점**	**15점**	
대상	종합	1점	1점 (광역·기초 통합)	-	대통령상
	부문별	2점	2점 (광역 1, 기초 1)	-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16점	11점	5점 (광역·기초 통합)	장관상
우 수 상		43점	33점	10점 (광역·기초 통합)	
특 별 상		11점	11점	-	

* ('12) 36점→ ('13) 38점→ ('14) 56점(대통령·총리상 추가) → ('15) 58점→ ('17) 73점(일자리경진대회 시상 통합)

□ 인센티브

○ 수상 지방정부(공시제 부문)에는 지역일자리사업비 추가 지원, 담당 공무원 표창, 수상한 우수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참고 4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개요

□ 추진 배경

○ **지역이 스스로 산업현황** 및 **노동시장 실태** 등을 **한눈에 파악, 고용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도록 별도 **지역단위 정보시스템** 필요

□ 주요 제공 정보

❖ 지역 **산업·고용·인구** 등 **노동시장 정보**를 과거 추이, 전국평균, 지역 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

○ **(지역일자리 정보)** 지역단위 **산업특성, 일자리** 관련 통계, **인구구성** 등의 **시계열·횡단면 분석자료** 등 지역에서 활용도 높은 **정보 제공**

- 일자리환경 · 量 · 質 · 미스매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지표 제공

▲ **(환경)** 인구통계, 입지계수(산업의 지역별 고용밀집도), 사업장수, 종사자수 등
▲ **(양)** 피보험자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구인배수 등
▲ **(질)** 임금수준, 초과근로시간, 총근로시간 등

○ **(일자리사업 실적)** 직업훈련, 장려금 등 중앙정부 사업의 지역별 성과와 문제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지원실적 제공**

【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예시 】



참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목적**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하여 일자리사업의 국민 체감도 제고

□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추진경과**

○ '17년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현장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하여 '18년부터 성과평가·평가 고도화 지속 추진

-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후 사업조정 및 예산편성과 연계
-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개편 등 효율화 방안도 함께 추진

□ **평가대상:** 중앙정부 전체 일자리사업

□ **평가방식**

○ **(정량평가)**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집행률(실집행률) 등을 종합하여 산출

- 성과지표: 고용보험·HRD-net·워크넷 등 행정 DB와 참여자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유형별 성과지표(취·창업률, 고용유지율 등) 산출

○ **(정성평가)**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현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형별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성과등급 부여**

○ 유형별 평가위원회에서 정량지표, 정성평가, 현장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단계로 부여(①우수, ②양호, ③개선필요, ④감액)

참고 6 일자리사업평가분석시스템(EPAS)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참여자 정보수집 및 데이터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평가 자료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분석 기능 제공**으로 일자리사업 평가 운영 지원

○ **(추진경과)** '21.10월 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 **(관리대상)** 중앙정부 유형별(7개)* 일자리사업 및 지방정부 일자리사업 평가자료

*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⑦지원고용 및 재활('22년 신설사업)

□ 사업내용

① 시스템 운영관리

○ (자료수집) 내부(고용행정 DB)·외부(부처 제출자료) 평가자료 수집·추출·정제·적재

* (내부자료) 한고원 내 고용행정 DB(일모아·고용보험·HRD·워크넷 등) 자료

** (외부자료) EPAS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별 소관 부처가 제출한 평가대상 참여자 자료

○ (성과평가 자료구축) 사업유형별 평가목적, 성과지표, 산출기준을 분석·정의하고, 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계한 성과평가 지표 자료구축

* 법·제도,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 프로세스 및 구조 변경 사항 시스템 적용

○ (홈페이지 운영)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담당자, 평가담당자 등을 위한 평가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분석기능 및 시각화 서비스 제공

*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 특성(성별, 연령 등) 및 성과지표(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등 다양한 평가분석 보고서(대시보드 등) 제공

② 하드웨어(HW/SW) 장비 운영관리

○ 제도·규정·지침 개정 시 신속한 전산 지원체계 마련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정적 운영환경 구축

참고 7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관련 거버넌스 구축

□ 추진배경

○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관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행안부(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교육부(교육데이터 전략위원회) 등 부처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 운영

○ 저출생·고령화, 인력난, 니트족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해결을 위한 **고용행정데이터의 개방·활용 수요 급증**

* '23년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9개 과제 중 4개에서 고용분야 데이터 요청

□ 추진경과

○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정('23.5.31),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발족('23.6.29)

○ 현재까지 **공공용 13종, 인가용 39종**(기본형 34종, 표본 5종) 개방

【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현황】

1단계('23.7월)	**2단계**('23.12월)	**3단계**('24.11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공공용 13종, 인가용 31종)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현황,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역별/업종별 현황(인가용3종) 추가 개방('25.7월)	**고용보험 사업장별 피보험자현황** 표본데이터셋 (1종)	**고용보험 취득·상실이력 +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확장이력 표본데이터셋 (범용, 심층연구용 각 1종)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연구기관 중심으로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평가** 등에 활용

□ 사업내용

<1>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2조)

○ **(역할)** 고용행정데이터에 관한 ❶주요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❷데이터 제공 및 ❸활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구성)** 고용정책실장(위원장),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고용지원정책관, 데이터 정책·활용·보호 전문가 등 10~15명

○ **(운영)**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2> 고용행정데이터 실무위원회(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6조)

○ **(역할)** ❶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등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 ❷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❸그밖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 **(구성)**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위원장), 고용서비스기반과장, 정보화기획팀장, 데이터 활용·보호 전문가 등 10명 내외

○ **(운영)** 수시 개최

참고 8 일반출연금 타당성, 적정성 검토[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부처	고용노동부	연번	
기관명	한국고용정보원	사업명 (세부사업-내역사업)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사업 개요	지역 스스로의 산업·노동시장 실태 파악 및 고용상황 진단을 통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정책역량 제고를 지원		

예산 규모 (백만원)	'25		'26	'27 요구
	본예산	추경	본예산	
	289	-	289	262

타당성 검토 (1단계)

항목	해당 여부	근거(예시)
법적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출연 근거가 법에 명시
타당성	☑	○ 한국고용정보원은 자체 수입이 없는 기관으로 지원이 타당
전문성	☑	○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망 구축·운영, 관련 연구 전문성 보유 기관임
안정성	☑	○ 지역 스스로의 정확한 고용상황 진단을 통한 지역 일자리 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 필요
대체 불가능성	☑	○ 유사 중복사업 없음
종합 검토의견	①출연유지	

적정성 검토 (2단계)

(백만원)

	289		
'25 예산	<인건비> 15	<경상경비> 6	<사업비> 268
⇩			
'26 예산	289		
	<인건비> 15	<경상경비> 6	<사업비> 268
⇩			
'27 (안)	262		
	<경상경비> 6	<사업비> 256	

<요구 내용>

구 분	'26예산(안)
	정부안
지역일자리진단시스템 운영	262
- 시스템 운영비	256 (용역비)
- 경상비	6 (여비, 사업추진비 등)

기타 의견

* 신규사업은 일몰규정 적용여부 판단

참고 9 일반출연금 타당성, 적정성 검토[일자리사업 평가]

부처	고용노동부	연번	
기관명	한국고용정보원	사업명 (세부사업-내역사업)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일자리사업평가)
사업 개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자리사업의 국민체감도 제고 및 재정효율화 도모		

예산 규모 (백만원)	'25		'26	'27(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2,434	-	2,384	2,384

타당성 검토 (1단계)

항목	해당 여부	근거
법적근거	☑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타당성	☑	ㅇ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OECD 기준 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
전문성	☑	ㅇ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직업훈련 전산망, 일모아시스템 등 국가고용정보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한 참여자 정보 관리 및 정책효과성 분석이 가능 ㅇ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평가 데이터 산출의 정확성, 효율성 제고 등 분석체계 고도화
안정성	☑	ㅇ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예산 연계, 사업개편, 일자리사업 범위조정 등 환류기능 정상작동을 위해 지속적 재원조달 필요
대체 불가능성	☑	ㅇ 매년 부처간 일자리사업 사전협의를 통해 일자리사업 편입 여부를 검토 ㅇ 보조금 또는 부처 세부사업으로 수행 시 일자리사업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에 제약 발생
종합 검토의견	①출연유지	

적적성 검토 (2단계)

(백만원)

	2,434		
'25 예산	<인건비> 60	<경상경비> 184	<사업비> 2,190

⇩

	2,384		
'26 예산	<인건비> 60	<경상경비> 184	<사업비> 2,140

⇩

	2,384		
'27 (안)	<인건비> 60	<경상경비> 184	<사업비> 2,140

<요구 내용>

구 분	'27예산(안)
	정부안
일자리사업평가	2,384
- 평가 및 모니터링	1,564 (성과·심층평가 등 1,150백만원, 컨설팅 170백만원, 운영비 244백만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870 (장비 유지보수료 291백만원, 유지관리비 579백만원)

기타 의견	해당없음

사 업 명
(4)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32	303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지원 인프라운영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Y	N	75.0~83.3%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대학
2030자문단운영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직접
운영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직접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108,525	106,820	107,410	90,797	90,797	△16,023	△15.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09,730	109,730	108,525	-	1,205	107,410	107,410	105,508	90,797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9,384	109,384	108,266	-	1,118	106,524	106,524	105,015	90,530
· 2030자문단운영	67	67	56	-	56	67	67	47	67
· 운영비	279	279	203	-	203	229	229	31	200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	-	-	-	-	590	590	415	-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09,730	109,730	108,525	-	1,205	107,410	107,410	105,508	90,797
· 일반수용비(210-01)	107	207	196	-	11	207	207	150	103
· 임차료(210-07)	30	30	20	-	10	30	30	21	30
· 일반용역비(210-14)	553	453	389	-	64	453	453	137	528
· 국내여비(220-01)	20	20	20	-	-	20	20	10	20
· 사업추진비(240-01)	26	26	26	-	-	26	26	16	26
· 연구용역비(260-01)	510	510	508	-	2	460	460	280	-
·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60
· 민간경상보조(320-01)	102,760	102,760	101,710	-	1,050	102,490	102,490	101,607	86,46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580	580	512	-	68	580	580	543	626
· 사업출연금(350-02)	5,144	5,144	5,144	-	-	3,144	3,144	2,744	2,94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목적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초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재학생,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졸업생, 지역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사업내용	청년 특화된 원스톱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취업상담·프로그램, 일자리 발굴·매칭 및 청년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1-2) 2030자문단 운영

사업목적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30 자문단' 운영
사업내용	'2030 자문단'을 통한 청년 의견 수렴, 청년정책 제언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15.10.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대학일자리센터 도입 ○ '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후속 추진 ○ '23년 세부사업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으로 이관 ○ '23, '24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 '25년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지원 ○ '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40,667	83,147	109,384	106,820	90,79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학

○ 사업 수혜자 :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보조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참여대학	87,086 백만원	75.0%~ 83.3%	사업 시행지침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7,410	90,797	△16,02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6,524	90,530	△15,994
2030자문단 운영	67	67	전년동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590	-	순감
운영비	229	200	△29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6년) 106,524 → (2027년 정부안) 90,530백만원, △15.0%**

- (설명) 모든 운영대학이 규모에 따라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청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산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83,790백만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6,740백만원)

○ 2030자문단 운영 **(2026년) 67 → (2027년 정부안) 67백만원, 전년동**

- (설명) 정책모니터링, 월간 회의 개최, 세미나·포럼 운영, 여비 등
- (산출) 67백만원

○ 운영비 **(2026년) 229 → (2027년 정부안) 200백만원, △12.7%**

- (설명) 세부사업 운영비(정책연구, 임차료, 여비 등)
- (산출) 2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역량향상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0 (점)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 **측정산식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청년에 대한 5점 척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취업역량향상도에 관하여 '27년 처음 조사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외부 전문기관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99개 대학 지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2개 대학 지원 ○2030 자문단 운영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1개 대학 지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53개 대학 지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0개 대학 지원 ○2030 자문단 운영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포함): 121개 대학 지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64개 대학 지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30개 대학 지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단독: 13개 대학 지원 ○2030 자문단 운영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포함): 122개 대학 지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64개 대학 지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30개 대학 지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단독: 12개 대학 지원 ○2030 자문단 운영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 47명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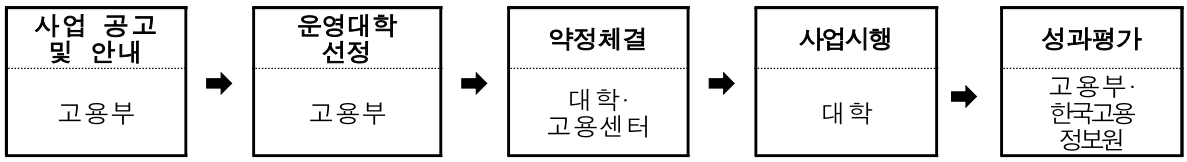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운영대학이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지역청년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 적극 지원

○ **(2030자문단 운영)** 청년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고 분과별 추진과제를 발굴을 통해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부에서 사업 공고 실시 및 운영대학 선정, 대학과 관할 고용센터 간 약정 체결, 운영대학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성과평가 실시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공공 고용 인프라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간접적 운영비 일부를 소폭 감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결과 : 감액

보조사업 연장평가	2026년	○ 의견 : 통합재정성과평가 결과와 동일 ○ 결과 : 감액(2026년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5년	○ 의견 : 양호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부대의견 ('23.12)	2023년	○ 지적 :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졸 미취학·미취업 청년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조치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예결위 결산 지적 ('25.9)	2025년	○ 지적 : 내역사업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제한되며, 이를 지원할 전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관리공백이 발생 ○ 조치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산 구축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0,667	40,667	-		40,667	40,563	99.7	-	104
2024년	83,147	83,147	-	-	83,147	82,935	99.7	-	212
2025년	109,730	109,730	-	-	109,730	108,525	98.9	-	*1,205*
2026년	106,820	107,410	-	-	107,410	105,508	98.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04	집행잔액
2024년	불용	212	집행잔액
2025년	불용	1,205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 고용노동통계조사(1033-47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노동시장조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33	47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노동통계조사	고용노동통계조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해당없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노동통계조사	26,317	30,384	30,384	36,244	36,244	5,860	19.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고용노동통계조사	26,699	26,699	26,317	10	372	30,384	30,394	15,536	36,24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6,699	26,699	26,317	10	372	30,384	30,394	15,536	36,244
· 상용임금 (110-03)	7,386	7,366	7,365	0	0	8,038	8,038	4,357	9,465
· 일용임금 (110-04)	9,400	9,000	8,996	0	4	10,974	10,974	4,691	14,690
· 일반수용비 (210-01)	3,314	3,201	3,169	0	32	3,998	3,998	3,507	4,02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964	1,077	1,071	0	6	1,175	1,175	496	1,271
· 임차료 (210-07)	1,029	1,029	1,029	0	0	1,029	1,029	592	1,029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27	427	386	0	41	427	427	219	427
· 복리후생비 (210-12)	121	121	121	0	0	121	121	104	145
· 관리용역비 (210-15)	444	444	438	0	6	438	438	256	438
· 국내여비 (220-01)	613	613	430	0	183	623	623	202	560
· 국외여비 (220-02)	6	6	5	0	1	6	6	0	6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0	10	10	0	0	10	10	6	10
· 특정업무경비 (250-03)	117	117	112	0	5	117	117	71	117
· 일반연구비 (260-01)	74	74	74	0	0	124	124	52	57
· 고용부담금 (320-09)	2,499	2,919	2,919	0	0	2,849	2,849	813	3,709
· 공사비 (420-03)	134	134	41	0	93	134	134	46	134
· 자산취득비 (430-01)	161	161	150	10	0	321	331	126	16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시장 구조 및 고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행·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통계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통계조사 작성 승인 - ILO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제160호) '88. 4. 24. 효력 발생 -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07. 12. 21.): 정부는 비정규직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경위	○ '68년부터 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제공 ○ <사업체노동력조사: '68년~계속> - 매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사업체의 근로자수·노동이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68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최초 조사 · '99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확대 조사 · '08년, 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확대 · '09년, 노동수요측을 대상으로 일자리변동 상황을 매월 조사하는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신설 · '11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통합 · '19년, 17개 시도 고용통계 생산(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대상 '18년 이후부터 소급 공표) · '21년, 17개 시도별 제조업 중분류 고용통계 생산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11년~계속> - 자치단체별 지역의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11년,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신설(연 2회 조사) · '23년, 전국 산업 소분류 고용통계 생산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76년~계속> - 사업체의 현재인원과 부족인원 등 노동력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인력양성정책 및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기초자료로 제공 · '76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최초 조사 · '04년, 조사대상을 임시·일용 및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 · '07년, 6개 권역 지역통계 생산 · '08년, 16개 시도 지역통계 생산 및 연간 조사에서 반기별 조사로 조사횟수 확대 · '11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로 명칭 변경 · '16년, 17개 시도 지역통계 생산(세종특별자치시 분리 공표) · '22년, 공표대상을 상용 5인 이상에서 종사자 1인 이상으로

	확대 공표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83년~계속> -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파악하여 복지노동행정 구현을 위한 노동정책 입안 자료로 사용하고 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83년,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체 대상 최초 조사 · ’99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대상 확대 조사 · ’05년, 회사법인으로 조사대상 변경 ○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02년~계속>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를 인적 속성과 사업체 속성별로 실태를 조사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개선·개발에 기초자료 제공 · ’02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03년,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실태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정규직까지 조사를 확대하면서 명칭을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로 변경 · ’06년, 조사항목, 조사내용 등이 유사한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근로실태 조사」를 통합하여 조사 실시 · ’08년, 조사항목, 조사내용 등이 유사한 「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통합하여 조사 실시 · ’26년 조사명칭 변경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10년~계속> -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조치사항(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기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10년,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신설(매월조사) · ’14. 1월, 조사주기 및 조사항목 변경(월→분기) · ’17. 8월, 조사주기 변경(분기→반기) · ’25. 1월, 조사주기 변경(반기→연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68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5,599	26,164	26,699	30,384	36,24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정부, 기업, 학교, 연구기관,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고용노동통계조사	30,384	36,244	5,860

○ **고용노동통계조사 ('26) 30,384백만원 → ('27) 36,244백만원, +19.3%**

① 고용노동통계 1종(매월): ('26) 11,704백만원 → ('27) 13,649백만원, +16.6%

- (설명) 공무직통계조사관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율, 식비인상 보전 등 반영 '26년 대비 16.6% 증액
- (산출)

<㉠인건비(상용)> ('26) 8,038백만원 → ('27) 9,465백만원, +17.8%
<㉡고용부담금> ('26) 1,591백만원 → ('27) 2,012백만원, +26.4%
<㉢운영비> ('26) 1,828백만원 → ('27) 1,947백만원, +6.6%
<㉣국내여비> ('26) 227백만원 → ('27) 206백만원, △9.5%
<㉤일반연구비> ('26) 20백만원 → ('26) 20백만원, (전년동)

② 고용노동통계 5종 조사(반기·연간): ('26) 15,981백만원 → ('27) 20,056백만원, +25.5%

- (설명) 기간제통계조사관 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관련 적정임금(최저임금 118%) 및 공정수당 반영 등 '26년 대비 25.5% 증액
- (산출)

<㉠인건비(일용)> ('26) 10,974백만원 → ('27) 14,690백만원, +33.9%
<㉡고용부담금> ('26) 1,258백만원 → ('27) 1,698백만원, +35.0%
<㉢운영비> ('26) 3,244백만원 → ('27) 3,271백만원, +0.8%
<㉣국내외여비> ('26) 402백만원 → ('27) 360백만원, △10.4%
<㉤일반연구비> ('26) 104백만원 → ('27) 37백만원, △64.4%

③ 고용노동통계 자료처리 위탁사업: ('26) 438백만원 → ('27) 438백만원, 전년동

④ 공통경비: ('26) 2,261백만원 → ('27) 2,100백만원, △7.1%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노동통계조사 적기 생산 및 제공(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100.0	100.0	-	-	100.0
실적	100.0	100.0	-	-	-
달성도	100.0	100.0	-	-	-

- **측정산식** : {공표건수(20건)/ 6종조사 계획건수(20건)}×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고용노동통계조사 생산 및 제공 적시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공표자료(고용노동통계 누리집)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고용노동통계의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공표수준 세분화 및 생산체계 고도화 추진 - **(산업소분류별 고용통계 생산)** 산업전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탐지를 위해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로부터 고용통계 생산 * (기존)시군구(229개)×산업초대분류(5개) → ('23.11월)기공표 + **전국산업소분류별(220개)** - **(직종소분류별 임금 공표 확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하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제공** * (기존)124개(중분류 51개, 소분류 73개)→ ('23.8월)**183개(중분류 51개, 소분류 132개)** - **(생산체계 고도화)** 정확하고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기업체모집단 구축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 ①기업체모집단(국가데이터처) 제공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체 모집단 구축**, ②**직업분류 정확성·일관성 제고를 위한 직업검색기 등 전산 기능 강화**, ③착오입력 감소 및 입력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사표 업로드 전산 기능 추가**
2024년	○ 통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표범위 확대 추진 -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공표 확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인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의 공표범위를 상용 5인이상에서 **상용 1인이상으로 확대 공표**
2025년	○ 통계 자료 제공 강화 -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소급 공표)** 통계이용자에게 자료 제공을 강화하고자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의 공표범위 확대(상용 5인이상에서 상용 1인이상)를 과거 자료('11년~'22년)로 소급 적용
2026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국정 93-5) 기반마련을 위한 임금분표 정보 제공을 위해 '26년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확대 실시 중 * (조사량) 33천개(약100만명), 투입조사원 249명 → 66천개(약200만명), 투입조사원 500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상황을 파악하여 주요 고용노동 정책 결정기구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용노동 정책 수립 가능

○ 대상·지역·산업별 세분화된 노동시장 통계 생산으로 맞춤형 고용노동 정책 수립 지원 및 국정과제 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내용	세 부 업 무
1.조사기획 (본부 노동시장조사과)	조사표 개선	• 부서 내·외부 의견 수렴 • 국가데이터처의 조사표 변경 승인 요청
	표본설계 (모집단 분석 및 표본추출)	• 모집단 분석(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보험DB 분석) • 양적, 질적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근로자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3년 단위) • 공표수준 감안한 표본 크기 산출 • 층별 분산 등을 고려한 표본배정
	조사대상 여부 판단	• 준비조사 실시 및 조사대상 여부 판단 <지방관서↔본부(공동수행)>
	조사요령서 보완 및 업데이트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의 및 범위 • 주요 용어 해설 • 조사 관련 유의사항 • 조사표 작성 방법 • 조사표 검토 방법, 조사표 입력 방법 및 입력시스템 사용법
	조사요령 교육	• 지방관서 집합교육용 교육자료 작성 * (대상) 지방관서 공무원 및 통계조사관
	입력시스템 보완 및 개선	• 오류검토 조건 추가 및 입력시스템 탑재
2.조사실시 (18개거점 관서)	조사관 채용	• 채용 공고, 서류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및 조사관 채용 * 조사관의 잦은 이직에 따른 추가채용 수시 발생
	조사방법 교육	• 조사 기본 교육 및 조사내용, 보안교육 등 실시 * 추가 채용 조사관에 대하여 일대일교육 수시 발생
	조사실시	• 실시안내 및 공문 발송 • 조사표 회수, 불응사업체 특별관리 및 방문 조사 실시
	조사결과	• 조사표 오류 검토 (조사표 검토 아이체크, 전산프로

구분	주요내용	세 부 업 무
	오류검토	그램 활용한 검토) • 사업체조사표 항목 및 개인조사표 항목 로직 검토
	조사결과 입력	• 입력시스템 상 전산오류 검토 및 확인

3.자료정제 (본부 노동시장조사과) 5.7. 반복실시 * 오류검토 실시	본부 오류 및 검토리스트 확인	• 본부에서 검토한 오류 점검사항 확인, 검토 리스트에 대한 오류 수정 및 사유 기재
	입력자료 검토	• 지방청 입력 자료에 대한 검토 후 검토 리스트 송부
	오류추출	• 오류·검토 조건 등에 따라 오류·검토 리스트 추출
	오류내용 재검토 요청	• 지방청에 오류 리스트 송부 후 수정 여부 재확인 (각 차수별 각각 확인)

⇩⇧

4. 재조사 (18개 거점관서) 6.8. 반복실시	오류내용 재조사	• 오류내용 재조사 사항 재검토
	조사결과 입력	• 수정입력 시 착오사항 없는지 재확인

9. 추정 및 공표 (본부 노동시장조사과)	결과 추정 및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 사업체 가중치 및 근로자 가중치 산정 • 각 분류별 각종 통계치(총량, 평균 등)의 추정 • 데이터 클리닝(이상치 식별 등) • 최종 가중치 산정 후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보도자료 작성	• 주요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 조사개요 • 조사결과 요약 • 통계표 수록
	정책부서 전달	• 주요 정책부서에 활용토록 주요 지표 전달
	OECD 등 국제 통계 제공	• 평균임금, 중위임금, 최저임금, 분위별 임금, 성별 임금, 연령별 임금, 시간당 임금 등
	홈페이지 게시	• 보도자료, 보고서, 결과표 DB로 홈페이지 게시
	원시자료 제공	• 원시자료 요청 시 무상 제공
	각종 분석자료 제공 및 외부대응	• 공표 결과 외에 각 과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 분석 요청 시 제공 • 법원사실조회,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 등 외부대응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재정 성과평가	2025 회계연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 국정과제(93-5) 이행과 ILO 협약준수를 위한 핵심사업 - 3년간 집행률이 양호(97.2~98.6%)하나, 기간제조사관의 이직에 따른 인건비 여비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기간제인력 처우개선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예산 비목 간 예산조정이 발생하였는 바,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예산소요 예측의 정밀성 제고 필요 - 현재는 여건상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조사체계로 전환 노력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5,599	25,599	0	0	25,599	24,891	97.2	0	708
2024년	26,164	26,164	0	0	26,164	25,664	98.1	0	500
2025년	26,699	26,699	0	0	26,699	26,317	98.6	10	372
2026년	30,384	30,384	10	0	30,394	15,536	51.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708	· 공무직(상용) 연가촉진으로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에 따른 상용임금(8백만원), 기간제(일용) 중도퇴사(재채용시 상당기간 소요)에 따른 일용임금(229백만원) 등 총 236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응답사례품 낙찰차액 등 운영비(283백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여비집행지침 변경에 따른 여비(133백만원), 지방관서 임차보증금 미인상(50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휴직·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5백만원) 등 총 472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4년	전용	50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4.5.22) 시 기존 표본추출방법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에 따라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표본설계 및 추정법 연구 필요로 동일 사업내 일반수용비(210-01)를 일반연구비(260-01)로 30백만원 자체전용 · '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위원회 회의 시 담당위원이 고용노동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지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필요로 동일 사업내 일반수용비(210-01)를 일반연구비(260-01)로 20백만원 자체전용
	불용	500	· 공무직(상용) 연가촉진으로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에 따른 상용임금(15백만원), 기간제(일용) 중도퇴사(재채용시 상당기간 소요)에 따른 일용임금(239백만원) 등 총 254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응답사례품 낙찰차액 등 운영비(174백만원), 기간제 중도퇴사에 따른 여비집행잔액(68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휴직·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4백만원) 등 총 246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5년	전용	420	· 공무직 등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준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관서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동일 사업내 상용임금(110-03) 및 일용임금(110-04) 예상잔액 420백만원을 고용부담금(320-09)으로 자체전용
	불용	372	· 기간제(일용) 중도퇴사(재채용시 상당기간 소요)에 따른 일용임금 총 4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기간제 중도퇴사에 따른 여비집행잔액(183백만원), 운영비 집행잔액(79백만원), 지방관서 환경개선 완료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93백만원), 전산처리 위탁사업 낙찰차액(6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휴직·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5백만원) 등 총 368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이월	10	· 고용노동통계 정보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HW1에 위임발주하여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5.9.24.~'25.12.12.) 하였으나, 국정자원 화재('25.9.26.)에 따른 전산장비 설치 등 화재복구로 해당 사업이 일시정지(정지기간: '25.11.1.~'26.4.30.)되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인 자산취득비(430-01) 10백만원 차년도 이월
2026년	-	-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고용노동통계 조사개요**

조사명	조사주기 (조사기준)	조사 개요
사업체노동력 조사	월 1회 (매월)	①(목적) 매월 노동수요 측면에서(사업체) 종사자 수, 노동이동(입·이직), 빈 일자리수, 임금·근로시간 등을 파악하여 고용·임금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②(대상) ■ 고용: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50천개) ■ 근로실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13천개) ③(항목) ■ 고용: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 근로실태: 임금(명목임금, 실질임금) 및 근로시간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부가조사)	연 1회 (4월 급여기준)	①(목적) 17개 시·도의 임금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지역별 임금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②(대상)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16천개) ③(항목)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체계, 정년제,유연근로제도 현황 (부가조사)	연 1회 (6월말)	①(목적) 임금정책, 고령자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등에 활용 ②(대상)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20천개) ③(항목) 기본급 체계(호봉,직능,직무급 등), 정년제, 임금피크제, 유연근로제 등 도입 현황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연 2회 (4월, 10월)	①(목적) 산업별, 직종별, 시도별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 등을 파악하여 외국인력 도입계획, 인력수급전망 및 훈련수요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②(대상)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72천개) ③(항목) 구인·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채용계획인원 등
지역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연 2회 (4월, 10월)	①(목적) 시·군·구 단위 사업체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입·이직자 수 등을 조사하여 지역 단위 고용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②(대상)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200천개) ③(항목)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연 1회 (6월 급여기준)	①(목적) 고용형태별(정규/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를 인적·사업체 속성별로 조사하여 비정규직 보호대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②(대상) 근로자 1인 이상(특고 포함) 사업체(66천개소 약 200만명 내외) ③(항목)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근로자 임금 5분위 배율, 근로시간 등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연 1회 (6,12월)	①(목적)「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효과 분석 및 비정규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②(대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12천개) ③(항목) 기간제근로자 수 및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연 1회 (회계연도)	①(목적)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조사·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②(대상)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 법인 기업체(3.6천개) ③(항목) 직·간접 노동비용 ■ 직접: 임금(정액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간접: 법정(외)복리비용 등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연 1회 (매년 12.31)	「전국사업체조사(국가데이터처)」 자료를 활용하여 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공무원 재직기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등을 제외하여 작성·공표(사업체 및 종사자 수)

참고 2 고용노동통계 주요사용기관(사용자)

조사명	주요 사용기관(사용자)
사업체 노동력조사	▸ OECD(임금, 근로시간) ▸ ILO(임금, 근로시간) ▸ 한국은행(국민계정, GDP산출) ▸ 국회, 행정안전부(공무원임금 관련),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국가데이터처 등 ▸ 금융감독원 및 각종 금융연구소(임금동향 분석) ▸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 관련) ▸ 한국생산성본부(노동생산성 지수)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연구소 등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연구소 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견기업연구원 ▸ 한국은행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 OECD, ILO (저임금근로자 비중, 임금 등) ▸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데이터처 등 정부부처 ▸ 한국은행,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소 ▸ 사용자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자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각종 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 각 대학, 민간기업(손해보험사, 법률사무소 등), 개인 등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국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데이터처 등 정부부처 ▸ 한국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각종 연구소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방송통신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고용관련 유관기관 ▸ 각종 협회(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 ▸ 부산인재평생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지역 유관기관 ▸ 각 대학, 개인 등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 국회,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등 정부부처 ▸ 한국은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견기업연구원 등 각종 연구소 ▸ 각 대학, 민간기업 등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 고용노동부

참고 3 고용노동통계 활용 내역

통계명	주요 지표	활용내용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 종사자수 입·이직자 수 빈일자리수 빈일자리율 입·이직률 <근로실태>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 보험급여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 - (고용노동부) ①건설업 월평균 보수 산정기준, ②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의 산정기준, ③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 - (행정안전부) 사망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 - (국방부) 퇴역연금 지급정지 관련 평균임금월액 산정기준으로 활용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표생산 -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성 본부에서 작성하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지수 산정 - (OECD) 근로시간,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비율(taxing wage) 등 활용 ○ 그 외 - (국가데이터처)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항목 중 자가노동의 노임단가 평가활용 ○ 활용법령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 (행정안전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국방부) 군인연금법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
고용 형태별 노동실태 조사	임금(시간당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사회보험가입률 노조가입률 부가급부적용 임금분배지표 등	○ (국제통계) OECD, ILO의 평균, 중위, 분위별 임금수준, 저임금근로자 비중, 성별임금격차 등 작성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조사,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활용 ○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 정책수립 등에 활용 ○ (고용노동부)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분석, 임금정보직무시스템의 맞춤형 임금정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활용법령 - (고용노동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구인·채용인원 미충원인원 현원·부족· 채용계획인원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일자리) 전망, 외국인 고용허가제, 훈련수요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 각종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전체근로자수 기간제근로자수 계약기간만료자 조치현황	○ (고용노동부) 기간제법의 시행효과 분석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노동비용 및 구성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지비용 등	○ 기업 경영 시 근로자 1인당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 1인당 노동비용을 내역별 파악에 유용 - 노동비용은 직접노동비용(임금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 법정외복지비용, 교육훈련비, 채용관련비 등)으로 나누어 각 내역별로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할때 근로자 고용 시 수반되는 제반 비용에 대한 자료를 활용 ○ (한국은행) 기업의 내역별 노동비용 분석을 통하여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체 규모별 직·간접 노동비용 분석을 통해 기업의 합리적인 인건비 활용 방안 모색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경제규모 등 지역소득통계 작성 시 소득접근방식 지역소득통계(현재 개발중)의 피용자 보수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사업체 수, 종사자 수	○ (작성기관 내부) 표본설계 시 모집단 분석자료 및 추출틀, 조사통계 추정 시 사후보정 값 등으로 활용 ○ (정부기관) 정책대상 설정의 기초정보(근로감독관 업무량 산정 및 감독관 증원, 행정대상 설정 및 분석 등), 지역별, 산업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학 및 연구소) 사회현상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 업 명
(6) 사회적기업 지원(1037-31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37	31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Y	Y	Y	N	5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고용노동부	지자체 보조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고용노동부	지자체 보조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고용노동부	민간경상보조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한국벤처투자
운영비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회적기업 지원	28,412	85,872	85,872	91,961	94,344	8,472	9.9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8,412	28,412	28,405	-	-	85,872	85,872	77,180	94,344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	-	-	-	30,000	30,000	30,000	26,150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3,493	3,493	3,493	-	-	4,963	4,963	4,963	4,349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27~,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9,356	9,356	9,356	-	-	14,171	14,171	14,171	14,388
·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282	282	282	-	-	904	904	899	1,547
·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27~,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	-	-	-	-	-	800	800	800	10,800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27~,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	-	-	-	-	13,720	13,720	6,677	7,000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	-	-	-	-	4,977	4,977	3,398	4,977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	-	-	-	-	-	-	-	7,153
· 운영비	15,854	15,854	15,854	-	-	16,600	16,600	16,600	17,804
· 지원운영비	136	136	129	-	7	176	176	111	176
· 자체 수입(결산상 잉여금)	△709	△709	△709	-	-	△439	△439	△439	-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8,412	28,412	28,405	-	-	85,872	85,872	77,180	94,344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15,807	15,807	15,807	-	-	16,511	16,511	16,511	17,804
· 사업출연금 (350-02)	12,469	12,469	12,469	-	-	50,388	50,388	50,388	52,134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일반수용비 (210-01)	65	65	65	-	-	105	105	84	105
· 임차료(210-07)	14	14	12	-	2	14	14	4	14
· 일반용역비 (210-14)	-	-	-	-	-	100	100	95	100
· 국내여비(220-01)	57	57	52	-	5	57	57	23	57
· 사업추진비 (240-01)	-	-	-	-	-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7,153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18,697	18,697	10,075	11,977
· 출자금(460-01)	-	-	-	-	-	-	-	-	5,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판로, 경영, 인식개선, 성장고도화,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 등 수행

(1-1)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목적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청년·지역 창업가 및 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사업내용	○ (창업팀 선정 및 운영) 권역·업종별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창업 단계의 멘토링 등 지원 ○ (사후관리) 기존 사회적기업 창업지원(舊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혜 대상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 제고를 위한 멘토링·네트워킹 등 지원

(1-2)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 지원과 판로플랫폼 운영 등 온·오프라인 통합 판로지원 체계 내실화
사업내용	○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민간시장 진입단계별 맞춤형 판로지원을 통해 시장진입 촉진 및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기여 ○ (공공구매 활성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행사 운영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계획 분석 ○ (차세대 판로플랫폼 운영) 고객 특성에 따라 「차세대 통합판로 플랫폼(가치장터(공공시장), STORE36.5(민간시장))」 운영

(1-3) 사회적기업 성장지원('27~,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지원센터 운영,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 사회적가치 평가 등 지원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①성장지원센터 운영사회적기업 창업·경영 통합 지원을 위한 19개소 성장지원센터를 조성·운영함으로써 지역 친화적 사회적기업 거점 공간 조성 및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 도모 ②인증심사 지원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19개 성장지원센터의 민관 협업 구조를 중심으로 공공행정 서비스 지원 수행 ○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 내실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사업 기반 안정화, 실질적 성장 견인, 시장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제고 ○ (사회적가치 평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인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개발('16년)과 대외 공표('17.7.) 이후 사회적 가치 측정에 활용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재정지원사업 등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4)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사업목적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기업 관련 담당자 교육 등 지원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브랜드 강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으로 사회적기업 브랜드 강화를 통한 가치 확산 및 정책 체감도 제고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 장려를 위한 주간행사 개최 ○ (국제협력) ①국제포럼해외 우수 사례의 국내 전파, 국내·외 사회적기업 관계자 간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②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정책사례 확산 OECD 등 국제기구 발간자료 번역·배포, 월간 글로벌 뉴스레터 발간 등 국제 동향 접근성 유지 ○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①사회적기업 모니터링사업보고서, 자율경영공시 등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유지 여부와 경영 현황 데이터를 지속 확보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 강화 ②사회적기업 조사연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사회적기업 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 등에 활용, 2027년은 차기 실태조사 시행연도로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교육) 노동부 지방관서, 자치단체, 진흥원 실무 담당자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정책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1-5) 사회적기업 자금지원('27~,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

사업목적	모태펀드, 임팩트투자 연계 등 정부의 초기자금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지원
사업내용	○ (투자유치 강화) ①투자유치 역량 강화기업의 성장 궤도와 투자유치 준비에 따른 맞춤형 기업을 선발하여 기업별 심층 멘토링과 실전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제공, IR 피칭 대회 개최와 우수기업 대상 포상금 지원 ②사업고도화 융자지원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이자보전 방식으로 지원 ○ (크라우드 펀딩) 수요 대비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사회적기업 투자 촉진) ①임팩트 투자 연계민간 투자사에서 투자를 유치한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일정 비율 지원금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 ②모태펀드정부의 초기 자금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 시장 조성, 사회적기업이 R&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1-6)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27~,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목적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확대
사업내용	노동통합·통합돌봄 등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역 민간기관·사회적기업과 협력하는 사업모델 구축 시, 사업 수행 비용 지원

(1-7)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목적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
사업내용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에 우수한 사회적기업 등을 선정하여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를 화폐가치로 확산한 성과만큼 사업비로 지원

(1-8)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사업목적	문화·환경·디지털·돌봄 등 분야의 사회적기업에서 청년의 일경험 기회 제공
사업내용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3개월)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추진경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10.6.8)·시행('10.12.9)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법인 설립등기('10.12.3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시작('11.1.17.)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25.9.)」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및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혁신 포함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지원과 개별 조직이 업종·분야별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지역 특성에 부합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능 및 시·도별 지원센터 확대,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사회연대조직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 신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경영부담 경감 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 (사회통합적 고용·취업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69,259	32,990	28,412	85,872	94,34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자치단체 보조, 민간경상보조, 출자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출연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26,150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출연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4,349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출연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14,388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출연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1,447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	출연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5,800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보조	지자체 보조	7,0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보조	지자체 보조	4,977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보조	민간경상보조	7,153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모태펀드	출자	한국벤처투자	5,000	10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운영비	출연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17,804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5,872	94,344	8,472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30,000	26,150	△3,850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4,963	4,349	△614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27~,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14,171	14,388	217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904	1,547	643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27~,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	800	10,800	10,000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27~,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13,720	7,000	△6,720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4,977	4,977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	7,153	7,153
운영비	16,600	17,804	1,204
지원운영비	176	176	-
자체수입(결산상 잉여금)	△439	-	439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2026년) 30,000 → (2027년 정부안) 26,150백만원, △12.8%**

- (설명)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인증전환지원), 누적 졸업팀 증가에 대응해 전문멘토링 제공 등 창업기업의 인증 진입 안착 유도

* '27년 지출구조조정 차원에서 목표치를 전년 대비 65팀 감축('26년 500팀→'27년 435팀)

- (산출) 창업팀 선정 및 운영 24,795백만원, 사후관리 1,355백만원

* (창업팀 선정 및 운영, 24,795백만원) ▲창업팀 지원 23,925백만원(435팀x55백만원) ▲사업운영비 870백만원(435팀x2백만원)

* (사후관리, 1,355백만원) ▲졸업팀 지원 1,190백만원(700팀x1.7백만원) ▲이력성과조사 165백만원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2026년) 4,963 → (2027년 정부안) 4,349백만원, △12.4%**

- (설명) ①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마케팅, 제품개발, 입점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판로지원 필요 ②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맞춤형 구매·샘플지원 운영 ③통합판로플랫폼 운영·성과관리,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비용 추가 반영

- (산출) ①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2,319백만원 ②공공구매 활성화 738백만원 ③차세대 판로플랫폼 운영 1,292백만원

*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2,319백만원) ▲온라인 입점·판매지원 400백만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220백만원 ▲소셜벤더 지원 1,163백만원 ▲오프라인 판매장 활성화 지원 236백만원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 300백만원

* (공공구매 활성화 738백만원) ▲공공구매 지원 484백만원 ▲수요맞춤형 구매지원 300백만원

* (차세대 판로플랫폼 운영 1,292백만원) ▲판로플랫폼 유지관리 692백만원 ▲판로플랫폼 운영·성과관리 600백만원

○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2026년) 14,171 → (2027년 정부안) 14,388백만원, 1.5%**

- (설명) ①성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구축 및 민간지원기관 협력체계 복원, 성장지원센터 중심으로 공간 지원 및 교육, 멘토링, 인증상담 설명회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촉진 및 인증기업 대상 사후관리 강화 ②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경영 역량 강화 ③측정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사회적가치 공모전 및 미흡기업 대상 심화코칭 운영, 사회적 가치 성과 검증 신규 운영을 통한 사회적가치 지원체계 추진, 청년 일자리-사회성과 측정 지원(10명) ④신규 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능 개발 및 사회적기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에 따른 사업 추진

- (산출) ①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3,196백만원 ②유망기업 스텝업 지원 7,840백만원 ③사회적가치 평가 1,145백만원 ④통합정보시스템 운영 2,207백만원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3,196백만원) ▲성장지원센터 운영 1,828백만원 ▲인증심사 지원 1,368백만원
  *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 7,840백만원) ▲디딤돌 지원 3,740백만원 ▲도약 지원 3,200백만원 ▲성숙기 지원 900백만원
  * (사회적가치 평가 1,145백만원) ▲사회적기업 측정 400백만원 ▲사회적가치지표 홍보 200백만원 ▲심화코칭 350백만원 ▲사회적가치 연구 90백만원 ▲사회성과 측정 지원(10명) 105백만원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2,207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1,100백만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720백만원 ▲홈페이지 관리 100백만원 ▲전자문서 웹한글 기안기 연간 라이센스 22백만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 265백만원

○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2026년) 904 → (2027년 정부안) 1,547백만원, 71.1%**

- (설명) 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주년에 따른 성과 확산 필요에 따른 콘텐츠 제작 및 정보 제공 ②사회적기업 육성법 20주년을 맞아 동법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에 따른 사회적기업 주간행사의 확대 개최 필요 ③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포럼 프로그램 다각화 및 해외 정책연구 ④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에 따른 5년 주기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청년 일자리-사회적기업 데이터 정비 및 표준화(30명) ⑤정부 정책 집행기관(지방관서, 자치단체, 진흥원) 담당자 대상 교육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담당자 간 소통·협력 강화

- (산출) ①사회적기업 브랜드 강화 100백만원 ②사회적기업 주간행사 200백만원 ③국제협력 246백만원 ④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901백만원 ⑤사회적경제 교육 100백만원
  * (사회적기업 브랜드 강화 100백만원) ▲사회적가치 확산 콘텐츠 제작 100백만원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200백만원) ▲주간행사 운영 200백만원
  * (국제협력 246백만원) ▲국제포럼 90백만원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정책 사례 확산 156백만원
  *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901백만원)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341백만원 ▲사회적기업 조사연구 560백만원
  * (사회적경제 교육 100백만원) ▲업무 담당자 교육 100만원

○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 (2026년) 800 → (2027년 정부안) 10,800백만원, 1250.0%**

- (설명) ①사회적기업 금융 승인율 제고를 위한 진단·보완 컨설팅 등 지원, 기업진단·

투자기초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 역량 강화 및 투자 연계 지원 ②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자금 수요 대비 일반 금융 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 및 홍보 강화, ③민간투자를 받은 사회적기업에게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매칭 지원(임팩트 투자 연계), ④정부의 초기자금 투입 및 민간 출자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모태펀드)

- (산출) ①투자유치 강화 650백만원 ②크라우드 펀딩 150백만원 ③사회적기업 투자 촉진 10,000백만원

* (투자유치 강화 650백만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 200백만원 ▲사업고도화 융자지원 450백만원
* (크라우드 펀딩 150백만원) ▲크라우드 펀딩 150백만원
* (사회적기업 투자 촉진 10,000백만원) ▲임팩트 투자 연계 5,000백만원 ▲모태펀드 5,000백만원

○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2026년) 13,720 → (2027년 정부안) 7,000백만원, △49.0%**

- (설명)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추진

- (산출)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7,000백만원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2026년) 4,977 → (2027년 정부안) 4,977백만원, 전년동**

- (설명)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성과 보상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확대사업 추진

- (산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4,977백만원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2026년) 0 → (2027년 정부안) 7,153백만원, 순증**

- (설명) 문화·환경·디지털·돌봄 등 분야의 사회적기업에서 청년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현장형 직무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산출)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7,153백만원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7,153백만원) ▲일경험 인턴 지원 5,100백만원 ▲사회적기업 직무교육·멘토링비 1,200백만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비 700백만원 ▲총괄지원기관 운영비 150백만원▲재해보상 보험료 3백만원

○ **운영비 (2026년) 16,600 → (2027년 정부안) 17,804백만원, 7.3%**

- (설명) 정규직 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본원 청사 및 전국 성장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 (산출) 인건비 9,810백만원, 기관운영 7,994백만원

* (인건비 9,810백만원)
* (기관운영 7,994백만원) ▲진흥원 운영비 1,650백만원 ▲센터 임차료 등 6,344백만원

○ **지원 운영비 (2026년) 176 → (2027년 정부안) 176백만원, 전년동**

- (설명) 지침·매뉴얼 마련(인증,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전문가·현장 간담회 등 원활한 업무수행
- (산출) 일반수용비 105백만원, 임차료 14백만원, 국내여비 57백만원

○ **결산상 잉여금 (2026년) △439백만원 → (2027년 정부안) 0, △100.0%**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130	2,161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 **측정산식 :** ('25년 말 인증 유지 기업 총매출액+'26년 신규 인증기업 총매출액)/('25년 말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수*+'26년 신규인증 기업수)*가중치(최근 3개년 평균 증가치)
  * 사업보고서 미제출, 매출액 0원 기업 제외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전전년도 3개년('23~'25) 실적 기준 가중치 (1.45%) 부여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 통계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1,950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6,385명
2024년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4,135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7,655명
2025년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5,059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9,189명
2026년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4,917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9,101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 민간지원조직 등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고용노동부 (26,150백만원)	=> (26,150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6,150백만원)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고용노동부 (4,349백만원)	=> (4,349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349백만원)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고용노동부 (14,388백만원)	=> (14,388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388백만원)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고용노동부 (1,447백만원)	=> (1,447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47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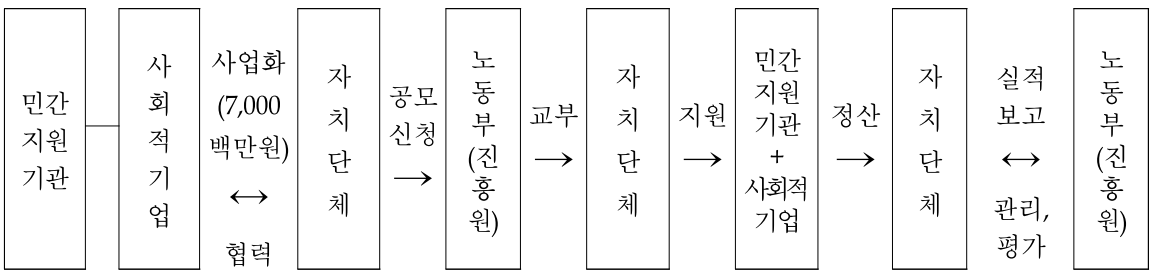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고용노동부 (5,800백만원)	=> (5,800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8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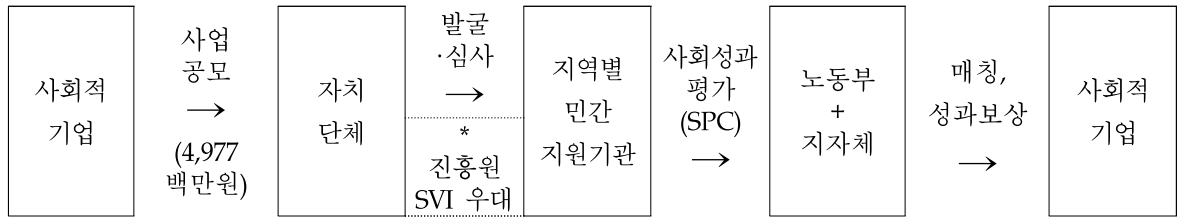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교육-업무담당자 교육>

고용노동부	→ (100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지방관서, 자치단체, 진흥원
예산편성 및 교육 운영 총괄		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교육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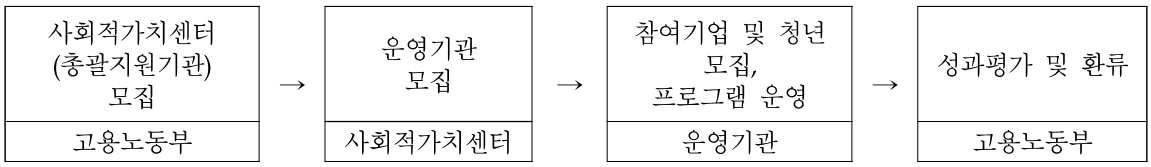
<사회연대경제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3년	○ 의견 : 높은 예산 집행률 달성 및 예산집행 노력도 우수, 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및 자생력 갖춘 성장 생태계 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구현에 기여 ○ 결과 :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사회적기업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노력도 우수, 사회적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내실화 및 사업 성과 우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가치 구현에 기여 ○ 결과 : 우수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사회적기업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노력도 우수, 사회적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내실화 및 사업 성과 우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 ○ 결과 : 우수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2023년	○ 지적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인증실적 제고를 위해 타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및 인·지정 수요 발굴 등 방안 수립, ② 사회적기

		업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③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참여율 분석 등을 통해 공시 참여 독려 및 실태조사·심층 연구 수행 등을 통해 유인체계 재구축 및 개선방안 마련 ○ 조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24년 폐지, 기존 창업팀의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해 후속지원 내실화 및 지속적 관리 기반 구축 조치완료, ②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발굴 및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제고 노력,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정책 등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보고 완료, ③ '24년 미참여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주된 참여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향후 실태 파악 및 자율경영공시 참여 확대 방안 마련
국정감사	2023년	○ 지적 :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규모의 단계적 조정 필요 ○ 조치 : '24년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인건비(500억원, 6,006명)를 편성하고, 他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예산(198억원, 7,254명)을 증액
국정감사	2024년	○ 지적 :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 관련 정책 재검토 필요 ○ 조치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한「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추진 중
상임위	2024년	○ 지적 :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 전환 및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등 ○ 조치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발표(25.12.24)
국정감사	2025년	○ 지적 :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복원 필요 ○ 조치 : '26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복원·혁신(284억→1,180억, +315%)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9,259	69,259	-	-	69,259	69,259	100	-	-
2024년	32,990	32,990	-	-	32,990	32,979	100	-	11
2025년	28,412	28,412	-	-	28,412	28,405	100	-	7
2026년	85,872	85,872	-	-	85,872	77,180	89.9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4년	전용	20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원사업 안내 책자 제작 및 민간 투자 유치·자원연계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신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210-01) 충당을 위해 국내여비(220-01)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20백만원 자체전용
		10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네트워킹 세미나 직접 운영을 위해 국내여비(220-01)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10백만원 자체전용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2027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설명자료**

1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사업 개요**

○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창업가 및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지원

□ **사업 내용**

○ 권역별·업종별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기존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팀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

□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강화하여 창업에서 성장·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장 경로 확립

2-1 사회적기업 판로지원(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대상 맞춤형 판로지원을 통해 시장진입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사업 내용**

○ **(온라인 입점·판매지원)** 홈쇼핑, 온라인몰 기획전 등 통한 제품 판매 지원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마케팅 교육, 코칭 등 지원

○ **(소셜벤더 운영)** 상품 발굴, 진단·개선, 유통채널 입점연계 등 원스톱 지원

○ **(오프라인 판매장 활성화 지원)** STORE36.5 매장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

○ **(지역특화 스타 상품 판로지원)** 지방정부·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품 발굴 및 개선, 판촉 등 지원

□ **기대효과**

○ 다각도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제품 소비 활성화

②-2 사회적기업 판로지원(공공구매 활성화)

□ **사업 개요**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행사 운영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계획 분석

□ **사업 내용**

○ **(공공구매 지원)** 우선구매제도 교육, 구매상담회 등 개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분석과 제도 운영 실태조사

○ **(수요맞춤형 구매지원)** 공공기관별 수요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추천

□ **기대효과**

○ 공공기관-사회적기업 간 우선구매제도 이해 및 참여 제고

②-3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차세대 판로플랫폼 운영)

□ **사업 개요**

○ **(사회연대경제 통합판로플랫폼)** 고객 특성에 따라 「차세대 통합판로플랫폼(가치장터(공공시장), STORE36.5(민간시장))」 운영

□ **사업 내용**

○ **(가치장터)** 기업 정보, 전자계약 자동화, 우선구매실적 관리·통계 기능 등 제공

○ **(STORE36.5)** '지속가능한 가치' 전용관, 다양한 기획전 개최 등 통해 판촉

□ **기대효과**

○ 공공·민간시장 진입 촉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 도모

3-1.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창업·경영 통합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센터 운영 및 인증심사 지원

□ **사업 내용**

○ **(성장지원센터 운영)** 교육, 멘토링 등 통한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 **(인증심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지원,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지원, 인증 이후 정관변경 신고 등 사후관리 등 공공행정 지원

□ **기대효과**

○ 지역 거점 성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 사회연대경제생태계 활성화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확대 및 인증 이후 지속 가능한 경영지원

3-2.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유망기업 스텝업 지원)

□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대상 맞춤형·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 성장지원

□ **사업 내용**

○ **(디딤돌 지원)** 초기 창업기업 대상 인사·노무·경영 등 경영 역량 강화 지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셜클래스) 운영 통한 교육 지원

○ **(도약 지원)** 성장잠재력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대상(SVI 탁월·우수·양호 등급)으로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 **(성숙기 지원)** 성장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의 맞춤형 역량 강화 및 시장 경쟁력 제고

3-3.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사회적가치 평가)

□ **사업 개요**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및 검증 지원

□ **사업 내용**

○ **(사회적가치 측정)** 사회적기업 대상 SVI 측정 및 분석

○ **(심화코칭)** 지표별 취약 영역 파악과 개선 방향 제공 등 맞춤형 코칭 제공

□ **기대효과**

○ SVI 중심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적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

3-4. 사회적기업 경영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 개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재정지원사업 등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 내용**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체계 운영 등

□ **기대효과**

○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지원

④-1. 사회적기업 인식개선(사회적기업 브랜드 강화)

□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으로 사회적가치 확산 및 정책 체감도 제고

□ **사업 내용**

○ 사회적기업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제도·사업안내 등 콘텐츠 제작·배포

□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기업의 정책 체감도 제고

④-2. 사회적기업 인식개선(사회적기업 주간행사)

□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 장려를 위한 주간행사 개최

□ **사업 내용**

○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및 우수 사회적기업(가) 포상,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기대효과**

○ 선도적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으로 긍정적 인식 확립

④-3. 사회적기업 인식개선(국제협력)

□ **사업 개요**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등 통해 사회적기업 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조성

□ **사업 내용**

○ 국제포럼 등 통해 국내외 우수 사례 전파,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기대효과**

○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발전방안 모색에 활용

④-4. 사회적기업 인식개선(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사업 내용**

○ 사회적기업 경영 현황·고용구조·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5년 주기 법정 실태조사 추진 등

□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

④-5. 사회적기업 인식개선(사회적경제 교육)

□ **사업 개요**

○ 정부 사회적기업 담당자 대상 사회적기업 정책 교육 운영

□ **사업 내용**

○ 노동부 지방관서, 지방정부, 사회적기업 진흥원 실무 담당자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정책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기대효과**

○ 업무 담당자 대상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책 집행의 전문성 제고

⑤-1.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투자유치 강화)

□ **사업 개요**

○ **(투자유치 역량 강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전략을 투자자 관점에서 고도화 및 자본 조달을 위한 실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

○ **(사업고도화 융자지원)**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지원

□ **사업 내용**

○ **(투자유치 역량 강화)** 기업별 투자유치 교육 및 IR 대회 개최 등

○ **(사업고도화 융자지원)** 이차보전 방식 융자지원(대출이자 2.5%p 지원)

□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의 자금 접근성 제고 통한 성장 촉진

⑤-2.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크라우드 펀딩)

□ **사업 개요**

○ 수요 대비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사업 내용**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고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

□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투자 확대 통한 성장 도모

5-3. 사회적기업 성장고도화(사회적기업 투자 촉진)

□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대상 민간 및 정부의 자본을 활용한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 도모

□ **사업 내용**

○ **(임팩트 투자 연계)** 민간 투자사에서 투자를 유치한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일정 비율 지원금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

○ **(모태펀드)** 정부의 초기 자금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 시장 조성, 사회적기업이 R&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민간 및 정부의 투자 자금 확대 통한 사회적기업의 성장 고도화

6 사회연대경제 지역 생태계 활성화

□ **사업 개요**

○ 노동통합·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의 사회문제를 지방정부·사회적기업 등이 스스로 정의·해결하는 협력모델 지원

□ **사업 내용**

○ **(노동통합)** 청년, 장애인 등 지역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직업훈련 기회, 멘토링, 채용 등을 제공

○ **(통합돌봄)** 사회적기업 등과 민간기관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돌봄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 등 제공

□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 및 지역 생태계 활성화

⑦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 **사업 개요**

○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가치 기반 생태계 구축 도모

□ **사업 내용**

○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에 우수한 사회적기업 등을 선정하여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확산한 성과만큼 사업비로 지원

□ **기대효과**

○ 사회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를 보상하여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생태계 마련

⑧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 **사업 개요**

○ 청년에게 사회서비스·지역·환경 등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 사회적기업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조정 가능

○ **(프로그램)** 문화·환경·디지털 등 분야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3개월)

□ **기대효과**

○ 청년의 경력 형성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회적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

사 업 명
(7) 치유휴직 지원(1038-30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38	303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긴급재난특별고용지원	치유휴직 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치유휴직 지원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직접수행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치유휴직 지원	-	1,535	1,535	396	396	△1,139	△74.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1,535	1,535	79	396
·치유휴직 지원	-	-	-	-	-	1,535	1,535	79	396
- 치유휴직자 금품보전비용	-	-	-	-	-	1,228	1,228	70	337
- 대체인력 임금보전비용	-	-	-	-	-	307	307	10	59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1,535	1,535	79	396
·기타보전금(310-04)	-	-	-	-	-	1,535	1,535	79	39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치유휴직 지원

사업목적	12·29여객기사고 피해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지원하여 원만한 직장회복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에 따라 피해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 지원 * 치유휴직 사용 노동자(치유휴직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월 198만원 한도) *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그 대체 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월 99만원 한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추진경위	○ 최초시작연도: 2026년 ○ 추진경위: - '24.12월 :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 발생 - '25.4월 : 치유휴직 지원 내용이 포함된「12·29여객기참사지원법」제정 - '25.6월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시행 - '25.7월 : 치유휴직 관련 예산 노동부 편성·집행 결정, 전국 고용센터에 치유휴직 신청 및 대체인력 알선 전담인력 배치 - '25.11월 : 치유휴직 지원단가 및 지원절차 결정(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 심의·의결) - '25.12월 :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시달, 전산 구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6~2029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1,535	39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상 피해노동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535	396	△1,139
치유휴직 지원	1,535	396	△1,139

○ **치유휴직 지원 (2026년) 1,535 → (2027년 정부안) 396백만원, △74.2%**

- (설명) 26년 치유휴직 사용인원과 및 신청기간 한도*에 따른 지원인원 감소 예상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74.2% 감액
  * 법 시행일인 '25.6.30.부터 1년 이내(단, 의사 소견시 3년 이내)
- (산출) 치유휴직자 금품 보전비용 337백만원 + 대체인력 임금 보전비용 59백만원
  ① 치유휴직자 금품 보전비용 337백만원 = 17명×198만원×10개월
  ② 대체인력 임금 보전비용 59백만원 = 6명×99만원×10개월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유지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81.6%	81.6%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치유휴직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점의 피보험자격 유지자)÷ (치유휴직 종료자)
- **목표치 설정근거** : 고용장려금 전체 사업의 고용유지율 평균과 동일한 수치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행정전산망 통계 / 한국고용정보원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2025년	해당없음
2026년(7월말)	치유휴직자 10명에 대한 금품보전비용 및 대체인력 3명에 대한 임금 보전비용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치유휴직자 17명에 대한 금품보전 비용 및 대체인력 6명에 대한 임금 보전비용을 지원하여 12·29여객기사고 피해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치유휴직 신청방법)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 신청 ○ 노동자→사업주 치유휴직 신청서 제출 → 사업주→노동자&고용센터 치유휴직 허용 통보 → 노동자 치유휴직 실시 → 사업주→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센터→사업주 지원금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	-	-	-	-	-	-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	-	-	-	-
2026년	1,535	1,535	-	-	1,535	79	5.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12·29 여객기참사 치유휴직 지원 사업 개요

참고 12 · 29여객기참사 치유휴직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상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 부상자 및 희생자·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고) 치유휴직 개요]

- **(신청기간)**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25.6.30.~'26.6.29.)
  * 단, 의사 소견서 등 있는 경우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25.6.30.~'28.6.29.)
- **(사용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 이내 범위
  * 단, 의사 소견서 등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최대 1년)**
- **(신청방법)**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 지원 내용

○ **(치유휴직자 금품 지원)**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치유휴직자에게 지급한 금품**(월 198만원 한도)**

○ **(대체인력 임금 지원)**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월 99만원 한도)**

□ 지원 절차

○ **(사업주)**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노동부(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비용 신청

* 치유휴직 종료 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고용센터)** 신청 내용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급

치유휴직				⇒	고용유지비용	
신청 (30일 전까지)	허용여부 결정 (신청후 10일 내)	치유휴직 통보서	실시 (1개월 이상)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노동자 →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 노동자, 고용센터	노동자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사 업 명
(8)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1039-32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일반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39	32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한국고용정보원출연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운영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41,323	42,976	42,976	47,088	45,228	2,252	5.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1,323	41,323	41,323	-	-	42,976	42,976	38,678	45,228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36,509	36,509	36,509	-	-	38,055	38,055	34,241	40,236
·한국고용정보원운영	4,814	4,814	4,814	-	-	4,921	4,921	4,437	4,99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1,323	41,323	41,323	-	-	42,976	42,976	38,678	45,228
·기관운영출연금 (350-01)	41,323	41,323	41,323	-	-	42,976	42,976	38,678	45,22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

사업목적 및 내용	한국고용정보원이 우수한 전문인력 유치·양성 및 임직원의 지속적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인건비 지원

(1-2)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사업목적 및 내용	한국고용정보원 역량 극대화를 위해 기관 운영을 원활히 지원하여 대국민 고용서비스 강화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추진경위	- '79.7월 : 노동청 국립중앙직업안정소 개소 - '95.5월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제 개정 - '01.1월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개원 - '06.3월 : 한국고용정보원 설립 - '07년 :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 지원, 기관운영경비는 고보기금 지원 - '15년 :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로 이관 - '17년 : 직급보조비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로 이관 - '19년 :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일반회계)"와 "한국고용정보원운영(고보기금)"을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 - '20년 :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일반회계)" 사업을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 통합 - '22년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고용보험기금" 사업비에 편성하고 있던 공무직 등 인건비를 일반회계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로 이관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7~,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39,241	41,407	41,323	42,976	45,22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 실업자, 구직자, 사업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한국고용 정보원 인건비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40,236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5항
한국고용 정보원 운영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4,992	100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2,976	45,228	2,252
한국고용 정보원 인건비	38,055	40,236	2,181
한국고용 정보원 운영	4,921	4,992	71

○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 (2026년) 38,055 → (2027년 정부안) 40,236백만원, +5.0%

① 임직원 인건비: ('26) 38,020 → ('27안) 40,216백만원(2,196백만원 증)

- (설명) '27년 정기증원 인건비(순증 7명, 6개월분), 임직원 인건비 공통인상분(3.9%) 반영에 따른 '26년 대비 +5.8% 증액

- (산출) ['26년 인건비 38,322백만원 + '27년 증원인력 인건비(7명, 6개월분) 384백만원]
  * 1.039(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반영) = 40,216백만원

②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26) 0 → ('27안) 20백만원(순증)

- (설명)「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4.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 잡고 처우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단기근로자 공정수당(18백만원) 및 그에 따른 사회보험료(2백만원) 반영

- (산출) ①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18백만원 = 1,400,000원*×13명
  ②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2백만원 = 공정수당(18백만원)*×11.47%

* 기간제 근로자 월 급여는 최저임금 118% 이상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정임금 지급 대상에 미포함

③ 직원 이주수당 잔여분: ('26) 35 → ('27안) 0백만원(순감)

- (설명)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청사 신축에 따라, '24년 4월부터 기존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59명(조사·상담직)이 충북혁신도시(음성)로 이주하여

지급하던 이주수당 최종 지급 완료(24개월)에 따른 순감

- (산출)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인원(59명) × 20만원 × 3개월 = 35백만원 순감 -

○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2026년) 4,921 → (2027년 정부안) 4,992백만원, +1.4%

① 일반운영비: ('26) 3,453 → ('27안) 3,693백만원, 240백만원 증

(1) 공공가치 창출형 청년 일자리 운영비: ('26) 0 → ('27안) 413백만원, 순증

- (요구)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26.8.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대국민 고용서비스 고도화라는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8명 규모의 청년 인턴 확대 (①직무 온톨로지 품질 개선, ②고용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씽크탱크 유스 파트너)

- (산출) ① 직무 온톨로지 품질 개선단 운영(118백만원)

  - 보수: 114백만원(월 급여 2,366,300원(제수당 및 4대 보험료 포함) × 8명 × 6개월)
  - 운영비: 4백만원(일반수용비, 여비 등)

② 씽크탱크 유스 파트너 운영(295백만원)

  - 보수: 284백만원(월 급여 2,366,300원(제수당 및 4대 보험료 포함) × 20명 × 6개월)
  - 운영비: 11백만원(일반수용비, 여비 등)

(2) 지출 구조조정 효율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액: ('27안) △173백만원

② 여비: ('26) 51 → ('27안) 51백만원, 전년동

③ 업무추진비: ('26) 75 → ('27안) 75백만원, 전년동

④ 연구용역비: ('26) 395 → ('27안) 226백만원, △169백만원

-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재구축 ISMP 컨설팅비용: ('26) 169백만원 → ('27안) 0백만원, 순감

⑤ 시설비: ('26 본예산) 530 → ('27 예산안) 530백만원, 전년동

⑥ 유형자산: ('26 본예산) 297 → ('27 예산안) 297백만원, 전년동

⑦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26 본예산) 120 → ('27 예산안) 120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준 및 지침 수립	고용노동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재배정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9,241	39,241	-	-	39,241	39,230	99.9	-	11
2024년	41,407	41,407	-	-	41,407	41,400	99.9	-	7
2025년	41,323	41,323	-	-	41,323	41,323	100.0	-	-
2026년	42,976	42,976	-	-	42,976	38,678	90.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8	유류비 등 경비 절감에 따른 운영비 집행 잔액 8백만원 불용
2024년	이월	22	중장기 감사 전략 수립 사업 2개년 간 수행으로 22백만원 이월
	불용	705	기관 경영평가 등급 결과(E)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 경비 절감에 따른 운영비 집행 잔액 705백만원 불용
2025년	불용	71	공무직 직원 이주수당 집행잔액 및 업무추진비 절감분 등 운영비 집행 잔액 71백만원 불용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 고용동향조사분석(1040-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40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동향조사	고용동향조사분석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동향조사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 및 전망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한국고용정보원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자고용정책연구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한국고용정보원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국노동패널조사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직접수행(위탁)
노동시장분석센터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직접수행(위탁)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세부사업명	6,079	7,433	7,433	9,180	9,076	1,643	22.1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6,079	6,079	6,079	-	-	7,433	7,433	6,318	9,076
· 고용동향조사	3,023	3,023	3,023	-	-	4,371	4,371	3,715	2,798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1,047	1,047	1,047	-	-	1,048	1,048	891	-
· 고용동향분석	364	364	364	-	-	365	365	310	-
· 고용동향분석 및 전망	-	-	-	-	-	-	-	-	2,413
·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996	996	996	-	-	999	999	849	999
· 고령자고용정책연구	649	649	649	-	-	650	650	553	650
· 한국노동패설조사	-	-	-	-	-				2,086
· 노동시장분석센터	-	-	-	-	-				13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6,079	6,079	6,079	-	-	7,433	7,433	6,318	9,076
·사업출연금(350-02)	6,079	6,079	6,079	-	-	7,433	7,433	6,318	6,860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2,21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동향조사

사업목적	청년층, 중고령자 등 주요 고용정책 대상의 고용구조, 직업이동경로 등 고용실태 전반에 대한 통계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고용노동 정책 수립·집행의 기초자료 제공
사업내용	청년패널 및 고령화연구(고용)패널 조사 실시 등

(1-2) 고용동향분석 및 전망

사업목적	고용행정 통계를 활용·분석·모니터링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및 정책을 제안하고, 인력수급전망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배분에 기여
사업내용	고용행정DB 심층보고서, 브리프, 통계 자료집 발간, 총량·권역별·직업/산업·단기 등 인력수급 전망 실시

(1-3)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사업목적	빅데이터를 수집·생산·분석을 통해 맞춤형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 및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 지원
사업내용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빅데이터 활용 연구

(1-4) 고령자고용정책연구

사업목적	초고령사회 대비 고용 관련 통계분석, 초고령사회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연구개발, 초고령사회 정책 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사업내용	초고령사회 고용 분석, 해외사례 분석·연구, 지원 모니터링

(1-5) 한국노동패널조사

사업목적	고용노동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패널조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 사업을 수행
사업내용	노동패널 조사 실시

(1-6) 노동시장분석센터

사업목적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 정책대안을 제시
사업내용	노동시장 분석회의 개최 및 고용동향 분석자료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고용동향조사, 고용동향분석 및 전망>**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 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직업안정법 제3조, 제16조**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1조, 제33조**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⑥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8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

	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단체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 노동시장분석센터>** **- 고용정책기본법 제17조**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1조**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추진경위	**<고용동향조사>** **- 청년패널조사** ·'01년: 인적자원개발회의('00.9월)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채택된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 세부사업의 하나로 청년패널조사 시작 ·'07년: 새로운 청년패널(YP2007) 1만 명 구축 조사(1차) 시작

	・'15년: 청년패널(YP2007) 추가패널(3,516명) 구축 및 조사 실시 ・'21년: 새로운 청년패널(YP2021) 구축 조사(1차) 실시 및 12,214명 구축 완료 ・'23년: 청년패널(YP2021) 3차 조사 실시 ・'24년: 청년패널(YP2021) 4차 조사 실시 ・'25년: 청년패널(YP2021) 5차 조사 실시 ・'26년: 청년패널(YP2021) 6차 조사 실시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06년: 고령화사회('10년)→고령사회('17년)→초고령사회('26년) 진입 전망을 토대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은퇴, 소득변화 등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위하여 신설 ・'14년: 고령화연구패널 '62~'63년생 920명 신규패널 구축 ・'18~'21년: 고령화연구패널 제7~8차 기본조사 및 특별조사 실시 고령화고용패널(고령화연구패널 부가조사) 1차 신규 구축('21년, 9,362명) ・'22년: 고령화연구패널 9차 기본조사 및 고령화고용패널 2차 기본조사 완료 ・'23년: 고령화연구패널 제9차 특별조사 및 고령화고용패널(고령화연구패널 부가조사) 1차 특별조사(직업력) 실시 ・'24년: 고령화연구패널 제10차 기본조사 및 고령화고용패널(고령화연구패널 부가조사) 3차 기본조사 실시 ・'25년: 고령화연구패널 제10차 특별조사 및 고령화고용패널(고령화연구패널 부가조사) 2차 특별조사 실시 ・'26년: 고령화연구패널 제11차 기본조사 및 고령화고용패널(고령화연구패널 부가조사) 4차 기본조사 실시 **<중장기인력수급전망>** ・'07년: 고용정보원(인력수요)과 직업능력개발원(인력공급)이 공동으로 인력수급전망 실시, 제3회 국가인력자원위원회 제1호 안건,「2006~201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분석」대통령 최종보고(12월) ・'12년:「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14년:「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 세부 산업·직업 전망 실시(산업 소분류 206개, 직업 세분류 270개

	선정) · ’15년: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2014-2024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테마(섬유, 철강, 서비스업, 고령자, 제조업 고용변동) 전망·분석 및 지역별(광역지역별, 충북 북부권) 전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모형 방법론」 발간 · ’16년: 「2015-202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17년: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테마(소프트웨어, 의료, 물류, 제조업 등) 전망 및 광역지역별 인력수급 전망(충남),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18년: 「2016-2030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2017~2027 인력수급 전망,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19년: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2018~2035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테마(유통업, 자영업, 전문기술인적자원 등) 전망,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0년: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활용서 제작 및 배포, 테마(사물인터넷, 로봇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전망,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1년: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테마(청년층,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2년: 「2021~2031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테마(공간정보산업, 아동돌봄서비스업 등)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3년: 「2022~203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실시,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과 일자리 변화 등 인력수요 구조 변화 분석 · ’24년: 「2023~203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추가필요인력 추계, 2022~203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활용서 제작 및 배포, 테마(직업구조, 고령층, 외국인력 등)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5년: 「2024~2034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추가필요인력 추계, 테마(이민자, 출산여성,

	자동차 등)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6년: 「2025~203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추가필요인력 추계, 테마(돌봄, 방법론 연구 등)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고용동향분석>** · '06년~: 고용과 직업연구, 고용이슈, 행정DB(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통계연보 발간 · '12년~: 고용동향브리프 창간 및 행정DB 심층분석 보고서 및 노동시장 신호등 강화를 위한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시의적절한 고용동향 정보 제공을 위한 고용동향 포럼 운영 · '14년~: 노동시장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신설, 체계적인 지역 고용동향 분석 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 산업별 고용포럼 운영 및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창간 · '23년~: 행정DB 통계연월보, 고용이슈, 고용동향브리프 발간 및 Job to job 이동과 산업별 일자리 전환, 청년 노동시장과 공공고용서비스 성과, 실업급여 수급자 분석,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고용정책 연구, 유통·물류 산업의 생산양식과 고용의 변화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연령별·산업별 행정DB 연구 수행 · '24년: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행정통계와 경기 및 고용간 상관성 분석,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한 고용안정성 연구, 일자리 전환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고용보험과 사회보장 행정자료의 결합DB 구축 및 활용 연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동시장 분석 통합제공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수행 · '25년: 현장 체감형 노동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연령별·산업별 행정DB 연구 수행 · '26년: 행정DB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노동이동 분석, 고학력 여성 노동시장 특징과 정책과제, 고령층 전환기 연령(55~64세)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성과와의 관계분석, 임금직업포털 맞춤형 임금정보 분석 등 고용행정DB 심층 분석 수행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21년: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및 고용노동 연

	구 분석 등을 위한 디지털 기반 전문 조직 “빅데이터센터” 신설(‘2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AI 일자리 매칭 효과성 분석, 스마트 고용서비스 포럼 운영, 빅데이터 해외 연구사례 동향 및 기초자료 수집 등 · ’22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AI 일자리 매칭 효과성 분석, 스마트 고용서비스 포럼 운영, 잡케어 실용정보·시각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사업 수행 · ‘23년: 취업확률 예측 모델 개발 및 실용정보 고도화 사업, AI일자리매칭 서비스 고도화, 지능형 직업상담 지원서비스(잡케어) 고도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 산학협력 기반 고용노동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고용노동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고용 서비스 품질 강화, 내외부 전문가 포험 운영 및 데이터 분석 활성화 · ‘24년: 빅데이터센터와 일자리정보플랫폼실을 통합하여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 확대 개편,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연구과제 수행, 디지털 고용서비스 중장기(‘25년~‘29년) 전략 수립,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포럼을 통한 국내외 선진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실태 연구과제 수행 · ‘25년: 상담용 잡케어 고용정보 시각화 및 UI/UX 개선, 디지털배지 기반 고용 실용정보 서비스 구축, 고용보험과 Qnet의 연계분석을 통한 고용24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 개발, 노동부-산하기관 디지털·데이터 공유 포럼 운영 · ’26년: 고용노동 데이터분석 서비스 개선, 고용노동 웹로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고용24 연계 민간구인 데이터 정제 연구/고용24 직업훈련 정보구조 재설계 실태조사 연구/구직자 이력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모델링 연구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 연구과제 수행 **<고령자고용정책연구>** · ’21년: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정과제,「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 21)」에 기초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고용정책 개발·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분석 전담팀 구성 계획에 따라 신설 및 사업추진(‘21.1) · ’21년: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해외사례 분석 및 고령자 고용정책 분석, 정책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인구구조

	변화 대응 고령사회 인력정책 포럼」(12회) 운영(1월~12월) · ’22년: 중고령자 노동시장 DB 및 조사자료 분석, 주요 고령자 고용정책 모니터링(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업의 연령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및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 고령자 대상의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23년: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현황 및 인식 실태조사, 고령층 노동시장 조사자료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자 노동시장 전망 연구, 재취업지원서비스 추진실태 및 도입 성과 분석, 고령자 실업급여 적용실태와 신규취업자 대상 정책과제 연구, 고령층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정보 및 고용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고령자 대상 잡케어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기업 연령관리를 위한 업종별 고령자 고용가이드 개발·보급 · ’24년: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고령자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중장년내일센터 고용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산업별 고령자 고용 실태와 인력 활용 방안, 40세 이상 기업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실태 및 활성화 연구, 중장년·고령자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 활성화 방안 연구, 중장년 고용정보 허브기능 개선방안 연구 · ’25년: 중장년 잡케어 개선 연구, 중고령층 노동시장 이행 분석, IT/제조업 중고령자 노동시장 특성 및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 연구, 2차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 과제,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연구, 중장년내일센터 역량강화 방안, 중장년내일센터 경력개발 교육콘텐츠 연구 · ’26년: 중장년 고용 네트워크 성과 분석,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 2차베이비붐 세대의 격차분석, 중장년층 직업능력 변화와 경력 지원 방안, 한국형 중년니트 현황과 지원 방안, 중장년 내일센터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등 수행, 중장년 고용 포럼 운영 등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2001 ~ 계속

* 2027년도 이관사업[고보→일반]: 한국노동패널조사(’98~계속), 노동시장분석센터(’13~계속)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5,939	7,026	6,079	7,433	9,07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출연/직접수행(위탁사업)

○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직접수행(위탁)

○ 사업 수혜자: 정부, 정책입안자, 구직자 등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고용동향 조사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2,798	10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고용동향 분석 및 전망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2,413	10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999	10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고령자고용 정책연구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650	10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7,433	9,076	1,643
고용동향조사	4,371	2,798	△1,573
중장기인력수급전망	1,048	-	△1,048
고용동향분석	365	-	△365
고용동향분석 및 전망	-	2,413	2,413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999	999	-
고령자고용정책연구	650	650	-
한국노동패널조사	-	2,086	2,086
노동시장분석센터	-	130	130

○ **고용동향조사: (2026년) 4,371백만원 → (2027년 정부안) 2,798백만원, △1,573백만원, △36.0%**

① 청년패널조사: ('26) 1,926백만원 → ('27) 1,956백만원(+30백만원, +1.6%)

- (설명) 조사사업비에 패널유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20백만원 반영, 분석시스템 운영·개선 45백만원(+5백만원), 통계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120백만원(+20백만원), 그 외 전년 수준 예산으로 편성
- (산출) 조사사업비 1,555백만원, 표본 설계 및 가중치 부여 연구비 15백만원, 자문회의비 및 보고서 인쇄비 52백만원, 학술대회 개최 124백만원, 연구보조원보수 31백만원, 여비 7백만원, 기타경비 7백만원, 분석시스템 운영·개선 45백만원, 통계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120백만원 등

②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 2,445백만원 → ('27) 842백만원(△1,603백만원, △65.6%)

- (설명) 격년 단위 조사로서 '27년 유지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조사사업비 1,634백만원 감액[고령화연구(고용)패널조사비에 패널유지인센티브프로그램 각 20백만원 반영], 가중값 무응답 대체용역비 40백만원(+10백만원), 자문회의비 및 인쇄비 52백만원(+26백만원), 그 외 전년 수준 예산으로 편성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격년조사 방식(**홀수해에는 유지조사**, 짝수해에는 기본조사 실시)

- (산출)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사업비 334백만원, 고령화고용패널 조사사업비 323백만원, 가중값 무응답 대체 용역 40백만원, 자문회의비 및 보고서 인쇄비 52백만원, 연구보조원 보수 55백만원, 여비 30백만원, 기타경비 9백만원 등

* 고령화연구패널 예산 추이(단위: 백만원)

: ('24 기본조사) 2,192 → **('25 유지조사) 1,140** → ('26 기본조사) 2,445 → **('27 유지조사(안)) 842**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26년) 1,048백만원 → (2027년 정부안) 0원(순감)

- (설명)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인한 순감
- (산출) 0원(순감)

○ 고용동향분석: (2026년) 365백만원 → (2027년 정부안) 0원(순감)

- (설명) 내역사업 통폐합으로 인한 순감
- (산출) 0원(순감)

○ 고용동향분석 및 전망: (2026년) 0원 → (2027년 정부안) 2,413백만원(순증, 내역사업 통폐합)

*** (~'26년)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고용동향분석(2개 내역사업) → ('27년) 고용동향분석 및 전망**

- (설명) 고용동향분석 및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내역사업을 통합, 자동화·AI 등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통계 기반 전망의 한계 보완 및 AI 노동 시장 영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전문가 자문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조사용역비 증액(+500백만원) 및 임차료 신규 편성(+5백만원),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산업별로 파악하기 위해 세부 업종의 현장모니터링 및 심층분석 연구비(+695백만원) 신규 편성, 계약직보수 임금인상률 반영 및 채용 기간 현행 반영, 통계분석 프로그램(SAS) 라이선스 인상률 반영,

태블로, STATA 등 연구지원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증액

- (산출) 중장기인력수급전망 430백만원, 테마 산업직업 인력수급전망 99백만원, 단기 일자리 전망 37백만원, 기술변화를 반영한 산업수요 분석 및 전망 525백만원, 포럼 및 자문위원회 42백만원, 고용동향 심층분석 강화(고용동향 브리프 등) 153백만원, 고용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25백만원, 연구용 행정DB 분석 32백만원, 세부산업별 AI 영향 심층분석 695백만원, 기타운영비 375백만원 등

○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2026년) 999백만원 → (2027년 정부안) 999백만원(전년동)**

- (설명) 전년 수준과 동일한 예산 편성
- (산출)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720만원, 빅데이터 연구 분석 및 정보 제공 114백만원, 기타비용 165백만원

○ **고령자고용정책연구: (2026년) 650백만원 → (2027년 정부안) 650백만원(전년동)**

- (설명) 전년 수준과 동일한 예산 편성
- (산출) 초고령화사회 고용실태 분석 190백만원, 초고령사회 고용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80백만원 등

○ **한국노동패널조사: (2026년) 0원 → (2027년 정부안) 2,086백만원(순증)**

- (설명) 조사비, 웹시범조사 용역비, 회의비 등 2,086백만원 반영('26 고보기금 예산과 동일수준)

* 사업 이관(고용보험기금 → 일반회계)

- (산출) 조사 관련 경비 1,842백만원, 웹 시범조사 용역비 10백만원, 회의비 9백만원, 학술대회 개최 104백만원, 위탁연구비 73백만원, 전산처리비 15백만원, 여비 16백만원, 인쇄비 15백만원, 운송비 1백만원

○ **노동시장분석센터: (2026년) 0원 → (2027년 정부안) 130백만원(순증)**

- (설명) 경비 130백만원 반영('26 고보기금 예산과 동일수준)

* 사업 이관(고용보험기금 → 일반회계)

- (산출) 여비 2백만원, 유인물비 9백만원, 전산처리비 57백만원, 연구자료 구입비 35백만원, 회의비 25백만원, 인쇄물 발송비 2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프로그램(코드번호)	세부사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지표명	가중치	구분	'23	'24	'25	'26	'27		
고용창출(1000)	고용동향조사분석(1040-300)	① 정책영향력(패널조사 활용실적)	1.0	목표	26,310	27,385	28,828	30,915	31,562	고용조사 홈페이지 자료 제공 건수 (60%), 전산 집계 목표치와 논문 활용 실적(40%)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측정	홈페이지 전산 집계/ 한국고용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실적	29,032	28,968	32,044	-	-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ㅇ **고용동향조사** (청년패널조사) - 청년패널2021 2차(2022) 조사 자료 정제(하반기 완료 예정) - 청년패널2021 3차(2023) 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작성 중지승인 신청 진행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고령화연구패널 2023년 9차 특별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 고령화고용패널 2021년 1차 기본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 - 고령화고용패널 2022년 2차 기본조사 자료 정제(하반기 완료 예정) - 고령화고용패널 2022년 1차 특별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ㅇ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2~2032 실시 - 디지털 기반기술 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분석 실시 -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주요 산업·직업별 정량적 인력수급 전망 실시 · 농촌지역 고용 특성과 농업 인력수요 전망 - 인력수급전망 포럼(3회)과 인력수급자문위원회(1회) 실시 예정 - 주요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 발표 · 주요 10개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여 연2회 발표(1, 7월) ㅇ **고용동향분석** -「고용동향브리프」(10회) , 고용이슈(계간) 봄호 및 여름호 발간 -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계획(Job to job 이동과 산업별 일자리 전환, 고용노동행정DB를 이용한 노무제공자의 경력변동 분석, 실업급여 수급자 분석: 제도 개편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를 위한 고용정책

	연구, 유통·물류 산업의 생산양식과 고용의 변화:ICT의 도입과 활용을 중심으로) - 행정DB 분석 보고서 발간(2023 KEIS-고용DB 분석) 계획 - 고용행정DB 자료집 계획(매월 - 고용보험통계현황, 워크넷 구인구직, 취업동향, 연 1회 – 고용보험통계연보, 워크넷통계연보,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ㅇ 빅데이터센터 구축** - 취업확률 예측모델 개발 및 실용정보 고도화 사업 진행('23.10월~) - 청년 선호 기업 분석('23.7월~12월) **ㅇ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현황 조사 연구 - 고령층 노동시장 조사자료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재취업지원서비스 실태와 과제
2024년	**ㅇ 고용동향조사** (청년패널조사) - 청년패널2021 3차(2023) 조사 자료 정제(하반기 완료 예정) - 청년패널2021 4차(2024) 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고령화연구패널 2024년 10차 기본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 고령화연구패널 2022년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 - 고령화고용패널 2024년 3차 기본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 고령화고용패널 2022년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 **ㅇ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 실시 -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주요 산업·직업별 정량적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직업구조, 외국인력, 고령층 등 - 인력수급전망 포럼(3회)과 인력수급자문위원회(1회) 실시 예정 - 주요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 발표 · 주요 10개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여 연2회 발표(1, 7월) **ㅇ 고용동향분석** -「고용동향브리프」(5회) , 고용이슈(계간) (4회) 발간 계획 -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행정통계와 경기 및 고용간 상관성 분석,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한 고용안정성 연구, 일자리 전환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고용보험과 사회보장 행정자료의 결합DB 구축 및 활용 연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동시장 분석 통합제공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계획 - 행정DB 분석 보고서 발간(2024 KEIS-고용DB 분석) 계획 - 고용행정DB 자료집 제작(매월 - 고용보험통계현황, 워크넷 구인구직, 취업동향, 연 1회 – 고용보험통계연보, 워크넷통계연보,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ㅇ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포럼('24.4월~'24.9월) - 디지털 고용서비스 중장기 전략 수립('24.8월~'24.12월)

	- 노무제공자와 플랫폼종사자 규모추정과 근로실태 조사 및 연구('24.5월~'24.12월)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24.4월~'24.12월) -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공공고용서비스 연계 전략에 대한 연구('24.4월~'24.12월) - ChatGPT의 고용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24.4월~'24.12월) - 고용24 연차보고서(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24.4월~'24.12월) - 고용보험서비스 사용자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24.4월~'24.12월) - 고용보험 민원신청 데이터 품질 개선방안 연구('24.4월~'24.12월) - MDM 품질 개선 및 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24.4월~'24.12월) -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고용보험 표본 데이터셋 구축('24.4월~'24.12월) - 채용확률 예측 모델 기초연구('24.4월~'24.12월) **ㅇ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실시 - 고령자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실시 - 산업별 고령자 고용 실태와 인력 활용 방안 조사 - 중장년·고령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성화 방안 연구 실시 - 중장년내일센터 고용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 해외 고령자 친화 인재관리시스템 해외사례 연구 수행(싱가포르)
2025년	**ㅇ 고용동향조사** (청년패널조사) - 청년패널2021 4차(2024) 조사 자료 정제 - 청년패널2021 5차(2025) 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진행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고령화연구패널 2025년 10차 특별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진행 - 고령화연구패널 개선연구 발간 및 배포 - 고령화고용패널 2025년 2차 특별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완료 - 고령화고용패널을 통한 중장년 노동시장 심층분석 발간 및 배포 **ㅇ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4~2034 실시 -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주요 산업·직업별 정량적 인력수급 전망 실시(외국인, 여성, 자동차 등) -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실시 - 단기 고용전망 실시 및 단기 전망 모형 개선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여 연2회(상/하반기) 발표 ・한국고용정보원의 단기전망분석모형(KEISIM: KEIS Simulation Model)의 개선 - '26년 노동시장 전망 실시(연간, 산업 대분류별) **ㅇ 고용동향분석** -「고용동향브리프」(5회), 고용이슈(계간) 봄호 및 여름호 발간 -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현장 체감형 노동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 행정DB 분석 보고서 발간(2025 KEIS-고용DB 분석) - 고용행정DB 자료집 제작(매월 - 고용보험통계현황, 워크넷 구인구직, 취업동

	향, 연 1회 - 고용보험통계연보, 워크넷통계연보,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ㅇ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상담용 잡케어 고용정보 시각화 및 UI/UX 개선 사업('25.7월~12월) - 디지털배지 기반 고용 실용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25.8월~'26.2월) - (고용24)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사용자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년차 현황 및 데이터 분석('25.3월~'11월) - 고용보험과 Qnet의 연계분석을 통한 고용24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 개발('25.3월~'11월) - 채용확률 예측모형 개발 2차 연구('25.4월~'11월) - 취업확률 예측모델링을 위한 인과추론 모형 개발 위탁연구('25.7월~'12월) - MDB 활용성 강화 연구 조사('25.9월~'12월) - MDB를 활용한 구직자 맞춤 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25.3월~11월) - MDB 기반 기업서비스 (확대) 방안 기초 연구('25.3월~11월) - 개인화된 경력개발 서비스 사례분석 및 잡케어 적용 방안 연구('25.3월~11월) - 직업훈련(HRD-Net) 현황 및 훈련과정 분석과 상담활용 방안 연구('25.3월~11월)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기반 임금 추정 모델 기초 연구('25.3월~11월) -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기반 직업 추천 모델 기초 연구('25.3월~11월) - 고용부-산하기관 디지털·데이터 공유 포럼 운영('25.5월~10월) **ㅇ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중고령자 잡케어 개선 방안 연구 실시 - 중장년내일센터 경력개발 교육콘텐츠 연구 - 중장년내일센터 역량강화 방안 연구 - IT 및 제조업 중고령자 노동시장 특성 및 효율적 인력운용방안 연구 - 중장년 퇴직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분석 - 2차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 과제 연구 -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연구
2026년	**ㅇ 고용동향조사** (청년패널조사) - 청년패널2021 5차(2025) 조사 자료 정제 - 청년패널2021 6차(2026) 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진행 -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청년패널조사로 본 청년노동시장 통계(II) 심층분석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고령화연구패널 2026년 11차 기본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진행 - 고령화고용패널 2026년 4차 기본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진행 - 고용패널을 활용한 노동시장 심층분석/패널자료를 활용한 중·고령층 노동시장 분석 심층분석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 **ㅇ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5~2035 실시 - 주요 산업·직업별 정량적 인력수급 전망 실시(돌봄, 방법론 연구 등) -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실시 - 단기 고용전망 실시 및 단기 전망 모형 개선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여 연2회(상/하반기) 발표 ・한국고용정보원의 단기전망분석모형(KEISIM: KEIS Simulation Model)의 개선 - '26년 노동시장 전망 실시(연간, 산업 대분류별) **○ 고용동향분석** -「고용동향브리프」(5회), 고용이슈(계간) 봄호 및 여름호 발간 -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고학력 여성 노동시장 특징과 정책과제, 고령층 전환기 연령(55~64세)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성과와의 관계분석, 임금직업포털 맞춤형 임금정보 분석) - 행정DB 분석 보고서 발간(2026 KEIS-고용DB 분석) - 고용행정DB 자료집 제작(매월 - 고용보험통계현황, 워크넷 구인구직, 취업동향, 연 1회 - 고용보험통계연보, 워크넷통계연보,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고용24 디지털 고용서비스 성과지표 프레임워크 연구 - 구직자 이력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모델링 연구 - 고용24 직업훈련 정보구조 재설계 실태조사 연구 - 고용24 연계 민간구인 데이터 정제 연구 - 2026년 일자리추천 및 잡케어 만족도 조사 - 고용노동 데이터분석 서비스 개선 사업 - 민간 공공 구인정보 통합 DB 구축방안 연구 - AI고용서비스 거버넌스 수립 사업 - 고용노동 웹로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 상담용 잡케어 시각화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 구매 **○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중장년 고용 네트워크 성과 분석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 - 2차베이비붐 세대의 격차분석, 중장년층 직업능력 변화와 경력 지원 방안 - 한국형 중년니트 현황과 지원 방안, 중장년 내일센터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 중장년 고용 포럼 운영(8회 예정)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고용동향조사 >

○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생산하고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신규 고용정책 수립 및 노동시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책 담당자, 관련기관 연구자들에게 고용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연구 및 관련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
- 청년 및 중장년층 등 특성별 교육·훈련, 직업이동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노동시장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조사자료를 활용한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정책 및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
○ 고용 관련 현안에 대하여 신속히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고용동향분석 및 전망>

○ 고용보험,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기관이 보유한 각종 DB를 정기적으로 분석·제공
○ 노동시장 이슈분석, 심층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고용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고용지원서비스 및 고용정책의 효과성 제고
○ 노동시장의 동향 및 핵심이슈에 대한 분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노동정책 수립 기여
○ AI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 근로자 특성 및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영향분석 강화를 통한 고용노동 정책 활용도 높은 정책동향 자료 생산
○ 국가인력수급전망의 총량전망(수요전망과 공급전망)과 부문별 전망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기여
○ 테마 직업·산업분야 인력수급전망 등에서 시의성 있는 단기 실태조사 진행을 통하여 고용정책 기초자료 제공
○ 불황업종에 대한 조기경보 등 업종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업종·직종별 단기(6개월)일자리 예보제 운영)
○ 경기 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구축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데이터 기반 노동시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
○ 고용 관련 내·외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데이터 분석, 이용자 조사·분석, 생성형AI 등 최신 기술 적용 연구를 통해 디지털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 AI 거버넌스 기본 체계 마련을 통해 안전한 AI 고용서비스 개발 및 신뢰성 확보

<고령자고용정책연구>

○ 초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중심 기능에서 정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고령자 고용정책 허브 기능 확대
○ 2차 베이비부머, 중년니트 등 특성별 맞춤 정부 고령자 정책사업 운영에서의 효율성과 고령자 고용정책 창출 성과 제고
○ 정책연구, 현장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28~'32년 제5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토대 마련

<한국노동패널조사>

○ 개인과 가구의 경제활동, 취업과 실업의 이동, 이직, 소득 변화 등 노동시장의 인과관계와 구조적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체적으로 추적·분석
- 노동 외적 요인(가구소득, 자산, 소비, 주거상태, 사교육비 등)과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일자리 만족도 등) 간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

○ 단면적인 국가통계(예: 경제활동인구조사 등)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 및 가구 수준의 복합적·미시적 행동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적 구축

- 직업훈련, 고용보험, 최소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도입에 따른 시계열적 영향 및 장기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평가
- 청년층의 첫 진입,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재취업, 고령층의 은퇴 과정 등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이행 특성을 다각도로 연구

○ 학술적 가치 및 국제 비교 가능성 확보

- 데이터가 원자료(Microdata) 형태로 대외 개방되어 국내 노동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고, 미국 NLS, 독일 SOEP 등 해외 패널조사와의 비교 연구 기반을 제공

<노동시장분석센터>

○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심층분석 이슈를 정책부서에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대응력을 높여 일자리 중심 정책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4.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1044-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44	30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6,869	1,665	1,665	311	311	△1,354	△81.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9,854	19,854	6,869	-	12,985	1,665	1,665	1,250	311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9,854	19,854	6,869	-	12,985	1,665	1,665	1,250	31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9,854	19,854	6,869	-	12,985	1,665	1,665	1,250	311
·기타보전금(310-14)	18,341	18,341	5,356	-	12,985	1,165	1,165	900	111
·민간위탁사업비(320-02)	1,513	1,513	1,513	-	-	500	500	350	2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사업목적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사업내용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경위	- (‘16.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결정 - (‘16.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 시행

	* 청년취업인턴제 예산·물량 활용하여 총 1만명 지원(인턴제 수료자 1만명) - ('17.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본 사업 시행(참여경로 다양화) - ('17.8월) 지원금 상향* (추경) * (청년) 2년간 600만원 → 900만원 (기업) 2년간 500만원(인턴 경로) 또는 600만원(취성패 경로) → 700만원 - ('18.1월) 제도개선(참여경로 폐지)을 통해 참여권 확대 - ('18.3.15.) 「청년일자리대책(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3년형' 신설 결정 * (2년형) 청년 300 + 정부 900(일반회계) + 기업 400(고보기금) = 2년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 기업 600(고보기금) = 3년 3,000만원 - ('18.6.1.)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시 - ('21.1.1.)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형 통합 시행 * (2년형) 청년 300 + 기업 300(고보기금) + 정부 600(일반회계) = 2년 1,200만원 - ('21.9.8.) 추경을 통해 2만명 지원 확대 및 기업 자부담 일부 정상화 * 50인 이상 기업 기업자부담 지원(80%) - ('22.1.1.) 기업 자부담 지원 축소 * (지원율) 30~49인 80%, 50~199인 50%, 200인 이상 미지원 - ('23.1.1.) 재정건전성 및 사중손실 등을 고려한 청년·기업적립금 상향 조정, 기업자부담 정상화(미지원) 등 제도 개편 *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일반회계 200, 고보기금 200) = 2년 1,200만원 - ('24.1.1.)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만 계속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7~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429,586	162,808	19,854	1,665	31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만 15~34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665	311	△1,354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665	311	△1,354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2026년) 1,665 → (2027년 정부안) 311백만원, △81.3%**

- (설명) 2023년까지 기가입자의 잔여 정부지원금 지급시기 도래분 지원
- (산출) 311백만원
  * 정부지원금(일반) : ('23년 가입자) 17백만원(33명x50만원),
    ('22년 가입자) 94백만원(67명x14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관리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등 위탁사업비 2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8.0	69.0	69.5	70.0	70.3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69.2	69.5	69.8	-	-			
	달성도	101.8	100.7	100.4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47.2	46.2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71.4	-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74.1	-	-	-	-			
	달성도	103.8	-	-	-	-			
청년고용률(%)	목표	43.8	-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46.5	-	-	-	-			
	달성도	106.2	-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8.0	-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4.6	-	-	-	-			
	달성도	95.0	-	-	-	-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시행('23.2월, 신규 2만명 목표) ○ '23년 청년 4,065명, 기업 2,964개소 신규가입 * 누적 청년 579,352명, 기업 128,206개소 가입, 297,795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4년	○ '24년 신규지원 중단(기가입자 7.6만명 계속 지원) * 누적 청년 580,924명, 기업 128,587개소 가입, 355,162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5년	○ '24년 신규지원 중단(기가입자 0.4만명 계속 지원) * 누적 청년 580,924명, 기업 128,587개소 가입, 377,979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6년	○ '24년 신규지원 중단(기가입자 0.1만명 계속 지원) * 누적 청년 580,924명, 기업 128,587개소 가입, 378,529명 만기공제금 수령('26.7월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기존 가입자 지속적 관리 및 지원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16. 7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제도를 개편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 청년취업인턴제의 물량(5만)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도입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입자 관리방안 마련(고용노동부) → 지도점검 등 참여자 관리(고용센터, 운영기관) → 공제금 적립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공제부금 운영 및 만기금 지급(중진공)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	2024년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연례적 실집행률 부진, 성과지표 달성도 미흡 등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2024년	○ 지적 :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조치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를 신설하여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2025년	○ 지적 : 청년 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확대 강화 필요 ○ 조치 : 정부차원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금융위 주관)을 신설하였으며,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29,586	429,586	-	-	429,586	330,919	77.0	-	98,667
2024년	162,808	162,808	-	△5,149	157,659	113,209	69.5	-	44,450
2025년	19,854	19,854	-	-	19,854	6,869	34.6	-	12,985
2026년	1,665	1,665	-	-	1,665	1,250	75.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98,667	집행 잔액
2024년	이용	△5,149	공무원 인건비 부족
2024년	불용	44,450	집행 잔액
2025년	불용	12,985	집행 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1)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45	30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영향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사업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영향평가사업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한국노동연구원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영향평가사업	1,334	1,329	1,329	1,309	1,299	△30	△2.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339	1,339	1,334	-	5	1,329	1,329	930	1,299
고용영향평가사업	1,279	1,279	1,279	-	-	1,329	1,329	930	1,299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	60	60	55	-	5	-	-	-	-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339	1,339	1,334	-	5	1,329	1,329	930	1,299
·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1,339	1,339	1,334	-	5	1,329	1,329	930	1,29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영향평가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이하 생략)
추진경위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주요 정부 정책을 고용의 시각에서 분석·평가할 필요성 증대(11년부터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3,374	1,039	1,339	1,329	1,29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영향평가센터(공모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329	1,299	△30
고용영향평가사업	1,329	1,299	△30

○ 고용영향평가 **(2026년) 1,329 → (2027년 정부안) 1,299백만원, △2.2%**

(1) 정책고용영향평가 : (2026년) 940 → (2027년 정부안) 910백만원, △30백만원

❶ 정책 고용영향평가(9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11년~ 계속)
- (산출) 60백만원 x 15개

❷ 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지속(10백만원, 전년 대비 △30백만원)

- (요구) 고용영향평가 연구결과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계속
- (산출) 고용영향평가 DB 구축 및 통계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콘텐츠 개발

(2)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 (2026년) 100 → (2027년 정부안) 100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산출식 개선연구를 '17년부터 유형별 2~3년 주기로 시행. '22년 재정사업 평가 제도 개편에 따른 산출식 간소화, 산출 방식 변경(노동부 일괄 산출 → 각 부처 스스로 산출) 등으로 정확한 산출식 마련 필요성 증대. '22년 이후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일자리사업(직업훈련, 창업지원)의 경우 최근 청년·여성 중심의 직업훈련 확대, 신산업 진출 지원 및 창업지원 강화 등 정책환경 변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산출식 개선 연구 필요

- (산출) 100백만원 = 50백만원 x 2개(직업훈련, 창업지원 2개 유형)

(3)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 : (2026년) 289 → (2027년 정부안) 289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15-64세 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0	69.0	69.5	70.0	70.3
실적	69.2	69.5	69.8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1.8	100.7	100.4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8.5	46.2
실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24개 과제)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4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6월) ·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18.)
2024년	·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8개 과제)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4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6월) ·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12.)
2025년	·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 (10개 과제)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5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7.1) ·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12.)
2026년	·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 중 (11개 과제)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5월), 평가실시 및 기확처·각 부처 전달(7.1)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재정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책 고용영향평가

- 대상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실시(평가센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협의(노동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노동부)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 가이드라인 마련(노동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평가센터→각 부처) → 예산 편성 시 활용(기획처 등)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371	3,371	-	-	3,371	3,371	100.0	-	-
2024년	1,039	1,039	-	-	1,039	1,039	100.0	-	-
2025년	1,339	1,339	-	-	1,339	1,334	99.6	-	5
2026년	1,329	1,329	-	-	1,329	930	7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해당없음
2024년	-	-	해당없음
2025년	불용	5	집행잔액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2)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1046-35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46	358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창출장려금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N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	-	-	-	24,244	14,505	14,505	순증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	-	-	-	-	-	-	-	14,505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	-	-	-	-	-	-	-	-	14,50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	-	-	-	-	-	-	-	14,505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14,50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목적	청년의 첫 일자리 숙련 형성 지원 및 국가 인적자원 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기업이 역량있는 청년을 채용,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청년 인건비 및 기업 멘토링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제3호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제2호
추진경위	○ AI는 초급 인력의 업무를 대체, 기업은 신입 채용 축소, 경력직 채용으로 대응하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경로 붕괴 →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첫 일자리를 지원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경력직 채용 비중 82.0%, 신입 공고는 2.6%(대한상의, '25.6) - 청년 노동시장 진입경로 붕괴는 사회 전체의 숙련 인력 약화로 이어짐 → 구조적 전환기 개별기업의 선택만으로는 인적자본이 충분히 재생산 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나고 있어 국가의 역할 필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7~2028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	14,50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AI 역량을 갖춘 청년과 그 청년을 AI 관련 직무에 채용해 숙련을 쌓을 수 있도록 양질의 업무를 제공하는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청년 첫 일자리 경력 형성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14,505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	14,505	14,505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	-	14,505	14,505

○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 (2026년) 0 → (2027년 정부안) 14,505백만원, 순증**

- (설명) 청년 첫 일자리 경력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청년 인건비·멘토링비, 교육비 등 지원

- (산출) 청년 인건비: 13,500백만원(750명x225백만원x8월)
  멘토링비 600백만원(750명x10만원x8월)
  청년 교육비 225백만원(750명x30만원)
  공단 전담인력 인건비 180백만원(5명x36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15~64세 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0	69.0	69.5	70.0	70.3
실적	69.2	69.5	69.8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만15~64세 취업자수/만15~64세 인구) x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고용률 평균(69.5%), 최근 4개년 증감분 평균(0.83%p), 대외통상환경 및 산업구조전환 등에 까른 고용불안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3%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청년(15세~29세) 경제활동참가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7.2	46.2
실적	신규	신규	신규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만15~29세 인구) x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6년도4월 경제활동참가율(47.0%)과 최근 3년 변동 추세율(-0.94%p), 정책 노력도(+0.1%p)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청년 750명 대상 실질적 경력·숙련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 출연금 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 운영·관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사업개요 첨부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사업 추진안

□ **(개요)** 기업이 **역량있는 청년을 채용,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시 **청년 인건비 및 기업 멘토링비 지원**
→ AI 분야 청년의 첫 경력 형성 지원 및 국가 인적자원 경쟁력 확보

□ **(사업 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3호

□ **(채용 기간)** 최대 2년

□ **(참여 청년)** AI 직업훈련* 수료 후 **미취업한 청년 등 750명**

* (예) K-디지털트레이닝(AI분야),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AI분야) 등

□ **(참여 기업)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기관)**

○ **(AX 솔루션 전문기업)** 정부 부처 **AX 지원사업*** **참여 AI 솔루션 전문기업(공급기업)**

* [예] AI 통합바우처(과기부), 스마트공장(중기부), 산업AI솔루션(산업부) 등

○ **(AX 지원사업 수혜기업)** 정부 지원 등을 통해 AX 진행 예정 기업

○ **(공공·사회적기업 등)** AX 및 유지보수 등 추진 중인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등

○ **(일반기업)** 자체 AX를 추진 중인 일반 기업 등

□ **(임금 수준)** 기업의 **동일가치노동 종사자(신입초봉)의 임금 수준**
⇒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 지원 + 기업이 차액 부담**

* [예] 임금 3,300만원 = 정부 지원 2,700만원(최저임금) + 기업 부담 600만

□ **(사업구조)** 고용노동부 정책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업·청년 모집, 선정, 비용지급 등 사업 전 과정 운영

□ **(예산) 14,505백만원** <일반회계>

사 업 명
(13) 한국잡월드운영지원(1049-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49	30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청년직업정보제공	한국잡월드운영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Y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Y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한국잡월드
		충청남도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잡월드운영지원	22,484	26,363	-	26,974	26,675	312	1.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2,484	22,484	22,484	-	-	26,363	26,363	20,559	26,675
·한국잡월드운영지원	21,484	21,484	21,484	-	-	23,363	23,363	20,559	26,675
-충남 청소년직업체험관 건립	1,000	1,000	1,000	-	-	3,000	3,000	-	-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2,484	22,484	22,484	-	-	26,363	26,363	20,559	26,675
·사업출연금(350-02)	21,484	21,484	21,484	-	-	23,363	23,363	20,559	26,675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	1,000	1,000	-	-	3,000	3,000	-	-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한국잡월드운영지원

사업목적	-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청소년, 청년 등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근로의식을 정립하고,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합한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 - (충남 청소년직업체험관 건립) 미래세대의 올바른 직업의식 형성 및 지역산업에 특화된 미래직업 체험기회 확대
사업내용	-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관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1.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 (충남 청소년직업체험관 건립) 충남 청소년직업체험관 건립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추진경위	○ '03. 9. 2. 대통령 지시(제38회 국무회의)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 뿐 아니라 청소년의 직업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지시 ○ '03. 9.22. 「청년실업현황과 대책」 대통령 보고 * 건전한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능력배양을 위한 종합프로그램 완성과 이를 위한 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 설립 검토 ○ '04. 1. 7. 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 설립계획 수립 ○ '04. 2.~7.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설립타당성 인정 ○ '05.11.29. 대통령 지시(대학특성화 추진방안 보고회의) * 상설 직업체험관을 만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세계를 구체적으로 체험토록 하여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10. 2. 2. "제3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간합동협의회"에서 교과부·고용부·복지부 공동 "진로교육종합계획" 보고 * 5월을 '진로의 달'로 지정하여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교사용 진로교육 매뉴얼에 한국잡월드 이용법 등을 포함 ○ '11. 7.25. 한국잡월드 설립 근거가 포함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 ○ '11.11. 3. 한국잡월드 법인 설립 ○ '12. 5.15. 한국잡월드 개관(시범운영 5.1.~5.13.) ○ '12.10.29.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1.11. 숙련기술체험관 개관 ○ '22. 6.10. 만들기체험관(메카이브) 개관 ○ '26. 1.21. 미래직업관 개관 ○ '26. 7.31. 누적 방문객 1천만명 돌파(공연·강연 등 부대행사 포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한국잡월드) '12년 ~ 계속, (충남청소년직업체험관) '24년~'29년

○ 총사업비 : 충남청소년직업체험관 42,248백만원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1,330	23,019	22,484	26,363	26,675

- 기타: (한국잡월드) 연간 약 100만 명의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진로프로그램 및 직업정보 등 제공, (충남청소년직업체험관) 지상 2층, 토지면적 19,888㎡, 건축연면적 5,91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잡월드, 충청남도

○ 사업 수혜자 : 어린이(만 4세이상) 및 청소년, 청년, 학부모, 교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출연	한국잡월드	26,675	수지차보전 ('26년 예산기준 68.4%)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의2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보조	충청남도 (지자체 보조)	-	정률보조 (50%)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6,363	26,675	312
한국잡월드운영지원	26,363	26,675	312

○ **한국잡월드운영지원 (2026년) 26,363 → (2027년 정부안) 26,675백만원, +1.2%**

- (설명) 미래세대 직업진로교육 책임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맞춤형 직업진로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대상 안전한 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한국잡월드는 수지차 예산기관으로 지출-수입 내역에 대하여 예산 요구, 전년대비 신재생에너지 및 시설 예산 1,814백만원 증,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482백만원 증, 전시체험관 운영 973백만원 증, 정보화 131백만원 증, 자체수입 목표 446백만원 증,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312백만원 증

- (산출) 2026년 26,363백만원 → 2027년 26,675백만원, 312백만원 증

[수지차 예산(지출-수입)]: (2026) 23,363 → (2027) 26,675백만원, 3,312백만원 증

① 수입 : (2026) 11,861 → (2027요구) 12,307백만원, 446백만원 증

(1) 자체수입 : (2026) 9,554 → (2027요구) 10,654백만원, 1,100백만원 증

- '25년 자체수입 목표대비 91.4% 수준 달성
- '27년 자체수입 목표 1,100백만원 증(입장수입 700, 광고수입 200, 부대수입 200)

(2) 이월결산잉여금 : (2026) 2,307 → (2027요구) 1,653백만원, △28.3%

- 산식 적용{최근3년 평균잉여금 + (전기 실결산잉여금 - 전기 가결산잉여금)}, △654

② 지출 : (2026) 35,224 → (2027요구) 38,982백만원, 3,758백만원 증

(1) 인건비 : (2026) 4,918 → (2027요구) 5,145백만원, 227백만원 증

(2) 경상비 : (2026) 2,689 → (2027요구) 2,774백만원, 85백만원 증

(3) 사업비 : (2026) 27,617 → (2027요구) 31,063백만원, 3,446백만원 증

- 콘텐츠 개발(어린이·청소년, 창의 융복합 콘텐츠 품질 유지) 1,468백만원(전년 동)
- 체험관 운영(체험관운영대행, 체험재료비, 메카이브 운영 등) 21,774백만원(973백만원 증)
- 숙련기술체험 콘텐츠 리뉴얼 및 대행운영, 재료비 등 3,723백만원(46백만원 증)
- 정보화 682백만원 (기간 만료 정보화시스템 개편 등 131 증)
- 신재생에너지(법령 의거 태양광 의무설치) 및 시설 예산 2,570백만원(1,814백만원 증)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마케팅·홍보 사업 846백만원(482백만원 증)

○ 충남청소년직업체험관 건립 (2026) 3,000 → (2027 정부안) 0원

- 실시설계(토목건축) 및 운영 세부 설계비: (2026) 3,000 → (2027요구) 0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62만	62만	62만
실적	신규	신규	62만	-	-
달성도	신규	신규	100%	-	-

- **측정산식 :** 전시체험관 유료 입장객 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잡월드 내부 통계 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방문객 700만명 돌파('23.5.15) - 숙련기술 스타트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운영(499회, 12,942명) - 인턴IN메타, 메타버스 청년체험 프로그램 개발 - 제5대 이병균 이사장 취임 ('23.7.31)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년	- ‘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등급(91.1점) 달성 - 미래직업관 구축 추진 - 입장객 780만 명 돌파(’24.6.30)
2025년	-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등급(94.4점) 달성 - ‘24년 고용부 산하공공기관 경영평가 ’B‘ 등급 달성 - ‘24년 기재부 주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 등급 달성(92.36점) - 미래직업관 1차 오픈(5월 1일자) - 입장객 900만 명 돌파(’25.7.31)
2026년	- ‘25년 고용부 산하공공기관 경영평가 ’B‘ 등급 달성 - ‘25년 기재부 주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 등급 달성(92.44점) - 미래직업관 개관(’26.1.21.) - 입장객 1천만 명 돌파(’26.7.31)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청년이 첨단기술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미래 직업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직업·진로 탐색 허브이자 직업체험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AI·반도체·로봇 등 혁신적 미래 유망 기술과 직업을 한자리에서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미래직업관(’26.1.정식오픈)을 중심으로 한 공공·교육·민간 협력 모델의 확산은 직업체험 콘텐츠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진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도 미래 직업을 지속적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직업·진로 정보 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까지 기투자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2028년 이후 투자계획	합계
‘24 ~ ’29	0	500	1,200	3,000	0	37,548	42,248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잡월드

- 고용노동부 : 사업기준 및 지침마련
- 한국고용정보원 : 출연
  ※ 출연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3항 :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한국잡월드 :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

국고보조금 신청	충청남도 → 고용노동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충청남도 →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교부	고용노동부 → 충청남도
보조금(국비+지방비) 집행(재배정)	충청남도 → 아산시(재배정)
사후관리	충청남도, 아산시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3 회계연도)	2024년	○ 의견 : (우수) 전년대비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외부의 평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도가 상당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과 2가지 이상 사회적 가치 구현 기여가 인정됨 ○ 결과 : 조치사항 없음
재정사업 자율평가 ('24 회계연도)	2025년	○ 의견 : (우수)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추진방식이 효율적임. 경기도 교육감 표창장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실적이 있음 ○ 결과 : 조치사항 없음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5 회계연도)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청소년·청년의 진로탐색 지원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성과지표 및 재정구조 개선, 충남청소년직업체험관 건립 집행 관리 개선 등 필요 ○ 결과 :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 성과체계 고도화 추진, 충남청소년 직업체험관 집행 관리 강화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23 회계연도 결산	2024년	○ 지적 :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사고이월 최소화 ○ 조치 : 사전컨설팅 등 내부의 예산통제 강화 및 면밀한 수지분석을 통한 관리 강화로 회계연도 내 사업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 ('24) 9건(전년대비 △74%(26건)), 872백만(전년대비 △61%(1,360백만)) ('25) 3건(전년대비 △67%(6건)), 35백만(전년대비 △96%(837백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1,330	-	-	-	21,330	21,330	100	-	-
2024년	23,019	-	-	-	23,019	23,019	100	-	-
2025년	22,484	-	-	-	22,484	22,484	100	-	-
2026년	26,363	-	-	-	26,363	20,559	78.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특이사항 없음
2024년	-	-	특이사항 없음
2025년	-	-	특이사항 없음
2026년	-	-	특이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4) 해외취업지원(1051-30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51	304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Y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운영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해외취업지원	47,109	44,128	44,128	37,590	34,820	△9,308	△21.1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7,116	47,116	47,109	-	7	44,128	44,128	40,104	34,820
·해외취업지원	39,288	39,288	39,288	-	-	36,583	36,583	32,926	27,892
·해외취업운영	7,828	7,828	7,281	-	7	7,545	7,545	7,178	6,928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7,116	47,116	47,109	-	7	44,128	44,128	40,104	34,820
·일반수용비(210-01)	9	9	6	-	3	9	9	7	9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4	5
·국외업무여비(220-02)	18	18	15	-	3	17	17	17	17
·사업추진비(240-01)	8	8	7	-	1	8	8	7	8
·민간경상보조(320-01)	4,160	4,160	4,160	-	-	3,878	3,878	3,878	3,350
·사업출연금(350-02)	42,916	42,916	42,916	-	-	40,211	40,211	36,191	31,43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해외취업지원

사업목적	해외취업 희망 청년 대상 연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착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해외 취업 지원
사업내용	· (K-Move스쿨)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 (국내재취업지원) 해외취업 후 국내 복귀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세미나 및 멘토단 운영, 이력서 첨삭 및 모의 면접 등 1:1컨설팅, 취업 박람회·만남의 장 등 운영

(1-2) 해외취업운영

사업목적	해외취업 희망 청년 대상 상담·알선,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취업 연계
사업내용	· (해외통합정보망) 해외취업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월드잡플러스 사이트) · (국내해외취업지원) 온라인 상담센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국가별 트렌드 및 유망직종 등을 반영한 해외취업 컨설팅 실시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수한 해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외 K-Move센터 운영, 글로벌취업상담회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추진경위	○ 추진경위 - '98.3월 "실업문제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공공해외 취업업무 재개 추진 - '99.10월 공공해외 취업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담당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 시달(국조실) - '06.3.22 해외취업촉진을 위하여 해외취업연수사업 확대키로 결정(제4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 - '08.3월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 '08.4.2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종합계획 확정 - '10.6.8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실무협의회)

	- ‘11.1.11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해외취업활성화 정부·민간 합동회의) - ‘12.2.24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제11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13.3.29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추진(국정과제) - ‘13.10.24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4.7.23. 교육부와 ‘세계로 프로젝트’ 통합 MOU 체결(’15년~) - ‘14.11.21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5.11.27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6.12.14 ’청년 해외취업 성과 및 계획‘(경제관계장관회의) - ‘18.3.15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발표(청년일자리대책) - ‘22.3월 청년 취업애로계층 참여 확대를 위한 ”대학연합과정“ 신설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46,786	57,540	47,116	44,128	34,82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15세~34세 미만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해외취업지원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31,431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해외취업운영 (해외촉진인프라지원)	보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350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4,128	34,820	△9,308
○ 해외취업지원	36,583	27,892	△8,691
① K-move스쿨	24,273	19,100	△5,173
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1,310	7,400	△3,910
③ 국내재취업지원	1,000	1,392	+392
○ 해외취업운영	7,545	6,928	△617
① 해외통합정보망	911	875	△36
② 국내해외취업지원	994	935	△59
③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4,278	3,960	△318
④ 사업운영비	1,362	1,158	△204

○ 해외취업지원 (2026년) 36,583 → (2027년 정부안) 27,892백만원, △23,.8%

① (K-move 스쿨)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지원인원 2,000명, 연수숙박비 876명

* 연수기관과 소재지를 달리하여 참여하는 연수생의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해 숙박비 일부 지원(월 20만원)

** 출연기관 반복적 이월 방지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6년부터 후지원금 예산 확보·편성

- (산출) 19,100백만원 = ('26년 후지원금) 5,396백만원 + ('27년 선지원금) 13,704백만원

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인원 1,900명(취업자 1인당 400만원 지원)

- (산출) 7,400백만원= '26년 취업자 2,800백만원 + '27년 취업자 4,600백만원

* 지원금액 변경 : ('26년) 1인당 500만원 → ('27 정부안) 1인당 400만원

③ (국내재취업지원) 국내 복귀자 대상 국내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세미나, 1:1 컨설팅, 취업 박람회 및 멘토단 운영 등

- (산출) 1,392백만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742백만원, 글로벌 인재 매칭 지원 300백만원, 귀국예정자 국내 복귀 프로그램 제공 150백만원, 국내 복귀자 관리 등 운영 200백만원)

○ 해외취업운영 (2026년) 7,545 → (2027년 정부안) 6,928백만원, △8.2%

① (해외통합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필수솔루션 구입, 콘텐츠 관리

- (산출) 875백만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668백만원, 필수솔루션 구입 86백만원, 콘텐츠 관리 121백만원)

② **(국내해외취업지원)** 컨설팅 및 역량향상 지원, 사업안내 등 정보제공, 해외구인 및 채용공고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산출) 935백만원(컨설팅 및 역량향상 지원 496백만원, 사업안내 등 정보제공 349백만원, 해외구인 및 채용공고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신규) 90백만원)

③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해외 K-Move 센터 운영 및 글로벌취업상담회, 해외현지인재채용설명회 및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 등

- (산출) 3,960백만원(해외 K-Move 센터 운영 3,000백만원, 글로벌취업상담회 350백만원, 해외현지인재채용설명회 200백만원,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 200백만원, 해외취업 현지 지원 및 관리(신규) 210백만원)

④ **(사업운영비)** 해외취업지원사업 운영 등

- (산출) 1,158백만원(고용노동부 운영비 39백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운영비 1,11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해외취업자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3,800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 **측정산식 :** 해외취업자수(연수, 알선, 기타 지원 등)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해외취업지원 예산에 따라 해외취업지원 목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해외취업 5,463명(연수 1,707명, 알선취업 등 3,756명)
2024년	- 해외취업 5,720명(연수 1,605명, 알선취업 등 4,115명)
2025년	- 해외취업 6,607명(연수 1,599명, 알선취업 등 5,008명)
2026년 8월	- 해외취업 2,614명(연수 735명, 알선취업 등 1,879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해외 구인처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인재로 양성하는 K-Move스쿨(2,000명) 지속 추진

  * 연수숙박비('27년 876명) 지원으로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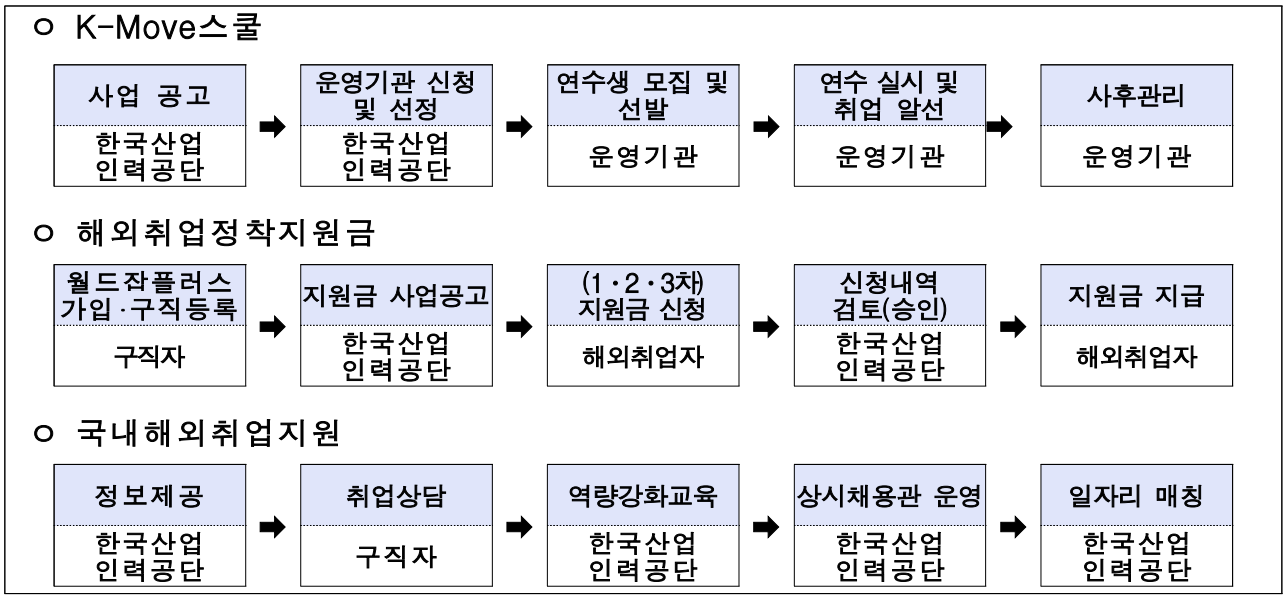
- 정착지원금('27년 1,900명)을 통해 청년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 및 근속 지원

- 국내재취업지원('27년 1,265명)을 통해 국내 복귀자 등 지원 및 사후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일자리 평가	2026년	○ 의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인력난 해소까지 연결하는 순환형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 필요 ○ 결과: 예산 구조 및 서비스 개편 -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의 예산 및 규모 양적 확대*, 타 국내 취업지원 서비스와 차별화를 위한 국내복귀자 특성 기반의 서비스 기능 개편 추진 * 국내재취업지원사업 예산 ('26) 1,000백만원 → ('27) 1,392백만원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 질적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로 체질 개선 필요 ○ 결과 :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예산구조 개편 - '25년부터 후지원금 전액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 및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제도개선, 평균연봉, 해외취업자 만족도 지표 등의 성과지표를 통해 질 관리 추진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결산	2024년	○ 지적: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액연봉자 지원 문제 개선 필요 ○ 조치: '26년 지원요건 개선완료(가구소득 8분위 이하 → 3분위 이하)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6,786	46,786	-	-	46,786	46,742	99.9	-	44
2024년	57,540	57,540	-	-	57,540	55,535	96.5	-	2,005
2025년	47,116	47,116	-	-	47,116	47,109	99.9	-	7
2026년	44,128	44,128	-	-	44,128	40,104	90.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46,786	- 해당없음
2024년	-	57,540	- 해당없음
2025년	-	47,116	- 해당없음
2026년	-	44,128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5)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1051-30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51	306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일반)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직업정보제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지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한국고용정보원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4,559	4,327	4,327	4,737	4,737	410	9.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559	4,559	4,559	-	-	4,327	4,327	3,827	4,737
·직업정보제공	770	770	770	-	-	740	740	654	1,150
·직업지도	3,789	3,789	3,789	-	-	2,380	2,380	2,104	2,380
·청년고용지원	-	-	-	-		1,207	1,207	1,069	1,207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559	4,559	4,559	-	-	4,327	4,327	3,827	4,737
·사업출연금(350-02)	4,559	4,559	4,559	-	-	4,327	4,327	3,827	4,73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직업정보제공

사업목적	청소년, 성인의 진로 및 경력설계, 진로상담, 구인·구직에 기여
사업내용	직업정보 개발·보급, 미래직업세계연구,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 개발 및 보급

(1-2) 직업지도

사업목적	구직자의 진로인식 제고, 올바른 진로선택 지원, 생애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기여
사업내용	직업심리검사 개발·보급, 생애주기별 진로·경력 콘텐츠 개발,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매체 개발·보급

(1-3) 청년고용지원

사업목적	청년정책 실행 지원
사업내용	청년도전사업 참여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운영기관 설문조사 및 FGI 실시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항 제1호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고용정책기본법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추진경위	○ ('79) 효율적인 취업알선, 직업지도 및 직업연구를 위해 국립중앙직업안정소 설립 ○ ('83) 직업세계 전달 및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 지원 사업 시작 ○ ('95) 중앙고용정보관리소로 개편 ○ ('01)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여 고용정보 운영사업 지정 ○ ('05) '05년까지 일반회계, '06년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 ○ ('06)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독립·출연기관화→한국고용정보원 출범 ○ ('13) "新직업, 新산업 발굴 육성"으로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발굴 ○ ('15) 제2차 정부육성 신직업 발표(12.14) ○ ('16) 정부 청년고용대책('16.4) 수립 및 실행 지원 ○ ('16)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 ○ ('16)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16.10월) ○ ('16) 고용서비스 인력 역량강화를 주요 업무로 지정 ○ ('17) 41개 대학일자리센터 평가실시('17.4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운영 ○ ('18)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18.3월) ○ ('19) 서울시 청년허브와 MOU 체결 및 청년정책포럼 개최 ○ ('20) 관계부처 합동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 ('20) 청년기본법 제정(20.2), ○ ('21) 「청년고용활성화방안」 발표('21.3), 「청년특별대책 발표('21.8) ○ ('22) 새 정부 국정과제(90-2. 청년취업지원 혁신) 관련 대학생 취업·경력설계 지원 ○ ('23) 국정과제(90-2. 청년취업지원 혁신) 관련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지원 등 ○ ('24) 신성장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가능 직업 발굴 등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6,082	5,378	4,559	4,327	4,73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청소년, 실업자, 구인업체, 진로지도 담당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직업정보제공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1,150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직업지도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2,380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청년고용지원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1,207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327	4,737	410
직업정보제공	740	1,150	410
직업지도	2,380	2,380	-
청년고용지원	1,207	1,207	-

○ **직업정보제공 (2026년) 740 → (2027년 정부안) 1,150백만원(410백만원 증), +55.4%**

- (설명) 변화하는 직업환경을 반영한 신뢰성 높은 직업정보 제공과 경력개발 중심의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 제공
- (산출)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 및 분석 (910백만원, 410백만원 증)

○ **직업지도 (2026년) 2,380 → (2027년 정부안) 2,380백만원(전년동)**

- (설명) 효과적인 진로 및 경력 개발 지원, 생애단계별 취업역량 및 구직 의욕 향상 지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직업진로지도 역량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로·경력개발 콘텐츠 확산

○ **청년고용지원 (2026년) 1,207 → (2027년 정부안) 1,207백만원(전년동)**

- (설명) 청년도전사업 참여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운영기관 설문조사 및 FGI 실시 등 통한 청년정책 실행 지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직업정보 콘텐츠 이용건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3,000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 **측정산식 :** 기준치+1*5개년 표준편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평균 직업정보 콘텐츠 다운로드 건수
- **자료수집방법/출처 :** KEIS 홈페이지 엑셀데이터(다운로드 건수)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직업정보제공> ○ 직업연구강화 및 정보제공 활성화 - 2024 한국직업전망 발간 - 온라인 직업정보 콘텐츠 개발(VR포함) - 미래지향적 진로탐색(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 개발) <직업지도> ○ 직업심리검사,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 진로·경력개발 자료 제작 ○ 중소기업 청년고용 실태 분석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부 등 정부 부처의 청년고용 정책 인지도, 참여도 및 만족도, 대플센터 이용 현황,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 조사 ○ 세대상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연구 -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에 근거하여 청년층의 진로 탐색 및 경력 개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2024년	<직업정보제공> ○ 직업연구강화 및 정보제공 활성화 - 2025 한국직업전망 발간 - 온라인 직업정보 콘텐츠 개발(VR포함) <직업지도> ○ 직업심리검사 개발·보급 ○ 생애주기별 진로·경력개발 콘텐츠 개발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

2025년	<직업정보제공> ○ 일자리전망 콘텐츠 개발 ○ 온라인 직업정보 콘텐츠 개발 ○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6판 5차년도 조사 ○ 직업별 활용 기술(소프트웨어) 및 도구(기기·장비) 목록 개발 2차연도 ○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 및 심층분석 ○ 미래직업세계 연구: AI 시대의 업무환경 변화와 혁신 전략 연구 수행 중 ○ 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청년 맞춤형 직업 정보 개발 <직업지도> ○ 직업선호도검사 2차년도 개정 ○ 취업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 등)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프로그램 사례·자료 개발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중장년 대상 교육과정 개발
2026년	<직업정보제공> ○ AX에 따른 직업연구 및 분류 개선 - AI 확산에 따른 변화 분석 및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선 추진 <직업지도> ○ 생애단계・지역・산업별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강화 - 노동시장 환경・패러다임 분석 및 생애주기별 경력이동 특성 분석을 통한 주도적 경력관리 지원체계 구축 - 경력입직기・전환기 구직자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중장년 구직자 재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맞춤형 취업특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AI·디지털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인력(직업상담사 등) 역량 강화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직업상담사 대상 전문가 멘토링, 슈퍼비전 등 실시 -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전문인력 대상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19개 교육과정, 총 33회) <청년고용지원> ○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연계 사례 발굴 연구 ○ 대학 취업지원서비스에서의 AI 활용 실태 분석 연구 ○ 「청년의 이직 성과와 일 변화」연구 ○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관련 조사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직업정보제공**

- 미래직업세계 변화 대응 직업발굴·직업변화 조사분석, 일자리 전망 연구
- AI(인공지능) 기술도입 확산에 따른 미래 직업세계변화 요인 및 직무·역량변화 연구
- 한국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 관리
-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 및 '25년 조사결과 심층분석
-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발간 6차 연도 조사

○ **직업지도**

- 직업심리검사 개발·보급(AI기반 적응형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개발, 심리검사 결과 상담 활성화를 위한 DB 기반 FAQ 개발)

- 직업심리검사 이용자 편의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사 서비스 고도화·디지털 기능 강화
- 생애주기별 진로·경력 콘텐츠 개발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청년층 재취업 준비도 진단을 통한 사이버진로교육센터 교육과정 자동 추천 서비스 제공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서비스 활용 제고를 한 반응형 웹 개발 및 외부 기관(대학, 지자체, 유관기관 등) 콘텐츠 연계·제공 확대
  · 중장년층(경력전환기) 재취업 설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단계적 개발 및 구직자 실시간 화상강의 기획·운영
- 진로지도 활성화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 확대
  · 경력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디지털 역량 향상 교육 제공,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별 운영체계 개선 방향 모색
  · 구직자·재직자·고용서비스 종사자 등 정보제공을 위한 웹진 발간
  · 진로지도 유관학회 학술대회 지원 및 진로지도 세미나 개최

○ **청년고용지원**

- 진로·경력개발 자료 제작
- 신직업·미래직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청년 진로·경력개발 현장 연구
  · 기업채용동향조사, 생애경력개발지원 공공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현장 연구
- 청년고용정책 운영 모니터링 및 분석
  · 고용센터 청년 취업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및 참여자 유형 개선안 도출
  · 청년도약장려금 고용성과 분석
  · 청년고용관련 정부 정책 실효성 제고 및 발전 방안 연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기준 및 지침 수립(고용노동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재배정(고용노동부)
○ 사업수행(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재정사업 자율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거시지표(고용률 등) → 사업 고유 지표(직업정보 활용 건수, 온라인교육 수료율 등)로 성과지표 재설정 및 환류체계 구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6년	○ 양호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082	6,082	-	-	6,082	6,082	100.0	-	-
2024년	5,378	5,378	-	-	5,378	5,378	100.0	-	-
2025년	4,559	4,559	-	-	4,559	4,559	100.0	-	-
2026년	4,327	4,327	-	-	4,327	3,827	88.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해당없음
2024년	-	-	해당없음
2025년	-	-	해당없음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6) 공정채용문화확산(1051-30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채용기반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51	307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및 훈련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공정채용문화확산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공정채용문화확산	1,237	1,150	1,150	3,850	1,650	500	43.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774	2,774	1,237	-	1,537	1,150	1,150	927	1,650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지원	2,600	2,600	1,064	-	1,536	900	900	754	1,400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174	174	173	-	1	250	250	173	25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774	2,774	1,237	-	1,537	1,150	1,150	927	1,650
· 일반용역비(210-14)	260	260	222	-	38	260	260	154	260
· 관리용역비(210-15)	174	174	173	-	1	250	250	173	25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700	1,700	202	-	1,498	-	-	-	-
· 사업출연금(350-02)	640	640	640	-	-	640	640	600	1,14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공정채용문화확산)** 불공정채용을 근절하고 능력중심의 공정채용문화가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공정채용 인프라구축 지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운영 업무(점검, 제재 부과 등) 전산시스템 운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추진경위	○ 공공·민간의 불공정채용 근절 및 공정한 채용질서 및 문화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사업'에서 '22년부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이관)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3,904	5,631	2,774	1,150	1,65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민간 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공정채용인프라 구축 지원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1,140백만원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50	1,650	500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지원	900	1,400	500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250	250	-

○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2026년) 900 → (2027년 정부안) 1,400백만원, +43.5%

- (설명)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제도 운영 실태조사 ▲기업 임원 및 CEO, 인사담당자, 평가위원 교육 ▲공정채용 우수사례 확산 등 채용문화 확산 지원
- (산출) ▲공정채용 운영실태조사: 240백만원, ▲공정채용 기업교육: 400백만원, ▲채용모델 최신화: 500백만원, ▲공정채용문화확산지원: 260백만원

○ 공정채용 전산시스템 운영: (2026년) 250 → (2027년 정부안) 25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운영 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산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관리용역비 25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공정채용 기업만족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3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 **측정산식 :** 공정채용 기업교육 참여자 만족도(인사담당자, 평가위원)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3개년 평균 만족도 증가율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컨설팅 실시 완료, 채용모델 개발·고도화 20개 분야 완료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ISP 수립 완료('24년 시스템 개발 예정)
2024년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컨설팅 실시 완료, 채용모델 개발·고도화 20개 분야 완료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계약 체결 완료, 전산시스템 개발 착수
2025년	- (공정채용 기업교육) 기업 CEO 및 임원, 인사담당자, 평가위원 대상 공정채용 기업교육 실시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전산시스템구축, 시스템 운영('25.2월~)
2026년	- (공정채용 모니터링) 공공기관 342개소 상시, 민간채용포탈 11개사 채용공고 모니터링 - (공정채용 기업교육) 기업 CEO 및 임원, 인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기업교육 실시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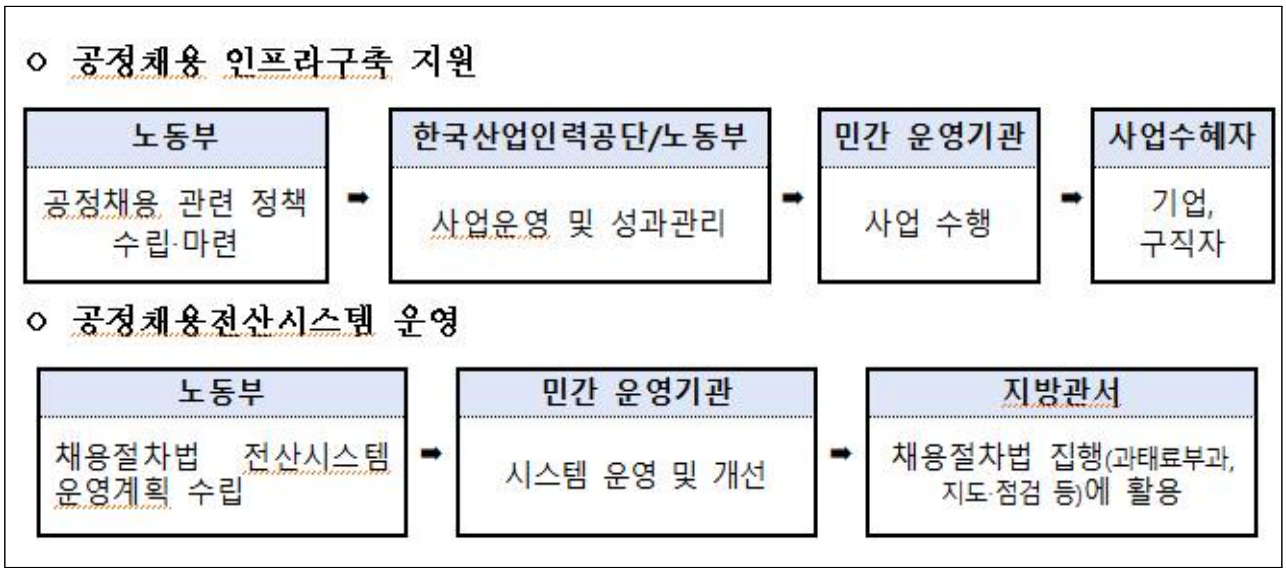
○ **(공정채용 인프라구축 지원)** 바람직한 채용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의 유능한 인재 채용 및 청년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채용절차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수행, 신속한 민원처리로 채용절차법 현장 안착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 평가	2026년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제 채용시장의 상황이나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 필요 (평가등급: 개선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 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904	3,904	-	-	3,904	3,901	99.9	-	3
2024년	5,631	5,631	-	-	5,631	5,304	94.2	-	327
2025년	2,774	2,774	-	-	2,774	1,237	44.6	-	1,537
2026년	1,150	1,150	-	-	1,150	927	80.6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3	집행률 99.9%(집행잔액)
2024년	불용	327	집행률 94.2%(집행잔액)
2025년	불용	1,537	집행률 44.6%(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로 집행률 저조)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7) 청년미래플러스(1051-30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채용기반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51	308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및 훈련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청년 미래플러스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청년채용기반과	한국산업인력공단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청년미래플러스	1,991	4,060	4,060	3,451	3,451	△609	△1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000	2,000	1,991	-	9	4,060	4,060	4,060	3,451
·청년미래플러스	2,000	2,000	1,991	-	9	4,060	4,060	4,060	3,45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000	2,000	1,991	-	9	4,060	4,060	4,060	3,451
·일반수용비(210-01)	50	10	2	-	8	-	-	-	-
·일반용역비(210-14)	-	40	39	-	1	-	-	-	-
·민간경상보조(320-01)	1,950	1,950	1,950	-	-	-	-	-	-
·사업출연금(350-02)	-	-	-	-	-	4,060	4,060	4,060	3,45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청년미래플러스

사업목적	산업계와 협업하여 구직 청년의 취업, 재직 청년의 산업 내 경력 개발 및 안착 지원
사업내용	○(구직청년) 산업특화 실무중심의 취업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하여 회원사 등 취업 연계 지원 ○(재직청년) 중소·중견 기업 재직청년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 멘토링 경력설계 지원을 통해 산업 내 (중간)관리자로 성장을 지원 ○(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의3, 제8조의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추진경위	○2025년 신규사업 추진 - 청년의 취업부터 산업내 경력개발까지 토탈케어로 청년성장 및 산업인재 육성 유도 ○2026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으로 통합 운영 - 2025년 직장적응지원 사업을 미래플러스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구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5~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2,000	4,060	3,45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청년(15~34세), CEO, 인사담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청년미래플러스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3,451 백만원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060	3,451	△609
청년미래플러스	4,060	3,451	△609

○ 청년미래플러스 **(2026년) 4,060 → (2027년 정부안) 3,451백만원, △15%**

- (설명) 구직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청년 대상 산업(직무) 특화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26년 대비 15% 감액

- (산출) 3,451백만원
  ① 프로그램비: ('26년) 3,960백만원 → ('27 정부안) 3,351백만원(△609백만원)
  ② 운영비: ('26년) 100백만원 → ('27 정부안) 100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청년미래플러스(참여자 만족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신규	신규	81.0점
실적	-	-	신규	-	-
달성도	-	-	신규	-	-

- **측정산식 :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026년도 목표치 기준**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 설문조사/한국산업인력공단**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2025년	5개 운영기관 지원
2026년	7개 운영기관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재직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 멘토링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해 재직청년의 실무역량 향상 및 직무 전문성 강화

○ 현직자 멘토링을 통한 경력성장 지원

-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년의 경력 개발 방향 설정 지원

○ 산업 내 청년 핵심인재 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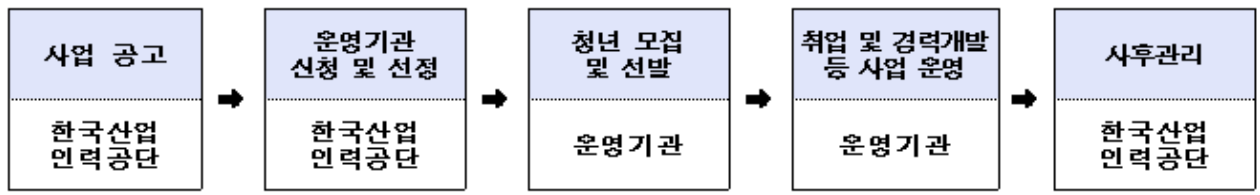
- 재직청년의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경력성장을 지원하여 산업 현장에 필요한 청년 인재 육성 및 핵심인재로의 성장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청년 미래플러스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통합대상 사업의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조정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024년									
2025년	2,000	2,000	-	-	2,000	1,991	99.6	-	9
2026년	4,060	4,060	-	-	4,060	4,060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불용	9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8) 건설근로자고용지원(1060-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일반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60	30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건설근로자고용지원	건설근로자고용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건설근로자공제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1,480	1,480	2,121	1,48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1,480	1,480	1,036	1,480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	-	-	-	-	200	200	140	200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	-	-	-	1,280	1,280	896	1,28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1,480	1,480	1,036	1,480
·일반연구비(260-01)	-	-	-	-	-	200	200	140	200
·일반용역비(210-14)	-	-	-	-	-	1,280	1,280	896	1,28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목적	건설경기 변동 상황 및 고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장기 건설 인력수급 동향, 숙련 인력 공급부족 직종을 파악하는 등 훈련사업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내용	건설근로자 인력수급 모형 개발 및 중·장기 전망,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등

(1-2)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사업목적	건설업 공급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을 통한 숙련 기능인의 손끝 기술 전수 체계 마련 및 청년층 신규 인력 진입 촉진
사업내용	청년·여성 등 진입 희망자, 재직자 등 대상 현직 팀·반장을 등을 활용한 훈련 및 현장실습, 또래 네트워크 지원 등 현장성을 반영한 훈련과정 운영 * ①실생활공간 과정(입문과정), ②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전문과정), ③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설근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건설근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추진경위	○ 건설업은 他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5번째 규모)가 크고,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10.5명)가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나, * 업종별 취업자 규모('24년, 만명): 제조 445.5 > 도소매 321.5 > 보건복지 294.1 > 숙박음식 232.2 > 건설업 206.5 - 최근 건설현장은 고령화와 숙련기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진입연령: ('20) 36.6세 → ('24) 39.4세, 주연령대: ('20) 49.3세 → ('24) 51.2세 - 특히 향후 내국인 건설인력은 매년 35만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청년·여성 등의 건설업 진입을 위한 지원 사업의 부재로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부족 ○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5~'29)」 수립·추진('25.2월, 관계부처 합동) -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중장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고용안정·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건설업 인력수급 전망,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전망을 제시하고, 건설업에 청년·여성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및 숙련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6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1,480	1,48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 사업 수혜자 : 건설(일용)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480	1,480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200	200	-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1,280	1,280	-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2026년) 200 → (2027년 정부안) 2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건설경기 및 고용 여건 모니터링을 통한 건설근로자 인력수급 전망을 위해 ’27년 예산 반영 필요
- (산출) 조사·연구비 200백만원

○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2026년) 1,280 → (2027년 정부안) 1,28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인력수급 전망 및 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내국인 기능인력 부족 및 청년·여성 선호 직종 등 특화훈련 사업 실시
- (산출) ①실습생활공간 구성과정 356백만원, ②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540백만원 ③특성화고 연계 청년 건설인력 양성과정 130백만원, ④ 실습비 등 154백만원 ⑤운영비 1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훈련 수료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85 (%)	90 (%)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수료자수) / (참여자수-조기취업자수)}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6년 신규사업으로 실적제고 등을 위해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훈련 결과보고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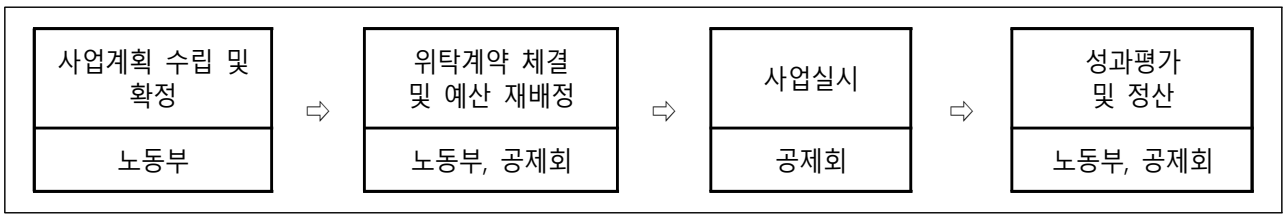
○ 중장기 건설업 인력수급 전망을 통한 건설 일자리 전망 제시 및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청년·여성의 선호 직종 및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급부족 직종 등 훈련을 통해 청년·여성의 개인별 기능을 향상하고, 숙련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80	1,480	-	-	1,480	1,036	7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9) 행복한일터인증제(1065-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65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행복한일터인증제	행복한일터인증제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행복한일터인증제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한 위탁수행업체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행복한일터인증제	-	-	-	800	800	800	순증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800
-행복한일터인증제	-	-	-	-	-	-	-	-	8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800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10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780
·업무추진비(240-01)	-	-	-	-	-	-	-	-	1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행복한일터인증제

사업목적	고용·노동 전 분야를 포괄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대지원하여 일하는 사람 모두가 다니고 싶은 좋은 일자리 확산
사업내용	매년 고용·노동 전 분야를 포괄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복한 일터'로 인증하고 금융·세무·조달 등 우대 혜택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항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진경위	○ (추진배경) 국정과제 「95-4,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등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 (추진경위) - ('25.10.)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6.3.) 우수기업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마련 - ('26.4.~) 인증제도 통합 및 우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부처 협의 등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7~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	8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수행 업체 등

○ 사업 수혜자 : 민간기업, 노동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	800	800
행복한일터인증제	-	800	800

○ 행복한일터인증제 **(2026년) 0 → (2027년 정부안) 800백만원, 순증**

- (설명) 양질의 고용·노동조건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좋은 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하기 위한 사업 신설 요구
- (산출) 800백만원(우수기업 선정제도 통합*에 따른 사업 신설임을 고려, 통합 이후에도 기존 수준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사업비 편성)

* 일자리 으뜸기업(190백만원), 일·생활균형우수기업(184백만원), 청년일자리강소기업(8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행복한일터 선정 기업 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50개소
실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달성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측정산식 : 당해연도 우수기업 선정 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6년까지 운영 예정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기업 수(100개소)의 1.5배

- **자료수집방법/출처 :** 자체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는 우수기업을 연 150~200개 발굴·선정하여 우대혜택 제공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노동부 ② (운영기관 선정) 노동부, 운영기관 ③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 선정) 노동부, 운영기관 ④ (선정기업 사후관리) 노동부, 운영기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행복한일터인증제 사업 개요

참고 **행복한 일터 인증제 사업 개요**

□ 추진내용

○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고용·노동 全 분야를 아우르는 **'행복한 일터' 개념 정립** 및 **우대혜택 마련**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 **(정부 인증제 통합)** 유사 우수기업 인증제*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기업 선정제도 통합** 추진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 **(인센티브 마련)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부사업 우선지원, 세액공제 등 인증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혜택 발굴**

구분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 우대지원(안)
세제	▲재경부 세제혜택 제공
조달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기술용역 등 국가 및 지자체 입찰 심사 시 가점 부여
규제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지원	▲노동부 정부포상 우선 선정, ▲법무부 출입국 심사 우대

○ **(일자리 평가지표 개발) 고용창출과 노동조건을 연계**하여 기업의 **노동환경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고용창출 실적, 일·생활 균형 수준, 기업 문화 등 노동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향후 계획

○ **우대지원제도 발굴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26.下)**

- 우대지원 제도 발굴을 위한 부처 협의(재경부, 조달청 등)

○ **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26.下~)**

- 행복한 일터 인증제는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법적 근거 없이 시행 가능하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법 개정 병행 추진

○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27)**

사 업 명
(20)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1070-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70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취약계층취업촉진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심리안정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센터, 민간기관, 지자체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센터, 민간기관, 지자체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센터, 민간기관, 지자체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11,119	11,904	11,904	11,228	11,028	△876	△7.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199 (11,199)	11,223	11,119	-	104	11,904	11,904	7,554	11,028
·심리안정지원	3,817	3,841	3,841	-	-	4,915	4,915	3,347	4,657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5,348	5,348	5,245	-	103	5,132	5,132	3,313	4,214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34 (2,000)	2,034	2,033	-	1	1,857	1,857	894	2,157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9,199 (11,199)	11,223	11,119	-	104	11,904	11,904	7,554	11,028
·일반수용비(210-01)	1,040 (1,140)	1,142	1,142	-	-	2,012	2,010	936	2,106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	14	14	-	-	344	344	187	341
·급식비(210-04)	348	345	246	-	99	300	300	117	300
·임차료(210-07)	30	30	30	-	-	39	39	25	31
·일반용역비(210-14)	7,604 (9,479)	9,503	9,499	-	4	8,444	8,444	5,911	7,751
·국내여비(220-01)	15	15	14	-	1	144	144	79	135
·사업추진비(240-01)	23 (48)	48	48	-	-	238	238	98	239
·포상금등(310-03)	4	5	5	-	-	4	6	5	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21	121	121	-	-	121	121	121	121
·공사비(420-03)	-	-	-	-	-	183	183	56	-
·자산취득비(430-01)	-	-	-	-	-	75	75	19	-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심리안정지원

사업목적	구직·실직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가 심리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고용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1:1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민간위탁)

(1-2)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사업목적	취업 취약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직업선택 및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지원
사업내용	취업역량향상 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직접운영, 민간위탁)

(1-3) 맞춤형 취업·채용 지원

사업목적	구직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기업 대상 적합한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센터 취업·채용지원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제공
사업내용	- (구직자 취업지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에 대한 AI기반 1:1 심층상담 및 맞춤 컨설팅 제공 - (기업 맞춤형 서비스) 기업 특성별 진단→종합컨설팅→채용지원→기초서비스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채용행사 운영)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수요데이' 등 소규모 채용행사(고용센터 직접개최)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운영)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항제5호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경위	- ('06) '05년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련 이후, '06년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08년 집단상담프로그램, '09년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민간위탁 확대 실시 * 채용박람회는 '96년부터 실시, '04년 고령자(실버)취업박람회로 확대, '06년 동 사업에 편입되어 전국 16개 시도(복지부, 자치단체 합동)에서 개최 - ('16)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자율시정, 신고포상금 등)' 사업 편입 - ('19) 고용보험기금(~18년)에서 일반회계로 사업 이관

	- ('26) 효율적 예산 관리를 위해 사업목적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운영의 내내역사업 일부를 이관받은 후 세부사업명을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으로 변경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6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1,654	6,185	11,199	11,904	11,02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센터, 민간기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 및 구직자, 구인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심리안정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제주)	40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제3항 (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81	100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심리안정지원	4,915	4,657	△258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5,132	4,214	△918
맞춤형 취업·채용 지원	1,857	2,157	300

○ **심리안정지원 (2026년) 4,195백만원 → (2027년 정부안) 4,657백만원, △5.2%**

- (설명) 구직·실직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구직자의 심리안정지원
- (산출) 4,657백만원 = 심리안정지원 4,657백만원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2026년) 5,132백만원 → (2027년 정부안) 4,214백만원, △17.9%**

- (설명) 취업취약계층 대상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산출) 4,214백만원 = 집단상담 위탁운영 2,655백만원 + 직접운영 528백만원
  + 취업특강등 위탁운영 560백만원 + 직접운영 420백만원
  + 직접운영비 51백만원

○ **맞춤형 취업·채용 지원 (2026년) 1,857백만원 → (2027년 정부안) 2,157백만원, +16.2%**

① 구직자 취업지원 : (2026년) 309백만원 → (2027년 정부안) 309백만원, 전년동

- (설명)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AI기반 1:1 심층상담 및 맞춤 컨설팅 제공
- (산출) 309백만원 =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55개소 × 560만원

② 기업 맞춤형 서비스 : (2026년) 392백만원 → (2027년 정부안) 392백만원, 전년동

- (설명) 기업 특성별 '①진단→②종합컨설팅→③채용지원→④기초서비스'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산출) 392백만원 = 협업추진 및 기업사례관리 207백만원
  + 정부사업 안내·연계 지원 185백만원

③ 채용행사 운영 : (2026년) 406백만원 → (2027년 정부안) 406백만원, 전년동

- (설명)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수요데이' 등 소규모 채용행사
- (산출) 406백만원

④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운영 : (2026년) 0 → (2027년 정부안) 300백만원, 신설

- (설명)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운영

* 기존 고용센터를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로 지정, 구직자 대상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 취업지원 및 취업역량강화 서비스 강화

- (산출) 300백만원 = 10개소 × 3,000만원

⑤ 기타 운영비 : (2026년) 750백만원 → (2027년 정부안) 75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취업·채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사업홍보, 위탁사업 운영 및 지도점검 등
- (산출) 750백만원 = 취업·채용지원 운영비 716백만원
  + 위탁사업 운영비 30백만원
  + 신고포상금 4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5	95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심리안정지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 설문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상담사 및 프로그램 진행자 역량강화를 통한 심리안정지원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95점 이상)

○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 및 대상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10개소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운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채용지원

계획 수립	⇨	자체 계획수립	⇨	사업운영 및 지도점검	⇨	결과등록
본부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전산)

- 본부 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 자체 계획수립, 계획에 따라 사업 운영 및 지도 점검하고 고용센터에서 전산을 통해 결과 등록

○ 위탁운영: 심리안정지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일부)

계획 수립 (사업공고)	⇨	자체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심사·선정	⇨	위탁계약 체결	⇨	사업운영 및 지도점검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평가
본부		고용센터		고용센터		(운영)수탁기관 (점검)고용센터		고용센터		본부 (한고원)

- 본부 계획 수립(사업공고) 후 고용센터에서 자체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심사·선정하고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기관에서 사업운영, 고용센터에서 지도·점검함.
  운영 종료 시기에 고용센터에서 결과보고·정산하여 본부(한고원)에서 사업평가 진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654	11,654	-	-	11,654	11,389	97.7	-	265
2024년	6,185	6,185	-	-	6,185	5,918	95.7	24	243
2025년	9,199	11,199	24	-	11,223	11,119	99.3	99.1	104
2026년	11,904	11,904	-	-	11,904	7,554	63.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265	집행잔액 불용
2024년	이월	24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위탁비 이월
2024년	불용	243	집행잔액 불용
2025년	불용	104	집행잔액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 첨부 사업 설명자료 참조

참고1 「심리안정지원」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구직·실직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가 심리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구직·실직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우선지원 대상

① **장기실직자** 및 **장기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상당 수준 약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최근 2년이내 갑작스러운 생활 여건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③ 실직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정상적인 취업촉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④ **장기 미취업 청년**(만 34세 이하) 중 신속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 내용

○ 고용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1:1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취업 스트레스 진단·관리 및 감정 해소, 면접 불안 관리,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훈련, 합리적 사고 훈련, 자신감 증진 등 지원

○ 심리·정서적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 구직자 심리진단검사 결과와 상담내용을 종합하여 연계 대상자 선정

□ 추진 절차

계획 수립 (사업공고)	⇨	위탁기관 심사·선정	⇨	사업운영 및 지도점검	⇨	결과보고 및 정산	⇨	성과평가
본부		고용센터		(운영)수탁기관 (점검)고용센터		고용센터		본부 (한고원)

참고2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요

□ 사업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직업선택 및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지원

□ 지원 대상

○ 진로 미선택, 구직의욕 저하, 구직기술 부족 등을 고민하는 구직자

모바일 만족도 조사 - 참여자 소감

☞ **(4U 수료자)** 경력직이 구직할 때의 중요 포인트를 알게 되었고 **직업확장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세워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한 분들의 **경험담과 팁이 긍정적 마인드와 함께 도움**이 된 듯합니다.

☞ **(CAP@ 수료자)** 제 경력과 전혀 관계없는 직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면접 기술도 배우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성취 수료자)**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의 **세부적인 지도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라도 더 알려 주려고 하시는 선생님의 열정에 **많은 걸 배워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주변에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 **(단기집단 수료자)**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더불어 실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앞으로의 **취업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 추진절차

○ 직접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운영	⇨	성과평가
본부		고용센터		고용센터		본부

○ 위탁 운영

계획수립 사업공고	⇨	운영기관 심사·선정	⇨	사업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성과평가
본부		고용센터		수탁기관		고용센터		본부/한고원

□ 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총 37종)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방식	대상	주요내용	운영 일수	운영 시간
집단상담(15)	성취프로그램	직접	성인 구직자	· 구직기술 향상을 통해 자신감 회복 지원 · 취업정보수집, 지원서류 작성, 모의면접 등	4	24
	청년취업GYM(짐)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모듈 프로그램		청년층	· 참여자 특성별 모듈(총 16개) 조합·운영 · 취업동기 부여, 정보탐색, 취업클리닉, 적응력 향상 등 종합 지원	2 ~ 4	12 ~ 24
	소그룹 취업컨설팅 청년취업ON (3종)		청년	· 3개 직무군별(경영사무/영업마케팅/IT) 주요 역량 이해와 관련된 개인 경험 연계 중심 구직 기술 강화 지원	2·4	12
	소그룹 취업컨설팅 내일또다시 (2종)		성인	· 기계설치·정비·생산직, 사회복지·돌봄직 분야 재취업지원을 위한 정보탐색역량 강화 지원	3	12
	소그룹 취업컨설팅 마음똑똑심플		취업 취약계층	· 구직단념청년, 니트 및 성인 구직자 등 자기 이해를 통한 구직의욕 향상 지원	3	12
	소그룹 취업컨설팅 조선업		조선업 취업희망자	· 직업전환 고민 중장년층 등의 인식개선과 산업·직무 이해를 통해 직업 선택 폭 확대	2·3	12
	소그룹 취업컨설팅 반도체		반도체 취업희망자	·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의 반도체산업 분야 진출을 돕고, 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	2·3	12
	신호탄 신중년 재취업설계	직접 + 위탁	50~60세	· 퇴직자, 이전직 준비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 이해와 경력 전환기의 재취업 활동 지원	3	18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과 구직의욕 향상 지원 · 일·직업가치·나의강점·채용트렌드 이해, 대인관계향상 지원, 희망실현 계획서 작성 등	4	24
	4U(포유) 40대 구직자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40대 구직자	· 40대 구직자들의 진로전환과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높이며 구직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3	18
	CAP@(캐파)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청년층	· 합리적 직업선택부터 구직활동까지 종합 지원 ·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4	24
	Hi+(하이플러스) 고졸청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고교 2~3학년	· 카드, 보드게임, 온라인시스템 등을 활용, 경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형 활동 강화 · 경력·직장·취업역량·구직준비 이해, 채용서류·면접 준비실전, 경력개발계획수립 등	2 ~ 5	8 ~ 20
단기집단상담(7)		직접	구직급여 수급자 등	· 구직스트레스 다루기, 청년(마음의 힘기르기, 나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 신중년(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 나를 이해하기, 직장 내 행복한 대화 이끌기) 등	1	각 3
취업특강(8)		직접 + 위탁	구직급여 수급자 등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근로기준법, 취업정보 수집 등	1	각 2
행복오름(7)		직접	기초생활 수급자	· 자기이해, 강점 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 취업능력 향상 지원	1	각 1.5

참고3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개요

◈ 구직자의 경력개발단계, 구직애로 유형 등에 따라 AI기반 분석시스템(잡케어)을 활용하여 “진단-심층경력설계-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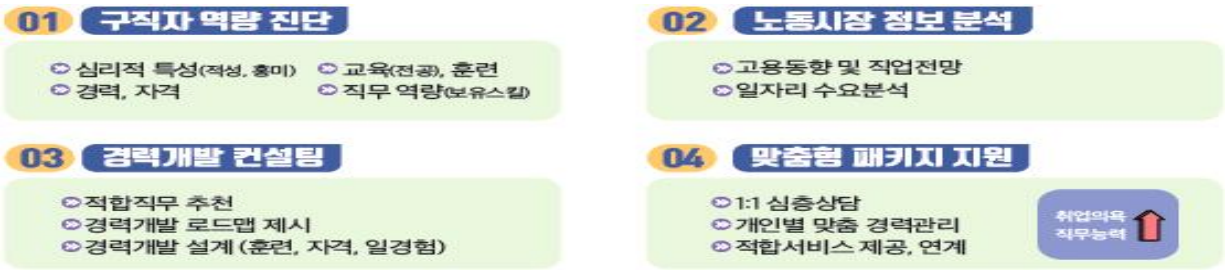
* ('22.8.) 6개소 → ('23.3.) 24개소 → ('23.8.) 48개소 → ('25) 53개소 → ('26) 54개소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경력준비, 경력유지, 경력전환을 위한 **심층상담 희망자** 및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중인 구직자*** 등

* 실업급여 수급자, 진로지도 및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등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데이터 기반 진단)** 임금, 구인·구직 현황 등 **AI 기반 분석시스템**(잡케어)을 활용, **상담사**의 **진단·분석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 제고
- **(노동시장 분석)** 구직자의 **희망 직무**에 대한 구인구직배율, 훈련정보 등 **지역별 노동시장 정보 등을 분석**하여 **적합직무 목표 탐색· 제공**
- **(심층경력설계)** **희망직종·임금·노동시장 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 생애단계, 취업 희망 분야** 등에 맞는 **경력개발 로드맵** 제시
- **(맞춤형 서비스)** **구직자 특성**에 따라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서비스**와 연계 지원

□ 우수사례

청년구직자 자립을 위한 밀착상담과 복합서비스 제공

- **(상담의 기술)** 가정환경과 경제적 문제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청년구직자에게 ‘무엇이든 찾아 지원하는 맞춤상담’으로 진로목표와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서비스 지원)** **①(고용)** 잡케어 활용 시장분석, 물류 무역사무원 훈련 수료 **②(복지)** LH청년주택 보증금, 어린이재단 공부방 지원, **③(금융)**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유스), 청년기쁨두배통장 연계 ⇒ **무역사무원으로 취업 후 탈수급!**

[참여자 소감] 구도패를 통해서 상담사 선생님이 저의 진로에 대해 사려깊고 성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목표 의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진하여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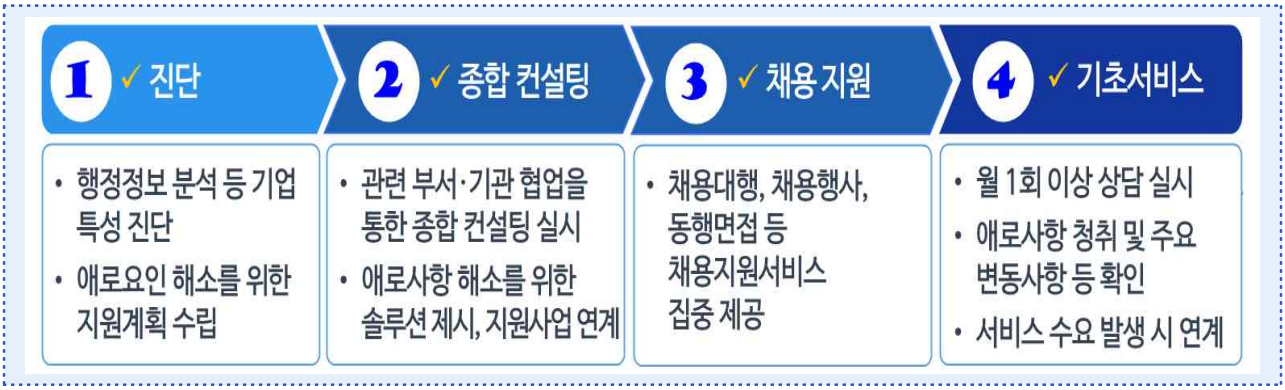
참고4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사업 개요

◈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채용지원부터 고용여건 개선까지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사업 대상

○ 신속한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컨설팅, **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

□ 지원 내용



- **(기업 진단)** 기업 고용여건과 애로사항 등 **진단 후 유선·방문상담** 진행, **기업별 지원유형**(컨설팅형, 채용연계형, 기초서비스형) 결정

- **(기초서비스)** 全 **대상기업**에게 **최초 대면상담 및 매월 1회 상담**을 통해 **기초적인 기업지원제도 안내** 및 상시 서비스 수요 파악·연계

- **(종합 컨설팅)** 수요기업 대상 **일·육아제도, 인사노무, 지원금, 인프라·환경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홍보** 등 종합 컨설팅 제공

- **(채용지원)** 대상기업 중 구인수요가 있는 기업을 '**집중지원기업**'으로 선정하여 **채용지원서비스 집중 제공 및 취업알선**

□ 지원 체계

○ **기업지원과(팀)에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센터 인력 여건에 따라 별도의 TF 구성·운영 가능

참고5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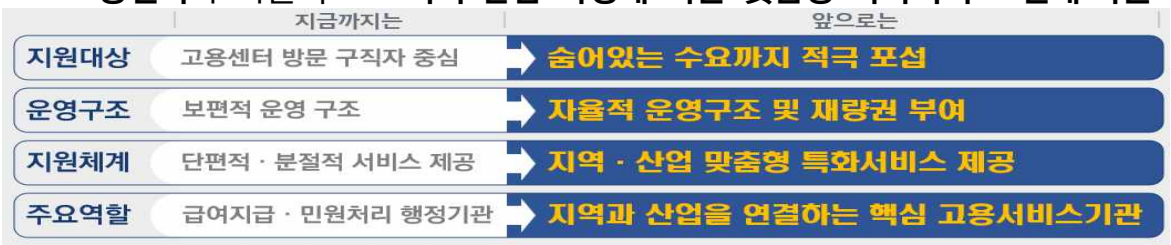
□ 추진 배경

○ **고용센터 체질 개선**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해 **지역과 산업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 필요[국정과제]

〔국정과제〕 96-2. 지역 재량권 강화를 통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존 고용센터를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로 지정

□ 운영 방안

❖ **고용센터**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화서비스 설계·지원**



① **(특화 서비스)** 고용센터가 **폭넓은 자율성**을 갖고, **지역·산업 일자리 수요·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설계·제공**

② **(재량권 확대) 예산지원,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 개정, 평가 지표 개선** 등을 통해 고용센터의 **재량권 확대 및 역할 강화**

③ **(지역고용 데이터 역량 강화) 행정통계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특성 분석 및 전략 수립**이 가능토록 **특별 학습프로그램*** **운영**

* 내부직원 교육을 통해 지역 내 구직자 특성(이전직 활발, 쉬었음多 등), 구인수요·산업 변화(인력난 직종, 성장 업종 등) 분석 및 서비스 기획 역량 향상 등 지원

④ **(협업 강화) 기관장 중심**으로 **지역별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통한 **차별화** 추진 * 지방정부, 산업별 협·단체, 지역인자위, 교육·훈련기관 등

□ 주요 경과

○ **('26.2.20.)**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7개소 출범 **운영 개시**

* **(선정결과)** 서울(쉬었음·장기미취업 청년), 인천(바이오 등 제조, 항공·물류), 수원(반도체), 부산(해양), 대구(청년), 광주(중장년), 전주(미래모빌리티)

사 업 명
(21) 경계선지능청년지원(1072-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72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고용창출사각지대보호	경계선지능청년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8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경계선지능청년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경계선지능청년지원	-	260	260	320	225	△35	△13.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	-	-	-	-	260	260	178	225
경계선지능청년지원	-	-	-	-	-	260	260	178	22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	-	-	-	-	260	260	178	225
· 일반수용비(210-01)	-	-	-	-	-	30	30	10	15
· 일반연구비(260-01)	-	-	-	-	-	70	70	49	-
· 정책연구비(260-02)	-	-	-	-	-	-	-		5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160	160	119	16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경계선지능(IQ 71~84)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경계선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 -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추진경위	○ (추진배경) 제6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계획*」('23~'27년)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취업지원 제공 방안 수립 필요성 검토 - (공약 4-10)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고용활성화 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260백만원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260	22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18~39세 경계선지능 청년 200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경계선지능청년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25	80	-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60	225	△35
경계선지능청년지원	260	225	△35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2026년) 260 → (2027년 정부안) 225백만원, △13.5%

- (설명)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26) 160백만원 → ('27) 160백만원(전년동) 200명×단가100만원(참여수당20만원+운영비 80만원)×80%(보조율), 연구용역비 50백만원, 일반수용비 1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프로그램 이수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140	
실적					
달성도					

- **측정산식 :** 프로그램이수 인원/프로그램 참여인원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2025년	해당없음
2026년	참여인원 118명(26.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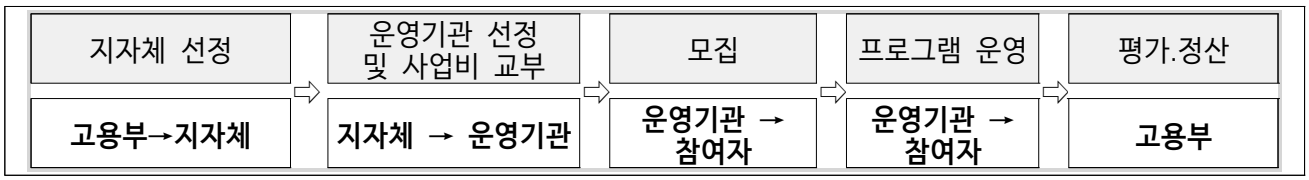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경계선지능청년 직업능력개발 20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2)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1075-3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75	302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7,507	11,101	11,101	11,101	8,036	△3,065	△27.6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실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실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기능별 분류(합계)	7,507	7,507	7,507 [7,507]	-	-	11,101	11,101	9,880 [6,250]	8,036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2,136	2,136	2,136 [2,136]	-	-	2,136	2,136	1,882 [1,096]	2,294
·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617	617	617 [617]	-	-	5,356	5,356	4,718 [2,674]	1,090
·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1,411	1,411	1,411 [1,411]	-	-	1,411	1,411	1,344 [1,344]	1,270
·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3,343	3,343	3,343 [3,343]	-	-	2,198	2,198	1,936 [1,136]	3,38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실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실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비목별 분류(합계)	7,507	7,507	7,507 [7,507]	-	-	11,101	11,101	9,880 [6,250]	8,036
· 사업출연금(350-02)	7,507	7,507	7,507 [7,507]	-	-	11,101	11,101	9,880 [6,250]	8,03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내용	각 고용전산망과 외부기관에 분산된 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관리하는 ❶MDB(Master DataBase)*, ❷구직정보・훈련・고용이력 등 개인 및 사업장 단위로 통합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바로원), ❸고용・노동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합DW, ❹데이터 표준 및 품질 관리 시스템, ❺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인프라 등의 운영·관리 *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개별 시스템별 데이터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하여 구축한 기준정보

(1-2)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내용	구직자·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국민의 全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❶AI 기반 개인·기업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고용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공공 고용서비스의 품질과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❷AI 행정지원 서비스 구축

(1-3)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내용	직무역량 분석 등 맞춤형 AI 고용서비스 제공 기반인 ❶직무온톨로지*의 구축·운영·관리 및 ❷신규 AI 고용서비스 발굴, 개념검증(PoC) 업무 등을 위탁 * 컴퓨터가 이력서나 구인공고를 해석하고, 알맞은 직무역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컴퓨터 언어 사전**

(1-4)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사업목적·내용	일자리정보플랫폼 및 AI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SW/HW의 유지보수 및 솔루션 도입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40조(위탁)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법무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8. 출입국 정보 9.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10. 장애 정도 11.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2.「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3.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4.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기술창업 등 창업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추진경위	○ 추진경위 - ‘18.1 ~ : 머신러닝기반의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ISP 추진 - ‘18.12: 기업사업장, 개인, 서비스에 대한 마스터 DB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19.3: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ISP 완료 - ’19.7: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의 AI 고용서비스 구축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매칭 시스템 구축, 국가일자리정보 기반 바로원시스템 재구축 및 통합연계허브 구축)(‘19.7~’20.7) - ’20.6: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의 데이터포털관리시스템 구축 (‘20.6~’20.12) - ’20.8: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매칭 시스템 2차 구축(‘20.8~’21.7) - ‘20.9: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고용·노동 통합 DW, 데이터공동이용시스템 구축)(’20.9~’21.9) - ‘21.9: 취업지원제도시스템, 고용·노동 통합DW시스템 등 신규(재구축) 시스템의 표준적용 - ’21.9: 데이터프로파일링 통계자료 구축 - ‘21.9: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 서비스 구축 - ‘21.12: 고용노동 통합 DW 및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 ‘22.12: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시범실시 - ‘23.3: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전면오픈 - ‘23.7: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24.6: 일자리정책관리시스템, 데이터관리포털, DQ, META 개편 - ‘24.6: 고용행정포털 고용안정지원금 구축에 따른 지원금 DW 개편 - ‘24.12: 고용AI 과제 시범 적용(구인공고 작성, 구인공고 검증) - ‘25.1: 고용AI 과제 확대 적용(취업확률모델, 직업훈련 추천) - ‘25.7: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위원회 및 TF 운영 - ‘25.11: AI 고용상담 시범 적용(고용24 행정 실업급여) - ‘25.11: 상담용 잡케어 UI/UX 전면 개편 관련 시범 운영 - ‘26.4: 상담용 잡케어 UI/UX 전면 개편 관련 정식 운영 개시 - ‘26.6: 대국민 잡케어 자가 역량 진단 도구 기반 직무 역량 분석 서비스 오픈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7,853	8,216	7,507	11,101	8,03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재직자, 청소년 등 전 국민, 구인업체, 진로지도담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2,294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1,090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1,270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3,382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101	8,036	△3,065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2,136	2,294	158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5,356	1,090	△4,266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1,411	1,270	△141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2,198	3,382	1,184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 2,136백만원 → (2027년 정부안) 2,294백만원, +7.4%**

- **(요구)**

■ (MDB 운영) 고용서비스 분야의 AI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인·기업·행정 맞춤형 서비스의 핵심데이터 기반인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의 활용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어 다양한 고용정보*의 수집을 통해 통합적인 다양

한 결합 데이터셋 발굴 및 운영 유지관리 비용 요구

* 개인별 경력·이력관리 통합 데이터셋, 공공·민간 고용정보 통합 데이터셋 등

■ (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운영) 민원편의 제고, 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보유 데이터 확충을 위한 다수의 신규 연계* 추가 및 증가되는 연계 관리 항목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 비용 요구, 고용정책 사업정보 입력 창구 일원화 등 관리체계 개선 관련 비용 요구

* 공공 마이데이터, 고용24 개인별 경력·이력관리 서비스, 노동법 준수이력 확인제 등

■ (바로원시스템 운영) 365일 중단없는 원스톱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별 맞춤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 접근성 향상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유지관리 비용 요구

■ (고용행정 통합DW 운영) 국가고용전산망 업무 시스템의 제도 확대·개편에 따른 시스템 변경 시 DW에 적기 반영하여 정확한 통계 제공을 위한 운영 유지관리 비용 요구

■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개방 데이터셋 추가 구축 및 다양한 연구분석 지원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을 위한 운영유지 비용 요구

■ (데이터관리포털 운영) AI 시대 도래와 함께 AI 모델의 성능·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고품질·고가치 데이터가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여, 정교한 메타데이터 및 품질 체계 확보 등을 통해 AI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운영 유지관리 비용 요구

- (산출)

■ MDB 운영 : ('26) 301 → ('27) 270백만원(△31백만원)

1) 결합 데이터셋의 지속적 발굴

① (필요성) AI 기반 개인·기업·행정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추가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인 결합 데이터셋 발굴 필요

② (기대효과) 본격화되고 있는 AI전환에 따라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밀한 개인·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통합하여 AI 기반 국민 체감 고용서비스 지원

③ (변동사항)

· MDB 운영 : ('26) 301 → ('27) 270백만원(△31백만원)

(총 투입공수) '26년 12.09 → 27년 10.2M/M(△1.89M/M)

* 일반용역비(MDB 유지관리) : 270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	투입률	
MDB 유지관리 등	직무별 평균임금	10.2	직무별 투입공수	84,084,805
직접인건비 합계				84,084,805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21,082,119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41,033,385
합계(VAT별도)				246,200,309
총합계(VAT포함)				**270,820,340**

■ 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운영 : ('26) 225 → ('27) 561백만원(+336백만원)

2) 연계 기관 및 연계 항목의 지속적 증가

① (필요성) '25.12월 기준 61개 기관 1,185종의 데이터연계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중이나,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신규 연계* 추가 및 연계 항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반영)이 어려움. 재난·장애 상황에서의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 신규 연계 서비스의 적기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예산 현실화 필요

* 공공 마이데이터, 고용24 개인별 경력·이력관리 서비스, 노동법 준수이력 확인제 등

② (기대효과) 지속적인 연계 추가로 국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제공하며 추가적 서류 제출·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감축, 다양한 분야의 정보 연계 강화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축, 고용정책 관련 사업정보 입력 창구(고

용24)를 일원화하여 자료의 일관성 보장 및 행정력 낭비 해소

③ (변동사항)

· 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운영(포털 유지관리) : ('26) 103 → ('27) 103백만원(전년동)

(FP) '26년 1,410.4 → '27년 914.3FP(△496.1FP)

(요율) '26년 11.0% → '27년 13.45%(+2.45%p)

· 통합연계허브관리(장애대응 및 신규연계 개발(API, 배치, 타사업 연계 대응 등) : ('26) 122 → ('27) 122백만원(전년동)

(총 투입공수) '26년 5.5 → '27년 4.9M/M(△0.6M/M)

· 고용정책 사업정보 입력 및 관리체계 개선(연계 신규 개발) : ('26) 0 → ('27) 336백만원(순증)

(총 투입공수) '26년 0 → '27년 11.78M/M(순증)

* 개발SW유지관리(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103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698,328,840원 × 13.45% + 0 = 93,925,229원
총합계(VAT포함)	**103,317,752원**

* 일반용역비(통합연계허브관리) : 122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	**투입률**	
통합연계허브관리	직무별 평균임금	4.9	직무별 투입공수	37,995,208
직접인건비 합계				37,995,208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54,713,10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8,541,662
합계(VAT별도)				111,249,970
총합계(VAT포함)				**122,374,967**

* 일반용역비(고용정책 사업정보 입력 및 관리체계 개선) : 336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	**투입률**	
고용정책 사업정보 입력 및 관리체계 개선	직무별 평균임금	11.78	직무별 투입공수	104,371,050
직접인건비 합계				104,371,05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50,294,312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50,933,072
합계(VAT별도)				305,598,434
총합계(VAT포함)				**336,158,277**

■ 바로원시스템 운영 : ('26) 287 → ('27) 228백만원(△59백만원)

3) 바로원시스템 유지관리

① (필요성) 개인별 맞춤형 고용정책 정보 제공 및 정보 검색 시간 단축을 통한 민원 응대 효율화와 정책 체감도 향상

② (기대효과) 안정적인 원스톱 개인/사업장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③ (변동사항)

· 바로원시스템 운영 : ('26) 287 → ('27) 228백만원(△59백만원)

(FP) '26년 2,452.0 → '27년 2,051.9FP(△400.1FP)

(요율) '26년 14.28% → '27년 14.25%(△0.03%p)

* 개발SW 유지관리(바로원시스템 유지관리) : 228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459,274,398원 × 14.25% + 0 = 207,946,602원
총합계(VAT포함)	**228,741,262원**

■ 고용행정 통합DW 운영 : ('26) 713 → ('27) 713백만원(전년동)

4) 고용행정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업무시스템 제도 확대·개편에 따른 고용행정데이터 운영 및 유지보수

① (필요성) 고용보험, HRD-NET 등 국가고용전산망 업무 시스템의 제도 확대·개편에 따른 시스템 변경 시 DW에 적기 반영하여 업무시스템과 동일한 기준의 정확한 통계 제공 필요

② (기대효과) 고용부 및 고용센터 업무 지원, 연구자료 활용, 각종 고용정책 발굴 지원

③ (변동사항)

· 고용행정 통합DW 운영 : ('26) 713 → ('27) 713백만원(전년동)
(FP) '26년 8,399.9 → '27년 8403.2FP(+3.3FP)
(요율) '26년 12.55% → '27년 12.55%(전년동)

* 개발SW 유지관리(고용행정 통합DW 운영) : 713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5,170,214,431원 × 12.55% + 0 = 648,861,911원
총합계(VAT포함)	**713,748,102원**

■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 ('26) 271 → ('27) 183백만원(△88백만원)

5) 신규 데이터셋 추가 발굴 및 유지관리

① (필요성) 고용행정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개방 데이터셋 추가 구축 및 사용편의성 제고를 통해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등 다양한 연구분석 지원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

② (기대효과) 민간 연구활동 활성화, 안정적인 분석환경 제공

③ (변동사항)

·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 ('26) 127 → ('27) 183백만원(+56백만원)
(총 투입공수) '26년 5.75 → '27년 8M/M(+2.25M/M)

· 데이터 분석 라이센스 갱신 : ('26) 144 → ('27) 0원 (△144백만원, 순감)
↳ 도입 SW 서브스크립션 갱신 비용을 「(4)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으로 이관

* 일반용역비(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관리) : 183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	투입률	
포털 및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등	직무별 평균임금	8	직무별 투입공수	57,063,092
직접인건비 합계				57,063,09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82,170,852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27,846,789
합계(VAT별도)				167,080,733
총합계(VAT포함)				**183,788,806**

■ 데이터관리포털 운영 : ('26) 339 → ('27) 339백만원(전년동)

6) 전사적 표준·품질관리 솔루션 도입 및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① (필요성) AI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고가치 데이터 요구의 증대에 따라 정교한 메타데이터 및 표준, 품질 체계 확보 필요

② (기대효과) 지속적, 일원화된 표준화·품질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국가고용전산망 데이터 품질 향상, AI-READY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환 및 AI 활용을 고려한 데이터로 개선

③ (변동사항)

· 데이터관리포털 및 표준·품질관리시스템 운영 : ('26) 339 → ('27) 339백만원(전년동)

(총 투입공수) '26년 14.65 → '27년 13.2M/M(△1.45M/M)

* 일반용역비(데이터관리포털 및 표준·품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339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데이터관리 시스템 개발 등	직무별 평균임금	13.2	직무별 투입공수	105,335,177
직접인건비 합계				105,335,177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51,682,65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51,403,566
합계(VAT별도)				308,421,398
총합계(VAT포함)				**339,263,538**

○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 5,356백만원 → (2027년 정부안) 1,090백만원, △79.6%

- (요구)

■ AI 고용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1) 잡케어+ 서비스 개선 및 유지관리

* 전 생애주기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AI 모델 고도화, 대국민 경력개발 로드맵 고도화, 신규 AI 서비스 적용, AI 상담 에이전트 품질 개선을 위한 고도화 및 유지관리 비용 요구
* AI기반 지능형상담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커리어 로드맵 및 마이데이터 구축 등을 통한 '상담용 잡케어 경력개발정보 서비스' 고도화 비용 요구

2) AI 일자리매칭 등 추천 알고리즘 개선 및 유지관리

* 일·훈련·자격 및 고용정책, 기업, 인재 등 개인·기업 맞춤 추천 정교화를 위한 AI 모델의 주기적 재학습 및 서비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이용 패턴 분석 기반 서비스 고도화 비용 요구
  · 지식베이스 현행화(프롬프트, RAG 즉시 반영), 속도개선을 위한 벡터 DB 최적화 및 인덱싱 개선, 사용자 의견 기반 UI 개선 등

3) 직무데이터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 직무 기반 AI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 키워드 추출, 형태소 분석 등 직무데이터 사전 구축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비용 요구

4) 신규 도입 AI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데이터의 지속적인 변화는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하락시키므로 AI 경력설계, AI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AI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지원 등 '26년에 신규 구축한 AI 고용서비스의 품질유지를 위한 알고리즘 및 서비스의 고도화 비용 요구

- (산출)

■ AI 고용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26) 5,356 → ('27) 1,090백만원(△4,266백만원)

1) 잡케어+ 서비스 개선 및 유지관리

① 일반용역비 : ('26) 268 → ('27) 268백만원(전년동)

* (총 투입공수) '26년 9.66 → '27년 9.16M/M(△0.5M/M)

* 일반용역비(잡케어+ 서비스 개선) : 268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	투입률	
잡케어 경력개발정보 구축	직무별 평균임금	9.16	직무별 투입공수	83,511,066
직접인건비 합계				83,511,066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20,255,93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40,753,400
합계(VAT별도)				244,520,401
총합계(VAT포함)				**268,972,441**

② 개발 SW 유지관리 : ('26) 58 → ('27) 58백만원(전년동)

* (FP) '26년 544.9 → '27년 507.2FP(△37.7FP)
* (요율) '26년 12.9% → '27년 12.9%(전년동)

* 개발SW유지관리(잡케어+ 서비스 유지관리) : 58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415,143,141원 × 12.9% + 0 = 53,553,465원
총합계(VAT포함)	**58,908,812원**

2) AI 일자리매칭 등 추천 서비스 개선 및 유지관리

① 일반용역비 : '26년 256 → '27년 245백만원(△11백만원)

* (총 투입공수) '26년 10.26 → '27년 8.96M/M(△1.3M/M)

* 일반용역비(추천 서비스 개선 및 유지관리) : 245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	투입률	
일자리 추천 알고리즘 개선 및 유지관리	직무별 평균임금	8.96	직무별 투입공수	76,153,809
직접인건비 합계				76,153,809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09,661,48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37,163,059
합계(VAT별도)				222,978,353
총합계(VAT포함)				**245,276,188**

3) 직무데이터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① 개발SW 유지관리 : ('26) 35 → ('27) 32백만원(△3백만원)

* (FP) '26년 340.5 → '27년 338.0FP(△2.5FP)
* (요율) '26년 12.5% → '27년 11.3%(△1.2%p)

* 개발SW유지관리(직무데이터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 32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257,447,461원 × 11.3% + 0 = 29,091,563원
총합계(VAT포함)	**32,000,719원**

4) 신규 도입 AI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26) 4,739 → ('27) 487백만원(△4,252백만원)

① 일반용역비 : ('26) 2,744 → ('27) 487백만원(△2,257백만원)

↳ ’26년 신규 AI고용서비스 개발 사업 종료로 사업비 순감 및 AI고용서비스 관련 유지보수비 반영

* (총 투입공수) ’26년 116.56 → ’27년 20.41M/M(△96.15M/M)
* 일반용역비(신규 도입 AI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487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	투입률	
AI고용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직무별 평균임금	20.41	직무별 투입공수	151,273,664
직접인건비 합계				151,273,66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217,834,076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73,821,548
합계(VAT별도)				442,929,288
총합계(VAT포함)				**487,222,217**

② GPU 장비 임대 비용 : (’26) 1,195 → (’27) 0원(△1,195백만원, 순감)

↳ 이용량 기반 과금 체계에 맞춰 「(4)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로 이관

③ HCI 클라우드 서버 등 HW/SW 도입 비용 : (’26) 800 → (’27) 0원(△800백만원, 순감)

○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 1,411백만원 → (2027년 정부안) 1,270백만원, △10.0%

- (요구)

■ 온톨로지센터 운영

* AI 고용서비스 로드맵 수행과제와 일자리매칭 서비스 등 기존 AI 서비스를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무 관련 데이터 수집기관 확대 및 새로운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굴 추진 관련 비용 요구

- (산출)

■ 온톨로지센터 운영 : (’26) 1,411 → (’27) 1,270백만원(△141백만원)

1) 온톨로지센터 위탁운영

① (필요성) 직무 중심의 일자리매칭과 상담서비스 등 국민 개인별 정교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직무 데이터사전을 고용데이터 전반으로 확장하고, 이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굴 추진

② (기대효과) 생성형 고용 AI 서비스 발굴 및 고도화, 직무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성능, 직무 온톨로지 품질 및 매칭률 향상으로 잡케어 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도모하고 고품질의 고용 데이터 개방 지원

③ (변동사항)

· 온톨로지센터 운영 : (’26) 1,411 → (’27) 1,270백만원(△141백만원)

* 일반용역비(온톨로지센터 운영) : 1,270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	투입률	
온톨로지센터 운영	직무별 평균임금	46.57	직무별 투입공수	394,538,382
직접인건비 합계				394,538,38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568,135,27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92,534,730
합계(VAT별도)				1,155,208,382
총합계(VAT포함)				**1,270,729,220**

○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2026년) 2,198백만원 → (2027년 정부안) 3,382백만원, +53.9%

- (요구)

■ 도입장비 임차료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SW 사용권 비용 요구
* 도입장비 임차료 : 도입 장비 리스계약 만기에 따른 감액 및 GPU 임차료 요구
↳ 이용량 기반 과금 체계에 맞춰 「(2)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내 GPU 임차료를 「(4)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으로 이관
* 시스템 유지관리비 : 시스템 유지관리(장비)에 필요한 시스템 SW사용권 비용 요구
* SW 사용권 : 솔루션 이용 등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기능 SW사용권 비용 요구
↳ 민간 연구활동 활성화, 안정적인 분석환경 제공을 위한 SW 사용권 갱신 비용을 「(1)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4)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으로 이관

■ 정보화 사업 감리용역 및 조달 수수료, 공모전, 이벤트 등 기타 운영비 요구

■ AI 인프라 확충관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요구

- (산출)

■ 도입장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 ('26) 1,863 → ('27) 3,047백만원(+1,184백만원)

1) 도입장비 임차료
① (필요성) 장비 노후화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장비를 최신화 하고 최신 장비 도입으로 행정처리 속도와 정확성 향상에 필요
② (기대효과) 최신 장비 도입으로 인한 국가고용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③ (변동사항)
· 장비 임차료: ('26) 287 → ('27) 0백만원(△287백만원)
※ 도입 장비 리스계약 만기에 따른 감액
· GPU장비 임차료: ('26) 0 → ('27) 1,195백만원(순증)
↳ 이용량 기반 과금 체계에 맞춰 「(2)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이관

* 도입장비 임차료

구분		용도	금액(원)	비고
HW	GPU 장비 임대 (GPU 16장)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	1,195,000,000	기존 서비스 유지
총합계(VAT포함)			**1,195,000,000**	

2) 시스템 유지보수료
① (필요성) HW의 권장 유지보수 요율인 6~8% 중 7%로 적용, 상용SW 권장 유지보수 요율인 12~20% 중 12%로 적용

② (기대효과) 장애 발생 대비 사전점검 및 기술지원, 안정적인 부품 수급
③ (변동사항)
· 시스템 유지보수료 : ('26) 1,158 → ('27) 1,157백만원(△1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료

구분	도입비(원)	요율	요율적용예산(원)
HW	7,838,648,100	7%	548,705,367
SW	5,074,100,000	12%	608,892,000
총합계(VAT포함)			**1,157,597,367**

3) 시스템 SW 유지관리비
① (필요성) 브로드컴의 VMware 인수 후 영구라이선스 판매 중단 및 서브스크립션 기반 라이선스로 전환함에 따라 '26년부터 VMware 구독 라이선스 추가 및 라이선스 비용 상승 반영, 도입장비 소프트웨어 서브스크립션 비용, 최신 민간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기업정보 이용료 요구
② (기대효과) AI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2차 사업에서 최초 VMware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향후 안정적인 운영 및 패치/보안 등 기술지원 기대, 최신 민간 기업정보 제공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증대, 도입장비 서브스크립션 구매를 통한 최신 성능 유지
③ (변동사항)
· 시스템 SW 유지관리비 : ('26) 418 → ('27) 695백만원(+277백만원)

* 시스템 SW 유지관리비 : 695백만원

구분	설명	수량	단가	금액(원)
시스템SW 사용권	[RH00004]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16	2,160,848	34,573,568
	[RH00002]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Virtual Datacenters	9	7,289,487	65,605,383
	[MW0196814]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76Core	1,344,151	102,155,476
	[MW0186831]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64Core	1,209,809	77,427,776
	[MW0232248] Red Hat JBoss Web Server	16Core	252,156	4,034,496
	[RH00270] RHEL Extended	3	4,278,419	12,835,257
	[RH00271] RHEL Unlimited Guest	1	4,811,062	4,811,062
	[MW2162525] JBOSS EAP ELS Program	1	53,657,452	53,657,452
	[VCF-CLD-FND-A] VMware Cloud Foundation	256Core	572,000	146,432,000
기능SW 사용권	NICE 기업정보	1	20,000,000	20,000,000
	SAS Solution (Unix 24 Core)	1	118,800,000	118,800,000
	STATA 연구분석(1EA)	1	33,000,000	33,000,000
	Windows 10 VDA (100EA)	1	22,000,000	22,000,000
총합계(VAT포함)				**695,332,470**

■ 기타 운영비 : ('26) 335 → ('27) 335백만원(전년동)
1) 기타 운영비
① (필요성) 사업의 품질 확보 및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행정안전부 지침 등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감리가 필수적으로 요구
② (기대효과) 공공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 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완성도 향상
③ (변동사항)
· 감리용역비 및 조달수수료 : ('26) 335 → ('27) 335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AI 기반 고용서비스 이용 실적(만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10.7	12.6	46.1	64.3	67.5
실적	15.7	42.4	58.4	-	-
달성도(%)	146.7	336.5	126.7	-	-

- **측정산식 :** AI일자리 매칭 취업자수 + 잡케어 서비스 이용자 수 + 26년 신규 기업 AI서비스 이용자 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6년 신규 기업 AI 서비스 개시 등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 대비 5% 증가한 67.5만명으로 목표치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AI일자리 매칭 시스템, 잡케어 시스템(한국고용정보원)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대국민 잡케어 서비스
2024년	- 일자리정책관리시스템, 데이터관리포털, DQ, META 개편 - 고용행정포털 고용안정지원금 구축에 따른 지원금 DW 개편
2025년	- 상담용 잡케어 UI/UX 전면개편 - 고용 AI 시범과제 추진
2026년	- AX 기반 국민체감 AI고용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대국민 잡케어 고도화 사업」추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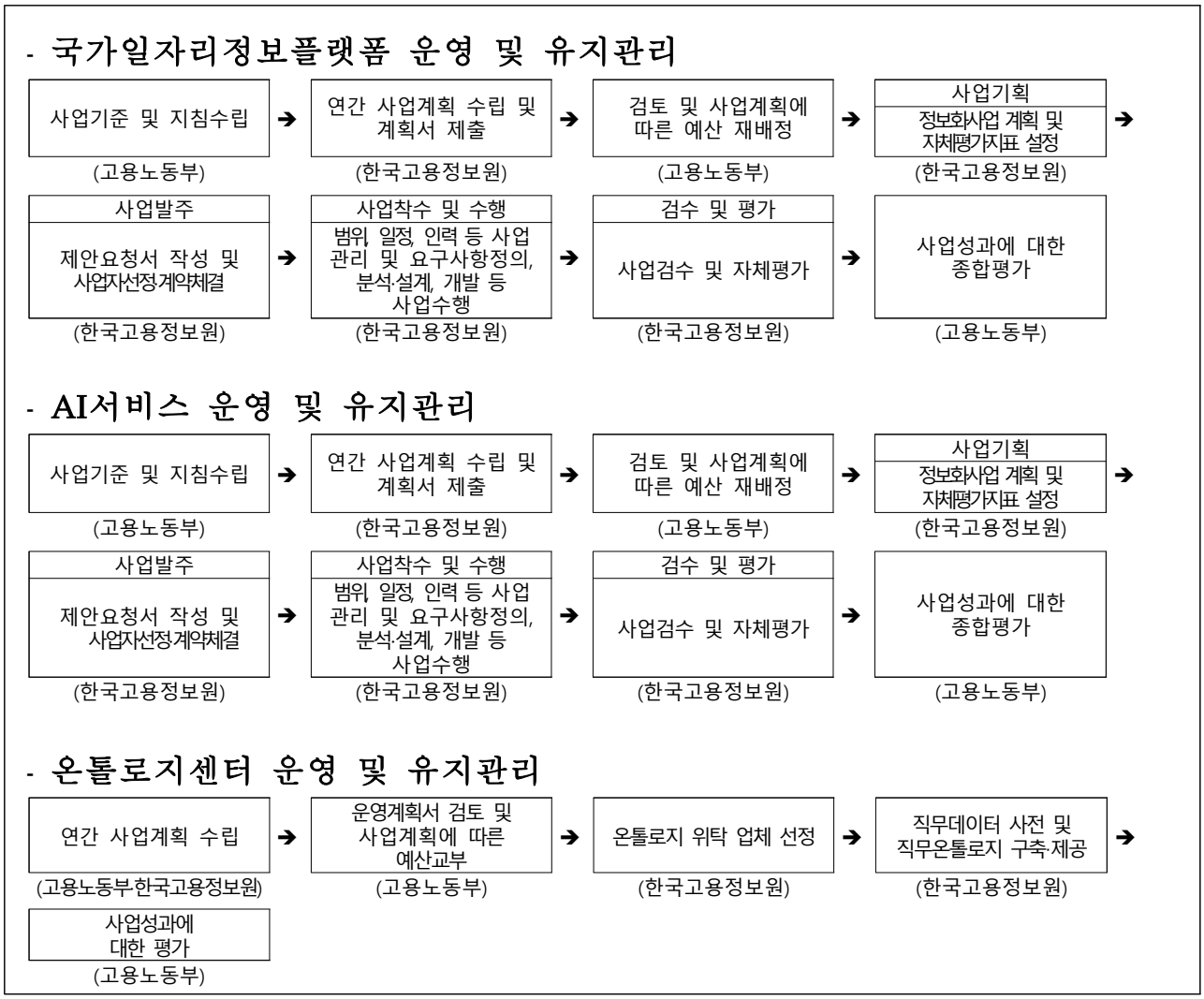
- **(통합적 고용서비스 창출)**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통합적 고용서비스 창출 가능
-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 고용·노동 통합 DW를 활용한 정책분석 고도화 및 연구 활성화 지원
-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의 단절성으로 인한 정보검색 등 행정업무처리의 중복 최소화 및 필요정보 즉시 제공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 강화로 업무효율성 증대, 고객 접점 및 지원 이력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고객 응대 시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고객 정보 활용 강화로 제도 및 지원사업의 세부적 개선 기회 확대
- **(시스템 운영 효율화)** 계정·권한관리의 통합 및 체계 일원화로 운영의 편리성 및 효율성 강화, 시스템별 Silo적 인프라 운영이 통합되어 IT자원의 효율화 및 보안성 강화
- **(핵심정보 생산·개방)** 고용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고객(기업·개인), 고용현황, 근로조건 등 공통된 기준의 핵심정보를 생산 → 공유·개방함으로써 고용정보 생태계 조성에 기여

- **(미스매치 완화·직무데이터 기반 확보)** 직무역량 중심 일자리 매칭 서비스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직무역량 중심 의사소통 원활화로 직무역량 기반 채용 확산, 직무데이터 기반 지능형 고용서비스 기반 확보
- **(지능형 진로지도 상담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상담사에게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서비스 구축
- **(대국민 서비스 향상)** 대국민 생애주기 지원 및 대상별 종합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증대, MDB 기반 고객분석역량 확보로 행정 서비스 다양화를 실현하여 대국민 신뢰도 향상, 고용노동 데이터 공유채널 통합 및 일원화로 인해 고용노동 데이터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운영기준 및 지침 수립	→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예산배정	→	사업 운영지원	→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자체평가	2023년	○ 의견 : 사업계획 명확, 고용24 포털로 상위목표 기여 AI 매칭 7.6만명, 잡케어 서비스 개시 ○ 결과 : 5등급
자체평가	2024년	○ 의견 : 사업성과 우수, 상위목표 달성 기여 상당 고용24 회원 999만명, AI 서비스 활용 37.1만명 ○ 결과 : 1등급
자체평가	2025년	○ 의견 : AI 로드맵 수립, 계획 이행 충실 AI 매칭취업 17.2만명, 고용24 UI 개편 ○ 결과 : 2등급
통합 재정사업성과 평가	2026년	○ 의견 : 법적 근거 명확하나, 수혜자·사업규모 적정성 분석 및 체계적 성과지표 설계·관리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853	7,853	-	-	7,853	7,853	100.0	-	-
2024년	8,216	8,216	-	-	8,216	8,216	100.0	-	-
2025년	7,507	7,507	-	-	7,507	7,507	100.0	-	-
2026년	11,101	11,101	-	-	11,101	9,880	89.0	해당없음	해당없음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7,853	7,853	7,853	7,853	-	7,853	7,852	-	1	100.0
2024	8,216	8,216	8,216	8,216	-	8,216	8,216	-	-	100.0
2025	7,507	7,507	7,507	7,507	-	7,507	7,507	-	-	100.0
2026	11,101	11,101	9,880	9,880	-	9,880	6,250	-	-	56.3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사 업 명
(23)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1075-30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75	303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	6,047	7,523	7,523	7,926	7,439	△84	△1.1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047	6,047	6,047	-	-	7,523	7,523	6,996	7,439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671	1,671	1,671	-	-	2,712	2,712	2,522	3,125
·고용24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354	1,354	1,354	-	-	1,484	1,484	1,380	1,484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3,022	3,022	3,022	-	-	3,327	3,327	3,094	2,83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047	6,047	6,047	-	-	7,523	7,523	6,996	7,439
·사업출연금(350-02)	6,047	6,047	6,047	-	-	7,523	7,523	6,996	7,43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	신속·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 지향적 민원서비스 통합채널 마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단일창구 구현으로 서비스 접근 일관성 및 용이성을 제고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
사업내용	구직·채용·직업훈련·실업급여 등 고용정책·사업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민원 신청하며, 개인·기업에게 맞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24(www.work24.go.kr)' 운영비

(1-2) 고용24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	다수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복합민원업무에 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통합·일원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도모
사업내용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등 고용정책·사업을 한 곳에서 행정 처리하고, 정책수립부터 집행·검증까지 정책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고용행정통합포털(www1.work24.go.kr, adm.work24.go.kr)' 운영비

(1-3)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목적	고용정책·사업을 신청·처리하는 핵심 시스템인 고용24를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관계 법령 준수, 서비스 만족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내용	고용정책·사업을 신청·처리하는 핵심 시스템인 고용24를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관계 법령 준수, 서비스 만족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ㅇ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법무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8. 출입국 정보 9.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10. 장애 정도 11.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3.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4.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추진경위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고용정보시스템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국판 뉴딜) 개인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천·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경력·훈련·자격 등)를 통합·디지털화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존 정보망으로 분산 제공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일원화한 ‘고용24’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2021년) 고용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24 구축방안 수립 ISP 사업(’21.3.~11.) ○ (2022년)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구축사업 추진(’22.10.~’23.12.) ○ (2023년)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3단계) 표준 API 구축사업 추진(’23.5.~’24.2.) ○ (2024년) 고용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시범)(’24.5.) ○ (2024년) 고용24 대민포털 정식서비스 개시(’24.9.) ○ (2025년) 개인·기업 맞춤형 ‘마이페이지’ 개편(’25.12) ○ (2026년) PC·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26.2)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1~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5,218	5,714	6,047	7,523	7,43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구인 기업, 노동자, 사업주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3,125	100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제5항 및 제40조
고용24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1,484	100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제5항 및 제40조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2,830	100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제5항 및 제40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7,523	7,439	△84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2,712	3,125	413
고용24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484	1,484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3,327	2,830	△497

○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 2,712 → (2027년 정부안) 3,125백만원, +15.2%**

- (설명) 고용분야 민원신청·신고 통합서비스 유지관리, 일자리·훈련·제도 검색, 정보제공 서비스 유지관리, 범정부 통합창구 구축지원을 위한 '민원신고·신청 API 연계서비스' 유지관리, 전자지갑 서비스 유지관리,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추천 및 훈련지원서비스 개발, 고용24 개인회원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구직신청 등)의 간편모드 개발

- (산출)
  -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 ('26) 2,276 → ('27) 2,476백만원(200백만원 증)
    * 고용24 대민포털 유지관리 : ('26) 2,276 → ('27) 2,276백만원(전년동)
      (FP) '26년 23,623.1 → '27년 23,623.1FP(전년동)
      (요율) '26년 12.0 → '27년 12.0%(전년동)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7,242,501,986원 × 12.0% + 0 = 2,069,100,238원
총합계(VAT포함)	**2,276,010,262원**

    * 고용24 전자지갑 유지관리 : ('26) 0 → ('27) 200백만원(순증)
      (FP) '26년 0 → '27년 1,594.6FP(순증)
      (요율) '26년 0 → '27년 14.3%(순증)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275,560,787원 × 14.3% + 0 = 182,405,193원
총합계(VAT포함)	**200,645,712원**

  - 고용24 대민포털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 ('26) 436 → ('27) 649백만원(213백만원 증)
    * 고용지원금 추천 및 훈련지원서비스 개발 : ('26) 0 → ('27) 436백만원(순증)
      (총 투입공수) '26년 0 → '27년 16.64M/M(순증)

산출 근거				금액(원)
구 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고용지원금 추천 및 훈련지원서비스 개발	직무별 평균임금	16.64	직무별 투입공수	135,418,944
직접인건비 합계				135,418,94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95,003,279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66,084,445
합계(VAT별도)				396,506,668
합계(VAT포함)				**436,157,335**

* 모바일 고용24(구직신청) 간편모드 개발 : ('26) 0 → ('27) 213백만원(순증)
(총 투입공수) '26년 0 → '27년 7.4M/M(순증)

산출 근거				금액(원)
구 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모바일 고용24(구직신청) 간편모드 개발	직무별 평균임금	7.4	직무별 투입공수	66,220,750
직접인건비 합계				66,220,75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95,357,88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32,315,726
합계(VAT별도)				193,894,356
합계(VAT포함)				**213,283,792**

* 상담예약관리서비스 개발 : ('26) 413 → ('27) 0원(△413백만원, 순감)
(HW/SW 구매비) '26년 346 → '27년 0원(△346백만원, 순감)
(일반용역비) '26년 90 → '27년 0원(△90백만원, 순감)

○ **고용24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 1,484 → (2027년 정부안) 1,484백만원, 전년동**

- (설명)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고용허가,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기관(고용센터, 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처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 (산출) 고용24 행정포털 운영 : ('26) 1,484 → ('27) 1,484백만원(전년동)
  * (FP) '26년 15,407.7 → '27년 10,671.1FP(△4,736.6FP, 기능 재산정 등으로 인한 감소)
  (요율) '26년 12.0 → '27년 13.95%(+1.95%p)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9,672,751,050원 × 13.95% + 0 = 1,349,348,771원
총합계(VAT포함)	**1,484,283,648원**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026년) 3,327 → (2027년 정부안) 2,830백만원, △14.9%**

- (설명) HW/SW 임차료 및 도입장비 유지보수료, 클라우드 시스템 SW 사용권 등 시스템 운영비 반영, 고용24 신규회원 가입의 본인인증 및 민원신청 정보 알림 SMS 비용, 정보화 사업 감리용역 및 조달청 수수료,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운영성 경비
  * 실제 이용자 의견을 고용24 전산개발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민·행정포털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대민포털 서비스모니터링단 운영, 행정포털 사용자 대상 교육 추진

- (산출)
  • 도입장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26) 2,287 → ('27) 1,690백만원(△597백만원)
  * '22년 도입 장비 리스계약 만기로 인해 장비 임차비 감액: ('26) 603백만원 → ('27) 0원 (△603백만원, 순감)
  * HW의 권장 유지보수 요율인 6~8% 중 7%로 적용, 상용SW 권장 유지보수 요율인 12~20% 중 12%로 적용: ('26) 1,111 → ('27) 1,215백만원(+104백만원)

구분	도입비(원)	요율	요율적용예산(원)
HW	4,982,289,900	7%	348,760,293
SW	7,220,793,460	12%	866,495,215
총합계(VAT포함)			**1,215,255,508**

  * WEB, WAS, DB 등 서버 운영을 위한 필수 OS, 미들웨어 SW 등 시스템 SW 유지관리비 : ('26) 573 → ('27) 475백만원(△98백만원)

구분	설명	수량	단가	금액(원)
시스템SW 사용권	[RH00004]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6	2,160,848	12,965,088
	[MW0232248] Red Hat JBoss Web Server	16Core	252,156	4,034,496
	[MW0290056] Red Hat JBoss Web Server	64Core	226,833	14,517,312
	[VCF-CLD-FND-A] VMware Cloud Foundation	768Core	572,000	439,296,000
기능SW 사용권	고용정보망 디자인 업무 수행 관련 SW라이선스(Adobe)	1	5,000,000	5,000,000
총합계(VAT포함)				**475,812,896**

  • 본인인증 및 알림 서비스 : ('26) 886 → ('27) 886백만원(전년동)
  * 고용24 본인인증 서비스 사용료 : ('26) 644 → ('27) 644백만원(전년동)
  * 민원신청 단계별 알림서비스 확대 : ('26) 242 → ('27) 242백만원(전년동)
  • 기타 운영비 : ('26) 154 → ('27) 254백만원(100백만원 증)
  * 정보화사업 감리용역 및 조달청 수수료 : ('26) 104 → ('27) 104백만원(전년동)
  * 웹사이트 관리 : ('26) 50 → ('27) 50백만원(전년동)
  * 고용24 고객만족도 조사 : ('26) 0 → ('27) 20백만원(순증)
  * 고용24 대민포털 서비스모니터링단 운영 : ('26) 0 → ('27) 20백만원(순증)
  * 고용24 행정포털 사용자 대상 교육 운영 : ('26) 0 → ('27) 60백만원(순증)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해당없음	해당없음	65.53%	67.87%	69.84%
실적	해당없음	65.4%	66.23%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101.1%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 '24.9월 고용24 대민포털 운영을 개시했으며, '24년의 실적은 '24.9월~'24.12월까지의 실적임

- **측정산식 :** 온라인 신청 건수 ÷ (온라인 신청 건수 + 오프라인 신청 건수)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24 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고용24 행정포털 시범 서비스 실시('23.11.)
2024년	고용24 대민포털 정식 서비스 오픈('24.9.)
2025년	고용 생애주기 맞춤형 메인화면 구성('25.8.)
2026년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개시('26.7.)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대국민) 직업생활 주기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추천받는 등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정보를 탐색하고, 취업·채용·실업급여 등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고용 민원 이용**

○ **(업무담당자) 정보의 연계를 통해 정보 자동 입력, 지원금 요건 판단 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기준 및 지침 수립(고용노동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한국고용정보원) →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재배정(고용노동부) → 정보화사업 계획 및 자체평가지표 설정 등 사업기획(한국고용정보원)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계약체결 등 사업발주(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검수 및 자체평가(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고용노동부)
- 고용24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기준 및 지침 수립(고용노동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한국고용정보원) →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재배정(고용노동부) → 정보화사업 계획 및 자체평가지표 설정 등 사업기획(한국고용정보원)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계약체결 등 사업발주(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검수 및 자체평가(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고용노동부)
-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운영기준 및 지침 수립(고용노동부) →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계획 검토 및 예산배정(고용노동부) → 사업 운영지원(한국고용정보원) →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해당 사업의 재정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목적 및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 수혜자의 규모 및 변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규모의 적정성을 장기적으로 자체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218	5,218	-	-	5,218	5,218	100.0	-	-
2024년	5,714	5,714	-	-	5,714	5,714	100.0	-	-
2025년	6,047	6,047	-	-	6,047	6,047	100.0	-	-
2026년	7,523	7,523	-	-	7,523	6,996	93.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2025년			해당없음
2026년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4)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31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실업자등능력 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 (일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돌봄서비스 훈련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일반고 특화훈련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내일배움카드 (일반)	593,833	627,325	778,545	725,620	725,620	98,295	15.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580,161	596,161	593,833	38	2,290	627,325	778,583	567,784	725,620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498,116	497,616	496,519	-	1,097	541,313	593,703	457,400	628,926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8,116	477,616	476,994	-	622	521,313	567,703	434,045	608,926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0,000	20,000	19,525	-	475	20,000	26,000	23,355	20,000
· K-뉴딜 아카데미	-	-	-	-	-	-	98,830	45,209	-
· 돌봄서비스 훈련	33,100	33,600	33,577	-	23	29,440	29,440	25,965	37,484
· 일반고 특화훈련	45,557	61,557	60,619	-	938	55,383	55,383	38,747	58,021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900	900	900	-	-	-	-	-	-
· 운영비 등	2,488	2,488	2,218	38	232	1,189	1,227	464	1,189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580,161	596,161	593,833	38	2,290	627,325	778,583	567,784	725,620
· 일반수용비(210-01)	507	507	485	-	22	508	558	298	508
· 특근매식비(210-05)	55	55	45	-	10	55	55	28	55
· 임차료(210-07)	20	20	10	-	10	20	20	-	20
· 일반용역비(210-14)	1,574	1,574	957	-	617	1,274	3,224	2,078	1,274
· 국내여비(220-01)	55	55	48	-	7	55	55	37	55
· 사업추진비(240-01)	48	48	48	-	-	48	48	30	48
· 일반연구비(260-01)	1,250	1,250	1,202	38	-	-	38	33	-
· 정책연구비(260-02)	-	-	-	-	-	50	50	-	50
· 포상금(310-03)	50	50	1	-	49	50	50	2	50
· 기타보전금(310-04)	575,513	591,513	589,960	-	1,553	625,176	774,396	565,278	723,471
· 사업출연금(350-02)	1,000	1,000	1,000	-	-	-	-	-	-
· 공사비(420-03)	29	29	24	-	5	29	29	-	29
· 자산취득비(430-01)	60	60	51	-	9	60	60	1	6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목적	민간 혁신훈련기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사업내용	실무 적합성이 높은 훈련을 바탕으로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

(1-2)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목적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 지원
사업내용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

(1-3)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목적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
사업내용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분야와 동일직종으로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先부담금 전액 환급

(1-4)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목적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사업내용	1,152~1,300시간(약 10개월) 범위 내 직종별 전공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직업기초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편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경위	○ '98년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취·창업훈련 및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취업유망분야 훈련 실시 ○ '08.9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 공급자(정부, 훈련기관) 중심 • 고용센터 훈련상담 미실시 • 배정물량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실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수요자(실업자, 기업) 중심 • 고용센터 훈련상담 실시 •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좌를 부스스로 적합훈련과정 선택·수 ○ '11년 계좌제 훈련 전면 실시(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폐지) ○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

	(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 ’22년 「K-디지털 크레딧」(고보기금)을「평생크레딧」(일반회계)으로 이관 및 사업 확대·개편 ○ ’26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내 「AI 캠퍼스」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518,815	584,906	580,161	627,325	725,62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 수혜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778,545	725,620	△52,925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573,703	608,926	35,223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0,000	20,000	-
돌봄서비스 훈련	29,440	37,484	8,044
일반고 특화훈련	55,383	58,021	2,638
운영비 등	1,189	1,189	-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2026년) 521,313(본예산) → (2027년 정부안) 608,926백만원, +16.8%**

- (설명) AI과정 훈련인원(+1만명), 훈련비 자부담 면제범위 확대, AI·선도기관 과정의 비수도권 훈련비 우대 신설 및 특별훈련수당 인상 등

- (산출) ㉠ 훈련비, 훈련장려금 등 : 607,966백만원(47,920명×12,687천원)
  ㉡ 운영비 : 960백만원(16개 기관×60,000천원)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기초역량훈련: (2026년) 20,000 → (2027년 정부안) 20,0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전공자 등을 위한 기초·예비 과정을 원격으로 제공

- (산출) 훈련비 : 20,000백만원(=66,600명×300천원)

○ **돌봄서비스 훈련: (2026년) 29,440 → (2027년 정부안) 37,484백만원, +27.3%**

- (설명)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제도적 양성이 필요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한 훈련 공급

- (산출) 훈련비 : 37,484백만원(=85,000명×441천원)

○ **일반고 특화훈련: (2026년) 55,383 → (2027년 정부안) 58,021백만원, +4.8%**

- (설명)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의 원활한 훈련지원을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훈련비 등: 58,021백만원(=6,600명×8,791천원)

○ **운영비 등: (2026년) 1,189 → (2027년 정부안) 1,189백만원, 전년동**

- (설명) 지방고용노동관서 운영비 등

- (산출) 1,18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K-Digital Training 취업률(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2	-	-	-	-
실적	57.5	-	-	-	-
달성도	84.3	-	-	-	-

○ **성과지표:** 폴리텍하이테크과정 취업률(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80.3	-	-	-	-
실적	80.1	-	-	-	-
달성도	99.8	-	-	-	-

○ **성과지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료율(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8	-	-	-	-
실적	78.6	-	-	-	-
달성도	99.7	-	-	-	-

○ **성과지표:**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인원(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786,600	690,258	-	-
실적	-	664,681	661,994	-	-
달성도	-	84.5	95.9	-	-

○ **성과지표:** 훈련 양성률(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89.8	89.8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 **자료수집방법/출처 :** 전수조사(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실시인원 270,005명, 460,033백만원 지원
2024년	· 실시인원 208,456명, 577,838백만원 지원
2025년	· 실시인원 210,106명, 593,833백만원 지원
2026년	· 실시인원 139,039명, 567,784백만원 지원(2026.7월말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개인이 생애에 걸쳐 훈련이력을 직접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전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훈련과정 선정 →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참여 → 훈련비 등 지급

훈련과정 심사 계획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 실시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훈련기관		고용센터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내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과정 선정 →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참여 → 훈련비 등 지급

훈련과정 선정 공고·심사	⇨	훈련과정 관리 국민내일배움 카드 발급	⇨	훈련 실시	⇨	훈련 모니터링	⇨	비용·수료 처리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 훈련기관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 고용정보원		고용센터

○ **(돌봄서비스 훈련)** 노인 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비 등 지원

훈련과정 심사·선정	⇨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	⇨	훈련비 및 장려금 지급	⇨	동일직종 취업 및 6개월 근속	⇨	훈련비 환급
고용부·심평원		훈련기관		고용센터		<환급기준>		고용센터

○ **(일반고 특화훈련)**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비 등 지원

재학생 대상 훈련수요 조사	⇨	적합훈련과정 심사·선정	⇨	훈련생 모집·배정	⇨	훈련과정 운영	⇨	훈련비 등 정산·지급
시·도 교육청		고용부·심평원		시·도 교육청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 평가	2024년	○ 의견 : 취업률 제고 등 사업개편 필요 ○ 결과 - 일반고특화훈련외: 개선필요 - 일반고특화훈련: 개선필요 - 평생크레딧(K-Digital Credit): 개선필요
재정지원 일자리 평가	2025년	○ 의견 : 취업률 제고 등 사업개편 필요 ○ 결과

		- 일반고특화훈련외, 일반고특화훈련: 개선필요 - 돌봄서비스 훈련: 양호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집행 효율성) 부처내의 훈련직종의 유사성 이슈는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타부처와의 교육훈련 유사성은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자 및 프로그램 내용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성과 달성도) 성과관리의 점진적 고도화를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 인원이라는 단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의 활용과 신규 목표치 발굴 필요 ○ 결과 - (집행률 효율성 제고) AI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이 신설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성과분석 등을 거쳐 차별성이 없는 과정은 내일배움카드 훈련으로 통합 필요 - (성과지표 발굴)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그간 全 연령 ·분야의 직업훈련을 대표하는 내배카 훈련 참여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 => ‘26년부터 훈련 양성률 지표로 대체 발굴 및 설정(목표: 89.3%)하였으며, 훈련별 취업률은 매년 산정하여 대외 공개 중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2024년	○ 지적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훈련 참여율과 동일 직종 취업률 제고 노력 ○ 조치 - (K-디지털 트레이닝) AI 과정 등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등 훈련 품질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 - (돌봄서비스 훈련) 제도 개편 이후 동일직종 취업률 상승, 참여인원 증가, 예산 정상집행 등 일정 부분 개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추후 사업 모니터링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18,815	-	518,815	228	519,043	460,033	88.6	6,364	52,646
2024년	584,906	-	584,906	6,364	591,270	577,838	98.8	-	13,432
2025년	580,161	1,600	596,161	-	596,161	593,833	99.6	38	2,290
2026년	627,325	151,220	778,545	38	778,583	567,784	72.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52,646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서 확보한 과정 중 일부 미개설·미운영으로 불용액 발생사유 작성
2024년	불용	13,432	돌봄서비스 훈련 자부담 환급 등 제도개편에 따른 불용 발생
2026년	이월	38	연구용역 연장에 따른 운영비 중 일반연구비 이월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25)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1131-31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31	315
명칭	사회복지	고용6	직업능력개발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고용노동부 직접수행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12,942	12,492	12,492	14,400	14,400	1,908	15.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942	12,942	12,942	-	-	12,492	12,492	9,322	14,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12,942	12,942	12,942	-	-	12,492	12,492	9,322	14,4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942	12,942	12,942	-	-	12,492	12,492	9,322	14,400
·일반용역비(210-14)	850	850	850	-	-	950	950	665	1,300
·민간경상보조(320-01)	12,092	12,092	12,092	-	-	11,542	11,542	8,657	13,1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신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
사업내용	직업계고와 민간 전문훈련기관이 협업하여 3년간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산학협동의 실시 -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추진경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계의 변화로 미래유망분야에서의 고졸인력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등직업교육 단계에서부터 이를 대비할 필요 - 그럼에도 미래유망분야에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에 '18년부터 고용부-교육부 합동으로 특성화고-훈련기관의 고졸인력 육성체계 구축 지원(국정과제) * 18~'19년: 학과 개편 지원, '20~'22년: 학과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SW인력 양성 대책('21.6월, 관계부처 합동) 수행 과제(고졸인력 양성) 선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수혜대상 확대(8개학과→40개학과) - 디지털,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 중('23년 55개→'24년 75개→'25년 85개→'26년 95개 학과 운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8~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7,503	11,823	12,942	12,492	14,4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미래유망분야로 학과개편하거나 지원필요성이 있는 직업계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보조	미래산업과 학고 등 130개학과	14,400	100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2,492	14,400	1,908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12,492	14,400	1,908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2026년) 12,492 → (2027년 정부안) 14,400백만원, +15.3%

- (설명) 지원학과 확대 ('26년)95개 학과 → ('27년안)130개 학과(+35개 학과)

* '22~'24년 선정 학과의 졸업생 배출에 따라 감소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학과 지원 확대 <총 학급 수: ('26년) 168개 → '(27년) 180개로 확대>

- (산출) ▪ 훈련 프로그램 운영 : 9,000백만원
  [(1학년 87개 학과 (신규 67개 포함) × 50백만) + (2학년 40개학과(기존) × 50백만) + (3학년 53개 학과(기존) × 50백만)]
  ▪ 교원연수비 : 1,300백만원(130개 학과*×10백만)

* ('23)23개+('24)20개+('25년)10개+('26년)10개+('27년)67개<신규>= 총 130개 학과

▪ 사업관리비 : 2,800백만원 [(1개 학년 90개 학과×20백만)+(2개 학년 30개 학과×24백만)+(3개 학년 10개 학과×28백만))]

* (1개 학년 운영) 기본 20백만원 → 학년 추가 운영시 +4백만원(최대 28백만원)

▪ 운영지원: ('26) 950→ ('27) 1,300백만원, +36.8%
- (요구) 경진대회 운영 및 운영지원기관 사업관리비
- (산출) 130개 학과×10백만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업주훈련 참여자만족도 (단위: 점)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사업주훈련 사업주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						
	달성도	-	-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6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57.5	-	-	-	-			
	달성도	84.3	-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80.3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0.1	-	-	-	-			
	달성도	99.8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7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8.6	-	-	-	-			
	달성도	99.7	-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목표	(신규)	786,600	690,258	(삭제)	(삭제)	3개년 평균인 786.6천명으로 목표 설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에 참여한 인원 (24.1.1~12.3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 분석시스템)
	실적	-	664,681	661,694	-	-			
	달성도	-	84.5	95.9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8	90.0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3) 89.7 (24) 89.5 (25) 90.2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 운영 대상 40개 학과→ 55개 학과 확대(45개교, 1,738명)
2024년	75개 학과(58개교) 운영 및 3,138명 훈련 실시
2025년	85개 학과(66개교) 운영 및 3,511명 훈련 실시
2026년	95개 학과(76개교) 운영 및 3,228명 훈련중 ('26.7월 실적)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신산업 관련 직업계고 학과에서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전문성을 갖춘 고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심사	고용노동부	○ 당해연도 보조사업자 사업심사 및 보완
⇩		
② 예산교부	고용노동부	○ 교부신청 예산 1차 지원
⇩		
③ 학과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 미래유망분야 학과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		
④ 지도점검 및 2차 예산교부	고용노동부	○ 지도점검 및 2차 예산교부
⇩		
⑤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한국기술교육대	○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⑥ 정산 등	고용노동부	○ 보조금 정산 등

부처		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
고용노동부	=>	직업계고(학과)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2023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우수
2024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보통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우수 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 개선 노력이 요구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23년 예결위 결산	2024년	○ 지적 : 참여학과가 없는 일부 지역(울산·세종·강 원·제주)의 사업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조치 : 광역지자체를 비롯하여 전국 직업계고 대상으로 사업참여 안내공문 발송,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결과 '25년 강원지역 직업계고 신규 선정 완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503	7,503	-	-	7,503	7,503	100.0	-	-
2024년	11,823	11,823	-	-	11,823	11,823	100.0	-	-
2025년	12,942	12,942	-	-	12,942	12,942	100.0	-	-
2026년	12,492	12,492	-	-	12,492	9,322	74.6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26)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33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심사평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위탁)
심사평가운영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위탁)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9,466	23,024	-	20,349	20,349	△2,675	△11.6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9,802	19,802	19,466	-	336	23,024	23,024	16,117	20,349
-심사평가	11,262	11,262	10,866	-	336	14,282	14,282	9,998	11,518
·심사평가운영	8,540	8,540	8,600	-	-	8,742	8,742	6,119	8,83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9,802	19,802	19,466	-	336	23,024	23,024	16,117	20,349
·일반용역비(210-14)	19,802	19,802	19,466	-	336	23,024	23,024	16,117	20,34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심사평가

사업목적	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심사, 훈련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직업훈련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 **(훈련기관 평가)** 정부지원훈련 참여 희망 기관의 기관건전성, 훈련성과 및 실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훈련품질 향상 및 부실기관 진입 차단 • **(훈련과정 심사)** 현장기반 훈련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내용, 시설·장비, 교·강사 등 적정성을 심사하여 양질의 훈련서비스 제공 • **(훈련과정 평가)** 훈련과정의 평가 체계 및 평가 실행 적정성(훈련생 학업성취도 포함)을 검증하여 훈련 성과 제고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신교수법, 디지털 전환 등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직업훈련 모니터링)** K-디지털 트레이닝사업 및 특화훈련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훈련 품질 제고 • **(부정훈련 관리)** 합동 지도·감독 및 공표제를 통해 부정·부실 훈련기관의 훈련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건전한 훈련시장 조성 •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 첨단분야 인력수요 급증에 따른 부처별 인력양성 사업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인력공급 확대

(1-2) 심사평가운영

사업목적	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심사, 훈련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직업훈련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 **(훈련기관 평가)** 정부지원훈련 참여 희망 기관의 기관건전성, 훈련성과 및 실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훈련품질 향상 및 부실기관 진입 차단 • **(훈련과정 심사)** 현장기반 훈련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내용, 시설·장비, 교·강사 등 적정성을 심사하여 양질의 훈련서비스 제공 • **(훈련과정 평가)** 훈련과정의 평가 체계 및 평가 실행 적정성(훈련생 학업성취도 포함)을 검증하여 훈련 성과 제고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신교수법, 디지털 전환 등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직업훈련 모니터링)** K-디지털 트레이닝사업 및 특화훈련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훈련 품질 제고 • **(부정훈련 관리)** 합동 지도·감독 및 공표제를 통해 부정·부실 훈련기관의 훈련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건전한 훈련시장 조성 •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 첨단분야 인력수요 급증에 따른 부처별 인력양성 사업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인력공급 확대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평가, 부정훈련 관리(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제56조의2, 제60조 • 훈련과정 심사,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 부정훈련 관리(합동 지도·감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8조, 제59조
추진경위	• 훈련기관 평가('99년~) 및 훈련과정 심사('08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現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한 훈련기관 평가, 과정심사 실시('99년 ~ '14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경제연구원, 한얼경제사회연구원('99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얼경제사회연구원('00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01~'03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04~'06년) → 한국직업능력개발('07~'14년)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도입 관련 훈련과정 심사 추진현황 : 계획수립('08. 7월) → 대구·광주지역 시범운영('08. 9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거 규정 마련('08. 12월) → 전국단위 시범실시 및 적합훈련과정 공고('09. 3월) → '10년 이후 매년 적합훈련과정 공고('10~)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 통합('15년~) -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14.12월, 기획재정부) 결과에 따라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로 통합('15년~) • 훈련과정 평가<훈련이수자평가> 실시('15년~) • 혼합훈련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맞춤형 컨설팅 실시('21년~) •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훈련직종별 전문가를 활용한 합동 지도·감독 실시('21년~) • 직업훈련 모니터링사업 실시('24~) •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실시('25~)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9~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9,469	18,394	19,802	23,024	20,34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직업훈련 참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3,024**	**20,349**	**△2,675**
심사평가	14,282	11,518	△2,764
심사평가운영	8,742	8,831	89

○ 심사평가 **(2026년) 14,282 → (2027년 정부안) 11,518백만원, -19.4%**

① 훈련기관 평가 (2026년) 3,000 → (2027년 정부안) 2,300백만원, 700백만원 감액

- (설명) 정부지원 민간훈련운영 위탁자격 인증을 위해 훈련기관의 기관건전성과 훈련실시 역량 등 평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년인증에 따른 훈련기관 신청 규모 등을 감안, ’26년 대비 -23.3% 감액

- (산출)
  * 기존기관: (’26년) 1,079개소 × 1.975백만원 - [조정]1.025백만원 → (’27 정부안) 878개소 × 1.975백만원 - [조정]0.05백만원
  * 신규기관: (’26년) 680개소 × 1.132백만원 + [조정]0.24백만 → (’27 정부안) 500개소 × 1.132백만원
  * 기관평가 효율화: (’26년) 심사평가위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1식 × 100백만원 → (’27 정부안) 폐지

② 훈련과정 심사 (2026년) 3,640 → (2027년 정부안) 3,934백만원, 294백만원 증액

- (설명) 실업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공급자 발굴 및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기반 훈련과정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훈련의 목표 및 내용, 훈련시설 장비, 훈련교·강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AI 캠퍼스 훈련 확대 등을 감안, '26년 대비 +8.1% 증액

- (산출)
  * 훈련과정: ('26년) 44,170개 과정 × 0.057백만원 + [조정]0.31백만원 → ('27 정부안) 39,680개 과정 × 0.057백만원 + [조정]0.24백만원
  * 첨단산업·디지털신기술핵심실무인재양성훈련 공급자 발굴 및 과정심사: ('26년) 715개 과정 × 1.374백만원 - [조정]0.41백만원 → ('27 정부안) 전년동
  * AI 캠퍼스 훈련 심사: ('27 정부안) 230개소 × 3백만원(신규)
  * 과정심사 효율화: ('26년) 1식 × 140백만원 → ('27 정부안) 폐지

③ 훈련과정 평가 (2026년) 2,145 → (2027년 정부안) 2,045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설명) 직업능력개발훈련 성과 제고를 위해 훈련기관의 평가체계 및 평가실행, 평가결과관리 등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훈련참여 훈련생을 대상 훈련성과 검증에 필요한 비용으로 훈련기관 신청 규모 등을 감안, '26년 대비 -4.7% 감액

- (산출) ('26년) 1,300개과정 × 1.65백만원 → ('27 정부안) 1,240개 과정 × 1.65백만원 - [조정]1백만원

④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 (2026년) 1,350 → (2027년 정부안) 1,200백만원, 150백만원 감액

- (설명) 직업훈련의 미래형 훈련방식으로의 전환, 훈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맞춤형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으로 훈련기관 신청 규모 등을 감안, '26년 대비 -11.1% 감액

- (산출) ('26년) 3,000건 × 0.450백만원 → ('27 정부안) 2,665건 × 0.450백만원 + [조정]0.75백만원

⑤ 직업훈련 모니터링 (2026년) 660 → (2027년 정부안) 560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설명) K-디지털 트레이닝 및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의 산업현장성 제고를 위해 훈련운영 모니터링에 필요한 비용으로 현장모니터링 및 조사규모 등을 감안, '26년 대비 -15.2% 감액

- (산출)
  * 모니터링 및 현업 적용도 조사: ('26년) 1식 × 500백만원 → ('27 정부안) 1식 × 430백만원
  * 기타 운영비: ('26년) 1식 × 160백만원 → ('27 정부안) 1식 × 130백만원

⑥ 부정훈련 관리 (2026년) 140 → (2027년 정부안) 14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상습적·고의적 부정훈련기관의 훈련시장 퇴출을 위한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제 운영, 훈련시장의 훈련품질 관리를 위해 직종별 전문가를 활용한 합동 지도·감독 실시 등에 필요한 비용, 전년동

- (산출)
  * 부정훈련공표제 운영: ('26년) 1회 × 20백만원 → ('27 정부안) 전년동
  * 합동 지도·감독 운영: ('26년) 300개소 × 0.4백만원 → ('27 정부안) 전년동

⑦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 (2026년) 327 → (2027년 정부안) 327백만원, 전년동

- (설명)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부처별 인력양성 사업 실태조사, 협업지원,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 전년동

- (산출)
  *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품질 관리체계 마련: ('26년) 1식 × 266백만원 → ('27 정부안) 전년동
  * 사업추진단 운영: ('26년) 1식 × 61백만원 → ('27 정부안) 전년동

⑧ 국민내일배움카드 AI 심사평가 도입 (2026년) 1,870 → (2027년 정부안) 641백만원, 1,229백만원 감액

- (설명) 국민내일배움카드 AI 심사평가 플랫폼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및 AI 심사평가 도입 확대 및 플랫폼 기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유지보수 등을 감안, '26년 대비 -65.7% 감액

- (산출) ('26년) 1식 × 1,870백만원 → ('27 정부안) 1식 × 641백만원

⑨ 원격훈련 콘텐츠 심사 및 과정 적정성 심사 AI 도입 효율화 (2026년) 1,150 → (2027년 정부안) 371백만원, 779백만원 감액

- (설명) 원격훈련 AI 심사평가 플랫폼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및 AI 심사평가 도입 확대 및 플랫폼 기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유지보수 등을 감안, '26년 대비 -67.7% 감액

- (산출) ('26년) 1식 × 1,150백만원 → ('27 정부안) 1식 × 371백만원

○ 심사평가운영 **(2026년) 8,742 → (2027년 정부안) 8,831백만원, +1.0%**

① 인건비 (2026년) 5,978 → (2027년 정부안) 6,067백만원, 89백만원 증액

- (설명) 심사평가 지원인력(정규직 58명, 공무직 32명) 인건비로 처우개선 등을 감안, '26년 대비 +1.5% 증액

- (산출) ('26년) 1식 × 5,978백만원 → ('27 정부안) 1식 × 6,067백만원

② 기관운영비 (2026년) 2,764 → (2027년 정부안) 2,764백만원, 전년동

- (설명) 사무공간 임차 및 관리비, 수도전기료, 직원 교육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동

- (산출) ('26년) 1식 × 2,764백만원 → ('27 정부안) 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786,600	690,258	-	-
실적	-	664,681	661,694	-	-
달성도	-	84.5	95.9	-	-

- **측정산식**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에 참여한 인원(실시기준 순인원)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전년 수준으로 목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 **성과지표:** 훈련 양성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8%	89.8%
실적	-	-	-	추진 중	-
달성도	-	-	-	추진 중	-

- **측정산식** :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3) 89.7% → (24) 89.5% → (25) 90.2%

- **자료수집방법/출처** : 전수조사(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훈련기관 평가(4,929개소) · 훈련과정 심사 - 집체 : 36,443개 과정(25,957개 적합), 원격 : 23,741개 과정(14,357개 적합) K-디지털 트레이닝: 693개(448개 적합) · 훈련과정 평가 - 훈련이수자 평가 : 1,085개 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685개 과정 · 중앙부처 훈련 실태조사(21개 기관, 372개 사업),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 사업(142개 사업)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3,674과정) · 부정훈련 관리(합동 지도·감독 294개소)
2024년	· 훈련기관 평가(4,946개소) · 훈련과정 심사 - 집체 : 34,050개 과정(24,091개 적합), 원격 : 27,091개 과정(17,250개 적합) K-디지털 트레이닝 : 792개 과정(559개 적합) · 훈련과정 평가 - 훈련이수자 평가 : 1,341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954과정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3,192과정) · 직업훈련 모니터링(9,774건) · 부정훈련 관리(합동 지도·감독 465개소)
2025년	· 훈련기관 평가(4,952개소) · 훈련과정 심사 - 집체 : 34,213개 과정,(25,348개 적합), 원격 : 20,707개 과정(14,006개 적합), K-디지털 트레이닝 등 : 569개 과정(304개 적합) · 훈련과정 평가 - 훈련이수자 평가 : 1,263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907과정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3,755건) · 직업훈련 모니터링(6,130건) · 부정훈련 관리(합동 지도·감독 422개소)
2026년	· 훈련기관 평가(4,898개소, 진행 중) · 훈련과정 심사 - 집체 : 32,391개 과정, 원격: 10,784개 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등 998개 과정 등 진행 중 · 훈련과정 평가 - 훈련이수자 평가 : 662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232개 과정 등 진행 중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 : 2,173건 진행 · 부정훈련 관리 : 합동 지도·감독 336건 진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지속적인 AI 심사평가시스템 확대로 심사평가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 제고 및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화를 통해 현장 중심(모니터링, 훈련기관 컨설팅 등)의 품질관리 강화

○ AI 등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 발맞춰 훈련기관에 대한 AX·DX 훈련 전환 및 운영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여 훈련 혁신 및 내실화

○ 훈련기관 평가 등 심사평가와 컨설팅 및 부정훈련 관리 등 품질관리 결과 간 환류를 통해 부정·부실기관의 훈련시장 진입 차단 등 건전한 훈련시장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훈련기관 평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	훈련기관
▲ 기본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평가 계획 공고 및 운영 ▲ 평가 결과 발표 및 보고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 신청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에 따라 매년 훈련기관(약 5,000개소)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평가 신청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는 기본평가, 역량평가(현장+훈련성과)를 거쳐 최종 결과 발표(5년·3년·1년·인증유예) 및 보고

< 훈련과정 심사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	훈련기관
▲ 기본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훈련과정 심사계획 공고 및 운영 ▲ 심사 결과 발표 및 보고		▲ 훈련과정운영계획서 작성 ▲ 심사 신청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에 따라 매년 훈련기관(약 5,000개소)이 훈련과정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심사 신청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는 기본요건, 훈련과정 적정성 심사, 훈련성과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과(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발표 및 보고

<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심사평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	훈련기관
▲ 기본 정책방향 수립		▲ 심사평가 계획 공고 및 운영 ▲ 심사평가 결과 발표 및 보고 ▲ 훈련과정 운영 사후관리 지원 ▲ KDT 훈련기관 발굴		▲ KDT 훈련과정운영계획서 작성 ▲ 심사 신청 ▲ 프로젝트 평가 신청

-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정책에 따라 매년 훈련기관이 KDT 훈련과정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심사 신청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는 기본요건, 훈련과정 적정성 심사, 인터뷰 심사, 훈련성과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발표 및 보고

< 훈련과정 평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 기본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 평가 계획 공고 및 운영 ▲ 평가 결과 발표 및 보고	→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 신청

- 고용노동부의 훈련과정 평가 정책에 따라 매년 훈련기관(약 5,000개소)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이수자평가 및 프로젝트 평가 신청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는 훈련기관의 평가체계, 실행 적정성, 훈련생 성취 수준 등을 검증하여 최종 결과(A~D등급) 발표 및 보고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 기본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 직업훈련 전환 컨설팅 공고 및 운영 ▲ 직업훈련 전환 컨설팅 결과 보고	→	▲ 직업훈련 전환 컨설팅 신청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에 따라 매년 훈련기관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컨설팅을 신청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는 권역별 기초 컨설팅과 새로운 훈련방식 등 훈련기관 특성을 사전 진단하여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직업훈련 모니터링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 기본 정책방향 수립	←	▲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현장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	▲ 자체체크리스트 작성 ▲ 모니터링 협조 및 인터뷰 참여 ▲ 훈련운영 자료 제출

-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정책에 따라 선정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가 현장 모니터링, 온라인(또는 유선) 조사 등 훈련운영 실태파악 및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 개선사항과 더불어 훈련기관별 피드백 보고서 제공함으로써 훈련품질 제고

< 부정훈련 관리(부정훈련 공표제)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 기본 정책방향 수립	←	▲ 공표대상 명단 확정 및 사전 통보 ▲ 심의위원회 업무지원 ▲ 공표대상 명단 확정 보고 ▲ 부정훈련 명단 공표(고용24 등)	→	▲ 사전 통보 확인 ▲ 소명 자료 제출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가 사전 분석하여 공표대상 확정 및 해당 훈련기관 사전 통보
- 고용노동부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종 공표 대상을 확정하여 매년 부정훈련기관 공표(고용 24 등)

< 부정훈련 관리(합동 지도·감독)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지방노동관서
▲ 기본 정책방향 수립	←	▲ 점검계획 수립 ▲ 점검대상 분석 및 결과 제공 ▲ 훈련기관 지도·감독 지원(품질 중심)	←	▲ 전문위원 섭외 및 지원 요청 ▲ 훈련기관 지도·감독 등 관리 ▲ 행정처분 등 조치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가 직업훈련 빅데이터를 분석(AI 활용)하여 점검 대상 선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선정 및 분석 결과를 제공
-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필요 시 내용 또는 법률전문가 동행)

<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신규 발굴(대학 등)
▲ 기본 정책방향 수립	←	▲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실태조사 ▲ 통합 지원 실무단 운영 ▲ 대학 등 우수기관 발굴 ▲ 첨단·전략산업 성과·품질관리 체계	←	▲ 심사 및 모니터링 참여 ※ 첨단산업분야 과정개발비 지원 대학 등

-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정책에 따라 타 부처의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신규 기관(대학, 혁신기업 등)을 발굴
- 신규 기관이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심사 및 훈련성과 관리 등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운영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해당 없음 ○ 결과 : 우수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해당 없음 ○ 결과 : 보통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훈련과정 차별화 전략 컨설팅」을 통한 훈련 혁신 가속화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방법 명시 및 지속가능한 AI 심사평가 시스템 구축과 함께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재정 효율화 도모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결산	2023년	○ 지적 : 특정 심사평가위원에게 심사·평가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더 많은 심사평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평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조치 : 위원별 활용 쿼터 조정, 배정 교섭 무작위 순위 부여 프로그램 자체 개발 및 배포, 심사평가 사례 위주 교육 및 위원별 실적평가 실시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9,469	19,469	-	-	19,469	18,825	96.7	-	644
2024년	18,394	18,394	-	-	18,394	18,394	100.0	-	-
2025년	19,802	19,802	-	-	19,802	19,466	98.3	-	336
2026년	23,024	23,024	-	-	23,024	16,117	7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개요

붙임 1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개요

□ **(사업목적)**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을 위해, 기관건전성, 훈련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실업자 및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22년부터 훈련기관 평가와 훈련 과정심사(집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로 일원화하여 실시(연 1회)하되, 특화훈련 사업의 경우 사업별 공고에 따라 별도 추진

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절차

사전준비 및 접수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발표		
기관관리번호, 실시가능직종, NCS확인강사 등록·승인 등	→ 신청 접수	→ 정정·보완	→ 기본평가* / 역량평가 / 과정심사**		→ 결과발표	→ 이의 신청	→ 이의신청 결과발표
~접수 전	4.13.~4.27.	4.28.~5.6.	5월~10월		10.30.	10.30.~11.6.	12.9.

※ 위 심사평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정건전성 평가 결과 별도 안내 (2026.6.30. 예정)

** 특화훈련 과정심사는 추후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

용어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① **기본평가**: 준법성 + 재정건전성 등	제12조 제1항
② **역량평가**: 훈련성과 평가 + 현장평가	제12조 제1항
③ **인증평가**: 기본평가 + 역량평가	제12조 제1항
④ **과정심사**: 기본요건심사 + 과정적정성심사 + 성과심사 + 훈련비심사	제19조, 제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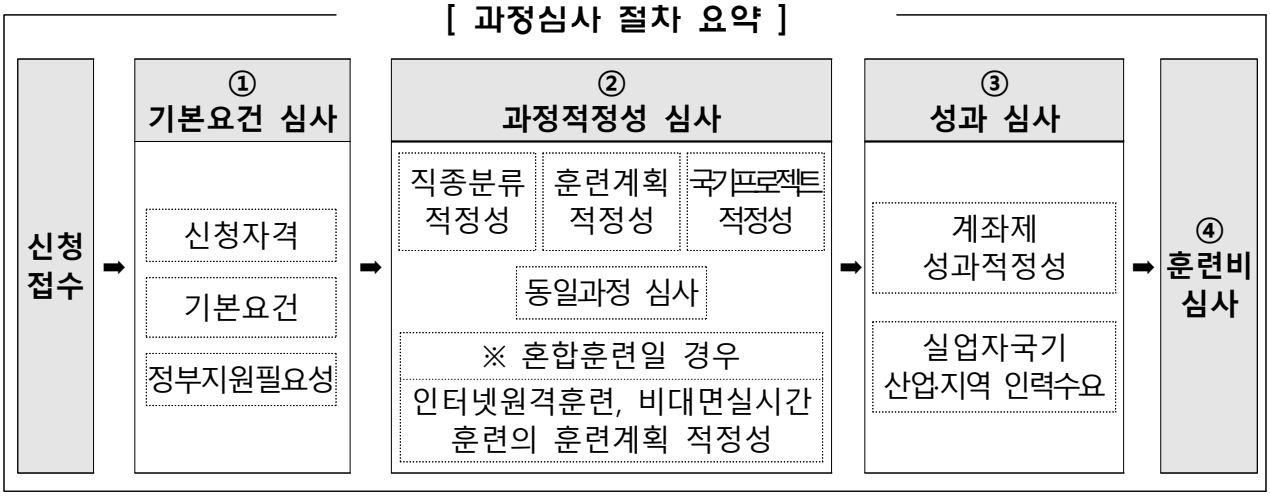
□ **(사업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

□ **(주요내용)** 기본평가(준법성, 재정건전성), 과정심사(기본요건, 과정적정성, 성과, 훈련비 등) 및 역량평가(훈련성과, 훈련실시 역량) 등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상호 연계성 및 신뢰도 제고

○ **(기본평가)** 준법성 평가(행정처분, 임금체불 등), 재정건전성 평가(세금 체납 여부, 신용수준 등) 등 항목별로 감점제(20점 이상 '부적합' 판정)

○ **(과정심사)** 기본요건심사(신청자격, 과정 편성요건, 필수내용), 과정적정성 심사(직종분류 적정성, 정부지원 필요성, 훈련계획 적정성), 성과심사(계좌제는 성과적정성, 국기는 산업·지역 인력수요), 훈련비 심사 등 항목별 적부 판정

[과정심사 절차 요약]



○ **(역량평가*)** 훈련성과 평가(취업률, 만족도 등), 현장평가(훈련운영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로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판정

* 신규기관은 현장평가(100점)만 실시하며,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판정

□ **(결과 활용)** 훈련기관 인증등급 부여(5년인증, 3년인증, 1년인증, 인증유예) 및 훈련과정 적합 여부 판정

[인증평가 등급 부여 기준]

기본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부여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	(실적보유기관) 3년인증 (신규기관) 1년인증
	→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	인증유예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 - -

사 업 명
(27)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34	307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자격검정사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관리사업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확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교류협력사업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후시설안전개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상운영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80,333	193,723	193,723	188,042	188,042	△5,681	△2.9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82,333	182,333	180,333	-	-	193,723	193,723	163,559	188,042
·자격검정사업	137,506	137,506	136,005	-	-	138,544	138,544	116,959	124,236
·외국인고용관리사업	32,492	32,492	32,492	-	-	22,893	22,893	19,311	14,442
·HRD확산	1,843	1,843	1,843	-	-	2,045	2,045	1,721	1,227
·국제교류협력	504	504	504	-	-	504	504	417	378
·노후시설안전개선	-	-	-	-	-	-	-	-	6,442
·경상운영비	139,971	139,971	139,472	-	-	146,180	146,180	123,453	152,317
·자체수입	△129,983	△129,983	△129,983	-	-	△116,443	△116,443	△98,302	△111,0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82,333	182,333	180,333	-	-	193,723	193,723	163,559	188,042
·사업출연금(350-02)	182,333	182,333	180,333	-	-	193,723	193,723	163,559	188,04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자격검정사업

사업목적	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전문인력 배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세계기술 선도
사업내용	기술자격 491종목 3,759천명, 전문자격 37개 종목 645천명

(1-2) 외국인고용관리사업

사업목적	외국인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내용	입국지원 78천명, 취업교육 1.7천명, 국외 EPS센터 18개국 운영, 한국어능력시험 220천명, 입국초기 취업적응 지원 및 사업장내애로해소지원 31천명

(1-3) HRD확산

사업목적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이슈와 정부정책, 공단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 국민의 평생능력개발 확산 노력
사업내용	일자리, 능력중심채용 등 정부정책, 공단 사업 정보서비스 제공, HRD컨퍼런스 개최, HRDK미래교육원 운영 등

(1-4) 국제교류협력

사업목적	NCS, 자격검정, 기능경기 등 한국의 선진 HRD시스템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에 지원하는 등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내용	기술교류 2개국, 국가 간 협력사업 4개국, 국제 HRD포럼, 파독근로자 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 수행

(1-5) 노후시설안전개선

사업목적	노후시설의 균열·누수 등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사업내용	노후시설 1개소 안전 개선

(1-6) 경상운영비

사업목적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통 경비를 통해 사업 수행 기반 유지
사업내용	직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통 경비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설립목적) 및 제6조(사업)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 4(국제협력증진) 및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 세무사법 등 30개 관계법령(권한의 위임・위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위탁)
추진경위	○ ‘81년 국가기간산업분야의 기능인력양성 및 직업안정 활성화 방안 실천 계획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설립(’82년 3월 설립) ○ ’95년부터 한・독 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 ‘00년 한・중, ’04년 한베, ‘09년 한・UAE, ’11년 한・몽골 교류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 ‘03.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입·출국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실시 ○ ‘05년부터 ILO(국제노동기구)와 매년 협력사업(Skills Network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회의(APEC Working Group 회의)등에 참석 ○ ‘06. 3월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에 따라 기능대학으로 19개 직업전문학교 이관 및 한국고용정보원 별도 법인 설립 ○ ‘08. 1월 국가자격통합관리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른 신규 및 추가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직 재설계 ○ ‘10. 12월 제1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협의 ○ ‘11. 6월 외국인고용허가제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 ‘11. 11월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마련, 베트남 및 태국의 귀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11.12월) ○ ‘12. 7월 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 특례제도 시행(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숙련인력의 계속 사용 지원) ○ ‘12. 9월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13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 의결 ○ ‘12. 12월 제3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13~’17) 확정 ○ ‘14. 5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시행 ○ ‘18. 11월 제4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18~‘22) 확정 ○ ‘21. 4월 외국인근로자 최초 고용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 의무화 개정(‘21.10.14 시행) ○ ‘24. 1월 제5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23~‘27) 확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55,099	184,482	182,333	193,723	188,04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기업과 근로자, 입직자, 학생 등 전 국민 및 외국인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자격검정사업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124,236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외국인고용관리사업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14,442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HRD확산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1,227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국제교류협력사업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378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노후시설안전개선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6,442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경상운영비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152,317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93,723	188,042	△5,681
자격검정사업	138,544	124,236	△14,308
외국인고용관리사업	22,893	14,442	△8,451
HRD확산	2,045	1,227	△818
국제교류협력사업	504	378	△126
노후시설안전개선	-	6,442	6,442
경상운영비	146,180	152,317	6,137
자체수입	△116,443	△111,000	5,443

① 자격검정사업 (2026년) 138,544 → (2027년 정부안) 124,236백만원, △10.3%

□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 ('26) 101,942 → ('27) 91,861백만원(△14,308백만원)

○ 검정시행 및 관리 : ('26) 91,020 → ('27) 80,939백만원(△10,081백만원)

▪ 검정시행비 : (2026) 70,966 → (2027 정부안) 70,225백만원(△741백만원)

- (산출) ① 검정 시행비 : 3,759천명×18,879원=70,966백만원(전년동)

② DTC 지출 효율화 : 3개소×△247백만원=△741백만원

▪ 기술자격관리 : (2026) 20,054 → (2027 정부안) 10,714백만원(△9,340백만원)

- (산출) ① RFID 기반 시험결과물 관리체계 구축 : ('27) 488백만원(순증)

② 차세대자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6) 10,277 → ('27) 1,256백만원(△9,021백만원)

③ 시행지원 : ('26) 9,777백만원 → ('27) 8,970백만원(△807백만원)

○ 출제관리 : (’27) 6,692백만원(전년동)

▪ 문제출제 및 발간 : (’27) 6,416백만원(전년동)

- (산출) ① 문제출제·발간 : 97천문항×62,856원=6,097백만원(전년동)

② 출제기준정비 : 246종목×1,296천원=319백만원(전년동)

▪ 출제관리지원 : (’27) 276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276백만원

○ 채점관리 : (’27) 3,993백만원(전년동)

- (산출) 582천명×6,861원=3,993백만원(전년동)

○ 자격증 발급 : (’27) 237백만원(전년동)

- (산출) 자격증 발급 430천명×551원=237백만원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 (’26) 11,736 → (’27) 9,933백만원(△1,803백만원)

○ 과정평가형 자격시행 및 관리 : (’27) 7,633백만원(전년동)

- (산출) ① 1,766과정×4.2백만원=7,333백만원(전년동)

② 플러스자격 운영 : (’27) 300백만원(전년동)

○ 과정평가형 정보시스템 운영 : (’26) 473 → (’27) 0백만원(순감, 이관)

* 정보화 사업체계 개편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로 이관

○ 과정평가형자격 운영기관 지원 : (’26) 3,630 → (’27) 2,300백만원(△1,330백만원)

- (산출) (’26) 796과정×4.6백만원=3,630백만원 → (’27) 500과정×4.6백만원=2,300백만원(△1,330백만원)

□ 국가자격시험장 확충 : (’26) 12,024백만원 → (’27) 10,200백만원(△1,824백만원)

○ 국가자격시험장 확충 : (’26) 8,904 → (’27) 7,600백만원(△1,304백만원)

- (산출) ① DTC운영 : (’26) 13개소×397백만원=5,160백만원

→ (’27) 16개소×397백만원=6,352백만원(+1,192백만원)

② DTC 신규구축 : (’26) 3개소×1,248백만원=3,744백만원

→ (’27) 1개소×1,248백만원=1,248백만원(△2,496백만원)

○ 노후 시설·장비 보강 : (’26) 3,120 → (’27) 2,600백만원(△520백만원)

- (산출) (’26) 26검정장×120백만원=3,120백만원

→ (’27) 26검정장×120백만원*84%=2,600백만원(△520백만원)

□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 : (’26) 12,692백만원 → (’27) 12,092백만원(△600백만원)

○ 검정시행 및 관리 : (’27) 5,993백만원(전년동)

- (산출) 645천명×9,291원=5,993백만원(전년동)

○ 출제관리 : (’26) 5,699 → (’27) 5,099백만원 (△600백만원)

- (산출) ① 차세대 출제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26) 12월×50백만원=600백만원

→ (’27) 0백만원(순감, 이관)

* 정보화 사업체계 개편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로 이관

② 전문자격 출제 : 37자격×137,810천원=5,099백만원(전년동)

○ 채점관리 : (’27) 1,000백만원(전년동)

- (산출) 48,477명×20,628원=1,000백만원(전년동)

□ 기업자격 정부인정 : (’27) 150백만원(전년동)

○ 기업자격 정부인정 운영 : (’27) 150백만원(전년동)

- (산출) 50기업×3백만원=150백만원(전년동)

② 외국인고용관리사업 (2026년) 22,893 → (2027년 정부안) 14,442백만원, △36.9%

□ 입국지원 및 취업교육 : (‘26) 3,624 → (‘27) 2,094백만원(△1,530백만원)

○ 입국지원 : (‘26) 2,619 → (‘27) 2,085백만원(△534백만원)

- (산출) (‘26) 98천명×26,727원=2,619백만원

→ (’27) 78천명(신규 55천명, 재입국 23천명)×26,727원=2,085백만원(△534백만원)

○ 외국국적동포(H-2)취업교육 : (‘26) 1,005 → (‘27) 9백만원(△996백만원)

- (산출) (‘26) 22천명×45,682원=1,005백만원 → (‘27) 1.7천명×5,000원=9백만원(△996백만원)

* H-2 비자 신규발급 중단에 따른 교육인원 축소 및 단가(△40,682원) 효율화

□ 외국인력선발 : (‘26) 10,704 → (‘27) 5,132백만원(△5,572백만원)

○ 외국인력선발시행 : (‘26) 10,704 → (‘27) 5,132백만원(△5,572백만원)

- (산출) (’26) 440천명×24,328원=10,704백만원 → (’27) 220천명×23,328원= 5,132백만원(△5,572백만원)

□ EPS센터운영 및 송출국사업협력 : (‘26) 4,428 → (‘27) 4,322백만원(△106백만원)

○ EPS센터운영 : (’26) 4,040 → (’27) 4,322백만원(+282백만원)

- (산출) ① EPS센터운영 : 17개소×238백만원=4,040백만원(전년동)

② 카자흐스탄 EPS센터 신설 : 1개소×282백만원=282백만원(순증)

○ 송출국사업협력 : (’26) 388 → (’27) 0백만원(순감)

□ 체류지원 : (‘26) 1,405 → (’27) 712백만원(△693백만원)

○ 체류지원 : (‘27) 712백만원(전년동)

- (산출) ① 입국초기 취업적응 지원: 19,800명×7.6천원=150백만원(전년동)

②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11,400명×49.4천원=562백만원(전년동)

○ EPS기업지원단 : (’26) 693 → (’27) 0백만원(순감)

□ 외국인고용관리교육·훈련 : (‘27) 1,885백만원(전년동)

○ 외국인근로자훈련 : (‘27) 1,038백만원(전년동)

- (산출) ① 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 : 1,425명×436천원=621백만원(전년동)

② 귀국예정자 재정착교육훈련 : 1,140명×366천원=417백만원(전년동)

○ 사용자교육 : (’27) 139백만원(전년동)

- (산출) 5,350명×26천원=139백만원(전년동)

○ 한국어교육 : (’27) 708백만원

- (산출) 1,646명×430천원=708백만원(전년동)

□ 귀국지원 : (’26) 847 → (’27) 297백만원(△550백만원)

- (산출) ① 귀국지원 방문 : (’27) 1식×95백만원=95백만원(전년동)
② 자발적 귀한 및 불법고용예방 캠페인 : (’26) 1식×550백만원
→ (’27) 1식×100백만원=100백만원(△450백만원)
③ 휴면보험금 관리 : (’26) 1식×202백만원 → (’27) 1식×102백만원=102백만원(△100백만원)

③ HRD확산 (2026년) 2,045 → (2027년 정부안) 1,227백만원, △40.0%

□ HRD확산 : (’26) 1,103 → (’27) 512백만원(△591백만원)

○ HRD확산 : (’26) 900 → (’27) 334백만원(△566백만원)

- (산출) 1식×334백만원

○ HRD컨퍼런스 : (’26) 203 → (’27) 178백만원(△25백만원)

- (산출) 1식×178백만원

□ HRD확산기반조성 : (’26) 942 → (’27) 715백만원(△227백만원)

○ HRDK미래교육원 운영 : (’26) 942 → (’27) 715백만원(△227백만원)

- (산출) ① HRDK미래교육원 운영 : (’26) 740 → (’27) 715백만원(△25백만원)
② 온라인플랫폼 유지·관리 : (’26) 202 → (’27) 0백만원(순감, 이관)
* 정보화 사업체계 개편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로 이관

④ 국제교류협력 (2026년) 504 → (2027년 정부안) 378백만원, △25.0%

□ 기술교류 및 국제행사 등 : (’26) 200 → (’27) 100백만원(△100백만원)

- (산출) 2개국(국제기구)×50백만원

□ 국가간 협력사업 : (’26) 129 → (’27) 124백만원(△5백만원)

- (산출) (’26) 2개국× 50백만원+29백만원(신규협력국발굴)= 129백만원
→ (’27) 4개국×23.75백만원+29백만원(신규협력국발굴)=124백만원(△5백만원)

□ 국제HRD포럼 : (’26) 51 → (’27) 30백만원(△21백만원)

- (산출) (’26)1식×51백만원 → (’27) 1식×30백만원=30백만원(△21백만원)

□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 수행 : (’27) 124백만원(전년동)

- (산출) 기념관 운영 1식 × 124백만원

⑤ 노후시설안전개선 (2027년 정부안) 6,442백만원, 순증

- (산출) 노후시설 안전개선 : 공사비 6,114백만원 + 설계비 263백만원 + 감리용역 65백만원

⑥ 경상운영비 (2026년) 146,180 → (2027년 정부안) 152,317백만원, +4.2%

□ 기관운영비 : (‘26) 9,297 → (’27) 9,582백만원(+285백만원)

- ’26년 Base 9,297백만원
- ’26년 완료소요 △750백만원
- ’27년 공통감액 등 △364백만원
- ’27년 특이소요 등 1,399백만원

□ 인건비 : (’26) 134,258 → (’27) 140,002백만원(+5,744백만원)

- ’26년 Base 134,258백만원
- ’27년 인건비 상승분 5,774백만원

□ 예비비 : (‘26) 2,625백만원 → (’27) 2,733백만원(+108백만원)

⑦ 수입 (2026년) 116,443 → (2027년 정부안) 111,000백만원, △4.7%

□ 자격검정수입 : (’26) 80,704 → (‘27) 85,414백만원(+4,710백만원)

○ 국가기술자격 수수료(3,759천명) : (‘26) 67,453 → (‘27) 72,163백만원(+4,710백만원)

- (산출) ① 기술자격 수수료 : 3,759천명 × 24,384원 = 91,663백만원(전년동)
  ② 청년 응시료 지원 : (’26) 787천명×24,624원×2.5회×50%=△24,210백만원
  → (‘27) 633천명×24,624원×2.5회×50%=△19,500백만원(+4,710백만원)

○ 자격증 발급(430천명) : (‘27) 1,326백만원(전년동)

- (산출) 430천명 × 3,084원 = 1,326백만원

○ 국가전문자격 수수료(645천명) : (‘27) 11,925백만원(전년동)

- (산출) 645천명 × 18,488원 = 11,925백만원

□ 외국인고용관리 수입 : (’26) 24,920 → (‘27) 13,600백만원(△11,320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비 : (’26) 7,925 → (‘27) 6,037백만원(△1,888백만원)

- (산출) (‘26) 98천명x80,865원 = 7,925백만원 → (‘27) 55천명(신규)x60,000원 + 23천명(재입국)
  x119,000원 = 6,037백만원(△1,888백만원)

○ 동포취업교육비 : (’26) 2,211 → (‘27) 171백만원(△2,040백만원)

- (산출) (‘26) 22천명 x 100,485원 = 2,211백만원 → (‘27) 1.7천명 x 100,485원 = 171백만원(△2,040백만원)

○ 한국어능력시험 접수수수료 : (’26) 14,784 → (‘27) 7,392백만원(△7,392백만원)

- (산출) (‘26) 440천명×33,600원= 14,784백만원 → (‘27) 220천명×33,600원= 7,392백만원(△7,392백만원)

□ 사업외 수입 : (‘26) 5,086백만원 → (‘27) 6,060백만원(+974백만원)

○ 이자수입(3년 결산평균) : (‘26) 2,896백만원 → (‘27) 3,293백만원(+397백만원)

- (산출) 3년(‘23~‘25) 결산 평균 반영

○ 잡수입(3년 결산평균) : ('26) 2,190백만원 → ('27) 2,767백만원(+577백만원)

- (산출) 3년('23~'25) 결산 평균 반영

□ 이월결산잉여금 : ('26) 5,733 → ('27) 5,926백만원(+193백만원)

○ 전기이월금 : ('26) 5,378백만원 → ('27) 3,113백만원(△2,265백만원)

- (산출) 집행잔액 및 이월예산 감소 반영

○ 전전기이월금 : ('26) 355백만원 → ('27) 2,813백만원(+2,458백만원)

- (산출) 기획예산처 결산잉여금 사용협의 결과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훈련 양성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8(%)	89.8(%)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3) 89.7 ('24) 89.5 ('25) 90.2

- **자료수집방법/출처 :** 전수조사(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국가기술자격 수험인원 : 3,943,790명 - 국가전문자격 수험인원 : 546,730명 -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 100,148명 -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 19,174명 - 한국어능력시험 : 552,274명 - 기능평가 : 194,118명 - 국제기술교류/회의참가 : 3회 535명
2024년	- 국가기술자격 수험인원 : 3,906,895명 - 국가전문자격 수험인원 : 498,380명 -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 78,025명 -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 18,623명 - 한국어능력시험 : 771,328명 - 기능평가 : 138,624명 - 국제기술교류/회의참가 : 3회 244명
2025년	- 국가기술자격 수험인원 : 3,982,711명 - 국가전문자격 수험인원 : 460,830명 -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 61,184명

	-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 11,647명 - 한국어능력시험 : 303,276명 - 기능평가 : 46,898명 - 국제기술교류/회의참가 : 3회 408명
2026년	- 국가기술자격 수험인원 : 3,097,997명 - 국가전문자격 수험인원 : 242,605명 -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 25,067명 -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 1,635명 - 한국어능력시험 : 265,715명 - 기능평가 : 21,061명 - 국제기술교류/회의참가 : 2회 143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자격검정사업)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국가-민간 자격체계 구축 및 취득 경로 다양화를 위해 연간 국가기술자격 3,759천명, 전문자격 645천명 대상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자격취득자를 배출하여 국가자격에 현장성과 통용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 구축 확대 등('30년 32개소 목표) 국가기술자격 검정 운영 관리 혁신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체계 구축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한 외국인력 선발시스템 선진화로 한국어능력시험 22만명, 사업주 필요인력 7.8만 적기 도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안정적 도모,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서비스 강화 3.1만명, 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귀국 및 본국 재정착을 지원하여 무자격체류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HRD확산) '능력중심사회 구현' 핵심과제 성과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 개선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평생능력개발 중요성 인식 확산,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연 1회 개최 및 HRDK미래교육원 1개소 운영

○ (국제교류협력) 양자간(국가간), 다자간(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3개국 관계자 88명에게 공단의 고유 사업(일학습병행, NCS, 자격검정, 기능경기 등)을 꾸준히 개도국에 전파하는 한편,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HRD정책 소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 사업기준 및 지침 마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국제교류협력사업 : APEC 회원국 참가희망 수요 조사(공단) → 수요조사 결과 보고 및 대상자확정(공단, KOICA) → APEC 직훈교사 기술향상과정 실시(공단)
- 자격검정사업 : 자격검정시행 계획(안) 수립 →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 필·실기 검정시행 → 자격취득자 자격증 교부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 (정부) 노동시장 분석(경제동향, 국내일자리여건파악, 산업별 인력 부족률 파악) → 도입규모 결정(귀국예상자 대체 수요 파악, 국내일자리 보호 원칙하에 최소한 인력 도입, 인력부족 추가 수요파악) → 노동시장테스트(국내인력에 대한 구인노력 의무화(7~14일)) → 고용허가서 발급(국내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고용허가서 발급)
  · (공단) 외국인력선발(한국어능력시험, 기능수준평가) → 외국인력도입(근로계약 체결, 도입계획수립,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국내체류지원(입국초 취업적응지원, 사업장 애로해소, 사업주·근로자 교육훈련 → 귀국지원(귀국 후 취업알선, 자발적 귀한 프로그램, 재입국 계도(불법체류 예방))
- HRD확산 : 환경분석 및 전년도 성과분석 등 계획 수립 → HRD확산 추진 →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 결과 환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성과 지표가 AI시대의 산업인력양성과 관련하여 고도화 필요, 전문자격시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고도화 및 재정 효율화 노력 필요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국정감사	2023년	○ 지적 : 답안지 파쇄·분실사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조치 : 답안 운송 노선 증설(7개→11개), 답안지 수량 교차 확인 체계 강화, RFID기반 답안 관리 체계 도입 - 장기적, 필답형 실기시험 CBT 전환 추진('25년 1종목 시범 시행)
국정감사	2025년	○ 지적 : 공인노무사 중도 포기자 합격처리, 산업안전지도사 면접 출제오류 등 시험관리 개선 필요

		○ 조치 : AI 정답심사 도입, 면접심사 효율화, 시험절차 표준화, 채점결과 시각화, 전산시스템 점검 등 실시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2025년	○ 지적 :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과다 방지책 필요 ○ 조치 : E-9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에서 '탄력분'을 제외하고 사업 규모를 설정('26)하였으며, 차기 예산 편성에서도 현실적 목표 설정 지속 추진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구분	연도	주요내용
감사원	2023년	○ 지적/제기 : 직원 가족 시험위원 부당 위촉·활용 관련 특정인에 대한 위촉 편중 현상 해소 필요 ○ 검토/조치 : 능력평가전문가 활용계획 수립('23.2.16),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매뉴얼 개정('23.10.10)을 통해 조치 완료 - "재직직원의 배우자" 규정을 삭제하고, 자격 요건 강화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5,099	155,099	-	-	155,099	155,099	100.0	-	-
2024년	184,482	184,482	-	△668	183,814	175,582	95.2	-	8,232
2025년	182,333	182,333	-	-	182,333	180,333	98.9	-	2,000
2026년	193,723	193,723	-	-	193,723	163,559	84.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해당없음
2024년	내역 변경	△668	2024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 포상금 마련 내역변경
2024년	불용	8,232	청년응시료 지원 실적 미달성분 미집행
2025년	불용	2,000	청년 응시료 지원 미달성분 미집행(1,501백만원), 경영평가 예비비 미집행(499백만원)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1) RFID 기반 시험 결과물 관리 시스템 구축

(2) 차세대 국가자격정보시스템 운영

(3)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 확대

(4) 외국인고용관리사업 사업 목표량 조정

(5) 외국인고용관리사업 내역사업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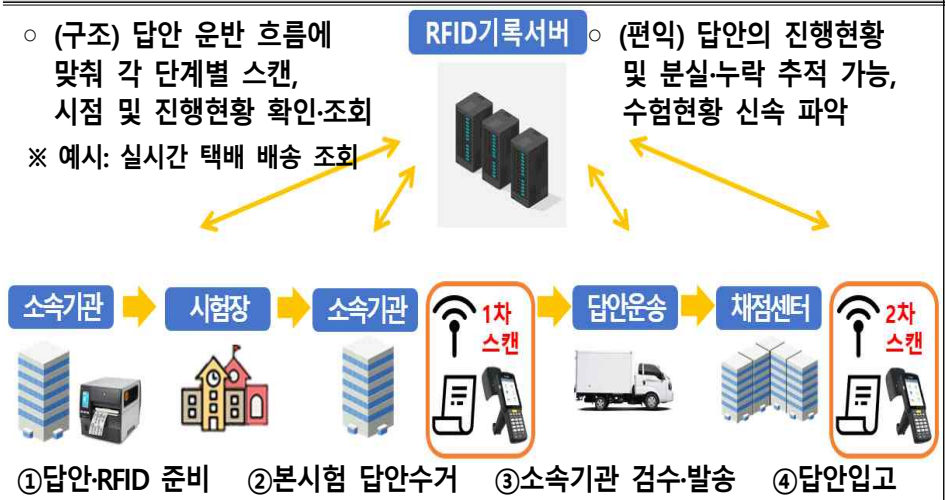
(6) 신규 EPS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내역 산출

(7)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참고1 RFID 기반 시험 결과물 관리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기사 필답형 실기시험 **답안 파쇄 사고 후 답안 운반 노선 증설**하고, **RFID* 기반 시험 결과물 관리 시범 도입** 등 조치 이루어졌으나

RFID 작동 구조도	RFID 스티커 예시
	

*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원거리 무선 정보인식 기술로, **전용 태그 및 리더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수량 및 입·출고 상태 확인**(예시: 실시간 택배 조회)

○ RFID 운영은 서울·울산지역에 기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답안 관리 RFID 적용률은 12.3%**

- 답안 인계(시험장 → 소속기관 → 채점센터) 및 편철 권수 등 확인(답안 포대 개봉) 과정에서 **분실, 인계 누락** 등 **과거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 여전**

등급	2025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답안 운반 물량(채점대상 인원)		
	계	RFID 미적용(30개 지사)	RIFD 적용(서울, 울산)
계	**614,674**	**539,370(87.7%)**	**75,304(12.3%)**
기능장	18,418	16,447(89.3%)	1,971(10.7%)
기사 (산업기사·서비스 포함)	527,367	460,143(87.3%)	67,224(12.7%)
기능사	68,889	62,780(91.1%)	6,109(8.9%)

□ 추진내용

○ 울산·서울 시범 적용 중인 RFID 기반 시험 결과물 관리체계를 **공단 전체 소속기관(32개)으로 확대** 추진

- 시범운영을 위해 **외부 업체 서버 할당**제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공단 **내부 시스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자격정보시스템과 연계
- 시험 결과물 인식을 위한 **전용 장비**(리더기, 태블릿, 태그발행기) 및 기타 **소모품(RFID 라벨 등) 구비**

□ 기대효과

○ 시험장 **시험 종료 직후 이중 확인**으로 답안 **분실(누락) 위험 감소**

- (현행) 종목별 편철 권수 육안 확인 → (개선) 종목별 편철 권수 **육안 확인 후 RFID 라벨 부착 결과와 대조(이중 확인)**

○ 관리시스템 연계 정보를 통해 답안 **입·출고 및 운송 현황 실시간 파악**을 통해 **관리 안정성** 강화

○ 업무 효율화로 **휴일 직원 근로시간 단축**(물량에 따라 1시간~2시간), 답안 **포대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보안사고 발생 예방**

- (현행) 시험장에서 소속기관으로 답안 이동 후 답안 포대 개방 및 편철 권수 수기 확인 → (개선) **RFID 태그 자동 인식으로 간소화**

□ 소요예산: 488백만원

(단위: 개, 천원)

항목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488,000**
장비	휴대형 리더기	30	1,500	45,000
	태블릿	30	600	18,000
	태그 발행기	30	3,600	108,000
소모품	태그(RFID 라벨)	80,000	500	40,000
	발행기 리본	30	100	3,000
인프라	서버	4	10,000	40,000
	L4 스위치	1	22,000	22,000
	도입 솔루션(방화벽, VPN, IPS)	1	72,000	72,000
시스템 구축	인건비(제경비 및 기술료 포함)	1식	140,000	140,000

참고2 차세대 국가자격정보시스템 운영

□ 필요성

○ 차세대 국가자격정보시스템 1-2차년도('23~'24)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비

□ 산출기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2005.)」에 따라 H/W 유지관리 요율 산출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요율제 유지관리비'에 따라 S/W 유지관리비 산출

□ 차세대 국가자격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현황

○ 1-2차년도('23~'24) 구축 완료 : '24.10월

○ 3-4차년도('25~'26) 구축 완료(예정) : '27.12월

*** 차세대 국가자격정보시스템 3-4차년도 구축사업의 유지관리 용역비는 '28년 예산안에 요구 예정**

□ 소요예산 : 1,2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액	내 역
계	**1,256**	
H/W	254	도입비(2,540백만원)*10%(요율)
상용S/W	307	도입비(3,070백만원)*10%(요율)
구독형S/W	310	도입 연간 구독비(310백만원)
응용S/W	385	기술자 평균임금(7,754,124원*)*12개월*5명*83%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참조

요율제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약시점에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참고3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 확대

□ 사업목표

○ 국가자격 디지털 전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민 중심의 국가자격시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시험 인프라 구축

- 국가자격시험에 **디지털 평가방식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시험센터 구축 확대로 **미래 디지털 자격시험 시행 역량 확보**

- **국민의 자격취득 및 취업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적기 배출

□ 현황 및 필요성

○ **(시험장 부족 해소)** **자체 시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시험 일정과 장소가 제한되어 국민 불편 초래

<시험장 유형별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현황('25년 필기·필답 시험 기준)>

구분	자체 (내부)	임차시험장(외부)				
		계	고교	대학교	훈련기관	기타
수험인원(명)	1,717,731	1,624,385	205,855	656,406	543,449	218,675
비율(%)	51.4	48.6	12.7	40.4	33.4	13.5

○ **(외부시험장 한계)** 다수 학교의 학습 공간 전환(디지털 스마트 학교)에 따른 **활용 한계** 및 외부시험장 보안·관리 취약에 따른 **리스크 존재**

□ 추진경과

○ 지역별 응시수요, 수험자 접근성, 임차시설 적정 여부,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26년까지 18개소 구축**

* '26년까지 16개소 시험장 신규 구축 예산을 확보('21년 1개소, '22~'26년 각 3개소(총 15개소))했으나, DTC구축 조속한 전국 확산을 위해 예산 절감하여 소규모 시험장 등 18개소 설치

- ('21.9) 디지털시험센터 시범 운영기관(수원 디지털시험센터) 개소

- ('22) 신규 시험센터 4개소(광주·인천·대구·양주) 추가 구축 및 운영, '23년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지역밀착형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 신규 구축 예산(3개소, 3,744백만원) 확보

- ('23) 신규 시험센터 4개소(대전·서울·평택·창원) 추가 구축 및 운영

- ('24) 신규 시험센터 3개소(순천·울산·원주) 추가 구축 및 운영
- ('25) 신규 시험센터 3개소(천안·부산·군산) 추가 구축 및 운영
- ('26) 신규 시험센터 3개소(서울②·서울③·김해) 추가 구축 및 운영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 구축 현황〉

구축연도	시험센터명	임차시설	시험실 현황	수용인원
'21년(9월)	수원DTC	한국방송통신대 경기지역대학	PC시험실(8실), 실내작업형(8실)	462명
'22년(6월)	광주DTC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PC시험실(4실)	170명
'22년(8월)	인천DTC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PC시험실(13실)	270명
'22년(10월)	대구DTC	계명대학교 비사관	PC시험실(7실), 실내작업형(2실)	272명
'22년(12월)	양주DTC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민간소유건물	작업형(건설)(7실)	142명
'23년(4월)	대전DTC	우송정보대학교 학술정보센터	PC시험실(6실), 실내작업형(1실)	259명
'23년(11월)	서울남부DTC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PC시험실(4실)	99명
'23년(12월)	평택DTC	국제대학교 충효관	PC시험실(6실), 실내작업형(1실)	200명
'23년(12월)	창원DTC	마산대학교 2호관	PC시험실(7실), 실내작업형(3실)	280명
'24년(11월)	순천DTC	순천제일대학교 도서관	PC시험실(6실), 실내작업형(1실)	211명
'24년(12월)	원주DTC	상지대학교 누리관	PC시험실(8실), 실내작업형(2실)	260명
'24년(12월)	울산DTC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PC시험실(7실)	168명
'25년(5월)	천안DTC	천안시 백석빌딩	PC시험실(7실), 실내작업형(1실)	272명
'25년(11월)	부산DTC	부산도시철도 동래역·광안역	PC시험실(6실), 실내작업형(2실)	217명
'25년(12월)	군산DTC	군산시 시티빌딩	PC시험실(4실), 실내작업형(1실)	120명
'26년(6월)	서울강남DTC	다봉타워	PC시험실(4실)	100명
'26년(9월)	서울서부DTC	중소기업DMC타워	PC시험실(5실)	128명
'26년(12월)	김해DTC	경보더숨시티(예정)	PC시험실(3개)	79명

□ 사업내용

○ (구축지역) 응시수요가 높은 권역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공단 소속기관 관할지역 전체(32개)**로 연차적 구축 확대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 구축·운영 목표〉

사업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센터수(전체)	1개소	5개소	9개소	12개소	15개소	18개소	19개소	24개소	29개소	32개소
신규구축	1개소	4개소	4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1개소	5개소	5개소	3개소
계속운영	-	1개소	5개소	9개소	12개소	15개소	18개소	19개소	24개소	29개소

○ **(활용시설)** 관할구역 내 **준공·분양(예정) 중인 건물, 지식산업센터, 테크노파크, 학교, 정부·공공기관 건물** 등을 활용

- 사용료 및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당사자 간 계약(협약)을 체결하여 **장기(5년 이상) 운영**

○ **(운영인력)** **기존 시험장 관리에 활용 중인 인력**을 해당 시험센터 관리인력으로 투입하고, **전문업체 등을 통해 시설보안 등 관리**

* 기존 시험장 관리에 활용 중인 인력 일부를 해당 시설 관리인력으로 투입하여 별도 인력증원은 요구하지 않음

- 지역 내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층 대상 교육을 통해 별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종목의 시험위원으로 활용하여 운영 효율화 및 단기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운영종목)** 응시수요가 높은 **디지털 종목 및 실내작업형 종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응시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PC 활용 종목(CBT 필기, PC 활용 작업형, 동영상 등), 미용사, 제도 등

○ **(활용계획)** 연중 실시하는 상시시험으로 운영(연간 200여일 이상)하고, 시험센터당 연간 약 75,0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활용 예정

* (PC종목) 200일(시행가능일)×100명(시험실당 25명×4실)×3부=60,000명
** (작업형종목) 200일(시행가능일)×75명(시험실당 15명×5실)×1부=15,000명

□ 소요예산

○ **('27년 소요예산) 7,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센터수(전체)	1개소	5개소	9개소	12개소	15개소	18개소	19개소	24개소	29개소	32개소
신규구축	1개소	4개소	4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1개소	5개소	5개소	3개소
계속운영	-	1개소	5개소	9개소	12개소	15개소	18개소	19개소	24개소	29개소
소요예산	827	4,260	5,808	7,356	8,904	8,904	7,600	12,989	14,974	14,463
신규구축	827	3,744	3,744	3,744	3,744	3,744	1,248	6,240	6,240	3,744
계속운영	-	516	2,064	3,612	5,160	5,160	6,352	6,749	8,734	10,719

□ 세부산출근거

○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 구축 비용(신규 구축 1개소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수량	세부내역	비고 (운영비)
합계	**1,248**			**397**
임차료*	210	6개월분	1,000평×12개월×35,000원/평	397
임차보증금	300	-	1,000평×300,000원/평	
검정 시설 및 장비비	500	25명/4실	(CBT) 4실×125백만원	
	100	5실	(작업형 실기 시설 및 장비) 5실×20백만원	
	45	3실	(채점회의실) 3실×15백만원	
	45	3실	(대기실 등) 3실×15백만원	
유지보수 관리비*	48	6개월분	(시설장비보수) 12개월×5백만원=60백만원 (공과금) 12개월×3백만원=36백만원	

* 신규 구축 시설 임차료, 유지보수관리비는 6개월 기준

< 임차시설 사용료 참고사항 >

▪ **(임차료)** 18,700원/㎡ (평당 61,710원)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 지역별 임대료 현황('25년 3분기 기준) 〉

(단위: 천원/㎡(평))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오피스	18.7 (61.7)	24.7 (81.5)	13.0 (42.9)	8.3 (27.4)	7.1 (23.4)	7.4 (24.4)	5.5 (18.2)	4.7 (15.5)	6.8 (22.4)

▪ **(보증금)** 네이버 부동산 예시('25.11월)

· 서울 영등포구: 평당 1,941,748원(103평, 월세 1,000만원)

· 서울 마포구: 평당 909,091원(110평, 월세 630만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평당 900,901원(111평, 월세 1,000만원)

· 부산 해운대구 : 평당 990,099원(101평, 350만원)

· 전주 완산구: 평당 500,000원(100평, 300만원)

▪ **(검정 시설 및 장비비)** CBT실 1실(108백만원), 작업형 실기시험실(20백만원), 채점실(15백만원), 대기실(15백만원), 유지보수관리비(8백만원) 등 * 상세내용 아래 참조

□ 검정 시설 및 장비비(예시)

○ CBT실

구분	품 명	수량	단가(천원)	소요액(천원)	비고
계				107,800	1실
1	컴퓨터(모니터포함)	32	1,300	41,600	
2	프린터(흑백)	2	800	1,600	
3	프린터(칼라)	2	3,000	6,000	
4	방송시스템	1	2,000	2,000	
5	프로젝터	1	3,000	3,000	
6	전동스크린	1	1,000	1,000	
7	네트워크장비	2	1,000	2,000	
8	모니터거치대	32	100	3,200	
9	책상(감독자용 포함)	32	300	9,600	
10	의자(감독자용 포함)	32	150	4,800	
11	칠판	1	2,000	2,000	
12	LAN공사	1	15,000	15,000	
13	MS OFFICE	32	500	16,000	

○ 작업형 실기시험실

구분	품 명	수량	단가(천원)	소요액(천원)	비고
계				20,000	1실
1	작업대	15	1,000	15,000	
2	의자	20	150	3,000	
3	칠판	1	2,000	2,000	

○ 채점실

구분	품 명	수량	단가(천원)	소요액(천원)	비고
계				15,100	1실
1	컴퓨터(모니터포함)	3	1,500	4,500	
2	프린터(흑백)	1	600	600	
3	프린터(칼라)	1	2,000	2,000	
4	책상	5	300	1,500	
5	의자	10	150	1,500	
6	칸막이 등 공사	1	5,000	5,000	

○ 대기실

구분	품 명	수량	단가(천원)	소요액(천원)	비고
계				15,350	1실
1	컴퓨터(모니터포함)	2	1,500	3,000	
2	책상	12	300	3,600	
3	의자	25	150	3,750	
4	칸막이 등 공사	1	5,000	5,000	

○ 유지보수관리비

구분	품 명	수량	단가(천원)	소요액(천원)	비고
계				8,250	
1	시설장비보수(컴퓨터수리 등)	15	350	5,250	
2	관리비(전기요금,수도요금,통신요금 등)	1	3,000	3,000	

참고4 외국인고용관리사업 사업 목표량 조정

□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최근('23~) 도입 쿼터*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국 규모 감소로 수입**기반이 약화되어 **수입·지출 간 불균형 확대**

* 도입 쿼터는 본래 상한으로 설정된 개념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목표치로 활용

** ① 도입수수료, ② 한국어시험 수수료, ③ 취업교육 수수료 등 3개 수입으로 외국인고용관리사업 전반(선발·도입·체류·교육 등) 수행

< 최근 4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내 외국인고용관리사업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3	'24	'25	'26
도입쿼터	120,000	165,000	130,000	80,000
사업계획	**52,000**	**110,000**	**165,000**	**98,000***
사업실적	**100,148**	**78,025**	**61,184**	40,000(전망)
수입(A)	16,929	25,890	37,729	24,920
지출(B)	16,836	25,641	32,492	22,893
수지차(B-A)	△93	△249	△5,237	△2,027

* '25년 도입쿼터(130,000명) 중 탄력배정분(32,000명) 제외한 수치

○ **(필요성)** 경기 둔화 흐름에 따른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사업 물량을 추계 필요**

- 국회('24년 결산)에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현실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시정)' 요구한 바 있음

□ 수입 목표조정

○ **(도입위탁비)** 실제 입국구조 기반으로 신규 및 재입국으로 구분하고 '27년 수입 목표 인원을 예측(78천명)

- 산출 내역: (신규) 55천명, (재입국*) 23천명

* '27년 재입국자 = '22년 신규인원(62,738명)*37%(신규→재입국 전환 5개년 평균)

< 최근 5년간 외국인근로자 도입현황 >

(단위 :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개년 평균
계(A+B)	6,890	71,207	78,776	64,542	43,857	53,054
신규(A)	6,526	62,738	73,142	60,580	41,944	
특별(B)*	364	8,469	5,634	3,962	1,913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는 경우

○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도입(55천명)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률 (25%)을 반영하여 목표 인원 산정

- 산출 내역: 신규 도입인원(55천명)X4배수=220천명

○ **(동포 취업교육)** 법무부 동포 통합정책 추진('26.2.12.)에 따라 기존 H-2 체류자의 재외동포(F-4) 전환 및 신규 비자 발급 폐지로 동포취업교육 수요 및 수입 급감 반영

- 산출 내역: 월 수료인원(141명)x12개월=약 1.7천명

< 동포취업교육 월별 수료 현황 >

(단위 : 명)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평균 수료인원
2025	1,336	1,117	1,318	1,135	898	904	1,140
2026	545	221	100	56	35	28	141

※ 법무부 통합정책 발표(2.12) 이후 월평균 인원 산정

< 월별 H-2 비자 및 F-4 비자 체류인원 >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H-2	81,770	80,108	70,431	54,823	43,026	35,678	31,186
F-4	556,045	556,211	565,347	582,808	594,491	602,101	607,249

참고5 외국인고용관리사업 내역사업 변경

□ 현황 및 필요성

○ 입국지원과 체류지원은 외국인근로자 지원 전 과정에서 상호 연계된 사업이나, 목적, 수행단계, 수요구조가 상이한 별개의 특성 보유

○ 현행 통합 내역사업 체계 유지로 사업별 수요 및 비용구조를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관리의 명확성 저해

○ 특히, 국정과제92* 추진에 따라 근무환경·산업안전·주거 등 체류지원 기능의 정책적 중요성 지속 확대

[*국정과제 92번]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 이주노동자 맞춤형 지원(근무환경, 산업안전, 주거,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 **사업 간 연계성은 유지하되, 수요구조 및 예산체계 차이를 반영한 내역사업 분리 필요**

[사업구조 차이 및 운영상 한계]

▸ **사업 성격**
· 입국지원: 입국절차 지원, 송출국 협력, 공항 대응(단기·집중적 행정지원사업)
· 체류지원: 적응지원, 고충상담, 권익보호 등(체류기간 전반에 걸친 지속적·현장중심지원)

▸ **수요 발생구조**

입국지원	체류지원
도입물량 기반, 정형화된 수요구조 -'25년 입국인원: 61,184명(1월~12월)	체류인원현장수요 기반, 변동성 높은 수요구조 -'25년 체류인원: 344,403명(12월 기준)

→ 사업 간 수요발생 구조 상이로 통합 운영시 예산규모 산정 및 집행 관리 비효율 발생

▸ **운영상 한계**
- 체류지원 수요가 입국인원과 독립적으로 발생 → 사업별 예산규모·집행현황 파악 곤란
- 사업별 성격 차이에 따른 관리방식 상이 → 성과평가 및 효과분석 효과성 저하
-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체류지원 사업의 특성 → 통합 재원배분 구조에서 지원 우선순위 왜곡 가능

□ 내역사업 변경(안)

○ 입국지원·체류지원 내역사업 분리 운영

- 입국초기 지원과 체류지원은 연계하여 추진하되, **사업별 수요 발생 구조 및 예산 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분리**

○ 운영체계 개편

- **(입국지원)** 도입물량 기반의 정형화된 예산관리 체계

- **(체류지원)** 체류인원 및 현장수요 기반 탄력적 지원체계로 운영

외국인내역사업 변경(안)

구분	기존(2026년)	변경(안)(2027년)
입국·체류	·**입국 및 체류지원** 3,331 (입국지원, 입국초기방문, 사업장내애로해소) ·동포취업교육 1,005 ·EPS기업지원단 693	·**입국지원 및 취업교육** 2,094 (입국지원, 동포취업교육) ·**체류지원** 712 (입국초기방문, 사업장내애로해소) ·EPS기업지원단 순감(△693)
센터운영·송출협력	·EPS센터운영 4,040 ·송출국사업협력 388	·EPS센터운영 4,322 ·송출국사업협력 순감(△388)
교육	·외국인근로자교육 1,038 (재직자훈련, 귀국예정자 훈련) ·사용자교육 139 ·한국어교육 708	·외국인근로자교육 1,038 (재직자훈련, 귀국예정자 훈련) ·사용자교육 139 ·한국어교육 708

< (참고) 입국지원, 체류지원 단가 분리 >

(단위: 명)

2026년		2027년
- (입국지원 및 체류지원) 33,985원* * 입국지원 29,315원**+애로해소 49,400원→가중평균 **29,315원-〉26,727원+입국초지원7,600원→가중평균	⇨	- (입국지원) 26,727원 - (애로해소) 49,400원 - (입국초지원) 7,600원

※ '26년 단일단가로 통합 적용하였으나, 사업별 비용구조 및 수요특성 반영에 한계가 확인됨에 따라, '27년부터 단가를 재분리(개별 사업단가는 '26~'27년 수준 유지)

○ 기대효과

- 체류지원 사업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고충해소 기능 강화

- 중소기업 서비스 강화로 사업장 안전관리·현장 대응력 제고

- 사업별 수요·비용구조 반영 통한 예산편성·성과관리 합리성 제고

참고6 신규 EPS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내역 산출

□ 산출 사유

- 중앙아시아 EPS센터 1개소(카자흐스탄) 신규 설치 추진에 따른 연간 소요 내역 산출

□ 산출 내역

- 282,694천원(고정비 및 초기 자본비, 1개소 기준)

(기준 : 年, 1개소, 천원)

구분	소요액	세부내용
계	**282,694**	-
입국지원및취업교육	207,694	· 주재원 체재비 등 · 현지직원 인건비 · 사무실 운영 공과금 및 각종 보험 · EPS센터 사무실 및 주재원 주택 임차료 · 고용허가제 설명회 개최, 사전취업교육교재 제작 등 · EPS센터 업무용차량 구입 · EPS센터 사무실 집기류 등 · (화물운송 등) 이전비 등
외국인력선발	75,000	· CBT 시험장(1개소) 집기류 등

※ '25년 신규 EPS센터(타지키스탄) 예산 수준 요구(주재원1인 및 현지직원 2인 기준)

※ 업무용차량 : 신차 구입 60,000천원 기준

※ CBT 시험장 : PC 등 집기류 75,000천원(1SET 1,500,000원 * 50ea)

참고7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현 실태 및 문제점

○ 공단 본부 울산 이전 시('14년)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중이나 해당 건물은 **'82년 준공되어 건물 전반 노후화가 심각**

- **(주거여건 불량)** 유해동물 출몰, 곰팡이 발생 등 **기본적 주거 역할 수행 불가**
- **(안전사고 위험)** 외벽 탈락, 누전 등 **안전사고·화재 위험 상존**
- **(소규모 수리 한계)** 임시보수 진행으로 투입비용 대비 건물관리의 효율성 저하

〈최근 주요 사고 사례〉

· 샤워실 누수*로 전기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 누전 사고 발생('24년)
* '26년 현재 4층 全세대(10세대) 누수 피해 발생, '24년 3개 호실, '25년 4개 호실 누수로 벽지 도배
** '19~'25년 방수공사 및 누수 수리 관련으로 총 81백만원 지출하였으며 노후화 진행에 따라 사택 각 세대의 누수 피해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부엌 싱크대 및 화장실 등에서 지네 출몰 빈번
· 강풍에 의한 외벽 탈락으로 주차된 자동차 파손
* 해당 사택은 울산폴리텍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동하는 곳으로 행인에 대한 안전 사고 가능성 高

□ 개선 필요성

○ **(전면개선필요)** 소규모 수리는 직원에게 공제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였으나, 현 상태는 **대수선을 통한 시설 전면 보수 필요**

*** 현재 세대당 특별수선충당금 월 4.5만원 부과 중, 충당금 잔액은 22백만원**

○ **(안전사고예방)** 건물 노후화로 벽체 균열, 철근 부식, 천장 누수 등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 **(초기정착지원) 순환 전보, 신규 입사** 등으로 **울산에 발령받은 직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여 **심리적·경제적 안정감 제고**

□ 소요 예산 : 6,4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노후시설 안전개선	6,442	○ **(공사비) 2,483천원*1.050*2,345m² = 6,113,766천원** * **(공사단가)** 2,483,000원/m² * **(보정계수)** 123.016/117.127=1.05 * **(사택 연면적)** 2,345m² ○ **(설계비) 263,237,781원, (감리용역) 65,011,140원**

사 업 명
(28)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1134-31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34	316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 공단출연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직무능력은행제 및 NCS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조사분석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포털운영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공유및확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	11,007	10,427	10,427	12,747	12,747	2,320	22.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1,007	11,007	11,007	-	-	10,427	10,427	8,134 [4,420]	12,747
·온라인플랫폼활용 직업정보제공	1,000	1,000	1,000	-	-	-	-	-	-
·직무능력은행제	1,648	1,648	1,648	-	-	1,648	1,648	895	5,28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4,582	4,582	4,582	-	-	4,432	4,432	3,898	3,783
·직업능력개발조사·분석	1,477	1,477	1,477	-	-	1,647	1,647	1,321	1,250
·능력개발포털운영	900	900	900	-	-	900	900	713	807
·HRD 공유 및 확산	465	465	465	-	-	865	865	572	777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935	935	935	-	-	935	935	735	848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1,007	11,007	11,007	-	-	10,427	10,427	8,134	12,747
·일반용역비(210-14)	-	-	-	-	-	400	400	202	400
·사업출연금(350-02)	11,007	11,007	11,007	-	-	10,027	10,027	7,932	12,34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직무능력은행제

사업목적	○ 자격·교육·훈련·경력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직무능력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취업·인사관리에 바로 활용하도록 지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은행을 운영하여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문화 확산에 기여
사업내용	○ (시스템 운영) 직무능력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21개 연계시스템, 19종 직무능력정보의 수집·조회·인정서 발급 기능 운영 - 데이터 처리량 증가에 대응한 서버 증설, 데이터 품질관리, AI 학습·추론 소프트웨어 도입 등 인프라 고도화 ○ (연계 확장) 청년 수요를 반영한 공공·민간 정보 추가 연계 - 일경험 등 프리랜서 경력, 대학 전공, 어학성적 등 연계 확대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 시 증빙서류를 직무능력인정서로 대체하도록 활용처 확대 ○ (교과인정) NCS 기반 전문대학·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심사하여 이수내역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27년 80교과) ○ (교과인정 컨설팅) 교과 인정을 준비하는 대학에 교과별 컨설팅 제공('27년 40교과)

(1-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사업목적	○ 산업현장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으로 일-교육훈련-자격-현장경험의 연계 강화 ○ NCS 활용·확산을 통해 직무 중심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내용	○ (NCS 개발) 부처 협업 개발 3직무, 신기술·융복합 분야 ISC 간 공동 개발 3직무 ○ (NCS 개선) 산업현장 기술변화를 반영한 20직무 개선 ○ (AI 활용 NCS·SQF 개발·개선 시스템) 환경분석·초안 도출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시스템 구축 - SQF 구축기간을 사업별 12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단축 ○ (활용실태조사) NCS 펌닥터 120세분류 운영, NCS 활용 실태조사 4분야 실시 ○ (활용확산) 우수 활용사례 발굴·확산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연 4회) ○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평가방법 개발) 5분야

(1-3)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사업목적	○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으로 훈련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훈련기관의 훈련환경 향상 ○ 부정·부실훈련을 사전에 예방하여 훈련시장의 품질과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사업내용	○ (국내외 HRD 동향 조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인적자원 개발 동향 조사·연구 ○ (집체훈련 모니터링) 정책·현장 동향 모니터링, 훈련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 (원격훈련 모니터링) 전국 200여 개 원격훈련기관의 훈련 운영 상태를 실시간 감시 -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보안관리, 타 시스템 연계, AI 모니터링 기능 개선(학습·튜닝)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200개소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1-4) 능력개발포털운영

사업목적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S-OJT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 ○ 직업능력의 달 행사 안내 등 전 국민 HRD 문화 확산 지원
사업내용	○ (시스템 운영) 능력개발포털(HRD4U)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능 개선) 능력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산 인프라 제공 ○ (AI 서비스) 「기업HRD이음컨설팅」 지원과 능력개발사업 챗봇 도입으로 이용 편의 제고

(1-5) HRD공유 및 확산

사업목적	○ HRD 최신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반의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
사업내용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우수교육훈련프로그램·일학습병행제·블라인드 채용 등 3개 사업 경진대회를 직업능력의 달 행사로 통합 개최 ○ (홍보 및 인식개선) 개인주도훈련, 기업주도훈련, 일학습병행, 공공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홍보 추진 - 정책 수요자 참여형 홍보와 사례 중심 홍보 강화

(1-6)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사업목적	○ 일학습병행, 사업주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고객 증가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 전문콜센터 설치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내용	○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담 고객 콜센터 운영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편찬과 보급사업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7조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인정·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교육·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보급 사업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자격기본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5의2. 「자격기본법」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추진경위	○ 추진경위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01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직무능력표준개발에 착수,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국가정책조정회의('10.5.7)에서 NCS 효율화 관련 조정결과, 공단이 NCS 개발 전담기관으로 결정 → NCS 개발 및 활용·확산 수행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직무능력은행제 근거 마련('23.1.3. 개정) ·산업현장 전문가 참여로 만든 1,096개 NCS 확정ㆍ고시('25.12)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03년 원격훈련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04~현재 고용노동부 및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사업 수행 ·'11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정, 모니터링 업무 실시 근거 확립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집체·원격훈련 모니터링 수행기관으로 결정 ·'12년 집체·원격훈련 모니터링 전담 조직으로 "훈련품질향상센터" 설립하여 정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분석 및 연구, 원격훈련 부정·부실 관리 수행 ·'13~'19년 원격훈련 부정감시 캡챠(CAPTCHA) 인증 시스템, 훈련생 본인인증시스템(OTP) 및 이상훈련 감지 시스템(FDS) 도입하여 부정훈련 예방 기능 강화 ·'20~'22년 모바일 기반 훈련생 본인인증시스템(MOTP), API 기반 훈련데이터 수집체계 고도화, 적용 추진 ·KDT 훈련기관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API) 전면 적용 및 mOTP·FDS·ACS 모니터링 확대 도입 ·'25~'26년 과기부 주관 공공AX프로젝트 과제 선정, AI 기반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작업 추진 - 능력개발포털 운영 ·직업능력지식포털(portal.hrd.go.kr) 공식 개통, 서비스 개시('10.9월) ·기업학습지원시스템(학습조직화 시스템)(bizhrd.net) 개통('12.1월) ·기업학습네트워크 운영, 일학습병행제 대표포털 구축, 사이트 통칭을 『기업일학습』으로 명명('14.9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기업학습네트워크』개편('15.1월) ·HRD콘텐츠네트워크 운영(www.hrdbank.net)으로 사업 명칭 변경('18.1월) ·능력개발 전문가 인력풀 시스템 도입 및 청년취업아카데미 통합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19.12월) ·HRD4U(www.hrd4u.or.kr) 시스템 명칭 변경('20.11월) ·국정과제(능력개발전담주치의, S-OJT 등) 수행 위한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 능력개발사업 빅데이터플랫폼 등 구축('23.12월) ·빅데이터 기반 기업훈련 추천 AI 서비스 개시('24.2.월)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우수교육훈련프로그램('08년 개최), 일학습병행제('14년 개최), 블라인드 채용('18년 개최) 등 3개 사업의 경진대회를 직업능력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통합 개최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2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5,787	12,502	11,007	10,427	12,74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HRD담당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직무능력은행제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5,282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3,783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직업능력개발조사·분석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1,250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능력개발포털운영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807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HRD공유 및 확산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377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직업능력개발 사업지원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848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427	12,747	2,320
직무능력은행제	1,648	5,282	3,634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4,432	3,783	△649
직업능력개발조사·분석	1,647	1,250	△397
능력개발포털운영	900	807	△93
HRD공유 및 확산	865	777	△88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935	848	△87

○ **직무능력은행제 (2026년) 1,648 → (2027년 정부안) 5,282백만원, +220.5%**

- (산출) ① 정보연계확장 1식×871백만원=871백만원(+371백만원)
  ② 시스템 운영 1식×4,063백만원=4,063백만원(+3,263백만원)
  ③ NCS기반 교과인정 80개교과×1.6백만원=128백만원(전년동)
  ④ NCS기반 교과인정컨설팅 40교과×5.5백만원=220백만원(전년동)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활용 (2026년) 4,432 → (2027년 정부안) 3,783백만원, △14.6%**

☐ NCS개발: ('27) 400백만원(전년동)

- (산출) ① 부처 협업 개발 3직무×66.6백만원=200백만원
  ② 신기술·융복합 ISC간 공동 개발 3직무×66.6백만원=200백만원

☐ NCS개선: ('26) 1,645 → ('27) 540백만원(△1,150백만원)

- (산출) ① 20직무×27백만원=540백만원(△945백만원)
  ② 직업기초능력개편 0백만원(순감)

☐ 산업별역량체계 구축: ('26) 1,112 → ('27) 0백만원(순감)

☐ AI활용 NCS·SQF 개발·개선 시스템 개발: ('27) 2,063백만원(순증)

- (산출) 시스템 구축 1식×2,063백만원=2,063백만원(순증)

☐ NCS 활용실태조사: ('27) 500백만원(전년동)

- (산출) ① NCS 펌닥터 120세분류×3.33백만원=400백만원
  ② NCS활용 실태조사 4분야×25백만원=100백만원

☐ NCS활용확산: ('27) 180백만원(전년동)

- (산출) 4분기×45백만=180백만원

☐ NCS 정보망 운영: ('26) 495 → ('27) 0백만원(순감, 이관)

* 정보화 사업체계 개편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로 이관

☐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평가방법 개발: ('27) 100백만원(전년동)

- (산출) 5분야×20백만원=100백만원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2026년) 1,647 → (2027년 정부안) 1,250백만원, △24.1%**

☐ 국내외 HRD 동향 조사 : ('26) 370 → ('27) 100백만원(△270백만원)

- (산출) 1식x100백만원=100백만원(△270백만원)

☐ 집체훈련 모니터링 : ('26) 172 → ('27) 84백만원(△88백만원)

- (산출) ① 정책·현장 동향 모니터링 1식×40백만원=40백만원(△60백만원)
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1식×44백만원=44백만원(△28백만원)

☐ 원격훈련 모니터링 : ('26) 370 → ('27) 620백만원(+250백만원)

- (산출)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1식x370백만원 + AI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1식x250백만원 = 620백만원(+250백만원)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 ('26) 735 → ('27) 446백만원(△289백만원)

- (산출) ('26) 성과평가 200개소 × 3.675백만원
→ ('27) 200개소 × 2.23백만원 = 446백만원(△289백만원)

○ **능력개발포털 운영 (2026년) 900 → (2027년 정부안) 807백만원, △10.3%**

- (산출) ('26)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식 × 900백만원
→ ('27) 1식 × 807백만원 = 807백만원(△93백만원)

○ **HRD 공유 및 확산 (2026년) 865 → (2027년 정부안) 777백만원, △10.2%**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 ('26) 465 → ('27) 377백만원(△88백만원)

- (산출)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1식 x 377백만원 = 377백만원(△88백만원)

☐ 직업능력개발 홍보 및 인식개선 : ('27) 400백만원(전년동)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026년) 935 → (2027년 정부안) 848백만원, △9.3%**

- (산출) 1식 x 848백만원 = 848백만원(△8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훈련양성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8	89.8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3) 89.7 ('24) 89.5 ('25) 90.2

- **자료수집방법/출처 :**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직업방송 제작 및 운영: 능력개발향상지원 프로그램 제작(2,204편)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패키지 신규개발(10직무), 개선(110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확산(740건) · 국제성인역량조사(국제분담금 납부 및 연구개발) · 능력개발포털 운영(이용자 수) 685,809명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국내외 HRD 조사연구(4종), 직업훈련 모니터링(6개 사업), 원격훈련모니터링 OTP 조회수(815만건) · HRD전문가 포럼 개최(3회), HRD컨퍼런스 개최(1회),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1회)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직능사업 전담 콜센터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2024년	· 온라인플랫폼활용직업정보제공: 능력개발향상지원 콘텐츠 제작(100편)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7직무) 및 개선(105직무) · 국제성인역량조사(국제분담금 납부 및 연구개발) · 능력개발포털 운영(이용자 수) 1,180,547명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국내외 HRD 조사연구(4종), 직업훈련 모니터링(6개 사업), 원격훈련 모니터링 OTP 조회수(560만건),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202개소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개최(1회)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직능사업 전담 콜센터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2025년	· 온라인플랫폼활용직업정보제공: 능력개발향상지원 콘텐츠 제작(93편)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6직무) 및 개선(57직무) · 능력개발포털 운영(이용자 수) 1,570,992명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국내외 HRD 조사연구(4종), 직업훈련 모니터링(6개 사업),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기관 205개,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199개소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개최(1회)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직능사업 전담 콜센터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2026년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6직무) 및 개선(55직무) · 능력개발포털 운영(운영자 수) 1,132,430명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국내외 HRD 조사연구(3종), 직업훈련 모니터링(6개 사업),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기관 210개,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195개소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직능사업 전담 콜센터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활용·확산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6직무) 및 개선(55직무)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 등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

- NCS 우수활용사례 확산, NCS 누리집 고도화를 통한 국가직무능력 활용·확산 강화
- 정기적 NCS 활용 정량적, 정성적 실태조사(전체 직무대상)를 통한 NCS 품질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 개인별 직무능력의 관리·인정체계인 '직무능력은행제' 운영을 통해 평생 직무능력 관리 및 노동시장 통용성 확대
- 56개 IS소관 분야 중심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을 통해 산업현장의 직무를 표준화하고, 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상호 인정·활용함으로써 직무중심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지원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중심 모니터링 강화, 훈련기관 컨설팅 도입 및 정책이슈에 대한 조사・분석 및 심층 연구기능 강화
- AI기반 원격훈련 모니터링 추진 등 부정·부실훈련 사전 예방기능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하여 올바른 직업훈련 문화조성에 기여
- 성과평가 신규지표 개발 프로세스 마련을 통한 지표 보완·개선 및 평가 결과 공유 및 환류 기능 점검으로 평가 적시성·적합성 강화

○ 능력개발포털 운영

- 능력개발사업 참여 One-Stop 행정서비스를 위해, AI기반의 「기업HRD이음컨설팅」 지원 및 능력개발사업 챗봇 도입으로 심플·스마트한 능력개발포털 운영

○ HRD 공유 및 확산

-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업능력개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관심도 제고 및 기업의 HRD 동기 유도
- 정책 수요자와 소통 및 참여형 홍보, 사례 중심 완결적 홍보를 강화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 및 인식개선 유도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직업훈련사업, 블라인드채용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로 인한 고객 수 증가 및 고객의 다양한 Needs 충족을 위하여 전문콜센터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통 : 고용노동부가 사업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연간 사업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 협의·승인 → 출연금 교부 → 사업 집행 → 실적 보고 및 정산

○ 직무능력은행제

- 시스템 운영 및 연계 확장

운영계획 수립 → 연계기관 협의 및 정보제공 범위 확정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연계 개발 → 연계정보 검증 → 서비스 개통 → 이용실적 분석 및 환류

- 교과인정 및 컨설팅

사업공고 → 대학 등 신청 접수 →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 → 교과별 컨설팅 지원 → 교과인정 심사 → 이수내역 직무능력은행 저축 → 사후관리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개선

계획수립 → 개발기관 선정 → 개발분야 환경분석 → 직무·능력단위·수행준거 등 설계(워크숍) → 점검회의(1차) → 교육훈련계 의견수렴 → 국민의견수렴 → 산업현장검증(2회) → 점검회의(2차) → 최종확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컨설팅 지원(교과인정 컨설팅)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 → 기업·교육기관 등 컨설팅 대상 선정 → 컨설팅 지원 → 사후관리 등 적용연계

- NCS 활용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정량) 활용데이터 수집 → 집계 및 분석 → 빈도(순위) 도출 → NCS 개발·개선 반영(환류체계)

(정성) 활용기관 설문 → 만족도·효과성 파악 → NCS 개발·개선 반영(환류체계)

(모니터링) 펌닥터 선발·교육(ISC 연계) → 활용기관 방문·면접 →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의견 도출 → NCS 개발·개선 반영(환류체계)

- AI 기반 NCS·SQF 개발·개선 시스템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시스템 설계·구축 → AI 초안 도출 및 전문가 검토 → 시험운영·검수 → 개통 및 운영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 국내외 HRD 조사연구

과제 선정 → 과제별 세부계획 수립 → 조사분석 과제 수행(자체 및 위탁) → 결과 활용 및 배포

- 집체훈련 모니터링

계획수립 → 모니터링 실시(행정통계 분석, 훈련실태 현장조사, 훈련만족도 조사, 현안별 사례조사) → 보고 및 공유(훈련동향·훈련실태·훈련만족도·훈련이슈 보고)

- 원격훈련 모니터링

계획수립 → 모니터링 실시(자동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수집) → 모니터링 정보

처리 → 결과분석 및 보고 → 부정 의심기관 DB 징구·심층분석 → 행정처분 지원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평가계획 수립 → 평가지표 확정 → 평가자료 수집 → 서면·현장 평가 → 결과 확정 및 통보 → 우수사례 공유 및 환류

○ 능력개발포털 운영
운영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기능개선 및 H/W·S/W 구축) → 사업결과 분석·보고

○ HRD 공유 및 확산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계획수립 → 사업공고 → 경진대회 개최 → 성과분석
- 직업능력개발 홍보 및 인식개선
계획수립 → 사업공고 → 홍보 추진 → 성과분석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운영계획 수립 → 콜센터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 → 상담 서비스 운영 및 품질 관리 → 노후시설 보강 → 운영실적 분석 및 환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예산집행 관리 적절성, 사업실적 등 다소 우수 ○ 결과 : 우수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구성이 적정함 ○ 결과 : 보통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및 재정 효율화 적극 모색 권고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5,787	25,787	-	-	25,753	25,753	99.9	-	34
2024년	12,502	12,502	-	-	12,502	12,502	100.0	-	-
2025년	11,007	11,007	-	-	11,007	11,007	100.0	-	-
2026년	10,427	10,427	-	-	10,427	8,134	78.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34	PICAAC OECD 분담금 감소분 미집행
2024년	-	-	해당없음
2025년	-	-	해당없음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1)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세부사업 개요

(2)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시행예정일 등

(3) AI기반 NCS·SQF 개발·개선

(4) 직무능력은행제

(5) 원격훈련 모니터링

참고 1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세부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시장수요에 적합한 국가 HRD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전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향상 등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서비스 제공 지원

□ 사업내용

○ (직무능력은행제) 개인이 다양한 직무능력(자격, 교육, 훈련, 자격, 경력 등)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에 활용토록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활용)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주기에 맞춘 국가직무능력표준 신규개발·개선을 통해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강화 및 실력중심사회 기반 마련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및 조사 분석을 통하여 훈련제도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훈련기관의 훈련환경을 향상시키며, 부실 및 부정훈련을 사전 예방하는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장의 질 관리 제고

○ (능력개발포털 운영) 고품질 개방형 HRD콘텐츠의 무상서비스를 통한 기업과 근로자 등 전국민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학습 플랫폼 제공

○ (HRD 공유 및 확산) 개인주도훈련(내일배움카드 등)·기업주도훈련(사업주 훈련, 컨소시엄 훈련 등)·일학습병행·공공훈련(폴리텍, 한기대 등)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홍보체계 구축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일학습병행, 사업주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로 고객 수 증가 및 고객의 다양한 Needs 충족을 위하여 전문콜센터 설치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참고 2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시행예정일 등

○ 고용보험법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사업명	관련 규정
직무능력은행제 및 NCS	-자격기본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자격기본법 제6조(자격체제)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9조
능력개발포털 운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3호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4호
직업능력개발조사·분석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402호) 제4조(수행기관)
HRD공유 및 확산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3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팀-527('08. 2. 26) "직업능력의 달 혁신 방안 시행계획 시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755('13. 3. 2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육성 및 지원 방안 알림

참고 3 AI 기반 NCS · SQF 개발 · 개선

□ 추진배경

○ **(예산 축소)** 개발·개선 예산의 지속적 삭감에 따라 현장의 개발 수요 중 **실제 선정된 비율은 2020년 이후 평균 12.0% 불과**

* (선정률 %) '20년 7.1 → '21년 12.7 → '22년 24.4 → '23년 12.7 → '24년 10.3 → '25년 17.6

- 산업현장의 신규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 누적

⇒ NCS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 저하, 품질 논란 야기**

〈 NCS 개발 예산·물량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물량	240	557	50	50	50	50	20	10	10	10	10	6	6
예산	3,222	29,145	3,080	3,080	3,080	3,500	1,402	701	701	701	701	400	400

○ **(개발·개선 소요기간 과다) 표준 개발 절차**와 **심의 과정**으로 인해 최신 기술 변화를 표준에 즉각 반영하는 데 **시차** 발생

- **수요조사**(전년도 9월)부터 **개발·개선 공고**(당해연도 12월말)까지 개발·개선에 약 **1년 4개월** 가량의 기간 소요

* ('26년 일정) 수요조사('25.9월) → 직무 확정('25.12월) → 사업 공모('26.1월) → 사업 확정(3월) → 개발·개선(3~10월) → 자격정책심의회(11월) → 고시('12월)

- **자격·NCS학습모듈·훈련** 등에 **적용**되는 기간까지 **2~3년 소요**

○ **(SQF 구축·확산 효율성 제고)**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개발과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기업의 직무역량 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 등 직무능력중심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산업별 역량체계(SQF*) 개발 및 확산 지원 필요

* SQF(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 산업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도출하여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구조화한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토대로 교육-훈련-자격-학위-경력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체계

- 직무맵 구성, 직무역량체계 개발, 역량인정방안 마련 사업을 AI 기반으로 구축하여 효율성 및 활용성 증대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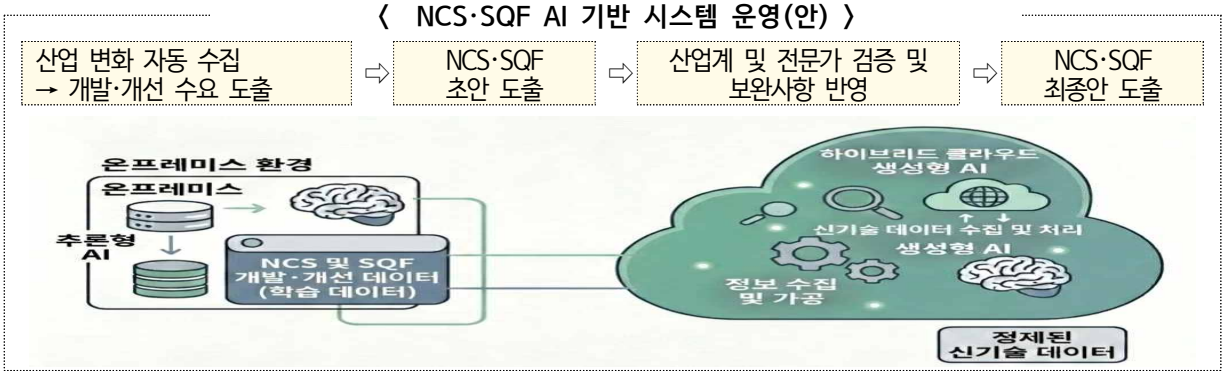
○ **(AI 활용)** 산업변화 속도에 비해 느린 NCS·SQF 개발·개선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AI를 활용하여 프로세스 기간 단축 및 효율적 개발·개선

〈 AI 시스템 도입 시 NCS 개발·개선 변화 〉

구분	기존방식 2026년	전환기 2027년	개편 2028년 이후
개발 프로세스	• 예산에 맞춘 제한적 물량 개발 * ('26년 NCS) 6개 개발, 57개 개선 → AI 등 신기술 분야 현장과 괴리 심화	• AI 시스템 구축(+20.6억) + • 예산에 맞춘 물량 개발(감액된 예산 하에서 최소한으로 개발)	• AI 시스템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개발 → 기술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살아있는 표준' 구현

- **(프로세스 개선) AI를 활용**하여 **NCS·SQF 초안 도출** 후, **교육·훈련·자격 전문가·산업계 검토**를 거쳐 완성

〈 NCS·SQF AI 기반 시스템 운영(안) 〉



○ AI 기반 NCS 개발·개선 절차

- 수요조사, 환경분석(노동시장·교육훈련현황 등). 능력단위, 활용패키지(인사관리활용자료, 훈련기준(시안) 등) **AI 활용**하여 **NCS 초안** 도출
- 해당 초안을 **교육·훈련·자격 전문가·산업계**의 **검토** 거쳐 완성

<NCS 개발·개선 프로세스 비교(▭: AI 도입으로 인한 변화)>

구 분	기존 NCS 개발·개선 프로세스	AI 기반 NCS 개발·개선 프로세스
기간	- NCS 개발·개선 16개월 정도 소요	- (AI) 수시 개발·개선 가능(현장 변화 즉시 반영)
① 의견 수렴	- NCS위키(대국민), 산업계, 관련부처 등의 개발·개선 수요 발굴	- (AI) 산업 변화 자동 수집, 개발·개선 수요 도출 - NCS위키(대국민), 산업계, 관련부처 등의 개발·개선 수요 발굴

② 기관 선정	-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전문성·대표성 갖는 기관 선정·평가 - 계약 체결	- (AI) 제안 의견 유사도 및 중복 여부 체크 - (AI) 직무데이터-능력단위-수행준거 간 논리적 상관관계 추론 후 NCS 개발·개선 결과보고서 출력
③ 개발·개선 진행	- 개발·개선 워크숍 및 검토회의 - 산업현장 검증 - 교육·훈련계 의견 수렴 -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공지 - 점검회의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검수	- 산업별 대표 단체 및 전문가 검증 - 대국민 의견 수렴
④ 심의 확정	- 자격정책심의회 상정 후 심의·확정	- 자격정책심의회 상정 후 심의·확정
⑤ 고시 등재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NCS 누리집 등재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NCS 누리집 등재

○ AI 기반 SFQ 구축·활용 절차

- **SQF 구축**(직무맵·직무역량체계) 및 **활용**(역량인정방안) **전 과정**에 **AI 도입**하여 **초안** 도출
- 해당 초안을 **교육·훈련·자격 전문가·산업계**의 **검토** 거쳐 완성

<SQF 구축 프로세스 비교(▭: AI 도입으로 인한 변화)>

구 분	기존 SQF 구축 프로세스	AI 기반 SQF 구축 프로세스
기간	- SQF 사업별 12개월 정도 소요	- SQF 사업별 6개월 정도 소요
① 의견 수렴	- ISC 의견 수렴, 구축 산업범위 설정	- ISC 의견 수렴 - (AI) AI 통해 SQF 구축 수요 도출
② 기관 선정	-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전문성·대표성 갖는 기관 선정·평가	- 폐지
③ 사업 진행	- 노동시장 및 인력양성 현황 분석 - 직무맵·직무역량체계·역량인정방안 구축 - 산업체, 훈련기관 검증 - 점검회의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검수	- (AI) 노동시장 및 인력양성 현황 분석 - (AI) SQF 사업별 결과물 자동 생성 - 산업별 대표 단체 및 전문가 검토 - 산업체, 훈련기관 검증 - 점검회의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검수
④ 등재	- NCS 누리집 등재	- NCS 누리집 등재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소 요 예 산 및 사 업 목 표			
		‘27년	‘28년	‘29년	‘30년
합 계		2,063	800	800	800
NCS·SQF AI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	1식	1식	1식	1식
	단가	2,063	800	800	800
	예산	2,063	800	800	800
	산출내역	AI활용 2,063백만원×1식 =2,063	(AI활용 유지·보수 200백만원 ×1식=200) +(검토회의 30만원×5명 ×400회 =600백만원)	(AI활용 유지·보수 200백만원 ×1식=200) +(검토회의 30만원×5명 ×400회 =600백만원)	(AI활용 유지·보수 200백만원 ×1식=200) +(검토회의 30만원×5명 ×400회 =600백만원)

참고 4 직무능력은행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자격·교육·훈련·경력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활용되고 있으나,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학습이력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

* NC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표준화한 것

- 개인이 다양한 **학습이력**(자격, 교육, 훈련, 자격, 경력 등)**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취업, 인사관리 등에 활용**토록 지원

* (개인)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시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
(기업) 구직자·근로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여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관리 등에 활용



□ 사업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직무능력은행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의 수집・제공 등),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제공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및 23조의 2(직무능력은행 시스템의 구축·운영)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등

□ 사업 내용

❶ 직무능력은행제 확산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연계 확장**

○ **(시스템 개요)** 직무능력 정보시스템은 국가기술자격 등 총 21개 시스템, 19종의 정보를 연계하여 다양한 직무능력정보 조회·활용

'23. 9. 1.	'24. 3. 19.	'24. 6. 24.	'24. 12. 22.	2025년	2026년~
직무능력 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경력 추가 정보 확장	▶ 교육 정보 추가 및 고용24 연계	▶ 기업자격, 해외취업정보 연계	▶ 공인민간자격 연계, 상담자 활용기능 개발	▶ 추가 직무능력 연계 및 시스템 개선

《 **직무능력은행 연계정보 현황** 》

구분	연계 정보	관련(제공) 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시기	서비스 시기
자격	국가기술자격(검정형)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23.9월	'23.9월
		8개 수탁기관	수탁기관 정보시스템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한국산업인력공단	CQ-NET		
	일학습병행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방자격(12종)	국방부	국방인사정보체계	'24.3월	'24.3월
	기업자격	기업	직무능력은행	'24.12월	'25.6월
	국가공인 민간자격	대한상의, 생산성본부	각 기관 정보시스템	'25.12월	'26.7월
교육	NCS기반 교과인정 정보	교과인정 참여 대학	직무능력은행	'23.9월	'23.9월
	폴리텍대학 교육정보	한국폴리텍대학	학사정보시스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24.3월	'24.3월
	고교생 NCS기반 교과 이수 내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EIS	'24.6월	'24.6월
	해외 연수,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24.12월	'25.6월
훈련	직업훈련 과정 이수 정보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23.9월	'23.9월
경력	고용보험가입정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시스템	'24.3월	'24.3월
	개인사업자등록정보	국세청	국세정보시스템		
	군 경력정보(군 간부)	국방부	국방인사정보체계		
	해외 일경험, 해외인턴(WEST)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24.12월	'25.6월

○ **(연계 확대)**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에서 청년 경력증명 방안으로 직무능력은행을 높이 평가,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보 연계 추진

- 일경험 등 프리랜서 경력, 대학전공, 어학성적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공공·민간 정보 추가 연계 추진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채용 시 각종 증빙서류를 직무능력인정서로 대체, 채용 등에 '기본증명서'로서 인정서 활용성 확대

○ **(인프라 고도화)** 연계 정보 대폭 확장에 따른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서버 증설, 데이터 품질관리 등 시스템 고도화 필요

- 데이터 처리량 증가에 따른 HW·SW, AI 학습·추론 SW 구입 비용 등

❷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대학 교과이수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인정 및 컨설팅 사업 확대**

○ **(교과인정)**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전문대학·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을 심사하여 이수내역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 ('23년) 120교과 → ('24년) 150교과 → ('25년) 80교과 → ('26년) 80교과 → ('27년) 80교과

○ **(컨설팅)** 교과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고자 하는 전문대학 등이 부담 없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교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별 컨설팅 제공

* ('23년) 36교과 → ('24년) 50교과 → ('25년) 40교과 → ('26년) 40교과 → ('27년) 40교과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소 요 예 산 및 사 업 목 표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 계		1,648	5,282	2,322	2,322	2,322
직무능력 은행제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800 (운영1식x 800백만)	4,063 (운영1식x 4,063백만)	800 (운영1식x 800백만)	800 (운영1식x 800백만)	800 (운영1식x 800백만)
	직무능력은행 연계 확장	500 (연계확장1식 x500백만)	871 (연계확장1식 x871백만)	1,000 (연계확장1식 x1,000백만)	1,000 (연계확장1식 x1,000백만)	1,000 (연계확장1식 x1,000백만)
	직무능력은행 교과인정	128 (80교과x 1.6백만원)	128 (80교과x 1.6백만원)	192 (120교과x 1.6백만원)	192 (120교과x 1.6백만원)	192 (120교과x 1.6백만원)
	직무능력은행 교과인정 컨설팅	220 (40개 교과x 5.5백만)	220 (40개 교과x 5.5백만)	330 (60개 교과x 5.5백만)	330 (60개 교과x 5.5백만)	330 (60개 교과x 5.5백만)

참고 5 원격훈련 모니터링

< 사업 개요 >

1. **(원격훈련제도)** 1999년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원격훈련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양적 성장에 따른 제도 도입**과 **AX전환에 맞추어 훈련이 다변화되고 있음**

* 원격훈련 인원 : '15년 124만명 → '20년 171만명 → '23년 210만명 → '25년 114만명

- **(사업주 위탁원격훈련 총량제)** 원격훈련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와 정부 예산 부족 방지를 위해 사업주 훈련은 **기관별 훈련실시 규모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 **(신규사업 증가)**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KDC, KDT),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중소기업 AI 기초·융합 훈련 등 **쌍방향의 비대면 실시간 훈련, AI 관련 신규 원격훈련 사업 확대**

2. **(원격훈련 모니터링 개요)** **원격훈련 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정·부실을 예방**하는 한편, **대량의 원격훈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리수강 등 부정훈련 적발 및 처분 지원**

❖ **('25년 기준) 6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참여하는 연간 약 **200개 훈련기관, 114만 명 훈련생**의 **약 3억 건의 학습 데이터** 정밀 **모니터링 및 심층 분석** 수행

3. **(원격훈련 모니터링의 중요성)** 훈련 부실·부정, 훈련비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들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감시**하기 위한 원격훈련에 대한 모니터링은 훈련의 질 제고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

□ 사업목적

○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원격훈련 시장 정상화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원격훈련기관의 훈련 운영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훈련비용 부정수급 차단 등 업무에 활용**

□ 필요성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부실훈련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지원
➡ 정부 원격훈련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시스템

○ **원격훈련**은 훈련이 웹상으로 이루어져, **IT 기술 고도화로 훈련생의 기술 활용 수준**과 **정보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격훈련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기술 발전에 맞춘 원격훈련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훈련 데이터 분석 및 AI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

○ 연간 훈련비로 약 1,000억원('25년 기준)이 투입되는 **원격훈련의 부정·부실 훈련 예방과 국가 재정 누수 리스크 차단**을 위해 시스템 운영비 확보 필요

-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원격훈련 모니터링 특성 상 **시스템 예산 미확보 시 원격훈련 모니터링 수행 불가로 원격훈련 관리 부실 초래**

□ 사업내용

○ **(시스템 운영)** 전국 200여개 원격훈련기관의 훈련 현황을 감시, 부정·부실 훈련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시스템 유지관리, 오류 복구, 개인정보 등 시스템 보유 데이터 보안관리, AI 시스템 데이터 학습, 튜닝 및 기능개선, 한국고용정보원 및 전국 원격훈련기관 등 타 시스템 연계 업무 수행

○ **(DB 심층분석)**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 훈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징후 포착 및 훈련 부정·부실 예방활동에 활용

- 부정 의심기관 DB 징구 및 포렌식 작업 실시, 부정의심 패턴 개발 및 분석, 각종 데이터 통계분석 등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소요예산 및 사업목표			
	'25년	'26년	'27년	'28년
합계	**200**	**370**	**620**	**620**
사업계획	원격훈련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및 훈련DB 분석	좌동	원격훈련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훈련DB 분석 및 AI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선 (AI 학습, 튜닝 등)	좌동
예산	200	370	620	620

※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하여 산출함

※ 이외 예산은 원격훈련기관 지도점검 지원, 현장 모니터링 등에 활용

사 업 명
(29) 숙련기술장려사업(1134-31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34	317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숙련기술장려사업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Y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숙련기술장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대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숙련기술장려사업	24,555	35,405	35,405	43,573	33,138	△2,267	△6.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4,555	24,555	24,555	-	-	35,405	35,405	24,973	33,138
·숙련기술장려	10,012	10,012	10,012	-	-	18,765	18,765	13,236	18,074
·기능경기대회	14,543	14,543	14,543	-	-	16,640	16,640	11,737	15,06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4,555	24,555	24,555	-	-	35,405	35,405	24,973	33,138
·사업출연금(350-02)	24,555	24,555	24,555	-	-	35,405	35,405	24,973	33,13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숙련기술장려사업

사업목적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 숙련기술자가 존중받는 능력 위주 사회 풍토 조성
사업내용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지원)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연 1회), 기특한명장 선발 및 활동지원(연 1회) - 기특한명장 : 만 34세 이하 청소년·청년 대상 선발, 숙련기술인의 날 시상, 바톤터치 기술전수 등 활동 지원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1,242명 대상 계속종사 장려금 지급 ○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매년 9월 9일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숙련기술 정책지원)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활용사업) 예비 숙련기술인·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숙련기술 전수 및 교사 연수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총사업비 관리대상, ’23~’29)

(1-2) 기능경기대회

사업목적	○ 기능경기대회로 우수 숙련기술자를 발굴·육성하고 기능인·청소년의 기능 습득 장려 ○ 제조업 분야 청소년 기능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기능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사업내용	○ (국내기능경기대회) 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846직종 6,019명 참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50개 직종 참가, 국가대표 선발·강화훈련·훈련수당·기능반 발전지원금·회원국 분담금·신규장비 지원 ○ (기능경기지원 및 과제출제) 258과제 출제 및 대회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의 2(숙련기술의날)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숙련기술장려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의 2(숙련기술의날)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숙련기술장려
추진경위	○ 추진경위 - ’82년 정부의 “기능인력양성 및 직업안정활성화방안”에 의해 인력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기능경기를 통한 기능의 저변확대와 기능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 - ’91년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시작 - ’95년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동법에 의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99년 기능장려기금 폐지로 동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10년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개정함(’11.1.1 시행) - ’12년 정부의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발표 - ‘18년 정부의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발표 - ‘24년 정부의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발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2년 ~ 계속

○ 총사업비 : 39,240백만원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9,153	40,057	24,555	35,405	33,13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직업계고 학생, 산업체 근로자 등 숙련기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숙련기술장려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18,074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기능경기대회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15,064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5,405	33,138	△2,267
숙련기술장려	18,765	18,074	△691
기능경기대회	16,640	15,064	△1,576

○ 숙련기술장려 (2026년) 18,765 → (2027년 정부안) 33,138백만원, △6.4%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지원 : ('26) 1,066 → ('27) 1,788백만원(+722백만원)

- (산출) ①우수숙련기술인 선정 1회×1,066백만원=1,066백만원,
②기특한명장 선발 및 활동지원 1회×722백만원=722백만원

☐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 ('26) 100 → ('27) 40백만원(△60백만원)

- (산출) 1회×40백만원=40백만원(△60백만원)

☐ 숙련기술 정책지원 : ('26) 132 → ('27) 10백만원(△122백만원)

- (산출)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 ('26) 50 → ('27) 10백만원(△40백만원)
- (산출) 우수숙련기술인 종합포털 유지보수 : ('26) 82 → ('27) 0백만원(순감, 이관)

* 정보화 사업체계 개편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로 이관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 ('27) 7,078백만원(전년동)

- (산출) 1,242명×7.13백만원×0.8=7,078백만원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활용사업 : ('27) 1,200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1,200백만원=1,200백만원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 ('26) 9,189 → ('27) 7,958백만원(△1,231백만원)

- (산출) ① 공사비 7,510백만원, ② 감리비 435백만원, ③시설부대비 13백만원

○ 기능경기대회 (2026년) 16,640 → (2027년 정부안) 15,064백만원, △9.5%

☐ 국내기능경기대회 : ('27) 10,451백만원(전년동)

- (산출) 846직종×12.35백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26) 5,752 → ('27) 4,176백만원(△1,576백만원)

- (산출) ① 국가대표선발 1,487백만원, ② 강화훈련 1,388백만원, ③ 훈련수당 512백만원, ④ 기능반 발전지원금 51백만원, ⑤ 회원국분담금 130백만원, ⑥ 신규장비 608백만원

☐ 기능경기지원 및 과제출제 : ('27) 437백만원(전년동)

- (산출) 258과제×1.7백만원=43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훈련양성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8	89.8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3) 89.7 ('24) 89.5 ('25) 90.2

- **자료수집방법/출처 :**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명장 등 선정) 1회, (지방대회) 4,793명 참가, (전국대회) 1,691명 참가, (기능과제출제) 258과제
2024년	(명장 등 선정) 1회, (지방대회) 4,711명 참가, (전국대회) 1,755명 참가, (기능과제출제) 272과제
2025년	(명장 등 선정) 1회, (지방대회) 4,649명 참가, (전국대회) 1,725명 참가, (기능과제출제) 272과제
2026년	(명장 등 선정) 1회, (지방대회) 4,342명 참가, (전국대회) 1,677명 참가, (기능과제출제) 258과제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청소년·청년 기술 인재의 발굴과 미래 숙련기술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특한 명장' 선정,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공식 인증 방식 고도화 및 국가인재 DB수록 확대를 통한 산업현장 숙련기술 인재활동 범위 확장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활용사업) 민·관·학 협력을 통한 숙련기술전수 AI혁신 생태계 조성 및 교육청·직업계고와 협진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에 산업현장을 반영한 '고교학점제 연계 특화과정' 공동개발·운영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전문 숙련기술자의 계속종사 유도하여 숙련기술 역량의 사회적 확산 도모

○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각 분야에서 숙련기술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발굴,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자 증서 수여식 등 숙련기술인과 함께하는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 (국내기능경기대회)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대회 직종 폐지 조건 완화를 통해 현장변화와 기술발전 시의성을 제고하고, 직종 특성을 반영하는 다변화된 경기 운영방식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편

○ (국제기능올림픽) 직종별 경기과제 분석을 통한 핵심 기술 요소 및 난이도별 강화훈련 체계 고도화를 통한 국가대표선수 역량강화, 신규 참가직종 발굴을 위한 훈련 인프라 조성 우선지원 및 회원국 국제지도위원간 교류 활동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 까지 기투자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2028년 이후 투자계획	합계
2023년~2029년	1,929	12,561	436	9,189	7,958	7,167	39,240

7) 사업 집행절차

○ 공통 : 고용노동부가 사업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연간 사업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 협의·승인 → 출연금 교부 → 사업 집행 → 실적 보고 및 정산

○ 숙련기술장려

-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활용(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9조~제16조)
  신청서 접수(공단 지부·지사) → 서류심사(직종별 전문위원) → 현장실사(직종별 전문위원) → 국민의견 수렴(누리집 공고) → 면접심사(직종별 전문위원 및 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 → 심의·선정(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 → 최종확정(고용노동부) → 시상(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 기특한명장 선발 및 활동지원
  선발계획 수립 → 공고 및 신청 접수(만 34세 이하) → 심사·선발 → 숙련기술인의 날 시상 → 활동지원(바톤터치 기술전수, 멘토링) → 성과분석
- 청소년 숙련기술인 육성 및 기술과정 전수
  전수과정 수요조사 및 신규과정 검토 → 사업계획 수립 → 전수 직종 및 전수위원 선정 → 전수과정 공고 → 전수 신청 및 접수 → 전수 실시(집체과정 16h/32h)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지급계획 수립 → 대상자 확인(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 계속종사 여부 확인 → 장려금 지급 → 지급실적 정산 및 보고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총사업비 협의 → 설계 → 조달청 계약 → 공사 및 감리 → 준공 → 개원·운영

○ 기능경기대회(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제30조, 시행규칙 제16조)

- 국내기능경기대회(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
  경기장 확정 → 원서접수 → 경기장·시설·재료·과제 준비 → 기술위원 위촉 → 대회 개최 및 시상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및 운영
  참가직종 선정 → 국제지도위원 선정 → 국가대표선수 선발(평가전·선발전) → 강화훈련 → 대회 참가 → 결과보고
- 기능경기지원 및 과제출제
  출제계획 수립 → 출제위원 위촉 → 과제 출제 및 검토 → 과제 확정·배포 → 대회 적용 및 환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사업계획, 이해관계자, 사업수요 등이 명확하며, 사업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목표 달성 기여 상당함 ○ 결과 :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사업의 법적근거 및 정책적 중요성으로 볼 때 재정지원 필요성이 분명하고, 사업성과·외부평가·상위목표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 ○ 결과 : 보통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시 단계별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및 집행점검 강화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9,153	29,153	-	-	29,153	29,153	100.0	-	-
2024년	40,057	40,057	-	668	40,725	40,725	100.0	-	-
2025년	33,744	24,555	-	-	24,555	24,555	100.0	-	-
2026년	35,405	35,405	-	-	35,405	24,973	70.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해당없음
2024년	내역 변경	668	2024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포상금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
2025년	추경	△9,189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공사비 등 감액 추가경정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1) 숙련기술장려 사업 개요

(2) 기특한명장 선발·활동지원

(3)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추진

(4)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발 관련 예산 증액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스마트 훈련 장비 구축 등

참고 1 숙련기술장려 사업 개요

1. 숙련기술장려

□ 사업 개요

○ **(목적)**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및 우수숙련기술자가 존중받는 능력중심사회 풍토 조성

- 숙련기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의 자율적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고, 숙련기술자의 사기 진작 및 산업경쟁력 제고

○ **(현황)** 일반 국민에게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자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는 한편, 국민이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전수 등 국민의 생애 주기별 활동영역에 부합하는 맞춤형 숙련기술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 내용(규모)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지원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기특한 명장 선발 및 활동지원,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숙련기술인의 날 개최 등 각 선정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 숙련기술장려 우대풍토조성 및 전수사업

- 우수숙련기술인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실시, 숙련기술 전수교육 등

○ 숙련기술장려 관련 연구를 통한 선진화 사업

□ 기대효과

○ 대한민국명장 등에 대하여 해당직종 계속 종사 유도

- 우수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 직업진로지도 등 숙련기술전수지원을 통해 高숙련기술 역량을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

- 숙련기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강화 지원, 산업현장 숙련기술인들의 숙련기술 기부 활성화

○ 숙련기술장려 캠페인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인식 확산

2. 기능경기대회

□ 사업 개요

○ **(목적)** 숙련기술수준의 향상과 숙련기술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숙련기술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

○ **(현황)**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 및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매년 9~10월)하고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여 국제기능올림픽 통산 19번째 종합우승의 쾌거와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

□ 사업 내용

○ **(대상)** 전국민

○ **(지원수준)**

(단위: 만원)

구분	상금	자격증(면제)	비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금:30, 은:20, 동:10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 면제	전국대회 출전권 부여
전국기능경기대회	금:1,000, 은:600, 동:400	해당직종산업기사실기시험면제	국제대회 선발평가전 참가 후보선수 자격 부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6,720, 은:5,600, 동:3,920, 우수상: 1,000	해당 직종 산업기사 시험 면제	병역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 편입) 계속종사장려금지원

○ **(지원방식)** 숙련기술장려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지급

□ 추진절차

계획 수립 ⇨ 대회개최 공고 ⇨ 원서접수 ⇨ 대회개최 및 시상 ⇨ 국제대회 선수선발

□ 기대효과

○ 기능경기사업은 국내기능경기대회(지방-전국)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국제대회 참가를 통하여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숙련기술의 국제교류를 촉진하며, 숙련기술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전문계고 및 숙련기술계의 인력 유입 유도

참고 2 기특한명장 선발 · 활동지원

□ 필요성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숙련기술인을 우대하고 장려하는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입직 단계 이전의 청소년·청년층(특히 직업계고 학생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족**

- 대학진학 외 **기술 중심**의 **진로 및 롤모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청년들에게 숙련기술인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수립 필요

○ 청소년·청년기에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특한명장*'을 신설, 미래 명장을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①기술인재+특별+대한민국+명장의 약자로 기술이 특별한 명장, ②'기특하다'라는 뜻으로 청소년·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 입직 및 대한민국명장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미

○ **2025년 노동부-교육부 전략협업 과제** 선정(국무조정실 승인, '25.4월)

□ 사업내용

○ 기특한명장 선발

- (선정 대상(만34세 이하) 및 규모)

	Track1 기특한명장(기술회원)	Track2 기특한명장(학생회원)
신청자격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신청직종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직종	△대한민국명장 선정 분야 및 직종
추천주체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장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추천규모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장	△시도별 2명 이내, 서울 3명, 경기 4명 이내
선정규모	△추천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모두 선정	△20명 이내(대한민국명장 선정 규모 준용)

- (신청 요건)

Track1 기특한명장(기술회원)	Track2 기특한명장(학생회원)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진로 특강의 교수역량을 갖춘 자 △기술꿈나무(중학생 등) 대상 진로 특강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을 꿈꾸는 자 등	△①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②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자(多數, 高수준) △③해당 숙련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서적, 논문 등 보유 및 작성자 △①~③요건에 상응하는 역량 보유자 등

○ 기특한명장 시상 및 우대지원

- (시상)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 행사를 통해 선정 시상·격려

- (우대사항)

기특한명장 우대사항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기특한명장 증서 수여 및 일시장려금 1백만원 지급
△기특한명장 다수 배출학교 등 우수학교 명패(현판) 등 인센티브 발굴 부여
△대한민국명장 선정 시 가점부여(향후 관련 규정 개정 예정)
△각종 연수 및 교육훈련 기회 제공
△미취업자는 우수취업처 취업 연계 지원(교육부 협업) 등

○ 기특한명장 성장·육성·지원방안

목적	미래 대한민국명장을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미션	**기특한명장이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한다**		
구성	성장 **멘토링**	육성 **기술전수**	지원 **네트워크**
세부 내용	①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링 ②기능한국인과 멘토링 ③최상위 자격취득 멘토링	①진로지도 특강(중·고교) ②바톤터치 기술전수(국제기능올림픽) ③교수 역량강화 교육	①자체 커뮤니티 구축·운영 ②네트워크 구축지원(공단에서 지원하는 워크숍, 간담회 참여)
의미	기특한명장 선정자들이 ① **(성장)** 본인의 숙련기술 **역량을 성장**시키고, ② **(육성)** 청소년들의 롤모델로써 **후배 숙련기술인을 육성**하고 ③ **(지원)** 자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기대효과

○ 기특한명장 선발을 통한 홍보와 성공적 롤모델, 미래비전, 경력개발경로(CDP)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청년을 숙련기술분야 입직** 유도

○ 청소년-기특한명장-대한민국명장 상호 간 활동(1:1 멘토링, 진로특강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숙련기술 유입 및 활성화** 도모

○ 기특한명장 활성화를 통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숙련기술인 육성

□ 소요예산 : 722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722,000**	
선발		**소 계**	**309,700**	
		심사	18,100	· (면접심사 수당) 300천원×6명×3개조×2일 · (위원회 수당) 200천원×10명 · (면접심사 및 위원회 여비) 100천원×28명 · (PC 임차, 회의비 등) 2,500천원×1식
		포상	230,500	· (일시장려금) 1,000천원×210명('25~'27년, 3개년) · (현판) 500천원×20기관(학교) · (휘장, 뱃지) 150천원×70명
		시상식	61,100	· (시설 대관) 35,000천원×1식 · (행사 용역) 26,100천원×1식
기특한명장 성장·육성·지원	성장	**소 계**	**182,500**	
		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링	140,000	· (멘토링 수당) 400천원×5회×70명(대한민국명장)
		기능한국인과 멘토링	7,500	· (멘토링 수당) 300천원×5회×5팀(기능한국인)
		최상위 자격취득 (멘토링, 취득지원)	35,000	· (멘토링 수당) 300천원×5회×20명(우수 숙련기술인 등 최상위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취득지원비) 100천원×50명(기특한명장) * 멘토링과 자격증 취득지원비 중복 불가
	육성	**소 계**	**125,000**	
		바톤터치 기술전수	95,000	· (기술전수 수당) 50천원×5시간×10일×30명 · (인센티브) 1,000천원×20명* * 참가선수 메달 수상 시 기술전수한 기특한명장에게 지급
		진로특강	비예산	· 교육부 진로특강 강사료 지급
		진로특강 역량강화	30,000	· (교육비) 300천원×100명(기술회원, '25~'27년)
	지원	**소 계**	**104,800**	
		네트워크 구축	비예산	· 기특한명장 전체 및 기수별·직종별 네트워크 구축
		숙련기술 네트워크 워크숍	104,800	· (시설 대관) 60,000천원×1식 · (식비 등) 50천원×4식×200명 · (특강 강연비) 400천원×2시간×6명

참고 3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추진

□ 사업목적

○ 영남권 예비 숙련기술인(고교생, 중소기업근로자)에게 대한민국명장 등의 高숙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운영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3.1.1.~ 2029.12.31.
· 시설규모 : 부지 6,656㎡, 시설 7,808㎡
· 전수분야 : 컴퓨터,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설비 등 5개 분야
· 전수대상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전문계고 학생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 사업내용

○ 예비숙련기술인 숙련기술 습득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숙련기술 향상 지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직종 훈련시설 활용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에 대한 산업현장 특화기술 연수 확대

□ 연도별 예산 소요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예산 소요계획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39,240	1,929	12,561	436	9,189	7,958	7,167
1. 토지매입비	6,928	1,000	5,928	-	-	-	-
2. 설계비	1,313	916	-	397	-	-	-
3. 감리비	3,735	-	422	-	550	435	2,328
4. 공사비	26,220	-	5,529	-	8,626	7,510	4,555
5. 시설부대비	375	13	13	39	13	13	284
6. 제세(토지) 비용	669	-	669	-	-	-	-
7. 제세(건물)	-	-	-	-	-	-	-

□ 기대효과

○ 숙련기술전수 운영기관 확대로 접근성 문제 해소 및 비수도권 지역 숙련기술인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존산업과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숙련기술 습득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산업변화의 능동적 대응 가능

참고 4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발 관련 예산 증액

□ 사업 개요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주기는 격년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홀수 연도에는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훈련장 조성 사업을 수행

- 대한민국 출전 직종 : 50개 직종 / 직종별 후보선수 수: 4명

□ 대회 참가 직종 현황

○ 대회 참가 직종

구 분	'24 리옹 대회	'26 상하이 대회	'28 아이치 대회
참가 직종	49	50(예정)	50(예정)

- 국가대표 선발 경기 : 평가전(국내대회 개최직종), 선발전(국내대회 미개최 직종)으로 구분되며, 직종별 2회 시행

* 평가전 : 국제대회 참가 가능 연령 충족자 중 2개년도 전국대회 직종별 1, 2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국가대표선수 선발

** 선발전 : 국내대회 미개최 직종의 경우 별도 선발전을 시행하여 국가대표선수 선발

□ 반영 필요성

○ 국가대표선수 선발 경기에 소요되는 평가수당, 시설·장비비, 재료비 예산이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제반 비용(시설, 장비, 재료) 단가 상승으로 1,487백만원 증액* 필요

- 해당 건은 국제대회 미개최년도에만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년 예산에 반영되어있지 않아 전액 순증 필요 * 과거 예산 : ('26) 0원 ('25) 1,429백만원

□ 세부 산출근거

구 분	세부내역 (직종별 단가)	계	비고
총 계		**1,487백만원**	
각종 수당	① 평가위원 수당 : 475백만원 = 190천원 × 5일 × 5명 × 50직종 × 2회 ② 선수 및 평가위원 여비 : 82백만원 = 820천원 × 50직종 × 2회	557백만원	
시설 및 장비비	4.5백만원 × 50직종 × 2회	450백만원	
재료비	4.8백만원 × 50직종 × 2회	480백만원	

참고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스마트 훈련 장비 구축 등

□ 현황 및 문제점

○ **(AI 신기술 인재 양성 필요)**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기반 산업 구조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단순 기능인력을 넘어 디지털 활용 능력과 복합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숙련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장비 노후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최신 산업기술 및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경기과제가 출제되며 대회 장비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으나, 현재 훈련환경은 노후 장비와 단일 기능 중심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현 과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 필요성

○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강화)** 최근 대회는 단순 기능 숙련도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최신 산업 기술을 반영한 문제 해결형, 융합형 과제 중심으로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회 장비 또한 실제 산업현장과 격차가 축소됨

→ 국제기능올림픽 과제 출제 경향 및 장비 기준을 반영한 장비 고도화와 함께 AI, 디지털 기반 기능을 포함한 훈련 환경 구축을 통해 실전 대응력 및 문제 해결 역량 제고

□ 소요예산 : 총 608백만원

○ **(국제기능올림픽 신규 장비 예산)** ('26) 608백만원 → ('27)608백만원

○ **(세부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합 계		**608백만원**	
IT·정보기술	• GPU서버(AI학습용) 120백만원*1식 • 개발용 워크스테이션(고성능 PC) 6백만원*5대	150백만원	
전기, 전자, 메카트로닉스	• 협동로봇(Co-bot) 로봇 프로그램 80백만원*1대 •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공정연결) 10백만원*1식	90백만원	
기계·제조	• CNC 시뮬레이션 SW(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가공) - 88백만원*1식 • 예지보전 SW(장비 상태 분석) 30백만원*1식	118백만원	
재생에너지	• 태양광 패널 세트 250백만원*1식 - 실습실(10개) x 25,000천원	250백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증감 예산 세부 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세부내역</th><th>예산</th><th>비고</th></tr>
<tr><td></td><td>계</td><td>△1,576</td><td></td></tr>
<tr><td>강화훈련
(1,388
백만원)</td><td>■ '27년 국가대표 강화훈련 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 소요액, 450백만원
- (국내 훈련) 234.5백만원 x 4개월 = 938백만원
* [단가 234.5백만원 산출 근거]: 선수 식비 23백만원 + 훈련 재료비 50백만원 + 장비 임차 50백만원, 강화 훈련장 조성 30백만원, 폐기물 처리 및 기타 운영비 81.5백만원
* [4개월 산출 근거] : '28년 국가대표선수 합동훈련장 27년 9월 입소 예정 (9~12월)
- (국외 전지훈련) 450백만원
* 9백만원 x 50직종 = 450백만원
* 직종당 9백만원 산출 근거 : 항공료 및 체재비 3백만원 x 3명 = 9백만원
* '26년 대회 참가 기준 참가 직종수(50직종)</td><td>+450</td><td></td></tr>
<tr><td>국가대표
선발
(1,487
백만원)</td><td>■ '27년 국가대표 선발 소요액: 1,487백만원
- 해당 건은 국제대회 미개최년도에만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년 예산에 반영되어있지 않아 전액 순증 필요
* 과거 예산 : ('26) 0원 ('25) 1,429백만원
[참고] 29.74백만원×50직종=1,487백만원
- 직종당 선발비용(29.74백만원) 산출 근거
① 각종수당 : (수당) 190천원×5일×5명×2회=9.5백만원
(여비) 140천원×9명×2회=2.52백만원
② 시설 및 장비비 : 최근 2개년도 평균 8.72백만원
③ 재료비 : 최근 2개년도 평균 9백만원</td><td>+1,487</td><td></td></tr>
<tr><td>훈련수당
(512
백만원)</td><td>■ '27년 훈련기간 감소에 따른 감액 총액: 492백만원
- '27년도 훈련수당 총 소요액은 512백만원으로 '26년도 예산(1,004백만원) 대비 492백만원 감액 소요
- 훈련기간 감소: 8개월('26년도)→4개월('27년도)
[참고] '26년 총 소요액: 128백만원×4개월=512백만원
-월 훈련수당(128백만원) 산출 근거
①국가대표선수: 월 1백만원×56명(50직종)×50%
(미취업선수비율)=28백만원
②국제지도위원: 월 1백만원×50직종=50백만원
③부지도위원: 월 0.5백만원×50직종×2인=50백만원</td><td>△492</td><td></td></tr>
<tr><td>위원회
부담금
(130
백만원)</td><td>■ '27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분담금 납부 예상액 증가에 따른 증액 소요액: 39백만원
- '27년도 분담금 예산 : 130백만원 x 1회 = 130백만원
* 130백만원 산정 근거 : 26년 분담금(112백만원) x 116% =130백만원
* 인상율(16%) 산정 사유 : 매년 인상율이 2~3% 증가 따라 27년 16% 인상 예측
[참고] 과거 4개년도 분담금 추이
<table>
<tr><td>구분</td><td>2023</td><td>2024</td><td>2025</td><td>2026</td><td>2027(예상)</td></tr>
<tr><td>납부액</td><td>79백만원</td><td>87백만원</td><td>98백만원</td><td>112백만원</td><td>130백만원</td></tr>
<tr><td>인상율</td><td></td><td>10%</td><td>13%</td><td>14%</td><td>16%</td></tr>
</table></td><td>+39</td><td></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세부내역</th><th>예산</th><th>비고</th></tr>
<tr><td>기능반 발전 지원금 (51 백만원)</td><td>■ '27년 입상자 직업계고 기능반 발전지원금 소요액: 51백만원
- 해당 건은 국제대회 미개최년도에만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년 예산에 반영되어있지 않아 전액 순증 필요
[참고] '27년 총 소요액: 금(3백만원)x9개, 은(2백만원)x9개, 동(1백만원)x6개=51백만원
- 매달개수 산출 근거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3개 대회 평균</th><th colspan="4">45회 카잔</th><th colspan="4">46회 특별대회</th><th colspan="4">47회 리옹</th></tr>
<tr><th>계</th><th>금</th><th>은</th><th>동</th><th>계</th><th>금</th><th>은</th><th>동</th><th>계</th><th>금</th><th>은</th><th>동</th><th>계</th><th>금</th><th>은</th><th>동</th></tr>
<tr><td>전체</td><td>26.4</td><td>9.7</td><td>9.7</td><td>7</td><td>16</td><td>7</td><td>7</td><td>2</td><td>31</td><td>12</td><td>9</td><td>10</td><td>32</td><td>10</td><td>13</td><td>9</td></tr>
<tr><td>직업계고 출신</td><td>24</td><td>8.7</td><td>9</td><td>6.3</td><td>15</td><td>7</td><td>7</td><td>1</td><td>27</td><td>9</td><td>8</td><td>10</td><td>28</td><td>10</td><td>12</td><td>8</td></tr>
</table></td><td>+51</td><td></td></tr>
<tr><td>국제대회 참가 및 포상금</td><td>■ 미개최년도 해당 내용 미발생</td><td>△3,111</td><td></td></tr>
</table>

□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참가 일정

주요 업무	'2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대표선수 선발												
2. 대표선수 훈련 (강화훈련비, 훈련수당 지출)												
3. 대표선수 훈련장비 구매												
4. 훈련장 조성												
5. 위원회 활동 관련 (분담금 납부)												

사 업 명
(30)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1134-5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34	5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정보시스템운영관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5,597	6,608	6,608	10,207	9,218	2,610	39.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5,597	5,597	5,597	-	-	6,608	6,608	5,286	9,218
·정보시스템운영관리	5,597	5,597	5,597	-	-	6,608	6,608	5,286	9,218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5,597	5,597	5,597	-	-	6,608	6,608	5,286	9,218
·사업출연금(350-02)	5,597	5,597	5,597	-	-	6,608	6,608	5,286	9,21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정보시스템운영관리

사업목적	고품질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자격검정사업, 외국인력사업, 해외취업 및 연수사업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신속·정확한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Q-Net, NCS, 월드잡+, 마이스터넷, 고용허가제통합서비스, HRD4U 등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및 국정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목적) 및 제6조(사업) ○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추진경위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한 공단 경영전략과 연계한 정보화사업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5,732	5,134	5,597	6,608	9,21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수험자(근로자, 학생, 주부 등), 해외취업 희망자 등 전 국민 및 외국인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정보시스템운영관리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9,218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608	9,218	2,610
정보시스템운영관리	6,608	9,218	2,610

○ **정보시스템운영관리 (2026년) 6,608 → (2027년 정부안) 9,218백만원, +39.5%**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6) 4,453 → ('27) 6,923백만원(+2,470백만원)

(1-1) HW 통합 유지보수 : ('26) 1,580 → ('27) 1,924백만원(+344백만원)

· (산출) 물량 32,072백만원(도입비) × 6%(유지보수 요율) = 1,924백만원

(1-2) SW 통합 유지보수 : ('26) 2,338 → ('27) 2,719백만원(+381백만원)
· (산출) 물량 33,983백만원(도입비) × 8%(유지보수 요율) = 2,719백만원

(1-3) 자격정보시스템 응용 유지보수 : ('26) 286 → ('27) 179백만원(△107백만원)
· (산출) 중급기술자 3명 × 239,748원 × 20.8일 × 12월 = 179백만원(△107백만원)

(1-4) 과정평가형 정보시스템 응용 유지보수 : ('27) 473백만원(이관, +473백만원)
* 정보화 사업체계 개편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에서 이관

(1-5) 차세대 출제관리시스템 응용 유지보수 : ('27) 600백만원(이관, +600백만원)
* 정보화 사업체계 개편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에서 이관

(1-6) 온라인플랫폼 응용 유지보수 : ('27) 202백만원(이관, +202백만원)
* 정보화 사업체계 개편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에서 이관

(1-7) NCS정보망 응용 유지보수 : ('27) 495백만원(이관, +495백만원)
* 정보화 사업체계 개편 심의 결과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에서 이관

(1-8) 우수숙련기술인종합포털 응용 유지보수 : ('27) 82백만원(이관, +82백만원)
* 정보화 사업체계 개편 심의 결과에 따라 숙련기술장려사업에서 이관

(1-9) 경영정보시스템 응용 유지보수 : ('27) 76백만원(전년동)
· (산출) 고급기술자 1명 × 305,433원 × 20.8일 × 12월 = 76백만원

(1-10) 웹사이트 유지보수 : ('27) 173백만원(전년동)
· (산출) (중급기술자 2명 × 239,748원 × 20.8일 × 12월) + (초급기술자 1명 × 215,681원 × 20.8일 × 12월) = 173백만원

- 사무용 SW 구매 : ('27) 396백만원(전년동)
(2-1) 한글SW : 720명×94.5천원 = 68백만원(전년동)
(2-2) MS제품군 : 720명×238천원 = 171백만원(전년동)
(2-3) 백신프로그램 : 2,000대×35천원 = 70백만원(전년동)
(2-4) 망분리라이선스 : 1식×87백만원 = 87백만원(전년동)

-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 ('27) 278백만원(전년동)
(3-1) 사무용 PC : 200대 × 1,100천원 = 220백만원(전년동)
(3-2) 노트북 : 20대 × 1,200천원 = 24백만원(전년동)
(3-3) 프린터 : 34대 × 1,000천원 = 34백만원(전년동)

- 정보화사업 운영지원 : ('27) 1,215백만원(전년동)
(4-1)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 80회선 × 950천원 × 12월 = 912백만원(전년동)
(4-2) 인터넷 회선 사용료 : 2회선 × 9백만원 × 12월 = 216백만원(전년동)
(4-3) SMS 사용료 : 420만건 × 12.43원 = 52백만원(전년동)
(4-4) 정보화교육 및 운영비 : 35백만원(전년동)

· (산출) (웹페이지 보안 등 인증 1식 × 10백만원) + (교육비 등 일반운영 1식 × 25백만원)

- 데이터센터 노후 통신장비 교체 : ('27) 266백만원(전년동)

· (산출) 노후 통신장비 교체 1식 × 266백만원 = 266백만원

- 국가 보안인증(ISMS-P) : ('27) 140백만원(순증)

· (산출) 1식 × 140백만원 = 14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훈련 양성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8(%)	89.8(%)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3) 89.7 ('24) 89.5 ('25) 90.2

- **자료수집방법/출처** : 전수조사(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식 - 전산장비가동률 100% - DB복구 모의훈련 실시 4회 - 정보화 고객만족도 조사 1회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점수 100점 -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23종 - 기관 공동 활용 데이터 발굴 30건 - 업무망 분리구축 100%
2024년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식 - 전산장비가동률 100% - DB복구 모의훈련 실시 4회 - 정보화 고객만족도 조사 1회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점수 100점 -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23종 - 디지털정부혁신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데이터 인재양성 선도기관 행정안전부 인증 - 전자정부 수준진단 98.33점(공공기관 평균 91.75점)

2025년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식 - 전산장비가동률 100% - DB복구 모의훈련 실시 4회 - 해킹메일 대비훈련 4회 - 노후통신장비(L3 2대, L4 2대) 교체 -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26종 -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등급 획득 - 전자정부 수준진단 96점(공공기관 평균 90.99점)
2026년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식 - 전산장비가동률 100% - DB복구 모의훈련 실시 3회 - 해킹메일 대비훈련 2회 - 행정사무업무 운영기반 보강(다기능 사무기기 3종 및 상용SW 1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가치 데이터 개방) 국민·기업의 활용 수요가 높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경제 활성화 기여

○ (전산장비 가동률) 99% 이상의 전산장비가동으로 무중단 공공서비스 실현

○ (DB 복구 모의훈련) 연 4회(분기별 1회)의 DB 복구 훈련을 통해 기관 주요 데이터의 안정적 운영환경 확보

○ (전자정부 성과관리)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99점 이상 획득으로 정보자원 운영관리 및 성과목표 관리 우수성 확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 : 정보화사업 기준 및 지침 마련(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집행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고용노동부 → 공단) → 공단 자체 정보화추진계획 수립(ISP 등) →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도입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화 수준·성과평가 및 피드백

○ 공단 정보화사업 구축 추진 절차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 예산 확보(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계약 추진 → 입찰공고(조달청) → 제안서 기술평가 → 사업자 선정·계약 → 정보화사업 추진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예산절감 노력 인정, 설과목표 보수적 설정 ○ 결과 :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전년대비 집행률 저하, 예산 절감률 향상 미흡, 성과지표 포괄성 확보 미흡 ○ 결과 : 미흡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업무 수준에서의 조국적 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732	5,732	-	-	5,732	5,732	100.0	-	-
2024년	5,134	5,134	-	-	5,134	5,134	100.0	-	-
2025년	5,597	5,597	-	-	5,597	5,597	100.0	-	-
2026년	6,608	6,608	-	-	6,608	5,286	8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해당없음
2024년	-	-	해당없음
2025년	-	-	해당없음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1)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사업 개요

(2)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장비 증감내역

참고 1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고품질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능력평가사업, 외국인력사업, 해외취업 및 연수사업 관련 정보화 구축·운영을 통해 신속·정확한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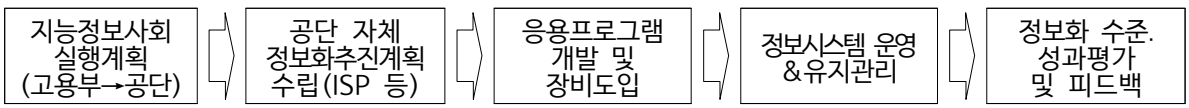
○ **(사업기간)** 2001년 ~ 계속

○ **(사업규모)** Q-Net(국가자격·전문자격·과정평가형 등),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능력은행), 월드잡+(해외취업·연수·일경험·인턴·봉사), 마이스터넷(숙련기술·기능경기·국제교류), 고용허가제통합서비스(한국어능력시험·취업교육·귀국지원), Jobplus TV·HRD4U(기업·일학습) 등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및 국정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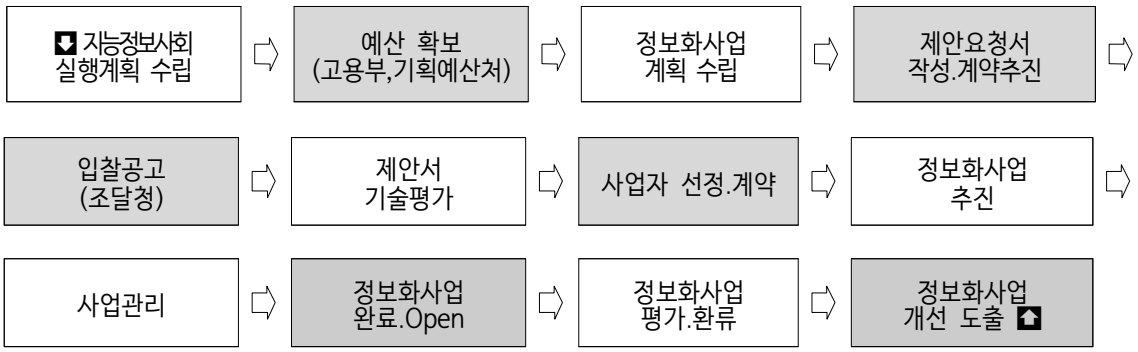
□ 사업추진 절차

○ 고용노동부 : 정보화사업 기준 및 지침 마련(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집행



○ 공단 정보화사업 구축 추진절차



□ 사업별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 대국민 정보시스템 : 12개 시스템 운영

연번	사업구분	시스템명(DB기준)	서비스 내용
1	기관운영	- 대표홈페이지	경영공시 및 사업정보 제공
2	능력평가	- 자격정보시스템 -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 자격 정보시스템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증명서/자격증발급, 자격정보제공
3	능력개발	- HRD4U 정보시스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인정 시스템(PDMS) -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EMON)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직무능력은행시스템 - JobplusTV	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 제공 및 HRD 문화 확산
4	외국인력	- 고용허가제통합정보망	외국인력의 도입/한국어시험/교육 등 종합정보제공
5	해외취업	-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연수.인턴.봉사 등의 해외진출 관련 정보 통합 제공
6	숙련기술	- 마이스터넷	기능인력, 경기대회 통합정보 관리, 국제교류협력, 숙련기술 장려 등 정보 제공

○ 내부 정보시스템 : 17개 시스템 운영

연번	구분	시스템명(DB기준)	서비스 내용
1	경영지원 (12)	경영정보시스템(인사,보수,복무)	인사, 복무, 보수, 교육, 성과평가 관리 등
2		경영정보시스템(예산,회계,자산)	예산, 회계, 자산정보 관리 등
3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카드내역 등 은행 연계 시스템
4		인사평가(역량평가시스템)	인사평가 관리 등
5		슬기샘터(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생산, 접수, 보관 관리 등
6		외부메일	메일 수·발신 등 메일 서비스 제공
7		PCRM	정책적 고객관리
8		웹팩스	온라인 팩스서비스 등 제공
9		메신저	대화, 쪽지 등 메신저 서비스 등 제공
10		e-감사시스템	외부강의신고 및 샘물마일리지 관리
11		HRD전자도서관	공단 보유 서적 정보 제공
12		경영지원 챗봇	내부업무 관련 챗봇 서비스 제공
13	능력평가 (2)	CBT정보시스템	시행관리, 감독관·수험자 프로그램 운영 등
14		출제정보시스템	기술자격, 전문자격 출제 및 행정처리
15	정보보안 (3)	망분리시스템	내부망 전용 가상 PC시스템, 망간자료교환 시스템 등
16		정보보호시스템	웹방화벽, 침입차단, 개인정보보호 등
17		정보화 용역사업 관리시스템	정보화 용역사업 보완 관리 서비스

□ 정보자원 운영 현황

(단위 : 대, ‘25. 12월 기준)

구분	계	서 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보안장비	부대장비
H/W	1,284	509	114	496	79	86
S/W	632	DBMS, 미들웨어, 침입탐지, 방화벽 등 632종				
통신 회선	87	.국가정보통신망(KT, LG U+) : 38개소 76회선(지역본부 500MB/그 외 200MB) - 본부 : 2개소(고객센터(울산), HRDK미래교육원(강릉)) - 부설기관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소속기관 : 35개소 * 서울동부자격시험장, 대구지역본부 기업인재혁신부, 원주기업인재혁신센터 포함 .인터넷서비스(SKB) : 2회선(10GB*2) .원격지(서울서부) 백업 회선(SKB) : 1회선(1GB) .기타 통신회선 : 8회선 - 고용노동부 사이버안전센터/국가정보원 NCTI/행정안전부 행정정보망/한국고용정보원/삼성화재/Q-Net 원서접수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 2회선)/안산 외국인력상담센터(서울지부 연계)				

□ 대국민 웹사이트 방문자 현황

(단위 : 건, ‘25. 12월 기준)

사업	연간		월(평균)		일(평균)	
	1)방문자수	2)페이지뷰	방문자수	페이지뷰	방문자수	페이지뷰
계	67,613,866	2,336,208,987	5,647,783	194,739,727	185,678	6,402,514
기관운영	1,755,554	7,345,665	159,595	667,787	5,256	21,993
능력평가	48,897,795	1,688,594,216	4,074,815	140,716,184	133,966	4,626,285
능력개발	6,701,530	181,851,633	558,459	15,154,301	18,351	498,300
외국인력	3,087,825	17,744,988	257,318	1,478,749	8,459	48,616
해외취업	6,279,444	431,542,773	523,287	35,961,897	17,203	1,182,308
숙련기술	891,718	9,129,712	74,309	760,809	2,443	25,012

1) 방문자수 : 웹사이트 방문한 방문자수(세션수)
2) 페이지뷰 :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열어본 전체 횟수

참고 2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대상장비 변동내역

○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대상 장비 증가 → 725백만원 증가

- HW: 32,072백만원(대상금액)×6%(유지보수요율)=1,924백만원(+344백만원)
- SW: 33,983백만원(대상금액)×8%(유지보수요율)=2,719백만원(+381백만원)

* 대상 장비 증감내역

· HW 도입비 : ('26년) 28,480백만원 → ('27년) 32,072백만원(증3,592백만원)

· SW 도입비 : ('26년) 29,957백만원 → ('27년) 33,983백만원(증4,026백만원)

〈대상장비(H/W, S/W) 증감 현황〉

(단위 : 식, 원)

HW/SW	시스템명	대상장비 내역		수량	도입금액	비 고
추가 장비	자격정보시스템	서버	중형	2	300,000,000	
	자격정보시스템	서버	소형	2	100,000,000	
	자격정보시스템	저장장치	스토리지	1	100,000,000	
	자격정보시스템	통신장비	SAN	2	70,000,000	
	자격정보시스템	통신장비	L4	2	80,000,000	
	자격정보시스템	통신장비	L2	2	10,000,000	
	자격정보시스템	통신장비	Heart-Beat	2	2,000,000	
	자격정보시스템	저장장치	스토리지	23	690,000,000	
	자격정보시스템	저장장치	백업	28	937,750,000	
	자격정보시스템	통신장비	L4	23	529,000,000	
	자격정보시스템	솔루션	CBT	56	399,000,000	
	자격정보시스템	솔루션	CBT 관제	293	735,295,000	
	자격정보시스템	솔루션	CBT 형상관리	61	110,863,500	
	자격정보시스템	미들웨어	WAS	2	33,560,000	
	자격정보시스템	솔루션	리포팅 솔루션	4	65,120,000	
	자격정보시스템(차세대)	클라우드	RedHat(오픈스택)	1	400,000,000	
	자격정보시스템(차세대)	클라우드	RedHat(케어팩)	1	300,000,000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안	로그관리	1	280,000,000	
	정보보안시스템	서버	VPN	1	48,400,000	
	정보보안시스템	솔루션	VPN 라이선스	2	50,000,000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안	방화벽	2	44,000,000	
	정보보안시스템	통신장비	L2	2	5,866,000	
	정보보안시스템	통신장비	L4	2	94,000,000	
	국가직무능력표준시스템	솔루션	검색솔루션	1	122,800,000	
	한국어능력시험시스템	솔루션	솔루션	1	10,000,000	
	네트워크장비	통신장비	L3	2	299,031,460	
	네트워크장비	통신장비	L3	2	232,601,460	
	네트워크장비	통신장비	L4	2	100,000,000	

HW/SW	시스템명	대상장비 내역		수량	도입금액	비 고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서버	중형	4	300,00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서버	소형	4	180,00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저장장치	스토리지	3	150,00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서버	소형	2	24,60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통신장비	L4	2	93,812,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정보보안	VPN	2	49,28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솔루션	맞춤법검사	1	65,00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솔루션	유사도검사	30	494,505,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정보보안	문서암호화	1	40,00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정보보안	문서암호화	2	50,00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DBMS	Oracle	4	140,106,4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정보보안	DB암호화	1	25,00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정보보안	DB접근제어	1	31,90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미들웨어	WEB	2	3,544,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솔루션	웹한글기안기	3	24,255,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솔루션	문서OCR분석	3	159,999,999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솔루션	최적화	1	260,000,00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솔루션	방화벽	6	13,966,680	
	출제정보시스템(문항분석)	솔루션	방화벽	2	4,655,560	
	HRD4U 정보시스템	서버	소형	1	33,000,000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	서버	중형	6	510,790,000	
	HRDK업무연락플랫폼	서버	소형	1	15,236,000	
	HRDK업무연락플랫폼	솔루션	국회업무관리	1	166,818,540	
	HRDK업무연락플랫폼	솔루션	웹한글기안기	4	37,193,200	
	HRDK업무연락플랫폼	솔루션	SSO Agent	1	5,115,000	
	부대설비	부대설비	출입보안	1	1,435,000	
	소 계			**612**	**9,029,499,799**	
폐기 장비	네트워크장비	통신장비	L3	1	148,000,000	
	네트워크장비	통신장비	L3	1	148,000,000	
	네트워크장비	통신장비	L3	2	161,220,000	
	네트워크장비	통신장비	L4	2	24,000,000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통신장비	L3	2	4,840,000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통신장비	L2	2	2,860,000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통신장비	L4	2	50,000,000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통신장비	L2	1	300,000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통신장비	L2	1	100,000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서버	소형	2	72,050,000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서버	소형	2	60,610,000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서버	소형	1	10,162,000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저장장치	스토리지	1	26,358,324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서버	소형	1	53,000,000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정보보안	방화벽	2	30,800,000	

HW/SW	시스템명	대상장비 내역		수량	도입금액	비 고
	출제정보시스템(기술자격)	OS	Windows Server	1	1,140,000	
	출제정보시스템(NCS기반)	서버	소형	1	50,000,000	
	출제정보시스템(NCS기반)	서버	소형	1	43,000,000	
	출제정보시스템(NCS기반)	서버	소형	1	37,000,000	
	출제정보시스템(NCS기반)	저장장치	스토리지	1	59,000,000	
	출제정보시스템(NCS기반)	서버	소형	2	2,000,000	
	출제정보시스템(NCS기반)	정보보안	SSLVPN	1	14,000,000	
	출제정보시스템(NCS기반)	서버	소형	1	42,000,000	
	출제정보시스템(NCS기반)	서버	소형	1	30,000,000	
	출제정보시스템(NCS기반)	서버	소형	1	35,000,000	
	출제정보시스템(NCS기반)	서버	콘솔	1	9,100,000	
	출제정보시스템(일학습병행)	통신장비	SAN	1	14,300,000	
	출제정보시스템(일학습병행)	서버	소형	2	56,000,000	
	출제정보시스템(일학습병행)	서버	소형	2	106,000,000	
	출제정보시스템(일학습병행)	서버	소형	1	9,100,000	
	출제정보시스템(일학습병행)	부대설비	기타	1	8,000,000	
	출제정보시스템(일학습병행)	통신장비	기타	1	40,678,000	
	출제정보시스템(일학습병행)	통신장비	기타	1	40,678,000	
	출제정보시스템(일학습병행)	통신장비	L2	1	1,650,000	
	출제정보시스템(일학습병행)	통신장비	L4	1	17,600,000	
	소 계			**46**	**1,408,546,324**	
총 계 : (추가장비) 9,029,499,799원 - (폐기장비) 1,408,546,324원 = 7,620,953,475원						

사 업 명
(31)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1136-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36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75,778	82,080	82,080	82,087	73,851	△8,229	△10.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7월)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5,778	75,778	75,778	-	-	82,080	82,080	53,577	73,851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3,207	23,207	23,207	-	-	23,527	23,527	15,359	23,923
·직업훈련교원재·향상연수	23,690	23,690	23,690	-	-	27,980	27,980	18,263	26,635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28,881	28,881	28,881	-	-	30,573	30,573	19,955	23,293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7월)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5,778	75,778	75,778	-	-	82,080	82,080	53,577	73,851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3,207	23,207	23,207	-	-	23,527	23,527	15,359	23,923
- 사업출연금(350-02)	23,207	23,207	23,207	-	-	23,527	23,527	15,359	23,923
·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23,690	23,690	23,690	-	-	27,980	27,980	18,263	26,635
- 사업출연금(350-02)	23,690	23,690	23,690	-	-	27,980	27,980	18,263	26,635
·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	28,881	28,881	28,881	-	-	30,573	30,573	19,955	23,293
- 사업출연금(350-02)	28,881	28,881	28,881	-	-	30,573	30,573	19,955	23,29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산업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고급 기술·기능인력의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을 담당할 우수 직업능력개발담당자(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기업현장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등) 양성 및 재·향상훈련과 첨단훈련매체를 활용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1-1)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사업목적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사업내용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기업연계형 현장실습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담당자(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 인력개발담당자) 양성

(1-2)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사업목적	직업훈련교원의 양성 및 재향상 교육
사업내용	직업훈련교사 및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신기술개발 연수, 첨단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등 훈련교원 양성 및 재교육 과정

(1-3)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

사업목적	온라인 훈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내용	근로자, 구직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온라인 훈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52조의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26조
추진경위	○ '92. 3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직업훈련교사 양성 목적 대학교) ○ '95. 7월 고용보험법 제정 동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도 폐지 ○ '98년 직업훈련기본법 폐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훈련 촉진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하고 지원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 '99년 직업훈련촉진기금 폐지로 피보험자 등의 위탁·훈련사업비와 교육지원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기관운영비와 경상

	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등 ○ ’13년 (능개원) 특성화교 교사 대상 현장직무연수 운영 ○ ’14년 (능개원) 직업훈련교사 NCS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활용연수 운영 ○ ’14년 온라인 훈련 기반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대학 부속기관으로 온라인평생교육원(온평원) 설치 ○ ’15년 직업훈련 기관·과정 심사·평가 등 직업훈련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 대학 부속기관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 설치 ○ ’15년 재직자의 일학습병행 지원 등 성인교육을 위한 일학습병행대학 운영 ○ ’19년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한기대) 사업 고용보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 ’19년 (온평원)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 정식 개통(10월) ○ ’20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 ’22년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80,226	75,138	75,778	82,080	73,85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부생(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대학원생(직업능력개발전문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기관, 재직 근로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직업훈련 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출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3,923	100.0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3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26,635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			23,293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2,080	73,851	△8,229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23,527	23,923	+396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27,980	26,635	△1,345
평생능력개발 온라인 훈련사업	30,573	23,293	△7,280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2026년) 23,527 → (2027년 정부안) 23,923백만원, +1.7%**

- (설명)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필수소요 요구, 공무직 및 산학교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감안, '26년 대비 +1.7% 증액

- (산출)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26) 15,969 → ('27) 15,969백만원 (전년 동)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운영(IPP) ('26) 2,021 → ('27) 1,998백만원 (△23)
  AI기반 학부(과) 교육과정개편 ('26) 0 → ('27)680백만원 (+680)
  4년제 대학형 NCS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309 → ('27) 259백만원 (△50)
  글로벌TVET 프로그램 운영 ('26) 203 → ('27) 405백만원 (+202)
  학부과 실험실습장비비 ('26) 4,612 → ('27) 4,612백만원 (전년 동)

○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2026년) 27,980 → (2027년 정부안) 26,635백만원, △4.8%**

- (설명) 정부 국정과제 92-3 및 관계 부처(노동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의 핵심 정책을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AI 훈련교사 신규양성 및 기존 교·강사 AI 역량강화, AI 직종 전환 교육 확대 등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 요구하였으나, '26년 대비 4.8% 감액

- (산출) 직업훈련교원 교직향상교육 ('26) 10,237 → ('27) 7,125백만원 (△3,112)
  직업훈련교원 전공향상교육 ('26) 10,490 → ('27) 13,660백만원 (+3,170)
  교육원 실험실습장비비 ('26) 2,483 → ('27) 1,760백만원 (△723)
  직업훈련 신교수법 개발 ('26) 1,500 → ('27) 1,250백만원 (△250)
  AI 강사 아카데미(AI 특화 인재양성) ('26) 2,770 → ('27) 2,840백만원 (+70)

○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 (2026년) 30,573 → (2027년 정부안) 23,293백만원, △23.8%**

- (설명) 전 국민을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통합 훈련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평생능력개발을 통한 성장 기회 제공 및 직업 훈련방식의 선진화 견인 등을 위해 필수소요 및 인건비 처우개선비 요구하였으나, 26년 대비 +23.8% 감액

- (산출)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 ('26) 2,572 → ('27) 2,441백만원 (△131)
온라인훈련 운영 ('26) 1,500 → ('27) 1,500백만원 (전년 동)
온라인훈련 콘텐츠 개발 ('26) 19,300 → ('27) 12,420백만원 (△6,880)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26) 3,001 → (27) 3,079백만원 (+78)
온라인훈련장비비 ('26) 1600 → ('27) 1,100백만원 (△500)
에듀테크 기반 직업훈련Test-Bed 및 확산 ('26) 1,840 → ('27) 1,233백만원 (△607)
디지털 트윈 훈련과정 개발·운영 ('26) 760 → ('27) 1,520백만원 (+760)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K-Digital Training 수료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달성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측정산식 : 훈련수료인원/훈련참여인원 x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 **성과지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달성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측정산식 :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학습근로자수(누적)**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
- **자료수집방법/출처 : HRD-NET / 한국산업인력공단**

○ **성과지표:** K-Digital Training 취업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57.5	-	-	-	-
달성도	84.3	-	-	-	-

- **측정산식 :** 취업인원/(수료인원-훈련시작 당시 실업 상태가 아닌 자-훈련수료 후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자)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 **성과지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적	78.6	-	-	-	-
달성도	99.7	-	-	-	-

- **측정산식 : 일학습병행에 수료한 학습근로자 수료자/일학습병행에 참여한 학습근로자 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

- **자료수집방법/출처 :** HRD-NET, 한국산업인력공단

○ **성과지표:**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인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786,600	690,258	(삭제)	(삭제)
실적	-	664,681	661,694	-	-
달성도	-	84.5	95.9	-	-

- **측정산식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에 참여한 인원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 **성과지표:** 훈련 양성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9.8	89.8
실적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내일배움카드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인원) x 0.2(가중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3) 89.7, ('24) 89.5, ('25) 90.2

- **자료수집방법/출처 :**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취업률 80.3%(교육부 공시기준, 졸업생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2위) - '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학생교육 우수대학 평가' 1위 -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기재부 주관) '우수 등급(85.6점)' - [정규 양성과정] 4,681명(학부 4,111명+대학원 570명) - [재·향상 연수] 83,010명(교직향상 60,656명, 전공향상 22,231명, KDT 123명) - [온라인훈련] 238,561명, 훈련콘텐츠 421과정 개발(이러닝400+VT15+메타버스6) 등
2024년	- 취업률 80.1%(교육부 공시기준, 졸업생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3위) - 전국 4년제 "지방 소재 대학 중 수시 경쟁률 상위 10위권 이내(8.94:1)" - '24년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평가분류기관 중 최고 등급) - [정규 양성과정] 4,785명(학부 4,215명+대학원 570명) - [재·향상 연수] 80,718명(교직향상 56,092명, 전공향상 24,477명, KDT 149명) - [온라인훈련] 260,336명, 훈련콘텐츠 342과정 개발(이러닝321+VT15+메타버스6) 등
2025년	- 취업률 82.8%(전국평균 62.8%), 취업유지율 89.6%(전국평균 79.6%) '전국 대학 1위' -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대전·세종·충청권 4년제 대학 최고(11.2:1)" - 특허청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통령상(연속 2회) 등 수상 - [정규 양성과정] 4,737명(학부 4,157명+대학원 580명) - [재·향상 연수] 72,403명(교직향상 47,534명, 전공향상 24,763명, KDT 106명) - [온라인훈련] 271,360명, 훈련콘텐츠 338과정 개발(이러닝320+VT15+메타버스3) 등
2026년	- [정규 양성과정] 4,703명(학부 4,013명+대학원 690명) - [재·향상 연수] 43,103명(교직향상 26,562명, 전공향상 16,190명, KDT 65명, AI특화 286명) - [온라인훈련] 190,715명, 훈련콘텐츠 340과정 개발(이러닝320+VT·메타버스20) 등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우수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연간 3,830명(정원)) 양성을 통해 고도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전공, 교직) 추진(연 55,327명) 및 직업훈련교사(연 1,900명), AI 특화 인재(500명)를 양성하여 직업훈련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질 제고에 기여

○ 공공 온라인직업훈련플랫폼 STEP 고도화 및 공공콘텐츠 개발(이러닝 320개, VT 15개, 메타버스 3개)을 통하여 전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연간 320,000명)를 확대 제공하고, 민간 직업훈련기관 등의 新 훈련방식 도입 지원 등 직업훈련 선진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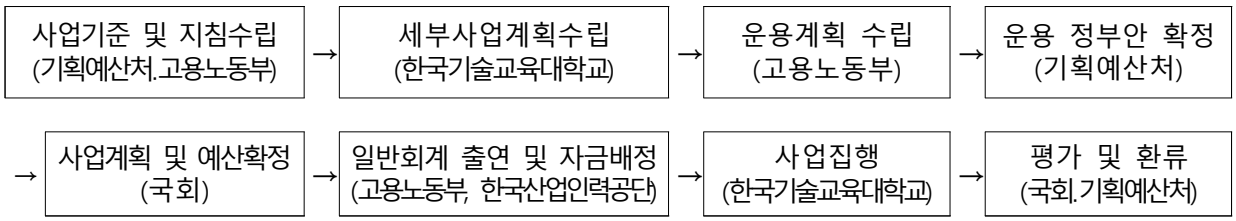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담당자 양성사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실시하고, 재원은 정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 사업기준 및 지침은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가 수립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고용노동부가 운용계획을 수립하면 기획예산처가 운용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
- 확정된 예산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일반회계 출연 및 자금배정이 이루어지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사업 추진
- 국회와 기획예산처가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 결과 : 우수 (취득점수 90.2점)
	2025년	○ 의견 : ○ 결과 : 보통 (취득점수 85.8점)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도전적 목표설정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0,226	80,226	-	-	80,226	80,226	100.0	-	2,566
2024년	75,138	75,138	-	-	75,138	75,138	100.0	-	1,858
2025년	75,778	75,778	-	-	75,778	75,778	100.0	-	634
2026년	82,080	82,080	-	-	82,080	53,577	65.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2,566	- 구매예산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절감운용 등 일부예산 불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수지차 기관으로 불용액은 차차기년도 자체수입으로 계상됨
2024년	불용	1,858	- 구매예산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절감운용 등 일부예산 불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수지차 기관으로 불용액은 차차기년도 자체수입으로 계상됨
2025년	불용	634	- 구매예산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절감운용 등 일부예산 불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수지차 기관으로 불용액은 차차기년도 자체수입으로 계상됨
2026년	-	-	

5. 기타 추가자료

(1)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 예산 내역

(2)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 세부산출내역

(3)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

(4) (신규)AI 기반 학부(과) 교과과정 개편

(5) 4년제 대학형 NCS 교육과정 개발·운영

(6) 글로벌 TVET 프로그램 운영

(7) 직업훈련교원 재·향상 연수 개요

(8) 직업훈련교원 재·향상 연수 예산(안)

(9) 훈련 교·강사 및 직업계고 교원 AI 역량 강화

(10) AI 강사 아카데미(구, AI 특화 인재) 양성 확대

(11) 2027년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예산 요구 내역(안)

(12)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추진 현황

(13)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트윈 심화훈련 개발·운영

(14) 직업계고 대상 STEP LMS 보급 확대 계획

참고 1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HRD전문가 양성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6년	'27년	증감
①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23,527	23,923	+396(1.7%)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15,969	15,969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양성(학부 및 대학원)	15,969 (3,830명×4.091백만원)	15,969 (3,830명×4.091백만원)	
■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 운영	2,021	1,984	△23
- 현장실습 참여학생 실습지원비 및 관리운영비	1,662 (1식×1,662백만원)	1,625 (1식×1,625백만원)	△37
* 공무직(1명) 인건비	55 (1명×55.1백만원)	57 (1명×57.3백만원)	+2
- 산학협력전문요원(7명) 인건비	304 (7명×43.4백만원)	315 (7명×43.4백만원)	+12
■ 학부(과) 교육과정 개편	413	(삭제)	△413
- 과정개발비	234 (19.5백만원×3전공×4교과)	(삭제)	△234
- 융합트랙 교육과정 개발	179 (11개 과목×16백만원)	(삭제)	△179
■ (신규)AI기반 학부(과) 교육과정개편	(신규)	680	+680
- AI 과정개발비	(신규)	400 (20백만원×20개)	+400
- AI 과정개편비	(신규)	130 (5백만원×26개)	+130
- AI+X 과정개발비	(신규)	100 (20백만원×5개)	+100
- AI+X 과정개편비	(신규)	50 (5백만원×10개)	+50
■ 4년제 대학용 NCS 교육과정 운영	309	259	△50
- NCS 교육과정 교재개발	100 (10개교재×10백만원)	100 (10개교재×10백만원)	
- 개발된 NCS 교육자료 개편	20 (4개과제×5백만원)	20 (4개과제×5백만원)	
- NCS 운영위원회 등 운영추진	25.3 (1식×25.3백만원)	23.4 (1식×23.4백만원)	△2
- NCS적용 교과목 튜터장학생	163.6 (51명×8개월×40시간×10,030)	115.6 (35명×8개월×40시간×10,320)	△48
■ 글로벌 TVET 프로그램 운영	203	405	+202
- 국제직업훈련전문가양성&국제컨퍼런스 등	148 (1식×148백만원)	148 (1식×148백만원)	
- 사업운영인력(1명) 인건비	55 (1명×55.1백만원)	57 (1명×57.3백만원)	+2
- (신규)장학금	(신규)	102 (3,000유로×20명×1,700원)	+102
- (신규)대면교육 운영비(실습·강의·시설 등)	(신규)	78 (1식×78백만원)	+78
- (신규)Capstone 운영비	(신규)	20 (1식×20백만원)	+20
■ 학부(과) 실험실습 장비비	4,612	4,612	
- 실험실습장비비	4,612 (1식×4,612백만원)	4,612 (1식×4,612백만)	

참고 2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 세부산출내역

□ 사업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기능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담당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 **(실천공학기술자)**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 및 기술개발 분야에 관하여 직장 내의 현장훈련(OJT)을 수행하는 사람

○ **(인력개발담당자)** 직업훈련시설 및 기업체 등에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운영·평가 또는 인사, 조직관리, HRD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람

□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내역
합계	15,969	
시간강사료 및 법정부담금	2,627	9만원×16주×2학기×40시간×20전공×1.14(법정부담금)
학술자료 및 연구학습 지원	1,100	학술자료지원(도서, 학술DB, e-Book, 전자저널 등) 연구학습지원(연구동향, 연구윤리, 논문 등)
학생지원(모집(전공체험 등) 및 취업지원, 실험실습교육시설 유지관리 등)	3,863	모집(전공체험 등) 및 취업지원 2,863, 교육시설 유지관리 350, 실습시설 유지관리 650
학사운영(실습, 연구, 교과운영 등)	8,079	실험실습 및 연구 4,637, 교과운영관리 2,542, 비교과 운영 등 900
학생 안전·보건 관리	300	3,830명×78.3백만원

○ **(시간강사료 및 법정부담금)**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에 소요되는 강사료 및 4대보험료

○ **(도서 및 학술DB 구입)** 학사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학사 및 연구지원을 위한 학술데이터베이스 구독비

○ **(학생지원비)**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의 양성에 소요되는 모집경비(통학버스 포함), 양성경비, 취업지원비 등

○ **(학사지원비)** 실습 및 행사, 연구, 학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안전·보건 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학생연구자 건강검진비 및 시설안전인증평가 등

참고 3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

□ 추진배경 및 운영내용

○ 대학교육과 기업 인력수요 간 미스매치로 인해 상당수의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 목적의 재교육 필요

- 기업의 현장성 높은 인력 선호로 채용 트렌드의 변화(수시채용 확대 및 직무관련 경험 최우선)에 따라 재학 중 풍부한 일 경험 프로그램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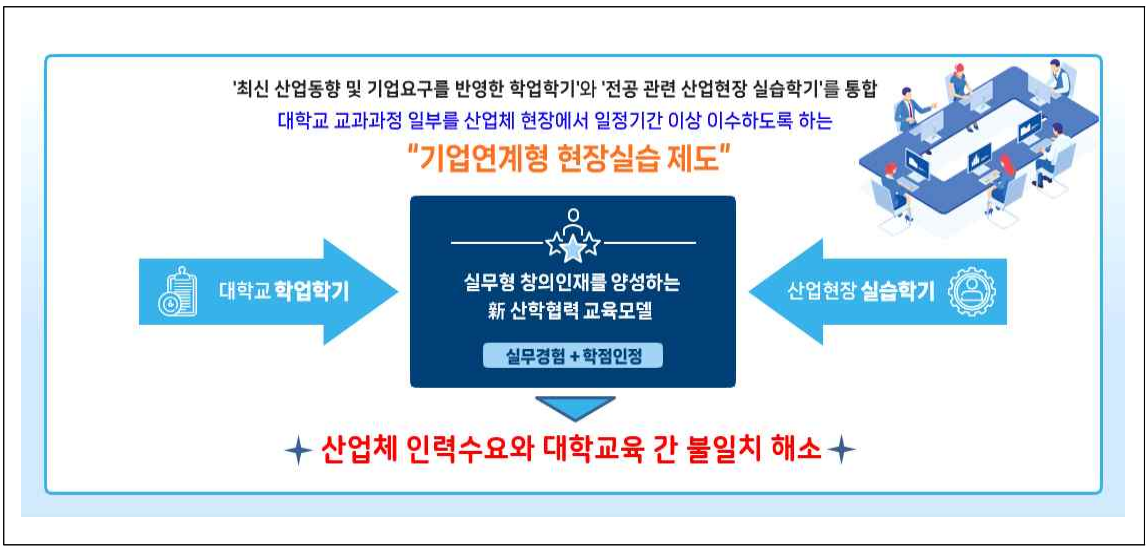
□ 운영내용

○ 2012년부터 단기.단순 체험 업무 중심의 현장실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학생-대학이 상생하는 新 산학협력훈련 모델 “기업연계형 장기 현장실습제도”(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운영

□ 사업 내용

○ **(기본모델)** 대학교육 과정을 학습과 일을 병행(School-to-Work)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

- 대상: 전 학부 3~4학년 학생
- 실습기관: 직업훈련기관, 국내·외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 실습내용: 연구개발, 생산기술, 품질관리, 마케팅, 교육, 인사, 사무 등 전공과 관련된 직무내용 실습



□ IPP 학사운영 모델

○ IPP 기간 중 학점 부여(최대 15학점/4개월 6학점, 6개월 9학점)

○ 3학년: 전공/진로탐색, 전공역량 강화

○ 4학년: 채용연계, 취업역량 강화

○ 지원사항: 실습 학생에게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4개월 또는 6개월)

※ IPP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체험형인 단기현장실습도 병행 운영·지원

(최대 3학점 / 4주 2학점, 추가 4주 1학점)

○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설명회 및 학부과 현장실습 간담회, 동문 현장실습 멘토링, 현장실습기관 간담회, 우수 현장실습기관 및 현장실습이수학생 시상, 선발학생 대상 온·오프라인 사전교육 운영(의사소통 및 직장예절,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 실습기관 맞춤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컨설팅 운영, 현장실습관리 시스템 개선 등

□ 운영성과

○ **(현장실습 운영)** 재학생이 산업체 현장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심화형 장기현장실습(IPP) 교육과정 운영

- 채용연계형 IPP: '22년 105명, '23년 117명, '24년 172명, '25년 144명* 참여

*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24학년도 일시적 상승 및 '25년도 라이즈 사업 확대로 인해 충남외 지역 거점 기업 신규 발굴 및 유지의 어려움으로 소폭 감소

※ 졸업요건 충족목적의 체험형 장단기현장실습(300~500명) 교육과정 수요에 따라 변동 운영

- '24년~'25년 장기현장실습 전면 표준형 100% 운영 유지

○ **(취업률)** 현장실습을 통한 청년 고용률 및 취업률 향상

- IPP 미참여 학생의 취업률(76.7%) 대비 참여학생의 취업률(84.2%) 7.5%p 상회('23년 교육부 공시 취업률 기준)

○ **(대외성과)** ❶중앙일보 교육·혁신대학평가 '현장실습 학생참여비율' 2021년~2024년 4개년도 연속 1위, ❷'25년 KACE* 표준현장실습 우수사례 공모전 '동상' 수상, ❸'25년 충청남도 청년인턴 '충전' 사업 우수 소감문 공모전 '충청남도지사상', '경제진흥원장상' 수상

* 한국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회(KACE) : 전국의 대학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관련 협회

□ 연도별 실적 및 계획

연도별 실적 및 계획	실적					계획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IPP참여학생(명)	300	37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 중장기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연도	예산금액	산 출 근 거
'26	2,021,000	- 현장실습 참여학생 실습지원비 및 관리운영비 = 1,718,052 - 산학협력전문요원(7명) 인건비 : 303,653
'27	1,984,000	- 현장실습 참여학생 실습지원비 및 관리운영비 = 1,680,347 - 산학협력전문요원(7명) 인건비 : 303,653
'28	1,984,000	- 전년수준
'29	1,984,000	- 전년수준
'30	1,984,000	- 전년수준

참고 4 AI 기반 학부(과) 교과과정 개편

□ 필요성

○ **(AI 기술 확산)** ChatGPT, Google Gemini 등 생성형 AI 기술 등장으로 AI가 단순 분석 도구에서 콘텐츠 생성 및 자동화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기업들은 생성형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부족

○ **(교육과정 개편 속도 지연)** 교육 커리큘럼 개편을 3~5년 주기로 개편하여 신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전통적인 이론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AI·SW 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기술과의 차이 발생

□ 추진방향

○ **(AI 융복합(AI+X)) 실천공학 교육모델*을 고도화**하여 현장기반 문제해결 중심의 **AI·디지털·실천공학 융합역량 강화**

* AI+X 융합교육, 실험실습(이론:실습교과=5:5비율) 및 현장중심(全학생 현장실습 필수) 교육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만의 AI 기반 특성화된 교육모델

○ **(AI 기반 교육혁신)** 학부(과) **전체 교육과정 AI 기반 개편**과 AI Human Instructor·튜터 기반 혁신수업으로 **실천공학 중심 AI 교육 내실화**

□ AI 기반 교육과정 개편·운영(안)

1. AI 및 신산업 대비 학부(과)별 교육과정 신설·개편(안)

학부(과)		교과목 개편					
		2027년		2028년		2029년	
		신설	개편	신설	개편	신설	개편
합 계		**20**	**26**	**20**	**20**	**20**	**20**
기계공학부		3	2	3	3	3	3
메카트로닉스공학부		3	-	3	3	3	3
전기·전자·통신공학부	AI정보통신공학전공	3	1	3	3	3	3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2	15	2	2	2	2
	AI·소프트웨어전공	2	6	2	2	2	2
디자인공학과		1	2	1	1	1	1
건축공학과		1	-	1	1	1	1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생명공학전공	3	1	3	3	3	3
경영학부		2	4	2	2	2	2

※ 세부 추진내용 : [별첨]

2. AI+X 트랙 운영계획(안)

○ 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X 트랙을 운영하여, 12학점 단위 과정 인증제(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구분	AI·빅데이터 트랙	메타버스 트랙	스마트팩토리 트랙
A (2개교과)	센서데이터처리와분석 데이터와 패턴분류 데이터시각화 텍스트데이터분석 클라우드와AI서비스	실감콘텐츠구현 메타버스플랫폼활용 디지털트윈과CPS 데이터시각화	스마트팩토리활용 디지털트윈과CPS 협동로봇의활용 센서데이터처리와분석
B (2개교과)	예측모델링과추론 블록체인응용 자연어수집및처리 정형데이터분석	공간컴퓨팅서비스기획 공간컴퓨팅기초프로그래밍 블록체인응용 XR응용서비스	지능형공정데이터관리 스마트팩토리공정과물류 지능형로봇시스템통합 XR응용서비스

○ 학부 간 융합을 통한 AI+X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신설(안)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2026년 신설	2027년 신설	2028년 신설	2029년 신설
AI+X	2과정	5과정	8과정	8과정

※ 예시) 기계공학부 + AI 연계마이크로디그리: 자율주행 모빌리티
메카트로닉스공학부 + AI 연계마이크로디그리: 스마트로봇
전기공학 + AI 연계마이크로디그리: 스마트그리드공학(전력운영)
산업경영 + AI 연계마이크로디그리: AI기업분석

□ 중장기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연도	예산금액	산 출 근 거
'26	-	-
'27	680,000	- AI 과정개발비 20,000천원 × 20개 = 400,000 - AI 과정개편비 5,000천원 × 26개 = 130,000 - AI+X 과정 개발비 20,000천원 × 5개 = 100,000 - AI+X 과정 개편비 5,000천원 × 10개 = 50,000
'28	685,000	- AI 과정개발비 20,000천원 × 20개 = 400,000 - AI 과정개편비 5,000천원 × 20개 = 100,000 - AI+X 과정 개발비 20,000천원 × 8개 = 160,000 - AI+X 과정 개편비 5,000천원 × 5개 = 25,000
'29	700,000	- AI 과정개발비 20,000천원 × 20개 = 400,000 - AI 과정개편비 5,000천원 × 20개 = 100,000 - AI+X 과정 개발비 20,000천원 × 8개 = 160,000 - AI+X 과정 개편비 5,000천원 × 8개 = 40,000
'30	700,000	- AI 과정개발비 20,000천원 × 20개 = 400,000 - AI 과정개편비 5,000천원 × 20개 = 100,000 - AI+X 과정 개발비 20,000천원 × 8개 = 160,000 - AI+X 과정 개편비 5,000천원 × 8개 = 40,000

[별첨] AI 기반 학부(과)별 교육과정 개편 주요 추진내용

학부(과)	주요 추진내용
기계공학부	· AI 기반 제품설계, 공정자동화, 스마트팩토리 등에 중점 · AI-기계 융합전공 트랙 신설 · 기계공학 핵심역량 AI·빅데이터 역량을 융합한 교육과정 확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 스마트로봇, 자율주행, IoT 등 데이터 기반 융합기술에 대응 · 인공지능·빅데이터 융합전공 신설 계획 · 3학년 이후 AI 집중과정 운영으로 심화 역량 강화
전기·전기·통신공학부	· 전공별로 AI·빅데이터 기반 신기술 적용 교육과정 설계 · 반도체 설계, AI 회로설계, 통신 AI 등 세부 트랙 운영 예정 · AI 응용 실무 중심 교과목 신설로 실전형 인재 양성 강화
컴퓨터공학부	·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보안 등 핵심 AI 기술 중심 고도화 · 전공 내 AI·빅데이터 집중 트랙 운영 · 타 전공과 연계 가능한 컴퓨팅 기반 융합교육 강화
디자인·건축공학부	· (디자인공학) UX 기반 데이터 분석, 디자인과 AI 융합교육 운영 · (건축공학) BIM, 스마트건축, 에너지 분석 등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공학과 예술 융합형 데이터 기반 설계 교육 강화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 (에너지신소재공학) 재료설계·공정·분석 교과목 및 재료정보처리, 재료기기분석, 나노기술 등 실험 기반 교과에 AI 기법 교육 확대 · (화학생명공학) 스마트바이오 생산공정, 분자생물학, 단백질 구조분석 등에 AI 기술을 융합하여 실험 설계 및 분석 역량 강화
산업경영학부	· AI금융, AI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등 기술 중심 커리큘럼 강화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산업 특화 AI 활용 사례 중심 실습 교과목 운영 · AI 윤리·지속가능성 교육 병행을 통한 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조
고용서비스정책학과	· 직업상담 교육과정 내 AI연계 교육 도입 추진 · 고용서비스 분야 데이터 기반 분석 및 정책 설계 능력 강화 방향 설정
교양학부	· AI 및 빅데이터 기반 필수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리터러시, 컴퓨팅사고, AI기초 등 공통 교양 확대 · 교과목 중심에서 학생 참여형(PBL, 리빙랩 등) 교양교육 혁신 추진 · 비전공자 대상 AI·코딩 소양 교육 강화 및 선택형 마이크로디그리 확대
HRD학과	· 핵심 인적자원개발 역량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 분석 기반 HR 전략 교육 강화 · 산업 맞춤형 AI 활용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기업 사례 중심의 HR 애널리틱스 과목 확대
미래융합학부(융합학과)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공 내 AI 및 빅데이터 역량을 체계적으로 내재화 ·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코딩·디지털 활용 능력을 단계별로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 실무 기반의 프로젝트형 교육 강화를 위해 캡스톤디자인 및 융합 PBL 교과목을 연계하고, 산업체 연계 실습 확대 추진

참고 5 4년제 대학형 NCS 교육과정 개발·운영

□ 추진경과

○ NCS 확산을 위해 4년제 대학에서 적용하여 운영가능한 모든 NCS 교육유형을 운영하고 노하우를 NCS 교육모델로 구성

○ 직무중심의 NCS 교육을 고도화시켜 학생 현장실무역량 강화 지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NCS 기반 교육운영 모델(트랙)

○ 재학생, 학습근로자 등 교육대상에 맞는 NCS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

○ 연도별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계획

트랙명	운영실적						향후 계획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전공	교과	전공	교과	전공	교과	전공	교과	전공	교과	전공	교과	전공	교과	전공	교과
학부 직무능력중심	14	68	14	75	14	71	14	73	15*	75	15	76	15	76	15	76
학부 직무능력중심 (분반포함)	14	121	14	129	14	121	14	118	15	121	15	123	15	123	15	123
과정평가형 자격	1	22	2	25	2	32	2	29	2	29	2	29	2	29	2	29
일학습병행	6	102	6	91	6	92	6	85	6	92	6	92	6	92	6	92

* 컴퓨터공학부 2개 전공으로 운영(트랙제→2전공 변경)

○ NCS 기반 개발 교과목은 4년 주기로 개편*하여 산업수요 및 산업체 요구 직무 변화에 대처토록 추진

* 자격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편 필요

○ 모델별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 노하우 축적을 통해 4년제 대학에서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NCS 교육모델 제시

○ 실험·실습 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교원의 업무 및 실습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실험·실습수업 운영 도모

* 실험·실습 보조 인력 역할: 실험·실습 준비 및 보조, 직무수행능력평가 보조, 실험·실습 내용과 관련한 학생 질문 해결

□ 중장기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연도	예산금액	산 출 근 거
'26	309,000	- NCS 교육과정 교재개발 : 10개 교재×10,000천원 = 100,000 - 개발된 NCS 교육자료 개편 : 4개 과제×5,000천원 = 20,000 - NCS 운영위원회 등 운영추진 : 25,311천원 = 25,311 - NCS적용 교과목 튜터장학생 : 51명×8개월×40시간×10,030=163,689
'27	259,000	- NCS 교육과정 교재개발 : 10개 교재×10,000천원 = 100,000 - 개발된 NCS 교육자료 개편 : 4개 과제×5,000천원 = 20,000 - NCS 운영위원회 등 운영추진 : 23,416천원 = 23,416 - NCS적용 교과목 튜터장학생 : 35명×8개월×40시간×10,320=115,584
'28	259,000	- NCS 교육과정 교재개발 : 10개 교재×10,000천원 = 100,000 - 개발된 NCS 교육자료 개편 : 4개 과제×5,000천원 = 20,000 - NCS 운영위원회 등 운영추진 : 23,416천원 = 23,416 - NCS적용 교과목 튜터장학생 : 35명×8개월×40시간×10,320=115,584
'29	259,000	- NCS 교육과정 교재개발 : 10개 교재×10,000천원 = 100,000 - 개발된 NCS 교육자료 개편 : 4개 과제×5,000천원 = 20,000 - NCS 운영위원회 등 운영추진 : 23,416천원 = 23,416 - NCS적용 교과목 튜터장학생 : 35명×8개월×40시간×10,320=115,584
'30	259,000	- NCS 교육과정 교재개발 : 10개 교재×10,000천원 = 100,000 - 개발된 NCS 교육자료 개편 : 4개 과제×5,000천원 = 20,000 - NCS 운영위원회 등 운영추진 : 23,416천원 = 23,416 - NCS적용 교과목 튜터장학생 : 35명×8개월×40시간×10,320=115,584

참고 6 글로벌 TVET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취지)** 고용노동분야 관련 국제기구(ILO, ADB, World Bank, SENAI 등) 및 글로벌로 확장한 직업훈련 전문가(고용노동 분야 정책담당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간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

○ **(필요성)** 고용노동 관련 국제기구와 아세안·아프리카 등 주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TVET(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AI 확산 등 글로벌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논의와 국제협력 확대 필요

- **(정책공조 강화)** 글로벌 주요 개도국과의 직업훈련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단기 교류를 넘어 학위 기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협력의 지속성 제고
- **(영향력 확대)** 한국형 직업훈련 모델과 선진 사례를 전수함과 동시에, ITCILO와의 공동학위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하여 국제사회 내 정책 영향력 확대

< 국제기구 협력현황 >

▪ **2024-2026 한-ILO 협력사업**
- 대상국가 : 아세안회원국
- 사업기간 : 2024년~2026년
- 국내 협력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포함 노동부 산하기관
- 현황 : **2025년 하반기 컨퍼런스 개최**, **2026년 공동포럼 개최** 추진
- 추진계획 : 2026년 공동포럼부터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고용노동 분야(직업능력개발) 국제기구 및 전략적 협력이 중요한 국가의 직업훈련교사와 TVE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성과 공유 및 TVET 허브(한국) 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 포럼·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제기구와 연계한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 추진

- 고용노동 분야 정책전문가, 직업훈련교사, 국제기구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성과와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직업훈련 발전 방향 도출 추진
-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ITCILO와 협력하여 학위 기반 글로벌 TVET 전문인력 양성 과정(공동석사과정)을 단계적 운영

○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ILO 본부(스위스 제네바)와의 협업을 통해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확장 및 구축 연계 추진

□ 주요 실적

○ 국제 TVET 컨퍼런스 운영: '25.10.24.

- 참석자: 고용노동부, 국제기구(ILO, ITCILO) 등 국내외 협력기관 담당 50여명
- 주요성과: 한국의 직업훈련 우수사례 및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기구와의 협업 방안을 공유하여 TVET 분야의 국제적 위상 강화

○ ILO 글로벌 TVET 정책 연계 성과 창출

- ILO의 Global Training·TVET 정책 프레임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등 개발협력 대상국을 포함한 국제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장 기반 확보

○ ITCILO 협력 기반 국제 공동석사 운영 구조 마련

- ITCILO와의 MOU 체결 및 협력 논의를 통해 국제 공동석사 및 연수 프로그램을 KOREATECH 공동학위·비학위 과정에 적용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참조: ITCILO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f the ILO)와의 협업 경과]

▪ ITCILO 방문(2025.6), 양 기관 기술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운영 및 협력을 통해 공동석사 · 교육혁신 등 중장기 협력방안 구축(2025. 8월~ 계속)
– 국제 TVET 컨퍼런스에 ITCILO측 참석(2025.10.24.) 및 양 기관 MOU 체결(2025.12.03.)

□ 향후 계획

○ 한 - ILO 신규사업 운영

- '25년 하반기 한-ILO 신규사업* 참여 추진

  * 한-ILO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교육 콘텐츠(건설, 녹화사업 관련) 연수 및 워크숍 개최

- '26년 한-ILO TVET 포럼(방콕) 개최 및 아프리카 개도국 직업훈련 전문가 참여 추진

○ KOREATECH-ITCILO 국제 공동석사과정 운영계획(별첨) 구체화

- ITCILO와의 협력 MOU를 기반으로 공동석사과정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공동학위 과정의 학사운영, 교육과정 구성, 역할 분담 등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 지속 추진

□ 중장기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연도	예산금액	산 출 근 거
'26	203,000	- 국제직업훈련전문가양성&국제컨퍼런스 등 = 147,853 - 사업운영인력(1명) 인건비 = 55,147
'27	403,000	- 국제직업훈련전문가양성&국제컨퍼런스 등 = 147,853 - 사업운영인력(1명) 인건비 = 55,147 - 장학금 지원: 3,000유로 × 20명 × 약 1,700원 = 102,000 - 한국 대면교육 운영비(실습·강의·시설 등) = 78,000 - Capstone 운영비 = 20,000
'28	403,000	- 전년수준
'29	403,000	- 전년수준
'30	403,000	- 전년수준

별첨 ITCILO-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동석사과정 운영계획(안)

▢ **추진 배경**

○ ITCILO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MOU 체결(2025.12.03.)

▢ **사업내용**

○ **대상자(연 30명)**

- TVET 정책담당 공무원, 직업훈련기관 관리자, 교·강사
- 노동시장 분석·HRD 전문가, 국제개발 실무자

○ **운영체계**

- (총괄) 고용노동부 / (수행) ITCILO-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동
- (학사관리) Scientific Committee 구성(양 기관 공동 운영)
- (협력) 협력 3개국 노동부·직업훈련청

○ **교육과정 구성(안): 총 36학점**

- TVET and Digital Transformation
- Labour Market Intelligence & Skills Analytics
- Pedagogy and Digital Learning
- Digital Transformation of TVET Institutions
- EdTech·Simulation 기반 실습
- TVET Governance & Policy
- Capstone Thesis(국가별 정책개선 연구) 등 현재 협의 중

○ **학습방식**

- (Phase 1) 온라인: 비대면·실시간 병행
- (Phase 2) 대면교육: KOREATECH 4주 집중교육
- (Phase 3) Capstone 수행: 국가별 직업훈련정책 개선 보고서 제출

○ **장학금 지원**: 출신국, 경제 여건 등 국제기구 기준에 따라 수업료(1만 유로)의 약 30%를 장학금으로 지원

▢ **추진계획**

○ ('26.1.~6.) 교과 개발, 콘텐츠 개발, 교수진 구성
○ ('26.7.) 선발 공고 및 홍보
○ ('26.12.) 선발 확정
○ ('27.1~6) Phase 1 온라인 교육
○ ('27.7) Phase 2 대면교육 실시(장소: 한국)
○ ('27.8~12) Phase 3 Capstone 수행
○ ('28~'30) 연단위 학위과정 운영 계속

참고 7 직업훈련교원 재·향상 연수 개요

□ 관련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 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 교육과정 체계

구분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인원	비고
자격교육	자격취득 희망자	교직훈련과정	1,200명	훈련교사 3·2급 자격취득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500명	훈련교사 3·2급 자격취득
	직업훈련교사 3급 또는 2급 소지자	향상훈련과정	200명	훈련교사 3급 → 2급, 2급 → 1급 승급
보수교육	직업훈련 교·강사	기초교육	13,327명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관한 기초 이해교육
		기본교육	32,000명	직업훈련 품질 제고를 위한 교직 및 전공 교육
		전문교육	5,000명	강의 외의 전문업무(평가업무 등)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융합교육	5,000명	타직종(신기술분야) 학습을 위한 직종간 연계 훈련 교육
현장직무연수	직업계고 교원	-	750명	산업현장과 연계된 실무과목 기반 현장직무연수 제공으로 현장성 강화
K-DT강사 아카데미	디지털 신기술분야 실무자 및 직업훈련 교·강사	-	50명	디지털 신기술분야 실무자를 직업훈련 교·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특별과정
AI 특화 인재양성	ICT 분야 종사 직업훈련 교·강사	AI 분야	500명	現 ICT 훈련 교·강사를 AI 전문 훈련 교·강사로 전환하는 단기과정

□ 연도별 연수 실적

(단위 : 명)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계		62,650	91,803	62,700	82,981	62,700	80,582	62,700	73,594
직업훈련교원 교직향상교육	교직훈련과정	1,200	1,201	1,200	1,351	1,200	1,290	1,200	1,311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500	560	500	529	500	521	500	555
	향상훈련과정	200	212	200	210	200	208	200	224
	교직역량 보수교육	45,000	68,527	45,000	58,566	45,000	53,964	45,000	45,627
직업훈련교원 전공향상교육	전공역량 보수교육 (NCS기반+첨단신기술)	15,000	20,430	15,000	21,448	15,000	23,382	15,000	24,810
	직업계고교원 현장기술연수	750	873	750	752	750	1,068	750	943
K-DT강사 아카데미('23년부터)		-	-	50	125	50	149	50	124

※ '26년 목표 : 58,527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의무화('20년 3월)

○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7조

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생략>
②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생략>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구분>

구분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
교육 대상	훈련 교·강사	훈련과정 심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훈련 교·강사	강의 외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훈련 교·강사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훈련 교·강사
교육 목표('26)	13,327명	32,000명	5,000명	5,000명
교육 방법	집체, 이러닝, 실시간비대면, 혼합			
교과목 수('26)	10과정	1,053과정 (교직58,전공995)	26과정	260과정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기초적인 교수기법 등	(교직) 훈련과정 개발 및 교수기법 등 (전공) 직종별 전문지식 및 기술(신기술) 트렌드 등	훈련성과 및 훈련생 평가, 훈련생 지도 및 상담 등	AI, 디지털 및 첨단 신기술, 에듀테크 관련 지식 및 기술

참고 8 직업훈련교원 재·향상 연수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6년(A)	'27년(B)	증감(B-A)
②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27,980**	**26,635**	△1,345
■ 직업훈련교원 교직향상교육	10,237	7,125	
- 교직훈련 과정	676 (1,200명×0.564백만원) (24분반×28.17백만원)	676 (1,200명×0.564백만원) (24분반×28.17백만원)	
- 신중년 과정	491 (500명×0.982백만원)	(삭제)	△491 (△500명)
- 향상훈련 과정	158 (200명×0.79백만원)	158 (200명×0.79백만원)	
- 교직분야 보수교육	8,630 (40,327명×0.214백만원)	(삭제)	△8,630 (△40,327명)
- 교직 AI 역량 향상연수	(신규)	6,000 (20,000명×0.30백만원)	+6,000 (+20,000명)
- 연수사업운영비	257 (12월×21.4백만원)	266 (12월×22.2백만원)	+9 (4명 3.9%)
- 스타훈련교사 선발	25 (10명×2.5백만원)	25 (10명×2.5백만원)	
- 훈련기관장 역량강화 워크숍	(신규)	-	
■ 직업훈련교원 전공향상교육	10,490	13,660	+3,170
- 전공분야 보수교육	3,000 (10,000명×0.3백만원)	(삭제)	△3,000 (△10,000명)
- 전공 AI 역량 향상연수 (구, 전공분야 AI보수교육)	3,850 (5,000명×0.77백만원)	10,000 (20,000명×0.50백만원)	+6,150 (+15,000명)
- 연수사업운영비(신기술)	435 (12월×36.25백만원)	435 (12월×36.25백만원)	
- 연수사업운영비(첨단신산업)	1,618 (12월×134.8백만원)	1,638 (12월×135.9백만원)	+20
- 직업계고교원현장기술연수	1,163 (750명×1.55백만원)	1,163 (750명×1.55백만원)	
- 과정평가형 자격운영 컨설팅	295 (5개교×59백만원)	295 (5개교×59백만원)	
- 해외 전문가 초빙	111 (8명×13.88백만원)	111 (8명×13.88백만원)	
- 교원 신기술향상 훈련	18 (3명×6백만원)	18 (3명×6백만원)	
■ 교육원 실험실습 장비비	2,483	1,760	△723
- 노후교체 장비	1,000 (148점×6.76백만원)	1,000 (148점×6.76백만원)	
- 신기술 장비	1,483 (447점×3.32백만원)	760 (229점×3.32백만원)	△723 (△220점)
■ 직업훈련신교수법 개발	1,500	1,250	△250
- 직업훈련신교수법 개발	1,500 (14분야×107.14백만원)	1,250 (12분야×104.17백만원)	△250 (△2분야)
■ K-DT 강사 아카데미 운영	500	(삭제)	△500
- 연수운영	450 (50명×9백만원)	(삭제)	△450 (△50명)
- 교육장비	50 (1식×50백만원)	(삭제)	△50 (△1식)
■ AI 강사 아카데미 (구, AI 특화 인재양성)	2,770	2,840	+70
- 교육과정운영비	1,500 (500명×3백만원)	1,500 (500명×3백만원)	
- AI 학습분석실 구축 및 활용·운영	1,270 (7실×181.4백만원)	790 (5실×150백만원)	△480 (△2실)
- 피지컬 AI 기반 구축·운영	(신규)	550 (AI 스마트 머신비전 인프라 등)	+550 (1식)

참고 9 훈련 교·강사 및 직업계고 교원 AI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국정과제)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전략으로 선포하는 등 AI 기술혁신을 이끌 최고급 인재 양성 강조

* (국정21)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국정22)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국정92)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국정99)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과학기술관계장회의, 2025.12.18.)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안) 의결

- 「가칭AI 교·강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AI를 가르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26년, 12,650명+*a*)

* AI 훈련교사 신규양성 및 교·강사(+직업계고 교사) AI 역량 제고 목표

대상	주요내용		'26년 목표
신규 양성	AI 전문	• AI, ICT 분야 전문가, 퇴직자 등을 AI 전문교사로 양성	100명
	기초 AI	• 분야별 신규 교사 양성 과정에 AI 리터러시 과목 편성	1,900명
기존 교원 역량 제고	AI 전문	• 現 ICT 교사를 AI 전문 훈련 교사로 전환	500명
	AI 활용	• 직업계고 교사 대상 기술 트렌드, AI 활용법 등 교육	150명
		• 훈련 도메인에 AI를 결합·활용 역량 제고	5,000명
		• AI를 활용해 훈련 교·강사 공통 직무 수행 역량 강화	5,000명

□ 현황 및 문제점

○ **(보수교육 대상 교·강사 감소)** 보수교육 의무 도입 시 활동하는 훈련 교·강사 규모를 3만명 수준으로 산정하였으나,

- '26년 정부지원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강의하기 위해 심사평가 등록 및 승인 훈련 교·강사 2만명 미만으로 감소

(단위: 명, %)

구분	정부지원 훈련과정 참여 훈련 교·강사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추정)
인 원	21,578	20,435	20,934	21,154	20,423	18,411
증감율	-	-5.30	+2.44	+1.0	-3.46	-9.85

○ **(관련 규정 개정으로 보수교육 완화)**「보수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일부 개정으로 보수교육 참여 의무 50% 감소

- 보수교육 의무 도입 시 1인당 보수교육 2회(기초교육(교직) 1회, 기본교육(전공) 1회) 이수 해야 하나 현재 1회 이수만으로 충족
- 보수교육 운영실적 '21년87,424명에서 '26년70,437명으로 감소 중

* 보수교육 연간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감률(%)
계	87,424	88,957	80,014	77,346	70,437	-4.85

○ **(훈련수요 이동)** 교직분야 보수교육 실적 감소*와 반대로 전공분야 보수교육 실적 지속 증가

- 직능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기초적인 교수 기법 및 NCS 훈련과정 편성 등 내용 변화가 적은 교직보수 수요 제한적인 반면,
- 빠르게 변화하는 전공(도메인)과 신기술(AI) 수요는 증가

* 보수교육 연간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감률(%)
교직보수	70,588	68,527	58,566	53,964	43,282	-9.67
전공보수	16,836	20,430	21,448	23,382	24,348	+11.15

○ **(AI 교육수요 급증)** AI 기술의 등장으로 산업 전반 노동자의 AI 활용 훈련을 위한 AI 교과목 수요 712.3% 급증*

* AI 교과목 운영실적: ('24년) 64과목, 1,280명 → ('25년) 139과목, 10,397명

□ 주요 내용(대안) : 교직보수 축소(2.5만명) 후 AI보수교육 확대(2만명)

○ **(일반 보수교육 축소)** 직업능력개발 이해, 교수학습법 등 교직보수 및 전공 보수 물량 축소하여 AI 역량 향상연수 재투자

- 교직보수 축소(40,327→0명, △40,327명, △8,630백만원)
- 전공보수 축소(10,000→0명, △10,000명, △3,000백만원)

○ **(AI역량 향상연수 신설)** 기존 교·강사의 AI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 AI역량 향상연수 신설 및 전공 AI역량 향상연수 확대

- 교직 AI역량 향상연수 신설(20,000명, 6,000백만원)
  ↳ 20,000명×0.30백만원
  전공 AI역량 향상연수 확대(5,000→20,000명, 10,000백만원)
  ↳ 20,000명×0.50백만원
- 우수 강사진 확보, 실습·교재·콘텐츠 질 개선 등 교육 인프라 강화로 AI 훈련 품질 제고를 위한 단가 인상 필요

※ 국내 민간(생산성본부, 멀티캠퍼스 등) AI 교육 단가 1인당 150만원(20시간) 기준 교직분야 65.6%(59만원), 전공분야 85.6%(77만원) 책정

□ 추가 소요예산 : +520백만원

구 분	'26년(A)	'27년(B)	증감(B-A)
계	**15,480**	**16,000**	**+520**
▪ 직업훈련교원 교직향상교육	**8,630**	**6,000**	**△2,630**
- 교직분야 보수교육	8,630 (40,327명×0.214백만원)	(삭제)	△5,420 (△40,327명)
- 교직 AI역량 향상연수	(신규)	6,000 (20,000명×0.30백만원)	+6,000 (+20,000명)
▪ 직업훈련교원 전공향상교육	**6,850**	**10,000**	**+3,150**
- 전공분야 보수교육	3,000 (15,000명×0.3백만원)	(삭제)	△1,500 (△5,000명)
- 전공 AI역량 향상연수	3,850 (5,000명×0.77백만원)	10,000 (20,000명×0.50백만원)	+6,150 (+15,000명)

□ 기대효과

○ **훈련 교·강사** 및 **직업계고 교원**의 **AI 역량 강화**를 통해 **직업교육** 및 **노동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DX) 가속**화 기여

○ **직업계고→ 직업훈련→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는 **AI 교육체계** 및 **AI 인재 공급 선순환 구조 형성**

별첨1 교직 · 전공 AI 향상연수 교육비 단가표

□ 교직분야 보수교육 단가표(12시간, 20명 기준) : 1인 21.8만원

항목	세부 산출내역	금액
강사료	100,000원/시간 × 12시간 =	1,200,000원
보조강사료	30,000원/시간 × 12시간 =	360,000원
시설(실습실)사용료	500,000원/일 × 2일 =	1,000,000원
교재(인쇄)비	30,000원 × 20부 =	600,000원
소모품비	10,000원 × 20명 =	200,000원
식비	10,000원/식 × 4식 × 20명 =	800,000원
다과비	5,000원/식 × 2회 × 20명 =	200,000원
합계		4,360,000원

□ 교직 AI역량 향상연수 단가(12시간, 20명 기준) : 1인 42만원

항목	세부 산출내역	금액
강사료	300,000원/시간 × 12시간 =	3,600,000원
보조강사료	50,000원/시간 × 12시간 =	600,000원
시설(실습실)사용료	500,000원/일 × 2일 =	1,000,000원
교재(인쇄)비	30,000원 × 20부 =	600,000원
소모품비	10,000원 × 20명 =	200,000원
식비	10,000원/식 × 4식 × 20명 =	800,000원
다과비	5,000원/식 × 2회 × 20명 =	200,000원
AI 툴 사용료	70,000원 × 20명 =	1,400,000원
합계		**8,400,000원**

□ 전공보수 보수교육 단가표(12시간, 20명 기준) : 1인 31.2만원

항목	세부 산출내역	금액
강사료	90,000원/시간 × 12시간 =	1,080,000원
보조강사료	30,000원/시간 × 12시간 =	360,000원
시설(실습실)사용료	300,000원/일 × 2일 =	600,000원
교재(인쇄)비	20,000원/일 × 20권 =	400,000원
실습재료비	100,000원 × 20명 =	2,000,000원
숙박비	50,000원/박 × 1박 × 20명 =	1,000,000원
식비	10,000원/식 × 4식 × 20명 =	800,000원
합계		6,240,000원

□ 전공 AI역량 향상연수 단가(12시간, 20명 기준) : 1인 60만원

항목	세부 산출내역	금액
강사료	300,000원/시간 × 12시간 =	3,600,000원
보조강사료	50,000원/시간 × 12시간 =	600,000원
시설(실습실)사용료	500,000원/일 × 2일 =	1,000,000원
교재(인쇄)비	30,000원/일 × 20권 =	600,000원
실습재료비	150,000원 × 20명 =	3,000,000원
숙박비	50,000원/박 × 1박 × 20명 =	1,000,000원
식비	10,000원/식 × 4식 × 20명 =	800,000원
AI 툴 사용료	70,000원 × 20명 =	1,400,000원
합계		**12,000,000원**

참고 10 AI 강사아카데미 (구 AI 특화 인재) 양성 사업 개요

□ 필요성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국내에서 **AI 엔지니어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 AI 분야에서 1만2천명 이상의 인력 부족 예상

*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발표「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2023~2027)」)

○ AI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교·강사 부족

- ICT 분야 교·강사를 AI 엔지니어 교육 전문 강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직업훈련 과정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훈련 수요 증가에 대응한 지속적 확장 가능한 인력 공급 체계 구축 필요**

□ 사업내용

○ **(목표)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훈련 현장에 AI 활용 역량을 갖춘 훈련교·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 표준화된 교육모델을 기반으로 AI 기반 직업훈련 체계의 전국 확산 기반을 구축

□ 연차별 추진 전략

○ **('26년-검증단계)** 본격 확산 이전 검증단계로 확산을 위한 표준 모델 구축

○ **('27년-확대단계)** 검증된 표준 교육모델을 기반으로

- 교육과정 수·운영 횟수·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직업훈련 현장 전반으로 AI 활용 역량 확산**

- **반복·확대 운영 가능한 안정적** 사업 구조 정착

- AI 학습분석 데이터를 통해 훈련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과 중심 직업훈련 정책 전환에 부합하는 실증 근거 제공**

구분	2026년(검증단계)	2027년(확대단계)	확대 운영
운영 목적	본격 확산 전 표준모델 검증	직업훈련 현장 전반 확산	단계적 확산 구조 타당성 확보
교육과정(모듈) 수	20개 과정	50개 과정	과정 수 2배 이상 확대 가능성 검증
운영 횟수	30회	60회	동일 과정 반복 운영 모델 안정성
교육 인원 (예산)	500명 (x3백만원=1,500백만원)	1,150명 (x3백만원=3,450백만원)	대규모 참여 시 운영 효율 검증
운영 방식	시범·혼합 운영	표준화·확산 운영	표준 커리큘럼 적용

□ 교육내용

○ **(TTR 기반 단계적 역량 개발 구조)** 데이터 분석부터 AI 모델·서비스 개발, Physical AI까지 단계적 역량 확장

- 훈련교·강사가 AI 전문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경로 제공**
- **AI 산업 변화와 직업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10개 내외의 교육과정을 추가·개편

[표 1] AI 교·강사 아카데미 TTR

<table>
<tr><td rowspan="2">[공통 핵심]
AI Specialist Core
: AI 엔지니어링을 위한 필수 핵심</td><td>[트랙 A]
LLM & AI SW엔지니어링
: 언어 모델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응용서비스 구현</td><td>[트랙 C]
로봇 & 지능형제어
: 물리적 환경에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 시스템 제어”</td></tr>
<tr><td>[트랙 B]
제조 & PhysicalAI (AX 특화)
: 제조 산업 현장의 실물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AI 전환(AX)</td><td>[트랙 D]
MLOps & AI인프라 보안
: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 환경 구축</td></tr>
<tr><td colspan="3">[트랙 E]
AI 교수법 &학습 분석
: AI 학습분석실 데이터 활용 교수법</td></tr>
</table>

[표 2] AI 교·강사 아카데미 세부 내용

구분	연번	교육과정명(40H)	주요내용
[공통 핵심] AI Specialist 코어(10과정)	1	★ 실무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Python/SQL 기반 엔지니어링 데이터셋 구축
	2	★ 데이터 분석 및 대용량 처리	대규모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처리 성능 검토
	3	★ 머신러닝 모델 설계	산업 문제별 알고리즘 선택 및 성능 해석
	4	★ 딥러닝 모델 응용 및 전이학습	CNN, Transformer 아키텍처 구현 및 학습
	5	AI를 위한 수학 및 통계학 실무	알고리즘 원리 분석을 위한 선형대수 및 미적분
	6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핵심 역량	가설 검정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 실전

	7	PyTorch/TensorFlow 엔진 마스터	프레임워크 기반 딥러닝 모델 커스텀 설계
	8	비전 데이터 전처리 및 OpenCV 실무	영상 처리 알고리즘 및 시각화 파이프라인 실습
	9	자연어 처리(NLP) 아키텍처 이해	RNN/Transformer 기반 텍스트 처리 원리 습득
	10	AI 모델 최적화 및 평가 전략	학습 안정성 확보 및 모델 성능 평가 자동화
[트랙 A] LLM & AI SW엔지니어링 (11과정)	11	★ 생성형 AI 모델 및 파인튜닝	LLM 구조 이해 및 산업별 맞춤형 튜닝
	12	★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LangChain/LlamaIndex 기반 서비스 구축
	13	LangGraph 기반 Modular RAG 설계	복잡한 추론 과정을 포함한 고도화된 RAG 시스템
	14	Agentic AI: 자율 에이전트 개발	LLM 기반 자율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자동화
	15	OpenAI/Azure API 고도화 설계	클라우드 API 기반 상용 수준 AI 앱 구현
	16	로컬 LLM 기반 앱 개발 실무	오픈소스 LLM 최적화 및 로컬 서버 배포
	17	하이브리드 LLM 아키텍처 구현	온프레미스-클라우드 연계 서비스 최적화
	18	멀티모달 RAG 및 지능형 QA	이미지-텍스트 교차 검색 기반 QA 시스템 실습
	19	바이브 코딩(Vibe Coding) 기술	AI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한 SW 생산성 혁신
	20	자바 스프링 부트-AI 연동 실무	백엔드 시스템과 AI 모델 간의 효율적 통신
	21	LLM IT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기술 타당성 분석 및 IT 프로젝트 관리 전략
[트랙 B] 제조 & PhysicalAI (AX 특화) (11과정)	22	★ Edge AI 기반 인식 시스템	실시간 객체 탐지 및 추론 최적화 실습
	23	제조 도메인 기반 AI 데이터 모델링	산업 현장 시나리오 기반 맞춤형 AI 설계
	24	AIoT 지능형 사물인터넷 구축	센서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 개발
	25	제조 데이터 센싱 및 AX 전처리	도메인 전문가를 위한 전처리 파이프라인 실습
	26	스마트 팩토리 AI 모델 연동	레거시 시스템(MES/PLC)과 AI 모델 결합 실무
	27	하드웨어 기반 AI 제어 고도화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하드웨어 실시간 제어
	28	실시간 비전 객체 탐지 서비스	제조 공정 내 불량 검출 및 안전 관제 시스템
	29	온디바이스 AI 경량화 기술	모델 최적화(Pruning, Quantization) 실습
	30	시계열 데이터 설비 이상 탐지	설비 고장 예측 및 시계열 분석 모델 실습
	31	제조 AI 융합 캡스톤 프로젝트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제조 혁신 통합 PBL
	32	제어 공정 최적화 및 강화학습	공정 효율 극대화를 위한 AI 분석 및 적용
[트랙 C] 로봇 & 지능형제어 (7과정)	33	★ 로봇·강화학습 기반 지능형 제어	정책 기반 강화학습 및 로봇 제어 실습
	34	자율주행 로봇 제어 알고리즘	강화학습 기반 경로 계획 및 장애물 회피 기술
	35	디지털 트윈 및 가상 시뮬레이션	가상 환경에서의 로봇 학습 및 검증 시스템 구축
	36	로봇 비전 인식 시스템 고도화	동적 객체 추적 및 공간 인지 기술 통합 실습
	37	지능형 로봇 시스템 통합 PBL	하드웨어 기반 로봇 제어 및 AI 융합 프로젝트
	38	멀티 에이전트 협업 제어	다수 로봇 간 상호작용 및 군집 제어 알고리즘
	39	드론 지능형 비행 제어	비전 기반 자율 비행 및 객체 추적 시스템 실습
[트랙 D] MLOps & AI인프라 보안 (11과정)	40	★ AI 모델 서빙 및 API 설계	배포 아키텍처 및 트래픽 제어 실무
	41	★ MLOps 기반 운영 자동화	CI/CD 파이프라인 및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42	컨테이너 기반 CI/CD 고도화	젠킨스 및 도커 활용 AI 모델 배포 자동화
	43	K8s 네이티브 Agentic AI 시스템	쿠버네티스 기반 스트리밍 및 에이전트 구축
	44	MLSecOps: AI 모델 보안 위협 대응	LLM 및 ML 모델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방어
	45	생성형 AI 활용 정보보안 실무	AI 기반 보안 리스크 관리 및 방어 전문가 과정
	46	AI Observability & 품질 관리	AI 서비스 모니터링 및 성능 드리프트 탐지
	47	클라우드 기반 AI 통합 플랫폼	AWS Bedrock 등 기반 클라우드 AI 서비스 구축
	48	클라우드 보안 및 AI 인프라 최적화	AI 인프라 비용 관리 및 보안 거버넌스 수립
	49	대규모 분산 학습 시스템 설계	멀티 GPU 및 분산 환경 학습 전략
	50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AI	Kafka 활용 실시간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
[트랙 E] AI 교수법 &학습 분석 (4과정)	51	AI 학습분석실 기반 교수설계	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업 품질 개선
	52	ICT 수업 지원용 AI 조교 구축	전공별 RAG 기반 학습 지원 도구 연동
	53	데이터 기반 ICT 교수 행동 성찰	STT 분석 보고서를 활용한 강의 스타일 개선
	54	실무 중심 AI PBL 교안 개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고품질 ICT 교안 제작

★ 2025 교육과정 개발 및 26년 상반기 운영 과정

□ AI 학습분석실 구축

○ **(구축개요)** AI 직업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수·학습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환류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및 성과분석 인프라로,

- 직업훈련 및 전공별 AI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교육 품질 개선과 확산에 활용

○ 구축계획

- **(데이터 표준화)** '26년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공별(IT, 기계, 전기 등) 최적화된 학습 분석 대시보드 구축

※ 능력개발교육원 3개: 직업훈련 중심 과정 적용, 미래학습관 1개, 담헌실학관 1개: 실습 중심 강의실 적용, 인문경영관 1개: 비대면·온라인 과정 중심 적용

- **(인프라 확충)** '27년 훈련 인원 급증(1,150명)에 따라, 전 교육생의 학습 로그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석 서버 및 클라우드 환경 고도화(6개소 추가)

○ 주요기능

- 교수자 발화, 수업 흐름, 학습자 참여도·행동 패턴 등 교수·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업 운영 개선 지원
- 즉석 퀴즈, 수업 요약, AI 조교 등 생성형 AI 기반 학습 지원 기능
- 학습 데이터의 누적·비교 분석을 통한 교육 성과 관리 및 AI 교육 확산을 위한 실증 근거 확보

□ (신규)Physical AI 실습실 구축

○ **(구축개요)** AI 알고리즘을 로봇, 자율주행차, 엣지 디바이스 등 실제 물리적 하드웨어에 이식하고 구동하는 '실행 중심의 AI 실무 구현'을 위한 하이엔드 테스트베드 1개소 구축

○ 구축계획

- **집중 인프라 조성**: AI 모델의 연산과 물리적 제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 서버와 피지컬 장비가 결합된 통합 실습 환경 구축

- **특화 실습 공간**: 일반 강의실과 차별화하여 로봇 기동, 센서 네트워크 구성 및 제작이 가능한 전용 워크숍 공간 확보

○ 주요기능

- **Physical-AI 통합 제어**: 협동 로봇 팔,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을 AI로 직접 제어하는 '인지-판단-제어' 전 과정의 하이엔드 실습 지원

-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가상 환경(Isaac Sim 등)에서 학습된 모델을 실제 로봇에 즉시 투영(Sim-to-Real)하는 고난도 최적화 훈련

- **산업 현장 미러링**: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수요가 높은 실무 프로젝트(로봇 비전, 센서 퓨전 등) 수행

[표 3] AI학습분석실 및 Physical AI 실습실 역할 구분

구분	AI 학습분석실	Physical AI 실습실
핵심 키워드	데이터, 소프트웨어, 맞춤형 교육	하드웨어, 제어, 실무 구현
주요 인프라	학습 분석 서버, 태블릿, 대시보드 SW	GPU 서버, 로봇, 엣지 디바이스, 센서
예산 투입	분석 모델 고도화 및 운영 (1.5억/개소)	고가 장비 도입 및 실증 공간 (5.5억/1개소)
기대 효과	교육 효과성 입증 및 학습자 관리	산업체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 양성

참고 11 2027년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6년	'27년	증감(비고)
③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30,573**	**23,293**	**△7,280**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	**2,572**	**2,441**	△131
(플랫폼 구축)	2,142 (유지보수 1,910) (CDN 사용료 101) (AI튜터 시스템 ISP 131)	2,011 (유지보수 1,910) (CDN 사용료 101)	△131 (AI튜터 시스템 ISP '26 종료 131)
(플랫폼 운영 및 확산)	430 (온·오프라인 연계 훈련 운영 430(510개소))	430 (온·오프라인 연계 훈련 운영 550(570개소))	
▪온라인훈련 운영	**1,500** (13.4만명×11,200원)	**1,500** (13.4만명×11,200원)	-
▪온라인훈련 콘텐츠 개발	**19,300**	**12,420**	△6,880
(이러닝 콘텐츠 개발)	16,000 (320개×50백만)	10,000 (200개×50백만)	△6,000 개발물량 조정: 320개→200개
(VT 콘텐츠 개발)	3,300 (15개×220백만)	2,420 (11개×220백만)	△880 (개발물량 조정: 15개→11개)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3,001** (54명×55.57백만)	**3,079** (54명×57.30백만)	+78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 장비비	**1,600**	**1,100**	△500
(서버 장비) (STEP LMS 신규 분양)	1,600 (250백만x4ea) (60개소×10백만)	1,100 (250백만x2ea) (60개소×10백만)	△500 (서버장비비 조정 4ea→2ea)
▪에듀테크 기반 직업훈련 Test-Bed 및 확산	**1,840**	**1,233**	△607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600 (3종×200백만)	400 (2종×200백만)	△200 (개발물량 조정: 3종→2종)
(STEP 연동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	480 (1식×480백만)	180 (1식×180백만)	△300 (운영비 조정 480→180백만원)
(3D 스캔·볼류 스튜디오 구축·운영)	300 (시설·장비 유지보수 1식)	193 (시설·장비 유지보수 1식)	△107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조정)
(메타버스 기반 훈련 운영)	360 (18회×20백만)	360 (18회×20백만)	-
(교수·학습 모델 고도화 연구)	100 (1과제×100백만)	100 (1과제×100백만)	-
▪디지털트윈 훈련과정 개발·운영	**760** (2종×380백만)	**1,520** (4종×380백만)	**760** (개발 확대 2종→4종)
▪(신규)디지털 현장훈련센터 구축	-		
(AI+X기반 시스템 구축)	-		-
(통합전문가관리 시스템)	-		-
(GPU 인프라 증설)	-		-
(전문가 운영)	-		-

참고 12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운영 및 개인·기관 맞춤 온라인 직업훈련 운영

-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여 ①수요자의 훈련 접근성을 개선하고, ②다양한 지식 콘텐츠 보급, ③플립러닝 등 새로운 훈련방식 확산에 용이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구축·운영('19. 10월~)

- 국정과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 (과제 주요 내용) 구직자 및 재직자 AI 교육 지원

□ 주요 추진 현황

<1>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및 활용 확산

◆ 온라인 직업훈련의 품질향상을 위한 **STEP UI·UX 개편 완료**
◆ STEP 인프라(LMS, 콘텐츠 등) 활용 **원격·혼합훈련 활성화 및 내실화**

○ STEP 포털 사용자 경험 중심 설계, 디자인 트렌드 반영, 웹 접근성 강화 등 UI·UX 개편 완료

○ 비대면 훈련 인프라가 열악한 훈련기관 및 기업 대상 STEP 학습관리시스템 활용지원 확대 → 민간의 디지털 기반 훈련 확산

* 기관: ('20) 66개→('25) 703개(965%↑) / 인원: ('20) 5만명 → ('25) 26.2만명(424%↑)

○ STEP 기반 원격·혼합훈련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 제고를 위해 'STEP 학습관리시스템 사용 연장 평가제도' 도입·운영('23년~)

* 기관 역량 및 활용 의지(정성), STEP 활용 원격·혼합훈련 운영실적(정량)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부적합" 판정 기관의 경우 학습관리시스템 회수 조치 등

○ STEP 활용 원격·혼합훈련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기관 선정 공모전' 신규 운영('23년~)

○ 공공, 민간, 개인 등이 보유·개발한 콘텐츠를 유·무료로 판매·구입할 수 있는 「STEP 콘텐츠 오픈마켓」 운영

* 그간 총(누적) 5,310(공공 3,939/민간 1,348/개인 23)를 탑재·개방하여 훈련기관 및 개인 등이 원격·혼합훈련 설계·운영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공공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 · 보급

◆ **기술·공학(신기술 포함)** 중심 공공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기능·기술 인력양성 중심 **직업훈련**의 **양적·질적 성장** 지원('26년 목표 340개 신규 개발)

○ 훈련 수요 및 기술교육로드맵 기반 STEP 공공 온라인 훈련 콘텐츠 339개 신규 개발('25.3월~'26.2월/이러닝 321개, 가상훈련 18개)

○ 총 2,586개(이러닝 2,397, 가상훈련 174) 훈련 콘텐츠를 STEP에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필요 역량을 손쉽게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25년 STEP 온라인 훈련 콘텐츠 개발 분야】

■ **(이러닝) 321개**(자체 **로드맵·수요조사 기반 기술공학, 폴리텍 및 협약기업 맞춤 콘텐츠 등)**

■ **(가상훈련) 18개**(항공드론, 반도체 등 **기술·공학(신기술 포함) 분야 3D 실감형 콘텐츠)**

〈 이러닝 콘텐츠 개발 현황 〉

개발 분야		연도별 개발 과정 수(단위: 개)												
NCS 번호	NCS 분야	총 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총 계	2,397	120	90	80	68	65	110	101	308	403	410	321	321
01	사업관리	12	-	-	-	-	-	-	-	3	3	4	1	1
02	경영·회계·사무	114	-	-	2	2	-	1	1	39	37	22	3	7
03	금융·보험	9	-	-	-	-	-	-	-	6	1	2	-	-
04	교육·자연·사회과학	24	-	-	-	-	-	1	5	17	-	1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3	-	-	-	-	-	-	-	1	1	1	-	-
06	보건·의료	16	-	-	-	-	-	-	-	5	7	4	-	-
07	사회복지·종교	42	-	-	-	-	-	-	1	14	19	7	-	1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73	3	3	-	4	4	6	12	27	21	41	19	33
09	운전·운송	18	-	-	-	-	-	-	-	1	5	4	3	5
10	영업판매	11	-	-	-	-	-	-	-	4	1	6	-	-
11	경비·청소	7	-	-	-	-	-	-	-	-	5	2	-	-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4	-	-	-	-	-	-	-	1	3	-	-	-
13	음식서비스	4	-	-	-	-	-	-	-	1	3	-	-	-
14	건설	51	-	-	6	-	-	1	2	4	11	11	3	13
15	기계	360	47	39	13	12	7	31	14	34	19	57	41	46
16	재료	56	2	1	6	-	-	2	-	3	11	-	11	20
17	화학·바이오	90	-	1	2	4	4	5	-	4	13	7	17	33
18	섬유·의복	3	-	-	-	-	-	-	-	1	1	-	1	-
19	전기·전자	441	26	16	15	12	16	10	14	30	97	63	85	57
20	정보통신	762	32	30	30	31	30	38	42	98	108	152	88	83
21	식품가공	2	-	-	-	-	-	-	-	-	2	-	-	-
22	인쇄·목재·가구·공예	35	-	-	4	2	1	3	-	4	5	1	14	1
23	환경·에너지·안전	126	4	-	2	1	-	6	3	10	29	15	35	21
24	농림어업	1	-	-	-	-	-	-	-	-	1	-	-	-
공통	직업기초능력	29	6	-	-	-	2	5	5	1	-	10	-	-
	법정의무교육	4	-	-	-	-	1	1	2	-	-	-	-	-

* SW, 미래자동차, 바이오,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시스템반도체, 실감형콘텐츠, 그린에너지,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총 543개 콘텐츠는 관련 NCS 분야에 포함

〈 가상훈련·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현황 〉

개발 분야		연도별 개발 과정 수(단위: 개)											
NCS 번호	NCS 분야	총 계	'07~'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총 계	189	31	4	10	10	14	10	20	30	21	21	18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1	-	-	-	-	-	-	-	-	1	-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	1	-	-	-	-	-	-	-	-	-	-
09	운전·운송	1	-	-	-	-	-	-	-	1	-	-	-
14	건설	32	4	1	1	1	-	-	2	8	4	7	4
15	기계	82	15	2	5	6	8	5	15	5	11	6	4
16	재료	17	-	-	1	1	1	1	-	3	-	3	7
17	화학·바이오	8	-	1	1	1	-	-	-	2	1	1	1
19	전기·전자	32	8	-	2	1	2	4	3	6	3	2	1
20	정보통신	3	-	-	-	-	-	-	-	1	-	2	-
23	환경·에너지·안전	12	3	-	-	-	3	-	-	4	1	-	1

* 협약기업·기관 수요 적합성 등을 종합 반영한 메타버스·XR 콘텐츠('24년 6종)는 관련 NCS 분야에 포함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 훈련 서비스 제공

◆ 전 국민의 **단계별·수준별 학습 등 체계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과 **디지털 기초(소양) 역량 함양** 등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 운영('26년 목표 30만명)

○ **(이러닝)** 개인 및 기업·기관 맞춤 이러닝 서비스 제공

- 전 국민 대상 기수제·상시제 등 평생능력개발연수, 기업·기관 맞춤연수, 학습근로자 맞춤 학점은행제 연수 등 운영

- NCS 기준이 없어 단계별·수준별 학습이 곤란한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중심 기술교육로드맵 기반의 패키지 과정 설계·제공 확대

  * ('22년 신규) 3과정(빅데이터 등 3개 분야), 450명 → ('23년) 9과정(시스템반도체 등 7개 분야), 3,891명 → ('24년) 12과정(2차전지 등 12개 분야), 4,965명 → ('25년) 21과정(GPT 등 14개 분야), 7,516명(만족도 4.39점)

○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운영

  * 실업자의 구직활동 외 STEP의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이수를 취업 활동으로 인정

○ **(디지털 기초)** 전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초소양 콘텐츠(12개)를 STEP을 통해 무료로 제공

○ **(가상훈련)** 고비용·고가 장비 등의 자기주도적 반복 실습 지원을 위한 3D 실감형 실험·실습 훈련 콘텐츠 활용지원

○ **(원격·혼합훈련)** STEP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원격·혼합훈련 운영기관 및 기업 대상 STEP 공공 콘텐츠 활용지원

그간 온라인 직업훈련 운영 실적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원격훈련	소계(명)	4,930,150	3,999,831	4,113,605	3,771,036
	이러닝(명)	205,780	207,140	238,599	280,407
	가상훈련(명)	20,120	31,421	21,737	34,124
	실업급여(명)	3,313,896	2,478,418	2,516,228	2,349,828
	디지털 기초(명)	1,390,354	1,282,852	1,337,041	1,124,554
콘텐츠 보급	자체개발(개) (이러닝+VT+메타버스)	433 (403+30)	431 (410+15+6)	342 (321+15+6)	339 (321+15+3)
	STEP 마켓 탑재(개)	718	870	669	984
LMS 활용 원격·혼합훈련	LMS 분양(개)	721	653	693	703
	과정개설(개)	3,344	5,090	4,626	6,658
	훈련제공(명)	122,619	258,569	211,245	262,190

* 실적 산출기준: 매년 3월~익년 2월

<4>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생태계 구축

◆ 비대면 훈련의 몰입감·실재감 향상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메타버스, X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기반 마련

○ 메타버스,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기반 첨단산업 분야 중심 3D 실감형·몰입형 실습 콘텐츠 개발

※ ('23년) 6개 → ('24년) 6개 → ('25년) 3개 → ('26년) 3개

○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한 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해 메타버스 기반 훈련 시범운영(기업·기관 협업)

※ ('24년) 12과정, 11기관·기업, 161명, 4.39점→ ('25년) 13과정, 20기관·기업, 254명, 4.5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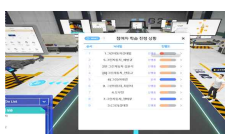
※ 개인 주도 학습 및 동료학습 지원을 위해 STEP 포털 및 메타버스 전용 사이트(meta.step.or.kr)에 모든 과정을 탑재·개방('25년 기준 25,905명 참여(조회수 기준))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시범운영 주요 내용


<네티켓 등 윤리교육>


<안전교육>


<이론수업>


<실습수업(교수활동)>


<미션수행>

참고 13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트윈 심화훈련 개발·운영

□ 필요성

○ STEP은 이러닝, 가상훈련 기반 이론 및 기본 실습 훈련으로 온라인 직업훈련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으나,

○ 심화훈련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학습경로(Learnig Pathway) 설계가 부족하여 학습자 실무 적용 및 역량 심화에는 한계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중견·중소기업에 AX 구축을 확대* 하고 있으나 돌발 사고 등 위기 대응에 특화된 교육·훈련 보완 필요

*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10.24,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사업내용

○ 디지털 트윈 특화 심화훈련*을 활용하여 이론-기초-심화실습으로 이어지는 新 직업훈련 모델 구축

* 실제 산업현장과 동일하게 구현된 가상환경에서 AI 시뮬레이터가 생성하는 가변적 상황을 기반으로 실시간 상호작용하는 양방향 훈련 방식으로 정의

○ 중견·중소 기업과 협업하여 맞춤형 훈련체계를 설계하고 기업 맞춤 운영 지원을 통해 효과성 검증 후 단계적 확산

□ 추진현황

○ ('26년 개발 현황) 2개 분야(반도체·섬유) 각 1개 코스웨어 개발

- 콘텐츠 시범운영을 통한 기업 맞춤 운영 지원으로 효과성 검증 후 단계적 확산

□ 추진계획

○ **(코스워크)** 기존STEP 이러닝-기존가상훈련-신규디지털 트윈 특화 심화훈련을 연계한 체계적 학습경로 설계

- STEP 활용 기업 중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및 기간·뿌리산업(섬유 등) 내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 선정(단계적 분야 확대)

- 이론→기초실습→심화실습 3단계의 학습 경로를 설계

○ **(추진체계)** STEP, 협약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을 통해 코스워크 설계·개발 및 성과분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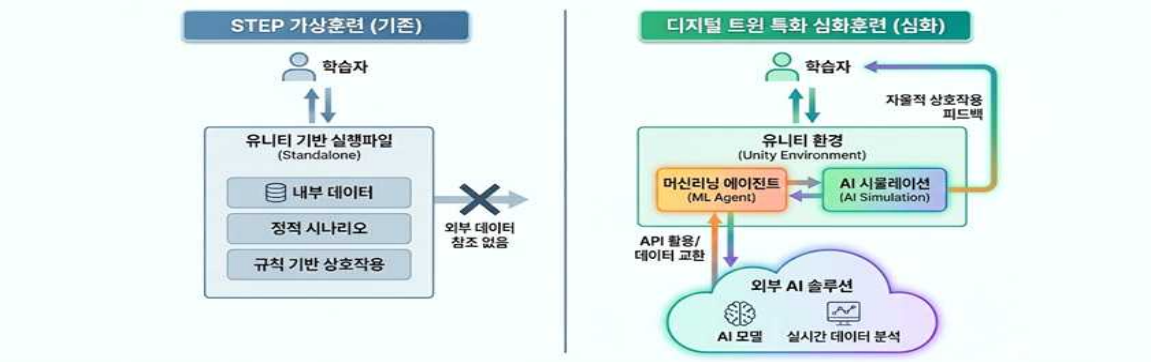
- 분야별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STEP 콘텐츠 검토·설계 및 공통 활용 가능한 공정 및 상황별 훈련 시나리오 표준화

- STEP-협약기업 간 운영 효과성을 분석하고 분야 및 참여기업 확대

○ **(차별화)** 기존 가상훈련과 디지털 트윈 특화 심화훈련 특징 비교

특징	기존 STEP 가상훈련	신규 디지털 트윈 특화 심화훈련
주요 목적	고위험 상황, 대규모·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작업 절차 숙련, 기본 안전/조작 등 **절차적 학습**	제조 산업현장 등에서 디지털 트윈 도입 후 사고 상황 인지, 위기 대응, 의사결정 및 판단 등 **상황 기반 대응 역량 강화**
주요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디지털 트윈, AI 시뮬레이션
훈련 목표	지식 습득, 체험 등 절차적인 실습을 통한 반복 숙달	공정 운영 중 **위기 대응, 문제 해결, 의사결정** 등 조치/판단 능력 향상
상호 작용	학습자가 **가상환경 내의 정해진 시나리오 상황**에서 상호작용	학습자는 **AI 시뮬레이터가 생성하는 가변적 상황**에서 자율적 상호작용

【기존 가상훈련과 디지털 트윈 특화 심화훈련의 데이터 흐름 및 학습방식 비교(예시)】



□ **요구예산: ('27) 15.2억원**(+7.6억원, '26년 2종→ '27년 4종 개발(+2종))

(단위 : 백만원)

연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760	- 훈련경로 설계 : 2개 분야 × 1개 코스 개발 × 20백만원 - 콘텐츠 개발 : 2개 분야 × 1개 콘텐츠 × 300백만원 - 시범운영 : 2개 분야 × 3개 기업 × 2회 × 10백만원
'27	1,520	- 훈련경로 설계 : 2개 분야 × 2개 코스 개발 × 20백만원 - 콘텐츠 개발 : 2개 분야 × 2개 콘텐츠 × 300백만원 - 시범운영 : 2개 분야 ×3개 기업 × 4회 × 10백만원

참고 14 직업계고 대상 STEP LMS 보급 확대 계획

□ 필요성

○ 직업교육-직업훈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산업현장이 원하는 미래 기능·기술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 대상 LMS 보급 예산 확대 필요

❖ '24년부터 **고용부-교육부 협업**을 통해 **직업계고 대상 STEP LMS 시범 보급** 중
❖ 특히, '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 및 **최소성취수준 미달 학생 구제**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학교 밖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 **교육훈련 운영·관리를 위한 LMS, 콘텐츠 등 부재**로, 교육부 및 현장(시·도교육청, 직업계고)에서의 **STEP 인프라(LMS, 콘텐츠 등) 활용 희망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

□ 사업내용

○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 **훈련방식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기관별 STEP 인프라 보급**

○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대상 **STEP 소개 및 활용 방법안내** 등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기관별 맞춤 컨설팅** 제공

□ 추진현황

○ 시도교육청 8개 및 **직업계고 162개** STEP LMS 보급 완료

□ 추진계획

○ '28년까지 **약 580여개 전체 직업계고의 절반 수준 보급(300개)을 목표**로, 연차별로 단계적 보급 확대

* **'26년 180개교(누적) → '27년 240개교(누적) → '28년 300개교(누적)** 보급 목표
* **'26년 직업계고 대상 STEP 신규예산 7억(신규 60개소)** 예산 확정

□ 요구예산: ('27) 8억원(+1억원, '26년 60개소 → '27년 120개소(+60개소))

(단위 : 백만원)

연도	금 액	산 출 근 거
'26	700	- STEP LMS 신규분양 : 60개소 × 10백만원 - STEP LMS 인프라 활용 운영지원(직업계고) : 1식(60개소) × 100백만원
'27	800	- STEP LMS 신규분양 : 60개소 × 10백만원 - STEP LMS 인프라 활용 운영지원(직업계고) : 2식(120개소) × 100백만원

사 업 명
(3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80D	1200	1231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안전망 확충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910,878	944,265	944,265	802,625	717,324	△226,941	△24.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885,130 (25,750)	910,880	910,878	-	2	944,265	944,265	477,186	717,32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82,899 (25,000)	907,899	907,898	-	1	940,929	940,929	475,048	713,957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231 (750)	2,981	2,980	-	1	3,336	3,336	2,138	3,367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885,130 (25,750)	910,880	910,878	-	2	944,265	944,265	477,186	717,324
·일반수용비(210-01)	225	225	225	-	-	225	225	60	204
·일반용역비(210-14)	22,824	22,824	22,824	-	-	22,788	22,788	15,951	24,371
·국내여비(220-01)	60	60	59	-	1	60	60	9	55
·사업추진비(240-01)	34	34	33	-	1	34	34	9	31
·일반연구비(260-01)	110	110	110	-	-	-	-	-	-
·기타보전금(310-04)	861,712 (25,750)	887,462	887,462	-	-	920,993	920,993	460,990	692,498
·사업출연금(350-02)	165	165	165	-	-	165	165	165	16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를 지원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①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노동자, ②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

(1-2)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사업목적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업내용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80%)를 지원 ·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부인증 등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내·외부망 전산시스템 운영 ·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제공기관 인증, 제공기관 관리·감독 업무 수행, 제도 홍보 및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 사업개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같은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예술인의 고용보험 특례), 같은 법 제48조의3제8항제3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추진경위	○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생 지속 ○ 특히, 소규모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시행('12.7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2.7.~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076,405	876,795	907,899	940,929	713,95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27년 건강보험 신규지원으로 운영기관 추가

○ 사업 수혜자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추진경위	○ 21대 국회 정부안 및 의원안(3건) 발의, 국회 본회의('21.5.21) 의결 및 법률 공포('21.6.15), 시행('22.6.16)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2~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7,669	1,273	2,981	3,336	3,36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가사근로자법」상 인증받은 업체 및 소속 가사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165	10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44,265	717,324	△226,94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940,265	713,957	△226,972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3,336	3,367	31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026년) 940,929 → (2027년 정부안) 713,957백만원, △24.1%**

- (설명) ①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 합리화(26년 80% → 27년 60%),
  ②산재(노동자·노무제공자)·건강보험(노무제공자) 신규 지원(27년 20%)

- (산출) 사회보험료지원 690,046백만원(△228,526백만원),
  운영비 23,911백만원(증 1,554백만원)

○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026년) 3,336 → (2027년 정부안) 3,367백만원, +0.9%**

- (설명) 가사근로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증액

- (산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2,472백만원(증 31백만원)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운영 165백만원(전년동)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730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보험가입자수 (단위: 천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15,710	15,993	16,188	16,449	16,597
실적	15,835	16,060	16,303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99.5	100.8	100.4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전년도 보다 0.9%상승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보험전산망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월평균 지원자수 97.5만명
2024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월평균 지원자수 111.0만명
2025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월평균 지원자수 103.3만명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88개소 (가사근로자 1,190명)
2024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122개소 (가사근로자 3,607명)
2025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129개소 (가사근로자 3,983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근로자 127만명, 예술인 0.3만명, 노무제공자 52만명)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 (법 실효성 확보)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주휴·퇴직금 등 노무비용 상승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정부인증 전환을 유인하는 효과 기대

○ (근로조건 보호) 직접 고용을 통한 휴일·휴가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실직·산재·질병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정의 가사서비스 이용 촉진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피보험자	공단	공단	사용자	공단	공단
보험료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고지 (지원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보험료지원금 지원

②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주		공단		공단	
보험료 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보험료 지원금 공제 금액) 부과	⇨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정부		공단	
부과된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지원금 공단 지급	⇨	사업주 부과 보험료와 정부 보험료 지원금의 납부 확인 (보험료 100%)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5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의견 : 사업 중요성은 높고 제도개선 노력 일자리 성과 양호하나 운영방식 개선 필요 ○ 결과 : 수급요건 정보 연계 및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지원 실시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 의견 : 인증기관 대상 만족도조사 수행 등 개선 필요 ○ 결과 :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 이용자 등에 관한 만족도 조사 등 실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6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의견 : 양호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 의견 : 플랫폼을 통한 간접 양성화 및 이용자 신고 인센티브 부여 등 시장 양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 ○ 결과 : 플랫폼 구축, 세액공제 및 두루누리 사업과의 정합성 등 종합적 검토 예정
통합재정평가	2026년	○ 의견 : 지원율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 등 검토(감액) ○ 결과 : 현행 보험료 지원율 80% → 60% 하향 조정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23결산	2024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지적 : 정책대상별 사각지대 분석 및 지원율 제고 노력 필요 ○ 조치 :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25. 12월 완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 지적 : 가사근로자 시장 현황 분석 후 가사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조치 : 실태조사 연구용역 시행('24.12월 완료, 노동연) 및 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
예결위, '23결산	2024년	○ 지적 : 사업주가 지원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모색 및 지원율 제고 노력 확대 ○ 조치 :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25. 12월 완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정감사	2024년	○ 지적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산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 ○ 조치 : 지원 대상에 대한 면밀한 추계 등을 통해 '26년 예산안에 반영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76,405	1,076,405	-	-	1,076,405	861,232	80.0	-	215,173
2024년	837,516	837,516	-	41,352	878,868	878,863	105.0	-	5
2025년	885,130	910,880	-	-	910,880	910,878	100.0	-	2
2026년	944,265	944,265	-	-	944,265	477,186	50.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215,173	- 집행잔액 불용
2024년	불용	5	- 집행잔액 불용
	전용	800	-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예산 부족으로 실업크레딧지원 예산 전용
2025년	불용	2	- 집행잔액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3) 실업크레딧지원(일반)(1232-3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200	1232	35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실업크레딧지원	실업크레딧지원(일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실업크레딧지원(일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실업크레딧지원(일반)	31,972	33,486	33,486	28,463	28,463	△5,023	△15.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1,972	31,972	31,972	-	-	33,486	33,486	20,107	28,463
·실업크레딧지원(일반)	31,972	31,972	31,972	-	-	33,486	33,486	20,107	28,463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1,972	31,972	31,972	-	-	33,486	33,486	20,107	28,463
·일반수용비(210-01)	252	252	252	-	-	252	252	174	214
·기타보전금(310-04)	31,720	31,720	31,720	-	-	33,234	33,234	19,933	28,24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사업목적	○ 실업자의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사업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수급기간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그 기간만큼 추가 산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일반회계, 고보기금, 국민연금기금 각 25% 지원, 자부담 25%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고용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고용보험법」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고용보험법」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략)
추진경위	○ 2014년 5월 실업크레딧 도입 여·야·정 합의 ○ 2014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 및 2015년 7월 제도 시행 ○ 2016년 5월 고용보험법 개정 및 8월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6년 8월 1일～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34,739	33,910	31,972	33,486	28,46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동 수행

○ 사업 수혜자 : 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크레딧 신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3,486	28,463	△5,023
실업크레딧지원(일반)	33,486	28,463	△5,023

○ 실업크레딧지원(일반) (2026년) 33,486 → (2027년 정부안) 28,463백만원, △15.0%

- (설명) 최근 5개년의 지원인원, 평균 인정소득, 지원기간 등의 실적을 종합 반영하여 '26년 대비 △15.0%(4,985백만원) 감액

- (산출) 28,463백만원 = 기타보전금 28,249백만원(440천명 × 17,325원 × 3.7개월) + 일반수용비 252백만원

  * 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승분(9.5→10%)에 따른 지원단가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보험 가입자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15,710천명	15,993천명	16,188천명	16,449천명	16,597천명
실적	15,835천명	16,060천명	16,303천명		
달성도	100.8%	100.4%	100.7%		

- 측정산식 : 해당연도의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추출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7년 성과목표는 '26년 성과목표의 100.9% 수준으로 상향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56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20억원 지원
2024년	56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22억원 지원
2025년	57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17억원 지원
2026년	'26.7월까지 40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200억원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 중 연금 가입기간 공백을 최소화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수급자 →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
재산 및 소득요건 검토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납입고지서 송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제2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자부담분 25% 납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	수급자 → 국민연금공단
자부담분 납부한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지원금 예산 요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보험료지원금 예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양호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자부담(25%) 구조로 재산·임금 수준이 높은 집단의 제도 활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점검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22회계연도 결산	2023년	○ 지적 : 연례적 예산 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방지 필요 ○ 조치 :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충분한 재원 확보 노력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4,739	34,739	-	-	34,739	32,228	92.8	-	2,511
2024년	33,910	33,910	-	△800	33,110	32,406	95.6	-	704
2025년	31,972	31,972	-	-	31,972	31,972	100.0	-	-
2026년	33,486	33,486	-	-	33,486	20,107	6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2,511	- 집행잔액 불용
2024년	전용	△800	-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사업 예산이 조기소진 전망되어 전용
	불용	704	- 집행잔액 불용
2025년	불용	247	- 집행잔액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4) 일자리안정자금지원(1233-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200	1233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일자리안정자금지원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근로복지공단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025	2,022	2,022	2,932	2,932	910	45.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051	2,051	2,025	-	26	2,022	2,022	1,353	2,932
일자리안정자금	2,051	2,051	2,025	-	26	2,022	2,022	1,353	2,93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051	2,051	2,025	-	26	2,022	2,022	1,353	2,932
·일반수용비(210-01)	14	14	14	-	-	14	14	-	14
·공공요금(210-02)	90	90	90	-	-	75	75	-	-
·일반용역비(210-14)	1,856	1,856	1,856	-	-	1,889	1,889	1,322	1,822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	-	3	3	2	3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986
·민간경상보조(320-01)	86	86	60	-	26	39	39	27	20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8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목적 및 내용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18.1월~'22.6월, 지원종료)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법]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추진경위	○ ‘17.7.15.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의결 * ‘17년 최저임금(6,470원) 대비 16.4%(1,060원) 인상 ○ ‘17.7.16. 관계부처 합동「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발표 ○ ‘17.8.21.「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운영계획(안)」국무회의 의결 * 사업수행기관(근로복지공단), 시행시기(‘18.1월부터 시행) 등 ○ ‘17.11.9.「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안)」발표(관계부처 합동) ○ ’18.1.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19년~’21년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부담 고려,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 ‘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 고려, 6개월 지원 (’22.6.30. 신규지원종료) ○ ‘22. 7. ~ 현재. 정산·환수 등 사후관리 업무 수행중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8년 ~ 2022.6월(한시), 22.6월 이후에는 정산·환수 업무 추진 중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5,984	2,269	2,051	2,022	2,93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영세사업주 및 저임금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보조	근로복지공단	20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최저임금법 제24조, 보조금 관리법 제5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일자리안정자금	2,022	2,932	910

○ 일자리안정자금 **(2026년) 2,022 → (2027년 정부안) 2,932백만원, +45.0%**

(1) 지원금 : (2026년) 39 → (2027년 정부안) 20백만원, △19백만원

(2) 운영비 : (2026년) 1,983→ (2027년 정부안) 2,912백만원, +929백만원

❶ 고용노동부 운영비(19백만원, 전년 대비 △75백만원, 우편 자동발송 기능이 탑재된 과태료 시스템 이관을 고려 공공요금 감액)

- 체납처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❷ 근로복지공단 운영비(1,882백만원, 전년 대비 △67백만원, 시스템이관 대비 공공요금, 정산금 축소 예상에 따른 지원금 등 감액)

- 환수업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비

❸ 전산시스템 이관비(1,071백만원, 순증)

- (요구) 과태료 시스템 등을 활용, 일자리 안정자금 채권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 효율화 추진

- (산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등 연구개발비 986백만원, 전산장비 취득 8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보험가입자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15,710	15,993	16,188	16,317	16,597
실적	15,835	16,060	16,303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0.8	100.4	100.7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7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취업자 수(15만)에 비해 적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정보 연계를 통한 가입 누락자 직권가입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노력을 감안하여 전년 목표 대비 15만명 증가한 16,597천명으로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보험전산망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22.6월 신규 지원금 지급 종료됨에 따라 정산·환수 등 사후관리 업무수행 중
2024년	
2025년	
2026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22.6 신규 지원금 지급 종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제2항10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17.8월)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영세사업주 등 신청 → 근로복지공단 심사 및 대상 선정 → 보조금 교부 요청 및 교부(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984	5,984	-	-	5,984	5,984	100.0	-	-
2024년	2,269	2,269	-	-	2,269	2,205	97.2	-	64
2025년	2,051	2,051	-	-	2,051	2,025	98.7	-	26
2026년	2,022	2,022		-	2,022	1,353	66.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해당없음
2024년	불용	64	집행잔액
2025년	불용	26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 없음

사 업 명
(35)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200	1234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920,975	1,012,830	1,092,963	697,808	697,808	△315,022	△31.1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10,865	1,010,865	920,975	-	89,890	1,092,963	1,092,963	618,390	697,808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853,100	864,842	817,948	-	46,894	952,243	952,243	543,612	650,839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156,800	145,058	102,062	-	42,996	138,245	138,245	73,050	46,969
·전산망 강화	965	965	965	-	-	965	965	676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	-	-	-	-	1,510	1,510	1,052	-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10,865	1,010,865	920,975	-	89,890	1,092,963	1,092,963	618,390	697,808
· 일반수용비(210-01)	880	880	879	-	1	840	800	304	79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95	795	768	-	27	820	820	451	770
· 임차료(210-07)	30	30	30	-	-	10	10	3	10
· 일반용역비(210-14)	202	202	201	-	1	62	102	50	94
· 국내여비(220-01)	157	182	181	-	1	149	149	68	149
· 국외업무여비(220-02)	43	18	12	-	6	41	41	-	21
· 사업추진비(240-01)	95	95	94	-	1	90	90	31	86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100	-	-	-	-	-	-
· 정책연구비(260-02)	-	-	-	-	-	100	100	70	100
· 기타보전금(310-04)	860,144	860,144	778,695	-	81,449	924,306	924,306	535,700	648,405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1,500	1,500	1,050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47,454	147,454	139,051	-	8,403	164,080	164,080	79,987	47,375
· 사업출연금(350-02)	965	965	965	-	-	965	965	676	-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사업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

(1-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사업목적	구직자 및 취업취약계층(특정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사업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추진경위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17.5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 및 제도 기본 골격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18.8월, '19.3월) -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마련, 제11차 일자리위원회 의결·발표('19.6.4) -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19.9.16) →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1년~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225,455	942,515	1,010,865	1,092,963	697,80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 사업 수혜자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취업경험 등 미충족자는 선발형으로 지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및 취업취약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92,963	697,808	△395,155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952,243	650,839	△301,404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138,245	46,969	△91,276
전산망 강화	965	-	△965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1,510	-	△1,51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26 추경) 952,243 → ('27) 650,839백만원, △301,404백만원**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신설에 따른 예산 분리

- 구직촉진수당 569,361백만원
- 취업성공수당 62,039백만원
- 민간위탁비 17,411백만원
- 운영비 2,028백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26 추경) 138,245 → ('27) 46,969백만원, △91,276백만원**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신설에 따른 예산 분리

- 참여자수당 4,921백만원
- 취업성공수당 12,084백만원
- 민간위탁비 29,964백만원

○ 전산망 강화: ('26 추경) 965 → ('27) 순감, △965백만원

* 정보화 사업 분리에 따른 예산 순감

○ 청년지원단: ('26 추경) 1,510 → ('27) 순감, △1,510백만원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신설에 따른 예산 분리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0.0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연도말 기준 종료자(이월 포함) 대비 취업자 비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2~'25년 평균 취업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전산망(고용24)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9.6만명 참여(Ⅰ유형 22.7만명, Ⅱ유형 6.9만명) ·일경험프로그램 1.8만명 연계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1.5만명 참여(Ⅰ유형 25.0만명, Ⅱ유형 6.5만명) ·일경험프로그램 1.4만명 연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0.9만명 참여(Ⅰ유형 22.0만명, Ⅱ유형 8.9만명)
2026.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20.2만명 참여(Ⅰ유형 16.0만명, Ⅱ유형 4.2만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로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위해 취업지원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①지원대상자 선정 → ②취업지원서비스

① **(지원대상자 선정)** 참여자 모집·발굴 및 신청자 초기상담 → 신청접수 → 수급자격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수급자격자 선발·통지

1 참여자 모집·발굴 및 초기상담	➡	2 신청접수	➡	3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4 수급자격자 결정·통지
❶사각지대에 있는 참여자 발굴 ❷제도소개 ❸참여자 모집 및 프로파일링 ❹신청예정자 구직의사·능력 평가		❶지원요건의 자가진단 지원 ❷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안내 및 보완요청 ❸후속절차 안내		❶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지원요건 심사 ❷유형별 수급자격자 분류 (요건심사형↔선발형) ❸추가확인 필요 정보 유선확인 및 추가서류 징구		❶심사결과 통지 ❷통지결과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통지 ❸후속절차 안내

②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사후관리

5 취업활동계획 수립	➡	6-1 고용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제공	6-2 복지서비스 제공	➡	7 구직활동 지원	➡	8 사후관리
❶수급자격자의 취업의지·능력 관련 심층 분석 ❷희망진로 및 선호직종 상담 ❸진로탐색 관련 개인별 과제 부여 및 점검 ❹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❺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❻구직촉진수당 지급(또는 중단)		❶직업훈련 초기상담을 통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기관 연계 ❷일경험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❸창업지원 안내 및 연계	❶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❷양육, 정신건강, 금융 등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서비스 등		❶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이력서 클리닉, 면접특강 등 ❷동행면접 ❸취업처 정보제공 및 알선 서비스 제공 ❹구직활동의무 이행확인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또는 중단)		❶취업사실 확인, 취업성공수당 지원 ❷취업자 → 근속유지를 위한 유선상담 ❸미취업자 → 구직정보 제공 등 ❹부정수급자 모니터링·조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2025년	○ 의견: 개선필요 ○ 결과 - 타 기관과의 협업, 사업 모니터링, 상담사 역량 및 동기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참여자 수, 취업률,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인 사업 성과가 도출됨 - 예산 편성을 유형별로 정교화할 필요 - 민간 위탁기관의 현재 위탁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중장년 참여 장려 전략을 강화할 필요 - 현재 구직촉진수당 등 제 수당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 제도 개선을 위해 참여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개선필요 ○ 결과 - 좀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을 포괄하기 위해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하였고, 중장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취업률·고용유지율에서 일정 수준의 향상된 성과를 보임 - 세부 유형별 사업예산 추계를 정교화할 필요 - 민간위탁비의 증액 필요 - 중장년층 참여를 증진할 방안 마련 권고 - 사업 참여자의 의견 수렴 통로를 확대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을 권고 -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 필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최종의견: 사업개선 ○ 결과 - 참여자 특성이 통제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	2024년	○ 지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고용센터 평가에 반영할 것 - 최근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의 정확성 및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할 필요

		- 구직촉진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강구할 것 - 민간위탁기관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들이 취업 후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 - '사회적 기업 일경험' 신설 및 적극적으로 연계('26.7.)하고, 참여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류 체계를 마련('26.1.) - '27년 정부안 편성 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던 2유형 청년 목표인원을 현실화하고 중복 추계가 있던 예산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안에 반영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6년 구직촉진수당을 인상('25.12.)하였으며, 단계적 인상을 추진 중 - '26년 취업활동계획 수립자부터 미취업 원인 분석 및 취업활동계획 재진단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 전 필수 대면상담을 실시하도록 매뉴얼 반영('25.12.) - '27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제출 - '26년 민간위탁기관을 287개소 선정(25년 대비 11.2% 증가)하였고, 민간위탁비 현실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예정 - '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자에게 유선 연락 등 직장 적응상황을 확인하고, 근속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AI노동법 상담을 안내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등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26.1.)
결산	2025년	○ 지적 - 추경 예산이 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청년층의 수요를 높일 만한 인센티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성과지표로서 관리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225,455	1,225,455	160	-	1,225,615	925,569	75.5	40	300,006
2024년	942,515	942,515	40	60,836	1,003,391	1,002,899	106.4	-	492
2025년	845,709	1,010,865	-	-	1,010,865	920,975	91.1	-	89,890
2026년	1,012,830	1,092,963	-	-	1,092,963	618,390	56.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월	40	계약기간이 '24년까지인 위탁계약의 이행을 위해 40백만원 이월
2023년	불용	300,006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2024년	이·전용 등	60,836	'24년 연계·협업 강화 및 제도개선 등에 따라 참여 인원이 확대되어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 전용 및 예비비 편성
2025년	불용	89,890	추경 편성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6)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운영(정보화)(1234-4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200	1234	4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운영(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N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운영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한국고용정보원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운영(정보화)	-	-	-	1,146	1,146	1,146	순증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1,146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운영지원	-	-	-	-	-	-	-	-	1,146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1,146
·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1,14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산망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내용	취업지원전산망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운영·관리를 위한 장비 및 SW의 유지 및 보수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추진경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1.1.1.)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전산망 구축 완료('21.11.22) - 고용서비스 디지털전환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전산망이 고용24 행정포털로 통합('24.2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7년~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	1,14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운영지원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1,146	10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	1,146	1,146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운영지원	-	1,146	1,146

○ **취업지원전산망 운영지원: 1,146백만원**

- 취업지원전산망 운영지원비: 775백만원
- 취업지원전산망 운영 유지관리비: 371백만원

  * 도입장비 유지보수료 366백만원, SW유지관리 라이센스비용 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0.0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연도말 기준 종료자(이월 포함) 대비 취업자 비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2~'25년 평균 취업률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전산망(고용24)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9.6만명 참여(Ⅰ유형 22.7만명, Ⅱ유형 6.9만명) ·일경험프로그램 1.8만명 연계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1.5만명 참여(Ⅰ유형 25.0만명, Ⅱ유형 6.5만명) ·일경험프로그램 1.4만명 연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30.9만명 참여(Ⅰ유형 22.0만명, Ⅱ유형 8.9만명)
2026.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20.2만명 참여(Ⅰ유형 16.0만명, Ⅱ유형 4.2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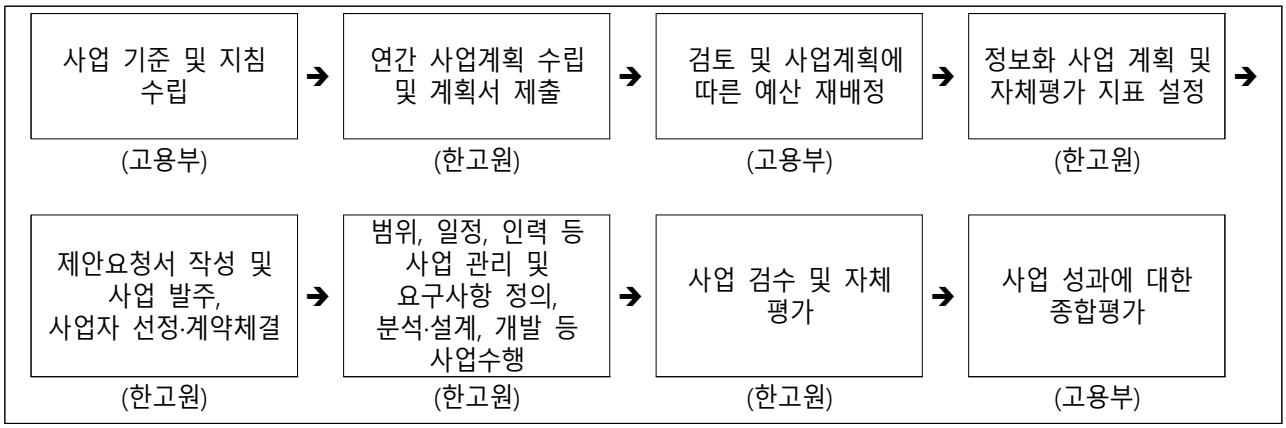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정부의 정책 변경 및 고객개선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7)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1331-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300	1331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평등실현	고용평등환경개선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직접/보조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25.10월 성평등부 이관 (정부조직법 개편)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594	1,442	1,442	1,756	1,756	314	21.8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76	1,614	1,594	-	20	1,442	1,442	932	1.756
· 남녀고용평등 환경개선지원	874	904	884	-	20	1,442	1,442	932	1,756
· 적극적고용개선 조치지원	1,002	710	710	-	-	-	-	-	-

* '25.10.1.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사무이관(잔여 예산 △262백만원 이체, 성평등부)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76	1,614	1,594	-	20	1,442	1,442	932	1,756
· 상용임금(110-03)	461	461	449	-	12	502	502	268	588
· 일반수용비(210-01)	188	188	182	-	6	256	256	76	256
· 복리후생비(210-12)	8	8	7	-	1	8	8	6	10
· 일반용역비(210-14)	1,047	840	840	-	-	100	100	100	100
· 기타운영비(210-16)	55	-	-	-	-	-	-	-	-
· 국내여비(220-01)	3	3	2	-	1	3	3	2	3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450	450	450	65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90	90	90	-	-	99	99	27	125
· 자산취득비(430-01)	24	24	24	-	-	24	24	3	2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목적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발, 포상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고용평등 부문 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사업내용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포상 및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 - (고용평등상담지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근로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 - (고용평등업무지원)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홍보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운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정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 (고용평등상담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의5제1항(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3조(상담지원)
추진경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95년부터 정무제2장관실과 노동부 공동 주관으로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를 개최, '98년부터 노동부 단독 주관 - '01년부터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4월 첫째 주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으로 정하여 기념식, 토론회 개최, 언론사 특집기사 게재 등 홍보 - '13년부터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5.25~5.31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으로 변경(시행규칙 개정, '12.8월)하여 시행 <고용평등상담지원> - '00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시범 실시(10개소) - '01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지원(10→15개소, 증 5개소) - '24년, 사업방식 변경(민간경상보조→직접수행) - '26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병행 운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480	1,790	1,876	1,442	1,75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운영 및 고용평등업무지원(직접수행)
- 고용평등상담지원: 청·대표지청(8개소) 및 '26년 민간고용평등상담실(보조)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근로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고용평등상담실운영)	보조	비영리 민간단체	650	예산 범위 내	-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442	1,756	314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442	1,756	314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026년) 1,442백만원 → (2027년 정부안) 1,756백만원, +21.8%**

- (설명) 공무직 처우개선(적정임금) 및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위한 증액
- (산출)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100백만원), 고용평등업무지원(12백만원) 각 전년동
  고용평등상담지원(1,644백만원):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723), 운영비(47)
  심리정서프로그램(224), 고용평등상담실(650)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평등상담실적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12,146	13,110	7,000	11,500	12,300
실적	9,533	9,612	9,796	-	-
달성도	78.5	73.3	139.9	-	-

- **측정산식** : 고용평등상담실적 및 예산증가비중 반영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4~'25년 실적 × 90%+ '23년 예산반영 비중
- **자료수집방법/출처** : 상담실적자료(내/외부)

○ **성과지표:** 30~40대 여성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3.8	67.0	69.0	70.8	71.0
실적	66.9	68.9	70.7	-	-
달성도	104.9	102.8	102.5	-	-

- **측정산식** : 30～40대 여성취업자 수/ 30～40대 여성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실적치 확정에 따라 '27년 목표치 조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23.5.26) 및 전문가 포럼('23.5.31) 개최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포상(36점) <고용평등상담실운영> - '23년도 운영기관 선정(20개소), 운영(19개소) - '23년도 고용평등상담실 홍보 리플릿(60,000부) 배포 등 홍보('23.1.) - '23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담인력 대상 교육(19개소, 31명, '23.5.)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 창구 운영 지속 -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운영 등 - 노동委 고용상 성차별 등 구제절차 시행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책자(리플릿), 동영상, 표준강의안 제작('23.1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43개사, '23.5)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운용 전산시스템(aa-net) 전면 개편을 통한 편의성 확

	보 및 자료 보완 강화 ('23.3) <고용평등업무 지원> -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고용평등분야 지도·점검 등
2024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 개최('24.5.28.)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시상(37점) <고용평등상담 지원> - 고용평등심층상담 업무매뉴얼 제작·배포('24.1)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기초직무교육(1.25~26) 및 심화교육(7.18~19) - 고용평등상담 우수사례 공모('24. 9월) - 고용평등 심층상담 홍보 리플릿 배포('24. 10월, 3만부) - 고용평등전담감독관, 일·육아동행플래너 등 권역별 공동 워크숍('24. 10월, 8회) - 고용평등과 일·육아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성과공유회('24. 12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32개사, '24.5) <고용평등업무 지원> -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고용평등분야 지도·점검 등
2025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 개최('25.5.28.)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시상(36점) <고용평등상담 지원> - 고용평등상담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4개청, '25.5월.),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직무역량 교육('25.4월, 10월, 기본, 심화과정) - 고용평등전담감독관, 상담지원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워크숍('25.7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41개사, '25.8)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무이관(25.10월, 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업무 지원> -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컨텐츠 제작·배포 등('25.2월)
2026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 개최('26.5.28.)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시상(36점) <고용평등상담 지원>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직무역량 교육('26.4월 기본, 10월 심화과정) - 고용평등상담관, 고용평등상담실 간담회,협의체 운영('26.4월, 6월, 8월) <고용평등업무 지원> -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컨텐츠 제작·배포('26.2월)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행사 등을 통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제고

○ 노동부 고용평등상담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위탁을 병행하여 민원 접근성 제고 및 민간부문의 상담 전문성 활용을 통한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본부	→	지방관서	→	본부	→	본부 및 지방관서
•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계획 수립		• 우수 기업 등 지방관서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기념식 및 포상

<고용평등상담지원>

○ 고용평등상담실('26년)

노동부	→	노동부	→	심사 위원회	→	노동부	→	수탁 기관	→	수탁기관, 노동부	→	노동부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안내		심사 및 선정		위탁 계약 체결		상담 등 실시		결과 보고 및 운영비 차등지원		정산 실시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	2024년	○ 지적: 고용평등상담의 민간 전문성 활용방안 마련 ○ 조치: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26.2월, 9개소)
예산	2026년	○ 지적: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증액 ○ 조치: '27년 정부안 증액편성(+200백만원)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480	2,480	-	-	2,480	2,470	99.6	-	10
2024년	1,790	1,790	-	-	1,790	1,733	96.8	-	57
2025년	1,876	1,876	-	-	1,614	1,594	98.8	-	20
2026년 7월	1,442	1,442	-	-	1,442	932	64.6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이체	△262	'25.10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 사무이관 - 잔여 사업비 262백만원 이체(노동부→성평등부)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8) 중장년 경력지원제(1336-30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300	1336	305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평등증진	장년희망찾기지원	중장년 경력지원제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중장년 경력지원제	7,907	8,417	8,417	7,154	7,034	△1,383	△16.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930	7,930	7,907	-	23	8,417	8,417	5,517	7,034
·참여자수당	5,760	5,760	7,295	-	1	5,760	5,760	4,734	5,160
·프로그램운영수당	1,536	1,536		-		1,536	1,536		1,248
·위탁기관기본금	200	200	249	-	15	300	300	214	300
·위탁기관과정관리비	64	64		-		128	128		128
·운영비	370	370	363	-	7	693	693	570	198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930	7,930	7,907	-	23	8,417	8,417	5,517	7,034
·일반수용비(210-01)	150	150	143	-	7	60	60	27	37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	50	50	-	-	60	60	17	17
·일반용역비(210-14)	120	120	120	-	-	80	80	33	34
·기타보전금(310-04)	7,296	7,296	7,295	-	1	7,296	7,296	4,734	6,408
·민간위탁사업비(320-02)	264	264	249	-	15	428	428	214	428
·사업출연금(350-02)	50	50	50		-	493	493	493	11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목적	50세 이상 조기퇴직 중장년 대상 경력전환형 일경험 지원
사업내용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50~65세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경위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폐지('24년) - 경력전환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대응 및 중장년층 지원 일경험 사업 부재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25년) - 2차 베이비부머('64~'74년, 954만명) 은퇴에 대비한 중장년 취업 지원 사업강화 필요성 증대 - 퇴직 중장년 중 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은 70%가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등 중장년의 경력전환형 일자리 수요 증가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5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7,930	8,417	7,03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50~65세 중장년 및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중장년 경력지원제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110	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417	7,034	△1,383
중장년 경력지원제	8,417	7,034	△1,383

○ 중장년 경력지원제 (2026년) 8,417 → (2027년 정부안) 7,034백만원, △16.4%

- (설명)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하고 자격취득, 훈련 이수 후에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50대 중장년 2,000명에 대한 소요액, 제도 개선(수당 조정), 전산 구축 비용 절감 등을 감안, '26년 대비 16.4% 감액

- (산출)

가) 참여자, 참여기업 수당 6,408백만원

① 참여자 수당 5,160백만원

* 125만원(지원단가) × 2,000명 × 2.4개월(지원기간) × 0.8(금년도 지급분) + 150만원(전년 지원단가) × 100명(전년도 이월지급분) × 2.4개월(지원기간)

② 프로그램 운영수당 1,248백만원

* 30만원(지원단가) × 2,000명 × 2.4개월(지원기간) × 0.8(금년도 지급분) + 40만원(전년 지원단가) × 100명(전년도 이월지급분) × 2.4개월(지원기간)

나) 민간위탁비용 428백만원

① 위탁기관 기본금 300백만원

* 15만원(지원단가) × 2,000명 = 300백만원

② 위탁기관 과정 관리비 128백만원

* 10만원(지원단가) × 2,000명 × 0.8(2개월이상 비율) × 0.8(수료율) = 128백만원

다) 사업운영비 198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중장년 고용률(40~60대)(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72.1	72.6
실적	72.0	72.0	72.5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40～60대 취업자수)/(40～60대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실적(72.5%) 대비 목표 0.1%p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2025년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자 1,720명
2026년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자 1,337명('26.7월말 현재)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경력전환을 지원하여 중장년의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센터)참여자, 참여기업 요건 등 1차 적격심사 →(운영기관)참여기업, 참여자 매칭 →(참여기업)일경험 후 기업이 수당·지원금 지급신청→(운영기관)지원금 신청 접수 및 1차 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요청→(고용센터)요건 확인 후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수당·지원금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2026년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참여 자료 기반의 사업계획 수립 및 장기적 성과지표 관리 등의 사업 개선 필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감액 ○ 결과 :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과 기반 예산 관리 강화, 예산 효율화 지향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기노위 결산 시정요구 ('25 회계연도 결산)	2026년	○ 지적 : (제도개선) 사업규모 확대 및 정량적인 취업 성과 제고 필요 ○ 조치 : 일경험 전후로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취업률 제고 노력 및 중장년 경력, 희망직무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화 검토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	-	-	-	-	-	-	-
2024년	-	-	-	-	-	-	-	-	-
2025년	3,640	7,930	-	-	7,930	7,907	99.7	-	23
2026년	8,417	8,417	-	-	8,417	5,517	65.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불용	23	집행 잔액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 개요

참고 1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2 사업 개요

○ **(사업 규모)** '26년 84억원(참여인원 2,000명)

○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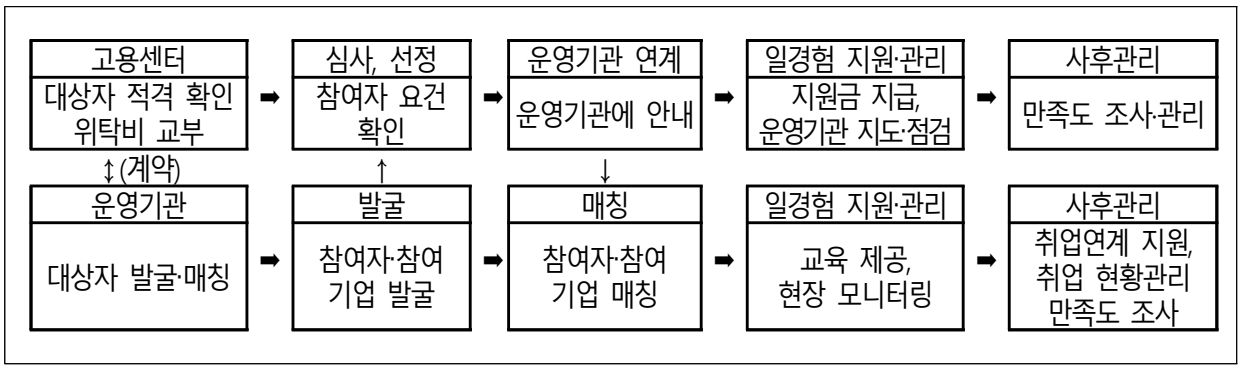
○ **(지원내용)** ①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②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 **(프로그램)**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

** 소양·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 **지원체계**



사 업 명
(39) 중장년경력이음지원(1336-30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300	1336	307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평등증진	장년희망찾기지원	중장년경력이음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N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경력지원 패키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민간위탁기관 등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중장년 경력이음지원*	2,863	3,025	3,025	12,000	3,400	375	12.4

* 내역사업(경력지원패키지)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2039-300)' 내 '특화프로그램'** 사업에서 **단순 이관됨**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중장년경력이음지원	3,025	3,025	2,863	-	162	3,025	3,025	2,115	3,400
·경력지원 패키지*	3,025	3,025	2,863	-	162	3,025	3,025	2,115	3,4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025	3,025	2,863	-	162	3,025	3,025	2,115	3,400
·민간위탁사업비(320-02)	3,025	3,025	2,863	-	162	3,025	3,025	2,115	3,4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경력지원 패키지

사업목적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보급
사업내용	정년퇴직 전·후의 기업·노동자에 기업 내 맞춤형 재취업지원서비스 설계 등 통해 중장년의 원활한 재취업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20.5.1.「고령자고용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 '21년.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시행**['중장년층취업지원(1340-300)'** 사업의 내역사업) - '24년 **고용노동부 컨설팅 사업 통합** 추진으로 **'25년도 예산** 편성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2039-300)'** 사업의 내역사업 **'특화프로그램'**으로 이관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7년 예산** 편성 시 **신설**한 **'중장년경력이음지원(1336-307)'** 사업의 내역사업 **'경력지원패키지'**로 이관 *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정년 전·후에 퇴직하는 중장년 원활한 재취업 및 경력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7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3,025	3,025	3,4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참여기관) 노사발전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100인 이상 사업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025	3,400	375
경력지원 패키지	3,025	3,400	375

○ 경력지원 패키지 **(2026년) 3,025 → (2027년 정부안) 3,400백만원, +12.4%**

- (설명) 국정과제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방안*에 따른 법령상 의무사업장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을 감안, '26년 대비 지원규모+33.3% 확대 요구 (기업 300개소 → 기업 400개소)

- (산출) 기업 400개소 × 8.5백만원(컨설팅 단가) = 3,4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중장년 고용률(40~60대)(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72.1	72.6
실적	72.0	72.0	72.5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40～60대 취업자수)/(40～60대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실적(72.5%) 대비 목표 0.1%p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2025년	252개 사업장, 966명 지원
2026년	182개 사업장, 373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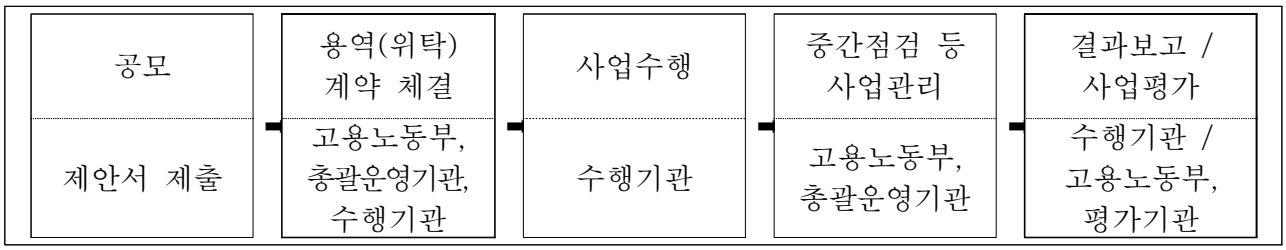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기업의 제도 설계·보급 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장년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장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제도 설계·보급 → 종료 및 보고 → 사후관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평가	2026년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일터혁신상생컨설팅 10개 분야와 '특화프로그램'의 관계 검토하여 '특화프로그램'의 별개 사업으로의 분리 등 개선 방안을 마련 필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예정 등 감안, 서비스 대상 확대 노력 요구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	-	-	-	-	-	-	-
2024년	-	-	-	-	-	-	-	-	-
2025년	3,025	3,025	-	-	3,025	2,863	94.6	-	162
2026년	3,025	3,025	-	-	3,025	2,115	69.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불용	162	집행 잔액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중장년 경력이음지원 사업 개요

참고 1 경력지원 패키지 개요

1. 목적

○ 정년퇴직 전·후의 기업·노동자에 기업 내 맞춤형 재취업지원서비스 설계 통해 원활한 재취업 및 경력설계 지원

→ 이직 예정 중장년 노동자의 구직 소요 기간 단축 및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장년의 경력이음에 기여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100인 이상 기업

○ **(지원내용)**

내 용	
기업	▲ **기초컨설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이해, 도입전략, 직접·위탁 운영 방안, 시행 이후 성과평가 방안, 서비스 시범운영 등 ▲ **전문컨설팅:** 서비스 유형별 도입전략(경력설계, 재취업교육 등), 담당 인력의 역량강화 방안, 정부지원제도 활용방안, 서비스 시범운영 등

○ **(시행주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또는 우수 훈련기관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26년 10개소)

사 업 명
(40)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1339-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300	1339	301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평등증진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33,440	28,289	28,289	34,149	33,594	5,305	18.8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1,789	34,561	33,440	-	1,121	28,289	28,289	16,592	33,59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21,789	34,561	33,440	-	1,121	28,289	28,289	16,592	24,329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	-	-	-	-	-	-	-	9,26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1,789	34,561	33,440	-	1,121	28,289	28,289	16,592	33,594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100
·기타보전금(310-04)	-	-	-	-	-	27,831	27,831	16,134	32,824
·민간경상보조(320-01)	21,331	34,103	32,982	-	1,121	-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58	458	458	-	-	458	458	458	67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사업목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출산수당 지원
사업내용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수당 지원(월 50만원 × 3개월분)

(1-2)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사업목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육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육아수당 지원
사업내용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육아수당 지원(월 50만원 × 3개월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17.7월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18.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로 발표 * (기초연구)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저출산위·보건사회연구원, '18.1~11월) - '18.8월 예비타당성 심사 ☞ 심사결과 : 면제 * (면제사유)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예타면제 - '18.8~9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협의 * (협의결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 - '19.7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시행 - '24.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25.9월, 국정과제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육아수당 신설 포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 7. 1.(신규) ~ 계속(단년도)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5,572	17,676	34,561	28,289	33,59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육아 여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486	100%	-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184	100%	-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8,289	33,594	5,30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28,289	24,329	△3,960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	9,265	9,265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2026년) 28,289백만원 → (2027년 정부안) 24,329백만원, -14.0%**

- (설명)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수당 지원
- (산출) 고용보험 미적용자 16,219명 × 출산수당 150만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2027년 정부안) <신설> 9,265백만원, 순증**

- (설명)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육아수당 지원
- (산출) 고용보험 미적용자 6,110명 × 육아수당 150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수급자수(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10,368	11,784	11,784	18,859	16,219
실적	10,492	12,622	19,170	-	-
달성도	101.2	107.1	162.7	-	-

- **측정산식**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수급자 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인원 추이를 반영하여 편성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보험 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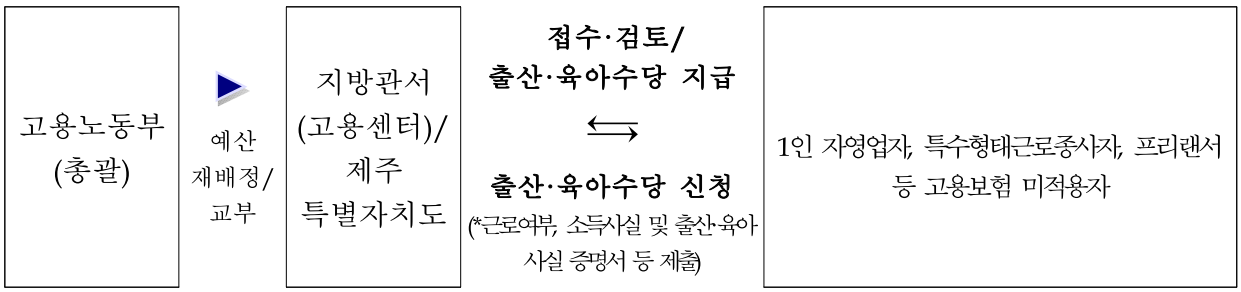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육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육아수당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	2025년	○ 지적 : 각 유형별 지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분석 필요 ○ 조치 : 지원인원의 유형별·소득별 통계 전산 개발 완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5,572	15,572	-	-	15,572	15,560	99.9	-	12
2024년	17,676	17,676	-	-	17,676	17,647	99.8	-	29
2025년	21,789	34,561	-	-	34,561	33,440	96.8	-	1,121
2026년 7월	28,289	28,289	-	-	28,289	16,592	58.7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2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4년	불용	29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5년	불용	1,121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1) 중장년층취업지원(1340-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300	1340	30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평등증진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층취업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Y	N	100	0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등 중장년내일센터, 한국고용정보원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중장년층취업지원	18,443	24,844	24,844	21,117	19,927	△4,917	△19.8%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중장년층취업지원	18,443	18,443	18,443	-	-	24,844	24,844	21,361	19,927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18,343	18,343	18,343	-	-	22,923	22,923	21,077	19,747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100	100	100	-	-	121	121	85	-
· 일손부족일자리동행 인센티브	-	-	-	-	-	1,800	1,800	200	18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중장년층취업지원	18,443	18,443	18,443	-	-	24,844	24,844	21,361	19,927
· 일반수용비(210-01)	-	-		-	-	26	26	13	80
·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100	-	-	121	121	85	-
· 기타보전금(310-04)	-	-	-	-	-	1,800	1,800	200	180
· 민간경상보조(320-01)	18,343	18,343	18,343	-	-	21,434	21,434	19,600	19,157
· 출연금(350-02)	-	-	-	-	-	1,463	1,463	1,463	51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사업목적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40세 이상 중장년(재직자 및 구직자)이 제2의 근로생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한 생애경력설계, 재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1-2)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목적	50세 이상 퇴직자 재취업 및 장기근속, 구인난 기업 인력충원
사업내용	적극적 구인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미충원율 높은 일손부족 일자리와 50대 이상 퇴직자를 매치, 장기근속을 유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
추진경위	- '93. 7. 1.부터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96.7.29.부터 퇴직한 고급·중견경력인력의 취업알선과 상담·자문 활동 지원을 위해 고급인력정보센터 설치·운영 -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 고령자인재은행 확대, 경력인력에 대한 종합 취업서비스기관으로 확대개편 등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방안 포함 - '09년 국정과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고령자인재은행을 '훈련-고용-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대 개편 - '12년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년 고용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장년고용연구지원사업 추진 - 중장년층 전직지원사업 개편 방안('12.9.)을 마련, '13.1월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15개소)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6개소)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통합·개편 - '14. 9. 24.「장년고용 종합대책」에 따라 '15년부터 준비 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장년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생애설계 서비스 사업 시행 - '17. 8. 8.「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및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17~'21)을 통해 생애경력설계를 토대로 인생 3모작 지원을 위한 경로별 맞춤형 서비스 방안 제시 - 국정과제 18-4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해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지원과 - '23. 1. 1.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명칭 변경 - '23년 국정과제 52-① 일자리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전달체계 간 연계·협업을 통한 대상별 특화 서비스)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3~'27년)을 통해, 고용센터 중심의 연계협업 및 중장년 특화 취업지원 강화

	- '23. 12. 31. 지자체 등 고령자 취업지원 전달체계와 유사·중복 등으로 '고령자인재은행' 민간보조 사업 종료 - '25년 국정과제 92-1 정년연장과 중장년일자리지원,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활성화 및 중장년 재취업지원패키지 지원 강화 등 - '26년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설하여,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24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 퇴직 본격화, 50대 고용률 지속 감소추세)에 따른 50대 취업 지원제도 시범 운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6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2,281	20,052	18,443	24,844	19,92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등

○ 사업시행주체 :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등 중장년내일센터,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40세 이상 중장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	법적근거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직접	고용센터	80	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조의4
	보조	노사발전재단 등 중장년내일센터 40개소	19,157	100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510	100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직접	고용센터	180	100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4,844	19,927	△4,917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22,923	19,747	△3,176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121	-	△121
일손부족일자리동행인센티브	1,800	180	△1,620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2026년) 22,923 → (2027년 정부안) 19,747백만원, △13.9%**

- (설명) 중장년층의 원활한 이전직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 패키지 지원을 지속하되, 교육 대상별로 재구조화 및 전산 예산 효율화 등 '26년 대비 13.9% 감액

- (산출)

가)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사업운영** 6,493백만원
= 중장년고용네트워크 186백만원*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6,307백만원**

* 일자리협의체 운영 106백만원 + 지방관서 일반수용비 80백만원

** 생애경력설계 4,303백만원
+ 전직스쿨 등 개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1,428백만원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 신규 등 기업 대상 중장년내일센터 교육프로그램 576백만원

나) **중장년내일센터 인프라** 13,254백만원*

* 인건비 11,448백만원 + 운영비 1,296백만원 + 고용24 유지보수 510백만원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2026년) 121 → (2027년 정부안) 0, △100.0%**

- (설명)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민간위탁기관종사자 교육으로 통합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2026년) 1,800 → (2027년 정부안) 180, △90.0%**

- (설명) '26년 이월분만 편성
- (산출) 100명 × 0.3백만원 × 6개월('26년 이월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중장년 고용률(40~60대)(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72.1	72.6
실적	72.0	72.0	72.5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40~60대 취업자수)/(40~60대 인구)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5년 실적(72.5%) 대비 목표 0.1%p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알선 189,723건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자 수 58,855명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50,207명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컨설팅 410개소
2024년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자 수 65,147명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56,102명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컨설팅 360개소
2025년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자 수 74,094명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60,236명
2026년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자 수 60,688명 ('26.7월말 현재)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51,221명 ('26.7월말 현재)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센터·중장년내일센터·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중장년 고용네트워크' 통해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제공함으로써 중장년의 경력개발 및 신속한 이·전직 지원

* 중장년 적합직무 발굴·생애경력설계·훈련·일경험·장려금 등 자역맞춤형 종합 고용서비스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 (직접수행) 고용센터 직접 집행(일반수용비 80백만원)
- (민간보조)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 등 중장년내일센터에 보조금 교부(민간경상보조 19,157백만원)
- (출연금)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금 교부(출연금 510백만원)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고용센터 직접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결과 : 감액 ○ 의견 : 성과 높으며, 유일한 중장년 특화 고용 인프라로 사업 예산 유지될 필요 있음, 다만, 전산 개발 등 소폭 감액 가능
보조사업 연장평가	2025년	○ 의견 : 사업운영개선 ○ 결과 : 지자체·고용센터와 협력모델 구축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양호 ○ 결과 : 중요성이 높으며, '중장년고용네트워크'와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중심 재편하여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향후 투입 중심 체계에서 성과 중심 체계로 고도화할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2,281	22,281	-	-	22,281	22,128	99.3	15	138
2024년	20,052	20,052	15	-	20,067	20,067	100	-	-
2025년	18,443	18,443	-	-	18,443	18,443	100	-	-
2026년	24,844	24,844	-	-	24,844	21,361	86.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월	15	용역계약기간에 따른 잔금 이월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중장년내일센터 개요 및 현황

(참고 2)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사업 개요

(참고 3)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개요

참고 1 중장년내일센터 개요 및 현황

□ 개요

○ 40세 이상 중장년 등에게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종합 고용서비스 통해 원활한 이·전직 지원

* 취업자 실적: ('24년) 65,147명→ ('25년) 74,094명 <전년 대비 13.7%↑>
생애경력설계 실적: ('24년) 56,102명→ ('25년) 60,236명<전년 대비 7.4%↑>

○ '26.3월 기준, **전국 40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중

합계	노사발전재단	민간(지역경총, 지역상의 등)
40개소	지역센터 12개소	28개 센터

□ 주요 프로그램

○ **(생애경력설계)** 중장년의 연령, 취업 여부, 종사업종 등 고려해 직업역량, 가치관 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6시간 이상)

○ **(전직스쿨)** 퇴직(예정)자 등의 실직 불안감을 해소하여 변화에 준비, 새로운 진로 탐색 및 경력목표·실행계획 수립(4시간 이상)

○ **(재도약 프로그램)**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면접·입사지원서 작성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20시간 이상)

○ **(지역 채용수요 연계형 수시교육)** 지역의 **산업·기업 수요**에 부합한 **단기 직무교육**을 구직자에 제공, 인재 매칭(18~45시간)

○ 신규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의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과정** 운영

* '27년 신규 의무 부담하는 500~999인 기업

** 기존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업 대상 교육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과정으로 통합

□ 특화 서비스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적합 일자리 발굴부터 생애경력설계, 훈련·일경험,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전반을 패키지로 제공

* "**중장년고용네트워크**"(고용센터+내일센터 중심, 유관기관 참여)를 통해 운영, **'25년 15개소** 시범 운영→ **'26년 40개 내외**로 확대

□ 중장년내일센터 분포 현황

○ 노사발전재단 운영 중장년내일센터(12개소)

연번	센 터 명	소 재 지
1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 385, 3~4층 (준타워)
2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층 (BYC하이시티빌딩)
3	인천중장년내일센터	인천 남동구 미래로 7, 3층 (현대해상빌딩)
4	경기중장년내일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3층 (권선동, 안동빌딩)
5	강원중장년내일센터	강원 원주시 남원로 528, 2층 (단구동, KT링커스빌딩)
6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4, 11층 (흥국생명빌딩)
7	울산중장년내일센터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4, 2층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8	대구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7층 (동인동2가, 호수빌딩)
9	광주중장년내일센터	전남광주 북구 금남로 136, 4층 (누문동, 교보빌딩)
10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5층 (효자동2가, BYC빌딩)
11	충청중장년내일센터	대전 서구 둔산중로 8, 15층 (탄방동, 교원공제회관)
12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3층(이도1동, 제주고용센터)

○ 민간 비영리법인 운영 중장년내일센터(28개소)

연번	지역	민간 운영기관명	소 재 지
1	서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3층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2		(사)한국커리어 서울동부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9 대동빌딩 13층
3		(재)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6층(에프케이아이타워)
4	인천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계산동, 인천북부고용센터)
5	경기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49, 2층(가능동,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6		고양상공회의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A동 4층(장항동, 라페스타)
7		파주상공회의소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8층 (금촌동,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8		안산상공회의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0, 안산상공회의소 A동 3층(고잔동)
9		평택상공회의소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2층 (이충동,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51 부천고용센터 4층
11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앤플러스빌딩 용인고용센터 4층
12	강원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 강릉고용센터2층
13	부산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12층 (양정동, 양정타임스퀘어)
14	울산	(사)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 남구 대학로 60, 3층 (무거동)
15	경남	(사)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28번길 6, 센트랄빌딩 5층
16		(사)한국커리어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1길 6-1, 보배빌딩 2층
17	대구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1층(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18	경북	(사)경북경총 경북동부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1(상도동), 대운개발빌딩 3층
19		(사)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 구미시 백산로118, 3층(송정동,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		(사)경북경총 경북북부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2층(안공고용복지플러스센터)
21	광주	(사)광주경영자총협회	전남광주 북구 금남로 121, 1층 (북동,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22	전북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1 익산고용센터
23	전남	목포상공회의소	전남광주 목포시 평화로 5, 2층 (상동,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24		(사)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광주 순천시 우석로 7, 2층 (덕월동,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25	대전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6층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6	충북	(사)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6번길 76, 직지스마트타워 908호
27	충남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5층
28		(재)충남경제진흥원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석남동, 서산고용센터)

참고 2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사업 개요

□ 목적

○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부터 생애경력설계, 훈련·일경험, 취업알선·장려금 등 재취업 지원까지 정책 패키지로 제공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운영 모델 >



□ 주요 서비스 내용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중장년내일센터)

- 참여자의 연령, 취업 여부, 종사업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역량, 가치관 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 **중장년 경력지원제** (일경험, '26년 2천명 목표)

- **경력전환**을 희망하여 **훈련·자격 취득한 50대 이상 중장년 퇴직자**가 관련 분야의 **현장 경력**(일경험 1~3개월)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26년 7.7천명 목표)

- 중장년 친화 직종에 대한 **기술 습득 및 자격 취득** 관련 특화훈련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26년 시범, 1천명 목표)

- **미충원율 높은 업종**에 **장기근속**한 50대 이상 중장년에 보조금 제공

□ 추진체계 : 고용센터 내 「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

* '25년 15개 고용센터 시범 운영 → '26년 40개 내외로 전국 확대

○ **고용센터+중장년내일센터 중심**으로 지역 취업지원 유관기관 참여해 **개인·기업 맞춤 고용서비스 지원**,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 확산

참고 3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개요

□ (목적)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에게 **일손부족 일자리 취업·근속**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 및 **구인난 해소 동시 해결**

□ (지원대상) '25~'26년 중 실시한 **중장년 훈련 또는 일경험*** 후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중장년 경력지원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❶ (연령) 취업일 기준 **50세~64세**

❷ (일손부족일자리 요건)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제조업·운수 및 창고업**

❸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❹ (근속요건) **'26.1.1.**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하였을 것

* '25년 취업자의 경우, '26.1.1.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 6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신청 가능('26.7.1. 이후 신청자 발생)

□ (수행주체) 7개 청 고용센터

■ 처리절차: ① 6개월 이상 근속 중장년, 신청서(근로계약서 첨부) 접수 → ② 신청자의 훈련(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국기훈련, 산대특)·일경험(중장년 경력지원제) 수료 여부 확인 → ③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속기간 확인 → ④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원) '26년 전국 **1,000명**

사 업 명
(42) 상생협력 확산지원(2031-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2000	2031	3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노사정책	노사협력	상생협력 확산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Y	N	50% 등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상생임금 확산지원	노동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노사협력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노동정책총괄과 노사관계법제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상생협력 확산지원	8,518	11,751	11,751	53,341	14,591	2,840	24.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542	8,542	8,518	17	7	11,751	11,768	8,254	14,591
·상생임금확산지원	5,918	5,918	5,918	-	-	7,818	7,818	5,294	4,498
·상생의노사문화구축	2,624	2,624	2,600	17	7	3,933	3,950	2,960	10,093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542	8,542	8,518	17	7	11,751	11,768	8,254	14.591
·일반수용비(210-01)	427	368	364	-	4	497	348	224	547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	7	6	-	1	15	15	2	15
·특근매식비(210-05)	21	12	12	-	-	21	21	5	21
·임차료(210-07)	7	13	12	-	1	7	7	7	7
·일반용역비(210-14)	884	884	884	-	-	1,024	1,173	990	1,834
·국내여비(220-01)	9	60	60	-	-	9	9	2	9
·사업추진비(240-01)	82	82	81	-	1	82	82	59	82
·일반연구비(260-01)	300	319	302	17	-	99	116	61	99
·정책연구비(260-02)	-	-	-	-	-	400	400	280	10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5,480
·민간위탁사업비(320-02)	5,435	5,435	5,435	-	-	7,035	7,035	4,694	3,83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160	1,160	1,160	-	-	2,060	2,060	1,430	2,060
·사업출연금(350-02)	200	200	200	-	-	500	500	500	500
·자산취득비(430-01)	2	2	2	-	-	2	2	-	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상생임금확산지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고령화·저출산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변화 지원

(1-2) 상생의노사문화구축

○ 노사 간 대화와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고, 노사갈등 예방 관리 등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조성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추진경위	- '22.7월 110대 국정과제에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50번)',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51번)'을 포함하여 발표 → 직무 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 원하청 협력, 상생의 노사관계,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등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 확산지원사업' 신설('24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21,010	8,542	11,751	14,59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수탁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등

○ 사업 수혜자 : 기업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상생임금확산지원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500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상생의노사문화 구축	보조	지자체 보조	2,060	광역 50±5%, 기초 80±5%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제122호
		노동단체	3,680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영리법인	1,800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751	14,591	2,840
상생임금 확산지원	7,818	4,498	△3,320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3,933	10,093	6,160

① 상생임금 확산지원 (2026년) 7,818 → (2027년 정부안) 4,498백만원, △42.5%

○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지원: (2026년) 6,400 → (2027년 정부안) 3,200백만원, △50.0%
- (설명)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원 요구
- (산출) 3,200백만원 = (민간) 6개x283백만원 + (공공) 5개x200백만원+실태조사 1건x500백만원

○ 임금정보 등 제공: (2026년) 635 → (2027년 정부안) 635백만원(전년동)
- (설명)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최신 이슈에 대한 적시성 있는 심층 연구로 현장 맞춤형 임금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시장임금 데이터·연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6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635백만원 = 실태조사 3건 x 100백만원 + 기획연구 3건 x 90백만원 + 임금정보브리프 발간 5회 x 2백만원 + 임금동향 및 이슈분석 55백만원 등

○ 인프라 운영·개선: (2026년) 500 → (2027년 정부안) 500백만원(전년동)
- (설명) 25년 신규 오픈한 임금직업포털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인프라 개선(기업·구직자 맞춤형 데이터 관리,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26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500백만원 = 유지·보수 370백만원 + 콘텐츠 개발 130백만원

○ 운영비: (2026년) 283 → (2027년 정부안) 163백만원, △42.4%

②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2026년) 3,933 → (2027년 정부안) 10,093백만원, +156.6%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지원: (2026년) 2,110백만원 → (2027년 정부안) 2,110백만원(전년동)
- (설명) 노동자 이해대변 확대 및 지역 현안 해결 추진을 위한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자 '26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 지자체 경상보조 2,060백만원 = (광역) 17개소×70백만원 + (기초) 30개소×29백만원

㉡ 운영비 50백만원

○ 27신규(이관)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2027년 정부안) 5,580백만원(순증)

※ 취약노동자지원(2031-303) 세부사업 재편에 따라 상생협력 확산지원(2031-301)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이관

- (설명)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정책개발, 교육·상담 등 다양한 사업 비용 일부 지원
- (산출)

㉠ 노동단체 지원 3,73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680백만원(92백만원×40개소), 일반용역비 50백만원

㉡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1,85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1,800백만원(60백만원×30개소), 일반용역비 50백만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고용 심사 및 평가: (2026년) 150백만원 → (2027년 정부안) 830백만원(+680백만원)
- (설명)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처우개선을

선도하여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이행력 제고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 평가단을 구성·체계적 평가(기존 자회사 평가 통폐합)

※ (관련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처우개선 대책('26.4, 관계부처합동), 도급운영개선방안('26.4, 관계부처합동)

- (산출) 전문평가위원 수당 및 위탁사업비 830백만원

○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등: (2026년) 300백만원 → (2027년 정부안) 0백만원(순감)

- (설명)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등 감액 요구

○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 지원: (2026년) 219백만원 → (2027년 정부안) 219백만원(전년동)

- (설명)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유지보수, 노조 회계투명성 인식 제고 및 제도 안착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예산 요구
- (산출)

㉠ 시스템 유지보수 99백만원

㉡ 회계감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20백만원

○ 노동절 기념행사: (2026년) 200백만원 → (2027년 정부안) 400백만원(+200백만원)

- (설명) 62년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노사정이 함께 기념하고, 온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국가적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증액 요구
- (산출) 기념행사 용역비 300백만원, 행사 홍보 등 운영비 100백만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장안착 지원: (2026년) 100백만원 → (2027년 정부안) 100백만원(전년동)

- (설명) 개정 노조법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매뉴얼 및 해설서 제작·배포 50백만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 50백만원

○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기반 구축: (2026년) 854백만원 → (2027년 정부안) 854백만원(전년동)

- (산출)

㉠ 노사협력 및 갈등 예방을 위한 매뉴얼, 교육자료 발간 등 일반수용비 397백만원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발간, 노사 협력체계 구축 관련 자료 유인 등 200백만원
- 노동정책 설명자료집, 취약업종 노사관계 가이드, 우수기업협의회 사례집 발간 등 197백만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동절 등 포상·행사 등 일반용역비 및 임차료 228백만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동절 등 정부 포상 일반용역비 221백만원
- 노사정책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관련 임차료 7백만원

㉢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연구비 100백만원

㉣ 전문가 회의, 간담회 및 노사분규 현장 지도 등 사업추진비 및 국내여비 91백만원

- 노사, 노노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회의 등 사업추진비 82백만원
-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 등 현장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9백만원

㉤ 기타 운영비 등 38백만원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교육자료 송부 등 공공요금및제세 15백만원
- 특근매식비(21백만원), 자산취득비(2백만원) 등 23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일터혁신 실태조사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55.5점	55.6점	55.0점	54.9점
실적	-	55.9점	54.5점	-	-
달성도	-	100.7%	98.0%	-	-

- 측정산식 :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항목을 점수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54.8점) 대비 0.1점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외부 전문 연구 기관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 상생임금 확산지원 사업 - 임금·직무 정보 제공(임금정보브리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등) -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3개 업종 지원) -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 ○ 상생연대 형성지원 - 참여기업 4개 선정, 기업출연금 및 보조금 총 116억원 재원 형성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 56개 지자체 1,160백만원 지원 ○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근로자이음센터 전국 6개소 개소 및 오프라인 13,690건, 온라인 1,731건 상담 - 취약근로자 교육, 법률구조상담 등 위해 28개 지자체 1,009백만원 지원
2025년	○ 상생임금 확산지원 사업 - 임금·직무 정보 제공(임금정보브리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등) -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4개 업종 지원) - 임금직업포털 운영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 49개 지자체 1,160백만원 지원
2026년 7월	○ 상생임금 확산지원 사업 - 임금·직무 정보 제공(임금정보브리프, 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정보 등) -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6개 업종 지원) - 임금직업포털 운영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 57개 지자체 2,060백만원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합리적인 임금체계 자율 개선 확산
- 지역노사민정 협력 및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강화 및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확대
- 노동절 기념행사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 체감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
- 개정 노조법 현장안착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상생임금확산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 지원

사업 공고 및 선정	고용노동부
⇩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고용노동부, 수탁기관
⇩	
사업 수행	수탁기관
⇩	
이행점검	고용노동부, 수탁기관

○임금정보 등 제공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	
사업 수행	한국노동연구원

○인프라 운영·개선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출연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행	한국고용정보원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공모 및 선정	고용노동부
⇩	
보조금 신청	지자체
⇩	
보조금 교부	고용노동부
⇩	
사업 수행	지자체
⇩	
중간 점검	고용노동부
⇩	
실적 및 정산 보고	지자체
⇩	
정산 확인 및 평가	고용노동부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	심사 및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	중간 점검	→	보조금 정산	→	사업 평가
고용 노동부		단체 등		심사위원회		고용 노동부		단체 등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회계법인		외부 기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고용 심사 및 평가

공모및선정 (고용노동부) 신청 ⇨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 **사업수행**(용역비 지급) **및 중간점검** (전문기관/고용노동부) ⇨ **평가보고서 발간 및 용역비 정산** (고용노동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구성 및 연계성이 적절함 ○ 결과 : 보통, 86.8점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의 정량적 성과 및 임금체계 변화 여부 점검 필요(사업개선) ○ 결과 : 표준임금체계모델 현장 활용·채택(건) 등 정량적 성과지표(KPI) 신설·운영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시정요구	2024년	○ 지적 : 내내역사업인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 ○ 조치 : 근로자 이음센터의 점진적 폐지 및 관련사업 일원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 완료하였음
		○ 지적 :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중복 지원 ○ 조치 : '25년부터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유형 개선함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	21,010	21,010	21,010	-	21,010	20,415	97.2	-	595
2025년	8,542	8,542	8,542	-	8,542	8,518	99.7	17	7
2026년	11,751	11,751	11,751	17	11,768	8,254	70.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4년	전용	60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025년	전용	70	일반연구비,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3) 취약노동자지원(2031-30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2000	2031	303
명칭	보건·복지· 고용	노동	노사정책	노사협력	취약노동자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Y	N	70% 등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취약노동자지원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플랫폼 노동 통계 구축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특고·플랫폼·자영업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	-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취약노동자지원	13,429	25,345	25,345	18,664	14,401	△10,944	△43.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5,989	15,989	13,429	6	2,554	25,345	25,351	16,832	14,401
·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	-	-	-	-	1,325	1,325	958	3,000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	-	-	-	-	200	200	50	400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2,063	2,063	1,878	6	179	2,500	2,506	1,149	6,745
· 플랫폼 노동통계 구축	-	-	-	-	-	-	-	-	1,935
· 특고·플랫폼·자영업자 직업훈련	-	-	-	-	-	-	-	-	413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930	930	913	-	17	930	930	892	930
·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4,446	4,446	4,446	-	-	2,248	2,248	1,576	978
· 취약노동자 보호	1,918	1,918	1,915	-	3	2,362	2,362	1,612	-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	-	-	-	-	15,780	15,780	10,595	-
· 취약노동자 상생 복지지원	6,632	6,632	4,277 (4,272)	-	2,355	-	-	-	-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5,989	15,989	13,429	6	2,554	25,345	25,351	16,832	14,401
· 일반수용비 (210-01)	187	187	187	-	-	320	320	195	155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0	10	9	-	1	518	518	356	-
· 특근매식비 (210-05)	17	17	16	-	1	20	20	6	-
· 임차료(210-07)	15	15	15	-	-	12	12	5	-
· 일반용역비 (210-14)	4,636	4,636	4,625	-	11	3,808	3,808	2,608	2,762
· 국내여비(220-01)	154	154	153	-	1	144	144	23	-
· 사업추진비 (240-01)	65	65	65	-	-	62	62	25	26
· 일반연구비 (260-01)	175	175	169	6	-	726	732	210	100
· 민간경상보조 (320-01)	8,081	8,081	5,561	-	2,520	6,754	6,754	4,935	1,443
· 민간자본보조 (320-07)	-	-	-	-	-	10,200	10,200	6,630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649	2,649	2,629	-	20	2,581	2,581	1,789	7,800
· 사업출연금 (350-02)	-	-	-	-	-	200	200	50	2,11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 하에서는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지원

(1-1)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역·현장 밀착형 노동권익 보호 인프라 지원

·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 지자체 연계형 노동센터가 노무제공자 권익보호 목적으로 제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개선 비용 지원

· (노동권익허브 구축·운영) 현장 밀착형 지원 인프라(예: 지역 노동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지원체계(현장지원단) 구축·운영

· (취약노동자 타운홀 미팅 운영)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직종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1-2)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체불된 보수의 회수 과정에서 국가 조력 無
→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미수금 회수시 법률서비스 지원

(1-3)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 근로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일터개선 지원사업 운영

(1-4) 플랫폼 노동 통계 구축

○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편입을 위한 본조사 및 업종별 실태 점검 추진

(1-5) 특고·플랫폼·자영업자 직업훈련

○ 전통적 근로자 대비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특고·플랫폼·자영업자 대상 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1-6)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

(1-7)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 전통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노동관서와 달리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특화된 고충 해결 및 교육, 고용노동정책 연계를 수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률구조법」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법률구조법」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안)제19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현황, 일하는 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로서 일하는 사람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추진경위	○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20.12.21., 관계부처 합동) ○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방안('21.9.30., 관계부처 합동) ○ 국정과제('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24.12.24. 발의)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15,989	25,345	14,40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등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등

○ 사업 수혜자 : 취약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보조	지자체	1,50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보조	지자체	6,30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	기업 등	15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출연	대한법률 구조공단	400	100%	법률구조법 제21조, 제24조
플랫폼노동 통계 구축	출연	한국 고용정보원	1,715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특고·플랫폼 자영업자 직업훈련·	보조	협·단체 등	393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보조	기업	9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5,345	14,401	10,944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1,325	3,000	1,675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200	400	200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2,500	6,745	4,245
플랫폼 노동통계 구축	-	1,935	1,935
특고·플랫폼 자영업자 직업훈련	-	413	413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930	930	-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2,248	978	△1,270
취약노동자 보호	2,362	-	△2,36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법률지원	15,780	-	△15,780

○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2026년) 1,325 → (2027년 정부안) 3,000백만원**

- (1)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노동센터가 노무제공자 권익보호목적으로 제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2)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간 연계, 노하우 공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권익 허브 운영, (3) 다양한 직종의 취약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지원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2026년) 200 → (2027년 정부안) 400백만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적 시스템을 통한 임금체불 구제가 가능하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공적 시스템을 통한 지원 불가 → 이에 미수금이 발생한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 법률구조 비용 지원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2026년) 2,500 → (2027년 정부안) 6,745백만원**

- (1) 직종·지역별로 상이한 노무제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노무제공자 안전망 구축, (2)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 연구 및 (3) 전문가 자문회의

○ 플랫폼 노동 통계 구축 **(2027년 정부안) 1,935백만원**

- 플랫폼 노동의 정확한 실태 진단 및 과학적 기초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시행·평가 필요 → 국가승인 통계 마련을 위한 조사 비용 반영

○ 특고·플랫폼·자영업자 직업훈련 **(2027년 정부안) 413백만원**

- AX·DX에 따른 특고·플랫폼·자영업자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2026년) 930 → (2027년 정부안) 930백만원**

- 30인 미만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2026년) 2,248 → (2027년 정부안) 978백만원**

-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및 민간 노동센터로의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해 취약노동자 지원기구인 근로자 이음센터 단계적 축소 계획 반영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일터혁신 실태조사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55.5	55.6	55.0	54.9
실적	-	55.9	54.5	-	-
달성도	-	100.7	98.0	-	-

- **측정산식 :**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항목을 점수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23~'25년) 실적치 평균(54.8점) 대비 0.1점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외부 전문 연구 기관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년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을 플랫폼노동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하여 실시
2026년	- 민간노동센터 34개소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민간 10개소, 자치단체 34개소 일터개선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권리 밖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 및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사업 공고 및 선정	고용노동부
↓	
사업 추진	위탁기관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지원 신청	노무제공자 → 법률구조공단
↓	
접수 및 심사	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 → 노무제공자
↓	
사후 정산 요청	법률구조공단 → 고용노동부
↓	
출연금 교부	고용노동부 → 법률구조공단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사업공모	고용노동부
↓	
공모신청	자치단체, 민간기업
↓	
심사 및 선정	고용노동부
↓	
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	
회계정산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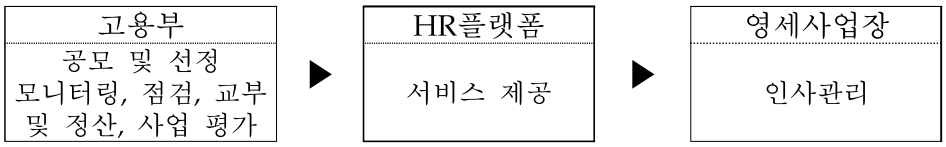
▪ **플랫폼 노동 통계 조사**

연간 사업계획 수립	고 용 노 동 부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출연	고 용 노 동 부
↓	
사업수행	위 탁 기 관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 용 노 동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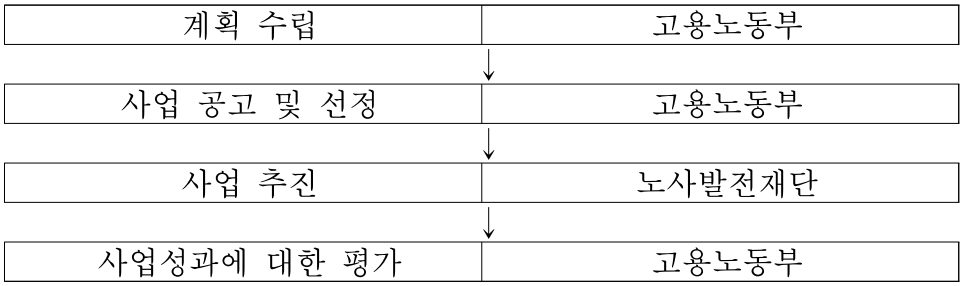
▪ **특고·플랫폼·자영업자 직업훈련**

훈련기관 선정 (인력공단)	⇨	훈련과정 설계 (관련 협·단체, 플랫폼社)	⇨	훈련제공 (관련 협·단체, 플랫폼社)	⇨	모니터링 및 관리 (인력공단)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정책적 필요성과 집행 안정성이 인정되나, '26년 신규 보조사업(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서 제한적인 감액 필요 ○ 결과 : 감액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	2025년	(취약노동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 지적 : 기존 고용서비스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조치 : 근로자 이음센터 입지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적극 활용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5년	15,989	15,989	-		15,989	13,429	84.0%	6	2,554
2026년	25,345	25,345	6		25,351	16,832	66.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사 업 명
(44)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2031-30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2000	2031	305
명칭	사회복지	노동	노사정책	노사협력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전생애노동교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갈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교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인프라구축개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년일자리발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8,763	21,105	21,105	25,701	22,644	1,539	7.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763	18,763	18,763	-	-	21,105	21,105	17,588	22,644
·전생애노동교육	6,526	6,526	6,526	-	-	7,365	7,365	6,138	8,145
·노사갈등예방교육	1,441	1,441	654	-	-	1,741	1,741	1,451	1,741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교육	2,929	2,929	2,929	-	-	2,929	2,929	2,441	2,578
·교육인프라구축개선	2,537	2,537	2,537	-	-	2,615	2,615	2,179	2,334
·청년일자리발굴	-	-	-	-	-	-	-	-	82
·기관운영비	10,253	10,253	10,253	-	-	10,566	10,566	8,805	11,099
·수입	△4,923	△4,923	△4,136	-	-	△4,111	△4,111	△3,426	△3,33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8,763	18,763	18,763	-	-	21,105	21,105	17,588	22,644
·사업출연금(350-02)	18,763	18,763	18,763	-	-	21,105	21,105	17,588	22,64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전생애노동교육

사업목적	노동존중문화 확산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
사업내용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방향 및 체계 수립, 노동권 보호 교육 실시, 콘텐츠 개발, 전문가 양성

(1-2) 노사갈등예방교육

사업목적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 제고를 통한 노사갈등 예방
사업내용	민간·공공부문 노동자 및 사용자 대상 노사관계 교육 실시

(1-3)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교육

사업목적	고용노동행정분야의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 양성
사업내용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 대상 직무분야별·단계별 체계적 교육 실시

(1-4) 교육인프라구축개선

사업목적	교육생 친화적인 고용노동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전 생애 노동교육 플랫폼 구축·개선, 노후화된 건물·설비 적시 보수 및 지역거점센터 운영

(1-5)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목적	청년 대상 공공가치 창출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직무경험과 역량 개발 기회 부여
사업내용	디지털 홍보 및 교육콘텐츠 개발 분야 청년 일자리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8930호) -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추진경위	○ ’8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문노동교육기관((재)한국노사교육본부)으로 출범 ○ ’90년 한국노동교육원법 공포 및 한국노동교육원 설립((재)한국노사교육본부 승계) ○ ’99년 한국노동교육원법 개정에 따라 노동행정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인수 ○ ’03년 한국노동교육원법 개정에 따라 사업영역 및 교육대상을 일반국민으로 확대 ○ ’08년 한국노동교육원법 폐지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운영 ○ 한기대-연수원 간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미비에 따라 연수원 독립기관화 방안 마련 및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공포(’20.3월) ○ ’20.10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 ○ ’22.6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에 청년 포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9,153	19,654	18,763	21,105	22,64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사업 수혜자 :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출연	한국고용노동 교육원	22,644	10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1,105	22,644	1,539
전생애노동교육	7,365	8,145	780
노사갈등예방교육	1,741	1,741	-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교육	2,929	2,578	△351
교육인프라구축개선	2,615	2,334	△281
청년일자리발굴	-	82	82
기관운영비	10,566	11,099	533
수입	△4,111	△3,335	776

○ 전생애노동교육 **(2026년) 7,365 → (2027년 정부안) 8,145백만원, +10.6%**

- (설명) 청년·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확대, 고용서비스민간위탁종사자교육 인건비 이체 및 동 사업 임시직 처우개선 등이 반영되어 '26년 대비 10.6% 증액

- (산출) 128,370명×63,449원
  * 사업확대 : ('26년) 101,370명 → ('27 정부안) 128,370명

○ 노사갈등예방교육 **(2026년) 1,741 → (2027년 정부안) 1,741백만원, 전년 동**

- (설명) 민간·공공부문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관계교육 등 전년 수준 예산 반영
- (산출) 17,090명×101,872원

○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교육 **(2026년) 2,929 → (2027년 정부안) 2,578백만원, △12.0%**

- (설명)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 대상 직무분야별·단계별 교육 예산 감액 반영
- (산출) 10,130명×254,491원

○교육인프라구축개선 **(2026년) 2,615 → (2027년 정부안) 2,334백만원, △10.7%**

- (설명) 정보시스템 구축, 노후화 설비 개·보수, 지역거점센터 운영 예산 감액 반영
- (산출) 정보시스템 구축 1,253백만원 (251백만원×5식), 노후건축보수 638백만원 (213백만원×3개소), 지역거점센터 운영 443백만원 (221.5백만원×2개소)

○ 청년일자리 발굴 **(2026년) 0 → (2027년 정부안) 82백만원, 순증**

- (설명) 노동교육 및 기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3명분 예산 반영
- (산출) 27.3백만원×3명

○ 기관운영비 **(2026년) 10,566 → (2027년 정부안) 11,099백만원, +5.0%**

- (설명)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반영
- (산출) 인건비 9,922백만원('27년 정기증원, 공통처우개선 등 반영), 경상비 1,177백만원(공공요금, 제세, 유류비 부족분 및 증원 연동 필수경비 반영)

○ 수입 **(2026년) 4,111 → (2027년 정부안) 3,335백만원, △18.9%**

- (설명)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이월결산잉여금 반영
- (산출) 사업수입 2,199백만원(최근 5년 평균), 사업외수입 205백만원(최근 3년 평균), 전기이월금 931백만원(최근 3년 평균 결산잉여금)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교육 수료인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83,550명	87,240명	87,440명	87,560명	87,560명
실적	89,494명	88,800명	117,221명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7.1%	101.8%	134.1%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당해연도 교육 수료인원 실적(노동부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제외)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026년 사업계획 인원
- **자료수집방법/출처** : 사업결과보고서

○ **성과지표: 교육 만족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4.30점	4.30점	4.36점	4.41점	4.41점
실적	4.47점	4.53점	4.57점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4.0%	105.3%	104.8%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수강생 대상 5점 척도 교육만족도 평균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025년 목표치+'23~'25년 만족도 실적 증가분의 평균
- **자료수집방법/출처 :** 사업결과보고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B등급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교육 확대로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 집중교육(총 673회) - 국정과제인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적극 이행을 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과정 신설 및 혁신성과 공유회 최초 개최(총 33회 1,036명)
2024년	-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B등급 - 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우수기관(A등급) 선정에 따른 표창장 수상(교육부) - 특고·플랫폼 권리보호교육 수요 직종 확대(6개→8개)를 통한 정부정책(노동약자지원법) 대응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우수 등급
2025년	-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B등급 - 교육부 우수기관 인증(갱신)('26.1.1~'28.12.31) -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추진을 위한 TF 운영(총 6회 회의 개최), 노동교육 발전협의회 개최, 홍보 카드뉴스 SNS 게시 -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노동권익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기관 표창 수상 - 현업적용도 평가 결과 평균 4.35점(5점 만점, 교육수료자 803명 대상)
2026년	-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단위 협의체 운영(5월) 및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9개) 및 운영 예정(8~10월)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전생애노동교육)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방향 및 체계 수립, 노동권 보호교육 실시(127,720명), 콘텐츠 개발, 전문가 양성(650명)을 통한 노동존중문화 확산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에 기여

○ (노사갈등예방교육) 민간·공공부문 노동자 및 사용자 대상 노사관계 교육을 지원(17,090명)하여,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 제고 및 노사갈등 예방

○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교육)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 대상 직무분야별·단계별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10,130명)하여, 전문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 양성

○ (교육인프라구축개선) 교육생 친화적인 고용노동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교육 플랫폼 구축·개선(5식), 노후화된 건물·설비 적시 유지·보수(3개소), 지역거점센터 운영(2개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예산처 및 국회) 사업계획 심사 및 예산 확정
-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출연 및 자금 배정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연간 사업계획 기반 사업 수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목표치가 전년과 동일하여, 합리적 목표 설정 필요 ○ 결과 : 보통
재정사업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매년 동일한 만족도 목표치 설정으로, 합리적 목표 설정 필요 ○ 결과 : 보통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성과가 산출 중심 지표에 머물러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 부족, 교육 효과에 대한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시정요구	2023회계연도	○ 지적 :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수납실적이 예산을 초과, 적정규모의 자체수입 예산 편성 필요 ○ 조치 : 자체수입 수납실적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안 추계 노력
국정감사	2024년	○ 지적 : 청소년 노동교육 강화 ○ 조치 : 교육부 업무협약 체결('24.12월) 및 '27년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예산 확보를 통한 청소년 노동교육 강화 예정
국정감사	2024년	○ 지적 :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상여금 예산 확보 필요 ○ 조치 : '25년부터 매년 20만원씩 지급
국정감사	2025년	○ 지적 : 노조법 개정 대비 노사발전재단 등과 협력하여 교재 마련, 교육 실시 등 대응방안 준비 ○ 조치 :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방안을 연구 중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운영 예정, 노사발전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개정 노조법이 원활히 장착되도록 지원 예정
결산시정요구	2025회계연도	○ 지적 :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신규사업 추진으로 기존 목적사업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및 예산 관리 강화 필요 ○ 조치 : 예산 미반영된 신규사업 즉시 폐지, 사업 신설 및 예산 변경의 경우 이사회 개최 전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안건에 상정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강화계획 수립
결산시정요구	2025회계연도	○ 지적 : 청년고용노동교육 운영 시 사회복무요원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생 등 일반 청년층으로 교육 대상 확대 필요 ○ 조치 : 대학 및 주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을 활용한 대학생 교육을 확대하고, '27년 확보한 신규 예산을 활용하여 대학 내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예정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9,153	19,153	-	-	19,153	19,153	100	-	-
2024년	19,654	19,654	-	-	19,654	19,654	100	-	-
2025년	18,763	18,763	-	-	18,763	18,763	100	-	-
2026년	21,105	21,105	-	-	21,105	17,588	83.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5)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2000	2036	311
명칭	사회복지	노동	노사정책	노사발전재단지원	노사발전재단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노사발전재단지원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노사발전재단

2. 예산 총괄표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노사발전재단지원	20,559	25,257	25,257	26,916	26,916	1,659	6.6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0,559	20,559	20,559	0	0	25,257	25,257	21,048	26,916
·노사상생협력교육	91	91	91	0	0	91	91	91	-
·글로벌노사관계지원	400	400	400	0	0	400	400	400	400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100	100	100	0	0	100	100	100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20	220	220	0	0	220	220	220	450
·일반관리비	19,748	19,748	19,748	0	0	21,546	21,546	17,337	22,086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	-	-	-	-	2,900	2,900	2,900	3,100
·자율형 노사 공동협의체 지원	-	-	-	-	-	-	-		700
·청년일자리	-	-	-	-	-	-	-		18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0,559	20,559	20,559	0	0	25,257	25,257	21,048	26,916
·민간경상보조(320-01)	20,559	20,559	20,559	0	0	25,257	25,257	21,048	26,91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사업목적	노사 간 자율적 파트너십 증진과 사전적 갈등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와 상생의 노사문화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도모
사업내용	일터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대화 기반으로 자율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업종·지역 등 초기업 단위 사회적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노사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1-2) 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사업목적	사업장 내 자율적 노사협의체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격차 완화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 도모
사업내용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는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노동자 이해대변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노사 소통 협의체 구축·운영 지원

(1-3) 글로벌노사관계지원

사업목적	해외진출기업의 진출국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
사업내용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진출국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도록 노동법 및 제도, 현지 고용이슈 관련 노무관리 자료 제작·배포

(1-4)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목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사업내용	노사발전재단의 정보화 통합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산장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조치를 통하여 기능을 개선하고 성능 유지 추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추진경위	○ 2006년 노사정 합의(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총)에 의해 노사공동의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 –(글로벌노사관계지원) 한국국제노동재단 설립에 따라 1998년부터 사업을 추진

	하여 2011년 재단 통합 이후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2025년 '글로벌노사관계지원'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025년 기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신설하여 운영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2026년 초기업 단위 상생파트너십 종합 지원을 통한 사회적 대화 기반 구축을 위해 신설하여 운영 - (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2027년 미조직·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의 자율적인 노사 소통 협의체 구축 지원을 위해 신설하여 운영(예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3,141	20,144	20,559	25,257	26,91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노사발전재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노사단체, 사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노사발전재단지원	보조	노사발전재단	26,916	10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5,257	26,916	1,659

노사상생협력교육	91	-	△91
글로벌노사관계지원	400	400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100	-	△100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20	450	230
일반관리비	21,546	22,086	540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2,900	3,100	200
자율형 노사 공동협의체 지원	-	700	700
청년일자리	-	180	180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2026년) 2,900 → (2027년 정부안) 3,100백만원, +6.9%**

- (설명) 원·하청, 지역, 업종 등 현장 중심의 상생모델 구축을 위해 현장 지원 교육/코칭/프로그램 지원을 패키지 지원
- (산출) 3,100백만원(노사상생 배움터 2,000명×0.1백만원 + 코칭 100개소×3백만원 + 프로그램 지원 100개소×26백만원)

○ 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2027년 정부안) 700백만원, 신설**

- (설명)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는 3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 등의 노동자 이해대변 강화를 위해 노사협의회에 준하는 자율적인 노사 소통 협의체 구축·운영 지원
- (산출) 700백만원(현장코칭 등 설치·운영 지원 70개소×10백만원)

○ 글로벌노사관계지원: **(2026년) 400 → (2027년 정부안) 4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진출국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도록 노동법 및 제도, 현지 고용이슈 관련 노무관리 자료 제작(배포) 지원
- (산출) 400백만원(노무관리 자료 발간 8국×33백만원+1회×36백만원 + 한·일 노동협력 4회×25백만원)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026년) 220 → (2027년 정부안) 450백만원, +104.5%**

- (설명) 기관의 안정적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지원
- (산출) 450백만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1건×450백만원)

○ 일반관리비: **(2026년) 21,546 → (2027년 정부안) 22,086백만원, +2.5%**

- (설명)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지원
- (산출) 22,086백만원(인건비 17,169백만원 + 경상경비 4,917백만원)

○ 청년일자리: **(2027년 정부안) 180백만원, 신설**

- (설명) 기업의 지속가능한 일터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발굴,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운영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 (산출) 180백만원(인건비 134백만원 + 운영비 46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일터혁신 실태조사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55.5점	55.6점	55.7점	54.9점
실적	54.0점	55.9점	54.5점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	100.7	98.0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항목을 점수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대비 0.1점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외부 전문 연구 기관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노사상생협력교육(1,496명) · 노사파트너십 지원(105개소) · 외투기업(세미나 및 간담회 3회, 고용노동 뉴스레터 발간 4회, 노사관계 실태조사 1회), 해투기업(세미나 3회, 현장지원반 파견 2국, 자료발간 10종) · 일생활균형확산지원사업 교육(515명)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사업(자율진단 356개소, 개선지원 255개소, 개선상담 639회, 교육 13,585명)
2024년	· 노사상생협력교육(652명) · 해투기업 지원자료 발간(7종), 전문가 자문단 운영(4회)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사업(자율진단 353개소, 개선지원 276개소, 개선상담 627회, 교육 13,628명)
2025년	· 노사상생협력교육(881명)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30개소) · 해투기업 지원자료 발간(10종), 전문가 자문단 운영(4회)
2026년 (8월말 기준)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프로그램 지원 100개소, 코칭 93개소) · 노사상생협력교육(366명)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25개소) · 해투기업 지원자료 발간(2종), 전문가 자문단 운영(3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사업 운영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사 자치 확립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 협력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모범사례 발굴·확산

○ (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지원) 자율형 노사 공동 협의체 구축·운영을 촉진하여 사업장 내 대화·소통 활성화를 통한 근로조건 향상 및 양극화 해소 지원

○ (글로벌노사관계지원) 해외진출기업이 진출국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 및 안정적 노사관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신규 발굴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 지원 확대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안정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추진

○ (청년일자리)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실무경험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기관 고유사업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승인 교부결정	➡	교부금 신청 및 사업수행	➡	사업실적 보고	➡	보조금 정산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지원내 내역사업 전체 동일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매년 정부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적으로 운영 ○ 결과 :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정책방향을 일선에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 결과 : 보통
통합재정 사업평가	2026년	○ 의견 :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규사업 추진 등 예산 편성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3,141	23,141	-	-	23,141	23,141	100.0	-	-
2024년	20,144	20,144	-	-	20,144	20,144	100.0	-	-
2025년	20,559	20,559	-	-	20,559	20,559	100.0	-	-
2026년	25,257	25,257	-	-	25,257	25,257	1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6) 일터혁신 상생컨설팅(2039-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2000	2039	300
명칭	사회복지	노동	노사정책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컨설팅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고용노동부
총괄관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발전재단
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발전재단
청년일자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40,398	42,456	42,456	40,031	40,031	△2,425	△5.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0,756	40,756	40,398	-	358	42,456	42,456	30,341	40,031
·컨설팅	36,631	36,631	36,435	-	196	38,331	38,331	27,306	38,331
·특화프로그램	3,025	3,025	2,863	-	162	3,025	3,025	2,115	-
·총괄관리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600	600	600	-	-	600	600	420	600
·청년일자리	-	-	-	-	-	-	-	-	6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0,756	40,756	40,398	-	358	42,456	42,456	30,341	40,031
·민간경상보조(320-01)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민간위탁사업비(320-02)	40,256	40,256	39,898	-	358	41,956	41,956	29,841	39,53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컨설팅

사업목적	노사참여 기반의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자율적 혁신활동을 촉진·지원
사업내용	공정한 일터 조성, 직장문화 개선 등 노사참여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근로여건 향상 도모

(1-2) 총괄관리/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사업목적	노사참여 기반의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자율적 혁신활동을 촉진·지원
사업내용	컨설팅 지원사업장 심사·선정, 컨설팅 과정 및 수행기관 관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정보시스템 운영 등

(1-3) 청년일자리

사업목적	노사참여 기반의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자율적 혁신활동을 촉진·지원
사업내용	청년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실무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일터혁신 과정과 성과를 기록·분석하고, 정책 확산 콘텐츠로 제작하는 일터혁신 현장리포터 운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의 고용, 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정과제: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금지
추진경위	○ ('16년) 고성과근무체계개선, 내일희망일터혁신, 시간선택제일자리,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으로 통합 ○ ('17년) 장년고용안정 컨설팅 이관통합, 일가정양립 컨설팅 신설 통합 ○ ('24년) 일터혁신, NCS기업활용, 공동주택경비원 근무체계개편, 장시간근로현장지원단 방문 컨설팅을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으로 통합 ○ ('25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NCS기업활용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지원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특화프로그램(구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공정채용 컨설팅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신설 통합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5~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40,756	42,456	40,03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컨설팅 수탁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기업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총괄관리	보조	노사발전재단	500	10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2,456	40,031	△2,425
컨설팅	38,331	38,331	-
특화프로그램	3,025	-	△3,025
총괄관리	500	500	-
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600	600	-
청년일자리	-	600	600

○ 컨설팅 **(2026년) 38,331 → (2027년 정부안) 38,331백만원, 전년동**

(1-1) 진단 : (2026년) 4,400 → (2027년 정부안) 4,4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사업장 현황 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지원을 위해 '26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민간 1,800개소×2백만원=3,600백만원)+(노사발전재단 800개소×1백만원=800백만원)

(1-2) 일반컨설팅 : (2026년) 29,713 → (2027년 정부안) 29,713백만원, 전년동

- (설명) 공정한 일터 조성, 근로여건 향상 등을 위해 사업장이 당면한 문제(근로시간, 임금, 직장문화, 평가, 작업환경, 차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26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민간 1,714개소×18백만원=30,852백만원)+(노사발전재단 170개소×2.5백만원=425백만원)-(기업자부담 1,884개소×16.6백만원×5%=1,564백만원)

(1-3) 특화컨설팅 : (2026년) 2,550 → (2027년 정부안) 2,550백만원, 전년동

- (설명) 근로시간 단축(주4.5일제 도입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역·업종 컨소시엄 단위 근로환경 개선 등 중점추진 정책 위주의 특화 컨설팅 지원을 위해 '26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300개소×8.5백만원=2,550백만원

(1-4) 기업 활동비 지원 : (2026년) 1,668 → (2027년 정부안) 1,668백만원, 전년동

- (설명) 재정이 열악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관련 소요비용(워크숍 개최, 참여 비용, 장비 구매 등)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동자 참여 독려 및 제도 이행 촉진을 위해 '26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1,390개소×1.2백만원=1,668백만원

○ 총괄관리 **(2026년) 500 → (2027년 정부안) 5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컨설팅 지원사업장 심사·선정 및 프로젝트(보고서) 평가, 컨설팅 과정 모니터링·품질 관리, 수행기관 및 컨설턴트 관리, 우수기업 선정 및 우수 컨설턴트 경진대회 개최 등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관리를 위해 '26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사업운영경비 500백만원

○ 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2026년) 600 → (2027년 정부안) 6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컨설팅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유지보수 및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되는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컨설팅 저변 확대를 위해 '26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정보시스템 운영 1식×400백만원=400백만원)+(리플릿, 우수사례집 발간 등 홍보비 200백만원)

○ 청년일자리 **(2026년) 0 → (2027년 정부안) 600백만원, 순증**

- (설명) 청년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실무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일터혁신 과정과 성과를 기록·분석하고, 정책 확산 콘텐츠로 제작하는 일터혁신 현장리포터 운영

- (산출) 2,236천원×6개월×40명+사회보험료 63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일터혁신 실태조사**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55.5점	55.6점	55.7점	54.9점
실적	54.0점	55.9점	54.5점	-	해당없음
달성도	-	100.7	98.0	-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항목을 점수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54.8점) 대비 0.1점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외부 전문 연구 기관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년	자문 358개소, 전문 1,108개소, 심화·특화 컨설팅 1,564개소 컨설팅 지원
2026년	자문 93개소, 전문·특화 499개소, 심화·특화 1,462개소 컨설팅 컨설팅 지원 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시간근로 개선, 주 4.5일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폐지 지원, 임금격차 해소, 차별 개선, 고용문화 개선,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컨설팅

공모	→	위탁계약 체결	→	사업수행	→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결과보고 / 사업평가
제안서 제출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등

※ 컨설팅 진행절차 : 사업장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컨설팅 지원 → 이행지원 등 사후관리

2) 총괄관리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	→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교부		총괄관리 업무수행 및 결과보고		보조금 정산

3) 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위탁계약 체결	→	홍보 등 위탁사업 수행	→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 고용노동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만족도 지표에서 탈피하여 현장에서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보조사업 연장평가	2026년	○ 의견 : 정상추진 ○ 결과 : 다층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수급 이력 부재 등 관리 체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임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 의견 : 개선필요 ○ 결과 : 컨설팅 통합 후 특화프로그램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기업의 지역별 편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결산	2024년	○ 지적 :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 강화 필요 ○ 조치 : 컨설팅 수행기관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 결과의 체계적 환류 방안 마련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	-	-	-	-	-	-	-
2024년	-	-	-	-	-	-	-	-	-
2025년	40,756	40,756	-	-	40,756	40,398	99.1	-	358
2026년	42,456	42,456	-	-	42,456	30,341	71.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7)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기준정책관 노동정책관	근로감독협력과 근로기준정책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고용차별개선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31	302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 및복지증진	근로조건보호	근로조건개선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	고용노동부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고용노동부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 개선지원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고용차별개선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근로조건개선지원	10,175	11,325	11,325	12,722	12,722	1,397	12.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402	10,402	10,175	-	235	11,325	11,325	5,278	12,722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7,256	7,256	7,150	-	106	7,964	7,964	3,680	9,360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1,375	1,375	1,255	-	120	1,122	1,122	650	1,122
·장시간근로개선 지원	424	424	419	-	5	454	454	193	454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933	933	929	-	4	933	933	521	933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	-	-	-	-	378	378	165	379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	-	-	-	40	40	-	4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414	423	423	-	-	434	434	69	43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402	10,402	10,175	-	235	11,325	11,325	5,278	12,722
· 상용임금(110-03)	5,907	5,907	5,215	-	92	6,486	6,486	3,206	7,543
· 일반수용비(210-01)	995	995	1,016	-	8	1,056	1,056	377	1,028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	-	-	-	10	10	2	10
· 특근매식비(210-05)	-	-	-	-	-	20	20	5	20
· 임차료(210-07)	-	-	32	-	3	12	12	5	12
· 복리후생비(210-12)	93	93	83	-	10	93	93	66	113
· 일반용역비(210-14)	2,137	2,137	1,911	-	121	1,963	1,963	1,186	1,988
· 국내여비(220-01)	46	46	45	-	2	190	190	37	190
· 사업추진비(240-01)	35	35	35	-	-	87	87	29	90
· 일반연구비(260-01)	30	30	39	-	-	40	40	-	90
· 정책연구비(260-02)	-	-	40	-	-	80	80	-	30
· 포상금(310-03)	5	5	5	-	-	5	5	-	5
· 고용부담금(320-03)	1,155	1,155	1,755	-	-	1,284	1,284	365	1,60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목적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강화
사업내용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권익지원관을 지방관서에 배치하여 노동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청산지원 서비스 제공

(1-2)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목적	국정과제(93-4) 「임금체불 근절 및 노동감독 전면 혁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사전적 예방점검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를 확립
사업내용	소규모 사업장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

(1-3)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사업목적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사업내용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장시간 노동 관행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조성

(1-4)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목적	청소년, 비정규직, 재난 대응 등 필수업무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지원
사업내용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청소년·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으로 청소년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노동관계법령 인지도 제고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파견법 준수 등 지도·점검, 정책연구 등 실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 국가의 책무 이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안착을 지원하고, 판단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업무처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7조의2(권리구제 지원팀 운영) 취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청산 등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관서에 권리구제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권리구제 지원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5조(근로조건 자율개선) ① 이 훈령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로기준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을 거부하거나, 미개선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장시간근로 개선지원)** ㅇ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시간 제한) 등 ㅇ 「국정과제」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실천과제1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금지)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법 제도 방안 마련, 노사의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지원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개선지원)** **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조언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③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추진경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임금체불, 근로자성, 비정규직, 파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노동사건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노동관계법 전문인력 필요성 증대 - '04~'11년까지 임금체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퇴직공무원·기업체 직원 등으로 체불근로자 상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 - '체불제로서비스팀'을 변호사·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분쟁해결지원팀'으로 개편('12년) → '권리구제지원팀'으로 확대·개편('14년) - '16.1월 '권리구제지원팀'을 전체 관서로 확대(기존 40개 → 현재 48개 관서 운영) - '21~'22년 업무절차 개선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영 효율화, 교육제도 개편 및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08.4월 사업장의 근로조건 보호방식을 기존 근로감독관의 현장방문 감독 방식과 함께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변경 * 근로조건자율개선 세부시행지침 시달, '09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시행 - '15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전산화 등 사업체계 효율화 추진 - '17년부터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 진행 - '23년부터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약분야(업종 포함)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노동환경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지원하는 '취약분야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지원) - 노사정委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委에 「장시간근로개선분과위원회」 등 운영·논의 → 실태조사, 기업사례 파악, 개선방안 추진('09.7~) 등 결정 - '10.6.8,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에 대해 노사정합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장시간 근로 관행의 해소와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10.6.8, 노사정위원회) → '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 단축 - '10.10.14, 근로시간줄이기 대책 수립 대통령 지시(고용전략회의) - '15.1월～4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구조개선 특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견 조율 - '18.2.28 근로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18.3.20 공포 * '18.7월부터 단계적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 → 5개) - '19.7,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 '19년 하반기부터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전국 48개 관서) 설치·운영 - '20.1,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300인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21년, 30~299인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공휴일법 제정 - '22년, 5~29인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국정과제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중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추진 등 포함 - '23년,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4.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발족,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사회적 대화 진행 - '25.9, 국정과제 95번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중 실노동시간 단축 등 포함,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구성·운영 - '25.12,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 - '26.1,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안 발의 - '26.6.9, 쉴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 * 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자유롭게 선택, 연차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 개선지원) **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03.2월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수립(청소년보호위원회, 국무회의보고) - ‘06.3월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 부조리 근절 대책 * 청소년아르바이트 관련 다각적인 교육.안내 및 지도.점검 추진 포함 - ‘08.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 - ‘12.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 ‘14.5월「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수립·발표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포함 - ‘15.9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개소 *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피해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16.2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시행 - ’18년부터는 권역별 거점센터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통합 운영 - ’23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지원 대상을 청년층(~34세)으로 확대 **②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 ‘01.7. 노사정위원회「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구성, 비정규직 관련 논의 - ‘07.6. 비정규직보호법률 하위법령 공포, ‘07.7.1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 ‘09.4.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비정규직 입법 효과 평가체계 구축 관련 합의문」채택 - ‘11.9.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 ‘12.8. 고용노동부장관 시정요구권 도입,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3→6개월),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 발생 법개정(舊 불법파견 2년 초과 시 고용의무) - ‘14.9.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 법개정 - ‘17.10.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로드맵 발표 - ‘17.12. 비정규직 TF 운영 - ‘20.1. 민간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활성화 위한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운영 - ‘20.11.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 ‘23.12.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③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5.18., '21.11.19. 시행)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시행('21.11.19.)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운영('22.1.26.) - 산불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22.7월) - 「필수업무 업무매뉴얼」 제작·배포('23년) - 산불, 가축질병, 감염병, 풍수해, 지진, 유해화학물질, 해양선박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대규모 해양오염, 지하철·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 재난, 공연장·경기장 재난, 폭염 재난 실태조사 실시('22~)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관계부처 합동으로「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18.7.18.)」 수립·시행 -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발생 시 조치사항,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 포함 등 제도 법제화 및 시행 - 근절대책 및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안내, 상담, 사업장 지도·감독 등 실시 - '21.10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21.4.13. 공포)하여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강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6,675	11,896	10,402	11,325	12,72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노동관계법 위반 피해 우려 취약근로자 및 노동시장 약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325	12,722	1,397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7,964	9,360	1,396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1,122	1,122	-
장시간근로개선 지원	454	454	-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 개선지원	1,785	1,786	1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2026년) 7,964 → (2027년 정부안) 9,360백만원(+17.5%)

- (설명) 근로자 권리의식 향상, 노동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상담수요 및 진정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임금체불 청산 해결을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의 체감도 높은 노동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 (산출) 권리구제지원팀 상용임금 7,543백만원, 일반수용비 76백만원, 복리후생비 113백만원, 국내여비 10백만원, 사업추진비 10백만원, 포상금 5백만원, 고용부담금 1,603백만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2026년) 1,122 → (2027년 정부안) 1,122백만원(전년동)

- (설명)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사전지도와 현장 지원 필요. 다만, 노동감독관 노무관리지도 강화 등 감독 확대와 제도 개선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 동일 요구

- (산출) 근로개선 자율점검 및 개선이행 지원 1,083백만원,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 운영 지원 39백만원

○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2026) 454 → (2027년 정부안) 454백만원, 전년동

- (설명)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문제를 개선하고, 노사의 자율적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필요

- **(산출)** 장시간근로 개선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홍보 259백만원, 장시간근로 지도 감독 및 관계자 회의 15백만원(근로감독 여비 13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노동시간 단축 실태조사 180백만원

○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개선지원 (2026년) 1,785 → (2027년 정부안) 1,786백만원, +0.2%**

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26) 933백만원 → (27) 933백만원, 전년동

- (설명)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청소년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등

- (산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280백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 600백만원, 청소년 근로자 보호 현장활동 지원 23백만원, 청소년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30백만원(1회x30백만원)

②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26) 378백만원 → (27) 379백만원(+1백만원)

- **(요구)** 국정과제(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에 따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운영비 등 필요

- **(산출) 지방관서 등 운영경비 378백만원**(자료 제작 등 수용비 65백만원+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 42백만원+감독관 국내여비 144백만원+감독 교육 등 위탁운영비 75백만원 + 지방관서 노사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52백만원)

③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26) 40백만원 → (27) 40백만원(전년동)

- **(요구)** 재난상황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필요

- **(산출)** 필수업무 종사자 재난유형별 실태조사 등 40백만원(40백만원x1회)(전년동)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26) 434백만원 → (27) 434백만원(전년동)

- **(요구)**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안착 지원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등 관련 업무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관서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 **(산출)**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270백만원(전년동),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비 등 144백만원(전년동),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 20백만원(20백만원x1회)(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5	81.5	84.3	85.3	85.4
실적	83.9	85.0	85.7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6.9	104.3	101.7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근로자수+체불사업주융자지원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 전산시스템

○ **성과지표:** 신고사건 기한내 처리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89.0	-	-	-	-
실적	95.5	-	-	-	-
달성도	107.3	-	-	-	-

- **측정산식 :** 신고사건 기한 내처리건수/신고사건 총 처리 건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해당없음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 전산시스템

○ **성과지표:** 융자지원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93.4	-	-	-	-
실적	97.1	-	-	-	-
달성도	104.0	-	-	-	-

- **측정산식 :** 생활안정자금 융자실행액 /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산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해당없음
- **자료수집방법/출처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공인노무사·노동권익지원관)을 구성·운영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 지속('14.2월~)

	- (업무효율화 및 서비스 강화) 스마트노사누리 개편을 통해 청산지원 시스템(내부 업무 시스템) 개선, 노동포털오픈 등을 통해 노동행정 서비스 질 제고('23.3월~) - (역량 강화) 기본 직무교육 과정 외 심화 직무교육 과정의 신설·운영을 통해 노동권익지원관의 노동법 전문성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20인 미만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방문하여 18개 노동관계법령 자율점검 및 개선을 지원('23년 8,985개소) * 병무청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 협업 강화로 취약 사업장 선제적 발굴, 괴롭힘 취약 분야 집중지원 등 사업 효과성 제고('23.5.23. 병무청-수행기관 기초노동질서 점검 업무협약 체결) -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교육) 영세 사업주, 신설기업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노동법 교육 지원('23년 10,036개소) * 강원도, 충청남도 등 지자체의 사업참여 및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23.4.26. 한국공인노무사회-병무청 사업주 노동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근로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전문가(노무사)가 방문하여 1:1로 '상황진단-해법제시-정부지원'을 패키지로 컨설팅 제공(기초 1,155개소, 심층 200개소)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을 위한 컨설팅 실시(200개소) -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근절 관련 홍보 실시 * 버스·지하철 광고(5주), SNS 공유 홍보(3주) -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권 보호 관련 설명자료 등 제작·배포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리플렛(100천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자가진단 홍보 리플렛(170천부) 제작 - 근로시간 제도 관련 정책연구 실시 *「근로시간의 기록·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 개선지원)** 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공인노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23년) ▲상담 37,733건, ▲무료권리구제 1,105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등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홍보 실시 * ('23년) ▲찾아가는 교육 100,245명, ▲홍보(카드뉴스 등 웹 컨텐츠 제작, 서포터즈 활동) -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기초 노동질서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②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 파견·사내하도급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정 운영 지도(465개소 감독 실시) - 기간제 등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 감독 705개소 실시

	③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 ('23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선박사고, 지하철·고속철도 대형사고 - 필수업무종사자 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개최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전국 10개소(통합번호 1522-9000) 운영 * ('23년) 17,930건 상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사업장 무료 지원 및 사내 전문 강사 양성 교육 * ('23년) 사업장 교육 지원 564회,, 사내 강사 양성 202명 - 상호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영상 및 포스터 송출 * (영상) 유튜브, 등 정책 광고 영상 송출, (포스터) KTX 및 주요 지하철 역사 등 정책 광고 포스터 송출 - 각 지방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도모('23년 113회) - 지방관서 및 근로복지공단·고용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 진행('23.6월) * 권역별 개최 및 운영(총 3회, 126명 참여)
2024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공인노무사·노동권익지원관)을 구성·운영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 지속('14.2월~) * ('24년) ▲(청산지원) 46,660건, 약 504억 청산 지원(전체 민원 대비 12.5%), ▲(상담실적) 임금체불 등 140여만건 상담 - (업무효율화 및 서비스 강화) 스마트노사누리 개편을 통해 청산지원 시스템(내부 업무 시스템) 개선, 노동포털오픈 등을 통해 노동행정 서비스 질 제고('23.3월~) - (역량 강화) 기본 직무교육 과정 외 심화 직무교육 과정의 신설·운영을 통해 노동권익지원관의 노동법 전문성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20인 미만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방문하여 10개 노동관계법령 자율점검 및 개선을 지원(7,691개소) - (취약분야 자율개선 지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분야(직장내 괴롭힘, 근로시간)의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400개)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을 위한 설명자료 등 제작·배포 * 근로시간제도 리플렛(68,000부), 안내책자(120,000부)

	- 근로시간 매뉴얼 제작(3,600부) - 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하철·KTX 등 정책 홍보 광고 실시(4주) - 근로시간 준수 공모전 - 근로시간 운영현황 조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실시 - 근로시간 제도 관련 정책연구 실시 * 「장시간근로 개선 관련 해외법제 연구」, 「업직종별 근로시간 운영 실태 연구」 등 - 장시간 감독 428개소 실시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 개선지원)** **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공인노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24년) ▲상담 40,682건, ▲무료권리구제 1,132건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등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관계법 교육·홍보 실시 -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기초 노동질서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②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 기간제 등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릴레이 차별 감독 실시 * ①저축은행 등, ②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 등, ③식품제조업, ④차별 익명신고 사업장 - 산단지역 내 제조업체 등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파견법 준수 감독 실시 - 비정규직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7월) **③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 ('24년) 다중밀집시설 재난, 공연장·경기장 재난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상호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영상 및 포스터 송출 * (영상) 유튜브, 등 정책 광고 영상 송출, (포스터) KTX 및 주요 지하철 역사 등 정책 광고 포스터 송출 - 각 지방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도모 - 지방관서 및 근로복지공단·고용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 진행('24.6월)
2025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공인노무사·노동권익지원관)을 구성·운영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 지속('14.2월~) * ('25년) ▲(청산지원) 35,328건, 약 488억 청산 지원(전체 민원 대비 10%), ▲(상담실적) 임금체불 등 116여만건 상담 - (업무효율화 및 서비스 강화) 스마트노사누리 개편을 통해 청산지원 시스템

	(내부 업무 시스템) 개선, 노동포털오픈 등을 통해 노동행정 서비스 질 제고('23.3월~) - (역량 강화) 기본 직무교육 과정 외 심화 직무교육 과정의 신설·운영을 통해 노동권익지원관의 노동법 전문성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20인 미만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방문하여 10개 노동관계법령 자율점검 및 개선을 지원(7,297개소) - (취약분야 자율개선 지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분야(직장내 괴롭힘, 근로시간,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400개)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운영 → 노사정 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 발표(12.30) -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실노동시간 실태조사 홍보, 어른들이 일찍 온 날 그림일기 대회, SNS 이벤트, 유튜브 협업 콘텐츠 송출 등 -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제조업체·주요 항공사 대상 장시간 기획감독 실시(약 50개소)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 개선지원)** 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공인노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25년) ▲상담 42,270건, ▲무료권리구제 1,236건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등 통해 청소년·청년·고용 사업주에 특화된 노동관계법 온라인 교육·홍보 실시 -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기초 노동질서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②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 근로자 이음센터 10개소 운영 - 자치단체의 경우 수혜대상을 영세소규모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감독 실시 - 비정규직 근로감독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집합, 2회) ③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 ('25년) 폭염 재난 - 필수업무종사자 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개최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각 지방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도모
2026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공인노무사·노동권익지원관)을 구성·운영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 지속('14.2월~) * ('26년 7월) ▲(청산지원) 23,097건, 약 362억 청산 지원(전체 민원 대비 13%), ▲(상담실적) 임금체불 등 62여만건 상담 - (업무효율화 및 서비스 강화) 스마트노사누리 개편을 통해 청산지원 시스템(내부 업무 시스템) 개선, 노동포털오픈 등을 통해 노동행정 서비스 질 제고('23.3월~) - (역량 강화) 기본 직무교육 과정 외 심화 직무교육 과정의 신설·운영을 통해 노동권익지원관의 노동법 전문성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30인 미만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최대 3회 방문하여 10개 노동관계법령 자율점검 및 개선 지원(6,000회)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추가 지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630개)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단 구성·운영('26.1~) →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이행 점검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배포(4.9)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인식 확산(홍보버스, 직장인 커뮤니티 내 신고센터 배너 게시 등) - 연차휴가 활성화 지속 추진 및 노사 합의안에 따른 「쉴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6.9 공포)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상반기 정기 감독(2~4월) 및 권역별 릴레이 수시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등 상시 감독(5.14~) - 실노동시간 단축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진행 - SNS 유명 작가와 협업하여 직장인툰 시리즈물 제작·배포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 개선지원)** 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공인노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등 통해 청소년·청년·고용 사업주에 특화된 노동관계법 온라인 교육·홍보 실시 -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기초 노동질서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②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감독 실시 - 비정규직 근로감독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집합, 2회) ③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예정 - 필수업무종사자 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개최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각 지방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도모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인식 확산(홍보버스, 직장인 커뮤니티 내 신고센터 배너 게시 등) - 연차휴가 활성화 지속 추진 및 노사 합의안에 따른「쉴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6.9 공포)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상반기 정기 감독(2~4월) 및 권역별 릴레이 수시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등 상시 감독(5.14~) - 실노동시간 단축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진행 - SNS 유명 작가와 협업하여 직장인툰 시리즈물 제작·배포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복잡·다양해짐에 대응하여, 권리구제지원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취약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기대

- 특히, 권리구제지원팀의 전문성 및 청산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사건 청산지원 해결률 상승 및 신고사건 처리 일수의 지속적 단축 기대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전문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지원하고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노동 약자 보호 및 노사 분쟁 감소 등 달성에 기여

- 유사 사업을 연계·통합하여 집중·효율적 사업 운영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분포된 소규모 사업장의 효과적 노동권익 보호 추진

○ **(장시간근로 개선지원)**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OECD 평균보다 151시간 높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필수분야 근로조건 개선지원)**

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
-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권익 보호

2.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감독을 통한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 해소

3.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위해 위원회 개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추진
-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지원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직장문화 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주력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충 등 추진
-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컨텐츠 제작 등 상호존중의 문화 정착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고사건 판단의 전문성 및 당사자의 처리결과 수용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근로자	권리구제지원팀	관할 기관
노동 분쟁 발생 ⇨	◦ 변호사·공인노무사·노동권익 지원관이 노동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 조언 ◦ 청산지원 · 해결 지원 ◦ 각종 법률적 쟁점 검토 ◦ 노동법 교육, 설명 등 ⇩(해결) 종결 처리	⇨ (미해결) ◦ 체불 권리구제 지원 등 사건조사 ⇒ **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불 민사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 ⇒ **노동위원회** ◦ 산재 승인 및 대지급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

▪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 사업장 자율점검 및 노무관리 실태조사 → 노무관리 및 자율개선 기한부여(30일) → 사업결과 분석 및 사후관리, 근로감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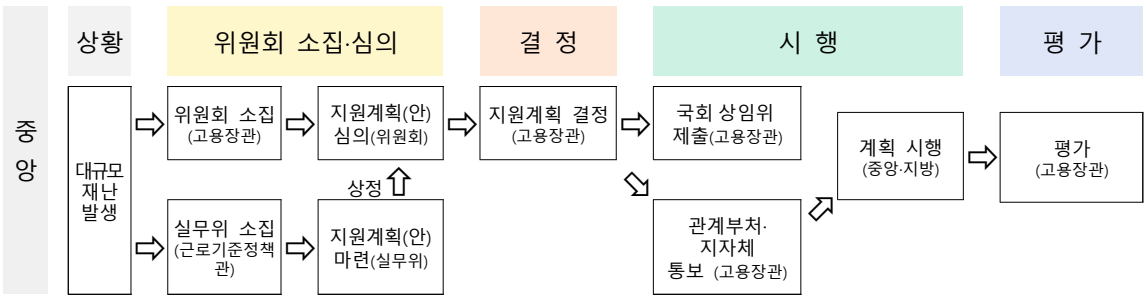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전문적 판단 필요 사건 선정 → 사건 개요 및 사실 관계 등 안건 작성 → 안건에 대해 판단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 판단전문위원회 자문 참고하여 사건 처리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	○ 의견 :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 인정됨. 청산지원해결률, 신고사건 기간내 처리율, 권리구제율 등이 매년 상승 ○ 결과 : 보통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기본적인 노동현장의 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 인정됨. 신속한 권리구제, 체불청산 성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성과우수성 평가함 ○ 결과 : 보통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장시간근로개선지원 사업은 사업 효과에 비해 예산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어 제한적인 수준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율, 재분쟁 발생률, 근로시간 변화 등 핵심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 분석 결과가 차년도 예산 및 사업 구조 개편에 환류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예결위 '23년 결산	2023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권리구제지원팀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동변호사,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 중심으로 조정하고,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지방관서별 정원조정, 사기진작 등 추진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지적 : 연구용역 명목으로의 예산 전용·조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전용·조정을 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하였음 ○ 조치 : 전용·조정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
환노위 예결위 '24년 결산	2024년	(권리구제지원팀) ○ 권리구제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의 결원을 충원할 근본적인 방안을 기획하고, 전반적인 예산 과소편성 문제를 해결할 것 - '25년 관서별 업무량 대비 적정 인력 배치, 인건비 인상 등 조치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6,675	16,675	52	-	16,727	16,559	99.0	30	138
2024년	11,896	11,896	30	-	11,926	11,779	98.8	9	138
2025년	10,402	10,402	9	-	10,411	10,175	97.7	-	235
2026년	11,325	11,325	-	-	11,325	5,278	46.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609	-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및 FGI 연구용역 추진(460백만원) - 근로조건 보호·개선 활동 출장여비 부족(90백만원) - 권리구제지원팀 공무직 퇴직충당금 납부 필요(1,059백만원)
	이월	30	- 최저임금 관련 정책 방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방안 등 연구용역 계약 미완료로 잔금 이월(30백만원)
	불용	138	-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불용(138백만원)
2024년	전용	1,110	- 장시간 근로개선 지도·감독 출장여비 부족(60백만원) -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지도·감독 출장여비 부족(60백만원)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연금부담금 납부(990백만원)
	이월	9	- 직장 내 괴롭힘 등 연구 용역계약 미완료로 잔금 이월(9백만원)
	불용	138	- 집행잔액 발생(138백만원)
2025년	전용	640	- 청소년 등 근로조건 보호 포럼·연구용역(30백만원) - 청소년 등 근로조건 보호 포럼·연구용역(10백만원) - 공무직 퇴직연금 납부(600백만원)
	불용	235	- 집행잔액 발생(235백만원)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8) 노동감독역량강화(3032-30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근로감독협력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32	30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근로감독행정	노동감독 역량강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7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노동감독역량강화	근로감독기획과 근로감독협력과	고용노동부
노동감독활동지원	근로감독기획과 근로감독협력과	고용노동부
노동감독지방위임	근로감독협력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노동감독역량강화	13,114	54,453	54,453	42,053	42,053	△12,400	△22.8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311	13,326	13,114	-	212	54,453	54,453	24,406	42,053
· 노동감독역량강화	1,063	1,083	1,075	-	8	1,106	2,106	436	11,254
· 노동감독활동지원	12,248	12,248	12,039	-	204	12,848	12,848	6,728	27,796
· 근로감독제도혁신	-	-	-	-	-	39,536	38,536	17,242	순감
· 노동감독지방위임	-	-	-	-	-	963	963	0	3,003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311	13,326	13,114	-	212	54,453	54,453	24,406	42,053
· 일반수용비(210-01)	398	374	373	-	1	1,974	1,774	791	2,249
· 공공요금(210-02)	294	294	289	-	5	1,708	1,108	308	672
· 피복비(210-03)	-	-	-	-	-	341	341	130	67
· 특근매식비(210-05)	2	2	1	-	1	2	2	-	2
· 임차료(210-07)	417	417	420	-	2	5,453	5,253	793	2,832
· 유류비(210-08)	29	29	2	-	27	126	126	8	9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326	326	70	640
· 일반용역비(210-14)	200	200	200	-	-	7,793	7,793	5,315	5,108
· 관리용역비(210-15)	-	-	-	-	-	104	104	5	81
· 기타운영비(210-16)	-	-	-	-	-	-	-	-	10
· 국내여비(220-01)	2,002	2,098	2,092	-	5	5,054	5,054	1,490	4,140
·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	-	15	15	13	17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5	65	64	-	1	65	65	20	68
· 특정업무경비(250-03)	9,216	9,120	8,959	-	161	12,116	12,116	6,080	16,241
· 일반연구비(260-01)	50	85	85	-	1	-	1,000	-	200
· 정책연구비(260-02)	-	-	-	-	-	50	50	-	5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963	963	-	3,003
· 공사비(420-03)	166	166	160	-	6	7,460	7,460	4,033	3,87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노동감독역량강화

사업목적	노동감독 인프라 및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춘 근로기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약자 보호
사업내용	노동감독관 직무교육 지원, 노동감독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노동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근로기준의 현실 적합성 향상

(1-2) 노동감독활동지원

사업목적	노동관계법 수사 및 사업장 감독 등 노동감독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내용	체불임금 청산·예방, 노동관계법 위반혐의 수사 및 사업장 감독, 임·단협 교섭 등 노사지도, 노동정책의 교육·홍보 등 노동감독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1-3) 노동감독지방위임

사업목적	중앙-지방 협력 모델 구축(국정 93-4)을 위한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 추진에 따라, 지방 노동감독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수행경비 등 지원
사업내용	지방노동감독관의 여비, 활동비, 공공요금, 근무복 제작비 등 운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노동감독역량강화) - 「근로기준법」 제11장(근로감독관 등)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 「국정과제」(93번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 등 취약 노동자 보호·지원 강화, 노동감독관 대응역량 강화 등 시스템 혁신 ○ (노동감독활동지원) -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률 등
추진경위	○ (노동감독역량강화) - 근로감독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 지속 추진 - '03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발족 및 방안 마련 - '05.5월 근로기준선진화연구회 구성·운영 - '08～'09년 고용·임금·근로시간제도 선진화 국정과제 추진 - '15.6~12월 근로감독업무개선 TF를 통한 업무 효율화·역량 강화 과제 마련 및 개선 추진 - '16~'18년 디지털 증거분석팀 신설 및 확대 운영(6개청) - '19.9월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 마련, 시행 - '20년~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수립·시행 ○ (노동감독활동지원) - 노동감독 및 수사활동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 - '73년~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급 - '22년~ 신속한 권리구제 및 체불예방,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수사 차량 지원 ○ (노동감독지방위임) - '26년 신규 내역사업 -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감독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73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1,175	12,980	13,311	54,453	42,05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다만, 內노동감독지방위임: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다만, 內노동감독지방위임: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노동시장 약자, 노·사 당사자 및 노동감독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노동감독지방위임	보조	지방정부	3,003	70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4,453	42,053	△12,400
노동감독역량강화	1,106	11,254	10,148
노동감독활동지원	12,848	27,796	14,948
근로감독제도혁신	39,536	순감	△39,536
노동감독지방위임	963	3,003	2,040

○ 노동감독역량강화 (2026년) 1,106 → (2027년 정부안) 11,254백만원, +918%

- (설명) 민원인 권리의식 향상,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민원이 다변화·심화되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심층 검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감독관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대내외적으로 요구됨
- (산출) 노동감독관 교육여비(신규자, 재직자) 255백만원, 법령 홍보·안내 사례집 등 발간 198백만원, 노동감독관 교육비 4,732백만원, 현장 중심 업무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280백만원, 노동수사교육원 신설·운영비 4,307백만원, 노동사범 수사 법률 자문 538백만원,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856백만원,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등 운영비 88백만원

○ **노동감독활동지원 (2026년) 12,848 → (2027년 정부안) 27,796백만원, +116%**

- (설명) 체불임금 청산·예방, 노동관계법 위반혐의 수사 및 사업장 감독, 임·단협 교섭 등 노사지도, 노동정책의 교육·홍보 등 노동감독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산출) 노동감독관 수사활동비 16,241백만원, 현장 지도·감독 등 여비 3,864백만원, 지방관서 부서 운영비 1,953백만원, 수사지원 차량 유지비용 1,225백만원, '26년 증원 인력 인프라 유지 비용 1,854백만원, '27년 증원에 따른 신규 증액 소요 2,659백만원

○ **노동감독지방위임 (2026년) 963 → (2027년 정부안) 3,003백만원, +211.8%**

- (설명) 국정과제(93-4, 중앙-지방 협력 모델 구축) 이행을 위한 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에 따라 지방노동감독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산출) 지방정부 현장지도·감독 업무경비(여비) 880백만원, 지방정부 노동감독관 활동비 지원 516백만원, 지방정부 운영 공공요금 206백만원, 지방정부 수사업무 차량 지원 29백만원, 지방정부 사업장 대상 교육 및 홍보비 1,190백만원, 지방정부 노동감독관 근무복 제작 182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피해해결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5	81.5	84.3	85.3	85.4
실적	83.9	85.0	85.7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6.9	104.3	101.7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지도해결 근로자수 +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수 +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근로자수) / 체불근로자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성과목표 85.4%는 최근 3년간('23~'25년) 평균 실적(84.9%)을 고려하여 평균 실적 대비 0.5%P 상향한 도전적 지표를 설정한 것임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 전산시스템(노사누리시스템)을 통해 연말 기준 자료 추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근로감독역량강화)** - (전문과정 운영) 근로감독행정 전문과정(장기전문과정)을 근로감독관+부서장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자와 실무자 간의 상호 이해 제고 등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 1일 교육으로 개편 * ('23.上) 감독관+부서장 28명 대상 통합 과정 운영('23.4.21.~7.14., 주 1일, 3.5개월)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262명 직무교육 실시(업무전환자 196명

	교육완료, 신규자 66명), 실무 배치 전 적응훈련 강화 * (신규자) 12주 직무교육+12주 현장 적응훈련, (업무전환자) 4주 직무교육+8주 현장 적응훈련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283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로 기본-심화-전문과정의 2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핵심역량 7개 과정 신설·운영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 제작 및 배포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 산정 근거 등 노무관리 자료 조작 및 증거인멸에 대비하고, 복잡·다양한 노동법위반 수사지원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별로 기초, 전문과정 운영 * (기초과정) <1차, 3.6.~3.10.> 12명 수료, <2차, 9.18.~9.22.> 8명 수료 (전문과정) <1차, 6.20.~6.29.> 7명 수료, <2차, 10.24.~11.2.> 5명 수료 **(근로감독활동지원)** - 노사 법치 주의 확립,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활동 강화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2024년	**(근로감독역량강화)**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255명 직무교육 실시(신규자 31명 및 업무전환자 234명), 실무 배치 전 적응훈련 강화 * (신규자) 12주 직무교육+12주 현장 적응훈련, (업무전환자) 4주 직무교육+8주 현장 적응훈련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260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로 기본-심화-전문과정의 3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핵심역량 6개 과정 신설·운영 (2,118명 실시)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 제작 및 배포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 산정 근거 등 노무관리 자료 조작 및 증거인멸에 대비하고, 복잡·다양한 노동법위반 수사 지원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별로 기초, 전문과정 운영 **(근로감독활동지원)** - 노사 법치 주의 확립,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활동 강화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2025년	**(근로감독역량강화)**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263명 직무교육 실시(신규자 10명 및 업무전환자 253명), 실무 배치 전 적응훈련 강화 * (신규자) 12주 직무교육+12주 현장 적응훈련, (업무전환자) 4주 직무교육+8주 현장 적응훈련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236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로 기본-심화-전문과정의 2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핵심역량 8개 과정 신설·운영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 제작 및 배포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 산정 근거 등 노무관리 자료 조작 및 증거인멸에 대비하고, 복잡·다양한 노동법위반 수사지원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별로 기초, 전문과정 운영 **(근로감독활동지원)** - 노사 법치 주의 확립,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활동 강화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2026년	**(노동감독역량강화)** - (신규자 교육) 신규 노동감독관 701명 직무교육 실시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236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로 기본-심화-전문과정의 4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역량 강화 과정 신설·운영 **(노동감독활동지원)** - 노사 법치 주의 확립,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활동 강화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노동감독관 직무교육 지원 강화, 업무수행 매뉴얼 개정 배포 등을 통해 **노동법 위반 사건 수사 및 노동행정 집행과 관련된 직무역량과 전문성 강화**

○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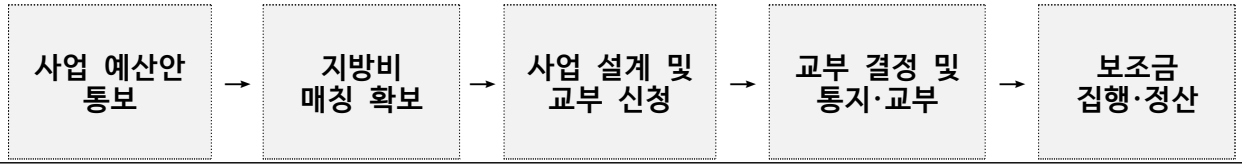
○ 「국정목표」(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국정과제」(93번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를 실천하기 위해 ILO수준 감독 확대, 노동감독관 증원,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 협력 등 근로감독을 혁신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 지원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 도약 및 신속한 권리구제, 노사관계 안정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노동감독지방위임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제도혁신 사업 완료 이후 감액 등 관리체계 마련 요구 ○ 결과 : 사업개선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정처	2025년	○ 지적 : 사전적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필요 ○ 조치 : 감독관 증원 및 감독 전담 부서 신설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위한 기반 구축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175	11,175	0	0	11,175	11,006	98.5	0	169
2024년	12,980	12,980	0	0	12,980	12,783	98.5	15	182
2025년	13,311	13,311	15	0	13,326	13,116	98.5	0	210
2026년	54,453	54,453	0	1,000	54,453	24,406	44.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505	- 사업장 근로감독 및 수사활동 출장여비 부족(505백만원)
	불용	169	-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불용(169백만원)
2025년	전용	116	- 사업장 지도·점검 등 출장소요 증가에 따른 여비 예산 부족(96백만원) -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및 노동자 인식 조사 연구용역 추진(10백만원) - 중앙-지방의 근로감독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10백만원)
	불용	212	-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불용(212백만원)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9)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3034-31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34	313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퇴직급여정착 지원제도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N	N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퇴직급여제도정착 지원	324	480	480	12,725	6,521	6,041	1258.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346	346	324	11	11	480	491	236	6,521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346	346	324	11	11	480	491	236	480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	-	-	-	-	-	-	-	6,04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346	346	324	11	11	480	491	247	6,521
·일반수용비(210-01)	150	155	153	-	2	196	196	108	306
·임차료(210-07)	18	13	10	-	3	18	18	14	38
·일반용역비(210-14)	-	-	-	-	-	100	100	50	130
·관리용역비(210-15)	25	25	25	-	-	25	25	18	25
·국내여비(220-01)	76	81	77	-	4	64	64	25	74
·국외업무여비(220-02)	10	5	5	-	-	10	10	-	10
·사업추진비(240-01)	17	17	15	-	2	17	17	13	47
·일반연구비(260-01)	50	50	39	11	-	-	11	11	-
·정책연구비(260-02)	-	-	-	-	-	50	50	8	50
·기타보전금(310-04)	-	-	-	-	-	-	-	-	5,84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사업목적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축소되는 국민연금**에 대응한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 마련을 위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 확산 지원 * 우리나라는 '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7%)에 진입한 이후, '17년 8월 고령사회(14%) 진입, '26년 초고령사회(20%) 진입 예상('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 국가들은 국가 재정부담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 우리나라도 기금소진 연도 연장('47년→'60년)을 위해 급여수준 축소(소득대체율 60%→40%)
사업내용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全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퇴직연금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전지정운영제도 심의위원회 운영,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 지도·점검 등 실시

(1-2)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목적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퇴직연금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 재정 지원 *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및 종사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지급받는 노동자
사업내용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 시기 이전에 조기도입하는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저소득 노동자 부담금을 사외적립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지원 * 사용자가 매월 지원금을 신청 → 퇴직연금 도입 여부 및 부담금 납입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병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제1항(정부의 책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14(국가의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추진경위	- 퇴직금 체불 위험으로 수급권 보장기능이 미흡하고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고,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확산 필요 - '05.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시행 - '11. 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 '18. 6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 '21. 3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통과('22.4.14. 시행) - '21. 12월: 사전지정운용제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통과('22.7.12. 시행) - 대통령 공약사항: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대상 확대 - 국정과제(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등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26. 2.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585	358	346	480	6,52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80	6,521	6,041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480	480	-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	6,041	순증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2026년) 480 → (2027년 정부안) 480백만원, (전년동)**

- (설명) ❶퇴직연금제도 대국민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국제회의 참석, 사전지정제도운용위원회 설치·운영, 퇴직연금 교육 비용, ❷「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수요 지원 및 과태료 부과 대상 관리를 위한 퇴직연금 취급실적 시스템 관리 필요

- (산출) 매체 광고 40백만원, 홍보물 제작 30백만원, 질의회시집·업무매뉴얼 제작 30백만원, 사전지정운용제도운영 96백만원, 연구용역 50백만원, 퇴직연금TF 및 작업반 임차료 18백만원, 국외여비 10백만원, 사업추진비 17백만원, 퇴직연금 교육사업 100백만원, 사업장 지도점검 여비 64백만원, 퇴직연금취급실적 전산망 유지·보수 25백만원

○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2027년 정부안) 6,041백만원, 신규**

- (설명)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 시기 이전에 퇴직연금을 조기도입하는 중소사업장의 저소득 노동자 부담금을 지원

- (산출) 홍보물 제작 20백만원, 설명자료 및 리플릿 제작 70백만원, 인쇄비 및 소모품 20백만원, 권역별 담당자 교육 임차료 20백만원, 사업성과 모니터링 20백만원, 담당자 교육자료 개발 및 운영 10백만원, 사업장 현장점검 여비 10백만원, 사업장 및 관계기관 간담회 30백만원, 재정지원금 5,841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총합(단위: 조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550	600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연도말 DB 적립금 + 연도말 DC 적립금 + 연도말 개인형IRP 적립금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기존 증감률을 감안하여 기댓값 산출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노동부, 금감원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or 표 작성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추진(~7월) ‣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 폐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 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1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 대상 퇴직연금제도 교육(~3월) ‣ 단계적 의무화에 따른 가입 절차·관련 세제교육 및 법 개정사항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 설치(300인 이상 사업장),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화 등 제도 변동 사항 교육 ‣ 퇴직연금 교육사업 실적(4월~7월): 61회(집체: 20회, 방문: 41회) ▪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퇴직연금 연금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설계('23. 4.28. ~ 9.27.) ‣ 다층적 연금체계 하 퇴직연금기능강화를 위한 세부제도개선 방안('23.3.8 ~ 11.7)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 퇴직연금실적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계약 추진(7월~) ‣ 통계정비 방안 마련(7월~)
2024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2월) ‣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 폐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정비 ‣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 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 ▪ 新제도 안착 지원 및 퇴직연금제도 개선 ‣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 설치(300인 이상 사업장)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계획 수립

	▪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디폴트옵션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마련을 위한 연구('24. 6 .28. ~ 10. 30.) ‣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시 중소·영세 사업주 부담 경감 및 조시 도입 촉진 방안 연구('24. 6. 25 ~ 11. 24)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 퇴직연금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계약(7월~) ‣ 통계정비 방안 마련(7월~)
2025년	▪ 제도 안착 지원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내실화 노력 ‣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 및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문화' 형성을 위해 카드뉴스, 숏폼콘텐츠 등 활용· SNS 홍보 실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대상 자율시정기간 운영 및 적립의무 미이행 사업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 퇴직연금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계약('25.6월~11월) ▪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디폴트옵션 운용현황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연구('25.6.20.~12.12.)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수탁자책임 확보 등을 위한 방안 연구('25.11.10.~ '26.2.9.)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 퇴직연금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운영('25.10월~12월)
2026년	▪ 제도 안착 지원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내실화 노력 ‣ 퇴직연금 교육사업의 범위를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중·장기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제작 및 온라인 형식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의무 미이행 사업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 퇴직연금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계약('26. 6월~11월) ‣ 질의회시집 및 법령집 업데이트 ▪ 퇴직연금제도 기능강화를 위한 노력 ‣ '26년 2월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따라 13회에 걸쳐 퇴직연금 공동선언 실무작업반 13회 운영 ▪ 디폴트옵션 상품 평가 수행 ‣ 디폴트옵션 상품 최초 승인 이후 3년이 도래한 상품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최초로 시행('26년 9월) ▪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현황 조사분석 및 평가('26.6.15.~'27.2.28.) ‣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26.4.16.~'26.8.15.) 및 노사 심층 실태조사('26.6.29.~'26.9.28.)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확대에 대비, 全국민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교육콘텐츠 제작을 통해 제도 인식 개선 및 운영 내실화 유도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 의무 이행 독려 및 지도·점검 등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사전지정운영제도 등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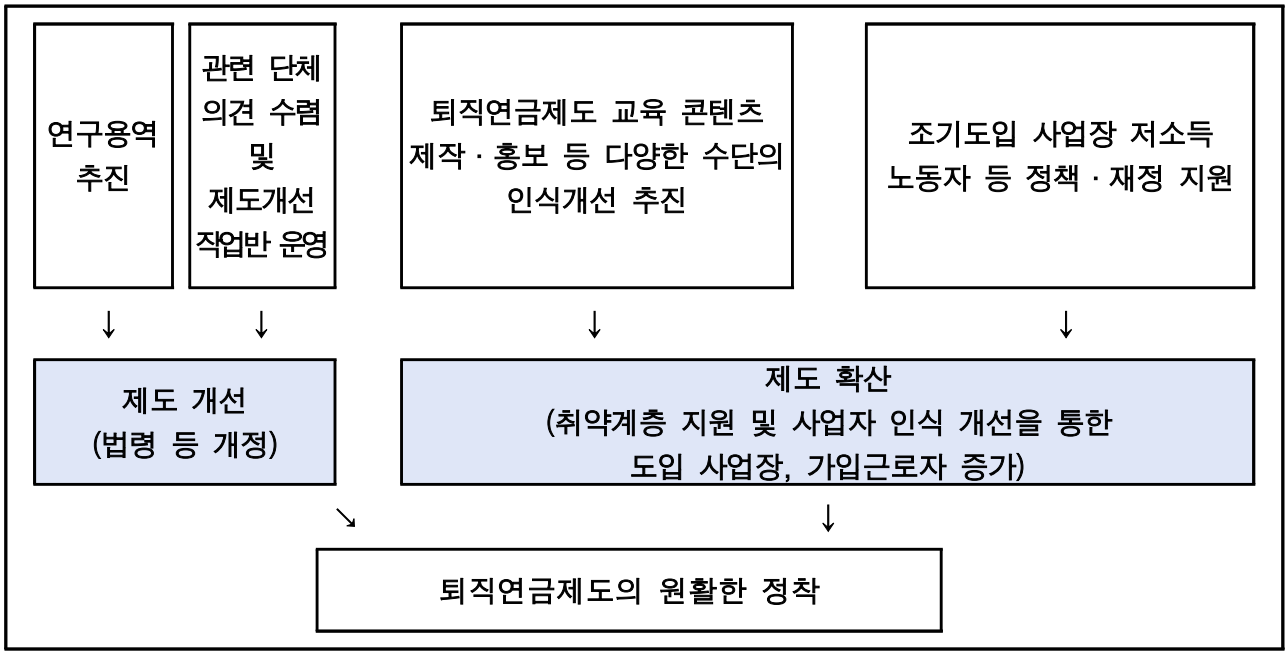
퇴직연금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여 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저소득 노동자 보호 및 퇴직연금 제도 확대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85	585	-	-	585	570	97.4	8	8
2024년	358	358	8	-	366	348	97.2	-	18
2025년	346	346	-	-	346	323	93.4	11	12
2026년	480	480	11	-	491	236	49.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월	8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내 미도래로 잔액 차년도 이월
2023년	불용	7.5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24년	불용	19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25년	이월	11.4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내 미도래로 잔액 차년도 이월
2025년	불용	11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재정지원 사업개요

□ 필요성

○ **급속한 노령화, 공적연금 축소**에 대응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확산 도모**하여 **안정적 노후 자산 마련** 지원

※ 관련 : ▲국정과제 92-2. “퇴직연금 강화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후보장”
▲’26.2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이행
↳ 주요 내용 : ❶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❷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 사업 내용

○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저소득 노동자** 부담금을 **사외적립**한 경우, **부담금의 일부 매칭**

<노사정 공동선언 주요 내용, ‘26.2.6.>

Ⅱ.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1. 퇴직급여 체불 예방 및 노동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2.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사업추진체계

○ **(대상)** 의무화 이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사업주(30인 미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6년) 시 사업장 규모별 의무 도입 시기 가정>

의무 도입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30. 1. 1.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30 - 99인	5 - 29인	5인 미만

○ **(지원내용)**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적립금(부담금) 중 **최저임금의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적립금(부담금)의 10% 지원**

○ **(사업기간)** ‘27년 시범운영

○ **(지원절차)**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지원금 신청 → 공단이 도입 여부 및 부담금 납입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병행

사 업 명
(50) 최저임금위원회전문성강화(3036-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36	3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최저임금제도지원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강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최저임금 연구활동 및 기능강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현장의견 수렴		
최저임금 결정 관련 안내자료 제작 등		
최저임금 심의·제도개선 관련 심층연구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강화	535	566	566	654	654	88	15.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81	581	535	0	46	566	566	116	654
·최저임금 연구활동 및 기능강화	170	170	158	0	12	185	185	81	203
·현장의견 수렴	94	94	65	0	29	66	66	35	66
·최저임금결정관련 안내자료 제작 등	77	77	77	0	0	75	75	0	85
·최저임금심의제도개선 관련 심층연구	240	240	235	0	5	240	240	0	3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81	581	535	0	46	566	566	116	654
·상용임금(110-03)	134	134	125	0	9	146	146	72	158
·일반수용비(210-01)	122	122	114	0	8	106	106	19	116
·임차료(210-07)	12	12	8	0	4	12	12	6	12
·복리후생비(210-12)	1	1	1	0	0	2	2	1	2
·국내여비(220-01)	38	38	20	0	18	24	24	4	24
·업무추진비(240-02)	8	8	8	0	0	8	8	7	8
·일반연구비(260-01)	240	240	235	0	5	240	240	0	300
·고용부담금(320-09)	26	26	24	0	2	28	28	7	3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최저임금 연구활동 및 기능강화

사업목적	경제·고용상황에 대한 주요 동향 파악 및 통계 분석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최저임금 심의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
사업내용	

(1-2) 현장의견 수렴

사업목적	사업장 방문, 이해관계자 면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제고
사업내용	

(1-3) 최저임금 결정관련 안내자료 제작 등

사업목적	사업장 방문, 이해관계자 면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제고
사업내용	

(1-4) 최저임금 심의·제도개선 관련 심층연구

사업목적	경제·고용상황에 대한 주요 동향 파악 및 통계 분석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최저임금 심의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
사업내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0조(사무국)**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추진경위	○ ’86년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최저임금제 본격 도입 ○ ’86년 최저임금법 제정·공포, ’88년 최저임금제 실시 ○ ’87년 최저임금위원회 신설 ○ ‘19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 및 과정관리 강화 추진 (VIP 지시사항)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586백만원	576백만원	581백만원	566백만원	654백만원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66	654	88
최저임금 연구활동 및 기능강화	185	203	18
현장의견 수렴	66	66	-
최저임금 결정관련 안내자료 제작 등	75	85	10
최저임금 심의·제도개선 관련 심층연구	240	300	60

○ 최저임금 연구활동 및 기능강화 **(2026년) 185 → (2027년 정부안) 203백만원, +9.7%**

- (설명) '27년도 공무직 처우개선률 반영 등을 감안, '26년 대비 +9.7% 증액
- (산출) 연구위원(통계·경제·사회분야 3명):194백만원, 전문가 자문료·업무조력자 사례금:9백만원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2026년) 66 → (2027년 정부안) 66백만원, 전년동**

- (설명)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간담회 개최 등
- (산출) 현장방문(6회):44백만원, 공청회(2회):22백만원

○ 최저임금 결정 관련 안내자료 제작 등 **(2026년) 75 → (2027년 정부안) 85백만원, +13.3%**

- (설명) 최저임금 적용대상, 산입범위 등 정보제공을 통한 최저임금액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안내를 위한 운영비 현실화 등을 감안, '26년 대비 +13.3% 증액
- (산출) 인쇄·옥외매체:11백만원, 리플릿·전단지·안내물품 제작:68백만원, 포장·발송:6백만원

○ 최저임금 심의·제도개선 관련 심층연구 **(2026년) 240 → (2027년 정부안) 300백만원, +25.0%**

- (설명)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통계품질 강화 등을 감안, '26년 대비 +25.0% 증액
- (산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3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응답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1.2
실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목표조사대상(13,000명) 대비 유효응답자 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대비 3%p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자료(결과보고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수용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배정) 예산 배정, 월별 자금계획 수립·확정 → (예산 집행)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유 발생시 수시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86	586	0	0	586	538	91.8	0	48
2024년	576	576	0	0	576	460	79.9	0	116
2025년	581	581	0	0	581	535	92.1	0	46
2026년	566	566	0	0	566	116	20.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30	'24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물품 제작비 부족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강화 국내여비에서 수용비로 30백만원 전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1) ILO분담금(ODA)(3050-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50	300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ILO분담금(ODA)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ILO분담금(ODA)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국제노동기구(ILO)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ILO분담금(ODA)	15,926	18,358	18,358	21,537	20,901	2,543	13.9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5,926	15,926	15,926	-	-	18,358	18,358	18,358	20,901
·ILO분담금(ODA)	15,926	15,926	15,926	-	-	18,358	18,358	18,358	20,90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5,926	15,926	15,926	-	-	18,358	18,358	18,358	20,901
·국제부담금(340-02)	15,926	15,926	15,926	-	-	18,358	18,358	18,358	20,90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ILO분담금(ODA)

사업목적	ILO 회원국으로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ILO의 원활한 운영·활동을 지원하고 ILO 및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정부 영향력 및 위상 강화
사업내용	ILO 헌장에 따른 '27년 분담금 납부 및 '26년 분담금 미납액 청산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ILO 헌장 제13조* 상의 분담금 납부의무(ILO 헌장 수락동의안 국회 의결, '91.11월) * (제3항) 국제노동기구의 경비는 회원국이 부담 (제4항) 연체액이 지난 만 2년 동안 그 나라가 지불하여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동액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총회, 이사회 등에서 투표권 상실
추진경위	○ '05년 외교부로부터 ILO 분담금을 이관*받아 이후 매년 당해연도 분담금 납부 중 * '05년까지는 외교부가 국제기구 분담금을 총괄 관리·납부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3,044	14,308	15,926	18,358	20,90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국제노동기구(ILO)

○ 사업 수혜자 : ILO회원국(우리나라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8,358	20,901	2,543
ILO분담금(ODA)	18,358	20,901	2,543

○ ILO분담금(ODA) **(2026년) 18,358 → (2027년 정부안) 20,901백만원, +13.9%**

- (설명) ILO 회원국으로서 '27년 분담금 납부 및 '26년 분담금 미납액 청산, '26년 대비 +13.9% 증액

* (ILO 헌장) ③국제노동기구의 경비는 회원국이 부담, ④회원국의 분담금 연체액이 지난 만 2년 동안 그 나라가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동액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총회, 이사회 등에서 투표권 상실

- (산출) ILO 분담금 11,261,448CHF × 1,856원(원/스위스프랑 재정환율) = 20,901백만원

* '27년 의무 분담금 16,639백만원(8,965,368CHF) + '26년 末 기준 미납금 4,262백만원(2,296,080CHF)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피해해결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5	81.5	84.3	85.3	85.3
실적	83.9	85.0	85.7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6.9%	104.3	101.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근로자수+체불사업주융자지원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평균실적(83.6%) 대비 0.4%P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 전산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ILO 분담금 130억원 납부, ILO 이사국으로 활동
2024년	ILO 분담금 143억원 납부, ILO 이사국으로 활동
2025년	ILO 분담금 159억원 납부, ILO 이사국으로 활동
2026년	ILO 분담금 184억원 납부, ILO 이사국으로 활동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분담금 성실 납부 및 미납금 해소를 통해 IL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위상 제고

○ 국제노동기준 설정·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도국 등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한 국제교류·협력 활동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ILO 총회에서 ILO 총예산 규모, 국가별 분담률*을 기반으로 국가별 분담금 결정(2년 단위) → 회원국은 매년 분담금 납부
  * UN 분담률, 회원국 국민소득(GNI), 회원국 수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국가별 분담률 결정
- 원-CHF 환율 상황을 고려하여 연도 중 분담금을 ILO 사무국에 직접 납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3,044	13,044	-	-	13,044	13,044	100	-	-
2024년	14,308	14,308	-	-	14,308	14,308	100	-	-
2025년	15,926	15,926	-	-	15,926	15,926	100	-	-
2026년	18,358	18,358	-	-	18,358	18,358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전액집행)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52)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3050-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일반회계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O8E	3000	3050	30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고용노동국제협력 및통상협상대응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 협력강화	고용노동부(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개발협력팀, 직업능력정책과)	직접, OECD,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고용노동부(국제협력담당관실)	직접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2,937	1,215	1,215	1,249	915	△300	△24.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989	2,989	2,937	0	52	1,215	1,215	846	915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 협력강화	2,386	2,411	2,411	0	0	758	853	663	458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603	578	526	0	52	457	362	183	457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989	2,989	2,937	0	52	1,215	1,215	846	915
·일반수용비(210-01)	258	258	258	0	25	172	152	105	172
·임차료(210-07)	25	25	8	0	17	16	36	25	16
·일반용역비(210-14)	2,031	2,031	2,022	0	9	393	393	375	93
·국외여비(220-02)	209	209	208	0	0	199	199	148	199
·사업추진비(240-01)	4	4	4	0	0	4	4	3	4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	12	12	0	0	12	12	9	12
·일반연구비(260-01)	120	120	120	0	0	0	0	0	0
·정책연구비(260-02)	0	0	0	0	0	90	90	0	90
·국제부담금(340-02)	200	200	200	0	0	200	200	50	200
·사업출연금(350-02)	130	130	130	0	0	130	130	130	13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

사업목적 및 내용	선진국의 고용노동정책 경험 공유·활용, 국내 고용노동정책의 국제사회 홍보 및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강화

(1-2)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사업목적 및 내용	FTA 등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및 협정 이행에 적극 대응하여 국익 제고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 (한-OECD 공동연구 사업) '04년 한-OECD간 노동시장 공동연구 사업 수락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 ○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 국정홍보 업무운영규정('07.5.16. 대통령령 제20053호) * 관련규정: 제1조(목적),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제10조(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 (국제성인력량조사(PIAAC)) 제107차 OECD/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 정례회의 시 노동부의 국제 성인능력 프로젝트(PIAAC) 참여를 요청받음('05.11월)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확정('05.4.6.) ○ 제4차 WTO 각료회의('01.11.14.)에서 '02년 DDA 출범에 합의함에 따라 WTO/DDA 범정부 대응체계 구성(노동분야는 인력알선 등 노동서비스 시장개방 포함) ○ 「FTA추진에 대한 정부 로드맵」확정('03.8.30.) 및 VIP의 적극적 협상 지시('05.4.6.)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추진 * 노동 Chapter(한미, 한-캐나다, 한-EU FTA 등): 국제노동기준 준수 관련 내용, 서비스 Chapter(한미 제외 모든 FTA): 노동서비스 시장개방 관련 내용 포함 ○ '08.6월 신정부 FTA 추진계획 수립(외교부)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FTA 추진키로 함
추진경위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 (한-OECD협력지원) '04년 공동연구사업 수락 이후 매년 연구 프로젝트 참여 ○ (고용노동 분야 국제정보 교류) '09년 OECD 모니터링 종료를 계기로 한국 고용노동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시작 *'16년부터 우리나라 고용노동 정책의 대외홍보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쌍방향적인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명칭 등을 개편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05.9월 국제협상팀 신설(FTA, WTO/DDA협상 전담부서) ○ '06년 한·미, 한·캐, 한·ASEAN FTA협상 등 수행 ○ '07년 협상대상국·협상수 증가에 따라 신규 사업예산 6억원 반영 ○ '24년 12월 기준, 26개국 FTA 협정 발효 및 타결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793	755	2,989	1,215	91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한-OECD 공동연구사업 해외이전, OECD PIAAC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직접, OECD,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대한민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국제성인역량조사 (PIACC)	보조	한국산업 인력공단	130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215	915	△300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758	458	△300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응	457	457	0

○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2026년) 758 → (2027년 정부안) 458백만원, △39.6%

- (설명)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300백만원 감액
- (산출)
  * 한-OECD 공동연구사업: ('27) 200백만원 (전년동)
  *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교류: ('27) 128 백만원 (전년동)
  *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개최: ('26) 300 → ('27) 0 (순감)
  * 국제성인역량조사(OECD PIAAC): ('27) 130백만원 (전년동)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응 (2026년) 457 → (2027년 정부안) 457백만원, 전년동

- (산출)
  * 협상인프라 구축: ('27) 43백만원 (전년동)
  * FTA, IPEF 등 협상 참석: ('27) 50백만원 (전년동)
  * 노동협정 이행: ('27) 323백만원 (전년동)
  *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 ('27) 41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피해해결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5	81.5	84.3	85.3	85.3
실적	83.9	85.0	85.7	-	-
달성도	106.9	104.3	101.7	-	-

- 측정산식 :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근로자수+체불사업주융자지원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 전산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사람과 일자리 연계' 참여 - 각종 국제기구 논의(ILO 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 고용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통계 등을 게시,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 대외 안내,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등에 자료 배포 등 - 고위급 인사 방한 및 면담 시(일본 후생성 대신정무관 등) 정책 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에 참가하여, 노동 분야(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협상에 대응
2024년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사람과 일자리 연계: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연구사업 추진('24.6월, 최종보고서 발간) - 각종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ILO 내에서 한국 정부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대외 안내 - 해외 인사 방한 시(독일연방 고용인협회장, IMF 미션단, OECD 미션단 등) 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에 참가하여, 노동 분야(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협상에 대응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년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인재 격차 해소를 위한 능력개발정책' 연구사업 추진 - 각종 국제기구 논의(ILO 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 고용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통계 등을 게시,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 대외 안내(수시),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등에 자료 배포 등 - 고위급 인사 방한 및 면담 시 정책 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사업 연구보고서 발간<12월>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에 참가하여, 노동 분야(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협상에 대응
2026년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인재 격차 해소를 위한 능력개발정책' 연구사업 추진 - 각종 국제기구 논의(ILO 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 고위급 인사 방한 및 면담을 통한 정책 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 고용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통계 등을 게시,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 대외 안내(수시),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등에 자료 배포 등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에 참가하여, 노동 분야(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협상 대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OECD와의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고용노동정책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

○ ILO 총회·이사회 참석 등을 통한 국제노동기준 논의 참여,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위상 제고

○ FTA 및 주요국 통상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적극 대응하여 국익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한-OECD 공동연구 사업)** OECD 사업제안서 송부→ 고용노동부 검토·채택→OECD에 참여의사 통보→ 사업비 송금→ 연구결과보고서 발간(세미나 개최 포함)·배포, 국내정책 활용 등
- **(고용노동 분야 국제정보 교류)** 국내외 노사관계 법·제도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 동향 파악 → 전문가 및 관계자 검토→ 주요 노동정책 영문자료 작성·배포,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 논의 대응→ 주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에 활용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FTA 자문단·이해관계자 간담회,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협상인프라 구축 및 대책 수립→ 노동분야 통상협상 참여→ FTA 협정 발효→ 협정에 명시된 노동장 이행기구 운영 및 당사국간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고용노동부·교육부) 사업 운영계획 수립 등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 집행 및 연구지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조사 총괄 → (국가데이터처) 조사 실행 → (고용노동부) OECD 참여국 간 비교·분석 자료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활용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상임위 결산	2023년	○ 지적 : 사업내용을 반영한 성과 측정 지표를 마련할 것 ○ 조치 : 사업내용을 반영한 성과 측정 지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으나, 전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으로 미반영. 추후 예·결산서에 사업 실적 반영
상임위 결산	2023년	○ 지적 : 예산 편성 시 각 내역사업별로 국외업무여비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반영할 것 ○ 조치 : ‘25년 예산 편성 시 내역사업별로 국외업무여비의 적정 규모를 산출, 반영 추진 중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93	793	0	0	793	788	99.4	0	5
2024년	755	755	0	0	755	699	92.6	0	56
2025년	2,989	2,989	0	0	2,989	2,937	98.3	0	52
2026년	1,215	1,215	0	0	1,215	846	69.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2	영문 에디터 통·번역비용이 부족하여 국외여비에서 자체 전용
2023년	불용	5	집행잔액(임차비 3백만원, 일반용역비 1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백만원)
2024년	불용	56	집행잔액(일반수용비 26백만원, 임차료 16백만원, 국외여비 14백만원)
2025년	불용	52	집행잔액(일반수용비 25백만원, 임차료 17백만원, 일반용역비 9백만원, 국외여비 1백만원)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3)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3050-3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개발협력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50	302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복지보호및 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개도국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개도국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10,330	8,599	-	4,838	4,221	△4,378	△50.9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0,325	10,341	10,330	-	11	8,599	8,599	7,888	4,22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3,803	3,819	3,808	-	11	2,320	2,320	1,609	4,221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	243	243	243	-	-	-	-	-	-
·한-ILO 협력사업	6,279	6,279	6,279	-	-	6,279	6,279	6,279	-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0,325	10,341	10,330	-	11	8,599	8,599	7,888	4,221
·일반수용비(210-01)	26	26	26	-	-	26	26	23	26
·일반용역비(210-14)	243	243	243	-	-	-	-	-	-
·국외여비(220-02)	39	39	39	-	-	39	39	30	39
·관서업무추진비(240-02)	5	5	5	-	-	5	5	4	5
·일반연구비(260-01)	370	386	386	-	-	-	-	-	-
·정책연구비(260-02)	-	-	-	-	-	70	70	-	70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150	150	105	-
·국제부담금(340-02)	6,279	6,279	6,279	-	-	6,279	6,279	6,279	-
·사업출연금(350-02)	3,363	3,363	3,352	-	11	2,030	2,030	1,447	4,08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사업목적	개도국에 우리나라 고용노동분야(직업훈련,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정책발전경험 공유 및 전수를 통한 개도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의 우수 정책모델 확산
사업내용	전문가 파견 및 현지자문, 초청연수, 직업교육훈련·산재재활 교육과정 개발 및 훈련시설 인프라 개선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25.,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 국제개발협력(ODA) 직업훈련 사업모델개발 추진계획, 국가협력전략('11.8.25., 제1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추진경위	○ '12.02.「'12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후 매년 외교부 주관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맞춰 사업계획 수립·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7,615	5,671	3,803	2,320	4,22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개도국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출연	근로복지공단	1,20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5항
개도국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2,881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599	4,221	△4,378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2,320	4,221	1,901
한-ILO 협력사업	6,279	-	순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2026년) 2,320 → (2027년 정부안) 4,221백만원, +81.9%**

- (설명) 다년도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 (산출) 직업훈련분야 2개국(캄보디아, 네팔) 대상 2개 사업 2,421백만원,
  다국가 대상 1개 사업 600백만원
  산업안전분야 1개국(파키스탄) 대상 1개 사업 1,200백만원

○ 한-ILO 협력사업 **(2026년) 6,279 → (2027년 정부안) 0백만원, 순감**

- (설명)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피해해결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5	81.5	84.3	85.3	85.3
실적	83.9	85.0	85.7	-	-
달성도	106.9	104.3	101.7	-	-

- 측정산식 :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근로자수+체불사업주융자지원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 전산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사업 실시(8건) - ASEAN+3 HRD 포럼('23.11.2.~11.) 및 한-아세안 고용노동분야 정책공유 워크숍('23.11.30.~12.1.) 개최 - 한-ILO 협력사업: 고용노동분야 개도국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9건)
2024년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사업 실시(12건) - ASEAN+3 HRD 포럼('24.11.7.~8.) 및 한-아세안 고용노동분야 정책공유 워크숍('24.9.30.~10.1.) 개최 - 한-ILO 협력사업: 고용노동분야 개도국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10건)
2025년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사업 실시(8건) - 한-아세안 고용노동분야 정책공유 워크숍('25.9.23.~9.24.) 개최 - 한-ILO 협력사업: 고용노동분야 개도국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10건)
2026년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사업 실시(8건) - 한-ILO 협력사업: 고용노동분야 개도국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10건)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한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정책제도 구축 및 개선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시스템과 정책 모델 확산
○ 직업기술훈련 분야 발전경험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 아세안의 숙련 기술 인력 양성 촉진 및 정책교류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수원국 요청 토대로 지원대상 국가 발굴 → 무상원조 시행계획 외교부 제출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외교부) → 예산 심회(기획예산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주관) 및 국회 최종 의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ODA 사업 실집행률 부진 ○ 결과 : 미흡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	2024년	○ 지적 : ①ODA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②국제행사 개최시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 ○ 조치 : ①사전타당성 조사 철저 및 사업착수 전 수원국과 진행사항 명확화, 집행관리 등 수시 진행, ②향후 행사 개최시 지침 준수하여 집행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961	9,961	-	-	9,961	9,961	100	-	-
2024년	10,175	10,175	-	-	10,175	9,361	92	16	798
2025년	10,325	10,325	16	-	10,341	10,330	99	-	11
2026년	8,599	8,599	-	-	8,599	7,888	9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4년	이월	16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2024년	불용	798	스리랑카 정부의 공식사업 중단 요청 및 기타 집행잔액
2025년	불용	11	수원국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4) 한-ILO 협력사업(ODA)(3050-30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50	303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한-ILO 협력사업(ODA)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한-ILO 협력사업(ODA)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국제노동기구(ILO)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ILO 협력사업(ODA)	6,279	6,279	6,279	5,338	5,040	△1,239	△19.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279	6,279	6,279	-	-	6,279	6,279	6,279	5,040
·한-ILO 협력사업(ODA)	6,279	6,279	6,279	-	-	6,279	6,279	6,279	5,04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279	6,279	6,279	-	-	6,279	6,279	6,279	5,040
·국제부담금(340-02)	6,279	6,279	6,279	-	-	6,279	6,279	6,279	5,04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한-ILO 협력사업(ODA)

사업목적	ILO와 협력하여 개도국·저개발국의 고용노동분야 제도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 우호국가 확대
사업내용	개도국·저개발국 대상 고용노동분야(고용서비스, 사회보험, 산업안전 등) 제도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강화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 ○ 한-ILO 특별기술협력사업 양해각서('03.10.1.) 체결 이후 국제부담금 송부
추진경위	○ '03년 정의용 대사, ILO 집행이사회 의장 선출을 계기로 한-ILO 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양 기관간 지원규모 및 범위 확대 합의) ○ '04년 ~ '14년 매년 한-ILO 협력사업 관련 약정서(LoA) 체결, '15년부터 3년 단위로 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 '27년~'29년 한-ILO 협력사업(중기) 약정(LoA) 체결(예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236	4,211	6,279	6,279	5,04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국제노동기구(ILO)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저개발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279	5,040	△1,239
한-ILO 협력사업(ODA)	6,279	5,040	△1,239

○ 한-ILO 협력사업(ODA) **(2026년) 6,279 → (2027년 정부안) 5,040백만원, △19.7%**

- (설명) ILO와 협력하여 개도국·저개발국의 고용노동분야 제도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 '26년 대비 △19.7% 감액

- (산출) $3,382,550 × 1,490원(재정환율) = 5,04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피해해결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5	81.5	84.3	85.3	85.3
실적	83.9	85.0	85.7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6.9%	104.3	101.6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지도해결근로자수+대지급금지급근로자수+체불사업주융자지원근로자수)/체불근로자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평균실적(83.6%) 대비 0.4%P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 전산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고용노동분야 개도국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9건)
2024년	고용노동분야 개도국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10건) - ILO본부(5건), 아태사무소(5건)
2025년	고용노동분야 개도국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10건) - ILO본부(5건), 아태사무소(5건)
2026년	고용노동분야 개도국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10건) - ILO본부(5건), 아태사무소(5건)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개도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도모

○ 국가 위상에 걸맞는 선진 공여국으로서 국제기구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 고용노동 모델을 확산하여 ILO 내 역할 및 국제사회 위상 제고, 국가 간 협력기반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ILO와 사업 수요 발굴·협의(정례협의회 등) → ILO에 사업제안서 제출 가이드라인 송부 → ILO의 사업제안서 제출 → 제안서 검토 및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약정서(LoA)체결) → 기여금 송금 → 협력사업 수행 → 사업 점검 및 평가(사업점검회의 개최, 보고서 제출 등)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236	2,236	-	-	2,236	2,236	100	-	-
2024년	4,211	4,211	-	-	4,211	4,211	100	-	-
2025년	6,279	6,279	-	-	6,279	6,279	100	-	-
2026년	6,279	6,279	-	-	6,279	6,279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전액집행)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55)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3000	3051	308
명칭	사회복지	노동	근로조건보호및 복지증진	외국인력관리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Y	N	30%, 5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외국인취업자관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지방자치단체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8,989	13,837	13,837	19,330	15,915	2,078	1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9,195	9,195	8,989	0	206	13,837	13,837	8,107	15,915
·외국인취업자관리	5,073	5,073	4,867	0	206	5,229	5,229	2,417	5,536
·외국인력상담센터	2,022	2,022	2,022	0	0	2,030	2,030	2,030	2,199
·외국인노동자지역정착지원	2,100	2,100	2,100	0	0	6,578	6,578	3,660	8,180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1,800	1,800	1,800	0	0	2,900	2,900	2,179	4,300
- 외국인노동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300	300	300	0	0	2,040	2,040	1,428	3,060
-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	-	-	-	-	1,638	1,638	53	320
- 외국인노동자 지역융화 지원	-	-	-	-	-	-	-	-	500

※「외국인노동자 공공주거시설 지원」(공공주거시설 지원+주거환경개선 지원)은 별도 내역사업이었으나「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으로 '27년부터 통합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9,195	9,195	8,989	0	206	13,837	13,837	8,107	15,915
·상용임금(110-03)	1,729	1,679	1,594	0	85	1,881	1,881	947	2,358
·일반수용비(210-01)	2,361	2,213	2,128	0	85	2,311	2,311	1,002	2,12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	69	69	0	0	5	5	5	5
·임차료(210-07)	15	15	14	0	1	15	15	45	15
·복리후생비(210-12)	31	31	28	0	3	31	31	23	37
·일반용역비(210-14)	2,022	2,106	2,106	0	0	2,060	2,060	2,071	2,229
·관리용역비(210-15)	92	92	81	0	11	92	92	62	0
·국내여비(220-01)	190	190	180	0	10	200	200	62	200
·국외업무여비(220-02)	57	57	49	0	8	57	57	40	57
·사업추진비(240-01)	33	33	32	0	1	43	43	18	43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100	0	0	0	0	0	0
·정책연구비(260-02)	80	80	80	0	0	150	150	63	150
·고용부담금(320-09)	338	388	386	0	2	372	372	99	501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800	1,800	1.800	0	0	2,900	2,900	2,179	4,8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00	300	300	0	0	3,678	3,678	1,481	3,380
·자산취득비(430-01)	42	42	42	0	0	42	42	10	1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외국인취업자관리

사업목적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 도입·관리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사업내용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고용허가제도 운영

(1-2) 외국인력상담센터

사업목적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원
사업내용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히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1-3)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목적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 강화
사업내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공공주거시설 설치·운영, 숙소 개보수 및 지역 외국인 축제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의3, 제28조 및 시행령 제31조 등
추진경위	○ 외국인취업자관리 - '04.08월: 고용허가제 시행 ○ 외국인력상담센터 - '11.07월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 '24.08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개소 운영 - '25.01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개소 확대(9→19개소), 공공주거시설 건립(2개소) - '26.01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지원(210개소)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외국인취업자관리) '04년~
(외국인력상담센터) '11년~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24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4,641	7,934	9,195	13,837	15,91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외국인취업자관리) 직접
(외국인력상담센터) 위탁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보조(자치단체)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 센터 운영)	보조	지방자치단체	4,300	5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공공주거시설 지원)	보조	지방자치단체	3,060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조	지방자치단체	320	임차: 45% 자가: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융화 지원)	보조	지방자치단체	500	5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3,837	15,915	2,078
외국인취업자관리	5,229	5,536	307
외국인력상담센터	2,030	2,199	169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6,578	8,180	1,602

○ 외국인취업자관리 **(2026년) 5,229 → (2027년 정부안) 5,536백만원, +5.9%**

- (설명)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인권리더 사업 운영 신설, 지방고용노동관서 다국어상담원 처우개선 등

- (산출)
  * 이주노동자 인권리더 운영 ('27 정부안) 250백만원
  * 다국어상담원 인건비 처우개선 ('26년) 1,881 → ('27년) 2,358백만원

○ 외국인력상담센터 **(2026년) 2,030 → (2027년 정부안) 2,199백만원, +8.3%**

- (설명) 화재 위험 높은 노후장비 교체, 상담원 처우개선

- (산출)
  * 화재 위험 높은 노후장비 교체 100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 처우개선 ('26년) 1,765 → ('27년) 1,834 백만원

○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2026년) 6,578 → (2027년 정부안) 8,180백만원, +24.4%**

- (설명)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공공주거시설 잔여 공사비(60%) 반영, 외국인노동자 지역융화 지원 사업 신설 등

- (산출)
  *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26년) 13개소 → ('27년 정부안) 20개소
  * 외국인노동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26년) 공사비 40% → ('27년 정부안) 공사비 60%
  *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26년) 210개소 지원 → ('27년 정부안) 40개소 지원
  * 외국인노동자 지역융화 지원 ('27년 정부안) 5억 신설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피해해결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8.5	81.5	84.3	84.5	85.3
실적	83.9	85.0	85.7	해당없음	해당없음
달성도	106.9	104.3	101.7	해당없음	해당없음

- **측정산식** : (지도해결 근로자수 +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수 +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근로자수) / 체불근로자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및 대내외 여건 등 고려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 전산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2023년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120,000명 ○ 상담・안내업무 통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내방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2024년	○ 2024년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165,000명 ○ 상담・안내업무 통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내방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자치단체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9개소)
2025년	○ 2025년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130,000명 ○ 상담・안내업무 통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내방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자치단체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9개소) ○ 외국인노동자 공공주거시설 지원(2개소)
2026년	○ 2026년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80,000명 ○ 상담・안내업무 통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내방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자치단체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19개소) ○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설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외국인취업자관리
  *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 운영)
- 외국인력상담센터
  * 고용노동부(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한국산업인력공단(상담센터운영 및 관리)
-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고용노동부(사업계획 수립, 사업공모, 지원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 → 사업수행기관(체류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외국인노동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 고용노동부(사업계획 수립, 사업공모, 지원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 수립, 공공주거시설 건립 및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 고용노동부(사업계획 수립, 사업공모, 지원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 수립, 숙소 개보수 지원대상 모집·지원·사후관리)
-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외국인노동자 지역융화 지원)
  * 고용노동부(사업계획 수립, 사업공모, 지원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행사계획 수립 및 행사 실시)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4년	○ 의견 : 보통 ○ 결과 : 사업추진방식 효율성과 적정성 높음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5년	○ 의견 : 보통 ○ 결과 : 사업목적 명확하고 목적과 내용간 연계 높음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 사업개선 ○ 결과 :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및 집행 점검 철저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2024년	○ 지적 : 홍보물품 구매 시 목적, 대상, 금액 등 사업취지에 맞게 집행 ○ 조치 : 증정대상, 금액 등 사업취지 고려해 홍보물 구매·집행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641	4,641	30	0	4,671	4,585	98.8	20	66
2024년	7,934	7,934	20	0	7,954	7,554	95.2	0	400
2025년	9,195	9,195	0	0	9,195	8,989	97.8	0	206
2026년	13,837	13,837	0	0	13,837	8,107	58.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월	2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금 회계정산을 위한 이월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6)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4135-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4100	4135	300
명칭	사회복지	노동	산업재해예방	산업안전감독행정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업안전감독관 활동지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3,750	56,192	56,192	40,696	40,696	△15,496	△27.6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3,930	3,930	3,750	0	180	56,192	56,192	30,746	40,696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408	410	409	0	1	408	408	121	8,649
·산업안전감독관 활동지원	-	-	-	-	-	-	-	-	32,047
·중대재해 수사 과학화	986	986	911	0	75	-	-	-	-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지원	875	947	883	0	64	-	-	-	-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158	161	161	0	0	-	-	-	-
·증원 수사인력 지원	1,503	1,426	1,386	0	40	-	-	-	-
·근로감독 제도혁신	-	-	-	-	-	-	-	-	-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3,930	3,930	3,750	0	180	56,192	56,192	30,746	40,696
·일반수용비(210-01)	228	228	226	0	2	2,737	2,737	982	1,417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8	8	6	0	2	2,301	1,601	538	1,549
·피복비(210-03)	-	-	-	-	-	603	603	56	254
·임차료(210-07)	374	324	322	0	2	7,205	7,205	2,162	8,667
·유류비(210-08)	12	12	10	0	2	12	12	2	12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50	150	116	0	34	668	1,368	753	3,491
·일반용역비(210-14)	342	342	339	0	3	8,525	8,525	2,990	7,698
·관리용역비(210-15)	25	25	23	0	2	205	205	34	210
·국내여비(220-01)	610	680	656	0	24	5,725	5,725	1,934	5,888
·공사비(420-03)	472	472	472	0	0	10,856	10,856	8,885	4,395
·자산취득비(430-01)	1,439	1,489	1,379	0	110	9,995	9,995	7,445	4,619
·무형자산(440-00)	250	200	200	0	0	7,360	7,360	4,967	2,49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사업목적	산업안전감독관 전문역량 강화
사업내용	기업의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사업장 감독·점검 및 중대재해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교육을 지원

(1-2) 산업안전감독관 활동지원

사업목적	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지원 및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여건 구축
사업내용	디지털 증거분석장비, 수사지원차량, 드론, 특수보호장비, 산업재해 대응 상황실 등 감독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증거확보 활동을 지원하고, 증원된 감독관의 업무 여건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사법경찰직무법」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추진경위	○ ‘21.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및 산업안전감독관 증원(’21년 110명) ○ ’22.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50인(억) 이상) 및 ’24.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등에 필요한 교육비, 시설개선비 등의 산업안전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수사여건 개선 예산이 필요 ○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사업 신설(’23년 예산 반영) ○ ‘24.6월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추가 설치 및 산업안전감독관 증원(’24년 6과 신설, 75명 증원) ○ 국정과제 75(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93(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의 추진 일환 ○ 산업안전감독관 1,200명 증원 및 40개과 신설(’26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3~(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4,629	2,282	3,930	56,192	40,69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업안전감독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6,192	40,696	△15,496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408	8,649	8,241
산업안전감독관 활동지원	-	32,047	32,047
중대재해 수사 과학화	798	-	△798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지원	1,044	-	△1,044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158	-	△158
증원 수사인력 지원	534	-	△534
근로감독 제도혁신	53,250	-	△53,250

○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2026년) 408 → (2027년 정부안) 8,649백만원, +2019.9%**

○ 산업안전감독관 활동지원 **(2027년 정부안) 32,047백만원, (순증)**

㉮ 중대재해 수사 과학화 : ('27정부안) 798백만원(순증)
㉯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지원 : ('27정부안) 306백만원(순증)
㉰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 ('27정부안) 308백만원(순증)
㉱ 증원 수사인력 지원 : ('27정부안) 443백만원(순증)
㉲ 근로감독 제도혁신 : ('27정부안) 29,939백만원(순증)
㉳ 산업재해 대응 상황실 구축 : ('27정부안) 253백만원, 순증

○ 중대재해 수사 과학화: ('26) 798→ ('27요구) -원, 순감
○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지원: ('26) 1,044→ ('27요구) -원, 순감
○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26) 158→ ('27요구) -원, 순감
○ 근로감독 제도혁신: ('26) 53,250→ ('27요구) -원, 순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사업장 법 위반 조치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0.49	0.50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 **측정산식 :** 조치한 사업장 수/전체 점검·감독 사업장 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2~'25년 사업장 법위반 조치율 평균으로 목표치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 전산시스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산업안전감독관 1,747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직무교육 실시 ○ 디지털증거분석실 설치 및 확장 공사, 디지털증거 분석팀 장비구매 및 운영, 디지털증거 분석팀 담당자 교육 실시 등 ○ 영상녹화조사실(20개소) 설치, 수사지원차량(4대) 제작·운용 등 중대재해 수사 기반 마련
2024년	○ 산업안전보건 전문이론 및 현장을 반영한 실습·체험 교육과정 운영, 신규산업안전감독관 105명 등 총 928명 직무교육 이수 ○ 디지털증거분석 장비 라이선스 갱신·신규 구매, 디지털증거분석 담당자 교육 실시 등 ○ 수사지원차량 제작(2대)·운용(6대), 통계 홈페이지 구축('24.8월~), 신설 광역중대재해수사과(6과) 임시 근무 여건 마련 등
2025년	○ 산업안전보건 전문이론 및 현장을 반영한 실습·체험 교육과정 운영, '25년 신규 산업안전감독관 201명 등 총 1,012명 직무교육 이수 ○ 디지털증거분석 장비 라이선스 갱신·신규 구매, 디지털증거분석 담당자 교육 실시 등 ○ 수사지원차량 제작(3대)·운용(9대), 중대재해 통계 홈페이지 운영, 신설 광역중대재해수사과(6과) 근무 여건 지원 등 ○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20개 부서 지급
2026년	○ 산업안전보건 전문이론 및 현장을 반영한 실습·체험 교육과정 운영, 신규산업안전감독관 2,227명 등 총 2,628명 직무교육 이수 ○ 디지털증거분석 장비 라이선스 갱신·신규 구매, 디지털증거분석 담당자 교육 실시 등 ○ 수사지원차량 운용(9대), 중대재해 통계 홈페이지 운영, 신설 광역중대재해수사과(6과) 근무 여건 지원 등 ○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37개 부서 지급 ○ 증원된 신규산업안전감독관 사무실 인프라 구축 등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재해 수사,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여건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중대재해 수사를 지원

○ 산업재해 대응 상황실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산업재해 동향 파악·대응·보고 업무 수행

○ 신규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수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기반을 마련하여 산재예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난안전사업	2024년	○ 결과 : 우수, 82.9점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5년	○ 의견 : 증원수사인력지원 내역사업 폐지 요구 및 성과지표 개발 필요 ○ 결과 : 감액(미흡, 53.3점)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2023년	○ 지적 : 유류비 과다계상 및 수사지원차량의 운행 저조 ○ 조치 : 수사지원차량 운행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및 실 사용량을 반영하여 예산을 축소·편성
환노위	2023년	○ 지적 : 국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부합되도록 예산 집행 ○ 조치 :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
환노위	2026년	○ 지적 : 드론 도입·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필요 ○ 조치 : 촬영 사진 등의 정보관리 철저,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자 안전수칙 준수, 드론 활용 감독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사고 예방 노력
예정처	2026	○ 지적 : 산업안전감독관 대규모 증원 관련 직렬별 채용계획·지방관서별 배치 계획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조치 : 직렬별 채용계획 및 지방관서별 배치계획 등 면밀히 수립하여 증원된 인력이 효과적인 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예정처	2025	○ 지적 :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확대와 함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노력 필요 ○ 조치 : 신규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기간 확대하고, 체험·참여형 학습, 사례실습형 위주교육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 및 현장성 강화하고, 향후 교육과정 평가 등을 통해 직무교육 확대강화 노력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629	4,629	0	0	4,629	4,406	95.2	26	197
2024년	2,282	2,282	26	0	2,308	2,267	99.3	0	41
2025년	3,930	3,930	0	0	3,930	3750	95.4	0	180
2026년	56,192	56192	0	0	56,192	30,746	54.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30	· 중대재해 발생 현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전산개발 등 지식 기반의 조사 및 연구 관련'에 해당하여 '일반연구비'에서 집행 필요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4135-300) 일반용역비(210-14) 130백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
2024년	내역 변경	160	· '24.6월 신설된 광역중대재해수사과(6과)의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위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 내역 변경
2025년	전용	73	· 사무공간 마련 과정에서 자산취득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부족분을 무형자산(440-00)에서 50백만원 전용 · 산업안전감독관 여비 부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서 20백만원, 임차료(210-07)에서 3백만원 전용
	내역 변경	12	· 특수보호장비(장화) 구매를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 내역 변경 · 신규 도입 수사지원차량 보험료 납부를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 내역 변경 · 중대법 수사 처리속도 제고를 위한 수사 실무 교육을 위해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 내역 변경 ·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버스 임차 위해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 내역 변경
2026년	내역 변경	17	· 밀폐공간 점검 등으로 복합가스측정기 추가 구매 필요로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 내역 변경
	세목 변경	700	· 산업안전부서 임차사무실 관리비 납부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예산 700백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세목변경

사 업 명
(57) 본부인건비(7001-1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재무계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6	7000	7001	100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인건비	본부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	-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본부인건비	73,021	65,616	65,616	77,059	77,059	11,443	17.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본부인건비	63,652	73,185	73,021	-	164	65,616	65,616	47,019	77,059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63,652	73,185	73,021	-	164	65,616	65,616	47,019	77,059
·보수(110-01)	62,045	71,692	71,592	-	100	63,962	63,962	46,362	75,206
·기타직보수(110-02)	1,135	1,135	1,120	-	15	1,161	1,161	653	1,262
·연가보상비(110-05)	472	358	309	-	49	493	493	4	59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본부인건비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봉급(연봉) 및 제수당 등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추진경위	○ 해당없음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67,803	68,178	63,652	65,616	77,05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본부 소속 공무원 및 일반회계 전문위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본부인건비	65,616	77,059	11,443

○ 본부인건비 **(2026년) 65,616 → (2027년 정부안) 77,059백만원, +17.4%**

- 보수 : 75,206백만원(고용노동부 본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직제상 정원 기준으로 편성)
- 기타직 보수 : 1,262백만원 (고용노동부 본부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일반회계 전문위원 인건비 편성)
- 연가보상비 : 591백만원(고용노동부 본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직제상 정원 기준으로 편성)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7,803	67,803	-	△28	67,775	67,584	99.7	-	191
2024년	68,178	68,178	-	2,734	70,912	70,862	103.9	-	50
2025년	63,652	63,652	-	9,533	73,185	73,021	114.7	-	164
2026년	65,616	65,616	-	-	65,616	47,019	71.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28	신규 공무원 복지포인트 부족으로 본부인건비에서 본부기본경비로 전용
	불용	191	집행잔액
2024년	이·전용	2,734	본부인건비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총액) 등에서 2,734백만원 이·전용
	불용	50	집행잔액
2025년	이체	59	업무이관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체
	이·전용	9,706	본부인건비 부족으로 지방인건비 등에서 이·전용
	불용	164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8) 노동위원회인건비(7002-10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02	104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노동위원회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노동위원회인건비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중앙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노동위원회 인건비	31,627	31,452	31,452	39,108	39,108	7,656	24.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9,957	31,673	31,627	0	47	31,452	31,452	21,148	39,108
·노동위원회인건비	29,957	31,673	31,627	0	47	31,452	31,452	21,148	39,108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9,957	31,673	31,627	0	47	31,452	31,452	21,148	39,108
· 보수(110-01)	29,727	31,508	31,499	0	8	31,213	31,213	21,143	38,803
· 연가보상비(110-05)	230	165	127	0	39	239	239	5	30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노동위원회 인건비

사업목적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등의 노동위원회 인력운영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지침
추진경위	○ 해당없음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7,821	28,841	29,957	31,452	39,10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1,452	39,108	7,656
노동위원회인건비	31,452	39,108	7,656

○ 노동위원회인건비 (2026년) 31,452 → (2027년 정부안) 39,108백만원, +24.3%

- (설명) ‘27년 예산안 기준정원 : 473명
- (산출) 노동위원회 직제상 정원 및 인건비 인상률 고려
  * 보수: 31,213백만원(’26년)→ 38,803백만원(‘27년)
  * 연가보상비: 239백만원(’26년)→ 305백만원(‘27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소속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통한 노동위원회 원활한 인력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7,821	27,821	0	△152	27,669	27,545	99.0	0	124
2024년	28,841	28,841	0	571	29,412	29,390	101.9	0	23
2025년	29,957	29,957	0	1,716	31,673	31,627	105.6	0	47
2026년	31,452	31,452	0	0	31,452	21,148	67.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7002-1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	일반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02	150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인건비	1,417	1,579	1,579	1,618	1,614	35	2.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519	1,519	1,417	0	183	1,579	1,579	845	1,61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1,519	1,519	1,417	0	183	1,579	1,579	845	1,61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519	1,519	1,417	0	183	1,579	1,579	845	1,614
·기타직보수(110-02)	1,519	1,519	1,417	0	183	1,579	1,579	845	1,61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사업목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회의체 논의사항과 관련된 전문적 조사·연구 및 회의체 운영
사업내용	회의체 논의사항과 관련된 전문적 조사·연구 및 회의체 운영을 위해 고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제17864호, '21.1.1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50호, '18.9.11.)
추진경위	○ 추진경위 - '97년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지원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98.1.15 노사정 3자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 '98년에는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99년에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체제를 제도화(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06.0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합의 - '07.01.26.『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07.4.27 시행) - '09.02.2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전문 및 64개 항목) 체결 - '11.06.10.「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중소기업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채택 - '13.07.17.「청년고용증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채택 - '14.12.23.「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채택 - '15.09.15.「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채택 - '17.09.13.「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권고문」채택 - '17.11.06.「노동시장 외주화와 격차 해소방안」채택 - '18.06.12.『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전면개정('18.9.13. 시행) - '18.08.21.「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채택 - '19.02.18.「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채택 - '19.02.19.「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채택 - '19.03.05.「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채택 - '19.05.03.「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 '19.06.03.「사람중심 스마트공장 협약식」노사정 업무협약 체결 - '19.08.30.「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발표 - '20.02.20.「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발표 - '20.03.02.「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발표 - '20.03.05.「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발표 - '20.03.19.「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발표

	- ‘20.04.27.「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0.05.13.「플랫폼 경제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합의문」 발표 - ‘20.07.28.「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합의문」 발표 - ‘20.08.18.「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09.08.「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0.10.08.「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0.10.16.「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의결 - ‘20.10.27.「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 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의결 - ‘20.10.29.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안」 채택 - ‘20.11.18.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채택 - ‘21.11.05.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발표 - ‘22.06.09. 「가사·아이돌봄 산업생태계 조성가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2.06.10.「대리운전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대리운전 종사자 보호 확보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3.03.15.「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4.02.06.「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 채택 - ‘24.10.22. 공무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4.10.28. 교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5.05.08.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 ’25.11.18. 인공지능과 노동(우리사회가 답해야 할 12가지 질문) 녹서 발간 - ‘26.03.19.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국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사회적 대화 2.0‘)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해당없음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579	1,614	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1,579	1,614	3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2026년) 1,579 → (2027년 정부안) 1,614백만원, +2.2%**

- (설명) 전문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율 반영 편성
- (산출) 전문임기제공무원 19명 인건비(가급 4명·나급 8명·다급 6명·라급 1명)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204	1,204	0	0	1,204	978	81.2	0	226
2024년	1,480	1,480	0	0	1,480	1,297	87.6	0	183
2025년	1,519	1,519	0	0	1,519	1,417	93.3	0	102
2026년	1,579	1,579	0	0	1,579	845	53.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특이사항 없음
2024년	-	-	특이사항 없음
2025년	-	-	특이사항 없음
2026년	-	-	특이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0)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7007-10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07	107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인건비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436,303	570,011	570,011	607,345	607,345	37,334	6.1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436,770	436,770	436,303	-	247	570,011	570,011	288,500	607,345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436,770	436,770	436,303	-	247	570,011	570,011	288,500	607,34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436,770	436,550	436,303	-	247	570,011	570,011	288,500	607,345
·보수(110-01)	431,756	432,148	431,971	-	177	556,064	556,064	288,117	597,474
·기타직보수(110-02)	1,679	3,032	2,978	-	54	9,919	9,919	373	5,049
· 연가보상비(110-05)	3,355	1,370	1,354	-	16	4,028	4,028	10	4,82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등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추진경위	○ 법령에 의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등 지급 필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394,157	414,626	436,550	570,011	607,34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70,011	607,345	6.1

○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2026년) 570,011 → (2027년 정부안) 607,345백만원, +6.1%**

- (설명)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제상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편성
- (산출) 보수(110-01) 556,064백만원, 기타직보수(110-02) 9,919백만원, 연가보상비(4,028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지방관서별 예산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94,157	394,157	-	△762	394,157	393,110	99.5	-	1,047
2024년	414,626	414,626	-	3,043	414,626	413,659	100.5	-	967
2025년	436,550	436,550	-	△220	436,550	436,303	99.9	-	247
2026년	570,011	570,011	-	-	570,011	288,550	50.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1)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총액)(7011-21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6	7000	7011	21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총액)	운영지원과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총액)	1,220	1,681	1,681	1,731	1,681	0	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36	1,226	1,220	0	6	1,681	1,681	652	1,681
· 인건비	1,636	1,226	1,220	0	6	1,681	1,681	652	1,68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36	1,226	1,220	0	6	1,681	1,681	652	1,681
· 상용임금(110-03)	1,636	1,226	1,220	0	6	1,681	1,681	652	1,68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총액)

사업목적·내용	고용노동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병역법」 제31조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추진경위	○ 병역자원을 우리부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046	1,346	1,636	1,681	1,68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총액)	1,681	1,681	0

- (설명) '26년 대비 변동 없음
- (산출) - 2027년도 인건비 : 1,681백만원 = 1,200,000원×121명×12월-61,400,000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91,921만원 집행
2024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13,046만원 집행
2025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21,983만원 집행
2026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5,200만원 집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예산 및 인원 정·현원 관리를 통해 본부와 지방관서별 형평성 있는 인력 운용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행정지원 인력으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46	1,046	0	0	1,046	919	87.8	0	127
2024년	1,346	1,346	0	△208	1,137	1,130	83.9	0	7
2025년	1,636	1,636	0	△410	1,226	1,220	74.6	0	215
2026년	1,681	1,681	0	0	1,681	652	38.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27	집행잔액
2024년	전용	△208	인건비 부족으로 본부 인건비로 전용
	불용	7	집행잔액
2025년	전용	△410	인건비 부족으로 본부 인건비로 전용
	불용	215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2)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총액)(7011-21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12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총액)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총액)	7,635	8,462	8,462	9,742	9,742	1,280	15.1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7,621	7,715	7,635	-	80	8,462	8,462	5,792	9,742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총액)	7,621	7,715	7,635	-	80	8,462	8,462	5,792	9,74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7,621	7,715	7,635	-	80	8,462	8,462	5,792	9,742
・상용임금(110-03)	111	52	36	-	17	121	121	32	138
・일용임금(110-04)	1	1	-	-	1	1	1	-	1
・특근매식비(210-05)	127	111	100	-	11	127	127	66]	127
・일숙직비(210-06)	24	24	24	-	-	24	24	-	-
・복리후생비(210-12)	6,188	6,260	6,229	-	31	7,048	7,048	5,024	8,180
・기타운영비(210-16)	414	548	543	-	5	384	384	223	514
・직책수행경비(250-02)	668	633	619	-	14	668	668	398]	684
・특정업무경비(250-03)	42	42	42	-	-	42	42	27	46
・고용부담금(320-09)	46	44	42	-	2	46	46	23	5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복리후생비, 본부 지원부서 특근매식비, 과운영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해당없음
추진경위	○ 고용노동부 지원부서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필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7,336	7,467	7,621	8,462	9,74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462	9,742	1,280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총액)	8,462	9,742	1,280

○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총액) **(2026년) 8,462백만원 → (2027년 정부안) 9,742백만원, +15.1%**

- (설명)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국제협력관실 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등 9,742백만원
- (산출) 인건비 139만원(상용임금 138백만원, 일용임금 1백만원), 운영비 8,821백만원(특근매식비 127백만원, 복리후생비 8,180백만원, 기타운영비 514백만원), 직무수행경비 730백만원(월정직책급 684백만원, 특정업무경비 46백만원), 고용부담금 52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336	7,336	-	19	7,355	7.201	98.1	-	154
2024년	7,467	7,467	-	143	7,610	7,460	99.9	-	150
2025년	7,621	7,621	-	94	7,715	7,635	100.1	-	80
2026년	8,462	8,462	-	-	8,462	5,792	68.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3)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7011-21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13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 (고용정책실, 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직접 수행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79	84	84	87	84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4	84	79	-	5	84	84	58	84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84	84	79	-	5	84	84	58	8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4	84	79	-	5	84	84	58	84
·특근매식비(210-05)	46	46	44	-	2	46	46	31	46
·기타운영비(210-16)	38	38	35	-	3	38	38	27	3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사업목적	고용정책실 경상업무 추진
사업내용	관서운영경비 등 공통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해당없음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84	84	84	84	8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해당 없음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정책실 소속 직원 및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84	84	-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84	84	-

○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2026년) 84 → (2027년 정부안) 84백만원(전년동)**

- (설명)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운영비 84백만원
- (산출) 특근매식비: 45,511천원(9,000원×54명×8일×12월-1,145,000원(단수조정))
  기타운영비: 38,489천원(과운영비: 30,929천원, 실국장실 운영비 7,560천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고용정책실 관련 사업 원활한 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상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4	84	-	-	84	76	90.5	-	8
2024년	84	84	-	-	84	80	95.2	-	5
2025년	84	84	-	-	84	79	94.0	-	5
2026년	84	84	-	-	84	58	68.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8	집행 잔액
2024년	불용	5	집행 잔액
2025년	불용	5	집행 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4) 기본경비(노동정책실, 비총액)(7011-25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54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 (노동정책실, 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본경비(노동정책실, 비총액)	노동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 (노동정책실, 비총액)	2,135	3,016	3,016	3,106	2,271	△745	△24.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122	2,162	2,135	-	27	3,016	3,016	1,436	2,271
·(노동정책실, 비총액)	2,122	2,162	2,135	-	27	3,016	3,016	1,436	2,27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122	2,162	2,135	-	27	3,016	3,016	1,436	2,271
·일반수용비(210-01)	465	511	509	-	2	707	707	507	497
·공공요금및제세(210-02)	62	28	25	-	3	245	245	47	99
·피복비(210-03)	265	265	261	-	4	370	370	-	335
·임차료(210-07)	152	182	176	-	6	188	188	166	188
·유류비(210-08)	12	12	5	-	7	25	25	4	18
·시설장비유지비(210-09)	4	2	2	-	-	12	12	1	12
·국내여비(220-01)	679	666	665	-	1	679	679	347	645
·국외업무여비(220-02)	55	68	67	-	1	53	53	36	50
·관서업무추진비(240-02)	159	159	159	-	-	169	169	150	161
·포상금(310-03)	41	41	41	-	-	341	341	79	41
·기타보전금(310-04)	4	4	3	-	1	3	3	3	3
·자산취득비(430-01)	224	224	222	-	2	224	224	96	22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정책실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등)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해당없음
추진경위	○ 노동정책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운영비, 여비 등)로 편성·운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047	2,133	2,122	3,016	2,27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016**	**2,271**	**△745**
기본경비(노동정책실, 비총액)	3,016	2,271	△745

○ 기본경비(노동정책실, 비총액) (2026년) 3,016 → (2027년 정부안) 2,271백만원, △24.7%

① 운영비 : (2026년) 1,546 → (2027년 정부안) 1,148백만원, △25.7%

- (설명) 현안업무 수행 관련 예산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497,008천원(△209,808)
  공공요금및제세 98,662천원(△146,526)
  피복비 335,000천원(△35,000)
  임차료 187,706천원(전년동)
  유류비 17,733천원(△6,800)
  시설장비유지비 12,001천원(전년동)

② 여비 : (2026년) 732 → (2027년 정부안) 695백만원, △5.0%

- (설명) 현안업무 수행 국내외 출장 여비 예산 요구
- (산출) 국내여비 645,373천원(△33,967)
  국외업무여비 50,010천원(△2,633)

③ 업무추진비 : (2026년) 169 → (2027년 정부안) 161백만원, △4.7%

- (설명) 현안업무 수행 관련 예산 요구
- (산출) 관서업무추진비 161,063천원(△8,478)

④ 보전금 : (2026년) 344 → (2027년 정부안) 44백만원, △87.2%

- (설명) 노사협력 유공자 및 우수 감독기관 포상 등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포상금 41,565천원(△300,000)
  기타보전금 3,417천원(전년동)

⑤ 유형자산 : (2026년) 224 → (2027년 정부안) 222백만원, △0.9%

- (설명) 노동정책실 노후 사무기기 교체 등 예산 요구
- (산출) 자산취득비 221,879천원(△1,788)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2,464백만원)
2024년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2,246백만원)
2025년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2,135백만원)
2026년 7월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1,408백만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노동정책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경상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047	2,047	-	500	2,547	2,464	120.4	-	83
2024년	2,133	2,133	-	135	2,268	2,246	105.3	-	22
2025년	2,122	2,122	-	40	2,162	2,135	100.6	-	27
2026년	3,016	3,016	-	-	3,016	1,408	46.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내역 변경	500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023년	불용	83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24년	전용	100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024년	내역 변경	35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024년	불용	22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25년	내역 변경	40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025년	불용	27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65)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7011-21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14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 (노동정책실, 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	노동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 (노동정책실, 총액)	138	205	205	211	140	△65	△31.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8	138	133	-	5	205	205	124	140
·(노동정책실, 총액)	138	138	133	-	5	205	205	124	14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8	138	138	-	5	205	205	124	140
·특근매식비(210-05)	86	91	90	-	1	151	151	94	86
·기타운영비(210-16)	52	47	43	-	4	54	54	30	5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정책실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해당없음
추진경위	○ 노동정책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로 편성·운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33	138	138	205	14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05**	**140**	**△65**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	205	140	△65

○ 기본경비(노동정책실,총액) (2026년) 205 → (2027년 정부안) 140백만원, △31.7%

① 특근매식비 : (2026년) 151 → (2027년 정부안) 86백만원, △43.0%
- (설명) 현안업무 수행 관련 예산 요구
- (산출) 경상업무특근 80,784천원(전년동)
  노사관계 대책 등 노사정책 비상근무 2,700천원(전년동)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비상근무 2,700천원(전년동)
  지방관서 직제 반영분 한시예산 65,377천원(순감)
  단수조정 33천원

② 기타운영비 : (2026년) 54 → (2027년 정부안) 54백만원(전년동)
- (설명) 노동정책실 운영 및 과운영비 소요
- (산출) 과운영비 45,983천원(전년동)
  노동정책실장실 운영비 2,400천원(전년동)
  정책관실 운영비 5,400천원(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126백만원)
2024년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154백만원)
2025년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133백만원)
2026년 7월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124백만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노동정책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경상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33	133	-	-	133	126	94.7	-	7
2024년	138	138	-	20	158	154	111.6	-	4
2025년	138	138	-	-	138	135	97.8	-	5
2026년	205	205	-	-	205	124	60.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7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24년	불용	4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25년	불용	5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66)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7011-21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16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산업안전 보건본부, 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 없음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본경비(산업안전 보건본부, 총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	172	334	334	344	157	177	△53.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57	178	173 (173)		5	334	334	163 (163)	157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57	178	173 (173)		5	334	334	163 (163)	157
·일반수용비(210-01)	80	90	90 (90)		0	258	258	141 (141)	81
·국내여비(220-01)	77	88	88 (88)		5	76	76	22 (22)	7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해당 없음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2014년 ○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4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25	129	157	334	15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34	157	△177

○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

- (2026 본예산) 334백만원 → (2027 요구) 157백만원, 177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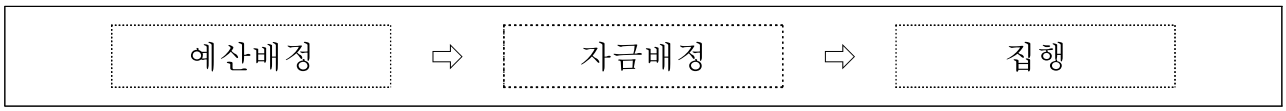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25	125		-	125	116	92.5	-	9
2024년	129	129		-	129	122	94.6	-	7
2025년	157	157		21	178	173	112.7	-	5
2026년	334	334		-	334	163	49.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9	- 본부 운영비 일부 미집행에 따른 9백만원 불용
2024년	불용	7	- 본부 운영비 일부 미집행에 따른 7백만원 불용
2025년	불용	5	- 본부 운영비 일부 미집행에 따른 5백만원 불용
2026년			- 정상 추진 중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7)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7011-21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17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접수행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	47	47	47	48	47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6	46	44	-	2	47	47	18	47
· 특근매식비(210-05)	25	35	33	-	2	26	26	10	26
· 기타운영비(210-16)	21	11	11	-	0	26	26	10	2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6	46	44	-	2	47	47	18	47
-특근매식비(210-05)	25	35	33	-	2	26	26	10	26
-기타운영비(210-16)	21	11	11	-	0	26	26	10	2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

사업목적	직업능력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해당없음
추진경위	직업능력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46	46	46	47	4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7	47	-
특근매식비	26	26	-
기타운영비	21	21	-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6	0	0	0	46	34	73.9	0	12
2024년	46	0	0	0	46	42	91.3	0	4
2025년	46	0	0	0	46	25	54.3	0	0
2026년	47	0	0	0	47	19	40.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2023년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4년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5년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6년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68)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7011-21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18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	50	56	56	58	56	0	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5	55	50	-	5	56	56	39	56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	55	55	50	-	5	56	56	39	56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5	55	50	-	5	56	56	39	56
・특근매식비(210-05)	30	32	31	-	1	31	31	24	31
・기타운영비(210-16)	25	23	19	-	4	25	25	15	2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 통합고용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해당없음
추진경위	○ 통합고용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55	55	55	56	5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56	56	-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	56	56	-

○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 **(2026년) 56백만원 → (2027년) 56백만원, 전년동**

- (설명) 통합고용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요구
- (산출) 기본경비(운영비 등) 56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2025년	해당없음
2026년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각 대상별(고령자,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5	55	-	-	55	39	70.9	-	16
2024년	55	55	-	2	55	54	97.5	-	1
2025년	55	55	-	-	55	50	90.9	-	5
2026년	56	56	-	-	56	39	69.6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6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4년	불용	1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5년	불용	5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9)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7011-25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6	7000	7011	25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	운영지원과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회복무요원운용 (본부, 비총액)	192	322	322	322	319	△3	△0.9%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56	256	192	0	64	322	322	120	319
· 운영비	191	191	137	0	54	257	257	90	258
· 여비	65	65	55	0	9	65	65	30	6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56	256	192	0	64	322	322	120	319
· 피복비(210-03)	15	15	9	0	5	15	15	4	15
· 급식비(210-04)	177	177	127	0	49	242	242	86	243
· 국내여비(220-01)	65	65	55	0	9	65	65	30	6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

사업목적·내용	고용노동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병역법」 제31조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추진경위	○ 병역자원을 우리부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50	253	256	322	31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22	319	△3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	322	319	△3

- **사회복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 (2026년) 322백만원 → (2027년 정부안) 319백만원, △0.9%**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15백만원=309,840원×51명-847,840원
-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243백만원=9,000원×121명×12개월×21일-31,823,000원
- 사회복무요원 국내여비: 61백만원=3,000원×121명×12개월×21일-30,035,000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급식비, 여비 20,530만원 집행
2024년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급식비, 여비 20,401만원 집행
2025년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급식비, 여비 19,209만원 집행
2026년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급식비, 여비 12,000만원 집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예산 및 인원 정·현원 관리를 통해 본부와 지방관서별 형평성 있는 인력 운용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행정지원 인력으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50	250	0	0	250	205	82	0	45
2024년	253	253	0	△46	207	204	80.6	0	3
2025년	256	256	0	0	256	192	75	0	64
2026년	322	322	0	0	322	120	3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45	집행잔액
2024년	전용	△46	인건비 부족으로 본부 인건비로 전용
	불용	3	집행잔액
2025년	불용	64	집행잔액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0)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7011-25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52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비총액)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비총액)	8,791	10,345	10,345	10,912	10,912	567	5.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012	9,159	8,791	-	368	10,345	10,345	4,010	10,912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비총액)	10,012	9,159	8,791	-	368	10,345	10,345	4,010	10,91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012	9,159	8,791	-	368	10,345	10,345	4,010	10,912
· 일반수용비(210-01)	4,179	3,205	3,066	-	139	4,021	3,357	1,713	3,92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10	478	446	-	32	310	401	209	449
· 임차료(210-07)	296	302	279	-	23	496	501	184	844
· 유류비(210-08)	51	51	15	-	37	51	51	17	32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70	70	67	-	3	70	70	18	65
· 일반용역비(210-14)	1,479	1,415	1,401	-	14	1,479	2,047	528	1,529
· 국내여비(220-01)	1,973	1,951	1,882	-	69	1,973	1,943	443	2,426
· 국외업무여비(220-02)	433	415	388	-	27	411	411	299	391
· 국외교육여비(220-03)	20	55	51	-	4	19	19	-	18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42	539	537	-	2	557	557	346	537
· 정책연구비 (260-02)	-	-	-	-	-	-	-	-	100
· 배상금(310-02)	50	70	70	-	-	60	90	76	60
· 포상금(310-03)	62	62	52	-	9	362	362	15	62
· 기타보전금(310-04)	2	2	1	-	1	2	2	-	2
· 공사비(420-03)	72	72	72	-	-	72	72	31	56
· 자산취득비(430-01)	471	471	464	-	7	461	462	132	41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부 본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 지원부서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해당없음
추진경위	○ 고용노동부 지원부서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필요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9,040	9,325	10,012	10,345	10,91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345	10,912	567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비총액)	10,345	10,912	567

○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2026년) 10,345백만원 → (2027년 정부안) 10,912백만원, +5.4%**

- (설명)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국제협력관실 운영비 등 10,912백만원
- (산출) 운영비 6,843백만원(일반수용비 3,924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449백만원, 임차료 844백만원, 유류비 3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5백만원, 일반용역비 1,529백만원), 여비(국내·국외·국외교육) 2,834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537백만원, 정책연구비 100백만원, 보전금(배상·포상·기타보전금) 124백만원, 공사비 56백만원, 자산취득비 418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040	9,040	-	△2,033	7,007	6,676	73.8	-	331
2024년	9,325	9,325	-	△2,182	7,143	6,852	73.4	-	291
2025년	10,012	10,012	-	△853	9,159	8,791	89.6	-	368
2026년	10,345	10,345	-	-	10,345	4,010	38.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 해당없음
2024년	-	-	- 해당없음
2025년	-	-	- 해당없음
2026년	-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1)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7011-25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53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 (고용정책실, 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직접 수행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687	699	699	720	665	△34	△4.9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07	712	687	-	24	699	699	466	665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707	712	687	-	24	699	699	466	66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707	712	687	-	24	699	699	466	665
·일반수용비(210-01)	399	392	392	-	-	368	368	247	342
·공공요금(210-02)	41	41	32	-	9	44	44	33	39
·임차료(210-07)	38	45	45	-	-	39	39	28	39
·유류비(210-08)	3	3	1	-	2	3	3	2	2
·시설장비유지비(210-09)	19	19	19	-	-	19	19	10	19
·국내여비(220-01)	64	69	68	-	1	64	64	50	65
·국외업무여비(220-02)	12	12	11	-	1	12	12	9	11
·관서업무추진비(240-02)	50	50	50	-	-	70	70	60	67
·일반연구비(260-01)	31	31	20	-	11	31	31	22	31
·자산취득비(430-01)	49	49	49	-	-	49	49	5	4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사업목적	고용정책실 경상업무 추진
사업내용	관서운영경비 등 공통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해당없음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677	699	707	699	66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정책실 소속 직원 및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99	665	△34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699	665	△34

○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2026년) 699 → (2027년 정부안) 665백만원, △4.9%**

- (설명)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4.9% 감액(운영비 △31백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
- (산출) 운영비 442백만원 + 여비 76백만원 + 업무추진비 67백만원 + 일반연구비 31백만원 + 자산취득비 4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고용정책실 관련 사업 원활한 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상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77	677	-	-	677	604	89.2	-	73
2024년	699	699	-	95	794	786	112.4	-	8
2025년	707	707	-	5	712	687	97.2	-	24
2026년	699	699	-	-	699	466	65.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73	집행 잔액
2024년	내역 변경	95	고용정책실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95백만원 내역변경 * (내역변경)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국내여비 △95백만원 >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국내여비 +95백만원
2025년	내역 변경	5	고용정책실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5백만원 내역변경 * (내역변경)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국내여비 △5백만원 >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국내여비 +5백만원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2)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7011-25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56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산업안전 보건본부, 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 없음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본경비(산업안전 보건본부, 비총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	1,514	3,363	3,363	3,464	1,671	△1,692	△50.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93	1,566	1,514 (1,514)		34	3,363	3,363	1,355 (1,355)	1,67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93	1,566	1,514 (1,514)	0	52	3,363	3,363	1,355 (1,355	1,671
・일반수용비(210-01)	636	486	478 (478)	0	8	1,332	1,332	570 (570)	504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11	134	133 (133)	0	1	610	610	378 (378)	113
・피복비(210-03)	93	93	92 (92)	0	1	398	398	74 (74)	82
・임차료(210-07)	49	49	39 (39)	0	10	143	143	49 (49)	140
・유류비(210-08)	9	9	9 (9)	0	0	43	43	8 (8)	42
・시설장비유지비(210-09)	18	15	7 (7)	0	8	40	40	4 (4)	28
・국내여비(220-01)	611	611	594 (594)	0	17	611	611	219 (219)	581
・관서업무추진비(240-02)	31	34	31 (31)	0	3	51	51	35 (35)	49
・기타보전금(310-04)	5	5	1 (1)	0	1	5	5	1 (1)	5
・자산취득비(430-01)	130	130	127 (127)	0	3	130	130	18 (18)	12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해당 없음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2014년 ○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4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493	1,601	1,693	3,363	1,67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363	1,671	△1,692

○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

- (2026 본예산) 3,363백만원 → (2027 요구) 1,671백만원, 1,692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자금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493	1,493		340	1,833	1,779	119.2	-	54
2024년	1,601	1,601		150	1,751	1,717	107.2	-	34
2025년	1,693	1,693		△127	1,566	1,514	89.4	-	52
2026년	3,363	3,363		-	3,363	1355	40.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내역변경	40	국내여비 300백만원 및 일반수용비 40백만원 내역변경 등
2024년	전용, 내역변경	200 250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200백만원 전용 250백만원 내역변경
2025년	전용, 내역변경	130 26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130백만원 전용 공요금및제세 26백만원 내역변경
2026년	-	-	정상 추진 중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3)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7011-25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57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접수행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	209	208	208	235	235	27	13.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09	209	194	-	16	208	208	81	235
·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	209	209	194	-	16	208	208	81	23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09	209	194	-	16	208	208	81	235
· 일반수용비(210-01)	127	96	96	-	0	118	118	49	109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	6	6	-	0	13	13	5	13
· 임차료(210-07)	15	11	11	-	0	15	15	9	15
· 유류비(210-08)	1	1	1	-	0	1	1	1	2
· 일반용역비(210-14)	4	4	0	-	4	4	4	0	4
· 국내여비(220-01)	18	58	58	-	0	18	18	7	57
· 국외업무여비(220-02)	2	2	0	-	2	2	2	4	2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	6	6	-	0	11	11	4	10
· 포상금(310-03)	10	10	5	-	5	10	10	1	10
· 자산취득비(430-01)	16	15	11	-	5	16	16	1	1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

사업목적	직업능력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해당없음
추진경위	직업능력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95	198	209	208	23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08	235	27
운영비	151	143	-
여비	20	59	-
업무추진비	11	10	
포상금	10	10	
자산취득비	16	13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95	195	0	0	165	161	97.6	0	4
2024년	198	198	0	0	198	167	84.3	0	31
2025년	209	209	0	0	209	192	91.8	0	16
2026년	208	208	0	0	208	81	38.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2023년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약 8백만원) - 일반수용비 5백만원 국외여비로 전용 - 일반수용비 30백만원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배상금으로 전용
2024년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약 31백만원) - 일반수용비 40백만원 국내여비로 전용
2025년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약 16백만원) - 일반수용비 39백만원 국내여비로 전용
2026년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예상(약 10백만원)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74)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7011-25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1	258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	277	274	274	309	309	35	12.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80	280	277	-	3	274	274	164	309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	280	280	277	-	3	274	274	164	309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80	280	277	-	3	274	274	164	309
· 일반수용비(210-01)	186	132	131	-	1	161	141	80	15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2	28	27	-	1	32	32	15	32
· 임차료(210-07)	8	20	20	-	-	8	8	8	8
· 국내여비(220-01)	34	85	84	-	1	34	54	38	83
· 국외업무여비(220-02)	11	6	6	-	-	10	10	9	10
· 관서업무추진비(240-02)	9	9	9	-	-	29	29	14	2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 통합고용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해당없음
추진경위	○ 통합고용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76	278	280	274	30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74	309	12.7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	274	309	12.7

○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 **(2026년) 274백만원 → (2027년) 309백만원, +12.7%**

- (설명) 통합고용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 (산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여비 등) 30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2025년	해당없음
2026년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각 대상별(고령자,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76	276	-	-	276	239	86.6	-	37
2024년	278	278	-	-	278	255	91.6	-	23
2025년	280	280	-	-	280	277	98.9	-	3
2026년	274	274	-	-	274	164	59.8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	전용	33.1	국내출장 및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답사' 계획에 따라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부족분 전용
2024	전용	52	일가정양립추진단 신설 및 현안 등의 사유로 통합국 내 출장건수가 증가하여 국내여비 부족분 전용
2025	전용	20	통합고용정책국 출장여비 부족분 전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5) 사회복무요원운용(노동위, 총액)(7018-219)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8	219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사회복무요원운영 (노동위, 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회복무요원운영 (노동위, 총액)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중앙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회복무요원운영 (노동위, 총액)	121	135	135	139	120	△15	△11.1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27	127	121	0	6	135	135	84	120
·사회복무요원운영 (노동위, 총액)	127	127	121	0	6	135	135	84	12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27	127	121	0	6	135	135	84	120
· 상용임금(110-03)	127	127	121	0	6	135	135	84	12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사회복무요원운영(노동위, 총액)

사업목적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운용
사업내용	노동위원회 소속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추진경위	○ 병역자원관리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의 활용방침에 의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99	129	127	135	12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노동위원회(중노위, 서울, 경기, 충남, 인천)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소속 사회복무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35	120	△11.1
사회복무요원운영 (노동위, 총액)	135	120	△11.1

○ 사회복무요원운영(노동위, 총액) (2026년) 135 → (2027년 정부안) 120백만원, -11.1%

- (설명) 5개 노동위원회(중앙, 서울, 경기, 충남, 인천) 사회복무요원 9명 인건비
- (산출) 사회복무요원 평균 인건비 인상률, 전년도 집행률 반영
  * 상용임금: 135백만원(‘26년) → 120백만원(‘27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운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9	99	0	0	99	95	96.0	0	4
2024년	129	129	0	△14	115	113	87.6	0	2
2025년	127	127	0	0	127	121	95.3	0	6
2026년	135	135	0	0	135	84	62.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6)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8	220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총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세부사업명	44	45	45	45	45	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5	45	44	0	0	45	45	26	45
· 운영비	29	29	25	0	4	29	29	10	29
· 직무수행경비	16	16	16	0	0	16	16	10	16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45	45	44	0	0	45	45	21	45
· 특근매식비 (210-05)	16	20	20	0	0	16	16	7	16
· 복리후생비 (210-12)	0	0	0	0	0	0	0	0	0
· 기타운영비 (210-16)	13	9	9	0	0	13	13	4	13
· 직책수행경비 (250-02)	16	16	16	0	0	16	16	10	1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총액)

사업목적	산재재심사위원회 기관운영
사업내용	동 사업은 산재재심사위원회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해당 없음
추진경위	○ 1963년「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설립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 사업이 추진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63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45	45	45	45	4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5	44	-1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 (총액)	45	44	-1

○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총액)_ ('26년) 45백만원 → ('27년) 45백만원(전년동)

- (설명)

1) 운영비

○ 특근매식비: ('27년) 16백만원 (전년동)
○ 복리후생비: ('27년) 0.3백만원 (전년동)
○ 기타운영비: ('27년) 13백만원 (전년동)

2) 직무수행경비

○ 직책수행경비: ('27년) 16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5,069건 접수 / 6,261건 재결
2024년	5,751건 접수 / 4,887건 재결
2025년	6,549건 접수 / 5,342건 재결
2026년	4,882건 접수 / 3,366건 재결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배정	○ 예산 배정, 월별 자금계획 수립· 확정
↓	
예산 집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집행

※ 소속기관 기본경비 예산으로서 집행상 특이 사항 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45	45	0	0	45	41	92.0	0	4
2024년	45	45	0	0	45	41	91.0	0	4
2025년	45	45	0	0	45	44	97.7	0	0
2026년	45	45	0	0	45	26	57.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전용	3.5	‘25.10~12월분 특근매식비 부족분 확보
2025년	전용	0.6	‘25.12월분 특근매식비 부족분 확보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7)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18	221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9	91	91	98	98	7	7.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7	88	79	0	9	91	91	36	98
· 인건비	35	34	34	0	0	38	38	19	43
· 운영비	12	12	6	0	6	12	12	3	12
· 직무수행경비	34	34	31	0	3	34	34	11	34
· 민간이전	6	8	8	0	0	7	7	3	9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7	88	79	0	9	91	91	36	98
·상용임금(110-03)	35	34	34	0	0	38	38	19	43
·특근매식비(210-05)	5	5	2	0	3	5	5	1	5
·복리후생비(210-12)	0	0	0	0	0	0	0	0	0
·기타운영비(210-16)	7	7	4	0	3	7	7	2	7
·직책수행경비(250-02)	34	34	31	0	3	34	34	11	34
·고용부담금(320-09)	6	8	8	0	0	7	7	3	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사업목적	최저임금위원회 기관운영경비(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특근매식비, 직책수행경비 등) 지원
사업내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인건비 등) 확보 및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84	86	87	91	9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1	98	7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91	98	7

○ 인건비 **(2026년) 38 → (2027년 정부안) 43백만원, +13.2%**

- (설명) 공무직 근로자 적정임금 반영 등을 감안, '26년 대비 +13.2% 증액

○ 운영비 **(2026년) 12 → (2027년 정부안) 12백만원, 전년동**

○ 직책수행경비 **(2026년) 34 → (2027년 정부안) 34백만원, 전년동**

○ 고용부담금 **(2026년) 7 → (2027년 정부안) 9백만원, +28.6%**

- (설명) 공무직 근로자 적정임금 반영 등을 감안, '26년 대비 +28.6% 증액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최저임금위원회 기관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배정) 예산 배정, 월별 자금계획 수립·확정 → (예산집행) 매월 보수 지급일에 맞춰 예산집행(상용임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과 운영비, 월정직책급 등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4	84	0	1	85	78	92.9	0	7
2024년	86	86	0	1	87	80	93	0	7
2025년	87	87	0	1	88	79	90.8	0	9
2026년	91	91	0	0	91	36	39.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3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1백만원 전용,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0.3백만원 전용
2024년	전용	1.5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1백만원 전용,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0.5백만원 전용
2025년	전용	1.6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1백만원,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0.6백만원 전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8)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8	222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노동위원회기본경비 (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노동위원회기본경비 (총액)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중앙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노동위원회기본경비 (총액)	954	973	973	1,002	1,066	93	9.6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940	993	954	0	39	973	988	537	1,066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940	993	954	0	39	973	988	537	1,066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940	993	954 [954]	0	39	973	988	537 [537]	1,066
· 상용임금(110-03)	267	256	253 [253]	0	3	291	291	150 [150]	340
· 특근매식비(210-05)	164	237	236 [236]	0	1	167	182	130 [130]	197
· 복리후생비(210-12)	5	5	3 [3]	0	2	5	5	1 [1]	5
· 기타운영비(210-16)	106	98	96 [96]	0	2	107	107	50 [50]	107
· 직무수행경비(250-02)	345	345	337 [337]	0	8	345	345	190 [190]	345
· 고용부담금(320-09)	52	52	29 [29]	0	23	58	58	16 [16]	7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사업목적	노동위원회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으로 노동위원회 안정적인 운영
사업내용	노동위원회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 세출예산집행지침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906	925	940	973	1,06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73	1,066	93
노동위원회기본경비 (총액)	973	1,066	93

○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2026년) 973 → (2027년 정부안) 1,066백만원, +9.6%

- (설명) 노동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8명 인건비, 공무원 특근매식비 등 기본경비
- (산출) 처우개선 4.3%, 적정임금(최저임금 118%) 보전, 가족수당, 군경력 우대 소요 반영
  *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8명): 291백만원('26년) → 340백만원('27년)
  *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279백만원('26년) → 309백만원('27년)
  * 월정직책급(60명): 345백만원('26년) → 345백만원('27년)
  * 고용부담금(8명): 58백만원('26년) → 72백만원('27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노동위원회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으로 노동위원회 안정적인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06	906	0	△5	901	838	92.4	0	59
2024년	925	925	4	13	942	876	94.7	0	66
2025년	940	940	0	53	993	954	101.4	0	39
2026년	973	973	0	15	988	537	55.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9) 사회복무요원운영(노동위, 비총액)(7018-26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8	261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사회복무요원운영 (노동위, 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사회복무요원운영 (노동위, 비총액)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중앙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회복무요원운영 (노동위, 비총액)	19	27	27	28	25	△2	△7.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3	23	19	1	3	27	28	15	25
·사회복무요원운영 (노동위, 비총액)	23	23	19	1	3	27	28	15	2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3	23	19	1	3	27	28	15	25
· 피복비(210-03)	2	2	1	1	0	2	3	3	2
· 급식비(210-04)	15	15	13	0	2	16	16	1	17
· 국내여비(220-01)	6	6	5	0	1	9	9	11	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사회복무요원운영(노동위, 비총액)

사업목적	노동위원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사업내용	노동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영(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병역법 제31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추진경위	○ 자원관리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 활용 방침에 의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5	26	23	27	2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4개 노동위원회(중노위, 서울, 경기, 인천)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소속 사회복무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7	25	△11.1
사회복무요원운영 (노동위, 비총액)	27	25	△11.1

○ 사회복무요원운영(노동위, 비총액) (2026년) 135 → (2027년 정부안) 120백만원, -11.1%

- (설명) 4개 노동위원회(중앙, 서울, 경기, 인천) 사회복무요원 9명 인건비
- (산출) 피복비 2백만원, 급식비 17백만원, 국내교통여비 6백만원
  * 피복비: 2백만원(’26년) → 2백만원(’27년)
  * 급식비: 19백만원(’26년) → 17백만원(’27년)
  * 국내여비: 6백만원(’26년) → 6백만원(’27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운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5	25	0	1	26	21	84.0	0	5
2024년	26	26	0	0	26	20	76.9	0	6
2025년	23	23	0	0	23	19	82.6	1	3
2026년	27	27	0	1	28	15	55.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0)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8	262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 (비총액)	133	136	136	144	144	8	5.8%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5	135	132	0	2	136	136	46	136
· 운영비	98	98	97	0	1	99	99	37	99
· 여비	9	9	9	0	0	9	9	8	9
· 업무추진비	1	1	1	0	0	1	1	0	1
· 유형자산	25	25	24	0	0	25	25	0	2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35	135	132	0	2	136	136	46	136
· 일반수용비 (210-01)	47	62	62	0	0	48	48	19	48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1	18	18	0	0	31	31	10	31
· 임차료 (210-07)	10	10	9	0	1	10	10	4	10
· 유류비 (210-08)	1	1	0	0	0	1	1	0	1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7	5	5	0	0	7	7	3	7
· 국내여비 (220-01)	9	9	9	0	0	9	9	8	9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	1	1	0	0	1	1	0	1
· 자산취득비 (430-01)	25	25	24	0	0	25	25	0	2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사업목적	산재재심사위원회 기관운영
사업내용	동 사업은 산재재심사위원회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해당 없음
추진경위	○ 1963년「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설립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 사업이 추진됨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63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12	129	135	136	14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36	144	8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 (비총액)	136	144	8

○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_ ('26년) 136백만원 → ('27년) 144백만원(8백만원 증)

- (설명)

1) 운영비

○ 일반수용비: ('26년) 48백만원 → ('27년) 45백만원 (3백만원 감)
○ 공공요금 및 제세: ('26년) 32백만원 (전년동)
○ 임차료: ('26년) 11백만원 (전년동)
○ 유류비: ('26년) 1백만원 (전년동)
○ 시설장비유지비: ('26년) 7백만원 (전년동)

2) 여비

○ 국내여비 : ('26년) 10백만원 → ('27년) 22백만원 (12백만원 증)

3)업무추진비

○ 관서업무추진비 : ('26년) 1백만원 (전년동)

4)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26년) 25백만원 → ('27년) 24백만원 (1백만원 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5,069건 접수 / 6,261건 재결
2024년	5,751건 접수 / 4,887건 재결
2025년	6,549건 접수 / 5,342건 재결
2026년	4,882건 접수 / 3,366건 재결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배정	○ 예산 배정, 월별 자금계획 수립· 확정
↓	
예산 집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집행

※ 소속기관 기본경비 예산으로서 집행상 특이 사항 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2	112	0	0	112	102	91.0	0	9
2024년	129	129	0	0	129	124	96.1	0	5
2025년	135	135	0	0	135	132	97.7	0	0
2026년	136	136	0	0	136	39	28.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전용	10	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매 비용 확보
2025년	전용	4.7	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매 비용 확보
2026년	전용	3	국내여비 잔여 예산 974천원이나, 연말까지 지출 소요액 3,520천원 예상되어 시일내 소진예상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1)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18	263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221	263	263	276	276	13	4.9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68	268	221	0	47	263	263	183	276
·운영비	186	186	179	0	7	182	192	165	207
·여비	50	50	27	0	23	49	39	4	47
·업무추진비	10	10	10	0	0	10	10	8	9
·유형자산	22	22	5	0	17	22	22	6	13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68	268	221	0	47	263	263	183	276
·일반수용비(210-01)	156	156	152	0	4	152	162	157	178
·공공요금및제세(210-02)	8	8	7	0	1	8	8	2	8
·임차료(210-07)	19	19	18	0	1	19	19	6	19
·유류비(210-08)	2	2	1	0	1	2	2	0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1	1	1	0	0	1	1	0	1
·국내여비(220-01)	30	27	4	0	23	30	20	4	29
·국외업무여비(220-02)	20	23	23	0	0	19	19	0	18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	10	10	0	0	10	10	8	9
·자산취득비(430-01)	22	22	5	0	17	22	22	6	1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사업목적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각종 자료 발간, 최저임금 심의 운영지원(회의수당
사업내용	지급 등)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61백만원	263백만원	268백만원	263백만원	276백만원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63	276	13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63	276	13

○ 운영비 **(2026년) 182 → (2027년 정부안) 207백만원, +13.7%**

- (설명) 기획예산처 지침 개정에 따른 2시간 이상 회의참석수당 변경 등을 감안, '26년 대비 +13.7% 증액
- (산출) 일반수용비178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8백만원, 임차료19백만원, 유류비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1백만원

○ 여비 **(2026년) 49 → (2027년 정부안) 47백만원, △4.1%**

○ 업무추진비 **(2026년) 10 → (2027년 정부안) 9백만원, △10.0%**

○ 자산취득비 **(2026년) 22 → (2027년 정부안) 13백만원, △31.8%**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배정) 예산 배정, 월별 자금계획 수립·확정
- (예산 집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종 일상적 경비 예산 집행,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 회의개최 → 참석 위원 확인 → 회의 수당 등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61	261	0	0	261	244	93.5	0	17
2024년	263	263	0	0	263	223	84.8	0	40
2025년	268	268	0	0	268	221	82.5	0	47
2026년	263	263	0	0	263	183	7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6년	전용	10	전원회의 횟수 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 예산부족으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국내여비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일반수용비로 10백만원 전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2)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18	264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노동위원회기본경비 (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노동위원회기본경비 (비총액)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중앙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노동위원회기본경비 (비총액)	2,091	2,067	2,067	2,129	2,082	15	0.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109	2,167	2,091	18	58	2,067	2,129	1,204	2,082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109	2,167	2,091	18	58	2,067	2,129	1,204	2,08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109	2,167	2,091	18	58	2,067	2,129	1,204	2,082
· 일반수용비(210-01)	841	814	811	0	3	782	772	438	74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59	560	556	0	4	567	570	338	567
· 피복비(210-03)	9	9	9	0	0	16	16	7	16
· 임차료(210-07)	64	71	71	0	0	64	65	39	64
· 유류비(210-08)	67	61	44	0	17	67	67	28	5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	19	17	0	2	15	21	11	15
· 관리용역비(210-15)	11	13	8	0	5	11	11	0	11
· 국내여비(220-01)	236	330	325	0	5	236	280	181	314
· 국외업무여비(220-02)	12	25	25	0	0	11	11	0	11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52	152	147	0	5	152	152	86	144
· 일반연구비(260-01)	18	36	18	18	0	18	36	18	18
· 손실보상금(310-01)	1	1	0	0	1	1	1	0	1
· 공사비(420-03)	3	3	3	0	0	4	4	1	4
· 자산취득비(430-01)	123	73	57	0	16	123	123	57	11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사업목적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출을 통한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사업내용	노동위원회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 세출예산집행지침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992	2,086	2,109	2,067	2,08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067	2,082	0.7
노동위원회기본경비 (비총액)	2,067	2,082	0.7

○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026년) 2,067 → (2027년 정부안) 2,082백만원, +0.7%

- (설명) 노동위원회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산출) 국내여 부족분, 인력증원 반영, 공통경비 일괄 조정 반영
  *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8명): 291백만원('26년) → 340백만원('27년)
  * 운영비 1,522백만원('26년) → 1,475('27년)
  * 여비 248백만원('26년) → 325백만원('27년)
  * 업무추진비 152백만원('26년) → 144백만원('27년)
  * 연구용역비 18백만원('26년) → 18백만원('27년)
  * 손실보상금 1백만원('26년) → 1백만원('27년)
  * 건설비 3백만원('26년) → 4백만원('27년)
  * 유형자산 123백만원('26년) → 115백만원('27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운영비 등 지출을 통한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992	1,992	0	△1	1,991	1,954	98.0	3	59
2024년	2,086	2,086	3	△22	2,068	2,015	96.6	18	34
2025년	2,109	2,109	18	40	2,167	2,091	99.1	18	58
2026년	2,067	2,067	18	44	2,129	1,204	58.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3)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7018-26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7000	7018	265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최저임금위원회 전산경비(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최저임금위원회 전산경비(비총액)	169	199	199	205	196	△3	△1.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99	212	169	0	43	199	199	107	196
·운영비	10	10	5	0	5	10	10	7	10
·연구용역비	182	195	163	0	32	182	182	100	182
·유형자산	7	7	1	0	6	7	7	0	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99	212	169	0	43	199	199	107	196
·일반수용비(210-01)	10	10	5	0	5	10	10	7	10
·일반연구비(260-01)	182	195	163	0	32	182	182	100	182
·자산취득비(430-01)	7	7	1	0	6	7	7	0	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

사업목적 사업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기능(연구용역 등)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98백만원	199백만원	199백만원	199백만원	196백만원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99	196	△3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	199	196	△3

○ 일반수용비 **(2026년) 10 → (2027년 정부안) 10백만원, 전년동**
○ 일반연구비 **(2026년) 182 → (2027년 정부안) 182백만원, 전년동**
○ 자산취득비 **(2026년) 7 → (2027년 정부안) 4백만원, △42.9%**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최저임금위원회 기관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배정) 예산 배정, 월별 자금계획 수립·확정
- (예산 집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종 일상적 경비 예산 집행, 연구용역 계약 체결→연구용역 실시→연구결과보고서 제출→용역대금 지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98	198	0	0	198	162	81.8	0	36
2024년	199	199	0	0	199	160	80.4	13	26
2025년	199	199	13	0	212	169	85.0	0	43
2026년	199	199	0	0	199	107	53.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4년	이월	13	주요국 최저임금 실태 확인을 위한 해외 출장 조사 등 내실있는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일정 확보가 필요하여 연구기간 연장함(기존: 2024. 9. 6.~12. 20., 변경: 2024. 9. 6.~2025. 2. 28.)에 따라 일반연구비 13백만원 이월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4)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25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서울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1,298	1,361	1,361	1,516	1,516	155	11.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98	1,344	1,332	0	12	1,361	1,361	697	1,516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298	1,344	1,332	0	12	1,361	1,361	697	1,516
- 상용임금(110-03)	432	440	438	0	2	474	474	255	570
- 일용임금(110-04)	69	69	69	0	0	69	69	35	69
- 특근매식비(210-05)	260	330	330	0	0	271	271	144	303
- 일숙직비(210-06)	1	1	0	0	1	1	1	0	0
- 복리후생비(210-12)	14	14	14	0	0	14	14	5	14
- 기타운영비(210-16)	247	247	247	0	0	247	247	129	247
- 직책수행경비(250-02)	159	127	119	0	8	159	159	81	159
- 고용부담금(320-09)	117	117	117	0	0	127	127	48	15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상업무수행에 소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추진경위	서울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267	1,282	1,298	1,361	1,51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소속지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361	1,516	155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366백만원 집행
2024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244백만원 집행
2025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332백만원 집행
2026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697백만원 집행('26. 7월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267	1,267	0	113	1,380	1,366	98.9	0	14
2024년	1,282	1,282	0	△29	1,254	1,244	99.2	0	10
2025년	1,298	1,298	0	46	1,344	1,332	99.1	0	12
2026년	1,361	1,361	0	0	1,361	697	51.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13	서울청 인건비 부족 및 타 지방청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4년	전용	△29	서울청 인건비 부족 및 타 지방청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5년	전용	46	서울청 인건비 부족 및 타 지방청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6년	-	-	-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5)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26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 (총액)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1,115	1,178	1,178	1,451	1,451	273	23.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115	1,203	1,173	0	30	1,178	1,060	611	1,45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115	1,203	1,173	0	30	1,178	1,060	611	1,451
· 상용임금(110-03)	489	485	472	0	13	535	481	275	720
· 일용임금(110-04)	17	17	12	0	5	17	16	0	17
· 특근매식비(210-05)	153	237	237	0	0	160	144	104	201
· 일숙직비(210-06)	1	0	0	0	0	1	1	0]	0
· 복리후생비(210-12)	12	12	11	0	1	12	10	4	12
· 기타운영비(210-16)	216	202	202	0	0	216	195	111	216
· 직책수행경비(250-02)	131	131	120	0	11	131	118	79	131
· 고용부담금(320-09)	96	119	119	0	0	106	95	38	15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사업목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8개 지청의 기본적 경상업무수행
사업내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8개 지청의 기본적 경상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추진경위	○ 부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057	1,087	1,115	1,178	1,45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8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8개 지청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78	1,451	273

○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026년) 1,178 → (2027년 정부안) 1,451백만원, +23.2%**

- (설명) 울산동부지청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및 처우개선 등 인건비 인상, 감독관 증원에 따른 특근매식비 인상 등, '26년 대비 +23.2% 증액

* 상용임금(9개 관서): ('26년)535백만원 → ('27년 정부안)720백만원

* 일용임금(9개 관서): ('26년)17백만원 → ('27년 정부안)17백만원

* 특근매식비(9개 관서): ('26년)160백만원 → ('27년 정부안)201백만원

* 일숙직비(9개 관서): ('26년)1백만원 → ('27년 정부안)0원

* 복리후생비(9개 관서): ('26년)12백만원 → ('27년 정부안)12백만원

* 기타운영비(9개 관서): ('26년)216백만원 → ('27년 정부안)216백만원

* 직책수행경비(9개 관서): ('26년)131백만원 → ('27년 정부안)131백만원

* 고용부담금(9개 관서): ('26년)106백만원 → ('27년 정부안)154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76백만원 집행
2024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097백만원 집행
2025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73백만원 집행
2026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611백만원 집행('26.7월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8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요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57	1,057	0	142	1,199	1,176	111.3	0	23
2024년	1,087	1,087	0	28	1,115	1,097	100.9	0	18
2025년	1,115	1,115	0	88	1,203	1,173	105.2	0	30
2026년	1,178	1,178	0	0	1,060	611	51.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42	특근매식비 부족 등으로 세목변경
	불용	23	집행잔액
2024년	전용	28	특근매식비 부족 등으로 세목변경
	불용	18	집행잔액
2025년	전용	88	특근매식비 부족 등으로 세목변경
	불용	30	집행잔액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6)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27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	-	-
-	-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815	862	862	994	994	132	15.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15	846	837	0	9	862	742	468	99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15	846	837	0	9	862	742	468	994
·상용임금(110-03)	363	369	367	0	2	397	357	210	482
·일용임금(110-04)	20	20	20	0	0	20	18	16	20
·특근매식비(210-05)	128	160	157	0	3	134	120	81	158
·일·숙직비(210-06)	1	1	0	0	1	1	1	0	0
·복리후생비(210-12)	7	7	5	0	2	7	7	1	7
·기타운영비(210-16)	146	137	137	0	0	146	109	75	146
·직무수행경비(250-02)	79	79	78	0	1	79	71	51	79
·고용부담금(320-09)	71	73	73	0	0	78	59	34	10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의 기본 경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추진경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운영 경상 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767	796	815	862	99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없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 해당없음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81백만원 집행
2024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784백만원 집행
2025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37백만원 집행
2026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468백만원 집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예산 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67	767	0	116	883	881	114.9	0	2
2024년	796	796	0	△2	794	784	98.5	0	10
2025년	815	815	0	31	846	837	102.7	0	9
2026년	862	862	0	0	742	468	54.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16	청년인턴 인건비, 고용부담금, 특근매식비, 동호회 지원예산, 초과근무 수당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3년	불용	2	집행잔액
2024년	전용	△2	상용임금, 매식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4년	불용	10	집행잔액
2025년	전용	31	상용임금, 특근매식비,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5년	불용	9	집행잔액
2026년	-	0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7)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28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2,151	2,264	2,264	1,232	1,232	△1,032	△45.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151	2,305	2,260	0	45	2,264	2,264	1,242	1,23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151	2,305	2,260	0	45	2,264	2,264	1,242	1,232
· 상용임금(110-03)	892	898	895	0	3	972	972	531	629
· 일용임금(110-04)	58	58	27	0	31	58	58	6	24
· 특근매식비(210-05)	345	533	530	0	3	360	360	221	169
· 일숙직비(210-06)	3	0	0	0	0	3	3	0	0
· 복리후생비(210-12)	21	21	18	0	3	21	21	8	8
· 기타운영비(210-16)	409	397	396	0	1	409	409	234	156
· 직책수행경비(250-02)	238	214	210	0	4	238	238	157	102
· 고용부담금(320-09)	184	184	184	0	0	202	202	84	14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중부청 및 관내 7개 지청 등 중부지방노동관서의 기본적 경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추진경위	중부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052	2,099	2,151	2,264	1,23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부청 및 7개 관서

○ 사업 수혜자 : 중부청 및 7개 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264	1,232	△1,032

○ 상용임금(비서, 명예상담원 각 15명 → 각 8명) : 972백만원(2026년도) → 629백만원(2027년도)
○ 일용임금(15개 관서 → 8개 관서) : 58백만원(2026년도) → 24백만원(2027년도)
○ 특근매식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360백만원(2026년도) → 169백만원(2027년도)
○ 일·숙직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3백만원(2026년도) → 0원(2027년도)
○ 복리후생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21백만원(2026년도) → 8백만원(2027년도)
○ 기타운영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409백만원(2026년도) → 156백만원(2027년도)
○ 직책수행경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238백만원(2026년도) → 102백만원(2027년도)
○ 고용부담금(15개 관서 → 8개 관서) : 202백만원(2026년도) → 145백만원(2027년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323백만원 집행
2024년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072백만원 집행
2025년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260백만원 집행
2026년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242백만원 집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중부지방노동관서의 원활한 기관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052	2,052	0	307	2,359	2,323	113.2	0	35
2024년	2,099	2,099	0	41	2,140	2,072	98.7	0	55
2025년	2,151	2,151	0	154	2,305	2,260	105	0	45
2026년	2,264	2,264	0	0	2,264	1,242	54.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307	청년인턴(15명) 채용 관련 인건비 등 부족
2024년	전용	41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부족
2025년	전용	154	특근매식비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부족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8)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9)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29
명칭	사회복지	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광주지방관서기 본경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광주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910	929	0	957	1,072	143	15.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80	921	910	0	11	929	781	485	1,072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880	921	910	0	11	929	781	485	1,07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80	921	910	0	11	929	781	485	1,072
·상용임금(110-03)	369	386	383	0	3	403	362	220	492
·일용임금(110-04)	21	21	18	0	3	21	18	5	21
·특근매식비(210-05)	125	159	159	0	0	130	117	80	158
·일·숙직비(210-06)	1	0	0	0	0	1	1	0	0
·복리후생비(210-12)	8	8	8	0	0	8	7	1	8
·기타운영비(210-16)	158	148	148	0	0	158	118	84	158
·직책수행경비(250-02)	103	103	98	0	5	103	77	67	103
·고용부담금(320-09)	97	97	97	0	0	107	80	27	13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사업목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
사업내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추진경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839	863	880	929	1,07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29	1,072	143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929	1,072	143

○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026년) 929 → (2027년 정부안) 1,072백만원, +15.3%**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상용임금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39백만원 집행
2024년	상용임금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59백만원 집행
2025년	상용임금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910백만원 집행
2026년	상용임금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485만원 집행('26.7월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39	839	0	146	985	980	116.8	0	4
2024년	863	863	0	9	872	859	99.5	0	12
2025년	880	880	0	41	921	910	103.4	0	11
2026년	929	929	0	0	781	485	52.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73,501	청년인턴채용과 관련한 인건비 부족
2023년	전용	7,581	청년인턴채용과 관련한 고용부담금 부족
2023년	전용	36,000	청년인턴채용과 관련한 인건비 부족
2023년	전용	19,700	공무직 성과상여금 등 지급 필요
2023년	전용	3,791	청년인턴채용과 관련한 고용부담금 부족
2024년	전용	20	지방관서 상용임금 조정
2024년	전용	1	특근매식비 부족
2025년	전용	24	업무수행에 필요한 특근매식비 부족
2025년	전용	17	공무직 근로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상용임금 예산 부족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9)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3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30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887	928	928	1,070	1,070	142	15.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880	921	887	-	34	928	827	472	1,070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880	921	887	-	34	928	827	472	1,07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880	921	887	-	34	928	827	472	1,070
· 상용임금(110-03)	370	370	352	-	18	404	364	195	491
· 일용임금(110-04)	14	14	5	-	9	14	13	-	14
· 특근매식비(210-05)	142	199	193	-	6	148	133	92	179
· 일·숙직비(210-06)	1	0	0	-	-	1	-	-	-
· 복리후생비(210-12)	8	8	8	-	-	8	7	2	8
· 기타운영비(210-16)	160	152	151	-	1	160	136	77	160
· 직책수행경비(250-02)	104	97	97	-	-	104	94	64	104
· 고용부담금(320-09)	81	81	81	-	-	89	80	42	11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사업목적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
사업내용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추진경위	○ 대전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843	867	880	928	1,07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28	1,070	142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928	1,070	142

○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026년) 928 (2027년 정부안) 1,070, +15.3%**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922백만원 집행
2024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28백만원 집행
2025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87백만원 집행
2026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472백만원 집행('26.7월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43	843	-	102	945	922	109.4	-	23
2024년	867	867	-	△6	861	828	95.5	-	33
2025년	880	880	-	41	921	887	100.8	-	34
2026년	928	928	-	-	827	472	50.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02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2024년	전용	△6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2025년	전용	41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0) 경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3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경기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37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경기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경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경기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	-	-	1,419	1,419	1,419	순증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1,419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1,419
· 상용임금(110-03)	-	-	-	-	-	-	-	-	1,419
· 일용임금(110-04)	-	-	-	-	-	-	-	-	581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35
· 일숙직비(210-06)	-	-	-	-	-	-	-	-	277
·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0
· 기타운영비(210-16)	-	-	-	-	-	-	-	-	13
· 직책수행경비(250-02)	-	-	-	-	-	-	-	-	254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13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경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사업목적	경기청 및 관내 7개 지청 등 경기지방노동관서 운영
사업내용	기본적 경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추진경위	○ 경기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신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	1,41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기청 및 7개 관서

○ 사업 수혜자 : 경기청 및 7개 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	1,419	1,419
경기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	1,419	1,419

○ 경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설명) 경기청 및 7개 관서 소요
- (산출)

상용임금(비서 8명, 고객지원관 8명) : 581백만원
일용임금(8개 관서) : 35백만원
특근매식비(8개 관서) : 277백만원
일·숙직비(8개 관서) : 0원
복리후생비(8개 관서) : 13백만원
기타운영비(8개 관서) : 254백만원
직책수행경비(8개 관서) : 136백만원
고용부담금(8개 관서) : 123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경기지방노동관서의 원활한 기관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1)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6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67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서울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1,903	1,878	1,878	2,007	2,007	129	6.9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903	1,906	1,886	0	20	1,878	1,878	898	2,007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903	1,906	1,886	0	20	1,878	1,878	898	2,007
- 일반수용비(210-01)	352	349	349	0	0	352	340	179	43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89	677	676	0	1	700	700	412	778
- 피복비(210-03)	0	1	1	0	0	1	1	0	1
- 임차료(210-07))	31	49	49	0	0	33	45	31	33
- 유류비(210-08)	75	75	56	0	19	75	75	42	6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	12	12	0	0	14	14	3	14
- 국내여비(220-01)	472	475	475	0	0	472	472	153	451
- 관서업무추진비(240-02)	51	51	51	0	0	51	51	25	48
- 자산취득비(430-01)	219	219	218	0	0	182	182	52	18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상업무수행에 소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추진경위	서울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810	1,867	1,903	1,878	2,00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소속지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878	2,007	129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856백만원 집행
2024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877만원 집행
2025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886백만원 집행
2026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98백만원 집행('26. 7월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810	1,810	35	18	1,863	1,856	99.6	0	8
2024년	1,867	1,867	0	11	1,878	1,877	99.9	0	1
2025년	1,903	1,903	0	3	1,906	1,886	98.9	0	20
2026년	1,878	1,878	0	0	1,878	697	38.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8	공공요금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4년	전용	11	공공요금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5년	전용	3	국내여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6년	-	-	-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2)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8)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68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 (비총액)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1,674	1,628	1,628	1,834	1,834	206	12.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74	1,695	1,680	13	2	1,628	1,466	861	1,83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674	1,695	1,680	13	2	1,628	1,466	861	1,834
· 일반수용비(210-01)	305	253	253	0	0	305	270	138	43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38	591	591	0	0	546	475	419	655
· 피복비(210-03)	1	0	0	0	0	1	1	0	1
· 임차료(210-07)	18	35	35	0	0	19	36	24	19
· 유류비(210-08)	85	55	55	0	0	85	72	28	5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	20	20	0	0	20	19	9	20
· 일반용역비(210-14)	0	13	0	13	0	0	13	13]	0
· 국내여비(220-01)	431	452	450	0	2	431	366	184	428
· 관서업무추진비(240-02)	42	42	42	0	0	42	35	22	40
· 자산취득비(430-01)	234	234	234	0	0	179	179	24	17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사업목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8개 지청의 기본적 경상업무수행
사업내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8개 지청의 기본적 경상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추진경위	○ 부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459	1,548	1,674	1,628	1,83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8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8개 지청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628	1,834	206

○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2026년) 1,628 → (2027년 정부안) 1,834백만원, +12.7%**

- (설명) 감독관 증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인상 등, '26년 대비 +12.7% 증액

  * 일반수용비(9개 관서): ('26년)305백만원 → ('27년 정부안)438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9개 관서): ('26년)546백만원 → ('27년 정부안)655백만원
  * 피복비(9개 관서): ('26년)1백만원 → ('27년 정부안)1백만원
  * 임차료(9개 관서): ('26년)19백만원 → ('27년 정부안)19백만원
  * 유류비(9개 관서): ('26년)85백만원 → ('27년 정부안)58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9개 관서): ('26년)20백만원 → ('27년 정부안)20백만원
  * 국내여비(9개 관서): ('26년)431백만원 → ('27년 정부안)428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9개 관서): ('26년)42백만원 → ('27년 정부안)40백만원
  * 자산취득비(9개 관서): ('26년)179백만원 → ('27년 정부안)17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493백만원 집행
2024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712백만원 집행
2025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680백만원 집행
2026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61백만원 집행('26.7월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8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요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459	1,459	0	70	1,529	1,493	102.3	0	36
2024년	1,548	1,548	0	201	1,749	1,712	110.6	0	37
2025년	1,674	1,674	0	21	1,695	1,680	100.4	13	2
2026년	1,628	1,628	13	0	1,466	861	52.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70	공공요금, 임차료 부족 등으로 세목변경
	불용	36	집행잔액
2024년	전용	201	공공요금, 임차료 부족 등으로 세목변경
	불용	37	집행잔액
2025년	전용	21	여비 부족 등으로 세목변경
	불용	2	집행잔액
	이월	13	부산청 별관 신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계약 기간이 '25.11.6.부터 과업 완수시까지로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계속 진행하여 일반용역비 이월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3)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9)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69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 기본경비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	-	-
-	-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1,120	1,126	1,126	1,248	1,248	122	10.8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120	1,129	1,105	0	24	1,126	973	574	1,248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120	1,129	1,105	0	24	1,126	973	574	1,248
·일반수용비(210-01)	195	195	195	0	0	195	166	111	27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99	399	399	0	0	405	344	275	469
·피복비(210-03)	1	1	0	0	1	1	1	0	1
·임차료(210-07)	9	9	9	0	0	9	7	4	9
·유류비(210-08)	56	56	37	0	19	56	47	20	46
·시설장비유지비 (210-09)	9	9	8	0	1	9	8	2	9
·국내여비(220-01)	312	321	319	0	2	312	265	115	304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0	30	30	0	0	30	26	15	29
·자산취득비(430-01)	109	109	108	0	1	109	109	32	10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의 기본 경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추진경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운영 경상 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049	1,120	1,120	1,126	1,24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없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 해당없음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059백만원 집행
2024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33백만원 집행
2025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05백만원 집행
2026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574백만원 집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예산 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49	1,049	0	26	1,075	1,059	101.0	0	16
2024년	1,120	1,120	0	38	1,158	1,133	101.2	0	25
2025년	1,120	1,120	0	9	1,129	1,105	98.7	0	9
2026년	1,126	1,126	0	0	973	574	51.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26	공공요금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3년	불용	16	집행잔액
2024년	전용	25	공공요금, 여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4년	불용	25	집행잔액
2025년	전용	9	여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2025년	불용	24	집행잔액
2026년	-	0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4)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70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2,858	2,875	2,875	1,332	1,332	△1,543	△53.6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858	2,918	2,904	0	14	2,875	2,875	1,609	1,33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858	2,918	2,904	0	0	2,875	2,875	1,609	1,332
· 일반수용비(210-01)	608	636	635	0	1	607	607	388	33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28	1,025	1,024	0	1	1,044	1,044	700	485
· 피복비(210-03)	1	1	1	0	0	1	1	0	1
· 임차료(210-07)	49	41	41	0	0	49	49	21	35
· 유류비(210-08)	143	128	128	0	0	143	143	55	7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6	25	25	0	0	26	26	8	10
· 국내여비(220-01)	665	725	714	0	11	665	665	327	280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8	68	68	0	0	68	68	39	26
· 자산취득비(430-01)	269	269	269	0	1	272	272	71	8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중부청 및 관내 7개 지청 등 중부지방노동관서의 기본적 경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추진경위	중부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700	2,783	2,858	2,875	1,33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부청 및 7개 관서

○ 사업 수혜자 : 중부청 및 7개 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875	1,332	△1,543

○ 일반수용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607백만원(2026년도) → 335백만원(2027년도)
○ 공공요금및제세(15개 관서 → 8개 관서) : 1,044백만원(2026년도) → 485백만원(2027년도)
○ 피복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1백만원(2026년도) → 1백만원(2027년도)
○ 임차료(15개 관서 → 8개 관서) : 49백만원(2026년도) → 35백만원(2027년도)
○ 유류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143백만원(2026년도) → 71백만원(2027년도)
○ 시설장비유지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26백만원(2026년도) → 10백만원(2027년도)
○ 국내여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665백만원(2026년도) → 280백만원(2027년도)
○ 관서업무추진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68백만원(2026년도) → 26백만원(2027년도)
○ 자산취득비(15개 관서 → 8개 관서) : 272백만원(2026년도) → 88백만원(2027년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925백만원 집행
2024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862백만원 집행
2025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904백만원 집행
2026년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609백만원 집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중부지방노동관서의 원활한 기관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700	2,700	0	298	2,998	2,925	108.3	0	74
2024년	2,783	2,783	0	109	2,892	2,863	102.8	0	55
2025년	2,858	2,858	0	60	2,918	2,904	101.6	0	14
2026년	2,875	2,875	0	0	2,875	1,609	55.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298	공공요금 등 부족
2024년	전용	109	여비, 공공요금 등 부족
2025년	전용	60	여비 등 부족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5)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71
명칭	사회복지	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광주지방관서기 본경비(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광주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1,217	1,155	0	1,190	1,270	115	9.9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201	1,228	1,217	0	11	1,155	970	530	1,270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1,201	1,228	1,217	0	11	1,155	970	530	1,27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201	1,228	1,217	0	11	1,155	970	530	1,270
· 일반수용비(210-01)	270	280	280	0	0	269	229	140	35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83	305	305	0	0	288	245	178	362
· 피복비(210-03)	1	1	1	0	0	1	1	0	1
· 임차료(210-07)	32	29	29	0	0	32	32	16	32
· 유류비(210-08)	19	10	10	0	0	19	16	4	15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8	18	18	0	0	18	15	5	18
· 국내여비(220-01)	329	356	345	0	11	329	280	142	32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2	32	32	0	0	32	27	16	30
· 자산취득비(430-01)	217	197	197	0	0	167	125	29	12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사업목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
사업내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추진경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039	1,039	1,201	1,155	1,27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55	1,270	115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1,155	1,270	115

○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2026년) 1,155 (2027년 정부안) 1,270백만원, +9.9%**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20백만원 집행
2024년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227백만원 집행
2025년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217백만원 집행
2026년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530만원 집행('26.7월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39	1,039	0	81	1,120	1,120	107	0	0
2024년	1,075	1,075	0	155	1,230	1,227	114.1	0	2
2025년	1,201	1,201	0	27	1,228	1,217	101.3	0	11
2026년	1,155	1,155	0	0	970	530	45.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48	군산지청 공용차량 사고로 파손되어 차량교체필요
2023년	전용	24	전기 등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 예산 부족
2024년	전용	7	지방관서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예산 부족
2024년	전용	61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부족
2024년	전용	10	지방관서의 집체교육, 업무협의 등 기관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예산 부족
2025년	전용	20	공공요금 예산 부족
2025년	전용	27	산업안전감독관 국내여비 예산 부족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6)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72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1,187	1,172	1,172	1,317	1,317	145	12.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166	1,176	1,173	-	3	1,172	1,023	687	1,317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1,166	1,176	1,173	-	3	1,172	1,023	687	1,317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166	1,176	1,173	-	3	1,172	1,023	687	1,317
· 일반수용비(210-01)	274	304	304	-	-	274	232	185	1,31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40	350	350	-	-	345	310	288	370
· 피복비(210-03)	1	1	0	-	1	1	1	-	428
· 임차료(210-07)	34	50	50	-	-	35	33	27	1
· 유류비(210-08)	60	7	7	-	-	60	44	3	35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1	28	28	-	-	31	27	11	34
· 국내여비(220-01)	283	293	292	-	1	283	255	101	31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0	30	30	-	-	30	25	15	278
· 자산취득비(430-01)	113	113	112	-	1	113	96	57	2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사업목적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
사업내용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추진경위	○ 대전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127	1,125	1,166	1,172	1,31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72	1,317	145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1,172	1,317	145

○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 **(2026년) 1,172 (2027년 정부안) 1,317 +12..3%**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42백만원 집행
2024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87백만원 집행
2025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73백만원 집행
2026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687백만원 집행('26. 7월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27	1,127	-	55	1,182	1,142	101.3	-	40
2024년	1,125	1,125	-	66	1,191	1,187	105.5	-	4
2025년	1,166	1,166	-	-	1,176	1,173	100.8	-	3
2026년	1,172	1,172	-	-	1,023	690	58.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55	공공요금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2024년	전용	66	공공요금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2025년	전용	10	공공요금, 임차료, 국내여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7) 경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9)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경기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24	279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경기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경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경기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	-	-	2,066	2,066	2,066	순증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2,066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	-	-	2,066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2,06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	-	549
· 피복비(210-03)	-	-	-	-	-	-	-	-	785
· 임차료(210-07)	-	-	-	-	-	-	-	-	0.5
· 유류비(210-08)	-	-	-	-	-	-	-	-	1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72.5
· 국내여비(220-01)									1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	-	-	-	-	-	402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3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경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사업목적	경기청 및 관내 7개 지청 등 경기지방노동관서 운영
사업내용	기본적 경상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추진경위	○ 경기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신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	2,06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기청 및 7개 관서

○ 사업 수혜자 : 경기청 및 7개 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	2,066	2,066
경기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	2,066	2,066

○ 경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 (설명) 경기청 및 7개 관서 소요
- (산출)

일반수용비(8개 관서) : 549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8개 관서) : 785백만원
피복비(8개 관서) : 0.5백만원
임차료(8개 관서) : 14백만원
유류비(8개 관서) : 72.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8개 관서) : 16백만원
국내여비(8개 관서) : 402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8개 관서) : 38백만원
자산취득비(8개 관서) : 18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경기지방노동관서의 원활한 기관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8) 정책연구개발(7031-3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31	310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정책연구개발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정책연구개발	411	321	321	521	321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415	435	411	24	-	321	345	150	321
·정책연구개발	415	435	411	24	-	321	345	150	32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415	435	411	24	-	321	345	150	321
·정책연구개발(260-02)	415	435	411	24	-	321	345	150	32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내역사업명1

사업목적	정책연구개발
사업내용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을 실시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1999년부터 계속 ○ 추진배경 - '99년부터 고용노동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 중장기 고용노동 비전 마련 관련 연구용역 실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813	415	415	321	32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21	321	-
내역사업1	321	321	-

○ **정책연구개발 (2026년) 321 → (2027년 정부안) 321백만원, 전년동**

- (산출) 41.5백만원 * 7개 과제 + 30.5백만원 * 1개 과제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20개 정책연구과제 실시(813백만원)
2024년	- 10개 정책연구과제 실시(415백만원)
2025년	- 행정안전부 주관 '25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우수' 기관 선정 - 13개 정책연구과제 실시(321백만원)
2026년	- 과제 정상 추진 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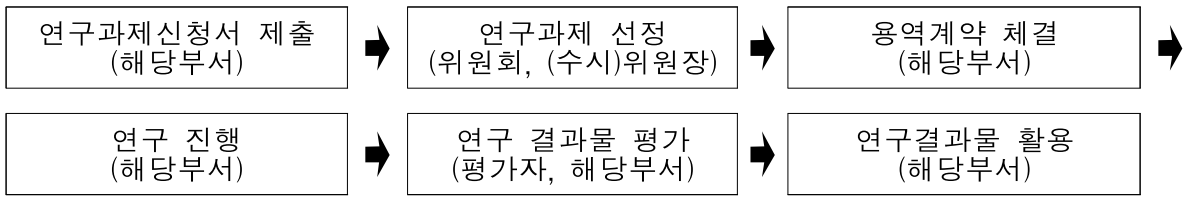
○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정책반영 및 참조를 통해 고용노동정책 개발 및 노동개혁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실·국 별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연구과제 신청 → 위원회 의결을 통한 연구과제 선정 → 용역계약 체결 → 연구 진행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13	813	6	-	819	800	98.4	19	-
2024년	415	415	19	-	434	395	95.2	20	-
2025년	415	415	20	-	435	411	99.0	24	-
2026년	321	321	24	-	345	150	46.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99)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7032-31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32	310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행정혁신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행정혁신·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
정책고객소통강화	고용노동부.디지털소통팀	-
정부혁신 유공포상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고용노동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청년인턴 운영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5,726	6,274	6,274	7,137	6,661	387	6.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208	6,208	5,726	-	482	6,274	6,274	2,691	6,661
·행정혁신·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140	140	133	-	7	139	139	22	139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704	704	702	-	2	704	704	110	1,204
·정책고객소통강화	1,600	1,600	1,595	-	5	1,600	1,600	728	1,600
·정부혁신 유공포상	26	26	24	-	2	26	26	15	19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112	112	112	-	0	72	72	32	72
·청년인턴 운영	3,626	3,626	3,160	-	466	3,733	3,733	1,784	3,627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208	6,208	5,726	-	482	6,274	6,274	2,691	6,661
·일용임금(110-04)	3,056	3,056	2,791	-	265	3,145	3,145	1,627	3,042
·일반수용비(210-01)	1,138	1,101	1,069	-	32	1,160	1,160	253	1,075
·임차료(210-07)	14	14	13	-	1	14	14	5	19
·일반용역비(210-14)	1,378	1,415	1,410	-	5	1,378	1,378	624	1,968
·국내여비(220-01)	203	203	59	-	144	180	180	16	170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	10	10	10	10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	-	-	-
·포상금(310-03)	26	26	24	-	2	26	26	15	19
·고용부담금(320-09)	343	343	310	-	33	361	361	141	35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행정혁신·민원 서비스 강화 추진

사업목적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국민·일선직원 참여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고용노동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사업내용	고용노동 정책의 수립·집행 등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과 민간 협력을 강화

(1-2)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목적	내부 직원의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자살 등에 따른 사망 증가 및 이직 희망자 증가에 대응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
사업내용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특별민원 대응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

(1-3) 정책고객소통강화

사업목적	고용노동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인지도를 제고
사업내용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 이를 송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1-4) 정부혁신 유공포상

사업목적	정부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실적 우수기관의 성과 제고 유인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사업내용	고용노동행정에 기여한 직원 및 기관 등에 포상금을 지급

(1-5)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사업목적	고용노동정책 수행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며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확산
사업내용	양성평등 관점 반영, 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

(1-6) 청년인턴 운영

사업목적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
사업내용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1조(행정업무 혁신) -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발굴·수행 등 행정협업 촉진 2.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업무절차 개선 3.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구성원 간 이해·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4. 사무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민원공간 등 업무공간 혁신 5. 제43조의2에 따른 지식행정 활성화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 ○ 정부혁신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적극행정 추진계획(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 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제14조(성주류화 조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민제안규정」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공무원 제안규정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제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추진경위	1) 사업 시작연도: 2005년부터 계속 2) 추진배경 ○ 정부혁신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운영규정·추진계획(인사혁신처) 및 각 내역사업별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등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현실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의 건강중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조직 활성화 유도 *'19.5.7.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설치되어 ①소관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양성평등 조직문화 총괄 ②정책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 기능 담당 * '23.1.17.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청년인턴 채용 추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863	6,490	6,208	6,274	6,66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내부 직원 및 고용노동서비스 수요자,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274	6,661	387
행정혁신·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139	139	-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704	1,204	500
정책고객 소통강화	1,600	1,600	-
혁신행정 유공자 포상	26	19	△7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72	72	-
청년인턴 운영	3,733	3,627	△106

1 행정혁신·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2026년) 139 → (2027년 정부안) 139백만원, 전년동

①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 추진: ('26) 59 → ('27 정부안) 59백만원, 전년동
- (산출) 현장소통관 현장활동 사업추진비: 9백만원
정부혁신 추진성과 홍보, 적극행정 국민파트너스 운영비 등: 28백만원
일하는 방식, 행정제도 개선 추진(워크숍 장소 임차 및 행사운영비): 13백만원
각종 경진대회(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및 워크숍 관련 임차료: 3백만원
학습 연구모임 지원: 0.06백만원*100개모임=6백만원

② 고객 중심 고용노동행정 추진:('26) 80 → ('27 정부안) 80백만원, 전년동
- (산출) 민원 응대 교육 과정 용역비: 0.27백만원*48개 관서= 14백만원
민원 응대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8백만원(임차 3백만원+진행비 5백만원)
고충민원·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18백만원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운영: (위원수당) 0.2백만원*40명*3회=24백만원, (책자제작) 1백만원
옴부즈만 운영 임차료: 3백만원*1개소=3백만원
청렴시민감사관 수당: 0.2백만원*8명*7회=12백만원

2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2626년) 704 → (2027년 정부안) 1,204백만원, +71.0%

①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6) 422 → ('27 정부안) 772백만원, +82.9%
- (산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개인상담 0.1백만원*1,350회=135백만원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 3회(회당 120명)*10백만원=30백만원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1.15백만원*168개소*2회=386,4백만원
트라우마 등 전문상담: 0.2백만원*808회=161.6백만원
자살예방 전문교육: 0.5백만원*48회=24백만원
심폐소생술 교육: 0.05백만원*700명=35백만원

② 정부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6) 282 → ('27 정부안) 432백만원, +53.2%
- (산출) 지방관서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0.1백만원*28명*50개소=140백만원
필수 이수 교육과정 운영: 0.31백만원*458명=142백만원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운영: 조직진단 하위 3개 관서*50백만원=150백만원

3 정책고객 소통강화: (2026년) 1,600 → (2027 정부안) 1,600백만원, 전년동

① 고용노동정책 대국민 소통: ('26) 733 → ('27 정부안) 733백만원, 전년동
- (산출) 영상콘텐츠 제작: 154백만원*2회=308백만원
매체송출: 25백만원*17회=425백만원

② 뉴미디어 정책소통: ('26) 867 → ('27 정부안) 867백만원, 전년동
- (산출) 대표 SNS 채널 운영: 7백만원*10회=70백만원
매체협업: 30백만원*4회=12백만원
카드뉴스 등 제작: 1.325백만원*223회=296백만원
정책 소통영상 제작: 41.25백만원*8회=330백만원
정책기자단 운영: 발대식 수료식 2백만원(1백만원*2회)+취재지원 활동비 25백만원(0.05백만원*50명*10회)+워크숍 4백만원(2백만원*2회)+정책팸투어 4백만원(2백만원*2회)+콘텐츠기획 컨설팅 및 제작 16백만원(1.6백만원*10회)=51백만원

4 혁신행정 유공자 포상: (2026) 26 → (2027 정부안) 19백만원, △26.9%

① 조직몰입 우수기관 포상: ('26) 15 → ('27 정부안) 15백만원, 전년동

② 우수제안 포상: ('26) 4 → ('27 예산안) 4백만원, 전년동

5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2026) 72 → (2027 정부안) 72백만원, 전년동
- (산출) 정책 포럼 등 운영: 포럼 용역비 22백만원(5.2백만원 x 4회)+임차료 5백만원+사업추진비 1.9백만원=28.9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50백만원+4회=20백만원
교육·자문 등 지원: 1백만원 x 23회 = 23백만원

6 청년인턴 운영: (2026) 3,733 → (2027 정부안) 3,627백만원, △2.8%

① 청년인턴 인건비(월 보수 + 사회보험료): 3,400백만원
- (산출) 일용임금: 3,042백만원, 고용부담금: 358백만원

② 활동지원비(수용비+국내여비): 227백만원
- (산출) 수용비: 57백만원, 국내여비: 17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우수기관 선정
2024년	-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우수기관 선정
2025년	-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 - 범부처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26년	- 추진 중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정부혁신 추진 지원,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민이 존중받는고용노동행정 사회 조성**

○ **'안전한 일터' 등 주요 브랜드 정책 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대국민 소통 강화**

○ **청년이 행정기관에서의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행정혁신·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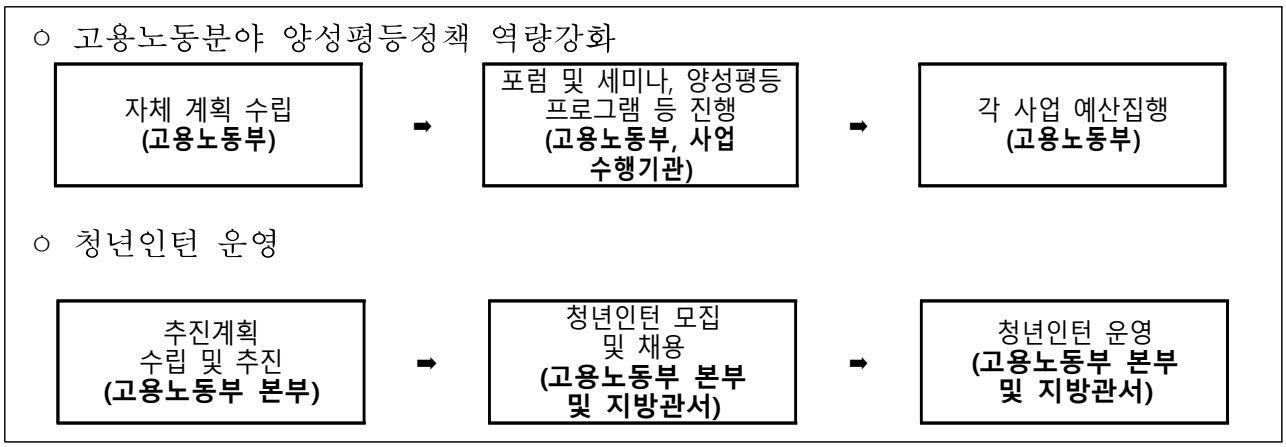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 요청 **(행정안전부)**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고용노동부)** ➡ 각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라 예산 집행 **(고용노동부)**

○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고용노동부)** ➡ 각 프로그램별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내부 직원)** ➡ 각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라 예산 집행 **(고용노동부)**

○ 정책고객 소통강화

종합 정책 소통 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정책 소통 콘텐츠 제작 및 송출 **(고용노동부)** ➡ 각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라 예산 집행 **(고용노동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863	2,863	40	-	2,903	2,890	99.6	-	13
2024년	6,490	6,490	-	-	6,490	6,104	94.1	-	386
2025년	6,208	6,208	-	-	6,208	5,726	92.2	-	482
2026년	6,274	6,274	-	-	6,274	2,691	42.9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00) 고용노동행정(정보화)(7034-50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능정보화기획팀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6	7000	7034	500
명칭	사회복지	노동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행정정보화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N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정보시스템 구축	지능정보화기획팀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능정보화기획팀	고용노동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지능정보화기획팀	고용노동부
전산장비 및 SW 구매	지능정보화기획팀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 운영	지능정보화기획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AX 공통기반운영	지능정보화기획팀 고용서비스기반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지방감독관 노동정보시스템 구축	근로감독협력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21,620	23,739	23,739	40,241	32,698	8,959	37.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21,701	21,756	21,620	17	119	23,739	23,756	13,302	32,698
·정보시스템 구축	588	666	639	17	10	847	864	17	736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91	4,568	4,515	0	53	5,041	5,041	2,307	4,88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11	1,811	1,809	0	2	1,811	1,811	1,100	2,498
·전산장비 및 SW구매	2,161	2,161	2,161	0	0	1,623	1,623	1,194	1,623
·정보시스템 운영	12,550	12,550	12,496	0	54	12,450	12,450	7,528	14,286
·고용노동 AX 공통기반운영	0	0	0	0	0	1,967	1,967	1,156	6,641
지방감독관 노동정보시스템 구축	0	0	0	0	0	0	0	0	2,03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1,701	21,756	21,620	17	119	23,739	23,756	13,302	32,698
·상용임금(110-03)	182	182	151	0	31	198	198	77	223
·일반수용비(210-01)	221	196	194	0	2	221	221	127	221
·공공요금및제세(210-02)	6,090	6,090	6,046	0	44	7,197	7,197	4,427	10,030
·특근매식비(210-05)	9	9	9	0	0	9	9	8	9
·임차료(210-07)	6,530	6,530	6,524	0	6	6,664	6,664	3,711	8,099
·복리후생비(210-12)	3	3	2	0	1	3	3	1	3
·일반용역비(210-14)	17	36	19	17	0	17	34	17	17
·관리용역비(210-15)	6,182	6,159	6,136	0	23	6,612	6,612	3,316	7,108
·국내여비(220-01)	9	21	19	0	2	9	9	7	9
·국외업무여비(220-02)	6	0	0	0	0	6	6	0	6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0	0	4	4	4	4
·일반연구비(260-01)	498	576	566	0	10	1,400	1,400	400	2,840
·고용부담금(320-09)	35	35	35	0	0	39	39	13	47
·사업출연금(350-02)	0	0	0	0	0	0	0	0	1,735
·자산취득비(430-01)	1,915	1,915	1,915	0	0	1,360	1,360	1,194	2,347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직원에게 업무정보와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포털, 대국민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만족도조사 등 공통 비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다우리포털(내부업무포털), 과태료관리시스템, 전자팩스, 배우리시스템(내부직원 교육) 등

(1-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목적	고용노동부 전산자산(정보시스템·통신망·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위탁 운영
사업내용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비용

* 스마트노사누리 유지보수, 업무용 PC·프린터 등 전산장비 및 개발·상용SW 유지보수, 전산지원관 인건비

(1-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업목적	고용노동부 및 12개 산하기관이 보유한 보안장비 및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관제를 위해 전문 보안업체에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내용	고용노동부 및 12개 산하기관이 보유한 보안장비 및 160여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 및 침해시도 탐지·해킹방지 실시(전문업체 위탁)

(1-4) 전산장비·소프트웨어 구매

사업목적	전산장비(PC, 모니터, 프린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내용	한컴오피스, MS오피스, 백신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PC·프린터 등 하드웨어 구매

(1-5)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목적	전산장비 구매 임차료, 통신회선료, 정보화사업 추진·운영
사업내용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PC·프린터 구매 등 리스계약 임차료, 초고속 회선(1,584개), 전자팩스, 문자 등 통신회선료

(1-6) 고용노동 AX 공통기반 구축

사업목적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GPU 등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노동법 상담,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AI 고용센터 등 국민체감형 AI 서비스 확대
사업내용	①고용노동부·산하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GPU 등 IT인프라 구축, ②구직자 진단·취업지원프로그램 추천·지원금 지급에 AI 적용 등을 핵심과제로 한 AI 고용센터 구축(한국고용정보원 출연), ③고용노동부·산하기관 업무 담당자가 AI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내부 플랫폼 체계 구축

(1-7) 지방노동감독관 노동정보시스템

사업목적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 노동감독관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내용	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위임 추진에 따라,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노동감독관용 전산시스템 구축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

	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38조(노동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감독관의 직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추진경위	○ ('86.~'00.) 고용보험·취업알선 등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보험 정보통신망 및 노동부 행정정보통신망 통합 ○ ('01.~'10.) 전자문서 및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노동부 및 산하단체 정보통신망 통합, 노동부 및 산하단체 지식관리센터(KMC), 인터넷방송시스템, PKMS시스템 구축,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산하단체 정보화수준 평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 및 노동부 홈페이지 개편 등 추진 ○ ('11.~'20.)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하고, 감사정보관리, 모바일 다우리,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고용부 전 기관 인터넷 전화기 보급

	- 노사누리·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 연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고용노동관련 민원 웹사이트 ONE-ID 서비스 실시, 네트워크 이중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제고, 과태료관리시스템· 노사마루 이행강제금 기능 연계 및 납부대상자 과태료 조회 기능 강화, 소속기관 망분리, 사이버안전센터 지능형 위협 탐지 기능 구축, 개인정보 관리 통제체계 강화 ○ ('21.~'26.) 노사누리 신고사건 처리 기능 개발, 스마트 노사누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관, 전자민원시스템 본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적용,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근로감독업무 처리기능 재구축, 노동포털 구축, 노후장비 교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27)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AX공통기반 플랫폼 구축, AI도구를 활용한 심층 상담·밀착지원서비스 구축(AI 고용센터), 자치단체에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 노동감독관용 전산시스템 구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8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4,869	22,139	21,701	23,739	32,69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고용노동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고용노동 AX공통기반 운영 (AI 고용센터 구축)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1,735	100%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제5항 및 제40조(위탁)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3,739	32,698	8,959
정보시스템 구축	847	736	△111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041	4,883	△158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11	2,498	687
전산장비 및 SW구매	1,623	1,623	-
정보시스템 운영	12,450	14,286	1,836
고용노동 AX공통기반 운영	1,967	6,641	4,674
지방감독관 노동정보시스템 구축	-	2,031	순증

○ **정보시스템 구축 (2026년) 847 → (2027년 정부안) 736백만원, △13.1%**

- **(설명)**

① 보안 라이선스 추가 구매(545백만원, 순증)

- 노동부 직원 증원에 따라 사용자 PC 보안 라이선스 추가구매

②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완료(656백만원, 순감)

- 노사누리 상습체불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 △446백만원(순감)
-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210백만원(순감)

- **(산출)** ①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추가 교체 73백만원(전년동)
②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81백만원(전년동)
③ 웹사이트 품질진단 20백만원(전년동)
④ 정보화사업 만족도 조사 17백만원(전년동)
⑤ 보안라이선스 추가구매 545백만원(순증)
⑥ 노사누리 상습체불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 △446백만원(순감)
⑦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210백만원(순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6년) 5,041 → (2027년 정부안) 4,883백만원, △3.1%**

- **(설명)**

① **개발SW 유지보수(694백만원, △221백만원)**: 공통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감액
② **스마트 노사누리 유지관리비(1,143백만원, 증 82백만원)**: 2·3차 구축사업 유지관리 비용 반영
③ **PC·프린터 유지보수(419백만원, 증 70백만원)**: '25년 도입 전산장비유지관리 비용 반영
④ **HW 유지보수(431백만원, △ 53백만원)**: 불용처리한 장비 유지보수 제외
⑤ **상용SW 유지보수(1,922백만원, △ 70백만원)**: '25년 솔루션 도입분 반영 및 미사용 SW의 유지보수 제외
⑥ **PC·프린터 유지보수 공무직인건비(273백만원, 증 33백만원)**: 전산지원관 처우개선

- **(산출)** ① 개발 SW 유지보수 915→694백만원(△221백만원)
② 스마트 노사누리 유지관리비 1,061→1,143(증 82백만원)
③ PC・프린터 유지보수 349→ 419백만원(증 70백만원)
④ HW 유지보수 484→ 431백만원(△53백만원)
⑤ 상용SW 유지보수 1,992→1,922(△70백만원)
⑥ 전산장비 유지보수 공무직 인건비 240→273(증33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026년) 1,811 → (2027년 정부안) 2,498백만원, +37.9%**

- **(설명)**

  ① 운영인력 인건비 (2,087백만원, 증 276백만원):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반영

  ② 보안솔루션SW 유지관리 (411백만원, 순증)

  - 고용부 및 산하기관 정보시스템 대상 사이버 테러 및 해킹위협 대비 24시간 365일 보안 관제 및 침해 대응

- **(산출)** ① 운영인력 인건비 1,811→2,087(증 276백만원)
  ② 보안솔루션SW 유지관리 411백만원(순증)

○ **전산장비·소프트웨어 구매 (2026년) 1,623 → (2027년 정부안) 1,623백만원, 전년동**

- **(설명)** 전년동
- **(산출)** ① PC·프린터 구매 428백만원 (전년동)
  ②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1,195백만원(전년동)

○ **정보시스템 운영 (2026년) 12,450 → (2027년 정부안) 14,286백만원, +14.7%**

- **(설명)**

  ① **리스계약 임차료(7,598백만원, 증 1,435백만원)**: 계약 종료('21) 및 신규 리스계약('26) 예정 2건 반영

  ② **통신회선료(6,439백만원, 증 401백만원):** 지방관서 산업안전분야 별관 신설에 따른 통신회선 공공요금 증가

- **(산출)** ① 리스계약 임차료 6,163 → 7,598백만원(증 1,435백만원)
  ② 통신회선료 6,038 → 6,439백만원(증 401백만원)
  ③ 기타 운영비 249(전년동)

○ **고용노동 AX 공통기반 운영 (2026년) 1,967 → (2027년 정부안) 6,641백만원, +237.6%**

- **(설명)**

  ① 고용노동부·산하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GPU등 IT인프라 구축(4,399백만원)

  - GPU 등 IT인프라를 활용하여 AI 노동법 상담,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제공

  ② AI 고용센터 구축(1,735백만원)

  - 구직자 진단, 취업지원프로그램 추천, 지원금 지급에 AI 적용등을 핵심과제로 한 AI 고용센터 구축(한국고용정보원 출연)

  ③ 고용노동 AX 개발지원 공통기반 구축 ISP/ISMP(507백만원)

  - 고용노동부·산하기관의 업무담당자가 AI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내부 플랫폼 체계 구축 및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의 구조적 연계 방안 마련

  ※ ISP/ISMP 수립 이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28년~)

- **(산출)** ① 고용노동 AI서비스 확대 ('26) 1,967 → ('27) 4,399백만원(증 2,432백만원)
  - 전문작업비 ('26) 808 → ('27) 808백만원(전년동)
  - AI API 이용료 ('26) 367 → ('27) 1,359(증 992백만원)
  - GPU 임차료 ('26) 792 → ('27) 2,232(증 1,440백만원)

  ② AI고용센터 구축 ('27)1,735백만원(순증)
  ③ 고용노동AX개발지원 공통기반 구축 ISP/ISMP ('27) 507백만원(순증)

○ **지방노동감독관 노동정보시스템 구축 (2027년 정부안) 2,031백만원, 순증**

- **(설명)** 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위임 추진에 따라,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노동감독관용 전산시스템 구축
- **(산출)** ① 노동정보시스템 구축비(1,424백만원)
  ② 노동정보시스템 상용SW도입(607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내부만족도(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4.6 (점)	65.4 (점)	73.9 (점)	74.6 (점)	-
실적	62.3 (점)	70.4 (점)	71.1 (점)	-	-
달성도	83.5%	107.6%	96.2%	-	-

- **측정산식 :** 내부직원 대상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전년도 평가 결과 대비 5%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내부시스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 **성과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77.4 (점)	75.7 (점)	85.8 (점)	86.6 (점)	-
실적	70.0 (점)	81.7 (점)	82.5 (점)	-	-
달성도	90.4%	107.9%	96.2%	-	-

- **측정산식 :**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전년도 평가 결과 대비 5% 상향
- **자료수집방법/출처 :**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 **성과지표: 정보보호수준 달성률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90.0%	90.0%	90.0%	90.0%	90.0%
실적	96.0%	96.6%	94.2%	94.7%	-
달성도	100	100	100	100	-

- **측정산식 :** 내부직원 해킹메일 대응훈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4.5급 이상 성과계약 평가 동일 적용
- **자료수집방법/출처 :** 해킹메일 대응훈련 결과보고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62.3점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70.0점
2024년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70.4점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81.7점
2025년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71.1점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82.5점
2026년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예정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예정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노동행정업무의 효율화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대국민 노동행정 포털 사이트 구축 및 모바일 현장조사·감독 업무 혁신 구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하여 안전한 정보시스템 사용환경 구축

- 지능형 지속 위협 등 고도화된 사이버공격에 대한 선제적 탐지·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악성코드 피해 사전 예방

○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 우리부 보유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 수준 향상으로 대내외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

○ 고용노동 AX 공통기반 운영

- 영세사업자는 간단한 자율점검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는 24시간 전문적인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권익 보호에 기여

- AI 기반 진단을 통해 구직자 특성별 집중지원 체계를 완성하여 신속한 맞춤 고용서비스 제공과 함께 필요한 곳에 상담역량 집중

- AI 활용 확대에 따른 중복투자를 통제하고, 현장 개선 수요가 실제 개발로 이어져서 국민 불편을 더 빨리 해소하는데 기여

○ 지방감독행정의 효율화 제고 및 중앙-지방 간 감독업무의 체계적 연계 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① 정보화대상 업무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발굴**
② 정보화사업 **중복성·타당성 검토**
③ **사업계획** 수립
④ **입찰공고**(조달청)
⑤ 제안서 **기술평가**
⑥ **사업자 선정·계약**
⑦ 사업추진
⑧ 시스템 **만족도조사·성과평가·피드백**

<출연: AI고용센터 구축>
① **(고용노동부)** 사업기준 및 지침수립
② **(한국고용정보원)**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③ **(고용노동부)**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재배정
④ **(한국고용정보원) 사업기획:** 정보화사업 계획 및 자체평가지표 설정
⑤ **(한국고용정보원) 사업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자선정·계약체결
⑥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착수 및 수행**
⑦ **(한국고용정보원) 검수 및 평가**
⑧ **(고용노동부)**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결산	2025	○ 지적: 예비비 요구에 앞서 기정예산을 통한 재원 충당 가능성과 지출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사누리 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점검·보완하여 유사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조치: 예비비 요구에 앞서 기정예산을 통한 재원 충당 가능성과 지출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26.4월 '정보시스템 장애(재난) 예방·대응 협의회'를 구성하여 장애(재난) 예방·대응 역량 및 관리 체계 강화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4,869	24,869	1,542	±592	26,411	25,205	101.3	772	434
2024년	22,139	22,139	772	△369	22,542	22,378	101.0	0	164
2025년	21,701	21,701	0	55	21,756	21,620	99.6	17	119
2026년	23,739	23,739	17	0	23,756	13,302	56.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이월	772	- ① 스마트노사누리 구축 2차사업('23.4.~'24.4.) 및 ② 홈페이지 UI/UX 개선('23.10.~'24.4.) ③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도입(행안부 국정자원관리원 위탁사업 ~'24.2.) 계약기간에 따라, 선금 지급(80%) 후 집행잔액 이월
2023년	불용	434	- 관리용역비 낙찰 차액: 60백만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및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사업) - 정보화사업 낙찰 차액: 13백만원(스마트노사누리 구축2차 및 모바일다우리 클라우드 이관 사업 등) - 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 23백만원 - 공공요금 등 기타 집행 잔액: 338백만원 (통신요금 절감 321백만원, 매식비 4백만원, 임차료 13백만원)
2024년	불용	164	- 공공요금 등 기타 집행 잔액: 164백만원
2025년	이월	17	- 2025년 행정정보시스템 설문조사 사업 계약기간('25.12.12.~'26.2.13.)에 따라 17백만원 이월
2025년	불용	119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기타 운영비 집행 잔액: 119백만원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01) 노동위원회청사관리(7036-30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36	306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청·관사유지	노동위원회청사관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노동위원회청사관리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중앙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2,066	2,276	2,276	3,077	2,916	640	28.1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230	2,108	2,066	0	42	2,276	5,044	1,337	2,916
· 기존청·관사유지관리	2,080	1,958	1,919	0	39	2,126	4,031	1,204	2,766
· 노후시설개선·장비교체	150	150	147	0	3	150	1,013	133	15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230	2,108	2,066	0	42	2,276	5,044	1,337	2,916
· 상용임금(110-03)	142	112	109	0	4	155	155	64	178
· 일반수용비(210-01)	10	17	17	0	1	10	105	16	1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2	104	104	0	0	82	102	63	82
· 임차료(210-07)	590	595	593	0	2	620	725	346	93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943	841	836	0	5	943	949	503	991
· 복리후생비(210-12)	2	2	2	0	0	2	2	2	2
· 일반용역비(210-14)	0	0	0	0	0	0	68	0	0
· 관리용역비(210-15)	78	73	64	0	8	78	79	39	78
· 고용부담금(320-09)	28	28	10	0	18	31	31	6	38
· 실시설계비(420-02)	0	0	0	0	0	0	67	0	0
· 공사비(420-03)	100	125	124	0	1	100	1,603	111	100
· 자산취득비(430-01)	150	150	147	0	3	150	1,013	133	150
· 무형자산(440-00)	105	60	60	0	0	105	145	55	35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기존청·관사유지관리

사업목적	노동위원회 청사·숙소의 안정적 확보·관리
사업내용	13개 노동위원회 청사숙소의 안정적 확보 및 유지관리

(1-2) 노후시설개선·장비교체

사업목적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
사업내용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및 민원·회의·사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의 사무환경 만족도 및 접근용이성 제고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노동위원회법 ○ 정부청사관리규정
추진경위	○ `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97년 노동위원회법 제정 ○ `99년 노동위원회법 개정 ○ `06년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신설 ○ 비정규직보호법(차별시정) 및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필수유지업무 등) 제도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06.12.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06.12.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06.12.30.)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07.1.26.) ▸노동부훈령 개정('07.4.6. 및 '07.8.21. 노동부국가공무원정원배정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582	2,227	2,230	2,276	2,916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위원, 조사관 등 근무자 및 방문 민원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276	2,916	640
기존청·관사유지관리	2,126	2,766	640
노후시설개선·장비교체	150	150	-

○ 기존청·관사유지관리 (2026년) 2,126 → (2027년 정부안) 2,766백만원, +30.1%

1 청소·시설관리직 인건비(복리후생비 및 고용부담금 포함): 218백만원(증 30백만원)
- (설명) 노동위원회 상용직(청소직 3, 시설관리직 1명) 상용임금 인상 및 가족수당, 근속수당 신설, 복리후생비 인상 등 처우개선분 반영
- (산출) 상용임금 178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38백만원

2 임차보증금: 355백만원(증 250백만원)
- (설명) '27년 수급 신규관사 임차보증금* 미반영분 반영 355백만원(증 250백만원)
  * '27년 지노위 신규 관사 수급면적: 경기 45㎡, 경남 75㎡
- (산출) 기존 청·관사 임차보증금 105백만원+ 경남 임차보증금 230백만원+ 경기 임차보증금 20백만원

3 청·관사 임차료: 932백만원(증 312백만원)
- (설명) 청·관사 임차료 인상분 및 신규 청·관사 임차료 미반영 반영 932백만원
- (산출) ① 620백만원('26년 편성 620백만원) ②신규 청사* 임차료 312백만원 (중앙150백만원, 경기 60백만원, 서울 102백만원)
  * 노동위 '26년 임차청사 추가 수급면적: 중앙 791㎡, 서울 274㎡, 경기 248㎡

4 공사비: 100백만원(전년동)
- (설명) 노동위원회 청사 공사비 편성 100백만원
- (산출) 100백만원(13개소*7,692천원)

5 청·관사 시설유지 관리 비용: 1,161백만원(증 48백만원)

① 청사 관리비 991백만원(증 48백만원)
- (설명) 청·사 관리 비용 991백만원
- (산출) 991백만원('26년 편성 943백만원×5%인상)

② 기존 청·관사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 17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청·관사 공공요금 및 관리용역비
- (산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10백만원+공공요금 82백만원+관리용역비 78백만원=170백만원

○ **노후시설개선·장비교체 (2026년) 150 → (2027년 정부안) 150백만원, 전년동**
- (설명) 회의장 및 민원실·사무실 등 청관사 노후 집기 및 장비교체
- (산출) 150백만원 (13개소×11.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청사・숙소 유지관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2,294백만원
2024	- 청사・숙소 유지관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2,122백만원
2025	- 청사・숙소 유지관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2,066백만원
2026	- 2026년 7월말 기준, 청사・숙소 유지관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1,337백만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및 민원·회의·사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의 사무환경 만족도 및 접근용이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사・숙소 유지관리) 청사 및 관사의 공공요금, 임차료, 관리비,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지원
(노후시설・장비 교체) 조정·심판회의실, 민원실, 사무실 노후집기 및 장비 교체 등
* 13개 노동위원회 (중노위 1, 지노위 12)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582	2,582	0	△198	2,384	2,294	88.9	21	69
2024년	2,227	2,227	21	△69	2,179	2,122	95.3	0	57
2025년	2,230	2,230	0	△122	2,108	2,066	92.6	0	42
2026년	2,276	2,276	0	2,768	5,044	1,337	58.7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02)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7036-44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36	440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청관사유지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본부 및 소속기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청관사유지 및시설관리	14,184	15,768	15,768	30,341	20,864	5,096	32.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4,211	14,186	14,184	-	1.6	15,768	16,476	8,077	20,864
·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 (7036-440)	14,211	14,186	14,184	-	1.6	15,768	16,476	8,077	20,86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4,211	14,186	14,184	-	1.6	15,768	16,476	8,077	20,864
· 상용임금(110-03)	1,254	1,222	1,221	-	0.9	1,390	1,390	726	1,742
· 일반수용비(210-01)	134	134	134	-	-	134	229	71	226
· 피복비(210-03)	-	-	-	-	-	-	-	-	16
· 임차료(210-07)	3,578	3,578	3,578	-	-	3,668	3,668	2,187	6,60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279	3,229	3,229	-	0.2	3,279	3,279	1,643	3,422
· 복리후생비(210-12)	30	30	30	-	-	31	31	21	39
· 관리용역비(210-15)	654	704	703	-	0.3	669	669	403	370
· 고용부담금(320-09)	245	277	277	-	0.1	275	275	59	370
· 공사비(420-03)	2,787	2,768	2,767	-	0.1	4,072	4,678	1,250	4,547
· 감리비(420-04)	20	17	17	-	-	20	27	27	20
· 자산취득비(430-01)	435	435	435	-	0.1	435	435	199	765
· 무형자산(440-00)	1,795	1,793	1,793	-	-	1,795	1,795	1,491	2,744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

사업목적	○ 안정적인 고용노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
사업내용	○ 본부 청사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청·관사 임차, 소방·전기·승강기·가스 등 법정검사 이행, 미화·시설관리근로자 인건비 지급, 청사 무인경비용역, 노후에 따른 배관·보일러·냉난방기·승강기 등 기본 설비 유지관리, 청사 내구성 확보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추진경위	○ 임차 청·관사 임차료 및 보증금 재원 확보 ○ 청사 전기·소방·승강기 안전대행 등 관리비 및 무인경비 용역비 확보,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4,170	13,822	14,211	15,768	20,86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본부 및 소속기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관서 소속 직원 및 방문 민원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5,768	20,864	5,096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	15,768	20,864	5,096

- (설명) 소속기관 1개소 신설, 청·관사 신규 확보, 공무직 증원 및 처우개선에 따라 ’26년 대비 5,096백만원 증액(+32.3%)

- (산출)
  - 소속기관 1개소 신설 공사비·임차료 등 (’26년) 0 → (’27년 정부안) 3,192백만원
  - 청·관사 신규 확보 임차료·관리비 등 (’26년) 0 → (’27년 정부안) 1,740백만원

- 공무직 증원, 기본급 인상 및 피복비 신설 등 처우개선에 따른 상용임금·고용부담금 등 ('26년) 1,696백만원 → ('27년 정부안) 2,167백만원
- 그 외 기존 청·관사 임차료·관리비·무인경비용역비·공사비·자산취득비 등 ('26년) 14,072백만원 → ('27년 정부안) 13,76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본부 및 지방관서 등 소속기관 청·관사 유지에 필요한 관리비, 임차료,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 소요를 파악한 후 예산 편성·배정·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4,170	14,170	213	-	14,383	14,382	101.5	-	1
2024년	13,822	13,822	-	34	13,856	13,855	100.2	-	1
2025년	14,211	14,211	-	△25	14,186	14,184	99.8	-	1.6
2026년	15,768	15,768	-	708	16,476	8,077	51.2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불용	1	○ 예산 집행 후 잔여액 발생
2024년	전용	34	○ 관사 보증금 부족으로 전용(100백만원) ○ 지방관서 수용비 부족으로 전용(△66백만원)
	불용	1	○ 예산 집행 후 잔여액 발생
2025년	전용	△25	○ 지방노동위원회 공사비 부족으로 전용(△25백만원)
	불용	1.6	○ 예산 집행 후 잔여액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03)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039-309)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39	309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노동위원회운영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중앙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9,239	9,645	9,645	11,652	10,549	904	9.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8,898	9,479	9,239	40	200	9,645	10,309	5,510	10,549
· 위원 및 조사관 역량강화	400	398	373	0	25	400	427	227	660
· 부문별위원회운영	7,013	7,492	7,501	0	△9	7,660	8,257	4,505	8,304
·고용노사분쟁 조정·화해강화	785	807	718	40	49	785	825	357	785
· 송무수행	700	782	647	0	135	800	800	421	8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8,898	9,479	9,239	40	200	9,645	10,309	5,510	10,549
· 상용임금(110-03)	600	550	540	0	10	737	737	357	797
· 일반수용비(210-01)	6,672	7,083	7,082	0	1	7,153	7,750	4,279	7,915
· 임차료(210-07)	20	12	8	0	4	20	20	2	67
· 복리후생비(210-12)	7	7	7	0	0	8	8	4	10
· 일반용역비(210-14)	596	598	564	0	34	596	596	241	346
· 국내여비(220-01)	43	43	38	0	5	43	43	17	43
· 사업추진비(240-01)	98	98	97	0	1	98	98	59	98
· 특정업무경비(250-03)	167	167	160	0	7	167	195	110	427
· 일반연구비(260-01)	100	120	80	40	0	0	40	28	0
· 정책연구비(260-02)	0	0	0	0	0	100	100	35	100
· 배상금(310-02)	391	597	569	0	28	491	491	270	491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포상금(310-03)	7	7	7	0	0	7	7	3	7
· 고용부담금(320-09)	117	117	79	0	38	146	146	37	169
· 반환금및손실금(710-03)	79	79	7	0	72	79	79	68	7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위원·조사관 역량강화

사업목적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
사업내용	업무 분야별 워크숍,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지원

(1-2) 부문별 위원회 운영

사업목적	심판·차별시정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분쟁 조기해결 및 신속한 근로자 권리구제
사업내용	부문별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 안건검토비 지급 및 12개 지노위에 공인노무사·민간경력자를 활용한 초기상담 지원

(1-3) 노사분쟁 조정기능 지원

사업목적	예방·사후적 분쟁해결 활동을 통한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
사업내용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현장출장 등으로 노사분쟁 조기 타결을 지원하는 조정위원들의 활동 지원(수당, 여비 등)

(1-4) 송무수행·이행강제금 반환

사업목적	행정소송 수행업무의 원활한 지원 및 이행강제금의 신속한 반환
사업내용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비용 및 부과 취소 사유 발생시 기 수납 이행강제금 반환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추진경위	○ 노사정위원회 합의('02.11.21.) 등으로 '05년부터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이 본격 추진 ▸노사정위원회 합의 : 조정기법 개발, 조정전문가 육성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및 인프라 확충계획 보고(대통령 업무보고, '04.3.4.) ○ 취약근로자보호법(차별시정) 및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필수유지업무 등) 시행에 따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지원을 위해 인력충원, 상임위원 보강 등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 추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06.12.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06.12.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06.12.30.) ▸「노동위원회법」및「근로기준법」개정('07.1.26.) ▸ 노동부훈령 개정('07.4.6. 및 '07.8.21. 노동부국가공무원정원배정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10.1.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9.8.27.)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7,528	8,849	8,898	9,645	10,54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및 사업주,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645	10,549	904
위원 및 조사관 역량강화	400	660	260
부문별위원회 운영	7,660	8,304	644
고용노사분쟁 조정·화해 기능강화	785	785	-
송무수행 및 이행강제금 반환	800	800	-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2026년) 400 → (2027년 정부안) 660백만원, +65.0%

① 조사관 역량강화 : 50백만원 (전년동)
- (설명) 노동위원회 조사관 현장교육(워크숍) 예산 50백만원
- (산출) 50백만원=강사료(2,676천원*13개소)+임차료 5,600천원+다과 7,000천원

② 위원 역량강화: 76백만원(전년동)
- (설명) 노동위원회 공익·노·사위원 현장교육(워크숍) 예산 76백만원
- (산출) 76백만원=참석수당(4,200천원*13개소)+ 위탁비 12,090천원+ 임차료 9,400천원

③ 조사관 활동비: 427백만원 (+ 260백만원)
- (설명) 조사관 직권조사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정업무경비 427백만원 요구(증 260백만원)
- (산출) 427백만원=10만원*×12월×356명**

* 단가인상: ('26년) 5만원 → ('27년 요구) 10만원

** 물량증가: 조사관 증원에 따른 지원인원 현행화(279명 → 356명)

④ 조사관 교육비 1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조사관 집합 직무교육 9개 과정 실시비용 100백만원(전년동)
- (산출) 100백만원 = 위탁교육비 81,000천원+임차료 5,000천원+여비 14,000천원

⑤ 포상금 7백만원 (전년동)
- (설명) 노동위원회 업무량 증가와 조사관 증원에 따라 직원 사기진작 필요
- (산출) 7백만원 = 우수조사관 700천원×7명 + 우수사례 500천원×4건

○ 부문별위원회운영 (2026년) 7,660 → (2027년 정부안) 8,304백만원, +8.4%

①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증가에 따른 위원 회의수당·안건검토비 7,231백만원 (증 559백만원)
- (설명) 노동위원회 접수·처리사건 증가에 따른 회의 개최 건수 자연증가분 반영 7,231백만원
- (산출) 회의개최 건수 물량증가분 7,231백만원

· (물량증가분) 7,231백만원 (559백만원 증)
= 6,732백만원('25년 결산)×1.074[집행액(6.2%↑) 및 사건 증가율 반영(23.6%↑)]

② 차별시정전문위원 및 권리구제지원관 인건비 976백만원(+ 85백만원)
- (설명) 차별시정전문위원(2명) 상용임금·고용부담금 인상 및 공무직 차별시정을 위한 처우개선분 반영, 권리구제지원관(14명, 전국 지노위) 상용임금·고용부담금 인상
- (산출) 공통처우개선율 4.3% 인상, 적정임금(최저임금 118%) 보전, 가족수당 신설, 식비 인상(월14→ 16만원), 복지포인트 인상(연50→ 60만원)

③ 위원 교통비 65백만원 (전년동)
- (설명)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위원 회의참석 교통비 지급
- (산출) 65백만원(최근 5개년 위원 교통비 지급액 평균의 46.8% 반영)
=40천원×3,475건×46.8%

* 연도별 집행액 ('21) 146 → ('22) 138 → ('23) 144 → ('25) 131

④ 권리구제지원팀 운영비 25백만원 (전년동)
- (설명) 인쇄물 제작·소모품구입비 등 운영비 25백만원
- (산출) 25백만원

⑤ 회의 운영 물품구매 7백만원 (전년동)
- (설명) 소모품구입비 등 회의 운영 물품구매 7백만원
- (산출) 7백만원

○ 고용노사분쟁 조정·화해기능강화 (2026년) 785 → (2027년 정부안) 785백만원

① 준상근조정위원 활동 사례비 45백만원 (전년동)
- (설명) 준상근조정위원 활동 사례비 45백만원 요구
- (산출) 45백만원=150천원*150명*2회

② 분쟁조정 등 현장조정 49백만원 (전년동)
- (설명) 현장 분쟁조정수당 및 현장조사·직권조사 여비 49백만원 요구
- (산출) 49백만원=분쟁조정수당21백만원+ 현장조정 여비18백만원 +직권조사 여비10백만원

③ 회의업무추진 91백만원 (전년동)
- (설명) 조정회의 진행 지원 등 91백만원 요구
- (산출) 91백만원

④ 정책연구 1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노동위원회 정책연구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사·연구수행 예산 100백만원
- (산출) 100백만원=1건*40백만원+3건*20백만원

⑤ 분쟁조정 실무역량 강화 5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원·하청 교섭,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조정 등 고용노사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조사관 실무역량 강화 500백만원
- (산출) 500백만원= 강사료(2,000천원*13개소*2회)+참석수당(4,800천원*13개소*2회), 자료유인(1,000천원*13개소*2회), 위탁비250백만원, 임차료 47백만원

○ 송무수행 및 이행강제금반환 (2026년) 800 → (2027년 정부안) 800백만원

① 패소 비용 491백만원
- (설명) 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 제기 건수 및 최근 패소비용 집행액 평균 고려

* 소제기 현황(건): ('21) 567→('22) 548→('23) 539→('24) 577 →('25) 497
- (산출) 491백만원('26년 예산액)

② 위탁소송 비용 225백만원 (전년동)
- (설명) 소송 외부위탁* 비용 225백만원
  * '26년 위탁 단가(착수금+승소보수): ▲1심 600만원(400+200), ▲2심 500만원(300+200), ▲3심 400만원(300+100))
- (산출) 27.1건×((1심 6,000,000원)+(2심 5,000,000원*0.3)+(3심 4,000,000원*0.2) =225백만원

③ 송달료 5백만원 (전년동)
- (요구) 소송수행 송달료 5백만원
- (산출) 97건(최근 3년 평균 84건에 사건 증가분 반영)×52,000원(건당 송달료)=5백만원

④ 이행강제금 반환금 79백만원(전년동)
- (설명) 이행강제금 반환금 79백만원
- (산출) 구제명령 취소에 따라 이행강제금 반환 재원 79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8,206백만원 집행
2024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9,219백만원 집행
2025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9,239백만원 집행
2026	2026년 7월말 기준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5,510백만원 집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예방·사후적 분쟁해결 활동을 통한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
○ 심판·차별시정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분쟁 조기해결 및 신속한 근로자 권리 구제
○ 복수노조 교섭대표 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노노갈등 사전 차단
○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
○ 행정소송 수행업무의 원활한 지원 및 이행강제금의 신속한 반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교육 실시 예산 배정	고용노동부→각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워크숍·교육 실시	각 노동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운영)

1) 회의수당 등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위원회 개최	각 노동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안건검토비 지급	각 노동위원회

2) 차별시정전문위원 및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차별시정위원 및 권리구제지원관 채용	각 노동위원회
인건비·복리후생비 지급	각 노동위원회

(고용노사분쟁 조정·화해기능 강화)

조정·중재 신청	노동조합·사용자
조정성립	조정위원회(각 노동위원회)
단체협약 체결	

(송무수행 및 이행강제금 반환)

1) 송무수행

소송수행 위탁	각 노동위원회→위탁기관
소송 수행	위탁기관
소송위탁비용 지급	각 노동위원회

2) 패소비용 및 이행강제금 반환

판결 및 소송비용 부담 확정	법원
소송비용 지급 및 이행강제금 반환	각 노동위원회→승소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국정감사	2025년	○ 지적 : 노동분쟁의 최근 증가로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휴직률이 11.9%일 정도로 조사관들의 노동 실태가 열악한바 조사관 증원과 활동비 수당 인상 등 조사관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조치 : 개정 노조법 시행 대비를 위해 '25.12.30. 조사관 50명을 증원하였고, 이와 별개로 심판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조사관 증원 등을 요구 중이며, - '24년 조사관 활동비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비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등과 협의해 왔으며, '27년에도 본예산 편성 시 조사관 활동비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결산 검토자료	2026년	○ 지적 : 2025년 노동위원회의 회의수당·안건검토비 발생액은 70억 4,200만원으로 예산편성액(61억 9,200만원)을 8억 5,000만원(13.7%) 초과하였고, 이 중 연내 집행액은 67억 3,200만원에 그쳐, 미지급금 3억 1,000만원은 2026년 예산으로 지급되었음 ○ 조치 : 연례적 예산 이·전용 및 이월 집행 최소화를 위해 당일 회의 심문·판정 동시처리, 1일 심판회의 다수 사건 처리, 타 사업 집행잔액 전용 등 자체 경비 절감 노력 중이며, - 예산당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최근 사건 증가 추이를 반영한 예산 소요가 본예산에 적정 반영되도록 노력 중에 있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7,528	7,528	0	825	8,353	8,206	109.0	0	147
2024년	8,849	8,849	0	586	9,435	9,219	104.2	20	196
2025년	8,898	8,898	0	581	9,479	9,239	103.8	40	198
2026년	9,645	9,645	40	624	10,309	5,510	57.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825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배상금 및 회의수당 부족
2024년	전용	586	사건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및 소송(패소)비용 부족
2025년	전용	581	사건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및 소송(패소)비용 부족

5. 기타 추가자료

○ (참고) 부문별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등 개요

참고 부문별 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등 개요

□ **(조정위원회)** 「노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정(調停), 중재 및 긴급조정** 업무,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

○ **(조정) 노조-사용자 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의 요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안 제시**하고 **조정수락·중지 등 결정**

※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조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 파업 등 쟁의행위 금지
중재는 노사 쌍방합의 하에 신청하며, 조정과 달리 쌍방이 반드시 중재안에 따라야 함

○ **(필수유지업무* 결정)**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은 노사협정으로 자율 체결하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여야 함

□ **(심판위원회)** 부당해고등(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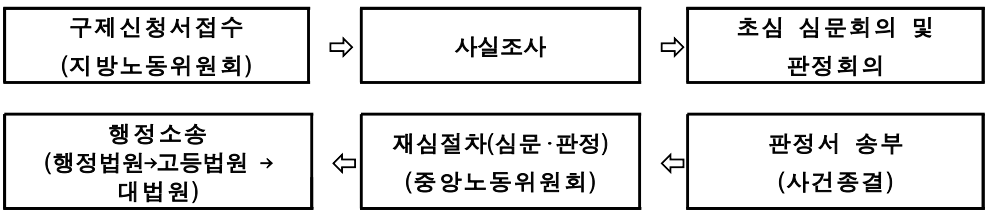
○ **(부당해고 등 구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사실조사, 심문·판정회의를 거쳐 구제*(원직복귀·배상등)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위원회를 거쳐 최고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최대 2년간 총 4회)하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고발 가능

- **(심문회의)** 노·사 당사자 출석하에 공익위원(3명)과 노·사위원(각 1명)이 참석하여 당사자에게 질문 및 논의, 증거자료 검토 등 실시

- **(판정회의)** 공익위원 3명이 각하, 구제명령, 기각 등 결정, 일반적으로 심문회의 직후 연속해 실시하나 일정상 필요한 경우 별도 진행

<판정 절차>



○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구제명령, 기각, 각하) 또는 화해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취급,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지배개입 등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 **(복수노조 관련 결정 및 심판)**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 기각, 각하 등 결정

□ **(차별시정) 비정규직 차별*** 또는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시 **심문·판정회의**를 거쳐 **시정명령 또는 각하**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학습병행) 근로자의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회의수당 일람표>

(단위: 천원)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중노위</th><th colspan="4">지노위</th></tr>
<tr><th rowspan="2">조정·중재·
필수유지·
사후조정</th><th rowspan="2">해석·이행
방법견해
제시·재심</th><th colspan="2">심판·차별
·복수노조</th><th rowspan="2">조정·중재·
필수유지·
사후조정</th><th rowspan="2">해석·이행
방법
견해제시</th><th colspan="2">심판·차별
·복수노조</th></tr>
<tr><th>공익</th><th>노·사</th><th>공익</th><th>노·사</th></tr>
<tr><td>안건검토비</td><td>180</td><td>100</td><td>60</td><td>25</td><td>150</td><td>80</td><td>50</td><td>25</td></tr>
<tr><td>(조정안 제시)</td><td>20</td><td></td><td></td><td></td><td>20</td><td></td><td></td><td></td></tr>
<tr><td>(조정안 수락시)</td><td>80</td><td></td><td></td><td></td><td>80</td><td></td><td></td><td></td></tr>
<tr><td>(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쟁점사건)</td><td></td><td></td><td>20</td><td></td><td></td><td></td><td>20</td><td></td></tr>
<tr><td>(판단요지 작성)</td><td></td><td></td><td>40</td><td></td><td></td><td></td><td>40</td><td></td></tr>
<tr><td>심문회의 생략,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회의 안건검토비</td><td></td><td></td><td></td><td>25</td><td></td><td></td><td></td><td>25</td></tr>
<tr><td></td><td colspan="8">○ 판정회의 개최 전 의견 제시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에게 지급</td></tr>
<tr><td>이행강제금 부과회의 및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 고발결정회의 안건검토비</td><td></td><td></td><td>30</td><td>15</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8">○ 심판사건과 구분하여 별도로 구성된 심판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지급
○ 노사위원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회의에 서면의견 제출시 지급
※ 안건검토비 1일 지급액 상한: 공익위원 6만원(노사위원 3만원)</td></tr>
<tr><td>회의수당</td><td colspan="8">○ 2시간미만 13만원, 2시간이상 18만원</td></tr>
<tr><td>추가회의수당</td><td colspan="8">○ 회의시간 4시간 초과 시 초과 1시간당 추가회의수당 2만원 지급(일 20만원 한도)
⇒ 회의수당과 추가회의수당을 합해서 1일 최고 38만원까지 지급
- 초과시간 중 1시간 미만에 대하여는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td></tr>
<tr><td>원격지소요비용</td><td colspan="8">○ 원격지에서 법령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의 운임 지급</td></tr>
<tr><td>준상근조정위원
사례비(1일, 지역 차등)</td><td>150
250
300</td><td></td><td></td><td></td><td>150
250
300</td><td></td><td></td><td></td></tr>
<tr><td>분쟁조정수당
(조정위원 2인 이하)</td><td>100</td><td></td><td></td><td></td><td>100</td><td></td><td></td><td></td></tr>
<tr><td>필수유지 업무분야 외부 전문가 자문료</td><td colspan="8">○ 회의참석 및 서면자문 각 10만원 (중복지급 가능)</td></tr>
<tr><td>업무 관련 간담회·워크숍·
전원회의 등 참석수당</td><td colspan="8">○ 회의시간 2시간 미만 7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td></tr>
</table>

※ 회의수당 및 안건검토비 집행지침 ('22.1.3.)

사 업 명
(104) 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39	310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노동위원회운영	무료법률서비스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무료법률서비스지원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중앙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무료법률서비스	1,000	1,177	1,177	1,579	1,249	72	6.1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00	1,271	1,271	0	0	1,177	1,177	887	1,249
·무료법률서비스지원	1,000	1,271	1,271	0	0	1,177	1,177	887	1,249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00	1,271	1,271	0	0	1,177	1,177	887	1,249
· 일반수용비(210-01)	1,000	1,271	1,271	0	0	1,177	1,177	887	1,24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무료법률서비스지원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권리구제 대리인(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무료 지원하여 권익보호 및 사회안정 도모
사업내용	취약계층(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권리구제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을 선임하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추진경위	○ ‘06.10.12.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07.05.17. 노동위원회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 ‘15.01.20. 노동위원회법 개정 ○ ‘15.07.20.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125	1,050	1,000	1,177	1,249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취약계층 근로자(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177	1,249	6.1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1,177	1,249	6.1

○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2026년) 1,177 → (2027년 정부안) 1,249백만원, +6.1%

- (설명)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물량 증가로, '26년 대비 +6.1% 증액 요구
- (산출) 1,249백만원(3,017×414천원)
  * (물량) 부당해고 등 사건 수 및 무료법률서비스 수요 고려
  · 3,017건('25년 물량 3,037건 고려) × 414천원('25년 결산 기준 평균 보수단가 고려)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2,998건 선임(월평균 250건 선임)
2024	- 2,938건 선임(월평균 245건 선임)
2025	- 3,037건 선임(월평균 253건 선임)
2026	- '26.7월 현재 2,482건 선임(월평균 355건 선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당해고 구제(또는 차별시정)신청서 접수	
⇓	
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	
근로자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소득 확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	
공인노무사·변호사 선정 및 통보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결산 시정요구	2024년	○ 지적 :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노동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조치 : '25년 불용 예상 재원 합계 271백만원을 무료법률서비스 예산으로 전용하여 '25.12월 중순까지 소요액 전액 지급 - '26년도 예산, '25년도 본예산 대비 177백만원 증액된 1,177백만원 편성
국정감사	2025년	○ 지적 : ①예산 부족 사유로 대리인 보수가 지연 지급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우재준, 김소희 의원), ②보수 단가 관련하여 보수 산정 항목 중 회의참석수당에 교통비 등 실비가 미반영되어 있고, 시장가격 150만원 내지 300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바(평균 40만원, 최대 70만원), 인정률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소요액을 제출할 것(김소희 의원) ○ 조치 : '27년도 예산 기준단가 인상분(700천원) 반영 및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매년 100천원)하여 예산 편성 예정
예산 검토자료	2026년	○ 지적 : 상임위원 5명*은 유사 업무 대리인 및 시장단가 대비 낮은 보수(약 40만원)로 유능한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참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 보수단가를 70만원으로 증액 의견 제시 ○ 조치 : '27년도 예산 기준단가 인상분(700천원) 반영 및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매년 100천원)하여 예산 편성 예정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125	1,125	0	48	1,173	1,173	104.3	0	0
2024년	1,050	1,050	0	126	1,176	1,176	112.0	0	0
2025년	1,000	1,000	0	271	1,271	1,271	100.0	0	0
2026년	1,177	1,177	0	0	1,177	887	75.3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48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건수 증가에 따른 선임비용 부족
2024년	전용	126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건수 증가에 따른 선임비용 부족
2025년	전용	271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건수 증가에 따른 선임비용 부족

5. 기타 추가자료

○ (참고 1) 무료법률서비스 지원현황

○ (참고 2)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참고1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현황**

□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건수

연도	사건수 (전년대비 증감)	권리구제대리인		비고
		신청 건수	선임 건수	
'21	15,594	2,298	1,882	○ 노무사1,660 / 변호사 222
'22	16,098 (↑3.2%)	3,217	2,715	○ 노무사2,365 / 변호사 350
'23	19,554 (↑21.5%)	3,539	3,026	○ 노무사2,669 / 변호사 355
'24	22,360 (↑14.4%)	3,513	2,955	○ 노무사2,614 / 변호사 341
'25 (전년동기)	22,715 (↑9.9%) (20,670)	3,714	3,069	○ 노무사2,773 / 변호사 296

※ '25년도 통계의 경우 사건 수는 11월말 기준, 대리인 수는 12월말 기준

□ 권리구제대리인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 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본예산 (A)	추경 등 (B)	전용 (C)	합계 (A+B+C)		
'21	989	-	-	989	706 (71.4)	
'22	1,125	△49	-	1,076	1,058 (98.3)	○ 추경 감액(△49) ○ (불용) 집행잔액 18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 월평균 임금 250 → 300만원 미만 ○ 평균 집행 단가 389천원
'23	1,125	-	48	1,173	1,173 (100.0)	○ (전용) 노동위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 평균 집행 단가 387천원
'24	1,050	-	126	1,176	1,176 (100.0)	○ (전용) 본부 기관운영비 총액 일반수용비 ○ 평균 집행 단가 396천원
'25	1,000	-	271	1,271	1,271 (100.0)	○ (전용) 중노위 및 노동부 일반수용비 등 ○ 평균 집행 단가 414천원

참고2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을 선임하여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근거)**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노동위원회법**
>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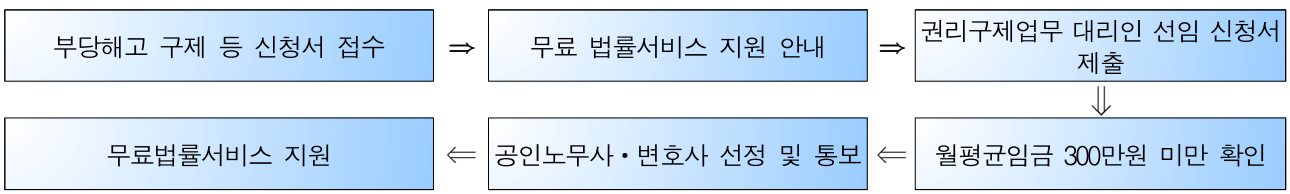
□ **(대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근로자(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 **(내용)** 법률상담,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

□ **(제한)** 근로자 1명당 최근 1년간 2건으로 제한

* 한정된 예산을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지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예방(초심과 재심 사건은 동일 건(1건)으로 간주)

□ **(지원체계)**



□ **(신청방법)**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사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사 업 명
(105)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7039-5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39	502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노동위원회운영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노동위원회정보화 운영(정보화)	4,603	2,959	2,959	3,428	2,377	△582	△19.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7,276	7,276	4,603	2,648	25	2,959	5,606	575	2,377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539	539	537	0	2	665	665	332	957
·원격영상심문회의 시스템 구축	506	506	484	0	23	506	506	0	354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6,231	6,231	3,582	2,648	0	1,788	4,436	242	1,066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7,276	7,276	4,603	2,648	25	2,959	5,606	575	2,377
·일반수용비(210-01)	15	60	59	0	1	15	22	9	1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	9	8	0	1	4	4	2	4
·임차료(210-07)	50	0	0	0	0	-	-	-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70	470	470	0	0	646	639	319	938
·일반연구비(260-01)	4,279	4,279	3,189	1,090	-	1,182	2,271	0	704
·자산취득비(430-01)	2,458	2,458	877	1,558	23	1,112	2,669	242	71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목적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대해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통한 신속한 장애해결 및 사용자 요구사항 즉각 반영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도모
사업내용	개발 SW 및 상용 솔루션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보안 상태 점검 및 보안 취약점 제거 등

(1-2)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노동위원회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성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측의 군리구제를 위한 시간·공간적 제약 해소
사업내용	전국 노동위원회에 영상회의시스템을 1식 이상 설치하여 全 노동위원회 간 다자간 원격 회의(MCU)가 가능하도록 추진

(1-3)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사업목적	노동분쟁 사건이 증가·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행정 처리하기 위한 차세대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현
사업내용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 후 노동위원회 내부 업무시스템 고도화, AI 기반 업무 구조화, 디지털 플랫폼 기반 강화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추진경위	○ 노사마루시스템 등 구축('02년) ○ 노사마루시스템 재구축('05년) ○ 전자심판위원회 시스템 등 구축('06년) ○ 노사마루시스템 추가업무 개발('07년) ○ 디지털회의녹음 및 전자사건철관리시스템 구축('08년) ○ 복수노조업무 전산처리 프로그램 개발('11년) ○ 정보시스템 보강 및 보안솔루션 도입('12년) ○ 판정서 품질 향상을 위한 확정절차 개선('15년) ○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재구축('16년) ○ 도로명주소 연계 및 위원노사마루 등 개선('17년) ○ 관리자용 업무처리현황 및 질적 분석 자료 입력 등 개선('18년) ○ 노사마루시스템 전면개편 ('19년) ○ 위원노사마루시스템 기능개선('20년) ○ 홈페이지 망분리·기능개선 및 이행강제금 데이터 이관('21년) ○ 노후장비교체 및 구축사업('22년)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통·폐합 및 내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 ('23년) ○ 디지털노동위원회 ISP 및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구축 등('24년) ○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디지털노동위원회 1차 구축 및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구축 등('25년) ○ 디지털노동위원회 2차 구축 및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구축 등('26년)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2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453	1,187	7,276	2,959	2,37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업주,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959	2,377	△582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665	957	292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	506	354	△152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1,788	1,066	△722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26년) 665백만원 → ('27년 정부안) 957백만원, +43.9%**

- (설명) '디지털노동위원회 1차 구축 사업'으로 추가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AI 담당 추가 인력 필요성을 감안, '26년 대비 +43.9% 증액

- (산출)

  * (일반수용비) 15백만원('26년)→ 15백만원('27년)

  * (공공요금 및 제세) 4백만원('26년)→ 4백만원('27년)

  * (시설장비유지비) 646백만원('26년)→ 938백만원('27년)

○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 **('26년) 506백만원 → ('27년 정부안) 354백만원, -30.0%**

- (산출)

  * (자산취득비) 506백만원('26년)→ 354백만원('27년)

○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26년) 1,788백만원 → ('27년 정부안) 1,066백만원, -40.3%**

- (산출)

  * (일반연구비) 1,182백만원('26년)→ 704백만원('27년)

  * (자산취득비) 606백만원('26년)→ 362백만원('27년)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 1,303백만원(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 지출총액)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통·폐합 및 내부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노동위원회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2개소)
2024년	○ 1,456백만원(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 지출총액) - 노동위원회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확대구축(3개소) - 디지털노동위원회 정보화전략계획수립
2025년	○ 4,603백만원(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 지출총액) -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구축(4개소) - 디지털노동위원회 1차 구축
2026년	○ 575백만원(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 지출총액, '26.7월말 기준) -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디지털노동위원회 2차 구축 관련 상용sw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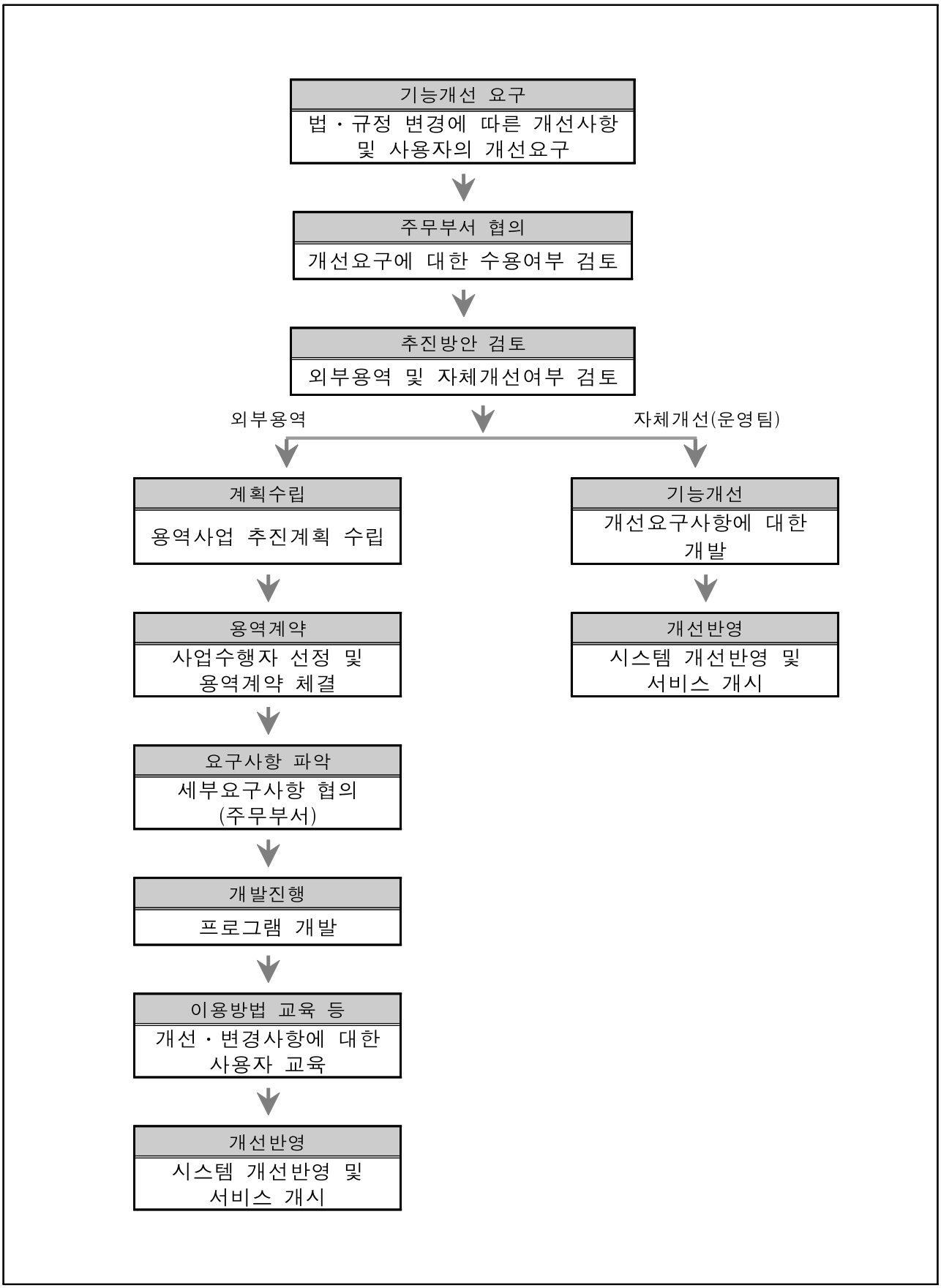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등을 통해 내·외부 고객 서비스 강화와 조정·심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능개선 요구
법·규정 변경에 따른 개선사항 및 사용자의 개선요구
주무부서 협의
개선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검토
추진방안 검토
외부용역 및 자체개선여부 검토
외부용역
자체개선(운영팀)
계획수립
용역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계약
사업수행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요구사항 파악
세부요구사항 협의 (주무부서)
개발진행
프로그램 개발
이용방법 교육 등
개선·변경사항에 대한 사용자 교육
개선반영
시스템 개선반영 및 서비스 개시
기능개선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개발
개선반영
시스템 개선반영 및 서비스 개시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453	1,453	187	0	1,640	1,303	89.7	311	26
2024년	1,187	1,187	311	0	1,498	1,456	122.7	0	41
2025년	7,276	7,276	0	0	7,276	4,603	63.3	2,648	25
2026년	2,959	2,959	2,648	0	5,606	3,277	110.7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5년	이월	2,64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위임발주 계약기간 연장('25.12.12→'26.6.11.) 및 디지털노동위원회 1차 사업 잔금 30% 이월 발생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0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7040-30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	일반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40	307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운영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운영	3,800	4,670	4,670	6,672	6,672	2,002	42.8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3,905	3,905	3,800	0	105	4,670	4,670	2,595	6,67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3,905	3,905	3,800	0	105	4,670	4,670	2,595	6,67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3,905	3,905	3,800	0	105	4,670	4,670	2,595	6,672
·상용임금(110-03)	635	635	579	0	57	688	688	364	730
·일반수용비(210-01)	1,015	1,001	978	0	23	1,382	1,377	653	3,260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1	501	491	0	10	509	509	309	552
·특근매식비(210-05)	6	14	14	0	0	6	11	8	8
·임차료(210-07)	999	1,000	992	0	8	1,056	1,056	677	1,169
·유류비(210-08)	10	12	11	0	0	10	10	4	10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	27	27	0	0	27	27	16	27
·복리후생비(210-12)	5	5	5	0	0	5	5	2	6
·기타운영비(210-16)	32	35	35	0	0	32	32	17	32
·국내여비(220-01)	36	22	22	0	0	36	29	9	36
·국외여비(220-02)	54	67	67	0	0	54	60	58	64
·사업추진비(240-01)	159	159	158	0	1	159	159	90	159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관서업무추진비(240-02)	97	97	97	0	0	97	97	33	97
·직책수행경비(250-02)	72	72	69	0	3	72	72	42	72
·일반연구비(260-01)	100	27	26	0	1	100	100	0	100
·정책연구비(260-02)	100	173	173	0	0	100	100	30	100
·고용부담금(320-09)	29	29	27	0	2	39	39	12	155
·국제부담금(340-02)	18	18	18	0	0	18	18	18	18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0	0	76	76	49	76
·무형자산(440-00)	0	0	0	0	0	204	204	204	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사업목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사업내용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요 고용·노동 정책과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현안 관련 논의 및 사회적 대화 회의체 활성화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제17864호, '21.1.1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50호, '18.9.11.)
추진경위	○ 추진경위 - '97년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지원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98.1.15 노사정 3자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 '98년에는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99년에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체제를 제도화(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06.0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합의 - '07.01.26.『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07.4.27 시행) - '09.02.2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전문 및 64개 항목) 체결 - '11.06.10.「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중소

	기업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3.07.17.「청년고용증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4.12.23.「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5.09.15.「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7.09.13.「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권고문」 채택 - ‘17.11.06.「노동시장 외주화와 격차 해소방안」 채택 - ‘18.06.12.『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면개정(‘18.9.13. 시행) - ‘18.08.21.「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9.02.18.「디지철 전한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 채택 - ‘19.02.19.「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9.03.05.「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9.05.03.「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 ‘19.06.03.「사람중심 스마트공장 협약식」 노사정 업무협약 체결 - ’19.08.30.「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발표 - ‘20.02.20.「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03.02.「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03.05.「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발표 - ‘20.03.19.「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04.27.「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0.05.13.「플랫폼 경제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합의문」 발표 - ‘20.07.28.「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합의문」 발표 - ‘20.08.18.「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09.08.「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0.10.08.「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0.10.16.「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의결 - ‘20.10.27.「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 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의결 - ‘20.10.29.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안」 채택 - ‘20.11.18.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채택 - ‘21.11.05.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발표 - ‘22.06.09. 「가사·아이돌봄 산업생태계 조성가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2.06.10.「대리운전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대리운전 종사자 보호 확보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3.03.15.「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4.02.06.「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 채택 - ‘24.10.22. 공무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4.10.28. 교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5.05.08.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 ’25.11.18. 인공지능과 노동(우리사회가 답해야 할 12가지 질문) 녹서 발간 - ‘26.03.19.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국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사회적 대화 2.0‘)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해당없음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670	6,672	2,00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4,670	6,672	2,002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2026년) 4,670 → (2027년 정부안) 6,672백만원, 42.8%**

(1) 회의체 등 운영: ('26) 1,777백만원→ ('27요구) 3,665백만원, +106.2%
- 공론화 특별위원회·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 활성화 및 연구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국제행사 등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지원 예산 등 고려하여 106.2% 증액 요구

-(산출)
① 일반수용비 3,102백만원(전년대비 +1,878백만원)
▲ 본위원회 운영 183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및 자문료 154백만원 = 12,800,000원*12월
· 참석수당 16백만원 = 13명*200,000원*6회
· 안건검토비 8백만원 = 13명*100,000원*6회
· 운영비 6백만원 = 1,000,000원*6회
▲ 운영위원회 운영 7백만원(전년대비 △3백만원)
· 참석수당 4백만원 = 3명*200,000원*6회
· 원고료 2백만원 = 3명*100,000원*6회
· 운영비 1백만원 = 200,000원*6회
▲ 이행점검위원회 운영 14백만원(전년동)
· 참석수당 6백만원 = 7명*200,000원*4회
· 안건검토비 3백만원 = 7명*100,000원*4회
· 운영비 6백만원 = 1,500,000원*4회
▲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운영 11백만원(전년대비 △3백만원)
· 참석수당 6백만원 = 3명*200,000원*10회
· 안건검토비 3백만원 = 3명*100,000원*10회
· 운영비 2백만원 = 200,000원*10회
▲ 일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41백만원(전년대비 +6백만원)
· 참석수당 32백만원 = 10명*200,000원*16회
· 안건검토비 2백만원 = 1명*100,000원*16회
· 원고료 3백만원 = 1명*200,000원*16회
· 운영비 4백만원 = 4,000,000원*1개
▲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82백만원(신설)
· 참석수당 64백만원 = 10명*200,000원*16회*2개
· 안건검토비 3백만원 = 1명*100,000원*16회*2개
· 원고료 6백만원 = 1명*200,000원*16회*2개
· 운영비 8백만원 = 4,000,000원*2개
▲ 전문가 자문회의 12백만원(신설)
· 참석수당 5백만원 = 8명*200,000원*3회
· 안건검토비 2백만원 = 6명*100,000원*3회
· 원고료 4백만원 = 6명*200,000원*3회

· 운영비 2백만원 = 2,000,000원
▲ 특별위원회 운영 20백만원(전년대비 △18백만원)
· 참석수당 16백만원 = 10명*200,000원*8회
· 안건검토비 1백만원 = 1명*100,000원*8회
· 원고료 3백만원 = 2명*200,000원*8회
▲ 공론화 특별위원회 1,500백만원(신설)
· 연구진 인건비 115백만원 = 5명*3,840,000원*6개월
· 운영인력 인건비 137백만원 = 32명*427,500원*10회
· 운영경비 930백만원 = 155,000,000원*6개월
· 공개포럼 및 토론회 270백만원 = 45,000,000원*6회
· 온라인 의견수렴 50백만원 = 50,000,000원*1회
▲ 의제별위원회 운영 214백만원(전년대비 +76백만원)
· 참석수당 160백만원 = 10명*200,000원*16회*5개
· 안건검토비 8백만원 = 1명*100,000원*16회*5개
· 원고료 32백만원 = 2명*200,000원*16회*5개
· 운영비 14백만원 = 2,800,000원*5개
▲ 업종별위원회 운영 85백만원(전년대비 △6백만원)
· 참석수당 64백만원 = 10명*200,000원*16회*2개
· 안건검토비 3백만원 = 1명*100,000원*16회*2개
· 원고료 13백만원 = 2명*200,000원*16회*2개
· 운영비 5백만원 = 2,500,000원*2개
▲ 계층별위원회 운영 170백만원(전년대비 +6백만원)
· 참석수당 128백만원 = 10명*200,000원*16회*4개
· 안건검토비 6백만원 = 1명*100,000원*16회*4개
· 원고료 26백만원 = 2명*200,000원*16회*4개
· 운영비 10백만원 = 2,500,000원*4개
▲ 연구회 운영 102백만원(전년대비 +83백만원)
· 참석수당 96백만원 = 10명*200,000원*12회*4개
· 원고료 2백만원 = 2명*200,000원*1회*4개
· 운영비 4백만원 = 1,000,000원*4개
▲ 토론회 운영 20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 참석수당 4백만원 = 10명*200,000원*2회
· 안건검토비 0백만원 = 1명*100,000원*2회
· 원고료 3백만원 = 7명*200,000원*2회
· 운영비 13백만원 = 6,400,000원*2회
▲ 노사정포럼, 워크샵 등 15백만원(전년동)
· 참석수당 4백만원 = 10명*200,000원*2회
· 원고료 2백만원 = 4명*200,000원*2회

· 운영비 10백만원 = 4,800,000원*2회

▲ 국제협력 관련 76백만원(전년동)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서울이사회 등 66백만원

· 영문 브로셔 발간 등 10백만원

▲ 대외협력활동 관련 310백만원(전년동)

· 사회적대화 제작 36백만원 = 17,900,000원*2회

· 소식지 발간 6백만원 = 310,000원*20회

· 대외협력활동 등 지원 17백만원 = 1,656,000원*10회

· 공론화 특별위원회 홍보 6백만원

· 디지털매체 홍보 관련 6백만원

· 위원회 운영 대국민 광고홍보비 240백만원= 24,000,000원*10회

▲ 지역사회적대화 활성화 지원사업 240백만원(신설)

· 지역사회적대화 지원TF 운영 지원 160백만원 = 20,000,000원*8개

· 지역특성화 업종 발굴 및 특화사업 지원 사업비(광역) 20백만원 = 10,000,000원*2개

· 지역특성화 업종 발굴 및 특화사업 지원 사업비(기초) 20백만원 = 5,000,000원*4개

· 지역공론화를 위한 간담회 등 40백만원 = 2,000,000원*20회

② 공공요금 및 제세 5백만원(전년동)

▲ 우편 발송 요금 5백만원(450,000원*12월)

③ 임차료 72백만원(전년동)

▲ 외부 회의장 임차 40백만원(=12회*3,000,000원)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개최 관련 회의장 임차 20백만원(=1회*20,000,000원)

▲ 회의장비 등 임차 16백만원(=13회*1,200,000원)

④ 국내여비 10백만원(전년동)

▲ 참석위원 여비 10백만원(=80,000원*10회*12월)

⑤ 국외여비 64백만원(전년대비 +10백만원)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15백만원

▲ 국제노동기구(ILO) 참석 18백만원

▲ 국제노사정기구 서울이사회 초청비용 16백만원

▲ 주요의제 및 정책관련 공무 국외 출장 15백만원

⑥ 사업추진비 159백만원(전년동)

▲ 공식행사 경비 25백만원(=5,000,000원*5회)

▲ 공식회의 경비 122백만원(=17명*30,000원*20회*12월)

▲ 해외출장 지원 경비 12백만원(=3,950,000원*3회)

⑦ 관서업무추진비 54백만원(전년동)

▲ 유관기관 업무협의 36백만원(=5명*30,000원*20회*12월)

▲ 위원장등 대내외 업무협의 18백만원(=5명*30,000원*10회*12월)

⑧ 일반연구비 100백만원(전년동)

▲ 의제개발 등 연구용역 100백만원(=50백만원*2회)

⑨ 정책연구비 100백만원(전년동)

▲ 의제개발 등 정책연구용역 100백만원(=50백만원*2회)

<연구용역 진행 절차>

용역발주	➡	연구수행	➡	결과보고서 작성	➡	검수
경사노위		대학교, 학회, 연구원 등		연구 수행기관		경사노위

(2) 사무처 운영: ('26) 651백만원→ ('27요구) 654백만원, +0.4%

-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증액 외 전년동 요구

- (산출)

① 일반수용비 158백만원(전년동)

▲ 소모품 등 구매비용 73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 토너 구입비 20백만원 = 5,100,000원*4회

· 사무전산용품 및 비품 구입비 18백만원 = 1,500,000원*12월

· 생수 등 구입비 16백만원 = 1,300,000원*12월

· 기념품 구입비 15백만원 = 3,000,000원*5회

· 업무수첩 등 제작구입비 4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43백만원(전년대비 △16백만원)

· 데이터베이스이용료 등 5백만원

· 물품관리 용역대금 3백만원

· 기타사용료 3백만원

· 홈페이지 관리 32백만원(전년대비 △16백만원)

▲ 간행물 등 구입비 18백만원(전년동)

· 신문 등 간행물 구입 18백만원 = 1,500,000원*12월

▲ 유인물 제작 21백만원(전년대비 +15백만원)

· 내부자료 유인 2백만원 = 500,000원*4회

· 외부제출자료 유인 4백만원 = 1,000,000원*4회

· 활동보고서 유인 15백만원 = 15,000,000원*1회(신설)

▲ 교육훈련경비 3백만원(=400,000원*8회)(전년동)

② 공공요금 및 제세 44백만원(전년동)

▲ 전화 통신 인터넷 요금 40백만원(전년동)

· 전화요금 30백만원 = 2,550,000원*12월

· 개인통신비 지원 8백만원 = 635,000원*12월

· 국가정보통신, 인터넷 사용요금 2백만원 = 129,000원*12월

▲ 케이블 TV 수신료 2백만원(=150,000원*12월)(전년동)

▲ 무인경비서비스요금 2백만원(=132,000원*12월)(전년동)

▲ 기타 보험료 세금 등 1백만원(전년동)

③ 특근매식비 8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④ 임차료 134백만원(전년동)

▲ 관용차량 임차료 53백만원(=4,450,000원*12월)(전년동)
▲ 전산사무용품 임차료 80백만원(전년대비 +21백만원)
· 컴퓨터 등 임차 52백만원 = 41대*106,000원*12월
· 모니터 등 임차 1백만원 = 3대*22,000원*12월
· 개인프린터 등 임차 8백만원 = 11대*60,500원*12월
· 공기청정기 및 커피머신 등 임차 7백만원 = 569,500원*12월
· 복사기 임차 12백만원 = 990,000원*12월

⑤ 유류비 10백만원(전년동)
▲ 업무용차량 유류비 10백만원(=275,000원*3대*12월)

⑥ 시설장비유지비 27백만원(전년동)
▲ 네트워크유지보수료 15백만원(=1,261,370원*12월)(전년동)
▲ 업무시스템 유지보수료 6백만원(전년동)
· 백신프로그램 4백만원
· 기타업무시스템 2백만원
▲ 관용차량 유지보수료 4백만원(=300,000원*12월)(전년동)
▲ 기타유지보수료 3백만원(전년동)

⑦ 복리후생비 6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 맞춤형복지 6백만원(=600,000원*10명)

⑧ 기타운영비 32백만원(전년동)
▲ 축조의금 및 격려금 등 12백만원(=1,000,000원*12월)
▲ 비서실 운영비 11백만원(=475,000원*2개*12월)
▲ 과운영비 9백만원(=720,000원*12월)

⑨ 국내여비 26백만원(전년동)
▲ 직원 근무지내 출장 9백만원(=20,000원*36명*12월)
▲ 직원 근무지외 출장 17백만원(50,000원*29명*12월)

⑩ 관서업무추진비 44백만원(전년동)
▲ 내부 간담회 등 개최경비 38백만원(=8명*30,000원*13회*12월)
▲ 직원 및 위원 워크숍 등 6백만원(=41명*30,000원*5회)

⑪ 직책수행경비: 72백만원(전년동)
▲ 장관급 24백만원
▲ 차관급 16백만원
▲ 2급보조기관 11백만원
▲ 4급보조기관 21백만원

⑫ 국제부담금: 18백만원(전년동)
▲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분담금 12,000유로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개요
- 설립연도: 1999년(사무처: 벨기에)

- 총회: 매년 9월경 개최(최고의결기관)
- 설립목적: 전세계 경제·사회 주체 간 대화 촉진 및 노사정 기구 설립지원
- 회원국: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70여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초 가입일: '06년 3월

○ 분담금: 12,000유로(규정: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정관 14조 2항)
- 정회원국의 매년 분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15년부터 회원국의 기여도(한국은 이사국 신분)에 따라 그룹별로 분담금 납부를 요청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14년 총회 의결사항-GDP대비 국가그룹별 분담금 확대)** '중요 그룹'(최소 €12,000), '중간 그룹'(최소 €5,000), '일반 그룹'(€2,500)으로 분류, **한국은 중요 그룹으로 분류되어 '17년부터 분담금을 증액 납부하였음**

○ 기타
- '09년~현재까지 아시아 이사국으로 활동 중
  * 이사국 현황 : 17개국(아프리카(6), 중남미(3), 아시아(3), 유럽(5))
- '15.9월 아시아 대륙의 사무부총장 국가로 선출(임기: 2년, 현재 연임)

⑬ 자산취득비: 76백만원(전년동)

▲ 노후서버 교체 40백만원(신규)

▲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36백만원

(3) 청사관리비: ('26) 1,514백만원→ ('27요구) 1,467백만원, △3.1%

- 미반영 청사임차료·관리비 증액 요구

- (산출)

▲청사임차료(210-07) 964백만원(88백만원*11월)(전년대비 +113백만원)

▲청사관리비(210-02) 477백만원(40백만원*12월)(전년대비 +43백만원)

▲청사전기료(210-02) 26백만원(2.2백만원*12월)(전년동)

(4) 인건비: ('26) 727→ ('27요구) 885백만원, +21.7%

- 상임위원 1명, 공무직근로자 9명의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처우개선분 등 반영하여 적정수준 편성

- (산출)

▲상용임금 730백만원 ▲고용부담금 155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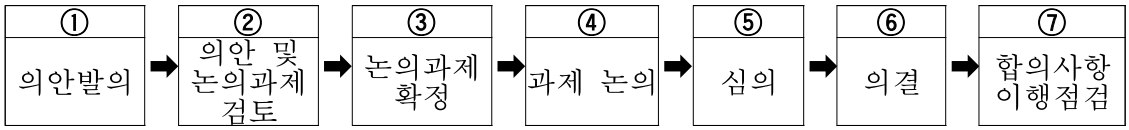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본위원회 위원 등, ② 운영위원회, ③ 본위원회, ④ 의제별·업종별위원회, ⑤ 운영위원회, ⑥ 본위원회, ⑦ 이행점검위원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	'23회계연도	○ 지적: 명백한 별도 용역 제공 없이 수행이나 자문 등 일상 업무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에게 국가업무 조력자사례금을 지급함 ○ 조치: 기 자문위원 해촉('24.7.31.) 이후 자문위원 미채용, 시정요구 이후 자문위원에게 전문가자문료 등 지급사례 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291	3,291	0	0	3,291	3,157	95.9	0	135
2024년	3,530	3,530	0	0	3,530	3,436	97.3	0	94
2025년	3,905	3,905	0	0	3,905	3,800	97.3	0	105
2026년	4,670	4,670	0	0	4,670	2,595	55.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76	노동시장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자문단, 연구회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용역 수요가 증가하여 재원마련을 위해 일반수용비→일반연구비로 75백만원 자체 전용, 정부안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못한 대변인 직위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부족 예산을 일반수용비에서 1백만원 자체 전용
2024년	-	-	특이사항 없음
2025년	-	-	특이사항 없음
2026년	-	-	특이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07) 공무직위원회 운영(7050-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50	301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공무직위원회운영	공무직위원회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Y	N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0	0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공무직위원회 운영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 TF)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공무직위원회운영	-	-	-	5,364	2,290	2,290	100.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	-	-	-	-	-	-	-	2,290
공무직위원회운영	-	-	-	-	-	-	-	-	2,29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	-	-	-	-	-	-	-	2,290
· 기타직보수(110-02)	-	-	-	-	-	-	-	-	154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33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	-	49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18
· 임차료(210-07)	-	-	-	-	-	-	-	-	7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12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700
· 기타운영비(210-16)	-	-	-	-	-	-	-	-	16
· 국내여비(220-01)	-	-	-	-	-	-	-	-	63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50
· 직책수행경비(250-02)	-	-	-	-	-	-	-	-	18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600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2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위원회 운영)「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6.9.18. 시행)」에 따른 공무직위원회(본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 및 기획단의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수범사례 확산·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공공부문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6.9.18. 시행)
추진경위	○ ('25.12월) 대통령 지시사항 -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공부문 실태 파악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시 ○ ('26.3월)「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6.9.18. 시행) ○ ('26.3월) 공무직위원회 운영방안 등 논의를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 구성·운영 ○ ('26.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 ○ ('26.9월) 공무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7년 신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해당없음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사업 수혜자 : 공공부문의 공무직·기간제·파견근로자 및 도급·위탁사업주에 고용된 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공무직위원회 운영	-	2,290	2,290

○ (운영지원) 다층적 구조*인 공무직위원회 회의체와 공무직위원회 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①공무직위원회 - ②실무위원회 - ③발전협의회 - ④분야별협의회(6개 분야 예정)

- (인건비) 전문임기제 공무원 보수 154백만원
- (운영비) 505백만원

* 협의체 참석수당 254백만원, 회의자료 유인 46백만원, 기관운영 38백만원, 공공요금 49백만원, 특근매식비 18백만원, 회의장임차료 72백만원, 시설유지보수 12백만원, 기타운영비 16백만원

- (국내여비) 협의체 및 간담회 등 참석여비 63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18백만원
- (사업추진비) 협의체, 간담회 등 업무추진 50백만원
- (자산취득) 노후장비 교체, 필요장비 구매 등 200백만원

○ (협의체계 지원) 공무직노동자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①협의체 운영지원 등 협의기반 조성 →②처우개선 수범사례 확산→③초기업교섭 확산지원」의 "3단계" 지원사업 추진

- (일반용역비) 700백만원

* ▲ 공무직 등 근로조건 처우개선 협의체 운영 지원사업 400백만원, ▲ 공무직 등 근로조건 처우개선 모델 확산 지원사업 100백만원, ▲ 초기업 단위별 교섭 확산 지원사업 100백만원, ▲ 공무직노동자 등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100백만원

○ (연구용역) 법정 실태조사 + 분야별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 논의를 위한 공무직 전반, 직종·분야별 구체적 실태·연구 등 추진

- (일반연구비) 600백만원

* ▲ 공무직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200백만원, ▲ 공무직 등 인사규정, 임금·직무·직급체계, 임금 및 수당 격차 해소방안 등 종합실태조사 100백만원, ▲ 분야별(6개분야)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 등 3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2024	-
2025	-
2026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3.17.) - 공무직위원회 운영방안 등 논의를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 구성·운영(~'26.9월) - 공무직위원회 출범('26.9.18.)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공공부문 격차 해소)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공무직간 차별적 처우 문제를 해소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의 질 개선 → 공공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 (노정협의 체계 안정화)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노정협의 요구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틀로서 안정적 논의, 협의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직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지원**

운영계획 수립	공무직위원회 *노동계,관계부처,전문가 참여
⇩	
운영비 집행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처우개선 지원사업(일반용역비)**

사업계획 수립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분야별협의회
⇩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 선정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용역 수행	산학협력단, 노무사회, 노동연구원 등
⇩	
실적 등 결과보고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일반용역비)

사업계획 수립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 선정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용역 수행	전산시스템 관련 민간업체
⇩	
실적 등 결과보고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연구용역(연구용역비)

사업계획 수립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분야별협의회
⇩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 선정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연구)용역 수행	노동연구원, 학계 등
⇩	
실적 등 결과보고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분야별협의회 ↓ 공무직위원회 *노동계,관계부처,전문가 참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08) 고객상담센터인건비(7902-1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900	7902	101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고객상담센터인건비	고객상담센터인건비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객상담센터인건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객상담센터인건비	3,802	4,064	4,064	4,055	4,055	△9	△0.22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97	3,807	3,802	-	5	4,064	4,064	2,397	4,055
고객상담센터인건비	3,797	3,807	3,802	-	5	4,064	4,064	2,397	4,05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797	3,807	3,802	-	5	4,064	4,064	2,397	4,055
·보수(110-01)	3,767	3,799	3,794	-	5	4,031	4,031	2,397	4,023
·연가보상비(110-05)	30	8	8	-	-	33	33	-	3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고객상담센터인건비

사업목적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국민에게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
사업내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table>
<tr><td>사업근거</td><td>①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573호)

제2조(소속기관)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52호)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1과 같고, ...후략...
[별표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table>
<tr><td>구분</td><td>소속책임운영기관</td><td>중앙책임운영기관</td></tr>
<tr><td colspan="3">… 중략 …</td></tr>
<tr><td>기타 유형의 기관</td><td>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td><td>특허청</td></tr>
</table>
</td></tr>
<tr><td>추진경위</td><td>- ‘03.11.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계획 확정
- ’03.12.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단』 발족
- ‘04.08. 종합상담센터 개소
- ’04.12. 종합상담센터 직제 마련
- ‘10.07. 직제 개편(종합상담센터 → 고객상담센터)
- ’12.12. 고객상담센터 이전(경기도 안양 → 울산)
- ‘16.03.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지정
- ’21.01. 민간위탁콜센터(천안·안양·광주) 직접 운영 전환</td></tr>
</table>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8월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3,777	3,814	3,797	4,064	4,05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전 국민(주로 근로자 및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064	4,055	△9
고객상담센터인건비	4,064	4,055	△9

○ 고객상담센터인건비 **(2026년) 4,064 → (2027년 정부안) 4,055백만원, △0.22%**

- (설명) 고객상담센터 공무원 59명* 인건비
  * 고객상담센터 공무원 기준 정원

- (산출)
  - 보수(110-01): (2026) 4,031백만원 → (2027) 4,023백만원(68,186천원×59명, △8백만원)
  - 연가보상비(110-05): (2026) 33백만원 → (2027) 32백만원(549천원×59명, △1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전화상담 552만건, 인터넷상담 16만건 처리
2024년	전화상담 550만건, 인터넷상담 13만건, 채팅상담 5.7만건 처리('24. 8. 1. 개시)
2025년	전화상담 537만건, 인터넷상담 17만건, 채팅상담 14.5만건 처리
2026년	전화상담 46만건, 인터넷상담 9만건, 채팅상담 8만건 처리('26. 7월말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민원 상담 체계 고도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국민 편의성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1350)를 통한 고용·노동 분야 전화상담 및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서면) 질의 민원에 대한 답변 서비스 제공

○ 고객상담센터는 울산, 천안, 안양, 광주 등 4개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센터는 전화상담과 국민신고 등 인터넷·서면 질의 민원을 처리하고, 천안·안양·광주센터는 인입 전화상담을 처리

○ 조직 현황



○ 주요 업무 및 기능

부 서 명		주요업무
기 획 지 원 과		운영 · 관리 총괄 기획·인사·총무·홍보·시스템·보안·평가·성과관리
전 화 상 담 과		상담지원 전화상담 업무지원 · 모니터링, 상담원 교육지원
	울산센터	민원상담 노동(임금·퇴직금·근로시간)·산업안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천안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 모성보호, 취업지원
	안양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 사업주지원금
	광주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외국인 고용허가
인 터 넷 상 담 과		민원답변 고용·노동분야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 처리 업무

◦ **[민원상담]** ① 지방관서 정보안내, ② 민원 확인, ③ 고용상담, ④ 상담(근로기준 · 산업안전), ⑤ 외국어상담

◦ **[③ 고용상담]** ①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④ 모성보호, ⑤ 취업지원, ⑥ 사업주 지원금, ⑦ 외국인고용 허가제도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777	3,777	-	△14	3,763	3,594	95.2	-	169
2024년	3,814	3,814	-	△29	3,785	3,780	99.1	-	5
2025년	3,797	3,797	-	11	3,807	3,802	100.1	-	5
2026년	4,064	4,064	-	-	4,064	2,397	59.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4	① 공무직 복지포인트 지급 금액 부족으로 5백만원 전용(감) ② 출장 및 교육 여비 부족으로 9백만원 전용(감)
2023년	불용	169	공무원 퇴직·휴직자 발생 및 연가보상비 미집행 169백만원 불용
2024년	전용	29	본부 인건비 부족분으로 29백만원 전용(감)
2024년	불용	5	공무원 퇴직·휴직자 발생 및 연가보상비 미집행 5백만원 불용
2025년	전용	23.4	① 공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연가보상비에서 6.4백만원 전용(감) ②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17백만원 전용(증)
2025년	불용	5	공무원 퇴직·휴직자 발생 및 연가보상비 미집행 5백만원 불용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09) 고객상담센터운영(7931-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900	7931	301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고객상담센터운영	고객상담센터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객상담센터운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객상담센터운영	23,993	26,607	26,607	30,097	29,694	3,087	11.6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4,040	24,029	23,993	-	36	26,607	26,607	12,989	29,694
고객상담센터운영	24,040	24,029	23,993	-	36	26,607	26,607	12,989	29,69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24,040	24,029	23,993	-	36	26,607	26,607	12,989	29,694
·상용임금(110-03)	16,990	17,177	17,177	-	-	18,815	18,815	10,095	20,652
·일반수용비(210-01)	257	208	208	-	-	157	157	81	157
·공공요금및제세(210-02)	734	482	482	-	-	734	734	273	660
·특근매식비(210-05)	35	29	29	-	-	35	35	11	35
·일숙직비(210-06)	1	-	-	-	-	1	1	-	1
·임차료(210-07)	658	673	673	-	-	658	658	382	750
·유류비(210-08)	1	1	1	-	-	1	1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60	48	48	-	-	60	60	9	60
·복리후생비(210-12)	335	341	341	-	-	335	335	304	402
·일반용역비(210-14)	17	10	10	-	-	17	17	-	97
·관리용역비(210-15)	1,117	1,197	1,197	-	-	1,117	1,117	644	1,139
·기타운영비(210-16)	112	104	104	-	-	112	112	28	112
·국내여비(220-01)	54	78	78	-	-	54	54	42	54
·사업추진비(240-01)	8	7	3	-	4	8	8	1	8
·관서업무추진비(240-02)	20	14	14	-	-	20	20	5	20
·직책수행경비(250-02)	8	8	8	-	-	8	8	4	8
·일반연구비(260-01)	12	30	30	-	-	100	100	-	100
·고용부담금(320-09)	3,322	3,322	3,322	-	-	3,725	3,725	1,105	4,389
·공사비(420-03)	40	40	18	-	22	490	490	-	160
·자산취득비(430-01)	260	260	251	-	9	160	160	5	800
·무형자산(440-00)	-	-	-	-	-	-	-	-	89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 고객상담센터인건비

사업목적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국민에게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
사업내용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①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573호)

제2조(소속기관)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52호)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1과 같고, ...후략...
[별표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중략 …		
기타 유형의 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특허청

추진경위	- ‘03.11.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계획 확정 - ’03.12.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단』 발족 - ‘04.08. 종합상담센터 개소 - ’04.12. 종합상담센터 직제 마련 - ‘10.07. 직제 개편(종합상담센터 → 고객상담센터) - ’12.12. 고객상담센터 이전(경기도 안양 → 울산) - ‘16.03.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지정 - ’21.01. 민간위탁콜센터(천안·안양·광주) 직접 운영 전환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8월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24,478	23,719	24,040	26,607	29,694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전 국민(주로 근로자 및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6,607	29,694	3,087
고객상담센터운영	26,607	29,694	3,087

○ 고객상담센터운영 **(2026년) 26,607 → (2027년 정부안) 29,694백만원, 11.6%**

① 인건비: (2026) 22,875백만원 → (2027) 25,443백만원(2,568백만원)

- (요구)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 등

- (산출)

◦ **상용임금(110-03): (2026) 18,815백만원 → (2027) 20,652백만원(1,837백만원)**

- 사무원 37백만원

· 기본급 28백만원=11,220원×209H×12개월×1명

· 초과근무수당 2.3백만원=13,110원×1.5배×120H×1명

· 정액급식비 2백만원=160천원×12개월×1명

· 명절상여금 3백만원=11,220원×209H×1명×120%

· 가족수당 1백만원=90,000원×12개월×1명

· 연가보상비 0.5백만원=13,110원×8H×5일×1명

- 전임전화상담원 17,590백만원

· 기본급 13,626백만원=12,120원×12개월×{{209H×246명)+(130H×12명)+(117H×348명)}

· 초과근무수당 526백만원={(14,110원×246명)+(14,450원×12명)+(14,540원×348명)}×1.5배×40.27H

· 정액급식비 1,164백만원=160천원×12개월×606명

· 명절상여금 1,363백만원=[{(209H×246명)+(130H×12명)+(117H×348명)}×12,120원]×120%

· 가족수당 654백만원=90,000원×12개월×606명

· 연가보상비 257백만원={(14,110원×246명×8H)+(14,450원×12명×5H)+(14,540원×348명×4.5H)}×5일

- 책임전화상담원 2,866백만원

· 기본급 2,305백만원=15,580원×209H×12개월×59명

· 초과근무수당 111백만원=17,900원×59명×1.5배×70H

· 정액급식비 113백만원=160천원×12개월×59명

· 명절상여금 231백만원=15,580원×209H×59명×120%

· 가족수당 64백만원=90,000원×12개월×59명

· 연가보상비 42백만원=167,900원×8H×5일×59명

- 미화원 84백만원

· 기본급 60백만원=(11,230원×143H×12개월×2명)+(11,230원×79H×12개월×2명)

· 초과근무수당 5백만원={(13,390원×2명)+(13,950원×2명)}×1.5배×65H

· 정액급식비 8백만원=160천원×12개월×4명

· 명절상여금 6백만원=[{(143H×2명)+(79H×2명)}×11,230원]×120%

· 가족수당 4백만원=90,000원×12개월×4명

· 연가보상비 1백만원={(13,390원×5.5H×2명)+(13,950원×3H×2명)}×5일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75백만원

· 공정수당 75백만원=2,488,000원×30명

- (단수조정) △68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026) 3,725백만원 → (2027) 4,389백만원(+664백만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2,669백만원=20,652백만원×12.923%
- 퇴직급여 적립금 1,720백만원=20,652백만원×0.0833
- (단수조정) △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2026) 335백만원 → (2027) 402백만원(+67백만원)**

- 복지포인트 402백만원=600천원×670명

② 기관 운영비: (2026) 3,731백만원 → (2027) 4,252백만원(+521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2027) 157백만원(전년동)**

- (요구)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직무학습서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등
- (산출) 총 157백만원
  · 감정노동자 힐링교육 27백만원=40천원×670명
  · 상담원 직무학습서 등 인쇄비 15백만원=25천원×600부
  · 복사용지 25백만원=20천원×103박스×12개월
  · 정기간행물 및 도서 구입 4백만원=30천원×25종×6개월
  ·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 구입 30백만원=625천원×12개월×4개센터
  · 복합기 드럼 및 토너 등 5백만원=400천원×12개월
  · 연도별 상담사례집 발간 16백만원=20천원×200부×4개센터
  · 인터넷노동법이용료 2백만원=170천원×12개월
  · 직원 교육비 21백만원=150천원×4개센터×36회
  · 청사유지 소모품 12백만원=1,000천원×12개월
- (단수조정) △175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026) 733백만원 → (2027) 660백만원(△73백만원)**
- (요구) 각종 공공요금, 재택근무 장비 통신비 등
- (산출) 총 660백만원
  · 각종 공공요금(우편,전기,수도,통신 등) 522백만원=10,879천원×12개월×4개센터
  · 재택근무 장비 통신비 28백만원=29천원×79대×12개월
  · 보이는 ARS 안내 문자(알림톡) 발송비 10백만원=건당 5원×연 200만건
  · 전화상담품질 모니터링 안내문자 발송비 34백만원=2,820천원×12개월
  · SNS 채팅상담시스템 상담원 연결 서비스 등 이용료 66백만원=건당 140원×연 47만건
- (단수조정) △7천원

■ **특근매식비(210-05): (2027) 35백만원(전년동)**
- (요구) 특근 직원 매식비
- (산출) 35백만원=9천원×59명×5.492일×12개월
- (단수조정) △44천원

■ **일숙직비(210-06): (2027) 1백만원(전년동)**
- (요구) 당직수당
- (산출) 1백만원= 83천원×12개월

■ **임차료(210-07): (2026) 658백만원 → (2027) 750백만원(+92백만원)**
- (요구) 청·관사 임차료, 각종 물품 임차료 등
- (산출) 총 750백만원
  · 직원 워크숍 등 장소 임차료 2백만원=500천원×4개센터
  · 정수기 등 임차료 43백만원=3,650천원×12개월
  · 관사 임차료 83백만원=6,959천원×12개월 ☞참고2
  · 재택근무용 노트북 임차료 106백만원=44천원×200대×12개월
  · 청사(천안·안양·광주) 임차료 516백만원=14,334천원×12개월×3개센터 ☞참고1
- (단수조정) △500천원

■ **유류비(210-08): (2027) 1백만원(전년동)**
- (요구) 관용차 유류비
- (산출) 1백만원=83천원×12개월

■ **시설장비유지비: (2027) 60백만원(전년동)**
- (요구) 각종 시설 유지보수비
- (산출) 총 60백만원
  · ARS 시스템(음성 및 보이는ARS) 메뉴 변경 및 개선 20백만원
  ·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24백만원=6,000천원×12개월
  · OA(PC,복합기 등) 유지보수 16백만원=794천원×8%x250대

■ **일반용역비(210-14): (2026) 17백만원 → (2027) 97백만원(+80백만원)**
- (요구) 책임전화상담원 위탁교육비 등
- (산출) 97백만원
  · 책임전화상담원 위탁 교육 17백만원=8,322천원×2회
  · 전화상담시스템 정보보안 강화 용역 80백만원 ☞참고3

■ **관리용역비(210-15): (2026) 1,117백만원 → (2027) 1,139백만원(+22백만원)**
- (요구) 전화상담시스템 유지보수 등 각종 용역비
- (산출) 총 1,139백만원
  · 무인경비, 소방, 승강기, 전기안전 등 용역 11백만원=923천원×12개월
  · 전화상담시스템(울산·천안·안양·광주) 유지보수 용역 641백만원=53,444천원×12개월
  · 청사 관리비(천안·안양·광주) 487백만원=13,521원x12개월x3개센터

■ **기타운영비(210-16): (2027) 112백만원(전년동)**
- (요구) 경조사비, 과운영비, 우수실적 포상 등
- (산출) 총 112백만원
  · 직원 경조사비 4백만원=50천원×86회
  · 과운영비(울산) 15백만원=(180천원+230천원+810천원)×12개월
  · 과운영비(천안·안양·광주) 29백만원=810천원×3과×12개월
  · 우수실적 포상 65백만원=2,320천원×4개센터×7회
- (단수조정) △558천원

■ **국내여비(220-01): (2027) 54백만원(전년동)**
- (요구) 관내·외 출장 여비, 교육 여비 등
- (산출) 54백만원
  · 울산 27백만원=2,212천원×12개월
  · 천안·안양·광주 27백만원=750천원x12개월×3개센터

■ **사업추진비(240-01): (2027) 8백만원(전년동)**
- (요구) 노사관계자 회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상담능력 제고 간담회 등
- (산출) 8백만원
  · 울산 4백만원=320천원×12개월
  · 천안·안양·광주 4백만원=110천원x12개월×3개센터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027) 20백만원(전년동)**
- (요구) 직원 연찬회, 관서 업무비 등
- (산출) 20백만원

· 울산 3백만원=292천원x12개월
· 천안·안양·광주 17백만원=465천원x12개월×3개센터

■ **직책수행경비(250-02): (2027) 8백만원(전년동)**
- (요구) 4급 기관장 및 5급 보조기관 직책수행경비
- (산출) 총 8백만원
  · 4급 기관장 5백만원=400천원×12개월×1명
  · 5급 보조기관 3백만원=80천원×12개월×3명

■ **일반연구비(260-01): (2027) 100백만원(전년동)**
- (요구)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등
- (산출) 총 100백만원
  ·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12백만원=12백만원×1식
  · 채팅상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88백만원=88백만원×1식

■ **공사비(420-03): (2026) 490백만원 → (2027) 160백만원(△330백만원)**
- (요구) 청사(울산·천안·안양·광주) 정기 시설 보수 공사
- (산출) 총 160백만원
- (단수조정) △1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026) 160백만원 → (2027) 800백만원(+640백만원)**
- (요구) 노후 전산기기 및 사무가구 교체 등
- (산출) 총 800백만원
  · 노후 전산기기 및 사무가구 정기 교체 160백만원=40백만원×4개센터
  · 전화상담시스템 정보보안 강화(SW/HW 구매) 40백만원 ☞참고3
  · AI 기반 전화상담 STT 및 상담어드바이저 구축 600백만원 ☞참고4

■ **무형자산(440-00): (2027) 89백만원(순증)**
- (요구) 청사 및 관사 임차보증금
- (산출) 총 89백만원
  · 청사(안양) 확장에 따른 임차보증금 64백만원 ☞참고1
  · 신규 관사 임차보증금 25백만원=5백만원×5개소 ☞참고2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전화상담 552만건, 인터넷상담 16만건 처리
2024년	전화상담 550만건, 인터넷상담 13만건, 채팅상담 5.7만건 처리('24. 8. 1. 개시)
2025년	전화상담 537만건, 인터넷상담 17만건, 채팅상담 14.5만건 처리
2026년	전화상담 46만건, 인터넷상담 9만건, 채팅상담 8만건 처리('26. 7월말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민원 상담 체계 고도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국민 편의성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1350)를 통한 고용·노동 분야 전화상담 및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서면) 질의 민원에 대한 답변 서비스 제공

○ 고객상담센터는 울산, 천안, 안양, 광주 등 4개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센터는 전화상담과 국민신고 등 인터넷·서면 질의 민원을 처리하고, 천안·안양·광주센터는 인입 전화상담을 처리

○ 조직 현황



○ 주요 업무 및 기능

부 서 명		주요업무
기 획 지 원 과	운영 · 관리 총괄	기획·인사·총무·홍보·시스템·보안·평가·성과관리
전 화 상 담 과	상담지원	전화상담 업무지원 · 모니터링, 상담원 교육지원
울산센터	민원상담	노동(임금·퇴직금·근로시간)·산업안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천안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 모성보호, 취업지원
안양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 사업주지원금
광주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외국인 고용허가
인 터 넷 상 담 과	민원답변	고용·노동분야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 처리 업무

◦ **[민원상담]** ① 지방관서 정보안내, ② 민원 확인, ③ 고용상담, ④ 상담(근로기준 · 산업안전), ⑤ 외국어상담

◦ **[③ 고용상담]** ①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④ 모성보호, ⑤ 취업지원, ⑥ 사업주 지원금, ⑦ 외국인고용 허가제도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24,478	24,478	-	△14	24,492	24,117	98.5	-	375
2024년	23,719	23,719	-	△187	23,532	23,488	99.0	-	44
2025년	24,040	24,040	-	△11	24,029	23,993	99.8	-	36
2026년	26,607	26,607	-	-	26,607	12,989	48.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689	① 공무직 복지포인트 지급 금액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5백만원 전용(증) ② 출장 및 교육 여비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9백만원 전용(증) ③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금 충당으로 상용임금에서 658백만원 전용(증감) ④ K-ESG 경영지표 활용 전략 수립 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7백만원 전용(증감)
2023년	불용	375	① 네트워크 장비 재구성으로 구매 제품 대량 구매 할인, 서버 모니터링 전년도 기도입(증설 서버분 구매)으로 자산취득비 250백만원 불용 ② 운영비 집행 잔액 125백만원 불용
2024년	전용	513	① 스포츠의 날 실시 비용 및 출장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17백만원 전용(증감) ② 공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으로 상용임금에서 복리후생비로 3백만원 전용(증감) ③ 출장비 부족으로 관서업무추진비에서 국내여비로 5백만원 전용(증감) ④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금 충당으로 상용임금에서 488백만원 전용(증감)

2024년	이용	187	본부 인건비 부족분으로 187백만원 전용(감)
2024년	불용	44	기관 운영비 미집행 잔액 44백만원 불용
2025년	전용	258	① 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20백만원 전용(증감), ② 스포츠의 날 실시 등 출장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 관서업무추진비, 일반연구비, 일·숙직비에서 24백만원 전용(증감), ③ 공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연가보상비에서 6백만원 전용(증), ④ 공무직 인건비(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사업추진비에서 191백만원 전용(증감), ⑤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17백만원 전용(감)
2025년	불용	36	기관 운영비 미집행 잔액 36백만원 불용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참고1 **고객상담센터 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증액**

□ 현황

○ 고객상담센터 천안, 안양, 광주 등 3개 센터의 임대차 계약이 순차적으로 종료되어 재계약이 예정됨

※ **계약종료시점**: 천안: '26.7월, 안양: '27.1월, 광주: '27.2월

○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7%) 및 지역별 오피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요구가 확실시됨

□ 필요성

○ 천안센터

- 지역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의 재계약('22.8월, '24.8월) 에서 **임대료를 동결하여 계약**하였으므로,

- **차기 재계약 시점**에는 그간 누적된 임대료 상승이 반영되어 **임대인의 증액 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광주센터

- 지난 재계약('25.3월) 당시 시장 상황 및 **임대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3% 인상한 바 있고,**

- 광주 서구 지역의 오피스 임대료 등 **시장 지표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료 증액이 불가피**하므로, 차기 재계약 시점 임대료 증액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안양센터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따르면 **6급 이하 일반직원의 사무실 집무 면적은 7㎡**이나, 안양센터는 이에 못 미치는 **4.7㎡에 불과**함

* 센터별 6급 이하 일반직원 집무면적 ▲ 울산: 6.1㎡, 천안: 6.4㎡, 광주: 5.9㎡



울산센터 | 천안센터

광주센터 | 안양센터

- **협소한 집무면적**은 옆 직원 간 목소리 간섭 등으로 **업무 집중도 하락**과 **직무 스트레스 가중**을 야기하며, 이는 **직원 건강문제, 상담품질 저하** 및 **기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됨
- 따라서, 사무공간 추가 확보*를 통해 **1인당 집무 면적 개선(5.8㎡)하여** 법정 기준에 근접한 업무 환경 조성이 필요

* [전용면적] 총 1,502.7㎡ (기존 1,219.99㎡(370평) + 추가 확보 282.71㎡(85평))

□ 전체 임차 청사 현황

연번	주소 (부서)	임차 예산		계약기간 (연월~연월)	증액소요		비고
		보증금 (천원)	연임차료 (천원)		보증금 (천원)	연임차료 (천원)	
계		4,580,000	458,165	-	63,943	58,929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천안센터)	1,980,000	204,336	'24.8.~'26.7.	-	5,517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 (안양센터)	1,710,000	126,310	'26.2.~'27.1.	63,943	49,969	추가 평수 확보
3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광주센터)	890,000	127,519	'25.3.~'27.2.	-	3,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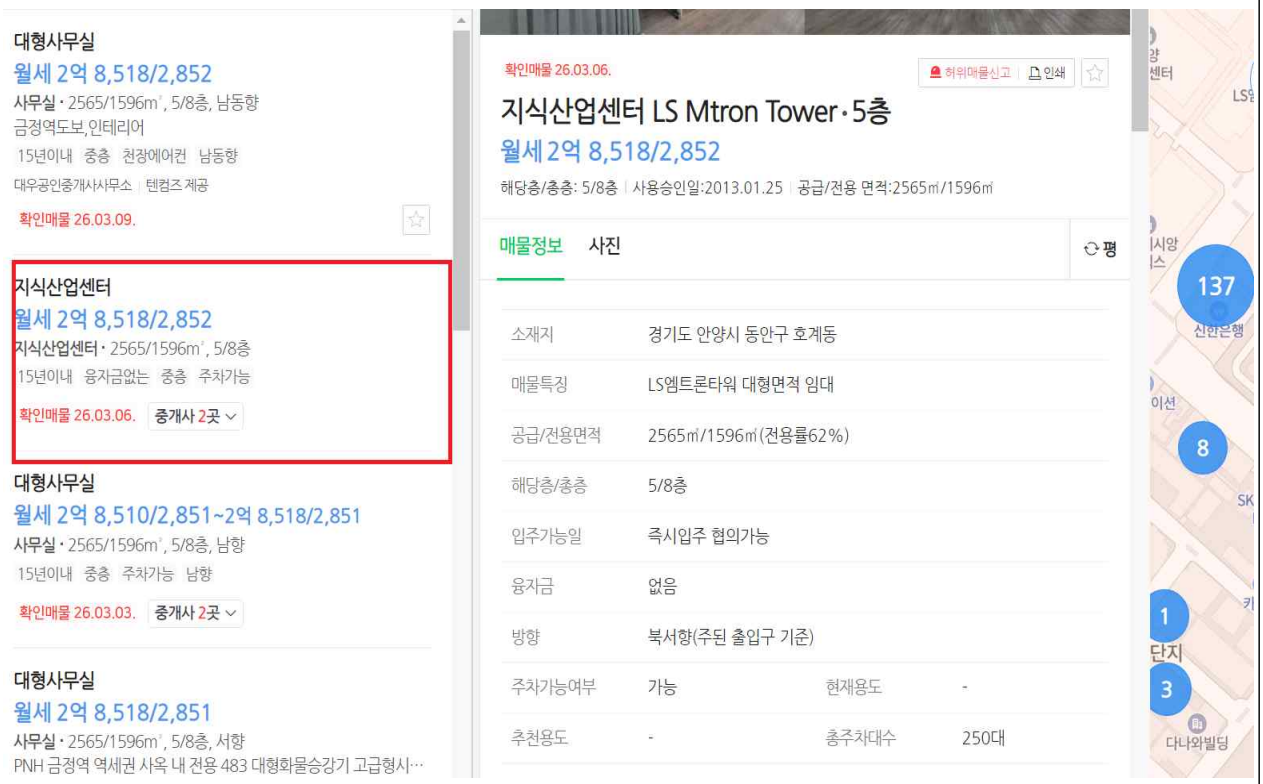
□ 소요예산: 총 581백만원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예산과목
기존 3개 센터 연임차료	458,165	임차료 (210-07)
천안센터 연임차료 증액분 204,336천원X1.027(소비자물가상승률)	5,517	
안양센터 연임차료 증액분 45,426천원(3,786천원X12개월)X1.1(부가세)	49,969	
광주센터 연임차료 증액분 127,519천원X1.027(소비자물가상승률)	3,443	
안양센터 보증금 증액분	63,943	무형자산 (440-00)
총 계	**581,037**	

* **임차료 517,094천원**(기존 458,165천원+증액 58,929천원)+**임차보증금 63,943천원**

※ 안양센터 청사 추가 평수 확보 관련 비교 대상 사무공간 시세 등



[붙임]

사무실 임대차 재계약 관련 예산편성 요구자료 내역서

단위 : 원

구분 \ 임대층	3층	5층		합계
물건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경기벤처연성대학교센터 3층 (304~305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경기벤처연성대학교센터 5층 (502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경기벤처연성대학교센터 5층 (509호)	304~305호 502호 509호
계약면적(㎡)	○ 총 면 적 : 287.09㎡(86.85평) (전용면적:144.01㎡, 공용면적:143.08㎡)	○ 총 면 적 : 138.25㎡(41.83평) (전용면적:69.35㎡, 공용면적:68.9㎡)	○ 총 면 적 : 138.25㎡(41.83평) (전용면적:69.35㎡, 공용면적:68.9㎡)	
임차보증금 월세전환율	11.25%	11.25%	11.25%	
임차보증금	32,569,000	15,687,000	15,687,000	
월 환산금액	32,569,000×11.25%÷12=306,000	15,687,000×11.25%÷12=147,100	15,687,000×11.25%÷12=147,100	
월 임대료(현재)	1,928,100	928,700	928,700	
총 월임대료 (월임대료+월환산금액)	1,928,100+306,000=2,234,100	928,700+147,100=1,075,800	928,700+147,100=1,075,800	4,385,700
월 관리비	937,980원(평당 : 10,800원)	451,760(평당 10,800)	451,760(평당 10,800)	1,841,500
주차(무료)	2대	1대	1대	
수도광열비 (전기, 수도, 가스)	사용분 실비정산	사용분 실비정산	사용분 실비정산	
기타	인터넷전용선 무료	인터넷전용선 무료	인터넷전용선 무료	

※ 예상편성을 위한 예상 자료이며 임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고객상담센터 관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증액

□ 필요성

○ 임차보증금 시세 급등에 따른 '27년 임차보증금 인상 필요(3개소)

○ 행안부 신규 관사 5개소 승인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반영

□ 전체 관사 현황

연번	주소	임차 예산		계약기간 (연월~연월)	방 개수 (입주인원/직급)	증액소요		비고
		보증금 (천원)	연임차료 (천원)			보증금 (천원)	연임차료 (천원)	
계		281,000	60,180	-	18 (24명)	25,000	23,400	
1	울산 중구 함월6길 59-3, 성진빌 201호	20,000	4,800	'24.12.~'26.11.	1 (1명/7급)	-	-	
2	울산 중구 함월6길 59-3, 성진빌 203호	20,000	4,800	'24.12.~'26.11.	1 (2명/7,8급)	-	600	인상 요구
3	울산 중구 함월6길 59-3, 성진빌 302호	20,000	4,800	'24.12.~'26.11.	1 (1명/6급)	-	-	
4	울산 중구 함월22길 25 성안청구아파트	45,000	7,200	'24.12.~'26.12.	3 (3명/7,8급)	-	600	인상 요구
5	울산 중구 손골9길 38 신한그린맨션	10,000	6,000	'24.12.~'26.12.	2 (8명/6,7급)	-	600	인상 요구
6	울산 중구 우정3길 9 우정선경아파트	35,000	6,120	'24.12.~'26.12.	2 (1명/4급)	-	-	
7	울산 중구 함월15길 11 풀하우스 2동 302호	5,000	4,560	'25.1.~'27.1.	1 (2명/6급)	-	-	
8	울산 중구 함월17길 6-1, 에뚜왈빌 302호	45,000	1,500	'25.1.~'27.1.	1 (2명/6,7급)	-	-	
9	울산 중구 성안14길 12 정정빌 204호	20,000	2,400	'25.1.~'27.1.	1 (1명/5급)	-	-	
10	울산 중구 함월6길 60 명보빌 204호	25,000	3,600	'25.1.~'27.1.	1 (1명/7급)	-	-	
11	울산 중구 백양로 138 들 301호	15,000	4,200	'25.1.~'27.1.	1 (1명/7급)	-	-	
12	울산 중구 함월3길 11-3, 성안스카이부 203호	15,000	3,000	'25.1.~'27.1.	1 (1명/6급)	-	-	
13	울산 중구 함월17길 42-1, 백양빌 205호	3,000	3,600	'24.12.~'26.11.	1 (1명/5급)	-	-	
14	울산 중구 함월17길 42-1, 백양빌 304호	3,000	3,600	'24.12.~'26.1.	1 (1명/5급)	-	-	
15	울산 중구 성안5길 22 등 5건	-	-	'27년 신규 수급 반영		25,000	21,600	'27년 수급 반영(5채)

□ 소요예산: 총 109백만원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예산과목
기존 관사 연임차료	60,180	임차료 (210-07)
기존 관사 3개소 연임차료 증액분 50천원×12개월×3	1,800	
신규 관사 5개소 연임차료 360천원×12개월×5	21,600	
신규 관사 5개소 임차보증금 5,000천원×5	25,000	무형자산 (440-00)
총 계	**108,580**	

※ 신규 관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관련 인근 빌라 시세

[단독다가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매매 전월세

법정동/리	기준년도	월	면적	금액
성안동	2026	01	--전체--	--전체--

01월

법정동	지번 도로명	주택유형	연면적(㎡) 계약구분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요구권사용	보증금(만원) 월세(만원)
성안동	8** 함월10길	다가구	29.75 신규	26	26.01-27.01 -	200 35
성안동	8** 함월19길	다가구	26.4 신규	25	26.01-27.01 -	300 34
성안동	4** 성안10길	다가구	26.4 신규	22	26.01-27.01 -	300 30
성안동	5** 성안4길	다가구	29.75 신규	20	26.01-27.01 -	500 36
성안동	7** 함월14길	다가구	34 신규	20	26.02-28.02 -	500 36
	5**		42.97		26.01-27.01	0

참고3 전화상담 AP시스템 정보보안 강화 예산

□ 현황

○ 고객상담센터에서 사용하는 **전화상담 AP시스템은 도입('13.1월) 후 13년이 경과**하여,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패치 및 기술지원 종료로 **보안 사각지대에 노출**

○ **고용노동부 지능정보화기획팀**은 '2026년 웹서비스 및 모바일 앱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고객상담센터 소관 12개의 서비스에서 **사이버 위험 요소를 통보하며 개선 지시**

* (근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287호)

□ 필요성

○ 본부 지적 12개의 서비스 중 대부분은 '26.7월까지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나, 민원연계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도 上 수준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별도 장비 및 기술*이 요구되므로 추가 예산 없이 추진이 불가함

* ①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체계 구축)** 직급이나 업무 권한에 따라 볼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고, 한 개의 아이디를 여러 명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개인별 계정을 부여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는 시스템

② **(DB 및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작업)** 서버에 저장된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로 바꾸어 저장하여 서버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내용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작업

③ **(개인정보 마스킹 적용 및 노출 최소화)** 업무 담당자나 관리자가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볼 때,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전체를 보여주지 않도록 하여 데이터 유출의 위험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작업

○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이며, 고유식별정보 유출 시 발생하는 과징금 및 행정처분으로부터 기관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23. 9. 12.>

□ 고용노동부 웹서비스 및 모바일 앱 취약점 점검 결과(고객상담센터)

5 웹/모바일 서비스별 점검결과

순번	서비스명	`25년 점검여부	URL	IP	시스템 위치	발견된 취약점(유형)	위험도
26	민원연계	X	http://10.99.57.31:8501	10.99.57.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개인정보 노출-1	상
						개인정보 노출-2	상
						개인정보 노출-3	상
						개인정보 노출-4	상
						불충분한 인증	중
						정보 누출	하
27	신규민원연계	X	http://10.99.57.30:8501	10.99.57.3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개인정보 노출-1	상
						개인정보 노출-2	상
						개인정보 노출-3	상
						개인정보 노출-4	상
						불충분한 인증	중
						정보 누출	하

□ 소요예산: 총 12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예산과목
정보연계 및 UI/UX 개선	30	일반용역비 (210-14)
정보보안 강화 및 기능 개선	50	
보안 SW 구매	20	자산취득비 (430-01)
민원조회 처리서버 HW 구매	20	
총 계	**120**	

참고4 AI기반 전화상담 STT 및 상담어드바이저 구축 예산

Ⅰ 현황 및 필요성

○ 고용·노동분야의 민원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전문 콜센터인 “1350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운영

- (규모) 4개 센터(울산, 천안, 안양, 광주), 상담인력 700여명
- (상담분야) **노동분야**(근로기준법, 근퇴법, 고평법, 최저임금법, 임채법, 기간제법, 노조법, 산안법, 파견법, 근참법, 산안법, 중처법 등), **고용분야**(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 모성보호, 직업훈련, 구인·구직, 외국인고용, 사업주지원금 등)

○ 상담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상담건수('25년)
전화상담	1350 및 고용센터 대표번호로 인입된 전화에 대한 상담서비스	5,366,976건
챗봇상담	AI 활용 카카오톡 기반 24시간 실업급여 상담서비스	563,161건
채팅상담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상담원이 직접 상담하는 실업급여 상담	145,013건
인터넷상담	국민신문고, 1350모바일상담, 빠른인터넷상담 등	174,115건

○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에 따라 AI기반 상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 우리 기관은 상담규모에 비해 유사 기관보다 AI상담시스템 도입 수준이 저조

* 유사 공공·민간기관 AI인프라 도입 사례

기관명	도입 내용	기관명	도입 내용
고용노동부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감독관 지원 내부망, 다국적 AI상담 등	한국장학재단	실시간STT, AI상담어드바이저, STT/TA 2차 고도화
120 다산콜센터	실시간STT, AI상담어드바이저	국세청	콜봇시스템
대한법률구조공단	생성형 AI 법률서비스 매칭	LGU+, KT 등	실시간STT, AI상담어드바이저, AI 품질평가 등

○ **최근 고용·노동 상담 문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법령 제·개정, 노동형태 다변화, 노동자 권리 인식 향상 등에 따라 **단순 정보 안내를 넘어 매우 구체화, 복잡화**되고 있으며,

- 민원인이 요구하는 상담의 정확성과 신속성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

○ 특히 상담 내용의 정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상담품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 상담 내용의 복잡성 증대, 방대한 상담 지식·업무 매뉴얼 숙지 필요로 인해 **모든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에 한계**
-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내 누락, 상담 편차 및 불완전 상담은 **민원인의 추가 문의, 지방관서 콜 이관 등 불편 초래**

  * 지방관서 콜 이관 건수 : ('24년) 73,494건 → ('25년) 82,462건

- 또한, 동일·유사문의의 반복, 장시간 상담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상담사 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의존하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화, 체계화된 상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AI 활용 지능형 전화상담시스템은 **상담 대기시간 단축**(단순·반복 상담은 AI가 처리하고 전문상담 및 강성민원 응대 등 고난도 상담은 상담사가 처리), **상담품질의 객관성·효율성 확보, 전화상담원의 업무 부담과 정신적 피로 경감에 따른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수 사업임

Ⅱ 주요 추진계획

<1차 년도>

○ **(실시간 STT)** 교환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음성을 수집 및 STT 등 음성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분배하는 음성 수집·분배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 시스템 구축
- 상담원에게 변환된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실시간 STT 학습시스템 및 학습도구 도입

○ **(STT TA)** STT로 변환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언어처리 기반의 상담내용 분석, 상담패턴 분석, 자동분류, 상담내용 요약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TA(Text Analysis) 시스템 구축

<2차 년도>

○ **(AI 지식관리)** 상담에 필요한 법령·지침 등의 행정자료와 상담지식, FAQ 자료 등을 포함한 상담지식관리 체계 마련 및 RAG 기반의 AI 검색 솔루션 구축으로 상담원이 포괄적인 상담지식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효과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AI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 **(AI 상담어드바이저)** 실시간 STT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객과 상담사가 음성으로 대화한 실시간 대화내용을 인공지능(AI)이 청취하고 실시간 대화 내용에서 고객의 의도를 분류하여 이에 적합한 답변을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시스템인 AI 상담어드바이저 시스템 구축

Ⅲ 기대효과

○ 방대한 상담 지식과 업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민원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품질의 일관화·표준화 및 민원 처리시간 단축

○ 상담 내용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품질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상담 오류를 최소화하고, 상담품질 관리의 객관성과 효율성 향상

○ 상담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관서 이관 및 재문의 건수를 감소시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방관서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

- 민원인은 최초 상담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관은 상담 서비스의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를 제고

○ 민원 문의에 최적화된 상담지식의 자동 제공, 핵심 상담내용 요약 제공 등 상담사의 업무 부담 및 정신적 피로 경감에 따른 업무효율 향상

※ 도입 기능별 기대효과 분석

실시간 STT + TA			상담지식시스템 + 상담어드바이저		
KPI	**개선 범위**	**주요 원인**	**KPI**	**추가 개선 범위**	**주요 원인**
ACW (후처리시간)	40~80% 감소	상담요약 자동 생성	AHT (평균 상담시간)	추가 10~25% 감소	답변 추천
AHT (평균 상담시간)	5~15% 감소	메모작성 시간 감소	FCR (원콜해결률)	5~15%p 향상	정확한 해결안 제공
QA 분석범위	5% → 100%	전수 모니터링	CSAT (고객만족도)	5~10% 향상	응대 품질 균일화
오상담률	10~30% 감소	실시간 탐지	신입 생산성	30~50% 향상	실시간 가이드
VOC 분석시간	70~90% 감소	자동 분류	교육기간	30~60% 단축	AI 코칭
관리자 QA 인력	20~50% 절감	자동 평가	상담사 처리량	20~40% 증가	검색시간 제거

Ⅳ 주요 기관(기업) 도입 성과

한국장학재단 ▶ 실시간 STT/TA, 상담어드바이저 등

○ 전체 상담사 기준

구분	도입 전(A) ('25.5.~'25.6.)	도입 후(B) ('25.7.)	증감(B-A)	비고
통화시간(ⓐ)	3분 10초	2분 27초	- 43초	23% 감소
후처리시간(ⓑ)	4분 07초	3분 55초	- 12초	5% 감소
상담시간(ⓐ+ⓑ)	7분 17초	6분 22초	- 55초	13% 감소

○ 신입상담사 기준(입사 3개월 미만)

구분	도입 전(A) ('25.5.~'25.6.)	도입 후(B) ('25.7.)	증감(B-A)	비고
통화시간(ⓐ)	3분 52초	3분 30초	- 22초	9% 감소
후처리시간(ⓑ)	4분 13초	1분 52초	- 2분 21초	56% 감소
상담시간(ⓐ+ⓑ)	8분 05초	5분 22초	- 2분 43초	34% 감소

* (자료출처) 한국장학재단 제공

KT콜센터 ▶ 실시간 STT/TA, 상담어드바이저, 콜봇, 목소리 인증 등

구분	도입 전(A)	도입 후(B)	증감(B-A)	비고
직원 퇴직률	2.6%	1.8%	- 8%	30% 감소
본인인증시간	24초	5초	-19초	79% 감소
상담 후처리시간	20초	5초	-15초	75% 감소
전화인입량	월평균 30만콜 감소(상담인력 환산 238명)			
동일내용 재상담건수	월평균 17만건 감소			
인력 전환	상담인력 일부를 영업 업무로 전환 ⇒ 총 13만 영업시간 확보			
절감 예산	연간 약 167억원 절감			

* (자료출처) KT 자료 제공('26.6.) 및 언론보도<"일자리 뺏는다던 AI 상담원…콜센터 퇴직률 30% 줄였다." 한국경제(2022.8.8.)>

외국기업 사례 분석 ▶ **실시간 STT/TA, 상담어드바이저 등**

기업명	도입 기능	상담시간 (AHT)	품질·고객경험 효과	자료 출처
Rappi (LATAM)	AI 셀프서비스 + 실시간 Agent Assist + 감성분석	40% 감소	최초문의해결률 92%, 운영비 30% 절감, 고객만족도 3.2→4.5점	https://www.dfx5.com/case-studies/rappi-ai-contact-center?utm_source=chatgpt.com
AXA Health	AI 상담요약 (Wrap-Up Bot)	통화당 60초 감소	후처리 업무 자동화	https://www.verint.com/case-studies/axa-health-shaves-60-seconds-from-aht-with-ai-powered-verint-platform/?utm_source=chatgpt.com
Fortune 100 FinTech	실시간 코칭 ·품질분석 AI	8% 감소 (-43초)	순추천지수 10점 상승	https://www.verint.com/case-studies/fortune-100-fintech-reduces-aht-by-8-percent-with-cx-ex-scoring-bot/?utm_source=chatgpt.com
Fortune 250 에너지기업	STT+자동요약	10~20% 감소	문서작성시간 50% 감소	https://resources.rstartec.com/case-studies/energy-utility-call-summarization-automation?utm_source=chatgpt.com
Fortune 500 기업	AI 고객지원 자동화	28% 감소	고객만족도 6~11점 상승	https://www.mwaai.com/ai-insights/casestudy/automating-customer-support-ai-fortune500-case-study?utm_source=chatgpt.com
사이버보안 SW 기업	상담 가이드 자동화	36% 감소 (1,137초→ 729초)	품질 오류 감소	https://www.qualfon.com/case-studies/average-handle-time-reduction-cybersecurity/?utm_source=chatgpt.com

Ⅴ 소요 예산

□ **총 소요예산: 1,398백만원(1차년도 600백만원, 2차년도 798백만원)**

□ **예산산출내역**

<1차 년도 : 전화상담 실시간 STT / TA 구축>

구분	내역		금액 (백만원)
실시간STT	H/W	실시간 STT H/W(STT 관리/변환 서버)	300
		실시간 음성 수집분배 H/W	30
	S/W	실시간 STT 엔진 S/W 및 라이선스	90
		실시간 음성 수집분배 엔진 S/W	30
TA	H/W	TA H/W(분석서버, TA DB서버)	60
	S/W	TA 솔루션 S/W 및 TA 채널 라이선스	90
계			**600**

<2차 년도 : AI지식관리시스템 / 상담어드바이저 구축>

구분	내역		금액 (백만원)
AI지식관리 시스템	H/W	AI 지식관리 H/W(AI검색 서버, 지식관리서버)	90
	S/W	AI 검색솔루션 및 KM 솔루션 S/W	100
		AI 검색기능 개발 및 RAG 구축	138
AI상담 어드바이저	H/W	AI 상담가이드 H/W	60
	S/W	AI 상담가이드 솔루션 S/W 및 라이선스	220
		AI 상담가이드 기능 개발 및 시스템 연계 개발	190
계			**798**

사 업 명
(110)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8421-88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6	8400	8421	881
명칭	사회복지	노동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모성보호지원)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보험기금 전출 (모성 보호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직접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고용보험기금 전출 (모성보호지원)	550,000	600,000	600,000	1,800,000	9,000,000	300,000	50.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7월)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50,000	550,000	550,000	-	-	600,000	600,000	360,100	900,000
·고용보험기금전출 (모성보호지원)	550,000	550,000	550,000	-	-	600,000	600,000	360,100	900,0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7월)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550,000	550,000	550,000	-	-	600,000	600,000	360,100	900,000
·공공기금전출금(610-03)	550,000	550,000	550,000	-	-	600,000	600,000	360,100	900,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사회분담화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 급여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추진경위	○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계획 추진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결정('00. 4. 10.) - 산전후휴가기간을 연장(60→90일)하되, 사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대책 마련 ○ '01.6월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 시 관련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분담토록 국회 부대 결의(※붙임: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 '05. 5. 31.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수준 확대 3법 개정('06.1월 시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01년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300,000	400,000	550,000	600,000	900,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출산·육아기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고용보험기금전출(모성보호지원)	600,000	900,000	300,000

○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2026년) 600,000→ (2027년 정부안) 900,000백만원, + 50.0%**

- (설명) '27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의 일부 지원,

  *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실업급여 계정의 한계상황, 모성보호급여 도입 당시 국회 의결 사항 및 노사정 대타협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지원 필요

- (산출) '27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의 일부 지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 운영 및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환노위	2024 회계연도 결산	○ 지적: 정부는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조치: 안정적 모성보호재원 마련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비율 확대('25년 5,500억 → 6,000억 편성)
예결위	2025 회계연도 결산	○ 지적: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 마련한다 ○ 조치: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전입금 확대편성('26년 6,000억 → '27년 정부안 9,000억 편성)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00,000	300,000	-	-	300,000	300,000	100.0	-	-
2024년	400,000	400,000	-	-	400,000	400,000	100.0	-	-
2025년	550,000	550,000	-	-	550,000	550,000	100.0	-	-
2026년 7월	600,000	600,000	-	-	600,000	360,100	60.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특이사항 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8422-88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 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8400	8422	882
명칭	사회복지	노동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전출 (산재보험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보험운영)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전출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6,300	15,800	6,300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300	6,300	6,300	0	0	6,300	6,300	3,800	6,300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전출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6,300	0	0	6,300	6,300	3,800	6,3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6,300	6,300	6,300 [6,300]	0	0	6,300	6,300	3,800	6,300
· 기금 전출금(610-03)	6,300	6,300	6,300 [6,300]	0	0	6,300	6,300	3,800	6,3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

사업목적·사업내용	산재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전출하여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5년 ○ 추진 배경 : '94.12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재보험에 관한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95. 5. 1.)함에 따라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전출하여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6,300	6,300	6,300	6,300	6,3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300	6,300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

- (2026년) 6,300 → (2027년 정부안) 6,300백만원, 전년동

- 산재보험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의 전출금 6,3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국가가 보험사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적용·징수,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산재보험 사무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보험사무 수행기관(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일반회계 전출 ⇨ 산재기금 전입 ⇨ 산재보험운영비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6,300	6,300	0	0	6,300	6,300	100	0	0
2024년	6,300	6,300	0	0	6,300	6,300	100	0	0
2025년	6,300	6,300	0	0	6,300	6,300	100	0	0
2026년	6,300	6,300	0	0	6,300	3,800	60.3	0	0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예방지원)(8422-883)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8400	8422	883
명칭	사회복지	노동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전출 (산재예방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 없음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전출 (산재예방지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전출 (산재예방지원)	15,000	25,000	25,000	62,830	30,000	5,000	20.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5,000	15,000	15,000 (15,000)	0	0	25,000	25,000	16,500 (16,500)	30,000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전출 (산재예방지원)	15,000	15,000	15,000 (15,000)	0	0	25,000	25,000	16,500 (16,500)	30,0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5,000	15,000	15,000 (15,000)	0	0	25,000	25,000	16,500 (16,500)	30,000
· 기금 전출금(610-03)	15,000	15,000	15,000 (15,000)	0	0	25,000	25,000	16,500 (16,500)	30,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예방지원)

사업목적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사업내용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7년 ○ 추진 배경 : 정부의 산재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97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3,700	15,000	15,000	25,000	30,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25,000	30,000	5,000

○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

- ('26년) 25,000 → ('27년) 30,000백만원(증 5,000백만원)

- 산재예방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의 전출금 30,0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산재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으로써 산재기금 재정의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일반회계 전출 ⇨ 산재기금 전입 ⇨ 산재예방사업비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3,700	13,700		-	13,700	13,700	100.0	-	-
2024년	15,000	15,000		-	15,000	15,000	100.0	-	-
2025년	15,000	15,000		-	15,000	15,000	100.0	-	-
2026년	25,000	25,000		-	25,000	16,500	66.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	-	- 해당없음
2024년	-	-	- 해당없음
2025년	-	-	- 해당없음
2026년	-	-	- 정상 추진 중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13)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8425-88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E	8400	8425	885
명칭	사회복지	노동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임채기금으로의 전출금 (임채기금운영)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82	82	82	19,374	82	-	-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82	82	82	0	0	82	82	82	82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82	82	82	0	0	82	82	82	82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82	82	82	0	0	82	82	82	82
·기금전출금(610-03)	82	82	82	0	0	82	82	82	82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임금채권보장기금전출(임채기금운영))

사업목적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임채기금 비용부담 경감
사업내용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임채기금 비용부담 경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99년~계속 - 추진배경: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82	82	82	82	82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기금전출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82	82	0

○ 임금채권보장기금전출(임채기금운영) : (2026) 82백만원 → (2027) 82백만원, 전년동

- (설명)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업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예산을 '26년도 수준으로 요구
- (산출) 82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일반회계에서 82백만원 지원
2024년	일반회계에서 82백만원 지원
2025년	일반회계에서 82백만원 지원
2026년	일반회계에서 82백만원 지원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체당금 지급으로 행정서비스 질제고, 사업주 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실적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회계 지출(전출) →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전입)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고용노동부 사무집행 및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로 출연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예결위/환노위 결산, 예산	2023년, 2024년	○ 지적 :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비 중 일반회계 부담비중 상향 필요 ○ 조치 : '25～'29 중기계획, '26년 예산안, '26～'30 중기계획, '27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비의 일반회계전입금 증액 요구 등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82	82	0	0	82	82	100.0	0	0
2024년	82	82	0	0	82	82	100.0	0	0
2025년	82	82	0	0	82	82	100.0	0	0
2026년	82	82	0	0	82	82	1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 업 명
(1) 사회적기업육성(지특)(1037-31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사회복지	08D	1000	1037	312
명칭	080	고용	고용창출 및 훈련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육성(지특)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Y	N	75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일자리창출사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전문인력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사회적기업육성(지특)	-	32,100	32,100	31,208	29,995	△2,105	△6.5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32,100	32,100	2,422	29,995
·일자리창출사업	-	-	-	-	-	32,100	32,100	2,422	22,491
·전문인력지원사업	-	-	-	-	-	-	-	-	7,50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32,100	32,100	2,422	29,99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32,100	32,100	2,422	29,99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일자리창출사업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1-2)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내용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 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3년 - 사업 추진경위 · ('03년) '03년 추경편성 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포함하여 시행(시범사업 '03~'04년) ·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 ('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자치단체 이관 · ('15년) 일자리창출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 · ('17년)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 · ('19년) 지역자율(생활)·세종·제주계정 예산 지역지원계정으로 통합·이관 · ('20년) 사회보험료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70→75%) · ('22년)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균특 지원계정에서 균특 제주계정으로 이관 · ('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9.1.)에 따라 인건비 지원사업은 '24년까지 운영 후 사업종료 · ('26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 개편 통해 '26년부터 재개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6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03,377	47,665	-	32,100	29,995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정부

○ 사업 수혜자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일자리창출사업	보조	지방정부	22,491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	지방정부	7,504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2,100	29,995	△2,105
일자리창출사업	32,100	22,491	△9,609
전문인력지원사업	-	7,504	순증

○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32,100 → (2027년 정부안) 22,491백만원, △29.9%**
- (설명) '27년 지출구조조정 차원에서 목표인원 전년대비 감소, '26년 대비 -29.9% 감액
- (산출) 22,491백만원 = 3,570명 x 70만원 x 12개월 x 지자체 보조 75%
  * 대상인원 변경: ('26년) 대상인원 5,088명 → ('27 정부안) 3,570명

○ 전문인력지원사업 **(2026년) 0 → (2027년 정부안) 7,504백만원, 순증**
- (설명) AI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지원사업 신설, 7,504백만원 순증
- (산출) 7,504백만원 = 870명 x 115만원 x 10개월 x 지자체 보조 75%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고용유지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60%	60%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 측정산식 :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인원 / 사업참여가 종료된 인원 *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2026년도 고용유지율 및 변동추세 종합적 고려

- 자료수집방법/출처 : 고용정보원 등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1,950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6,385명
2024년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4,135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7,655명
2025년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5,059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9,189명
2026년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4,917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9,101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취약계층 등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27년 예쌍 지원인원 4,44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국정감사	2024년	○ 지적 :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 관련 정책 재검토 필요 ○ 조치 : 사회적기업이 고용·안정망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판로·성장지원 정책 등을 내실 있게 마련·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현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검토할 예정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3,377	103,377	-	-	103,377	102,8595	99.5	-	518
2024년	47,665	47,665	-	-	47,665	44,385	93.1	-	3,280
2025년	-	-	-	-	-	-	-	-	-
2026년	32,100	32,100	-	-	32,100	2,422	7.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내역 조정	1,836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 수요 증가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 요청에 따른 내역 조정
2024년	불용	3,280	예산교부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025년	-	-	해당없음
2026년	-	-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참고 **사회적기업육성(지특) 사업 개요**

1 일자리창출사업

□ (목적)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양질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지원대상)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

※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양호"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조건 및 수준)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월 평균 70만원 지원**

○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SVI평가 참여 및 평가 등급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절차) 노동부 교부 → 자치단체 공모 → 참여기업 선정·지원

❶ 보조금 교부	→	❷ 참여기업 공모	→	❸ 신청·접수	→	❹ 심사·선정
노동부(지방관서) → 광역		지자체		기업 → 지자체		지자체

❺ 약정체결	→	❻ 채용자 승인	→	❼ 지원금 지급	→	❽ 사업결과 보고
참여기업 ↔ 지자체		지자체		참여기업 ↔ 지자체		지자체 → 노동부(지방관서)

□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지원(2년+1년)

○ 지원기업 2년 지원 + SVI 평가등급 "양호" 이상 시 추가 1년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동일 적용, 과거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참여 제외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회계, 마케팅 등 경영혁신 지원**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지원대상)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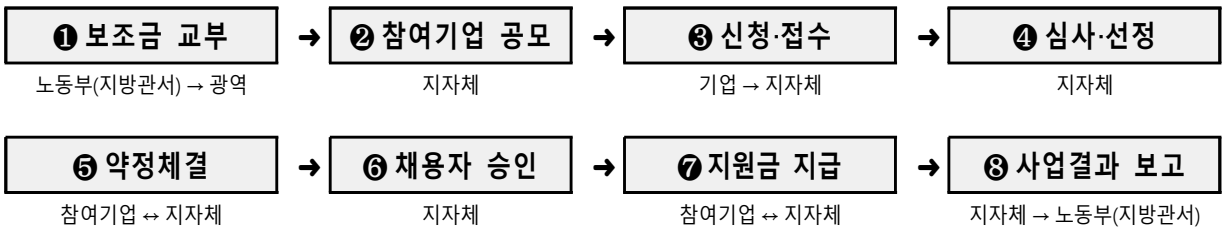
□ **(지원조건 및 수준)**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월 평균 115만원 지원(비수도권 또는 청년 채용시 추가 지원**)**

* **(전문분야)** AI, 경영, 회계, 마케팅, 법률, 제품·기술개발 등

(요건) 경력(관련 분야 2년 이상 종사), 학력(분야별 석사 학위 이상), 자격(개별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 비수도권 또는 청년 채용 시 월 20만원 추가 지원

□ **(지원절차)** 노동부 교부 → 자치단체 공모 → 참여기업 선정·지원



□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지원(2년+1년)

○ 지원기업 2년 지원 + SVI 평가등급 “양호” 이상 시 추가 1년

사 업 명
(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1056-314)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56	314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자율)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Y	N	70~9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자율)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방정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자율)	-	60,025	60,025	75,978	75,978	15,953	26.6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60,025	60,025	50,134	75,97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자율)	-	-	-	-	-	60,025	60,025	50,134	75,978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60,025	60,025	50,134	75,97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60,025	60,025	50,134	75,97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

사업목적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사업내용	지방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면 경상사업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필요성 제기되어 '0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행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6.12.13) 발표 - 노사정위원회『지역고용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권고문』의결('08.5.8) - '20년 예산 회계 변경 편성(고용보험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년 사업 명칭 변경 및 일부 예산 계정이관 (사업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일부 예산 계정 이관: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 지역자율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세종특별자치시계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60,025	75,97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광역지방정부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및 광역지방정부

○ 사업 수혜자 : 지역의 미취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자율)	보조	지방정부	75,978	70~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 재정자주도별 ①50% 미만: 90%, ②50% 이상 70% 미만: 80%, ③70% 이상: 70%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0,025	75,978	15,95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자율)	60,025	75,978	15,953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 (2026년) 60,025 → (2027년 정부안) 75,978백만원, +26.6%**

- (설명) 부산광역시 등 13개 시·도 지역 주력 및 신성장 산업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 등 사업 운영비

- (산출) 13개 시·도 지역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자치단체경상보조) 75,978백만원

연번	지방정부	'26년 본예산	'27년(안)	사업내용
1	부산광역시	4,000	4,224	지역의 주력,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지역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일자리 질 개선 등 사업추진
2	대구광역시	3,200	3,350	
3	인천광역시	4,961	7,107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광역시)	3,150	5,000	
5	대전광역시	1,440	2,330	
6	울산광역시	2,400	2,100	
7	경기도	2,730	2,457	
8	강원특별자치도	1,000	2,000	
9	충청북도	4,013	5,163	
10	충청남도	3,495	4,419	
11	전북특별자치도	4,296	9,550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라남도)	15,000	15,000	
13	경상북도	7,440	7,810	
14	경상남도	2,900	5,468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15~64세 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0%	69.0%	69.5%	70.0%	70.3%
실적	69.0%	69.5%	69.8%	-	-
달성도	101.8%	100.7%	100.4%	-	-

- **측정산식 :**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청년(15~29세)경제활동참가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48.5%	46.2%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참여자고용유지율(장려금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87.4%	87.9%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 중 고용유지일 수 100일 이상 대상자 수/평가대상건수 중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 **성과지표:** 참여자 취업률(고용서비스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46.9%	47.4%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 **성과지표:** 참여자 취업률(교육훈련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37.5%	38.0%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6년	119개 일자리 사업 지원 중(차년도에 인원 집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지역·산업 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및 주요산업 빈일자리 해소

○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유치 및 지역 내 육성·공급 체계 구축, 지역 주력산업 내의 임금, 복지, 노동여건, 생산성 등 격차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업설계 안내 등 지침통보(노동부)
▽
② 사업설계(지방정부)
▽
③ 보조금 지급(노동부)
▽
④ 사업운영(지방정부)
▽
⑤ 지도점검 및 정산(지방정부, 노동부)
▽
⑥ 사업 평가(외부평가기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	-	-	-	-	-	-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	-	-	-	-
2026년	60,025	60,025	-	-	-	50,134	83.5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제주)(1056-315)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56	315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제주)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Y	N	70~90	-

※ 재정자주도별 ①50% 미만: 90%, ②50% 이상 70% 미만: 80%, ③70% 이상: 70%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제주)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방정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제주)	-	6,000	6,000	7,000	7,000	1,000	16.7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6,000	6,000	4,664	7,0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제주)	-	-	-	-	-	6,000	6,000	4,664	7,0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6,000	6,000	4,664	7,0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6,000	6,000	4,664	7,00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제주)

사업목적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사업내용	지방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면 경상사업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필요성 제기되어 '0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행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6.12.13) 발표 - 노사정위원회『지역고용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권고문』의결('08.5.8) - '20년 예산 회계 변경 편성(고용보험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년 사업 명칭 변경 및 일부 예산 계정이관 (사업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일부 예산 계정 이관: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 지역자율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세종특별자치시계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6,000	7,00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광역지방정부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지역의 미취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제주)	보조	제주특별 자치도	7,000	70~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 재정자주도별 ①50% 미만: 90%, ②50% 이상 70% 미만: 80%, ③70% 이상: 70%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6,000	7,000	1,0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제주)	6,000	7,000	1,000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제주) (2026년) 6,000 → (2027년 정부안) 7,000백만원, +16.7%**

-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주력 및 신성장 산업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 등 사업 운영비
- (산출) 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자치단체경상보조) 7,0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15~64세 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0%	69.0%	69.5%	70.0%	70.3%
실적	69.0%	69.5%	69.8%	-	-
달성도	101.8%	100.7%	100.4%	-	-

- **측정산식 :**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청년(15~29세)경제활동참가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48.5%	46.2%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참여자고용유지율(장려금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87.4%	87.9%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 중 고용유지일 수 100일 이상 대상자 수/평가대상건수 중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 **성과지표:** 참여자 취업률(고용서비스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46.9%	47.4%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 **성과지표:** 참여자 취업률(교육훈련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37.5%	38.0%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6년	14개 일자리 사업 지원 중(차년도에 인원 집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지역·산업 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및 주요산업 빈일자리 해소

○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유치 및 지역 내 육성·공급 체계 구축, 지역 주력산업 내의 임금, 복지, 노동여건, 생산성 등 격차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업설계 안내 등 지침통보(노동부)
▽
② 사업설계(지방정부)
▽
③ 보조금 지급(노동부)
▽
④ 사업운영(지방정부)
▽
⑤ 지도점검 및 정산(지방정부, 노동부)
▽
⑥ 사업 평가(외부평가기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	-	-	-	-	-	-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	-	-	-	-
2026년	6,000	6,000	-	-	-	4,664	77.7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세종)(1056-31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56	316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세종)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Y	N	70~9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세종)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방정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세종)	-	1,500	1,500	990	990	△510	△34.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1,500	1,500	840	99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세종)	-	-	-	-	-	1,500	1,500	840	99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	-	-	-	-	1,500	1,500	840	99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1,500	1,500	840	990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세종)

사업목적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사업내용	지방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면 경상사업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필요성 제기되어 '0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행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6.12.13) 발표 - 노사정위원회『지역고용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권고문』의결('08.5.8) - '20년 예산 회계 변경 편성(고용보험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년 사업 명칭 변경 및 일부 예산 계정이관 (사업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일부 예산 계정 이관: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 지역자율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세종특별자치시계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	-	-	1,500	990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광역지방정부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및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 수혜자 : 지역의 미취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세종)	보조	세종특별 자치시	990	70~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 재정자주도별 ①50% 미만: 90%, ②50% 이상 70% 미만: 80%, ③70% 이상: 70%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500	990	△51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세종)	1,500	990	△510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세종) (2026년) 1,500 → (2027년 정부안) 990백만원, △34.0%**

- (설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력 및 신성장 산업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 등 사업 운영비
- (산출) 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자치단체경상보조) 99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15~64세 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0%	69.0%	69.5%	70.0%	70.3%
실적	69.0%	69.5%	69.8%	-	-
달성도	101.8%	100.7%	100.4%	-	-

- **측정산식 :**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청년(15~29세)경제활동참가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48.5%	46.2%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참여자고용유지율(장려금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87.4%	87.9%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 중 고용유지일 수 100일 이상 대상자 수/평가대상건수 중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 **성과지표:** 참여자 취업률(고용서비스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46.9%	47.4%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 **성과지표:** 참여자 취업률(교육훈련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37.5%	38.0%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6년	4개 일자리 사업 지원 중(차년도에 인원 집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지역·산업 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및 주요산업 빈일자리 해소

○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유치 및 지역 내 육성·공급 체계 구축, 지역 주력산업 내의 임금, 복지, 근로여건, 생산성 등 격차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업설계 안내 등 지침통보(노동부)
▽
② 사업설계(지방정부)
▽
③ 보조금 지급(노동부)
▽
④ 사업운영(지방정부)
▽
⑤ 지도점검 및 정산(지방정부, 노동부)
▽
⑥ 사업 평가(외부평가기관)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	-	-	-	-	-	-	-
2024년	-	-	-	-	-	-	-	-	-
2025년	-	-	-	-	-	-	-	-	-
2026년	1,500	1,500	-	-	-	840	56.0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056-317)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000	1056	317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Y	N	70~9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일자리이음프로젝트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지방정부
지역고용인프라구축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인자위지원	고용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상생형격차완화지원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지방정부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136,394	150,108	162,108	130,588	130,588	△19,520	△13.0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37,864	137,864	136,394	-	1,470	162,108	162,108	128,374	130,588
·일자리이음프로젝트	128,034	128,034	126,610	-	1,424	117,006	117,006	89,841	81,000
·지역고용인프라구축	90	90	90	-	-	90	90	45	14,416
·운영비	395	395	349	-	46	295	295	194	327
·산업인자위지원	9,345	9,345	9,345	-	-	9,845	9,845	9,845	9,845
·지역상생형격차완화지원	-	-	-	-	-	34,872	34,872	28,449	25,0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37,864	137,864	136,394	-	1,470	162,108	162,108	128,374	130,588
·일반수용비(210-01)	210	178	152	-	25	145	105	56	145
·공공요금(210-02)	4	4	3	-	1	-	-	-	-
·특근매식비(210-05)	13	13	12	-	1	13	13	10	13
·임차료(210-07)	1	3	3	-	-	-	-	-	-
·일반용역비(210-14)	1,208	1,208	1,208	-	-	90	90	45	90
·국내여비(220-01)	25	74	64	-	10	25	65	35	25
·국외여비(220-02)	41	22	18	-	4	31	31	20	31
·사업추진비(240-01)	51	51	46	-	5	31	31	23	31
·민간경상보조(330-02)	-	-	-	-	-	2,000	2,000	1,30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26,916	126,916	125,492	-	1,424	136,410	148,410	115,522	113,538
·국제분담금(340-02)	50	50	50	-	-	50	50	50	82
·사업출연금(350-02)	9,345	9,345	9,345	-	-	11,313	11,313	11,313	15,63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일자리이음프로젝트

사업목적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등 고용 현안 해결

(1-2) 지역고용인프라

사업목적	지역고용인프라확충
사업내용	지역고용거버넌스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 시스템 등 강화

(1-3) 산업인자위지원

사업목적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 직무중심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협회·기업, 노동자 단체 등 참여)를 지원
사업내용	산업별 인력현황 조사·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훈련·자격기준 마련,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등 수행

(1-4) 지역상생형격차완화지원

사업목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원하청 격차완화 지원
사업내용	협력사 노동자의 실질 소득 증대 및 처우개선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필요성 제기되어 '0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행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6.12.13) 발표 - 노사정위원회『지역고용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권고문』의결('08.5.8) - '20년 예산 회계 변경 편성(고용보험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년 사업 명칭 변경 및 일부 예산 계정이관 (사업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일부 예산 계정 이관: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 지역자율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세종특별자치시계정)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47,504	106,292	137,864	162,108	130,58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광역지방정부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및 광역지방정부

○ 사업 수혜자 : 지역의 미취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일자리이음프로젝트	보조	지방정부	81,000	70~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지역고용인프라구축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5,788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산업인자위지원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9,845	10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지역상생형 격차완화지원	보조	지방정부	24,000	70~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62,108	130,588	△31,520
일자리이음프로젝트	117,006	81,000	△36,006
지역고용인프라구축	90	14,416	14,326
운영비	295	327	32
산업인자위지원	9,845	9,845	-
지역상생형격차완화지원	34,872	25,000	△9,872

○ **일자리이음프로젝트 (2026년) 117,006 → (2027년 정부안) 81,006백만원, △30.8%**

- (설명) ①초광역권 일자리 사업의 운영, ②일자리를 중심으로 광역 내 기초지방정부 간 연계사업 운영 ③예기치 못한 고용변동(관세, 재난 등) 대응 등
- (산출) ①광역이음(초광역권 일자리 사업): 30,000백만원(4개 모델 x 7,500백만원)
  ②기초이음(기초단위 연계 일자리 사업): 15,000백만원(10개 모델 × 1,500백만원)
  ③버팀이음(고용변동 대응 등): 36,000백만원(9개소 × 4,000백만원)

※ 일자리이음 프로젝트 지원(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 한국고용정보원 출연금) 등 지역고용인프라구축 내역사업으로 이관

○ **지역고용인프라구축 (2026년) 90 → (2027년 정부안) 14,416백만원, +15917.8%**

- (설명) 사업모델 발굴, 사업 심사·평가,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출연기관(한국고용정보원) 운영비 및 지역일자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 (산출) 출연기관 운영비 1,118백만원(전년동), 지역일자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4,670백만원, 지역고용거버넌스 지원 7,650백만원(전년동), 공시제인센티브 888백만원(전년동), 지역고용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90백만원(전년동)

○ **운영비 (2026년) 295 → (2027년 정부안) 327백만원, 10.8%**

- (설명) ①사업추진을 위한 지방관서 운영비 등(전년 동), ②유로 환율 상승에 따른 국제분담금 상승 반영

- (산출) ①지방관서 운영비 등 245백만원(전년 동), ②국제분담금(OECD LEED 의무부담금*) 82백만원('26년 50백만원 → '27년 82백만원, 32백만원 증액)

○ **산업인자위지원 (2026년) 9,845 → (2027년 정부안) 9,845백만원, 전년동**

- (설명) ① 산업인자위 지원, ②산업맞춤형 AI 인재전략 수립 지원, ③직업계고 학과 및 교과 개편지원 등

- (산출) ①산업인자위 지원: 9,345백만원(21개소 x 445백만원),
②산업맞춤형 AI 인재전략 수립 지원: 300백만원(3개 컨소시엄 × 100백만원),
③교과편성 지원: 200백만원(5개 학교 × 40백만원)

○ **지역상생형격차완화지원 (2026년) 34,872 → (2027년 정부안) 25,000백만원, △28.3%**

- (설명) 원하청-지방정부-전문가-노동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이행 지원

- (산출) ①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24,000백만원(12개소×2,000백만원)
②운영위탁 지원: 1,0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15~64세 고용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68.0%	69.0%	69.5%	70.0%	70.3%
실적	69.0%	69.5%	69.8%	-	-
달성도	101.8%	100.7%	100.4%	-	-

- **측정산식 :**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청년(15~29세)경제활동참가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48.5%	46.2%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국가데이터처

○ **성과지표:** 참여자고용유지율(장려금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87.4%	87.9%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 중 고용유지일 수 100일 이상 대상자 수/평가대상건수 중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 **성과지표:** 참여자 취업률(고용서비스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46.9%	47.4%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 **성과지표:** 참여자 취업률(교육훈련 유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	-	-	37.5%	38.0%
실적	-	-	-	-	-
달성도	-	-	-	-	-

- **측정산식** :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참여자정보 수집 및 고용보험DB 연계

○ **성과지표:** 고용창출 효과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44%	42.2%	42.2%	-	-
실적	40.6%	44.5%	44.5%	-	-
달성도	92.3%	105.5%	105.5%	-	-

- **측정산식 :** (취업자수/수료자수) *100 [교육훈련 사업 부문 수료자 중 취업자수]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지방정부 최종 성과 보고서

○ **성과지표:**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90점	90점	91점	-	-
실적	92점	92점	94점	-	-
달성도	102.2%	10.2.2%	103.3%	-	-

- **측정산식 :**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 값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료수집방법/출처 :** 외부 전문기관 참여자 만족도 조사보고서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132개 사업 선정, 133,307백만원 지원 / 35,582명 취업
2024년	194개 사업 선정, 94,321백만원 지원 / 24,581명 취업
2025년	252개 사업 선정, 126,610백만원 지원 / 22,048명 취업
2026년	147개 사업 선정 및 지원 중(차년도에 인원 집계)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지방정부가 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제안하고, 노동부가 공모로 선정·지원하는 대표적인 상향식 고용정책으로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성공모델 전파

○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산업 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및 주요산업 빈일자리 해소

○ 일자리-생활권 연결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거점 육성 및 초광역권 균형발전 지원 등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

○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신성장산업 발굴·육성, 지역 일자리 질 개선 및 참여 주체 다양화를 통해 임금·복지·노동환경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일자리이음프로젝트,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

① 사업공모(노동부)
▽
② 공모신청(지방정부)
▽
③ 선정 및 협약서체결(지방정부, 노동부)
▽
④ 보조금 지급(노동부)
▽
⑤ 지도점검 및 정산(지방정부, 노동부)
▽
⑥ 사업 평가(외부평가기관)

<일자리이음프로젝트,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

① 산업인자위 공개모집(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② 공모신청(산업별 협·단체)
▽
③ 산업인자위 선정 및 약정체결
▽
④ 운영비 지원금 지급(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
⑤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⑥ 회계정산(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26.3.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0호)
②~⑥: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칙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비 지원금 운용 지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지역균형발전 사업평가	2024년	○ 의견 :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전략에 부합하게 기획되어 있으며, 주민소득 개선,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방지 등에 효과 ○ 결과 : 우수
보조사업 연장평가	2024년	○ 의견 : 지자체 담당자의 법령·지침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집행에 대한 예방 필요, 현재 운영 중인 보조사업 성과지표(훈련의 고용창출 효과성)는 교육훈련 외 다양한 유형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변경이 필요 ○ 결과 : 사업방식 변경* * 시행지침 개정을 통한 부적정 집행 대응체계 강화, 신규 성과지표 개발·적용 등 조치완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4년	○ 의견 : 지역의 요구에 따라 매년 새롭게 사업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현장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사업으로 긍정적 ○ 결과 : 양호
지역균형발전 사업평가	2025년	○ 의견 : 3년 연속 '우수' 등급 사업으로 사업운영의 적절성 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결과 : 우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5년	○ 의견 :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기획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사업 발굴 등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결과 : 양호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년 5월	○ 의견 : 지방소멸·수도권 집중·5극3특 전략과 연계된 필요성은 크나, 5극3특·초광역 노동시장 통합에 맞게 일자리 이음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지역상생형일터조성프로젝트 및 산업인자위 지원 부분은 재편을 전제(유사사업으로 통폐합 및 이관 등)로 한 조정이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구분	연도	주요내용
보조사업 연장평가	2026년 5월	○ 의견 : 지방소멸·수도권 집중·5극3특 전략과 연계된 필요성은 크나, 5극3특·초광역 노동시장 통합에 맞게 일자리 이음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지역상생형일터조성프로젝트 및 산업인자위 지원 부분은 재편을 전제(유사사업으로 통폐합 및 이관 등)로 한 조정이 필요. ○ 결과 : 사업개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026년 5월	○ 의견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력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이라는 차별성이 있고, 비수도권 중심의 재정투입과 지역현안 대응 성과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운영의 적절성과 정책적 파급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결과 : 양호

(8-2) 국회 지적사항

구분	연도	주요내용
상임위 23회계연도 결산	2024년	○ 지적 : 과업량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의 용역계약 체결 필요 ○ 조치 : '24년 기존 사업규모 축소, 사업효율화에 따라 위탁사업비 감액('24.1.10.)
상임위 24회계연도 결산	2025년	○ 지적 : 산업인자위 예산 편성(現 지특회계) 부적정 및 사업비 편성 기준 상향 필요 ○ 조치 : 사업비 편성 기준 상향 완료 (15%→20%, '26.1.15)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47,504	147,504	-	-	-	146,297	99.2	-	1,207
2024년	106,292	106,292	-	-	-	105,796	99.5	-	496
2025년	107,864	137,864	-	-	-	136,394	98.9	-	1,470
2026년	150,108	162,108	-	-	-	128,374	79.2	-	-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4년	전용	50	국내 여비 부족으로 수용비에서 전용
2025년	전용	30	국내 여비 부족으로 수용비에서 전용
2026년	전용	40	국내 여비 부족으로 수용비에서 전용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7041-3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일반회계	제주특별자치도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41	301
명칭	사회복지	고용	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직업안정기관운영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Y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고용서비스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직업안정기관운영 (지특)	1,010	1,016	1,016	1,092	1,041	25	2.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10	1,010	1,010	-	-	1,016	1,016	1,016	1,041
·직업안정기관운영	1,010	1,010	1,010	-	-	1,016	1,016	1,016	1,041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010	1,010	1,010	-	-	1,016	1,016	1,016	1,04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010	1,010	1,010	-	-	1,016	1,016	1,016	1,04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목적·내용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제주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존 운영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① 「고용정책기본법」제 11조와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직업

	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⑤항 생략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07년 ○ '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 '07년부터 이관된 제주고용센터의 기본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보조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981	981	1,010	1,016	1,04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고용복지+센터)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직업안정기관운영 (지특)	보조	제주특별자치도(제주고용복지+센터)	1,041	국고 1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16	1,041	25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1,016	1,041	25

○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 (2026년) 1,016백만원 → (2027년 정부안) 1,041백만원, +2.4%**

①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및 운영비 등 : 900백만원

②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 100백만원

③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강사 수당(구직자 단기취업특강) : 15백만원

④ 청사 관리 소모품 구입 : 26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제주고용복지+센터 1개소 운영
2024년	제주고용복지+센터 1개소 운영
2025년	제주고용복지+센터 1개소 운영
2026년	제주고용복지+센터 1개소 운영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제주고용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제주도민에게 제공되는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노동부 (보조금교부)	○ 예산 배정 예산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집행)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용복지+센터 운영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81	981	-	-	981	981	100	-	-
2024년	981	981	-	-	981	981	100	-	-
2025년	1,010	1,010	-	-	1,010	1,010	100	-	-
2026년	1,016	1,016	-	-	1,016	1,016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7041-31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41	310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Y	N	N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내일배움카드운영 지원(지특)	106	109	109	122	128	19	17.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06	106	106	-	-	109	109	109	128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106	106	106	-	-	109	109	109	128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106	106	106	-	-	109	109	109	12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6	106	106	-	-	109	109	109	128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사업목적	제주지역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
사업내용	제주지역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8조 제1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8조(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추진경위	○ '98년부터 실업자 재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 및 창업훈련 실시 ○ '98.8월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유망분야훈련 실시 ○ '06.7.1부터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제주특별자치도로 분리 ○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제도개선, 사업비는 내일배움카드(고보)로 일원화하고, 운영비만 편성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02	104	106	109	12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09	128	19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 (지특)	109	128	19

○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2026년) 109 → (2027년 정부안) 128백만원, +17.4%**

- (설명) 내일배움카드 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산출) 인건비 117백만원(=3명×39,000천원)
  운영비 11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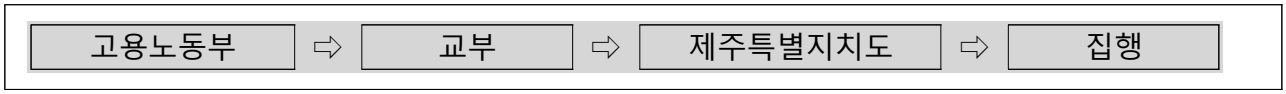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2	-	-	-	102	102	100.0	-	-
2024년	104	-	-	-	104	104	100.0	-	-
2025년	106	-	-	-	106	106	100.0	-	-
2026년	109	-	-	-	109	109	1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8)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7041-316)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7000	7041	316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특)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제주특별자치도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국민취업지원제도 (지특)	8,910	9,957	9,957	11,227	11,227	1,270	12.8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910	8,910	8,910	-	-	9,957	9,957	5,257	11,227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8,172	8,172	8,172	-	-	9,396	9,396	4,96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738	738	738	-	-	561	561	296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	-	-	-	-	8,053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	-	-	-	-	-	-	-	3,174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8,910	8,910	8,910	-	-	9,957	9,957	5,257	11,22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910	8,910	8,910	-	-	9,957	9,957	5,257	11,227

3. 사업 설명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 제공

(1-2)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사업목적	첫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특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사업내용	첫 취업 준비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 제공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추진경위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17.5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 및 제도 기본 골격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18.8월, '19.3월) -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마련, 제11차 일자리위원회 의결·발표('19.6.4) -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19.9.16) →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1년~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3,023	8,955	8,910	9,957	11,227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취업경험 등 미충족자는 선발형으로 지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이하)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15~34세 청년 및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8,053	10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3,174	10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9,957	11,227	1,270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9,396	-	△9,396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561	-	△561
국민취업지원제도	-	8,053	8,053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	3,174	3,174

○ **국민취업지원제도: 8,053백만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7,658백만원

- 구직촉진수당 6,223백만원
- 취업성공수당 625백만원
- 민간위탁비 93백만원
- 운영비 717백만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395백만원

- 참여수당 58백만원
- 취업성공수당 104백만원
- 민간위탁비 233백만원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3,174백만원**

1)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Ⅰ유형: 3,055백만원

- 구직촉진수당 2,571백만원
- 취업성공수당 11백만원
- 민간위탁비 473백만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119백만원

- 참여수당 24백만원
- 취업성공수당 1백만원
- 민간위탁비 94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은 '22년부터 성과관리 대상 아님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628명 참여(Ⅰ유형 2,183명, Ⅱ유형 445명) ·일경험프로그램 90명 연계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540명 참여(Ⅰ유형 2,112명, Ⅱ유형 428명) ·일경험프로그램 78명 연계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735명 참여(Ⅰ유형 2,097명, Ⅱ유형 638명)
2026.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1,824명 참여(Ⅰ유형 1,491명, Ⅱ유형 333명)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로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위해 취업지원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①지원대상자 선정 → ②취업지원서비스

① **(지원대상자 선정)** 참여자 모집·발굴 및 신청자 초기상담 → 신청접수 → 수급자격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수급자격자 선발·통지

1 참여자 모집·발굴 및 초기상담	→	2 신청접수	→	3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4 수급자격자 결정·통지
❶사각지대에 있는 참여자 발굴 ❷제도소개 ❸참여자 모집 및 프로파일링 ❹신청예정자 구직의사·능력 평가		❶지원요건의 자가진단 지원 ❷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안내 및 보완요청 ❸후속절차 안내		❶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지원요건 심사 ❷유형별 수급자격자 분류 (요건심사형↔선발형) ❸추가확인 필요 정보 유선확인 및 추가서류 징구		❶심사결과 통지 ❷통지결과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통지 ❸후속절차 안내

②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사후관리

5 취업활동계획 수립	→	6-1 고용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제공	6-2 복지서비스 제공	→	7 구직활동 지원	→	8 사후관리
❶수급자격자의 취업의지·능력 관련 심층 분석 ❷희망진로 및 선호직종 상담 ❸진로탐색 관련 개인별 과제 부여 및 점검 ❹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❺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❻구직촉진수당 지급(또는 중단)		❶직업훈련 초기상담을 통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기관 연계 ❷일경험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❸창업지원 안내 및 연계	❶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❷양육, 정신건강, 금융 등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서비스 등		❶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이력서 클리닉, 면접특강 등 ❷동행면접 ❸취업처 정보제공 및 알선 서비스 제공 ❹구직활동의무 이행확인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또는 중단)		❶취업사실 확인, 취업성공수당 지원 ❷취업자 → 근속유지를 위한 유선상담 ❸미취업자 → 구직정보 제공 등 ❹부정수급자 모니터링·조사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구분	연도	주요내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2024년	○ 의견: 개선필요 ○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일자리 전문가 등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 사업참여자 모집, 지역 일자리 발굴 등에 반영할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담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 사업참여자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를 개발·관리할 필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2025년	○ 의견: 개선필요 ○ 결과 - 현재보다 정교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 필요 - 사업 협업, 사업 운영 관리, 그리고 상담사 역량 및 동기 제고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제주 특색을 반영한 사업 운영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 필요 - 사업 참여자 양적 목표에 부합한 성과 개선 필요 - 제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 혹은 환류 노력 필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2026년	○ 의견: 개선필요 ○ 결과 - 좀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을 포괄하기 위해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하였고, 지원인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원 인원 향상 등 일정 수준의 향상된 성과를 보임 - 세부 유형별 사업예산 추계를 정교화할 필요 - 고용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제주 지역 특성이 부합한 고용서비스 제공 전략을 자체 수립해 운영할 필요 - 사업 참여자의 의견 수렴 통로를 확대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 필요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3,023	13,023	-	-	13,023	13,023	100.0	-	-
2024년	8,955	8,955	-	-	8,955	8,955	100.0	-	-
2025년	8,910	8,910	-	-	8,910	8,910	100.0	-	-
2026년	9,957	9,957	-	-	9,957	5,257	52.8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 제주노동위원회지원(7041-401)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일반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F	7000	7041	401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제주노동위원회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제주노동위원회지원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제주노동위원회지원	1,335	1,451	1,451	1,489	1,501	50	3.4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14	1,414	1,335	0	0	1,451	1,451	1,146	1,501
· 전문성강화지원	260	260	192	0	0	263	263	153	280
· 청사관리지원	86	86	85	0	0	86	86	50	86
· 인력지원	968	968	968	0	0	1,002	1,002	885	1,035
· 기본경비지원	100	100	90	0	0	100	100	58	100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1,414	1,414	1,335	0	0	1,451	1,451	1,146	1,501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414	1,414	1,335	0	0	1,451	1,451	1,146	1,501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전문성강화지원

사업목적	제주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 조정 및 심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사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및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집단분쟁 사건 처리 내실화 등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지원

(1-2) 청사관리지원

사업목적	제주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 조정 및 심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사업내용	제주노동위원회의 청사관리 비용 지원

(1-3) 인력지원

사업목적	제주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 조정 및 심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사업내용	제주노동위원회의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원

(1-4) 기본경비지원

사업목적	제주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 조정 및 심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사업내용	제주노동위원회의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
추진경위	○ 2007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관장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의 및 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지원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1,350	1,373	1,414	1,451	1,501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제주지역 노동분쟁 관련 근로자 및 제주지노위 소속 위원, 조사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1,451	1,501	50
전문성강화지원	263	280	17
청사관리지원	86	86	-
인력지원	1,002	1,035	33
기본경비지원	100	100	-

○ 지방노동위원회전문성 강화 (2026년) 263 → (2027년 정부안) 280백만원, +6.5%

- (설명) '27년 위원 회의·안건검토 건수 증가 예상에 따른 회의수당 등 17백만원 증액
- (산출) 안건검토비·회의수당 161백만원, 워크숍·전원회의 운영 41백만원, 조사관 위탁교육비 및 홍보 34백만원, 권리구제대리인선임료 23백만원,, 보전지출 등 21백만원

○ 지방노동위원회청사관리지원 (2026년) 86 → (2027년 정부안) 86백만원, 전년동

- (설명) 청사 사용료 및 관리비
- (산출) 청사 사용료 및 관리비 77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교체 등 9백만원

○ 지방노동위원회인력지원 (2026년) 1,002 → (2027년 정부안) 1,035백만원, +3.3%

- (설명)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직원(11명)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33백만원 증액
- (산출) 전년도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대비 공통 인상률 반영

○ 지방노동위원회청사관리지원 (2026년) 100 → (2027년 정부안) 100백만원, 전년동

- (설명)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본경비 지원
- (산출) 제주노동위원회 기본경비 지원 100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350	1,350	0	0	1,350	1,350	100.0	0	0
2024년	1,373	1,373	0	0	1,373	1,373	100.0	0	0
2025년	1,414	1,414	0	0	1,414	1,414	100.0	0	0
2026년	1,451	1,451	0	0	1,451	1,146	79.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7041-402)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5D	7000	7041	402
명칭	사회복지	고용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N	Y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3,598	3,720	0	3,777	3,863	143	3.8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598	3,598	3,216	0	382	3,720	3,162	2,402	3,863
-광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598	3,598	3,216	0	382	3,720	3,162	2,402	3,863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598	3,598	3,216	0	382	3,720	3,162	2,402	3,863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598	3,598	3,216	0	382	3,720	3,162	2,402	3,863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사업목적	제주고용센터의 원활한 운영
사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라 이관된 제주고용센터 운영 시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내지 제403조
추진경위	○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함 ○ 2006. 7. 1. 제주고용센터 제주특별자지도 이관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3,278	3,493	3,598	3,720	3,86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제주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제주고용센터업무 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3,863	1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720	3,863	143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3,720	3,863	143

○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2026년) 3,720 → (2027년 정부안) 3,863백만원, +3.8%**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3,278백만원 집행완료
2024년	3,493백만원 집행완료
2025년	3,598백만원 집행완료
2026년	3,720백만원 중 2,402백만원 집행완료('26.7월 기준)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제주고용센터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노동부 (보조금교부)	○ 예산 배정 예산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집행)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용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집행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278	3,278	0	0	3,278	3,278	100	0	0
2024년	3,493	3,493	0	0	3,493	3,493	100	0	0
2025년	3,598	3,598	0	0	3,598	3,598	100	0	0
2026년	3,720	3,720	0	0	3,162	2,402	64.5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5.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

Ⅲ.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 업 명
(1)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135-7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회계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35	7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폴리텍대학 출연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임차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운영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40,607	42,849	42,849	42,958	42,958	109	0.3

1)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41,809	41,809	40,607	-	1,202	42,849	42,849	21,689	42,958
·임차료	28,632	28,632	27,733	-	899	29,176	29,176	14,701	29,113
·운영비	13,177	13,177	12,874	-	303	13,673	13,673	6,988	13,845

2) 비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추경)	2025년 예산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예산액 (추경)	2026년 예산 현액	2026년 집행액	2027년 정부안 액
○ 합계	41,809	41,809	40,607	-	1,202	42,849	42,849	21,689	42,958
·임차료(210-07)	28,632	28,632	27,733	-	899	29,176	29,176	14,701	29,113
·민간경상보조(320-01)	13,177	13,177	12,874	-	303	13,673	13,673	6,988	13,845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1-1) 임차료

사업목적	국가기간산업·기술발전에 필요한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에 필요한 공학관과 기숙사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충하고 건물 운영에 따른 임차료 지급
사업내용	27개소 민간투자비 균등분할 지급

(1-2) 운영비

사업목적	국가기간산업·기술발전에 필요한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에 필요한 공학관과 기숙사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충하고 건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
사업내용	27개소 인건비, 제경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추진경위	○ '70년대 직업훈련시설로 설립된 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승격, 학과·정원 증가 등으로 교육훈련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05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설확보 추진 ○ 2005·2006·2007·2016·2017·2018·2020년도 사업의 정부지급금(임차료, 운영비) 지급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부안
사업비	33,565	36,873	41,809	42,849	42,958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사업 수혜자 : 다기능기술자 재학생 및 비학위과정 훈련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임차료	출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9,113	100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3, 39조, 48조, 사회적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운영비			13,845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액(추경)(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42,849	42,958	109
임차료	29,176	29,113	△63
운영비	13,673	13,845	172

○ **임차료 (2026년) 29,176 → (2027년 정부안) 29,113백만원, △0.2%**

- (설명) BTL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되는 총 민간투자비에 지표금리(최근 3년간 5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3.162%*))를 반영하여 산정, '26년 대비 △0.2% 감액
  * '27년 총 2회 사업수익률 조정(예정): '06년 BTL사업 1회(10.7.), '18년 BTL사업 1회(12.5.)
- (산출) 27개소 x 1,078백만원(평균치)

○ **운영비 (2026년) 13,673 → (2027년 정부안) 13,845백만원, +1.3%**

- (설명)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및 '27년 27개소 연중 운영비 반영, '26년 대비 +1.3% 증액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치 추정값(3.7%) 적용
- (산출) 27개소 x 513백만원(평균치)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운영성과 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4년	운영성과 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5년	운영성과 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6년	운영성과 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학위 및 비학위과정 교육·훈련생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 청년고용률 증대 및 취약계층 훈련을 통한 국가기간·전략산업분야 인력 공급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사업기준 및 지침마련		예산 및 자금배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정관 제8조		정관 제27조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피출연·피보조 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폴리텍대학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본예산액	추경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액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3,565	33,565	-	1,200	34,765	34,763	103.6	-	2
2024년	36,873	36,873	-	-	36,873	35,406	96.0	-	1,467
2025년	41,809	41,809	-	-	41,809	40,607	97.1	-	1,202
2026년	42,849	42,849	-	-	42,849	21,689	50.6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1,200	한국폴리텍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 사업 적용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 임대료 부족액 지원
2023년	불용	2	집행 잔액
2024년	불용	1,467	집행 잔액
2025년	불용	1,202	집행 잔액

5. 기타 추가자료

(1) BTL사업 산출내역

(2) BTL사업 현황

참고1 2027년 BTL 정부지급금 산출내역

□ ('27년 요구) 42,958백만원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총계	정부지급금	42,957,665,431	
	임대료*	29,112,756,750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원리금 균등상환(20년)
	운영비*	13,844,908,681	운영비에 성과평가 결과 및 직전 분기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2005년 BTL사업	합계	4,141,483,257	
	임대료	2,538,809,240	10,254,247,562 × (1.15% / (1 - (1 + 1.15%)^(-20))) × 1.1 × 4회
	운영비	1,602,674,017	217,753,167 × ((117.8% / 74.28%) × 100%) × 1.1 × 4회
2006년 BTL사업	합계	7,754,067,781	
	임대료	5,165,795,030	26,971,106,313 × (1.02% / (1 - (1 + 1.02%)^(-24))) × 1.1 × 4회
	운영비	2,588,272,751	358,562,385 × ((117.8% / 76.13%) × 100%) × 1.1 × 4회
2007년 BTL사업	합계	10,193,664,843	
	임대료	6,550,862,120	31,183,092,162 × (1.12% / (1 - (1 + 1.12%)^(-24))) × 1.1 × 4회
	운영비	3,642,802,723	524,344,233 × ((117.8% / 79.10%) × 100%) × 1.1 × 4회
2016년 BTL사업	합계	6,551,863,421	
	임대료	4,641,458,800	41,225,164,431 × (0.91% / (1 - (1 + 0.91%)^(-60))) × 1.1 × 4회
	운영비	1,910,404,621	334,588,740 × ((117.8% / 96.25%) × 100%) × 1.1 × 4회
2017년 BTL사업	합계	3,663,242,653	
	임대료	2,511,083,080	25,002,691,513 × (1.1% / (1 - (1 + 1.1%)^(-60))) × 1.1 × 4회
	운영비	1,152,159,573	204,831,687 × ((117.8% / 97.70%) × 100%) × 1.1 × 4회
2018년 BTL사업	합계	5,443,472,368	
	임대료	3,881,775,040	37,930,795,370 × (1.05% / 1 - (1 + 1.05%)^(-60)) × 1.1 × 4회
	운영비	1,561,697,328	281,305,511 × ((117.8% / 98.99%) × 100%) × 1.1 × 4회
2020년 BTL사업	합계	5,209,871,108	
	임대료	3,822,973,440	49,407,844,232 × (0.92% / 1 - (1 + 0.92%)^(-80)) × 1.1 × 4회
	운영비	1,386,897,668	278,836,329 × ((117.8% / 101.84%) × 100%) × 1.1 × 4회

* 분기별 임대료 산출방식

$$\text{분기별시설임대료} = \text{총민간투자비} \times \frac{\text{분기사업수익율}}{1-(1+\text{분기사업수익율})^{-(\text{임대기간})}}$$

1. 사업수익률(단, 가산율 제외)은 5년마다 재산정('06년, '07년 BTL사업은 2년 주기 조정)
2. 분기사업수익율 = (1+연간사업수익율)1/4-1
3. 임대기간은 수익률 조정일 기준 잔여 분기를 적용

* 분기별 운영비 산출방식 : 분기별 운영비 × ((분기별 물가지수 / 고시일 기준 물가지수) × 100)

참고2 BTL 사업 현황

구분 (동수) (연면적)	캠퍼스 (동수) (연면적)	건물용도 (준공일자) (연면적)	총민간 투자비 (억원)	정부지급금(경상가 / 억원) 합계 (연간)	임대료 (연간)	운영비 (연간)	사업 시행자 (SPC)	추진경과 및 계획
합계	**37개 (53개동) (301,701㎡)**	**기숙사 22개동(2,740실) 공학관 23개동 식당 등 8개동**	**5,749**	**7,999 (400)**	**5,141 (258)**	**2,858 (142)**		
2005년 BTL사업 (7개동) (30,434㎡)	서울 정수 (2개동) (12,049㎡)	기숙사(2인실/100) (2007-12-31) (5,719㎡)	303억원 서울정수 (119억원) 인천 (115억원) 반도체 (69억원)	812 (41)	531 (27)	281 (14)	㈜기능대 비티엘(7) 세안텍스 신한건설 일성건설 한화생명 중소기업은행 동양생명 광주은행	· 운영기간 : 2008-01-02~2028-01-01 · 운영사 : 세안텍스 · 운영비 : 협약 운영비X물가지수 변동분 · 수익률 : 5년 만기 국고채+1.0% (5년 단위 조정) · 2005.05.03. : 타당성 조사 · 2005.06.08. : 사업 고시(노동부) · 2005.08.26. : 사업계획서 평가 · 2005.09.01. : 협상대상자 선정 · 2006.02.14. : 실시협약 체결 · 2006.09.15. : 실시계획 승인 · 2007.12.31. : 준공 · 2008.01.02. : 운영개시(20년간/세안텍스)
		공학관 (2007-12-31) (6,329㎡)						
	인천 (3개동) (11,552㎡)	공학관 (2008-02-13) (3,315㎡)						
		공학관 (2008-02-13) (3,957㎡)						
		기숙사(2인실/100) (2008-02-13) (4,280㎡)						
	반도체(안성) (2개동) (6,834㎡)	공학관 (2007-12-31) (3,455㎡)						
		기숙사(2인실/100) (2007-12-31) (3,379㎡)						
2006년 BTL사업 (10개동) (59,546㎡)	대전 (1개동) (10,949㎡)	기숙사(2인실/250) (2013-10-04) (10,949㎡)	668억원 대전 (129억원) 대구 (123억원) 창원 (120억원) 부산 (186억원) 항공 (110억원)	1,570 (79)	1,074 (54)	496 (25)	㈜기술교육 지킴이(8) 이수건설 동현건설 삼영건설 포스코ICT 청광건설 ㈜에스엠 에스피씨 자원관리 한화엘티아이 인프라	· 운영기간 2013-10-07~2033-10-06 (대전,대구,창원,항공) 2014-04-01~2034-03-31 (부산) · 운영사 : 에스엠 · 운영비 : 협약 운영비X물가지수 변동분 · 수익률 : 5년 만기 국고채+1.0% (2년 단위 조정) · 2006.07.07. : 타당성 조사 · 2006.11.20. : 사업 고시(노동부) · 2007.03.09. : 사업계획서 평가 · 2008.02.14. : 협상대상자 선정 · 2009.08.24. : 실시협약 체결 · 2012.03.23. : 실시계획 승인 · 2014.03.31. : 준공 · 2014.04.01. : 운영개시(20년간/에스엠)
	대구 (2개동) (11,006㎡)	공학관·기숙사(2인실/60) (2013-10-01) (10,251㎡)						
		식당 (2013-10-04) (756㎡)						
	창원 (2개동) (11,302㎡)	공학관 (2013-10-04) (5,806㎡)						
		기숙사(2인실/140) (2013-10-04) (5,496㎡)						
	부산 (3개동) (17,524㎡)	공학관 (2013-07-15) (6,750㎡)						
		공학관 (2013-10-07) (2,610㎡)						
		기숙사(2인실/200) (2014-03-31) (8,164㎡)						
	항공(사천) (2개동) (8,764㎡)	공학관 (2013-10-04) (4,597㎡)						
		기숙사(2인실/100) (2013-10-04) (4,168㎡)						
2007년 BTL사업 (10개동) (65,521㎡)	남인천 (1개동) (4,420㎡)	기숙사(2인실/100) (2012-02-21) (4,420㎡)	832억원 남인천 (58억원) 화성 (57억원) 춘천 (59억원) 아산 (47억원) 광주 (355억원) 김제 (89억원) 구미 (60억원) 울산 (59억원) 바이오 (48억원)	1,910 (95)	1,222 (61)	688 (34)	㈜선진공학 배움터(16) KR산업 이수건설 문주건설 포스코ICT 제이아이건설 고운건설 상경건설 새천년건설 동신건설 기림건설 씨엔에스 두잉씨엔에스 한국교육 금융투자 한국금융 정책공사 흥국화재 농협	· 운영기간 2012-03-02~2032-03-01 (남인천,화성,구미,울산,바이오,아산) 2012-08-10~2032-08-09 (춘천, 광주, 김제) · 운영사 씨엔에스 (광주, 김제, 구미, 울산) 두잉씨엔에스 (남인천, 화성, 춘천, 아산, 바이오) · 운영비 : 협약 운영비X물가지수 변동분 · 수익률 : 5년 만기 국고채+1.2%+금리변동분 (은행채-국채) (2년 단위 조정) · 2007.03.23. : 타당성 조사 · 2007.12.27. : 사업고시(노동부) · 2008.05.23. : 사업계획서 평가 · 2008.06.11. : 협상대상자 선정 · 2009.08.24. : 실시협약 체결 · 2010.10.30. : 실시계획 승인 · 2012.07.27. : 준공 · 2012.08.10. : 운영개시 (20년간 / 씨앤에스, 두잉씨앤에스)
	광주 (2개동) (28,614㎡)	공학관 (2012-07-26) (16,653㎡)						
		기숙사(2인실/300) (2012-07-26) (11,960㎡)						
	전북(김제) (1개동) (7,118㎡)	기숙사(2인실/180) (2012-07-26) (7,118㎡)						
	구미 (1개동) (4,630㎡)	기숙사(2인실/100) (2012-02-21) (4,630㎡)						
	울산 (1개동) (4,627㎡)	기숙사(2인실/100) (2012-02-21) (4,627㎡)						
	바이오(논산) (1개동) (3,330㎡)	기숙사(2인실/60) (2012-02-21) (3,330㎡)						
	춘천 (1개동) (4,578㎡)	기숙사(2인실/100) (2012-07-25) (4,578㎡)						
	아산 (1개동) (3,293㎡)	기숙사(2인실/60) (2012-02-21) (3,293㎡)						

구분 (동수) (연면적)	캠퍼스 (동수) (연면적)		건물용도 (준공일자) (연면적)	총민간 투자비 (억원)	정부지급금(경상가 / 억원)			사업 시행자 (SPC)	추진경과 및 계획
					합계 (연간)	임대료 (연간)	운영비 (연간)		
2016년 BTL사업 (6개동) (24,757㎡)	창원 (5개동) (20,317㎡)		기숙사(2인실/100) (2020-08-13, 5,139㎡) 공학관·산학협력관 (2020-08-13, 10,113㎡) 공학관 (2020-08-13, 5,014㎡) 경비실 (2020-08-13, 42㎡) 폐유보관동 (2020-08-13, 9㎡)	522억원 창원2 (430억원) 영주 (92억원)	1,156 (58)	710 (36)	446 (22)	㈜참기술인(7) 대보건설 계룡건설 동신건설 동신티엔지 KR서비스 HDS자산관리 한강BTL 자산신탁	· 운영기간 : 2020-08.14~2040-08.13 · 운영사 : KR서비스(창원2), HDS(영주) · 운영비 : 협약 운영비X물가지수 변동분 · 수익률 : 5년 만기 국고채+1.11% (5년 단위 조정) · 2015.04.01. : 타당성 조사 · 2016.09.28. : 사업고시 · 2017.02.23. : 사업계획서 평가 · 2017.02.23. : 협상대상자 선정 · 2018.07.30. : 실시협약 체결 · 2019.02.07. : 실시계획 승인 · 2020.08.13. : 준공 · 2020.08.14. : 운영개시 (20년간 / KR서비스, HDS자산관리)
	영주 (1개동) (4,440㎡)		공학관·복지관 (2020-08-13, 4,440㎡)						
2017년 BTL사업 (2개동) (15,241㎡)	청주 (1개동) (8,934㎡)		복합관·기숙사(2인실/50) (2021-08-05, 8,934㎡)	313억원 청주 (197억원) 아산 (116억원)	673 (34)	432 (22)	241 (12)	㈜청람 에듀빌4차(6) 계룡건설 대흥건설 성안건설 KR서비스 고암	· 운영기간 : 2021-08.06 ~ 2041-08.05 · 운영사 : KR서비스, 고암 · 운영비 : 협약 운영비X물가지수 변동분 · 수익률 : 5년 만기 국고채+1.1% (5년 단위 조정) · 2016.02.04 : 타당성 조사 · 2017.12.28. : 사업고시 · 2018.04.30. : 협상대상자 선정 · 2019.05.22. : 실시협약 체결 · 2020.01.29. : 실시계획 승인 · 2021.08.05. : 준공 · 2021.08.06. : 운영개시 (20년간 / KR서비스)
	아산 (1개동) (6,307㎡)		공학관·복지관 (2021-08-05, 6,307㎡)						
2018년 BTL사업 (3개동) (20,829㎡)	대구 (1개동) (7,009㎡)		공학관·복지관 (2022-12-05, 7,009㎡)	457억원 대구 (155억원) 구미 (167억원) 진주 (135억원)	1,044 (52)	708 (35)	336 (17)	㈜ 청람 에듀빌5차(8) 계룡건설 대보건설 동신티앤지 동신건설 디에이치건설 KR서비스 고암	· 운영기간 : 2022-12.05~2042-12.05 · 운영사 : KR서비스, 고암 · 운영비 : 협약 운영비X물가지수 변동분 · 수익률 : 5년 만기 국고채+1.1% (5년 단위 조정) · 2017.02.20. : 타당성 조사 · 2018.12.27. : 사업고시 · 2019.05.03. : 협상대상자 선정 · 2020.09.22. : 협약체결 · 2021.05.24. : 실시계획승인 · 2021.06.14. : 착공 · 2022.12.05. : 준공 및 운영개시 (20년간 / KR서비스, 고암)
	구미 (1개동) (7,616㎡)		공학관·복지관 (2022-12-05, 7,616㎡)						
	진주 (1개동) (6,204㎡)		공학관·복지관 (2022-12-05, 6,204㎡)						
2020년 BTL사업 (4개동) (18,420㎡)	서울정수 (1개동) (5,068㎡)		공학관·복지관 (2025-3-1, 5,068㎡)	494억원 서울정수 (139억원) 인천 (260억원) 남인천 (95억원)	967 (48)	601 (30)	366 (18)	㈜참기술인 2차(7) 대보건설 동부건설 에이스건설 동신건설 두잉씨엔에스 공우 한강에셋	· 운영기간 : 2025-01-18~2045-1-17 (인천, 남인천) 2025-3-1~2045-02-28 (서울정수) · 운영사 : 두잉씨엔에스, 공우 · 운영비 : 협약 운영비X물가지수 변동분 · 수익률 : 5년 만기 국고채+사업수익률 · 2019.03.05. : 타당성 조사 · 2020.12.30. : 사업고시 · 2021.03.05. : 사업 재고시 · 2021.06.18.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1.06.~2022.04. : 실무협상 · 2022.09.02. : 협약체결 · 2022.10.~2023.02. : 실시계획승인 · 2023.07.16. : 착공 · 2025.01.18. : 준공 및 운영개시(인천, 남인천) · 2025.03.01. : 준공 및 운영개시(서울정수)
	인천 (2개동) (9,802㎡)		기숙사(2인실/100) (2025-1-18, 5,132㎡) 공학관 (2025-1-18, 4,670㎡)						
	남인천 (1개동) (3,550㎡)		복지관 (2025-1-18, 3,550㎡)						
2025년 BTL사업 (7개동) (31,500㎡)	충청권	청주 (1개동)	공학관 (4,000㎡)	371억원	-	-	-	-	· 2025.11. : 사업고시 · 2025.12. : 1단계 PQ서류 접수 및 평가 · 2025.12. : 경북권 사업 재고시 · 2026.02. : 충청권/경남권 사업 제안서 평가
		바이오 (논산) (2개동)	공학관·기숙사 (8,000㎡)						
	경북권	포항 (2개동)	복합관·기숙사 (10,200㎡)	427억원	-	-	-	-	
		영주 (1개동)	기숙사 (3,200㎡)						
	경남권	울산 (1개동)	복합관 (6,100㎡)	197억원	-	-	-	-	
2026년 BTL사업 (6개동) (35,513㎡)	수도권	성남 (2개동)	공학관 (3,680㎡)	459억원	-	-	-	-	· 2026.10. : 사업고시 예정
			기숙사(1인실/260) (5,720㎡)						
		반도체 (안성) (1개동)	복합관 (4,700㎡)						
	충청권	충남 (홍성) (1개동)	복합관 (11,000㎡)	358억원	-	-	-	-	
	경상권	진주 (1개동)	복합관 (5,413㎡)	348억원	-	-	-	-	
		로봇 (영천) (1개동)	복합관 (5,000㎡)						

사 업 명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136-750)

1. 사업 총괄 정보

1) 사업 기본 정보

(1-1) 일반 정보

소관	실·국	과·팀	기금	계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1-2) 코드·명칭 정보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080	08D	1100	1136	750
명칭	사회복지	고용	직업능력개발	한국기술교육 대학교출연	한국기술교육 대학교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2)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N	Y	N	N	N	N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N	N	Y	N	N	100	-

4) 기능별(내역사업별)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사업시행주체
임차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비		

2. 예산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사업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본예산액 (A)	2026년 추경 예산액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 /A×100
한국기술교육 대학교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671	3,638	3,638	3,603	3,603	△35	△1.0

1)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7월)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671	3,671	3,544	-	-	3,638	3,638	1,782	3,603
·임차료	2,542	2,542	2,461	-	-	2,486	2,486	1,231	2,467
·운영비	1,129	1,129	1,083	-	-	1,152	1,152	551	1,136

2) 비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액 (수정)	2025년 계획 현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이월액	2025년 불용액	2026년 계획액 (수정)	2026년 계획 현액	2026년 집행액 (7월)	2027년 정부안액
○ 합계	3,671	3,671	3,544	-	-	3,638	3,638	1,782	3,603
·임차료(210-07)	2,542	2,542	2,461	-	-	2,486	2,486	1,231	2,467
·민간경상보조(320-01)	1,129	1,129	1,083	-	-	1,152	1,152	551	1,136

3. 사업 설명

1) 사업목적·내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공학관 및 기숙사)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충하고, 건물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비 지급

(1-1) 임차료

사업목적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확충한 공학관 및 기숙사의 시설임차료를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직업훈련 교원 및 H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와 민간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에 따라 민간투자비에 대한 시설임차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분기별로 지급

(1-2) 운영비

사업목적	BTL 방식으로 건립한 공학관 및 기숙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 교육생과 대학 구성원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생활 환경을 제공
사업내용	실시협약에 따라 공학관 및 기숙사의 인건비, 제경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지급

2) 사업개요

(2-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52조의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26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제24조
추진경위	○ 실험실습 교과비중이 일반대학의 2배에 달하여 공학관 및 기숙사 시설이 상당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원 한계로 시설확충 지연 ○ 정부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노후된 교육훈련시설 조기 개선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부처별 사업시행 - '08. 1~2: 실무위원회 구성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준비 - '08. 6.10: 타당성 용역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검토 - '08. 7.23: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08. 8.29: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P·Q심사서류 접수 - '09. 1.2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0. 5.24: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 '10. 7.23: 실시계획승인신청 - '10. 8.13: 건축허가 승인 - '10.12.13: 실시계획 승인(고시) - '10.12.15: 공사착공 - '12. 08월: 준공

(2-2)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2~2032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3,168	3,593	3,671	3,638	3,603

(2-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사업 수혜자 :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직업능력개발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2027년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임차료	출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467	100.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및 제24조
운영비			1,136		

3) 기능별(내역사업별) 산출 내역

(3-1)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액(수정)(A)	2027년 정부안액(B)	증감 (B-A)
합 계	3,638	3,603	△35
임차료	2,486	2,467	△19
운영비	1,152	1,136	△16

○ 임차료 **(2026년) 2,486 → (2027년) 2,467백만원, △0.8%**

- (설명) 민간투자비 균등분할 지급금으로 '26년 대비 △0.8% 감액
- (산출) 4분기×616.8백만원

○ 운영비 **(2026년) 1,152 → (2027년) 1,136백만원, △1.4%**

- (설명) 인건비, 제경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운영비 등을 감안, '26년 대비 △1.4% 감액
- (산출) 4분기×284백만원

4) 사업효과

(4-1) 최근 5년(2023년~2027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4-2) 성과지표 이외의 최근 4년(2023년~2026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년	운영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4년	운영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5년	운영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6년	운영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계속)

(4-3)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과정 교육생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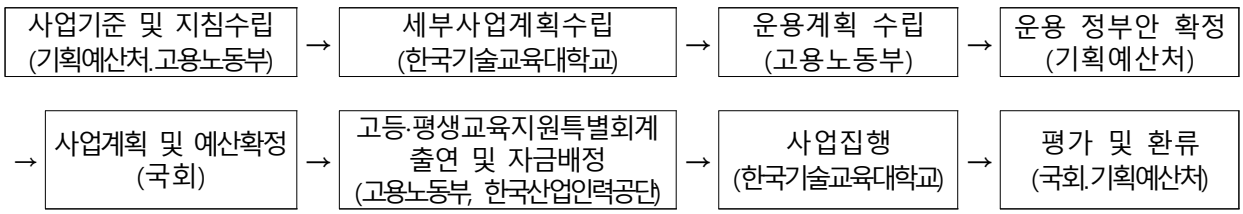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담당자 양성사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실시하고, 재원은 정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 사업기준 및 지침은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가 수립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 고용노동부가 운용계획을 수립하면 기획예산처가 운용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출연 및 자금 배정이 이루어지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사업을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기획예산처가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한다.

8)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8-1) 정부 사업평가: 해당없음

(8-2) 국회 지적사항: 해당없음

(8-3) 감사원, 총리실,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결과: 해당없음

4.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결산내역

1) 결산표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기금변경 증감액 등	계획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x100)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168	3,168	-	352	3,520	3,519	111.1	-	1
2024년	3,593	3,593	-	-	3,593	3,536	98.4	-	57
2025년	3,671	3,671	-	-	3,671	3,544	96.5	-	127
2026년	3,638	3,638	-	-	3,638	1,782	49.0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연도별 결산 주요사항

연도	유형	금액 (백만원)	사유
2023년	전용	352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임차료 증가 및 적용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사업 기관운영비 등에서 352백만원 전용
2023년	불용	1	다음연도 물가지수 및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1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4년	불용	57	다음연도 물가지수 및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57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5년	불용	127	다음연도 물가지수 및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127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6년	-	-	-

5. 기타 추가자료

(1) 2027년 임차료 및 운영비 산출내역(추정치)

참고 1 2027년 임차료 및 운영비 산출내역(추정치)

□ 임차료 예상치 : 2,467백만원(분기별 616.75백만원)

○ 노동부 - 민간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서 재무모델에 근거, '26.8월 수익률 조정(8차) 추정치를 반영하여 '27년 (1~4분기) 임차료를 산출하되,

<참고: 사업수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조정시점	가산율(불변)(A)	지표금리(B)	사업수익률(연)(C=A+B)	사업수익률(분기)(D=(1+C)1/4-1)
임대개시 시점	2012.8	1.64	2.92	4.56	1.12
2년 후 조정	2014.8		2.74	4.38	1.08
4년 후 조정	2016.8		1.26	2.90	0.72
6년 후 조정	2018.8		2.29	3.93	0.97
8년 후 조정	2020.8		1.09	2.73	0.68
10년 후 조정	2022.8		3.18	4.82	1.18
12년 후 조정	2024.8		2.94	4.58	1.13
14년 후 조정	**2026.8**		**3.03(추정)**	**4.67**	**1.15**

○ '26년 금리 전망은 불가함에 따라 직전 2개년 평균금리*('23년Q4~'25년Q3 평균금리= 3.025%)를 적용하여 사업수익률** → 임차료 산출***

* '23년 Q4~'25년 Q3(최근2년) 평균 시장금리/국고채(5년) 3.025%

** 14년 후 조정('26.8. 예정) 사업수익률 : 연 4.67%(가산율 1.64% + 지표금리 3.03%)

*** '27년 분기별 임차료 : 616.75백만원 산출(재무모델 활용)

○ '27년 연간 임차료 : 2,467백만원(616.75백만원 × 4분기)

□ 운영비 예상치 : 1,136백만원(분기별 284백만원)

○ 운영비의 경우 최초 협약 당시 불변가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직전 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

- 최초 운영비 175,411,961원(분기) × 적용물가지수 × 1.1(부가세)

* 고시일 기준 물가지수 87.229 → 현재 82.747(202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통계청 보도자료 2021.12.22.), '25년 9월 물가지수는 117.06으로 '25년 4분기 운영비 지출액은 <불변가×141.46736%**×1.1> = 272.966백만원

** (117.06 ÷ 82.747) × 100 ≒ 141.46736%

○ 원자재 공급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발생 예상

○ 월별 물가지수 상승률(0.202%[추정치])을 바탕으로 '27년도 운영비를 분기별로 추계

* '24년12월~'25년11월 소비자물가지수 월별 평균 상승률 = 0.202%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적용물가지수	운영비(확정)
'25년 4분기	117.06	141.46736	272,965천원

⇩

구 분	물가지수(추정)	적용지수(%)*	운영비 추정액**
'26년 4분기	119.93	144.93577	279,658천원
'27년 1분기	**120.66**	**145.81797**	**281,360천원**
'27년 2분기	**121.39**	**146.70018**	**283,062천원**
'27년 3분기	**122.13**	**147.59447**	**284,788천원**
'27년 4분기	**122.87**	**148.48876**	**286,513천원**
'27년 합계			**1,135,723천원**

* 직전분기 물가지수 ÷ 82.747(2020년 기준) × 100

** 불변가 × 적용지수 × 1.1(부가세)

□ 중장기 예산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연도	예산금액	산 출 근 거
'26	3,638,000	- 임차료 : 621,500 × 4분기 = 2,486,000 - 운영비 : 288,000 × 4분기 = 1,152,000
'27	3,603,000	- 임차료 : 616,750 × 4분기 = 2,467,000 - 운영비 : 284,000 × 4분기 = 1,136,000
'28	3,711,000	- 전년대비 3% 증액
'29	3,822,000	- 전년대비 3% 증액
'30	3,937,000	- 전년대비 3% 증액